서울시보

서울시 홈페이지 | www.seoul.go.kr

제3085호 2011. 12. 29.(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기관의 장	
선탐	

공탐									

서울특별시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731-6113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5203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제5204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제5205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제5206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 11
제5207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제520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제5209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제5210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규 칙]

제38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0
제383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7
제3833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59

[훈 령]

제975호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관련소송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72

[예 규]

제8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 ····· 78
제87호 서울특별시의회 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 86
제88호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 ····· 88

[입법예고]

제2011-2008호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9
제2011-2020호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0
제2011-202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1
제2011-202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2

◈ 고 시

제2011-397호 이문 · 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1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승인 ··· 94
제2011-399호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고시 ····· 198
제2011-400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99
제2011-401호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녹지)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10
제2011-402호 도시관리계획(낙성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22

제2011-403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고시 ····· 240
제2011-404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고시 ····· 241
제2011-405호 하천 폐천부지 고시 ····· 244
제2011-4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 246
제2011-407호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50
제2011-4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 284
제2011-409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284
제2011-410호 천왕역 광역환승센터 사용 개시 ····· 315
제2011-41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유원지)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 316
제2011-412호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333
제2011-413호 서울장지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334
제2011-414호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35
제2011-415호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343
제2011-416호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 2,8단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348
제2011-41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351
제2011-418호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54
제2011-419호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지정 고시 ····· 418
제2011-420호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 424

◈공 고

제2011-1991호 과학관 등록 ····· 452
제2011-1995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452
제2011-19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453
제2011-199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454
제2011-2000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455
제2011-2003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456
제2011-20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 458
제2011-200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458
제2011-2011호 서울추모공원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공고 ····· 463
제2011-2013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463
제2011-201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 464
제2011-201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465
제2011-2025호 공인 등록 공고 ····· 466
제2011-2026호 2011년도 제23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 466

◈ 구 고 시

제2011-9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 468
제2011-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용산구) ····· 470

제2011-10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 471
제2011-4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 일부 조성) 실시계획 작성사항 변경 고시(중랑구) ····· 473
제2011-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 실시계획 작성사항 변경 고시(중랑구) ····· 475
제2011-126호 도시계획시설(북악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성북구) ····· 478
제2011-127호 도시계획시설(북악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성북구) ····· 479
제2011-64호 미아제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강북구) ····· 479
제2011-65호 미아제3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강북구) ····· 480
제2011-66호 미아제4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강북구) ····· 481
제2011-67호 미아제5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강북구) ····· 482
제2011-68호 수유제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강북구) ····· 482
제2011-69호 수유제3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강북구) ····· 483
제2011-7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북구) ····· 484
제2011-52호 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도봉구) ····· 486
제2011-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도봉구) ····· 489
제2011-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서대문구) ····· 493
제2011-128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마포구) ····· 496
제2011-13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마포구) ····· 498
제2011-79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강서구) ····· 500
제2011-80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강서구) ····· 501
제2011-9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푸른수목원 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구로구) ····· 502
제2011-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금천구) ····· 506
제2011-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금천구) ····· 515
제2011-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529
제2011-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 고시(서초구) ····· 530
제2011-7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강남구) ····· 530
제2011-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 531

◈ 구 공 고

제2011-1158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동대문구) ····· 532
제2011-1204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성북구) ····· 535
제2011-10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소공원) 공사완료 공고(서대문구) ····· 541
제2011-106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공사완료 공고(서대문구) ····· 541
제2011-9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 542
제2011-9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 543
제2011-778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금천구) ····· 544
제2011-120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 철도역]사업 공사완료 공고(영등포구) ····· 546

제2011-8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 548

◈ 사업소고시

제2011-136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558
제2011-137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558

◈ 사업소공고

제2011-3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용산소방서) ····· 560
제2011-21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광진소방서) ····· 560
제2011-22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광진소방서) ····· 561
제2011-24호 소방시설업등록(구로소방서) ····· 561
제2011-25호 소방시설업등록(구로소방서) ····· 561
제2011-5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관악소방서) ····· 562

◈ 기 타

제2011-365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563
제2011-382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563
제2011-383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564
제2011-384호 하천점용(일시)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564

◈ 정 정

····· 566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 조례 제5203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4장(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을 제5장(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으로 하고, 제5장(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을 제6장(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제6장(제23조)을 제7장(제27조)으로 한다.

제4장(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시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6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서울시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66조의3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제출 관련 내용을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관성이 높은「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비용추계서로 정의하고 세출과 세입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부터 제7호)
○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대상에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의안으로 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4조)
○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서식을 정하고 비용추계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을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을 기준으로 정함(안 제15조)
○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에 안건 부의시 첨부하되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시 첨부하도록 하며,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5204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제7조 제2항 중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운용상황 공시, 민간투자사업, 지역개발기금, 지방공기업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 이유
   지방공기업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의원과 외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시장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5호 신설).
   ○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강제함 (안 제7조제2항).
   ○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8조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5205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마목을 삭제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6조제1항제3호의 가목 중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가목 중 "푸른도시국"을 "공원녹지국"으로 하며, 다목 중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하며, 마목 중 "도시안전본부"를 "도시안전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의 나목 중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 가목 중 “도시안전본부”를 “도시안전실”로 하고, “시설안전기획관”을 “시설안전정책관”으로 하며, 나목 중 “문화시설사업단”을 “시책사업추진단”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의 나목 중 “주택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조직의 실·본부·국 간 업무가 조정되고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되는 “서울혁신기획관”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함.
   (안 제6조제1항제1호 사목)
   ○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제1항제3호 가목)
   ○ “푸른도시국”은 “공원녹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제1항제4호 가목)
   ○ “맑은환경본부”는 “기후환경본부”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제1항제4호 다목)
   ○ “도시안전본부”는 “도시안전실”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제1항제4호 마목, 안 제6조제1항제7호 가목)
   ○ “복지건강본부”는 “복지건강실”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제1항제6호 나목)
   ○ “주택본부”는 “주택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제1항제8호 나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5206호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1년 12월 2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관리하는 “티-머니(T-money)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이하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택시이용자 편의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국스마트카드”란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교통카드시스템 운영법인을 말함.
2. “티-머니(T-money)카드 등(이하 ‘티-머니 카드’라 함)”이란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교통카드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택시를 등록·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 서울특별시장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티-머니 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부정사용 등) ①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티-머니카드를 부정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부정사용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반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업무협약체결) 서울특별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티-머니 카드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 동 조례안은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티머니카드로 10,000원 이하의 택시운임을 결제할 경우, 그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서울시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티-머니카드를 이용한 소액결제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카드 수수료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4조)
   - ○ 티-머니 카드의 부정사용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 서울특별시장은 카드 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티-머니 카드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
   - ○ 한시적 조례로써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부칙 안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5207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 이유
   서민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여 계속 시행하고, 구세에서 시세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함(안 부칙 제3조).
   ○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였으나, 세목이 시세로 변경됨에 따라 면제세목에 이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520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맑은환경본부·교육협력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도시안전본부·주택본부·도시계획국·소방재난본부”를 “경제진흥실·복지건강실·도시교통본부·기후환경본부·문화관광디자인본부·행정국·재무국·교육협력국·도시안전실·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공원녹지국·소방재난본부”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의회에 관한 사항
2. 대정부·국회협력, 시·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미래시정비전·전략제시 및 시정 창안에 관한 사항
4. 조직·정원관리, 제도개선 및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기준,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7. 재정계획, 부채관리, 공기업·출연기관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8. 성과·목표관리, 행정서비스·지시사항·위험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경제진흥실) 경제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진흥 및 지역산업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벤처산업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협력, 국제회의, 도시브랜드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투자유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 상공업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지원, 농수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9.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복지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계획, 환경교육, 환경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2. 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자동차 보급, 경유차저공해화사업,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승용차요일제 시행 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청소, 도로·가로의 청결, 생활공해, 비산먼지, 석면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 문화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디자인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 및 관광유치 총괄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공공디자인정책 및 도시경관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도시안전본부”를 “도시안전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주택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공원녹지국) 공원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녹지정책 수립, 공원의 조성·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경·녹지의 계획·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3. 민간녹화지원, 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 및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7. 산사태 등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5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강 친환경 자연성회복 계획 수립 및 시행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하부기관) ① 박물관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장 밑에 한성백제박물관을 둔다.

②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방이동 88번지 20호)에 둔다.

③ 한성백제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서울역사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그 밖의 한성백제박물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절의 제목 “서울특별시푸른도시사업소”를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로 하고, 제8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푸른도시사업소”를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푸른도시사업소”를 “공원녹지사업소”로 하고, 구분란 중 “푸른도시사업소”를 각각 “공원녹지사업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리청란 중 “푸른도시사업소장”을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주택국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맑은환경본부장, 푸른도시국장,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 공원녹지국장,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정책실장,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맑은환경본부장·한강사업본부장·푸른도시국장·도시계획국장·도시안전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한강사업본부장·공원녹지국장·도시계획국장·도시안전실장”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나목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각각 “경제진흥실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도시안전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를 “도시안전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수임기관란 중 “푸른도시사업소장”을 각각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하고,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하며,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하고, “도시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하며, “푸른도시국”을 “공원녹지국”으로 하고, “주택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하며, “녹지사업소장”을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하고,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을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하며, “관할 푸른도시사업소장”을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국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경제진흥실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각각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 또는 국장”을 “실장 또는 정책관”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푸른도시사업소”를 “공원녹지사업소”로, “푸른도시사업소장”을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도시안전본부장 및 복지건강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 및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㉛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한다.

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 시정 전반의 주요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본부·국의 기구를 현행 “1실 8본부 5국 체제”에서 “5실 4본부 5국 체제”로 정비하고, 조직의 정책수립 및 종합적 조정기능을 보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실·본부·국의 일부 업무를 강화함
     -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하고, 일자리 발굴 및 육성업무를 활성화 함
     -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하고, 복지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기능을 보강함
     -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하고, 에너지관련 업무를 강화함
     - “주택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보강함
     - “푸른도시국”을 “공원녹지국”으로 하고, 산사태 등 산지방재 업무를 강화함
   - ○ “도시안전본부”는 “도시안전실”로, “푸른도시사업소”는 “공원녹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
   - ○ 한성백제박물관을 역사박물관의 하부기관으로 설치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5209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1년 12월 29일

별표 3 일반직 계란 중 계 “6,558”을 “6,557”로, 3급란 중 계 “18”을 “17”로, 본청 “8”을 “7”로, 4급란 중 계 “194”를 “195”로, 본청 “110”을 “114”로, 사업소 “61”을 “58”로, 5급 이하 소계란 중 계 “6,305”를 “6,304”로 하고, 별정직 계란 중 계 “107”을 “106”으로, 5급상당 이하 소계란 중 계 “106”을 “105”로 하며, 연구직 계란 중 계 “303”을 “305”로, 연구관란 중 계 “45”를 “47”로, 직속기관 “33”을 “32”로, 사업소 “12”를 “1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ㅇ 조직개편 및 기구조정에 따라 직종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본청·사업소간 정원 이관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ㅇ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본청의 3급정원 1명을 감축하여 4급정원 1명을 증원하고,
   - ㅇ 은평병원 발달장애아동 치료분야 보강을 위해 별정직을 상계하여 일반직 1명을, 한성백제박물관 개관에 따른 유물확보를 위해 일반직을 상계하여 연구직 2명을 증원함
   - ㅇ 조직개편 및 기구조정에 따라 본청·사업소간 일부 정원을 이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5210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ㅇ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과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운영 측면에서 서비스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시됨.
   - ㅇ 이에,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ㅇ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ㅇ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ㅇ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단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38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민소통담당관·시민고객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을 “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변인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을 두고, 언론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언론행정담당관”을 “언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2. 시정현장 언론소통 기획 총괄·조정
13. 중앙부처, 국회 관련 보도분석 및 환류
14.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외신보도의 지원
15. 기획기사 발굴제공 및 현장취재 지원
16. 주·월간지 등의 시정 보도지원
17. 인터넷뉴스 모니터링 및 환류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서울혁신기획관) ①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혁신, 마을공동체, 시정 주요갈등 조정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서울혁신기획관 밑에 사회혁신담당관·마을공동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을 두고, 사회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1항의 서울혁신기획관 및 제3항의 마을공동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⑤ 사회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혁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내·외 사회혁신사례 도입 및 혁신대상사업 발굴
3. 사회혁신 사례 전파 및 확산
4. 시민의 인권 및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⑥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등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4.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및 맞춤형 모델 개발
5. 마을공동체 매뉴얼 마련 및 보급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구성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7.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⑦ 갈등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갈등조정 총괄
2. 갈등예방 관리체계 구축
3. 주요시책 관련 갈등 조정 및 중재 지원
4. 내·외부기관 간 갈등 조정 및 중재 지원

제5조 제목 “시민소통담당관 등”을 “시민소통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민소통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소통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시민소통기획관 밑에 시민소통담당관·시민고객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을 두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시민고객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뉴미디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1항의 시민소통기획관 및 제3항의 뉴미디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각각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비전담당관·조직담당관·법무담당관·창의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을 “기획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미래창안담당관·조직담당관·법무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담당관”을 “미래창안담당관”으로, “조직담당관·창의담당관”을 “대외협력담당관·조직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정계획, 정책비전, 조직, 법무행정, 창의업무”를 “시정계획, 대외협력, 미래창안, 조직관리, 법무행정”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2.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3.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4. 계절별 종합대책의 총괄·조정
5. 월간·연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6.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
7. 대통령·국무총리·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의 총괄
8. 시의회 의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0.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선결처분업무의 지원
12.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13. 시정백서·시정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3.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의 총괄
5.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회협력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정감사·조사 관련 국회연락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당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9. 정당·국회의원 건의사항의 처리

⑦ 미래창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 시정발전 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
2.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업무개선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직원 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5.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6.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
7.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5. 행정사무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
6.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한다.

13.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조례·규칙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같은 조 제10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재정의 경영합리화 총괄
2.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채관리,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복권 수익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투자·출연기관의 예산결산, 경영평가 및 경영수익사업 개발 등 투자· 출연기관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종전의 제12조) 제목 “경제진흥본부에 두는 과”를 “경제진흥실에 두는 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진흥실에 산업경제정책관·경제정책과·국제협력과·투자유치과·생활경제과·외국인생활지원과·일자리정책과·사회적기업과·일자리지원과·창업소상공인과·농수산물공사협력관을 둔다.

② 경제진흥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산업경제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국제협력과장·투자유치과장·외국인생활지원과장·일자리정책과장·사회적기업과장·일자리지원과장·창업소상공인과장·농수산물공사협력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생활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산업경제정책관은 산업경제정책, 국제교류협력, 외국인투자유치, 시민의 생활경제,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하여 경제진흥실장을 보좌한다.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17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종전의 제24호) 중 “본부”를 “실”로 한다.

1. 중소기업육성정책 등 산업경제정책 총괄·조정
6.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17.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국제통상환경 조사·분석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협력종합계획 수립
2. 외국도시와의 협정체결 및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가·유치·행사개최
4. 주한 외국 공관의 지원
5.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6.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7.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8. 서울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9.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0. 도시브랜드 마케팅 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11. 해외 방송·신문 등 주요 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12. 민간기업 제휴 및 해외도시 네트워크 활용 마케팅
13. 시장단 외신 인터뷰 및 외신 모니터링
14. 외국어 표기의 자문 및 중국어 표기 기준 설정
15.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마케팅
16. 문화, 스포츠, 외국인 행사 등을 활용한 국내·외 마케팅
17. 외신 홍보물 제작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여행잡지 발간

⑥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3.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4.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5.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6.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7.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8. 디지털미디어시티 입주시설 및 투자 유치
9.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
10.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
11.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
12.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
13.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
14.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15. 마곡산업단지 토지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마곡지구 국제업무단지 및 병원부지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
17. 마곡지구 산업단지, 국제업무단지 및 병원부지 기업유치·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⑦ 생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2.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3.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상업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관리
5.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6.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에 관한 사항
7.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8. 재래시장 현대화·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10.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1.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2.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13.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16. 사료품질·학교우유급식·가축사육 등 축정관리에 관한 사항
17.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18. 친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19.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0.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21.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2.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23.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⑧ 외국인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
2. 다문화 사회 조성 및 글로벌화 사업 총괄 기획·조정·홍보
3. 글로벌존 조성·운영
4. 외국인 지원 인프라 구축
5.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운영
6. 외국인 학교 건립·교육환경 개선, 외국인 자녀 교육 지원
7. 외국인 체류·거주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8. 외국인 커뮤니티, 벼룩시장 등 내외국인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⑨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
4.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
5.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6.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
7.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
8.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9.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설립·변경 및 해산신고 수리
11. 노동조합규약의 변경 및 보완명령
12.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13.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
⑩ 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4. 생활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⑪ 일자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취업 관련 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구인기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직 및 창업 상담 등 취업·창업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8. 고용증대 우수기업 관리 및 청년경력 관리제 운영

⑫ 창업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 총괄
2. 창업교육 및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 등
3. 창업보육센터 운영
4. 창업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애로상담 모니터링 관리에 관한 사항
7.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10.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업민원 접수 및 처리

⑬ 농수산물공사협력관은 농수산물공사와의 협력지원업무 등에 관하여 경제진흥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종전의 제13조) 제목 “복지건강본부에 두는 과”를 “복지건강실에 두는 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복지건강실에 복지정책관·복지정책과·희망복지지원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자활지원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식품안전과·공중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건강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복지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희망복지지원과장·노인복지과장·장애인복지과장·자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강증진과장·식품안전과장·공중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복지정책관은 복지정책, 서민복지, 노인·장애인 복지, 자활지원 등에 관하여 복지건강실장을 보좌한다.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본부”를 “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시복지재단 지원 및 지도·감독

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사각지대 종합지원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2.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관리
3. 복지취약계층 지원사업 평가 및 제도개선
4. 복지취약계층 조사·발굴·사후관리
5. 복지취약계층 긴급지원 및 위기관리대상지원
6 민간부문 복지자원·재원 발굴

7. 복지취약계층 온라인 상시시스템 구축·운영
8. 민·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9. 사회공헌추진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10.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기부문화 확산 추진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교통본부에 교통정책과·버스관리과·택시물류과·주차계획과·보행자전거과·교통운영과·교통지도과·교통정보센터·서울메트로협력관·도시철도공사협력관을 둔다.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교통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을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종전의 제15조) 제목 "맑은환경본부에 두는 과"를 "기후환경본부에 두는 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후환경본부에 환경정책과·녹색에너지과·기후대기과·친환경교통과·자원순환과·생활환경과를 둔다.

②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녹색에너지과장·기후대기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친환경교통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녹색성장 및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3.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주요 산업의 녹색화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기타 환경정보에 관한 사항
10.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시민참여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2. 환경용량 설정 및 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13.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14. 환경기술개발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
15.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사항
16.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녹색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종합대책 수립
2. 에너지절감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위기대응 체계구축 및 관리
4. 에너지교육·홍보 등 시민협력 강화
5.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청정에너지 개발 및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8. 친환경건축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10. 지역에너지 수급계획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1.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2. 석유·연탄·가스산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
14.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15. 전기사업·전기공사업 및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
16.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제16호 및 제17호로 한다.

8. 저공해조치차량 보조금 집행 및 저공해미이행경유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광역단속반 운영 및 배출가스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0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 및 제2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한다.

2. 폐기물 통계관리, 폐기물처리기술·정보의 수집·개발 및 보급
10. 음식물류폐기물·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종합대책 수립·운영·평가
2. 도로물청소 계획 수립·운영·평가
3.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항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5.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교섭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장비관리 및 기술개발보급
7. 청소용수 확보 및 공급

8.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9.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
10.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1.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2. 악취배출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3.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음·진동관리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석면함유 가능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 석면 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9. 석면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20. 보건환경연구원 석면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
21. 환경신문고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산업과·문화재과·관광과·체육진흥과·디자인정책과·도시디자인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문화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문화산업과장·문화재과장·관광과장·체육진흥과장·디자인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기획·조정 및 총괄
2. 자치구 문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서울시 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
4. 사단법인 서울 문화포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정책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등
6. (재)세종문화회관, (재)서울문화재단 및 (재)서울시립교향악단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문화지구 지정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문화교류사업
9. 장르별 전문공연장 건립 및 운영 지원
10.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
11. 서울시 문화시설 운영지원 및 위탁관리
12. 하이서울페스티벌·드럼페스티벌 및 세계불꽃축제 등 국제 문화예술 행사
13. 시립미술관 운영의 지도·감독
14. 그 밖에 문화관광기획관 산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
3. 시가 흐르는 서울 추진에 관한 사항

4. 고궁뮤지컬 및 궁중문화 재현 지원
5. 정기간행물 납본관리 및 행정처분
6. 문화예술 및 종교법인 등록관리
7. 광복절 기념행사 및 청계천 축제
8. 문화예술단체 후원에 관한 사항
9. 종교단체 후원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학의 집 및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민문화 한마당 및 사랑의 문화 나눔 행사에 관한 사항
12.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랑의 티켓사업에 관한 사항
14.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어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16. 국악교육 및 국악축제에 관한 사항
17. 대표도서관·지역정보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⑤ 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
2. 문화산업 지원
3. 문화산업 지원시설 설치 운영
4. 문화콘텐츠 개발
5. 문화디지털콘텐츠펀드 조성 및 운용
6. 문화재산권에 관한 사항
7. 의류 및 패션기반 산업 지원
8. 패션 지원시설 설치 운영

⑥ 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재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지표조사 및 표식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감독
5.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발굴 허가 및 지도·감독
6.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7. 지정되지 아니한 유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
8. 매장·발견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9. 무형문화재(동산·민속자료 포함), 기·예능보유자의 발굴·지정·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0. 시사자료의 정리·편찬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
11.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의 지도·감독
12. 박물관 등록 및 문화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13. 남산골한옥마을·운현궁 등 문화시설의 관리·운영
14.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사범에 관한 사항
15. 보신각 운영지도 기타 문화재에 관한 사항

16. 세계유산 관리·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17. 등록문화재 추진에 관한 사항
18.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⑦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객 유치대책 총괄·조정
2.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지도 및 지원
4. “지역방문의 해” 유치 관련 사항
5. 서울관광대상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개발·관리 총괄·조정
7. 관광특구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관광기념품 산업 육성 지원
9. 중저가 관광숙박대책 등 수립·관리
10.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안내체계 등 개선 및 관리
11.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관한 사항
12. 관광사업체 관리 및 관광 관련 단체 지도·지원
13. 국내·외 관광마케팅 총괄기획·조정
14.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16.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관리
17.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관리
18. 문화유산해설사 등 관광자원봉사자 육성 지원
19.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서울관광사진전 개최 및 우수사진작품 개발
21.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산업 육성 및 지원
⑧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서울특별시체육회, 경기단체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4. 국제 스포츠교류사업 및 국제 체육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및 레저 활동 지원, 학교 및 직장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구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7. 여가생활시설·체육관련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8. 잠실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관한 사항
10. 체육 관련 법인·단체 및 체육시설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국민체육진흥기금, 시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13. 레크리에이션 및 건강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4.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및 제2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한 사항
15.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수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6. 서울시 직장운동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민간 체육행사에 대한 시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내외 체육대회(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⑨ 디자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디자인 정책 총괄 기획
2. 디자인서울 추진 전략 구상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3. 디자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서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디자인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개발
6.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설립 및 운용방안 수립
8. 디자인산업 진흥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디자인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디자인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11.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발굴·추진
12. 디자인을 매개로 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 발굴·추진
13. 서울상징물(휘장·브랜드·심벌 등) 변경·관리·활용
14. 서울색·서울서체 관리 및 활용
15.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미술장식 사업
16.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

⑩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및 디자인서울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향상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및 공모전에 관한 사항
7. DDP 주변 환경정비 업무 총괄
8. 도시경관 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도시경관 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1. 서울모습사진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12. 빛환경 정책기획 및 야간경관 사업 총괄
13. 스마트그리드 조명도시 구축 및 좋은 빛 조명기구 인증에 관한 사항
14. 옥외광고물 정책 총괄 기획
15.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16. 광고물 수준향상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7.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인사과·인력개발과·행정과·특별사법경찰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인력개발과장·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사과장·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운영계획 수립 및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관리용역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청사방호·청원경찰에 관한 사항
5.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공관운영에 관한 사항
9.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0. 서울시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운용
11. 서울광장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접수·배포에 관한 사항
15. 기록물수집·이관·폐기·보존, 문서보존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고시·공고·공포 및 발령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실·본부·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직무분석 및 경력개발제도 운영
3. 장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4. 공무원 모집관리 및 전형업무의 지도
5.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7.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
8.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9.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1.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13.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⑤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3.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4. 공무국외여행 심사
5. 직원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의무실·치과운영에 관한 사항
7.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관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대부관리 및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10. 직원후생복지 증진
11.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12.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업무의 총괄·조정
2. 자치구·동 행정의 조정·지원 및 개선 등 총괄
3. 시·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4. 자치구 예산의 총괄·조정
5. 자치구·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8.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9.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10. 시·자치구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1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1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13.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4.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15.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7.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18. 기부금품 모집 허가에 관한 사항
19.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요건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0.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7조(종전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무국에 재무과·자산관리과·계약심사과·세제과·세무과·38세금징수과를 둔다.

② 재무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자산관리과장·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계약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과장”을 “자산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추진
11.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7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38세금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2.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5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3. 불납 결손처분된 조세채권 징수 및 관리
4.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5.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6.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7. 압류채권의 추심 및 압류재산의 매각처분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교육협력국에 두는 과) ① 교육협력국에 학교지원과·교육격차해소과·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교육협력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격차해소과장 및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조정
2.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서울 희망누리 체험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문계고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9. 체험 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교육지원자문단 운영
13.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14.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격차해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2.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6.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7. 초등학교 주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사항
8. 동생행복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9. 대학이 제안하는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 운영

⑤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1조를 제20조로 하고, 제20조(종전의 제21조) 제목 “도시안전본부에 두는 과”를 “도시안전실에 두는 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를 “도시안전실”로, “시설안전기획관”을 “시설안전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도시안전실장”으로, “시설안전기획관”을 각각 “시설안전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7호 중 “본부”를 “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22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1조(종전의 제22조) 제목 “주택본부에 두는 과”를 “주택정책실에 두는 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주택정책실에 주택정책과·임대주택과·건축기획과·한옥문화과·주거재생과·공공관리과·재정비과·주거환경과·SH공사협력관을 둔다.

② 주택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대주택과장·건축기획과장·한옥문화과장·공공관리과장·SH공사협력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거재생과장·재정비과장·주거환경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같은 조 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3호) 중 “본부”를 “실”로 한다.

12.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공급과장”을 “임대주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7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기전세주택 공급·매입 및 임대 총괄
3. 장기전세주택 유지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리모델링 총괄
7.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
10. 공공부문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지도)에 관한 사항
11. 공공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총괄
14. 임대주택 공급 총괄조정 및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6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의 역사·문화 기록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15. 서울건축문화제(건축상)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8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불량주거지 공공개발 방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10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3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17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18호로 한다.

11.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광고물 관리계획 및 원주민 재정착에 관한 사항
13.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의제처리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역세권 용적률 및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1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환경디자인 및 친환경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
11.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주거·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주택유지관리, 개·보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마을조성관련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12항 중 “주택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제23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2조(종전의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지구단위계획과·시설계획과·토지관리과·균형발전과·도시개발과·도시정비과를 둔다.

② 도시계획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관리과장·균형발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구단위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도시개발과장 및 도시정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과장”을 “지구단위계획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령운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⑥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토지관리·토지조사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실명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결정에 관한 사항
7.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적전산화에 관한 사항
8. 지적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9.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 중개업소 및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11. 공유토지분할정리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토지법」운용에 관한 사항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14. 측량업 등록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6. 측량기준점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의한 공간정보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⑦ 균형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용지의 공급과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권역별 특성화 지역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전통산업·상권을 연계한 보전육성에 관한 사항
5. 저밀도 관리지역 환경보호·개선을 위한 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6. 세종대로 주변 한글특성화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동대문 성곽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9.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종합정비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10.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 동남권 유통단지 중 청계천이주상인에 관한 사항
12.「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역세권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3. 철도 입체복합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철도 상부공간 활용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역사문화축(1축), 관광문화축(2축), 도심남북녹지축(3축) 및 복합문화축(4축) 조성 및 정 비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⑧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3.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총괄·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7.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8.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등기촉탁 등에 관한 사항
9. 환지처분 관련 소송 및 민원처리
10.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1. 마곡지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2. 마곡지구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마곡 U-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14. 홍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⑨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 제도정비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관리(공사장, 공공시설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에 관한 사항
5. 낙원상가 및 주변일대 정비에 관한 사항
6.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8.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준공업지역・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입체·복합도시 조성 등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1. 지하공간 관리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2. 지하·입체공간이용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13. 입체복합시설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공원녹지국에 두는 과) ① 공원녹지국에 공원녹지정책과·공원조성과·조경과·자연생태과·산지방재과를 둔다.

② 공원녹지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공원녹지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조경과장·산지방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원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거점·대형공원 개발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사항
4. 공원 관련 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5.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징수관리
8. 기존 공원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9.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원 및 공원시설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원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원의 홍보, 마케팅 및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
13. 서울대공원 재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의 종류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관련 공원분야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공원의 신규조성에 관한 사항
6. 푸른수목원 및 경의·경춘선 공원화 사업 등 대형공원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남산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8.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9. 공원 내 테마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0. 기존 공원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11. 국외공원조성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12.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13.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 보상에 관한 사항
14. 공원 내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남산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⑤ 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도시녹화사업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푸른서울가꾸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반 녹화(옥상녹화 등)에 관한 사항
5. 아파트 열린숲길 조성에 관한 사항
6. 나무은행, 큰나무등록제에 관한 사항
7. 시민녹화 재료지원·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에 관한 사항
9. 수경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에코스쿨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복합마을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공시설 녹화에 관한 사항
13. 소규모공지의 녹화 추진에 관한 사항
14. 시설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
17. 화훼·잔디 등 양묘 수급 및 수목 공급에 관한 사항
18. 보호수 지정·관리, 정자마당 조성에 관한 사항
19. 도시계획사업 관련 조경분야 협의에 관한 사항
⑥ 자연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단체 등 육성에 관한 사항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보전협력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물종번식·증식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11. 생태프로그램 등 자연자원 이용에 관한 사항
12.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13. 산사태 등 재해예방 및 훼손지의 자연생태복원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4.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5. 하천 및 유수지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6. 산림정책 및 산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17. 도시숲조성, 숲가꾸기 등에 관한 사항

18.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9. 등산로 개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⑦ 산지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면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기준·제도에 관한 사항
2. 산지사면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지 재해(붕괴)위험지구에 관한 사항
4. 산지사면 안전관리 재정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산지사면 정비계획 수립(사방댐, 배수로 등)에 관한 사항
6. 산지사면 정비 및 예방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7. 산지사면 붕괴 등 풍수해지 복구에 관한 사항
8. 산지사면 재난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9. 산지사면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11. 산지사면 안전시설 및 안전표지판에 관한 사항
12. 산지사면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관련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13. 산지사면 재난관련 산림청 및 소방방재청 업무 협의
14. 산지사면(절개지, 옹벽, 축대 등) 조성·변경 및 산지 주변 개발 행위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15. 산지 보강·복구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66조제1항 중 “공공시설부·도시철도국를”을 “공공사업부·도시철도국을”로, “공공시설부장”을 “공공사업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공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청사·한강예술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한강예술섬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청사·한강예술섬 전기, 소방, 정보통신,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4. 노들섬 옹벽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청사와 시의회 본관 건물 간의 지하연결통로 개설에 관한 사항
6. 시책사업의 공사에 관한 사항
7. 공원 및 조경공사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8. 시장 및 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국에 건설총괄부·토목부·건축부·설비부를 두고, 건설총괄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고속도로의 공사에 관한 사항
9. 하수 및 빗물 펌프장 등 치수 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 용역 등 발주 전 심의 및 설계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11. 본부 소관 시설물 공사장 등의 풍수해 및 재난관리 업무
12. 기술 관련 업무 중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8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9호선1단계 사후관리(901공구~906공구, 차량기지)

제69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한다.

② 공공사업부에 신청사건립1과, 신청사건립2과, 신청사건립3과, 조경시설과를 두고, 신청사건립1과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청사건립2과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신청사건립3과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조경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토목부에 토목총괄과·광역도로과·터널건설과·교량건설과·토목설계과·도시고속도로과·치수시설과를 두며, 토목총괄과장·터널건설과장·교량건설과장·토목설계과장·도시고속도로과장·치수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역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설비부에 열빛총괄과·환경설비과·건축설비과·녹색성장과·시책사업과·환경시설과를 두며, 열빛총괄과장·환경설비과장·건축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녹색성장과장·시책사업과장 및 환경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 총무부·운영부·공원관리부·시설관리부를 두고, 총무부장·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원관리부장·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감사·조직·상훈·교육훈련·급여·후생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문서·관인·청사·총무계획·보안 등에 관한 사항
3. 결산 및 계약·지출·물품관리 등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의 총괄
5. 예산 편성·조정·배정 및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의회 등 각종 회의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7. 한강공원 홍보 총괄 및 이용만족도 조사 분석
8. U-한강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9.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운영·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유지보수
10. 한강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강문화포럼, 시민대학 운영 및 각종 공연·축제·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7. 한강 오염원 지도 단속
8. 한강공원 환경순찰, 사건·사고 보고 및 관리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공원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위탁대상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2. 수영장, 주차장 등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외수입 총괄
4.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생물서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한강의 자연성 회복분야 사업 총괄
6. 생태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7. 녹지·생태 조성 및 유지관리
8. 수상교통(수상택시, 수상버스 등)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유·도선업 및 수상레저업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상이용시설의 설치, 수상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육상포함)의 지도감독·관리 및 시유 수상이용시설 위탁관리
11. 관공선 및 선박기지 관리
12. 하천점용허가(수상시설물, 선박 등) 및 점용료 부과징수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무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홍보과 및 자전거과를 두고,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및 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전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원관리부에 공원기획과·생태공원과·녹지관리과·수상교통과·수상관리과를 두고, 공원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태공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수상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상교통과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부에 치수과·시설관리1과·시설관리2과 및 설비관리1과·설비관리2과를 두고, 치수과장, 시설관리1과장, 시설관리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설비관리1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설비관리2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3조의2 및 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하부기관의 장) ①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한성백제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3조의3(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성백제박물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사·예산·회계·감사·복무·보안·관인관리·재산관리
3. 한성백제박물관의 상설전시·기획전시 기획 및 운영
4. 한성백제박물관 교육프로그램·문화행사 및 홍보
5. 한성백제 관련 유물의 수집·보존·관리
6. 한성백제 문화유적 발굴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7. 한성백제박물관의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몽촌토성·몽촌역사관·야외조형전시관·수혈주거지 유지 및 운영관리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과 명칭 및 분장사무) 각 부 및 한성백제박물관에 두는 과의 명칭과 분장 사무는 서울역사박물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9절 제목 “서울특별시동부푸른도시사업소”를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로 하고, 제100조 중 “서울특별시동부푸른도시사업소장”을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하며, 제101조제1항 중“서울특별시동부푸른도시사업소”를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로 한다.

제10절 제목 “서울특별시중부푸른도시사업소”를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하고, 제102조 중 “서울특별시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을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하며, 제10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중부푸른도시사업소”를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한다.

제11절 제목 “서울특별시서부푸른도시사업소”를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로 하고, 제104조 중 “서울특별시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을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하며, 제10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서부푸른도시사업소”를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4항 중 서울혁신기획관, 제5조제4항 중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2.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은 한성백제박물관의 개관일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국”을 “실·국·본부”로, “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진흥본부장, 문화관광기획관”을 “경제진흥실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④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경제진흥본부 · 복지건강본부 · 도시교통본부 · 맑은환경본부 · 교육협력국 · 푸른도시국 · 재무국 · 행정국 · 여성가족정책관 · 감사관 · 비상기획관 · 정보화기획단”을 “경제진흥실·복지건강실·도시교통본부·기후환경본부·문화관광디자인본부·행정국·재무국·교육협력국·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으로 하고, 제3조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 · 주택본부 · 도시계획국 · 소방재난본부 · 기술심사담당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실·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공원녹지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한강사업본부”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대변인 · 시민소통담당관 · 시민고객담당

관 · 뉴미디어담당관”을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로,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도시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푸른도시국”을 “공원녹지국”으로, “공유재산과”를 “자산관리과”로, “주택본부”를 “주택정책실”로, “주택공급과”를 “임대주택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4호란의 “공유재산과장”을 “자산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8호란의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국장”을 “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업무 담당관, 산업지원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을 “투자유치과장, 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행정정보(조례제7조제1항관련)의 제6호란 중 “대기과”를 “생활환경과”로 하고, 같은 표 행정정보(조례제7조제2항관련)의 제5호란 중 “도시안전본부” 및 “건설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제6호란 중 “도시안전본부” 및 “건설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제14호란 중 “하천관리과”를 “물재생시설과”로, “하수계획과”를 “물재생계획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시설안전기획관”을 “시설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정책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성가족정책실장
3. 경제진흥실장
4. 기후환경본부장
5. 주택정책실장

⑬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정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정책실장

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정책실장

⑮ 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인력정책과장”을 “인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환경행정담당관”을 각각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12조 중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정책실장

[별표 1]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제57조제2항 관련)

서별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종 로 소방서	세종로 119안전센터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구중 : 중학동, 수송동, 견지동, 관훈동, 청진동, 공평동, 종로1가, 서린동, 내자동, 적선동, 평 동, 송월동, 도렴동, 당주동, 내수동, 신문로1·2가, 세종로동, 소격동, 사간동, 송현동, 종로2가, 인사동, 관철동, 삼청동, 팔판동, 안국동
	신 교 119안전센터	종로구 자하문로 93 (신교동)	종로구중 : 청운동, 신교동, 효자동, 궁정동, 창성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무악동, 체부동, 필운동, 통의동, 홍파동, 교남동, 교북동, 행촌동, 사직동
	종 로 119안전센터	종로구 돈화문로 30 (묘동)	종로구중 : 화 동, 가회동, 운니동, 경운동, 익선동, 낙원동, 훈정동, 봉익동, 묘동, 돈의동, 종로3가, 종로4가, 관수동, 장사동, 와룡동, 재동, 계동, 원서동, 권농동
	연 건 119안전센터	종로구 대학로 91 (연건동)	종로구중 : 혜화동, 명륜동1~4가, 연건동, 동숭동, 원남동, 인의동, 예지동, 연지동, 효제동, 종로5가, 이화동
	신 영 119안전센터	종로구 진흥로 477 (신영동)	종로구중 : 구기동, 평창동, 부암동, 홍지동, 신영동
	숭 인 119안전센터	종로구 숭인동길 63 (숭인동)	종로구중 : 창신1·2·3동, 숭인1·2동, 충신동, 종로6가
중 부 소방서	무 학 119안전센터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중구중 : 황학동, 신당동(신당1동, 신당4~6동), 광희동2가, 장충동1가
	을지로 119안전센터	중구 을지로45길 43 (신당동)	중구중 : 주교동, 방산동, 을지로3~7가, 오장동, 예관동, 충무로4~5가, 광희동1가, 쌍림동, 입정동, 산림동, 저동2가, 초동, 인현동 1~2가
	충무로 119안전센터	중구 소공로 30 (회현동2가)	중구중 : 충무로1~3가, 필동1가, 남학동, 주자동, 태평로1가, 무교동, 다동, 을지로1~2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소공동, 명동1~2가, 남대문로1~2가, 남산동1~3가, 저동1가
	신 당 119안전센터	중구 다산로8길 2 (신당동)	중구중 : 신당2~3동, 장충동2가, 묵정동, 필동2~3가, 예장동
	회 현 119안전센터	중구 소공로 30 (회현동2가)	중구중 : 남대문로3~5가, 의주로1~2가, 중림동, 만리동1~2가, 봉래동 1~2가, 회현동1~3가, 남창동, 충정로1가, 정동, 순화동, 서소문동, 태평로2가, 북창동
광 진 소방서	구 의 119안전센터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광진구중 : 구의동(구의동중 3~9, 15~58, 549, 551, 552, 554~556, 558~560번지 제외), 광장동, 자양동(자양1·2동)
	능 동 119안전센터	광진구 능동로 242 (능동)	광진구중 : 능동, 군자동, 화양동, 모진동
	송 정 119안전센터	성동구 광나루로 255 (송정동)	성동구중 : 성수동1가(성수1가2동), 성수동2가(성수2가2동), 송정동, 용답동(용답동중 204, 205, 208, 312~ 327, 329~335번지)
	성 수 119안전센터	성동구 뚝섬로 452 (성수동2가)	성동구중 : 성수동1가(성수1가1동), 성수동2가(성수2가1동) 광진구중 : 노유동, 자양동(자양3동)

서별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광 진 소방서	행 당 119안전센터	성동구 고산자로 249 (도선동)	성동구중 : 하왕십리동, 상왕십리동, 마장동, 홍익동, 도선동, 행당동, 사근동, 용답동(용답동중 204, 205, 208, 312~327, 329~335번지 제외)
	금 호 119안전센터	성동구 난계로 19 (금호동1가)	성동구중 : 응봉동, 옥수동, 금호동1~4가
	중 곡 119안전센터	광진구 용마산로 150 (중곡동)	광진구중 : 중곡동, 구의동중 3~9, 15~58, 549, 551, 552, 554~556, 558~560번지
용 산 소방서	한강로 119안전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구중 : 서계동, 청파동1~3가, 갈월동, 효창동, 남영동, 원효로1·2가, 한강로1·2가, 신계동, 문배동, 용산동3~5가
	이태원 119안전센터	용산구 이태원로 196 (이태원동)	용산구중 :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후 암 119안전센터	용산구 후암로 34 (후암동)	용산구중 : 동자동, 후암동, 용산동1·2가
	이 촌 119안전센터	용산구 이촌로2가 1 (이촌동)	용산구중 : 도원동, 용문동, 청암동, 산천동, 신창동, 원효로3·4가, 한강로3가, 이촌동(이촌2동)
	서빙고 119안전센터	용산구 서빙고로67길 7(서빙고동)	용산구중 : 서빙고동, 이촌동(이촌1동), 주성동, 용산동6가, 동빙고동
동대문 소방서	장 안 119안전센터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구중 : 장안동, 답십리동(답십리2동)
	청량리 119안전센터	동대문구 왕산로 299 (청량리동)	동대문구중 :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동[이문1동 중 255의(6, 12, 13, 15, 63, 65~116, 124, 126, 130~135, 259, 284, 288~341, 344, 347, 354~358, 367, 376~379, 396, 416호), 257, 262~264, 266~287, 288의(39~71, 74, 94호), 290, 291, 292의 4호, 305의(6~146, 154호), 306~351, 375~426]
	전 농 119안전센터	동대문구 황물로 3 (전농동)	동대문구중 : 전농동(전농1·2동), 답십리동 (답십리1동),
	용 두 119안전센터	동대문구 왕산로 76 (용두동)	동대문구중 : 용신동, 제기동
	휘 경 119안전센터	동대문구 망우로 106 (휘경동)	동대문구중 : 휘경동, 이문동[이문1동 중 255의(6, 12, 13, 15, 63, 65~116, 124, 126, 130~135, 259, 284, 288~341, 344, 347, 354~358, 367, 376~379, 396, 416호), 257, 262~264, 266~287, 288의(39~71, 74, 94호), 290, 291, 292의 4호, 305의(6~146, 154호), 306~351, 375~426번지 제외], 이문2동
중 랑 소방서	신 내 119안전센터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중랑구중 : 신내동, 묵동(묵1동)
	면 목 119안전센터	중랑구 동일로 475 (면목동)	중랑구중 : 면목동[면목2동, 4·5동, 7동, 면목3·8동 중(58~60, 428, 430, 433, 436, 446, 449, 453~456, 458, 459, 461~463, 465~470, 472, 473, 491의 1, 496~499, 507, 509, 518, 564, 566, 568, 570, 572, 573, 575, 576, 584, 592, 593, 595~597, 600, 601, 604~607, 1062~ 1066, 1068~1070, 1073, 1075, 1077, 1081~1083, 1089의 3, 1090, 1110, 1326의1, 1500, 1508, 1509, 산 (34~36, 40~46)]

서별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중 랑 소방서	망 우 119안전센터	중랑구 용마산로 524 (망우동)	중랑구중 : 망우동, 면목동[면목본동, 면목3·8동 중(1~3, 5~11, 14, 15, 17, 19, 20, 22, 23, 25, 27~31, 33, 34, 37, 42~46, 49~57, 80~84, 479, 481~485, 489, 490, 493, 494, 511, 514, 515, 1322, 1517, 1524, 1527, 1530, 산 (1-1, 1-3, 8~11, 15~17, 19, 21~24, 29~33)]
	중 화 119안전센터	중랑구 동일로 783 (중화동)	중랑구중 : 중화동, 상봉동, 묵동(묵2동)
영등포 소방서	영등포 119안전센터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구중 : 영등포동(영등포1~3동), 도림동, 문래동(문래1·2동), 신길동(신길3동)
	당 산 119안전센터	영등포구 양평로 70-1 (당산동6가)	영등포구중 : 당산동(당산1·2동), 양평동(양평1·2동)
	여의도 119안전센터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 (여의도동)	영등포구중 : 여의도동
	대 림 119안전센터	영등포구 도림로 212 (신길동)	영등포구중 : 대림동, 신길동(신길5·6동)
	신 길 119안전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31 (신길동)	영등포구중 : 신길동(신길1·2·4·7동)
성 북 소방서	종 암 119안전센터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성북구중 : 종암동, 상월곡동, 하월곡동, 안암동, 돈암동(돈암1동)
	돈 암 119안전센터	성북구 보문로 192 (삼선동4가)	성북구중 : 돈암동(돈암2동), 삼선동(삼선1·2동), 성북동, 보문동, 동선동(동선1·2동), 동소문동
	길 음 119안전센터	성북구 정릉로 321 (길음동)	성북구중 : 정릉동, 길음동
	장 위 119안전센터	성북구 한천로 640 (장위동)	성북구중 : 장위동, 석관동
도 봉 소방서	방 학 119안전센터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구중 : 방학동[방학1동(645~658번지 제외), 방학3동], 창동[창4동(26~33, 35, 38, 762, 766, 770, 722, 773, 775~777, 783, 788, 789, 790, 795, 797 제외), 창5동], 쌍문동(쌍문1~ 4동)
	도 봉 119안전센터	도봉구 도봉로 721 (방학동)	도봉구중 : 도봉동(도봉1·2동), 방학1동중 645~658번지, 방학2동
	우 이 119안전센터	강북구 삼각산로 111 (수유동)	강북구중 : 수유동(수유2·3동), 우이동, 인수동
	미 아 119안전센터	강북구 도봉로 125 (미아동)	강북구중 :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번2·3동
	삼각산 119안전센터	강북구 솔샘로 208 (미아동)	강북구중 : 삼양동, 삼각산동, 수유1동
	창 동 119안전센터	도봉구 해등로 25 (창동)	도봉구중 : 창동[창1동~3동, 창4동중 26~33, 35, 38, 762, 766, 770, 772, 773, 775~777, 783, 788~790, 795, 797번지] 강북구중 : 번1동

서별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노 원 소방서	하 계 119안전센터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구중 : 하계1 · 2동, 중계본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상 계 119안전센터	노원구 노원로26길 111 (상계동)	노원구중 : 상계2 · 3 · 4 · 5동, 중계1 · 4동
	공 릉 119안전센터	노원구 화랑로 482 (공릉동)	노원구중 : 공릉1 · 2 · 3동
	월 계 119안전센터	노원구 월계로 323 (월계동)	노원구중 : 월계1 · 2 · 3 · 4동
	수 락 119안전센터	노원구 동일로 1694 (상계동)	노원구중 : 상계1동 · 8동 · 9동 · 10동
은 평 소방서	진 관 119안전센터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구중 : 진관동, 갈현동(갈현1동), 대조동, 불광동(불광1·2동)
	녹 번 119안전센터	은평구 은평로 245 (녹번동)	은평구중 : 녹번동, 응암동(응암1·2·3동)
	역 촌 119안전센터	은평구 갈현로 80 (역촌동)	은평구중 : 역촌동, 구산동, 갈현동(갈현2동)
	수 색 119안전센터	은평구 수색로 294 (수색동)	은평구중 : 신사동(신사1 · 2동), 수색동, 증산동
서대문 소방서	연 희 119안전센터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구중 : 봉원동, 신촌동, 대신동, 대현동, 창천동, 연희동
	북가좌 119안전센터	서대문구 증가로 242 (북가좌동)	서대문구중 : 북가좌1 · 2동, 남가좌1 · 2동
	홍 은 119안전센터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3 (홍은동)	서대문구중 : 홍은동, 홍제동
	미 근 119안전센터	서대문구 통일로 113 (미근동)	서대문구중 : 현저동,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충정로 2 · 3가동, 합동, 미근동, 북아현 1~3동
마 포 소방서	신 수 119안전센터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마포구중 : 대흥동, 노고산동, 신수동, 구수동, 현석동, 창전동,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당인동
	염 리 119안전센터	마포구 토정로 37길 27 (염리동)	마포구중 : 도화동, 마포동, 염리동, 용강동, 토정동
	서 교 119안전센터	마포구 양화로 60 (서교동)	마포구중 : 동교동, 서교동, 연남동, 합정동, 망원동(망원1동)
	성 산 119안전센터	마포구 월드컵북로 240 (성산동)	마포구중 : 망원동(망원2동), 성산동, 중동
	상 암 119안전센터	마포구 월드컵북로 42길 34 (상암동)	마포구중 : 상암동
	공 덕 119안전센터	마포구 만리재옛길 82 (공덕동)	마포구중 : 공덕동, 신공덕동, 아현동

서별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강 남 소방서	삼 성 119안전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구중 : 삼성동(삼성 1·2동), 청담동, 대치동(대치 1·2·4동)
	영 동 119안전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320 (논현동)	강남구중 :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논현 1·2동)
	역 삼 119안전센터	강남구 역삼로 236 (역삼동)	강남구중 : 역삼동(역삼 1·2동), 도곡동(도곡 1·2동)
	수 서 119안전센터	강남구 광평로31길 6 (수서동)	강남구중 : 수서동, 일원동(일원본동·1·2동),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개 포 119안전센터	강남구 논현로 10길 19 (개포동)	강남구중 : 개포동(개포1·2·4동)
서 초 소방서	반 포 119안전센터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서초구중 : 반포동[반포본·2·3동, 반포4동(19, 57, 63~65, 68, 69, 71, 72, 74, 75, 77~111, 520, 535, 547, 549~551, 577, 590, 610, 612번지), 방배동(방배본동·4동)
	방 배 119안전센터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5 (방배동)	서초구중 : 방배동(방배1~3동)
	양 재 119안전센터	서초구 동산로 9 (양재동)	서초구중 : 양재동(양재1동중1~20번지, 양재2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서 초 119안전센터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동)	서초구중 : 서초1동(서초1동중 다음번지 제외 : 360, 362~364, 374, 376~379, 381~384, 390, 400, 402, 409~411, 413, 418, 430, 431, 산30~31·36· 49~53), 서초2동(서초2동중 다음번지 제외 : 255~258, 261, 263, 265~272, 275, 278, 367, 369, 370, 산21~30), 서초3동 (서초3동중 다음번지 제외 : 1700, 1702~1720, 1725, 1727~1735, 산121~125· 133~146·413~414)
	잠 원 119안전센터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6 (반포동)	서초구중 : 잠원동, 반포1동, 반포4동 (반포4동중 다음번지 제외 : 19, 57, 63~65, 68, 69, 71, 72, 74, 75, 77~111, 520, 535, 547, 549~551, 577, 590, 610, 612), 서초3동(서초3동중 1700, 1702~1720, 1725, 1727~1735), 서초4동
	우 면 119안전센터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49 (서초동)	서초구중 : 우면동, 양재1동(양재1동중 1~20번지 제외), 서초1동 (서초1동중 360, 362~364, 374, 376~379, 381~384, 390, 400, 402, 409~ 411, 413, 418, 430, 431,산30~31·36·49~ 53), 서초2동(서초2동중 255~258, 261, 263, 265~272, 275, 278, 367, 369, 370 산21~30), 서초3동(서초3동중 산121~125, 133~146· 413~414)
관 악 소방서	관 악 119안전센터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관악구중 : 봉천동(청룡동, 낙성대동, 인헌동), 신림동(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남현동
	봉 천 119안전센터	관악구 은천로 54 (봉천동)	관악구중 : 봉천동(은천동, 보라매동,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중앙동)
	신 림 119안전센터	관악구 봉천로 202 (신림동)	관악구중 : 신림동(서원동, 신원동, 신사동, 신림동)
	난 곡 119안전센터	관악구 난곡로 243 (신림동)	관악구중 : 신림동(난곡동, 난향동, 미성동, 조원동)

서별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동 작 소방서	동 작 119안전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동작구중 : 신대방동(신대방1 · 2동), 대방동
	노량진 119안전센터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동)	동작구중 : 흑석동, 노량진동(노량진1 · 2동), 사당동[사당2동(44-20~1137 신동아 일대)]
	상 도 119안전센터	동작구 국사봉1길 17 (상도동)	동작구중 : 상도동(상도2 · 3 · 4동)
	백 운 119안전센터	동작구 사당로 63 (상도동)	동작구중 : 상도1동, 사당동[사당1 · 3 · 4 · 5동, 사당2동(105 극동~147-106 일대)]
강 서 소방서	등 촌 119안전센터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구중 : 염창동, 등촌1 · 2 · 3동, 가양3동, 화곡6동
	화 곡 119안전센터	강서구 까치산로 49 (화곡동)	강서구중 : 화곡본동, 화곡1동 중(343~348, 355, 357~361, 421~426, 898~938), 화곡2·4·8동
	발 산 119안전센터	강서구 강서로 329 (내발산동)	강서구중 :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1동 중 (349~354, 362, 366~374, 376~377, 379~382, 400~402, 1070~1075, 1077~1078), 화곡3동
	방 화 119안전센터	강서구 금낭화로26길 10 (방화동)	강서구중 : 마곡동, 방화1 · 3동, 가양1 · 2동
	개 화 119안전센터	강서구 개화동로19길 8 (개화동)	강서구중 : 공항동, 방화2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개화동
양 천 소방서	양 천 119안전센터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양천구중 : 목동[(목1·4동, 목5동 중(903~908, 912~913)], 신정동[신정2동, 신정4동 중 (872~942, 1305, 1308)]
	신 정 119안전센터	양천구 신월로 268 (신정동)	양천구중 : 신정동[신정1동, 신정3동 중 (1147~1220, 1304), 신정4동 중(943~1013, 1302)], 신월동(신월2·4동)
	목 동 119안전센터	양천구 안양천로 1139 (목동)	양천구중 : 목동[목2·3동, 목5동 중 (191, 900~902, 909~911, 929)]
	신 월 119안전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 448 (신월동)	양천구중 : 신월동(신월1 · 3 · 5 · 7동)
	신트리 119안전센터	양천구 신정로 238 (신정동)	양천구중 : 신정동[신정3동 중(1147~1220, 1304 제외), 신정6·7동], 신월동(신월6동)
강 동 소방서	성 내 119안전센터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강동구중 : 성내동, 둔촌동
	천 호 119안전센터	강동구 진황도로 37 (천호동)	강동구중 : 천호동
	고 덕 119안전센터	강동구 양재대로156길 133 (고덕동)	강동구중 : 고덕동, 명일동, 강일동
	암 사 119안전센터	강동구 올림픽로 815 (암사동)	강동구중 : 암사동
	길 동 119안전센터	강동구 천중로 215 (길동)	강동구중 : 길동, 상일동

서별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송 파 소방서	마 천 119안전센터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송파구중 : 오금동, 가락동(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마천동 (마천2동중 29-1번지)
	잠 실 119안전센터	송파구 석촌호수로 151 (잠실동)	송파구중 : 잠실동[잠실3동(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제외), 잠실4·6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송파1동)
	거 여 119안전센터	송파구 마천로 329 (마천동)	송파구중 : 거여동(거여1·2동), 마천동(마천1동, 마천2동 : 마천2동중 29-1 제외)
	종합운동장 119안전센터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송파구중 : 잠실동[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구역만 해당), 잠실7동]
	방 이 119안전센터	송파구 강동대로 286 (방이동)	송파구중 : 방이동(방이1·2동), 풍납동 (풍납1·2동), 오륜동
	가 락 119안전센터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송파구중 : 가락본동, 가락1동, 문정2동, 송파2동
구 로 소방서	고 일 119안전센터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구로구중 : 구로동(구로1동), 고척동(고척1동), 개봉동(개봉1동 중 74, 76, 78~92, 126~128, 130~134, 136~144, 146~150, 152~157, 159~167, 169~182, 206~207, 214~217, 219, 221 ~224, 421, 226, 227,239~240, 415~417, 353, 454, 429~435, 437~438, 446, 447, 459, 466, 467, 468,476, 139, 48-1, 산17~19, 산21, 산22, 산28, 산31,산40, 475, 476, 484), 개봉동(개봉2·3동)
	구 로 119안전센터	구로구 구로동로 175 (구로동)	구로구중 : 구로동(구로2동 중 589, 590~607, 609~614, 636, 640, 1258, 1262번지 제외), 구로동(구로4·5동)
	공 단 119안전센터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6 (구로동)	구로구중 : 구로동(구로3동), 가리봉동 금천구중 : 가산동
	고 척 119안전센터	구로구 고척로 195 (고척동)	구로구중 : 고척동(고척2동), 개봉동(개봉1동 중 1~5, 7~15, 17~27, 29~41, 43~47, 49~71, 73~75, 92의(2, 3, 4, 7, 8, 9, 10, 61, 76), 96~99, 102, 105~109, 111~122, 124, 125, 126의 (1~4,6,7), 416, 436, 439~445, 469, 472, 474, 496, 산1~2)
	수 궁 119안전센터	구로구 오리로 1285 (궁동)	구로구중 : 오류동, 천왕동, 항동, 궁동, 온수동
	독 산 119안전센터	금천구 시흥대로 386 (독산동)	금천구중 : 독산동
	시 흥 119안전센터	금천구 시흥대로45길 31 (시흥동)	금천구중 : 시흥동
	신도림 119안전센터	구로구 경인로59길 57 (신도림동)	구로구중 : 신도림동, 구로2동(구로2동 중 589, 590~607, 609~614, 636, 640, 1258, 1262번지)

[별표 2]

구조대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제58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종로소방서 119구조대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종로소방서 관할구역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중구 퇴계로 394(무학동)	중부소방서 관할구역
광진소방서 119구조대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광진소방서 관할구역
광진소방서 수난구조대	광진구 강변북로 26(자양동)	서울특별시계 한강 (반포대교 중심선~강동구 강일동)
용산소방서 119구조대	용산구 한강대로 167(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관할구역
동대문소방서 119구조대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동대문소방서 관할구역
중랑소방서 119구조대	중랑구 신내로 183(신내동)	중랑소방서 관할구역
영등포소방서 119구조대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관할구역
영등포소방서 수난구조대	영등포구 여의서로 82(여의도동)	서울특별시계 한강 (강서구 개화동~반포대교 중심선)
성북소방서 119구조대	성북구 종암로 27길 3(종암동)	성북소방서 관할구역
도봉소방서 119구조대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	도봉소방서 관할구역
노원소방서 119구조대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하계동)	노원소방서 관할구역
은평소방서 119구조대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관할구역
서대문소방서 119구조대	서대문구 연희로 163(연희동)	서대문소방서 관할구역
마포소방서 119구조대	마포구 창전로 76(신수동)	마포소방서 관할구역
강남소방서 119구조대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강남소방서 관할구역
서초소방서 119구조대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서초소방서 관할구역
관악소방서 119구조대	관악구 관악로 97(봉천동)	관악소방서 관할구역
동작소방서 119구조대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신대방동)	동작소방서 관할구역
강서소방서 119구조대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동)	강서소방서 관할구역
양천소방서 119구조대	양천구 목동서로 180(목동)	양천소방서 관할구역
강동소방서 119구조대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강동소방서 관할구역
송파소방서 119구조대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송파소방서 관할구역
구로소방서 119구조대	구로구 경인로 408(고척동)	구로소방서 관할구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시정의 새로운 정책실현을 위하여 실·본부·국의 기구를 현행 "1실 8본부 5국"에서 "5실 4본부 5국"으로 개편하고, 부서신설 및 사무조정 등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구조례 개정에 따른 실·본부·국 개편 사항을 반영함
   - 경제진흥본부 ⇒ 경제진흥실, 복지건강본부 ⇒ 복지건강실, 도시안전본부 ⇒ 도시안전실, 주택본부 ⇒ 주택정책실, 맑은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 공원녹지국
   ○ 실·본부·국 산하의 부서 설치 및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함
   - 복지, 일자리, 도시안전, 기후환경, 마을공동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부서를 신설함
   ⇒ 희망복지지원과, 사회적기업과, 산지방재과, 녹색에너지과, 마을공동체담당관 등
   - 업무분야가 축소된 부서 등은 폐지하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하여 부서 간 소관업무를 조정하고,
   - 기능 조정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한성백제박물관을 서울역사박물관의 하부기관으로 설치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383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총계란 중 본청 "3,685"를 "3,696"으로, 직속기관 "7,048"을 "7,049"로, 사업소 "5,299"를 "5,287"로 하고, 일반직 계란 중 총계 "6,558"을 "6,557"로, 본청 "2,969"를 "3,000"으로, 직속기관 "316"을 "318"로, 사업소 "3,125"를 "3,091"로, 3급 소계란 중 총계 "18"을 "17"로, 본청 "8"을 "7"로, 부이사관란 중 총계 "17"을 "16"으로, 본청 "8"을 "7"로, 4급 소계란 중 총계 "194"를 "195"로, 본청 "110"을 "114"로, 사업소 "61"을 "58"로, 서기관란 중 총계 "70"을 "71"로, 본청 "52"를 "53"으로, 기술서기관란 중 총계 "55"를 "53"으로, 사업소 "37"을 "35"로,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란 중 총계 "56"을 "58"로, 본청 "40"을 "43"으로, 사업소 "16"을 "15"로, 5급 소계란 중 총계 "995"를 "999"로, 본청 "587"을 "595"로, 사업소 "328"을 "324"로, 행정란 중 총계 "445"를 "455"로, 본청 "313"을 "320"으로, 사업소 "79"를 "82"로, 녹지란 중 본청 "8"을 "9"로, 사업소 "10"을 "9"로, 시설란 중 총계 "166"을 "158"로, 본청 "88"을 "85"로, 사업소 "78"을 "73"으로, 행

정또는공업란 중 총계 “11”을 “10”으로, 사업소 “2”를 “1”로, 행정또는학예연구관란 중 본청 “2”를 “1”로, 사업소 “3”을 “4”로, 행정·공업또는시설란 중 총계 “29”를 “33”으로, 본청 “28”을 “32”로, 공업또는시설란 중 본청 “9”를 “10”으로, 사업소 “12”를 “11”로, 녹지또는시설란 중 총계 “7”을 “6”으로, 본청 “1”을 삭제하며, 6급 소계란 중 총계 “2,334”를 “2,338”로, 본청 “1,310”을 “1,333”으로, 사업소 “871”을 “852”로, 행정란 중 총계 “1,043”을 “1,046”으로, 본청 “698”을 “702”로, 사업소 “252”를 “251”로, 세무란 중 총계 “34”를 “38”로, 본청 “34”를 “38”로, 사회복지란 중 총계 “7”을 “8”로, 본청 “5”를 “6”으로, 공업란 중 총계 “229”를 “223”으로, 본청 “94”를 “92”로, 사업소 “132”를 “128”로, 녹지란 중 본청 “19”를 “20”으로, 사업소 “23”을 “22”로, 보건란 중 총계 “15”를 “18”로, 본청 “15”를 “18”로, 시설란 중 총계 “479”를 “470”으로, 본청 “241”을 “243”으로, 사업소 “235”를 “224”로, 통신란 중 본청 “18”을 “19”로, 사업소 “25”를 “24”로, 행정또는공업란 중 총계 “7”을 “10”으로, 본청 “3”을 “6”으로, 행정또는시설란 중 총계 “21”을 “20”으로, 본청 “21”을 “20”으로, 행정·공업또는시설란 중 총계 “7”을 “13”으로, 본청 “7”을 “13”으로, 행정·시설또는통신란 중 본청 “2”를 “3”으로, 사업소 “1”을 삭제하고, 공업또는시설란 중 본청 “5”를 “4”로, 사업소 “6”을 “7”로, 농업또는녹지란 중 본청을 “1”로 하고, 사업소 “4”를 “3”으로, 7급 소계란 중 총계 “2,204”를 “2,199”로, 본청 “837”을 “836”으로, 직속기관 “116”을 “118”로, 사업소 “1,218”을 “1,212”로, 행정란 중 총계 “877”을 “879”로, 본청 “416”을 “417”로, 직속기관 “48”을 “50”으로, 사업소 “385”를 “384”로, 세무란 중 총계 “29”를 “30”으로, 본청 “29”를 “30”으로, 사서란 중 본청 “4”를 “3”으로, 사업소 “1”을 “2”로, 전산란 중 본청 “77”을 “76”으로, 사업소 “26”을 “27”로, 공업란 중 총계 “254”를 “253”으로, 본청 “30”을 “28”로, 사업소 “215”를 “216”으로, 의료기술란 중 총계 “40”을 “41”로, 사업소 “38”을 “39”로, 보건란 중 총계 “13”을 “15”로, 본청 “13”을 “15”로, 시설란 중 총계 “442”를 “433”으로, 본청 “146”을 “144”로, 사업소 “291”을 “284”로, 통신란 중 본청 “20”을 “19”로, 사업소 “15”를 “16”으로, 행정또는녹지란 중 본청 “1”을 “3”으로, 사업소 “7”을 “5”로, 행정또는시설란 중 총계 “18”을 “17”로, 본청 “16”을 “15”로, 행정·공업·시설·전산란 중 본청 “11”을 “12”로, 사업소 “2”를 “1”로, 8급 소계란 중 총계 “643”을 “640”으로, 본청 “76”을 “74”로, 사업소 “517”을 “516”으로, 행정란 중 총계 “231”을 “229”로, 본청 “33”을 “31”로, 시설란 중 총계 “101”을 “100”으로, 본청 “11”을 “10”으로, 행정또는녹지란 중 본청 “1”을 “2”로, 사업소 “4”를 “3”으로, 9급 소계란 중 총계 “129”를 “128”로, 사업소 “118”을 “117”로, 행정 “43”을 “42”로, 사업소 “39”를 “38”로 하며, 별정직 계란 중 총계 “107”을 “106”으로, 사업소 “38”을 “37”로, 7급상당 소계란 중 총계 “34”를 “33”으로, 사업소 “11”을 “10”으로, 치료사란 중 총계 “2”를 “1”로, 사업소 “2”를 “1”로 하고, 연구직 계란 중 총계 “303”을 “305”로, 본청 “20”을 “5”로, 직속기관 “178”을 “177”로, 사업소 “105”를 “123”으로, 연구관 소계란 중 총계 “45”를 “47”로, 직속기관 “33”을 “32”로, 사업소 “12”를 “15”로, 학예연구란 중 총계 “8”을 “11”로, 사업소 “8”을 “11”로, 보건연구란 중 총계 “16”을 “15”로, 직속기관 “16”을 “15”로, 연구사 소계란 중 본청 “20”을 “5”로, 사업소 “93”을 “108”로, 학예연구란 중 본청 “18”을 “3”으로, 사업소 “35”를 “50”으로 하며, 기능직 계란 중 본청 “523”을 “518”로, 사업소 “2,031”을 “2,036”으로, 기능7급 건축란 중 본청 “1”을 “2”로, 사업소 “2”를 “1”로, 운전란 중 본청 “11”을 “10”으로, 사업소 “26”을 “27”로, 사무란 중 본청 “38”을 “37”로, 사업소 “33”을 “34”로, 방호란 중 본청 “5”를 “6”으로, 사업소 “21”을 “20”으로, 기능8급 소계란 중 본청 “351”을 “346”으로, 사업소 “1,149”를 “1,154”로, 전기란 중 본청 “15”를 “14”로, 사업소 “138”을 “139”로, 기계란 중 본청 “16”을 “15”로, 사업소 “277”을 “278”로, 운전란 중 본청 “43”을

"42"로, 사업소 "112"를 "113"으로, 사무란 중 본청 "150"을 "151"로, 사업소 "111"을 "110"으로, 조무란 중 본청 "35"를 "33"으로, 사업소 "264"를 "266"으로, 방호란 중 본청 "45"를 "44"로, 사업소 "79"를 "8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조직개편 및 기구조정에 따라 직종 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본청·사업소 간 정원 이관 등 정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디자인 분야 사업의 안정화에 따라 본청 3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4급 정원 1명을 증원함(안 별표)
   ○ 한성백제박물관 개관에 따른 유물확보를 위해 일반직을 상계하여 연구직 2명을 증원하고, 은평병원 발달장애아동 치료분야 보강을 위해 별정직을 상계하여 일반직 1명을 증원함(안 별표)
   ○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며, 본청·사업소 간 정원을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임(안 별표)

◈ 서울특별시규칙 제3833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통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다. 다만, 공통사무 중 실·본부·국에서 별도로 정한 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실·본부·국의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1.1부터 시행한다.

②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2)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제6조 관련)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 정원조정	1. 실·국내 과(담당관)별 5급이하 정원조정 (직렬·직급 조정제외)	기안			○			
	2. 실·국내 정원조정 방침 결정·요구							조직담당관
	가. 정원 증원요구	기안			○			
	나. 직급 상향조정	기안			○			
	다. 직급·직렬간 상계조정	기안			○			
2. 비정규인력 정수 관리	비정규인력 정수책정 승인 요구	기안			○			
3.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사무소관 조정요구	기안			○			
4. 직제에 관한 사항	1. 직제개정 요구							조직담당관
	가. 실·본부·국 간 직제개정 요구		기안			○		
	나. 실·본부·국 내 직제개정 요구	기안			○			
5. 복 무	1. 출장 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가. 3급이상		기안			○		
	나. 4급	기안			○			
	다. 5급이하	기안		○				
	2.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인력개발 과장
	가. 3급이상		기안			○		
	나. 4급이하	기안			○			
	3. 5급이하 특근명령(승인)	기안		○				
	4. 소속직원의 당직변경	기안	○					
	5. 소속직원의 대체휴무 허가	기안		○				
6. 공무원의 임용 및 호봉승급	1. 소속직원의 면직 및 직위해제 내신	기안			○			
	2. 실·국내 전보	기안			○			
	3. 교육파견 명령	기안			○			
	4. 호봉승급획정·정정	기안		○				
	5. 자격, 병역 등 일반사항조회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6. 소속공무원의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관리시스템의 전산발급에 한함)	○						
7. 예 산	1. 예비비 사용방침							
	가. 5억원 이상		기안			○		예산담당관
	나. 5억원 미만	기안			○			예산담당관
	2.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기안			○			
	3. 예산의 이용방침	기안			○			예산담당관
	4. 같은사업내 예산의 전용	기안			○			
	5. 사업간 예산의 전용방침	기안			○			예산담당관
	6. 예산편성자료(부표) 제출	기안		○				
	7.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기안		○				
	8.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기안			○			예산담당관
	9. 회계년도 개시전 예산요구	기안		○				
	10.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제출	기안		○				
	11.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제출	기안		○				
8. 지방채	1.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획조정실장
	2. 기정계획에 의한 자금차입		기안		○			
	3. 원리금 상환	기안		○				
9. 기금운용 계획 변경	1. 주요항목 지출금액 1/2이상		기안		○			예산담당관
	2. 주요항목 지출금액 1/2미만	기안		○				
10. 규제개혁	1.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							법무담당관
	가. 조례·규칙 제·개정시		기안			○		
	나. 훈령·예규 제·개정시	기안			○			
11.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공사집행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기안		○				
	3. 공사착공 명령	기안		○				
	4.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5. 설계범위내의 인부 고용	기안	○					
	6. 기정계획에 의한 물자 배정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7. 공사용 자재의 사용 승인	기안		○				
	8. 도급공사의 중지·재개 결정 및 준공기간의 연기결정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 이상	기안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기안		○				
	9. 도급공사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10. 도급공사의 준공검사	기안			○			
	11. 준공검사원의 지정	기안		○				
	12. 공사 하자보수 명령	기안		○				
	13.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수속 및 소유권 이전허가	기안			○			
	14. 설계변경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15. 공사현장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16. 공사의 설계변경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모든 건설공사의 일반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라. 모든 건설공사의 단순한 수량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변경	기안		○				
12. 설계·공사 감리용역	1. 주요사업의 기본방침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용역집행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3. 용역착공 명령	기안		○				
	4. 용역감독자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 임 자					
	5. 용역기간의 연기결정							
	가. 1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	기안		○				
	6. 용역의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7. 용역의 준공검사	기안			○			
	8. 용역의 설계변경							
	가. 1건당 1억원이상으로서 기본설계 사항의 변경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으로서 기본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안		○				
	9. 책임감리용역 운영							
	가. 감리용역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 담당관
	나. 감리용역비 기성 확정	기안		○				
	다. 감리원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 단속	기안		○				
	라. 감리단 이력승인	기안		○				
	마.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방침)	기안			○			
	바.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결정	기안		○				
13. 물건의 제조·구매·임대차 및 그 밖에 품의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예산담당관,
	2. 물품제조 및 용역							재무과장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3. 물품구매·임대차 등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14. 재 산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결정							예산담당관, 공유재산과장
	가. 일반재산취득·처분 및 교환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 건당 10,000㎡ 이상			기안			○	
	(2) 건당 1,650㎡ 이상 10,000㎡ 미만		기안			○		
	(3) 건당 330㎡ 초과 1,650㎡ 미만	기안			○			
	(4) 건당 330㎡ 이하	기안		○				
	나. 법령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기안		○				
	다. 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기안		○				
	2.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가격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공유재산과장
	3.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	기안		○				공유재산과장
	4.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대부 등의 감정 및 가격사정 의뢰	기안		○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1.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 기준 결정	기안			○			재무과장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3. 분담금 감액 결정	기안			○			
	4.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							
	가. 지급계획							
	(1) 민간		기안			○		
	(2) 자치구	기안			○			
	나. 경미한 계획변경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기안			○			
	다. 지급결정							
	(1) 3,000만원이상	기안			○			
	(2) 3,000만원미만	기안		○				
	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	기안		○				
16. 보 상	1. 보상업무 계획	기안			○			
	2. 보상금 지급결정							
	가. 1억원이상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나. 1억원미만	기안		○				
	3. 지장물이전 보상금 집행	기안		○				
	4. 보상금 재심결정	기안		○				
	5. 보상금 재감정 결정	기안		○				
	6. 보상금 재결신청	기안		○				
	7. 보상금 사건확인	기안		○				
	8. 보상금 지급	기안		○				
17. 수수료 및 사용료	1. 제 수수료 지출							
	가. 건당 1,000만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000만원미만	기안		○				
	2. 수임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결정	기안			○			
18.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사항	1.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의	기안		○				
	2. 공공요금 재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기안		○				
19. 상훈 및 과업 포상금	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기안		○				
	2. 특별표창 계획수립		기안			○		인사과장
	3. 업무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실·국내 과업 포상금 결정 및 지급	기안			○			
20. 의회업무	1. 시의회 부의안건 방침결정							
	가. 예산안, 동의안 등							
	(1) 중요사항			기안			○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기안			○		
	2.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기안			○			기획담당관
	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5. 국정감사 결과 처리	기안			○			기획담당관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1. 행정심판 및 소송	1. 행정심판							법무담당관
	가. 위원회 회부 등	기안		○				
	나. 재결청 답변서 진달	기안		○				
	2. 응소·제소·상소·청구·인락·소취하·구상권 행사·추심 결정 등 소송관련 방침결정							법무담당관
	가. 중요한 소송		기안			○		
	나. 일반 소송	기안			○			
	3. 소송수행							
	가.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	기안		○				
	나. 쟁송관계 자료제출	○						
	다. 답변서·준비서면 등 제출	기안		○				법무담당관
22. 법규(법령·조례·규칙) 입법(제정·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1. 법령정비 건의	기안			○			법무담당관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법무담당관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기안			○		
	다. 조례·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기안			○			
	라.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3.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기안		○				
	4.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	기안		○				
	5. 자치법규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	기안			○			
	다.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6.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기안		○				
	7.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법무담당관
	가. 의원발의 조례안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나.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			기안			○	
	다. 중요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시장발의 조례안)			기안			○	
	라.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 (시장발의 조례안)		기안			○		
	8. 법령해석 질의 및 자치법규 해석 응답	기안		○				법무담당관
	9. 고시·공고문의 결정	기안		○				법무담당관
	10.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시의 결정	기안			○			법무담당관
23. 자료제출	1. 관계자 소환서류 제출 및 요구	기안		○				
	2.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의 제출(청내, 왕복문서)	기안		○				
	3. 그 밖에 경미한 자료제출	기안	○					
	4. 소관업무의 통계제출	기안		○				
	5. 정기보고	기안		○				
	6. 수리치 못한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기안		○				
	7. 하부기관 및 타과로부터 보고나 응신을 요구하는 문서 (1회 보고 승인)	기안		○				
	8. 산하 사업소의 경미한 사항 자료 제출 및 조사지시	기안		○				
24.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신설, 위원의 위· 해촉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방침							조직담당관 (신설시)
	가. 위원장이 시장인 경우			기안			○	
	나. 위원장이 부시장인 경우		기안			○		
	다. 위원장이 실·국장인 경우	기안			○			
	2.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결과 보고	기안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기안		○				
25. 회 의	1. 회의소집							
	가. 자치구,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회의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나. 그 밖의 직원회의	기안		○				
26. 민원서류 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27. 지방공사 지도 감독	1. 지도감독업무							
	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2. 승인업무							
	가. 정관변경 승인	기안			○			
	나. 사업계획 승인	기안			○			
	다. 기구조정							
	(1) 부급이상 기구	기안			○			
	라. 정원조정	기안			○			
	마. 임원의 임면승인			기안			○	
	바.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8. 사무위임 및 위탁	1. 위임·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기안			○		기획조정실장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위탁의 내용 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위탁범위, 기관변경)		기안			○		기획조정실장
	2. 실행계획 수립·집행	기안			○			
29. 자치구 분쟁조정 신청서 처리	분쟁조정신청 검토 보고, 요구 및 결정 통지		기안			○		행정과장
30. 정책결정 및 기획	소관 업무별 운영계획 수립·조정	기안			○			
31. 의전행사	1. 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총무과장
	가. 주 요 행 사	기안			○			
	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기안		○				
32. 그 밖의 업무	1. 각종 심의회·협의회 등에 부의할 안건 처리	기안			○			
	2. 실·국간의 사업협조	기안			○			
	3. 소관업무에 관한 자치구, 사업소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기안			○			
	4.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기안		○				
	5. 사무인계인수							
	가. 부시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나. 국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다. 과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라. 5급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마. 직원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6.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면	기안		○				
	7.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가. 3급이상 부여자			기안			○	
	나. 4급 부여자		기안			○		
	다. 5급이하 부여자	기안			○			
	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기안	○					
	9.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 검열	기안	○					
	10. 물품의 반납	기안		○				
	11. 물품의 청구와 수리	기안	○					
	12. 소속금품 출납명령	기안		○				
	13. 각종 간행물의 배부	기안	○					
	14. 차량 배차신청	○						
	15.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중앙부처, 타 기관)	기안		○				
	16. 소속직원 교육	기안		○				
	17. 대부알선	○						
	18. 대여장학금 승인	기안	○					
	19. 사망조위금 신청	기안		○				
33. 의료보험	1. 피보험자 자격관리							
	가. 자격취득·상실	○						
	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						
	다. 그 밖의 자격관리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4. 재난관리대상 시설지정·해제	1.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기안		○				
	2.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기안		○				
35. 친환경상품 구매	1.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 수립	기안		○				
	2.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 집계	기안		○				
	3. 물품구매의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검토·확인	기안		○				
	4. 용역·공사 등 발주시 친환경상품 적용 가능여부 확인	기안		○				
36.정책실명제 운영	1. 정책실명제 추진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안			○			
	나. 정책자료집 발간	기안		○				
37. 행정정보공개제도 청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38. 처리과 기록물 관리	1. 문서접수·배부에 관한 사항	기안	○					
	2. 기록물조사·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기안		○				
	3. 기록물 폐기	기안		○				
	4. 기록물 인계·인수	기안		○				
39.상시학습시스템 운영	1. 자기역량개발계획서 수립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2. 교육수강신청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3. 상시학습 실적 인정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4. 부서주관 교육 실적 등록	기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장 결재 중 시의 비젼 및 기본운영 방향 설정, 주요정책 결정, 대외기관 협력 등 거시적이고, 핵심적인 사안 외에는 결재권을 하향 조정하여 실·본부·국장 및 과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시민 서비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 등에 의한 사무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일부 사무의 전결권을 하향 조정함(안 별표2)
   ○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기위해 일부 사무의 세부항목을 조정함(안 별표2)
   ○ 별표 2 공통사항의 업무내용이 실·본부·국의 전결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실·본부·국의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함(안 제6조)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975호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관련소송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관련소송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관련소송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관련소송업무처리규정”을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 관련 소송업무 처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행정소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사무 수행방법) ①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 부과징수와 관련된 소송사무는 해당 사건에 관한 부과징수 처분을 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계세액 5천만원 미만의 시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 자치구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소장 접수 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소송진행상황을 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책임자 등) ① 공동수행 소송사무는 시의 세제과장이 총괄하고, 개별사건은 자치구 시세 부과징수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며,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시소속 직원(이하 “시청소송수행자”

라 한다)과 자치구의 시세 부과징수 담당부서의 팀장 및 직원이 수행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 단독수행 소송사무는 자치구 시세 부과징수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팀장과 직원이 수행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 담당자 이외에 해당 사건의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에 관여한 자를 소송수행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심 소송을 담당한 소송수행자가 최종심까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4조(공동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시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소장, 변론기일 소환장 또는 기일 전 준비명령이 접수된 자치구 시세 부과징수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참조:세제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요청을 받은 시장은 시청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승인서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승인서를 받은 구청장은 시청소송수행자를 포함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각 자치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따라 발급하고, 이를 소송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장접수보고) ① 자치구 소송수행자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장과 변론기일 소환장 또는 기일 전 준비명령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장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요청서와 함께 소장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장접수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동소송수행의 경우 시청소송수행자는 자치구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첫 변론기일 5일 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2부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변론준비) ① 소송수행자는 당사자의 적격, 제소기간 경과, 전심절차 이행흠결 등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각하할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② 본안 전 항변사유가 없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관계, 요건사실에 관한 명확한 내용, 계산 등 과세내용의 확인,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항변) 내용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본안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피고측이 제출 인용하는 증거방법 등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시세 부과징수관련 조사자 및 관련자를 면담하여 과세처분의 경위와 사건의 진상 등을 청취하고, 처분당시의 근거자료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실판단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소송수행자가 필히 현지 조사하여 처분유지를 위한 목격증인 및 기타 증거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집중심리제도를 실시하는 법원으로부터 기일 전 준비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 전에 처분유지를 위한 증거방법(사실조회, 기록송부촉탁, 인증등본송부촉탁, 법원의 서증조사, 각종검증 및 감정촉탁 등)을 해당 법원(종합접수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준비서면)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요건사실과 적법성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기술
2. 간접사실의 최대한 반영
3.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준비서면상의 주장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
4. 제3호의 이유와 근거 기술

5. 법관의 석명요구에 따른 성실한 응대

② 집중심리제 시행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과 새로운 주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자료와 함께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법원의 종합접수실에 2부를 제출한 후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 준비서면은 반드시 관서장 또는 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성을 요할 때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입증) ① 소송수행자는 과세처분 당시의 근거서류인 조사복명서(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인신문, 검증, 감정 및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거항변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부지한 증거 또는 허위 증거에 대하여 증인신문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입증 또는 반증하여야 한다. 특히 인부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작성자나 그 문서 작성 시 입회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 증인신문을 하여 해당 문서를 증거서류로 “진정” 성립시켜야 한다.

③ 상대방이 증인신청을 한 경우 증인 신문서를 사전에 입수,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증거자료와의 모순관계 등의 여부와 증인의 경력 및 과거행적 조사 등을 집중 검토하여 증인반대신문 시 증인의 위증여부를 적극 신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원고측 증인, 당사자 또는 제3자의 목격증인을 피고측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9조(변론)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개시 전에 입정하여 입회주사로부터 관련변론조서를 인계받아 소송수행자의 사건기록과 법원의 변론조서를 대사하여 변론기록이 누락 또는 잘못 기록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누락·오류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재판장에게 정정하여 줄 것을 석명요구하여야 한다.

②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은 변론의 예고에 그치므로 소송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소송수행자가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재판장의 진술 인정선언을 포함) 한다.

③ 재판장이 법정에서 소송수행자에게 사건에 대한 석명지시가 있는 경우 법정에서 바로 소명하지 말고, 다음 변론기일로 그 답변을 연기한 후 석명내용을 엄밀히 분석하여 소명사항을 다음 변론기일에 준비서면 또는 구술로 답변하여야 한다.

④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변론시간 끝까지 기다려 진술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헌심판청구사무의 분장) 시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제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이하 “위헌심판청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와 자치구 업무지도는 세제과장이 주관한다.

제11조(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① 시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위헌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이해관계인인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위헌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5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송무심의관)의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 위 의견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세 부과징수 업무부서의 의견
2.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3. 고문변호사의 의견
4. 구청장이 통지받은 경우 시장의 의견

② 위헌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또는 위헌결정시 지방세 행정에 미치는 구체적·현실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연구관에게 설명하는

등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위헌심판대상법률의 합헌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장의 소송업무지도) ①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자치구 단독으로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자는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상고이유서 또는 상고포기이유서 등을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기 전에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시장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 소속직원이 소송수행자로 공동지정된 경우에는 자치구 부과징수 업무담당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에 관계된 서류의 사본을 인계하는 것으로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소송결과를 쟁점별로 분석하여 새로운 소송을 예방하고 소송사무에 대한 관리와 업무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구청장은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소송을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2명 이상으로 선임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세무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담당자는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및 각 자치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규정한 소송담당자의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요청서

아래와 같이 시세 부과징수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상급 행정청인 귀 소속 직원을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4. 소장(부본) : 별첨

년 월 일

구 청 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승인서

아래와 같이 시세 부과징수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 직원을 공동소송수행자로 지정하도록 승인합니다.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4. 소송수행자

소속 직급 성명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청장 귀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의 제명이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예 규]

◈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8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 광 태 인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 중 “정책연구실장”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공통사항 단위업무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1. 공통사항						
3. 법 규	1. ~ 4. (현행과 같음)					입 법 담당관

별표 1 제4-1호. 정책연구실을 제5호.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그 단위업무와 세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전문위원을 제6호. 전문위원으로 한다.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5. 입법담당관						
1. 입법 및 정책연구 지원	1. 입법 및 정책연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다. 기타 입법 및 정책연구 관련 일반사항		○	○	○	
2. 정책연구 위원회 운영	1.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회의결과 보고 사. (현행과 같음) 아. 위원회 운영경과 보고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		
3. 법 제	1. ~ 2. (현행과 같음) 3. 조례·규칙·예규 등 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조례·서울특별시의회 규칙 공포 나. 서울특별시의회 예규(규정) 발령				○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5. 입법담당관						
4. 의회 관련 연구용역	1. 의회 관련 연구용역 계획 수립, 과제 선정 및 용역기관 선정 가. 기본계획 수립 나. 과제선정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다. 과제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 ○	○ ○	
5. 의원연구 단체 운영 지원	1. 의연연구단체 등록 접수·취소, 연구활동계획 심의 및 변경 승인 2. 연구활동비 지급		○		○	
6. U-신문고 설치·운영	1. U-신문고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2. U-신문고 설치·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관리			○	○	

별표 2 제2호. 공보실 단위업무 중 제3호(자료관리) 및 제4호(자료실 운영)를 입법담당관 단위업무의 제11호(자료실 운영) 및 제12호(자료관리)로 하고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5. 입법담당관					
11. 자료실 운 영	1. 자료실 운영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다. 기타 자료실 관련 일반사항 2. 자료실 자료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3.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 자료실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5. 도서등록대장 관리 6. 도서 및 자료실 자료의 제본에 관한 사항 7. 자료실 장서 점검	○ ○	○ ○ ○ ○ ○ ○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5. 입법담당관					
12. 자 료 관 리	1. 국내·외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리보존 가. 도서 및 비도서자료 구입 나. 기증자료 수집 및 관리 다. 정기간행물 구독 및 학회 가입 2.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가. 신간자료 인수, 등록번호 부여 나. 주제 분류 및 서지DB 구축 다. 장비작업 3. 의정 관련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종합여론조사서 구독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4. 자료실 도서 분진 제거 및 서가 소독	○ ○ ○	○ ○ ○ ○ ○	○	

별표 2 제4-1호. 정책연구실을 제5호.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그 단위업무 및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전문위원을 제6호. 전문위원으로 한다.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5. 입법담당관					
1. 정책연구	1. 정책연구관련 유관기관 협조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2.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안건 제안 3. 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가. 중요자료 나. 일반자료		○ ○	○ ○ ○	
2.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1. 정책연구위원증 발급 2. 위원 수당, 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5. 입법담당관					
3. 진정서 접수 및 통보	1. ~ 3. (현행과 같음)				
4. 법무심사	1. ~ 2. (현행과 같음)				
5. 법제심사	1. ~ 3. (현행과 같음)				
6. 법제연구	1. (현행과 같음)				
7. 법제관련 간행물발간	1. ~ 2. (현행과 같음)				
8. 의회 관련 연구용역	1. 의회 관련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2. 의회 관련 연구용역 준공 처리		○ ○		
9. 입법예고	1. 입법예고 의안 접수 2. 입법예고 관련 업무협의 3.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게재 및 관리	○	○ ○		
10. U-신문고 운영	1. U-신문고 유지보수 계획 수립 2. U-신문고 운영 및 유지보수		 ○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 colspan="8">현 행</th><th colspan="8">개 정 안</th></tr>
<tr><td colspan="8">제3조(전결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별표 1, 별표 2의 제1호 공통사항 전결권자 중의 담당관은 동일직급에 상응하는 공보실장, 정책연구실장, 전문위원을 포함한다.</td><td colspan="8">제3조(전결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별표 1, 별표 2의 제1호 공통사항 전결권자 중의 담당관은 동일직급에 상응하는 공보실장, 전문위원을 포함한다.</td></tr>
<tr><td colspan="8">【별표 1】 의 장 권 한 사 무</td><td colspan="8">【별표 1】 의 장 권 한 사 무</td></tr>
<tr><td rowspan="2">단위업무</td><td rowspan="2">세 부 항 목</td><td colspan="3">전 결 권 자</td><td rowspan="2">의 장 결 재</td><td rowspan="2">협조처</td><td rowspan="2">단위업무</td><td rowspan="2">세 부 항 목</td><td colspan="3">전 결 권 자</td><td rowspan="2">의 장 결 재</td><td rowspan="2">협조처</td></tr>
<tr><td>담 당 자</td><td>담 당 관</td><td>처 장</td><td>담 당 자</td><td>담 당 관</td><td>처 장</td></tr>
<tr><td colspan="8">1. 공통사항</td><td colspan="8">1. 공통사항</td></tr>
<tr><td>3. 법 규</td><td>1. ~ 4. (생략)</td><td></td><td></td><td></td><td></td><td>정 책 연구실</td><td>3. 법 규</td><td>1. ~ 4. (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d></td><td>입 법 담당관</td></tr>
<tr><td colspan="8">4-1. 정책연구실</td><td colspan="8">5. 입법담당관</td></tr>
<tr><td>1. 정책 연구실 운영</td><td>1. 정책연구실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다. 기타 정책연구관련 일반 사항</td><td></td><td>○</td><td>○</td><td>○</td><td></td><td>1. 입법 및 정책연구 지원</td><td>1. 입법 및 정책연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다. 기타 입법 및 정책연구 관련 일반사항</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 정책연구위원회 운영</td><td>1.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 사. (생략)
자. 위원회 운영경과 보고
2. (생략)
3.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4. ~ 7. (생략)</td><td></td><td></td><td>○
○</td><td></td><td></td><td>2. 정책연구위원회 운영</td><td>1.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회의결과 보고
사. (현행과 같음)
아. 위원회 운영경과 보고
2. (현행과 같음)
3. <삭제>
3. ~ 6. (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d></td><td></td></tr>
<tr><td>3. 법 제</td><td>1. ~ 2. (생략)
3. 사무처관련 조례·규칙·예규 등 법규
가. 규칙 공포
나. 훈령, 예규(규정) 발령</td><td></td><td></td><td>○</td><td>○</td><td></td><td>3. 법 제</td><td>1. ~ 2. (현행과 같음)
3. 조례·규칙·예규 등 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조례·서울특별시의회 규칙 공포
나. 서울특별시의회 예규(규정) 발령</td><td></td><td></td><td></td><td>○
○</td><td></td></tr>
</table>

현 행

【별표 1】 의 장 권 한 사 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담당자	전결권자 담당관	전결권자 처장	의장결재	협조처
4-1. 정책연구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개 정 안

【별표 1】 의 장 권 한 사 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담당자	전결권자 담당관	전결권자 처장	의장결재	협조처
5. 입법담당관						
4. 의회 관련 연구용역	1. 의회 관련 연구용역 계획 수립, 과제 선정 및 용역기관 선정 가. 기본계획 수립 나. 과제선정심사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다. 과제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	○ ○	
5.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	1.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연구활동계획 심의 및 변경 승인 2. 연구활동비 지급		○		○	
6. U-신문고 설치·운영	1. U-신문고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2. U-신문고 설치·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관리			○	○	

현 행

【별표 2】 사 무 처 장 권 한 사 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담당자	전결권자 담당관	처장결재	협조처
2. 공보실					
3. 자 료 관 리	1. 국내외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리보존 2. 자료의 전산관리 가.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나. 전산화 세부추진계획 수립 다. 전산자료 관리 및 운용				

개 정 안

【별표 2】 사 무 처 장 권 한 사 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담당자	전결권자 담당관	처장결재	협조처
5. 입법담당관					
11. 자료실 운 영	**1. 자료실 운영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다. 기타 자료실 관련 일반사항** **2. 자료실 자료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3.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 자료실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5. 도서등록대장 관리** **6. 도서 및 자료실 자료의 제본에 관한 사항** **7. 자료실 장서 점검**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 무 처 장 권 한 사 무						【별표 2】 사 무 처 장 권 한 사 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담당자	전결권자 담당관	처장결재	협조처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담당자	전결권자 담당관	처장결재	협조처
2. 공보실						5. 입법담당관					
4. 자료실 운 영	1. 자료실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가. 열람 및 대출 나. 일일대출 현황보고 2. 도서명세서 관리 3. 자료실 간행물의 배포 및 재고, 불출에 관한 사항 4. 자료실자료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5. 도서 및 자료실 자료의 제본에 관한 사항 6. 도서 구입 7. 국제 교환자료의 발송에 관한 사항 8. 국제 교환자료 및 기증자료의 수령에 관한 사항					12. 자 료 관 리	1. 국내·외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리 보존 가. 도서 및 비도서자료 구입 나. 기증자료 수집 및 관리 다. 정기간행물 구독 및 학회 가입 2. 자료의 DB 구축·관리 가. 신간자료 인수, 등록번호 부여 나. 주제 분류 및 서지DB 구축 다. 장비작업 3. 의정 관련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종합여론조사서 구독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4. 자료실 도서 분진 제거 및 서가 소독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4-1. 정책연구실						5. 입법담당관					
1. 정책연구실 운영	1. 정책연구 관련 유관기관 협조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2.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안건 제안 3. 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가. 중요자료 나. 일반자료 4. 정책연구위원증 발급 5. 위원수당 지급					1. 정책연구	1. 정책연구 관련 유관기관 협조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2.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안건 제안 3. 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가. 중요자료 나. 일반자료 4. <삭제> 5. <삭제>		ㅇ ㅇ	ㅇ ㅇ ㅇ	
<신설>	<신설>					2.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1. 정책연구위원증 발급 2. 위원 수당, 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ㅇ ㅇ		
2. 진정서 접수 및 통보	1. ~ 3. (생략)					3. 진정서 접수 및 통보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 무 처 장 권 한 사 무						【별표 2】 사 무 처 장 권 한 사 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처장결재	협조처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처장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담당자	담당관		
4-1. 정책연구실						5. 입법담당관					
3. 법무심사	1. ~ 2. (생략)					4. 법무심사	1. ~ 2. (현행과 같음)				
4. 법제심사	1. ~ 3. (생략)					5. 법제심사	1. ~ 3. (현행과 같음)				
5. 법제연구	1. (생략)					6. 법제연구	1. (현행과 같음)				
6. 법제관련 간행물발간	1. ~ 2. (생략)					7. 법제관련 간행물발간	1. ~ 2. (현행과 같음)				
						8. 의회 관련 연구용역	1. 의회 관련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2. 의회 관련 연구용역 준공 처리		ㅇ ㅇ		
<신설>	<신설>					9. 입법예고	1. 입법예고 의안 접수 2. 입법예고 관련 업무협의 3.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게재 및 관리	ㅇ	ㅇ ㅇ		
<신설>	<신설>					10. U-신문고 운영	1. U-신문고 유지보수 계획 수립 2. U-신문고 운영 및 유지보수		ㅇ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ㅇ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의 [별표 1] 의장 권한사무 및 [별표 2] 사무처장 권한사무에 있어 직제 변경(정책연구실 폐지 및 입법담당관 신설) 및 업무의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오기 및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책연구실로 표기된 부분을 입법담당관으로 변경함.
   - 나. [별표 1]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결권자를 조정하고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사무로 이관된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다. [별표 1]의 단위업무에 “의회 관련 연구용역”,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 “U-신문고 설치·운영”을 신설하고 그 세부항목을 구체화함.
   - 라. [별표 2]의 공보실 단위업무 중 “자료관리” 및 “자료실 운영” 업무를 입법담당관 소관 사무로 이관하고 신설 및 변경된 업무를 반영함.
   - 마. [별표 2]의 단위업무에 입법담당관 신설에 따른 업무내용 반영함.
   - 바. 기타 오기 및 자구를 정정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 및 제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87호

서울특별시의회 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 광 태 인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각 실과에서는”을 “각 실·담당관에서는”으로 한다.
제7조 중 “공보실장은”을 “입법담당관은”으로 한다.
제9조 중 “의회사무처(공보실)”를 “의회사무처(입법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공보실장이”를 “입법담당관이”로 하고, “홍보담당사무관이”를 “사회문화입법팀장이”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홍보담당사무관으로”를 “사회문화입법팀장으로”로 한다.
제12조 중 “가름할 수 있다”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 제5호 중 “공보실장이”를 “입법담당관이”로 한다.
제18조 중 “공보실장은”을 “입법담당관은”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 중 “공보실장에”를 “입법담당관에”로 한다.
제25조 중 “싯가에”를 “시가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의회 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위치 및 관장) ① 자료실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내에 두며 사무처장이 관리한다.	**제2조(위치 및 관장)** ①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내에 ----------
제5조(자료수집) ① 각 실과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발간된 각종 자료와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자료실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즉시 자료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수집)** ① 각 실·담당관에서는 ---------- ---------- ---------- ----------
제7조(자료관리) 공보실장은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관리)** 입법담당관은 ---------- ----------
제9조(설치목적) 자료실의 장서관리에 따른 자료선정 및 구입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공보실) 소속으로 자료선정 위원회를 둔다.	**제9조(설치목적)** ---------- ---------- 의회사무처(입법담당관) ---------- ----------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보실장이 되고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은 국제교류담당사무관, 의안담당사무관, 홍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장이 전문위원실 소속의 6급 직원 중 3명 이내를 지명한다.	**제10조(구성)** ① ---------- --위원장은 입법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사회문화입법팀장이 된다. ② ----------, 의안---------- 담당사무관, 사회문화입법팀장으로 하고---------- ----------
제12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	**제12조(소집)** ---------- ----------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범위) 자료실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2. 서울특별시 본청(집행부) 소속공무원 3. 정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의 임직원 4. 각급 학교의 교수, 교사, 강사 및 대학 학위논문 작성이 필요한 자 5. 그 밖의 서울에 주소를 둔 일반시민으로서 공보실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이용자 범위)**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 입법담당관이 ----------
제18조(영상실 설치) 공보실장은 시청각 등 특수자료의 열람 및 검사를 위하여 자료실내에 영상실을 설치하고 비품을 비치 관리한다.	**제18조(영상실 설치)** 입법담당관은 ---------- ----------
제22조(기한전 반납) ① 생략 ② 생략 ③ 의정담당관은 시의원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분변동사항을 즉시 공보실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기한전 반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입법담당관에 ----------
제25조(손망실 변상) ① 생략 ② 변상은 동일자료나 대체자료 또는 금전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체자료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익한 자료로 하고, 금전으로 변상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손망실 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시가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무가 공보실에서 입법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소관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고 오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보실과 공보실장으로 표기된 부분을 입법담당관으로 변경함.
 나. 자료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보실장에서 입법담당관으로, 간사를 홍보담당사무관에서 사회문화입법팀장으로, 당연직 위원 중 홍보담당사무관을 사회문화입법팀장으로 변경함.
 다. 기타 오기를 정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88호**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 광 태 인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제1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2. 제2소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3. 제3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4. 제4소위원회는 건설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업무
5. 기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연구과제 및 학술연구 용역업체 선정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분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제1분과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2. **제2분과 소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3. **제3분과 소위원회는** 문화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 위원회** 소관 업무 4. **제4분과 소위원회는** 건설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	제3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제1소위원회**는 ---------- 2. **제2소위원회**는 ---------- 3. **제3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4. **제4소위원회**는 ----------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일부 오기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제3조 제1항)
   나. 일부 오기를 정정함(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08호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관용차량의 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함
나. 관용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기준적용 및 총주행거리 신설 (안 제8조 관련, 별표1)

<교체 기준>

(현행) 내구연한(6~7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개정) 최단운행 기준연한(7년) + 총 주행거리 (12만㎞)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라. 관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6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731-6613, Fax : 731-6219
- E-mail : heunggi-1111@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20호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 조례의 개정으로 시립직업전문학교의 명칭이 직업교육훈련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교장을 원장으로 변경하고 인용되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조례에서 위임한 시설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립직업전문학교를 직업교육훈련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장을 교장에서 원장으로 호칭을 변경함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노동부 인용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단가적용 인용근거를 「실업자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규정」으로 변경함
   다. 교육훈련생 모집 및 선발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절차 규정을 신설 · 추가하고, 제적기준에 주민등록 요건을 강화함
   라. 시설의 사용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신청서 서식 및 사용료를 별지에 따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전화: 3707-9373, FAX : 3707-9387, E-mail: cose-coz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2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에 시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위탁관리 근거 조항의 신설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사의 면적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향 확대로 생겨나는 자치구와 민간 수탁기관간의 권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탁관리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등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아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 10으로 함(안 제26조제5항제13호)

다.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4퍼센트로 인하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함(안 제36조제1항)

라.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그 승계자에게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원주민 보호를 도모함(안 제36조제2항)

마. 조직 및 행정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을 변경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유재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과(전화: 2171-2836, FAX : 2171-2619, E-mail : kha10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 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2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 사용료의 상한 금액을 인상하고 「농산물 품질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법인의 과도한 영업 이익 개선을 위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상한 금액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5.5로 인상함

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생활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 3707-9393, FAX: 3707-9349, E-mail : kcy940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97호

이문 · 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1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07.21.)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항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1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동대문구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1,012,315	-	1,012,315	노후 ·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이문동 · 휘경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기 지정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기준 년도: 2006년
목표 연도: 201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서울 동북권의 주거·문화·복지기능이 조화된 신주거 중심지로 개발하고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녹색보행도시의 조성, 주변 대학과 연계된 세계문화 및 생활예술 도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인접한 중랑천·천장산 등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살아있는 커뮤니티와 생활 속의 문화, 예술, 보행중심의 녹색문화 도시”를 목표로 함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외 변경없음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015,315.0	-	1,012,315.0	100.0%	
주거용지	소 계	565,280.3	감)168.5	565,111.8	55.8%	
	공동주택	503,964.3	감)168.5	503,795.8	49.8%	중앙·삼익(사업완료), 신이문 포함
	주상복합	54,195.0	-	54,195.0	5.3%	KCC 웰츠타워 등
	종교시설	7,121.0	-	7,121.0	0.7%	7개소
근생용지	소 계	95,125.0	-	95,125.0	9.4%	
	상업업무	95,125.0	-	95,125.0	9.4%	신이문·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용지	소 계	351,909.7	증)168.5	352,078.2	34.8%	
	도 로	159,389.0	증)157.2	159,546.2	15.7%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50,631.0	-	50,631.0	5.0%	
	공 원	43,268.7	증)11.3	43,280.0	4.3%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개발 공원포함(1,417㎡)
	녹 지	38,283.0	-	38,283.0	3.8%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33,107.0	-	33,107.0	3.3%	기존(이문초등학교), 신설(초·고 각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9,668.0	-	9,668.0	1.0%	4개소
	공공청사등	8,356.0	-	8,356.0	0.8%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공공공지	8,483.0	-	8,483.0	0.8%	미래 주민편익시설 수요 대비
	주 차 장	724.0	-	724.0	0.1%	지하주차장 1개소 (1,175㎡)

※ 변경사유: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용지 및 도로, 공원면적 증감
※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확대 및 세대수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9,087 (100.0%)	19,097 (100.0%)	43,965	43,988	
촉진구역	소 계	13,317 (69.8%)	13,327 (69.8%)	30,630	30,653	
	60㎡ 이하	5,708 (29.9%)	5,733 (30.0%)	13,129	13,186	미취사가구 수용 - 20㎡(200호), 30㎡(100호)
	60㎡~85㎡	4,948 (25.9%)	4,954 (25.9%)	11,381	11,395	
	85㎡ 초과	2,661 (13.9%)	2,640 (13.8%)	6,121	6,073	
존치구역	소 계	5,770 (33.0%)	5,770 (30.2%)	13,335	13,335	
	단독주택	4,254 (24.3%)	4,254 (22.3%)	9,830	9,830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1,516 (8.7%)	1,516 (7.9%)	3,505	3,505	존치건축물

※ 변경사유: 휘경1재정비촉진구역의「기준용적률 상향조정계획」에 따른 소형주택공급확대 및 세대수 변경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합 계		7	42,575	
교육시설	소 계	3	32,907	
	초등학교	2	23,334	기설치1개소 (이문초교)포함
	고등학교	1	9,573	
문화·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4	9,668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외 변경없음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8	80,134.7	증)11.3	80,146.0	
공 원	소 계	15	41,851.7	증)11.3	41,863.0	
	근린공원	1	12,612.0	-	12,612.0	
	어린이공원	9	23,024.7	감)647.0	22,377.7	
	소공원	5	6,215.0	증)647.0	6,862.0	공원명칭변경(시설의세분)
녹 지	소 계	13	38,283.0	-	38,283.0	
	연결녹지	8	22,282.0	-	22,282.0	
	완충녹지	5	16,001.0	-	16,001.0	

※ 변경사유: 1.휘경1재정비촉진구역의 공원명칭변경(시설의 세분)
2.소공원면적 5%이상 확보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7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8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외 변경없음

구분	구역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유형
기정	이문1	C	이문동	257	14.4	190%	12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이문2	C	이문동	170	9.8	190%	12층이하	60%	2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이문3 (3-1)	C	이문1동	292	13.7	210%	50층이하	45%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결합개발
기정	이문3 (3-2)	C	이문동	411	2.2	75%	4층이하	4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결합개발
기정	이문4	C	이문동, 휘경1동	76, 148	15.1	190%	12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휘경1	A	휘경동	243	1.3	210%	-	5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변경		A	휘경동	243	1.3	230%	-	5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휘경2	C	휘경동	114	4.4	210%	12층이하	3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휘경3	C	휘경동	97	6.5	210%	12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사업의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재정비촉진지구			-	1,012,315	-	1,012,315	-	
촉진구역(7개구역)			-	675,837	-	675,837	-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257-42일대	144,927	-	144,927	주택재개발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170-3일대	98,497	-	98,497	주택재개발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	159,038	-	159,038	-	결합개발
이문3-1			동대문구 이문동 149-8일대	137,372	-	137,372	주택재개발	역세권
이문3-2			동대문구 이문동 412-1일대	21,666	-	21,666	주택재개발	구릉지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86-1일대	151,388	-	151,388	주택재개발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휘경동 243일대	12,927	-	12,92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기지정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휘경동 128-12일대	43,722	-	43,722	주택재개발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휘경동 172일대	65,338	-	65,338	주택재개발	
존치지역			-	336,478	-	336,478	-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 계	-	242,859	-	242,859	-	
		신이문	동대문구 이문동 220일대	60,079	-	60,079	-	
		이문	동대문구 이문동 305일대	67,183	-	67,183	-	
		회기	동대문구 휘경동 319일대	115,597	-	115,597	-	
	존치시설 및 건축물	소 계	-	93,619	-	93,619	-	
		이문로	동대문구 이문동 288-3일대	12,993	-	12,993	-	
		경원선	동대문구 이문동 360-9일대	17,118	-	17,118	-	
		중앙선	동대문구 휘경동 180-5일대	6,014	-	6,014	-	
		이문초등학교	동대문구 이문동 164-26일대	15,534	-	15,534	-	
		빗물펌프장	동대문구 휘경동 146-104일대	1,319	-	1,319	-	
		기타 존치건축물	동대문구 이문동 84일대 외	40,641	-	40,641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4,927	-	144,927	100.0
주거지역	소계	139,854	-	139,854	96.5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1,449	-	41,449	28.6
	제2종일반주거지역	96,666	-	96,666	66.7
	제3종일반주거지역	1,739	-	1,739	1.2
상업지역	소계	5,073	-	5,073	3.5
	일반상업지역	5,073	-	5,073	3.5

나. 이문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8,497	-	98,497	100.0
주거지역	소계	96,017	-	96,017	97.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6,017	-	96,017	97.5
	준주거지역	-	-	-	0.0
상업지역	소계	2,480	-	2,480	2.5
	일반상업지역	2,480	-	2,480	2.5

다. 이문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 이문3(3-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결합개발구역/역세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37,372		137,372	100.0
주거지역	소계	134,101		134,101	97.6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21		221	0.2
	제2종일반주거지역	41,213		41,213	30.0
	준주거지역	92,667		92,667	67.4
상업지역	소계	3,271	-	3,271	2.4
	일반상업지역	3,271	-	3,271	2.4

(2) 이문3(3-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결합개발구역/구릉지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1,666	-	21,666	100.0
주거지역	소계	21,666	-	21,66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1,666	-	21,666	100.0

라.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51,388	-	151,388	100.0
주거지역	소계	151,388	-	151,38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000	-	8,000	5.3
	제2종일반주거지역	131,678	-	131,678	87.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710	-	11,710	7.7

마. 휘경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2,926.8	-	12,926.8	100.0
주거지역	소계	12,926.8	-	12,926.8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2,926.8	-	12,926.8	100.0

바. 휘경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3,722	-	43,722	100.0
주거지역	소계	43,722	-	43,72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4,945	-	14,945	34.2
	제3종일반주거지역	28,777	-	28,777	65.8

사. 휘경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5,338	-	65,338	100.0
주거지역	소 계	65,338	-	65,33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514	-	12,514	19.1
	제2종일반주거지역	3,385	-	3,385	5.2
	제3종일반주거지역	49,439	-	49,439	75.7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역명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기준	상한		평균층수/최고층수	최고높이(m)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30%이하	30%이하	18이하/27이하	103이하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이하	30%이하	19이하/30이하	112이하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이문3-1		공동주택 및 비주거	210%	475.31%이하	45%이하	35이하/50이하	185이하
이문3-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75%이하	40%이하	-/4이하	20이하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이하	30%이하	19이하/30이하	112이하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50%이하	30%이하	-/19이하	75이하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0%	265%이하	30%이하	-/20이하	78이하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이하	30%이하	25이하/30이하	112이하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이하	30%이하	28이하/35이하	118이하

주1) 인공지반(데크)설치구역은「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범위내에서 조정가능
주2) 최고높이는 지표고 기준임
※ 변경사유: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 적용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144,927	49,667	11,152	15,415	-	23,100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98,497	22,105	1,814	2,522	-	17,769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159,038	39,071	3,658	1,530	-	33,883
이문3-1		137,372	39,071	3,658	1,530	-	33,883
이문3-2		21,666	-	-	-	-	-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151,388	48,185	12,014	5,782	-	30,389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12,927	1,695	549	-	-	1,146
	변경	12,927	1,864	567	-	-	1,297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43,722	14,761	6,686	260		7,815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65,338	23,686	4,180	4,249	-	15,257

※ 변경사유: 1.소공원면적5%이상확보
2.소로2-2폭원확폭(B:9m) 및 소로2-4 일부선형변경
주)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와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는 중복 산정하지 않음
주)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에 관한 세부사항은「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기본설계」에 따르도록 함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기정

구역명	전체 세대수	임 대 주 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20㎡	30㎡	30~40㎡ 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이문1	2,262	400	-	-	200	159	41	-	-
이문2	1,856	320	-	-	160	128	32	-	-
이문3	4,292	1,308(682)	100	50	199	222	465(410)	205(205)	67(67)
이문3-1	4140	1,308(682)	100	50	199	222	465(410)	205(205)	67(67)
이문3-2	152	-	-	-	-	-	-	-	-
이문4	2,442	458	100	50	103	164	41	-	-
휘경1	289	47	-	-	47	-	-	-	-
휘경2	896	174(25)	-	-	70	60	35(16)	7(7)	2(2)
휘경3	1,280	314(140)	-	-	87	70	111(94)	42(42)	4(4)
합 계	13,317	3,021(847)	200	100	866	803	725(520)	254(254)	73(73)

■ 변경

구역명	전체 세대수	임 대 주 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20㎡	30㎡	30~40㎡ 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이문1	2,262	400	-	-	200	159	41	-	-
이문2	1,856	320	-	-	160	128	32	-	-
이문3	4,292	1,308(682)	100	50	199	222	465(410)	205(205)	67(67)
이문3-1	4140	1,308(682)	100	50	199	222	465(410)	205(205)	67(67)
이문3-2	152	-	-	-	-	-	-	-	-
이문4	2,442	458	100	50	103	164	41	-	-
휘경1	299 (증10)	51 (증4)	-	-	21 (감26)	23 (증23)	7 (증7)		
휘경2	896	174(25)	-	-	70	60	35(16)	7(7)	2(2)
휘경3	1,280	314(140)	-	-	87	70	111(94)	42(42)	4(4)
합 계	13,327	3,025(847)	200	100	840	826	732(520)	254(254)	73(73)

※ 변경사유 :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증가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1단계	2008~2013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2단계	2010~2015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주1) 단계별 추진계획은 각 단계의 총량의 범위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
주2)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사업시행시기를 관리토록 함

14) 기타 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 변경없음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144,927	-	144,927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44,927	-	144,92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7,916	-	37,916	26.2	-
	도 로	17,191	-	17,191	11.9	-
	공 원	6,642	-	6,642	4.6	-
	녹 지	5,600	-	5,600	3.9	-
	공공공지	8,483	-	8,483	5.9	미래 공공부지 (주민편익시설)
택 지 (획지)	소 계	107,011	-	107,011	73.8	-
	1-1	61,782	-	61,782	42.6	공동주택
	1-2	32,502	-	32,502	22.4	공동주택
	1-3	212	-	212	0.1	종교시설
	1-4	764	-	764	0.5	종교시설
	1-5	9,573	-	9,573	6.6	학교
	1-6	2,178	-	2,178	1.5	문화·사회복지시설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9	20~25	보조 간선	4,000 (445)	휘경지서앞 중1-8호선	번동98-1 대3-39호선	일반 도로		총고시 722 (1936.12.26)	
기정	중로	1	432	20	집산 도로	375	이문동 291-26번지	이문동 264-3번지	일반 도로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1	18	국지 도로	120	이문동 255-7번지	이문동 255-12번지	일반 도로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3	8~15	국지 도로	276 (180)	이문동 264-203번지	이문동 398-8번지	일반 도로		건고 521 (1981.12.31)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73	이문동 264-420번지	이문동 264-420번지	일반 도로		건고 521 (1981.12.31)	
기정	소로	2	12	8~12	국지 도로	300 (220)	이문2동 271-7번지	이문2동 291-67번지	일반 도로		건고 768 (1964.1.24)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⑧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257-48일원	5,600	-	5,600	서고2007-496 ('08.1.7)	

■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⑥	달누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64-421 일원	1,750	-	1,75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⑦	천장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57-466 일원	1,997	-	1,997	서고2007-496 ('08.1.7)	
기정	⑧	고황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92-4 일원	1,989	-	1,989	서고2007-496 ('08.1.7)	
기정	⑬	의릉공원	소공원	이문동 255-116 일원	906	-	906	서고2007-496 ('08.1.7)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④	공공공지	이문동 255-753일원	8,483	-	8,483	서고2007-496 ('08.1.7)	미래공공부지

■ 학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학교	고등학교	이문동 385-6 일대	9,573	-	9,573	서고2007-496 ('08.1.7)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이문1재정비 촉진구역	144,927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1,061	-	-	1,061	-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						평균	최고
기정	이문1 재정비 촉진구역	144,927	1-1	61,782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128,572.4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0 이하	18층 이하	27층 이하 (103m이하)
			1-2	32,502	동대문구 이문동 257-555번지 일대	84,486.4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3	212	동대문구 이문동 255-12번지 일대	410.00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1-4	764	동대문구 이문동 257-57번지 일대	1,566.00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1-5	9,573	동대문구 이문동 386-5번지 일대	11,400.00	학교	30 이하	120 이하	-	5층 이하
			1-6	2,178	동대문구 이문동 264-120번지 일대	4,374.00	문화·사회 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2,262세대 [임대 400세대(17.68%)] - 전용면적 60㎡이하 : 1,180세대(52.17%) - 전용면적 60~85㎡이하 : 829세대(36.65%) - 전용면적 85㎡초과 : 253세대(11.1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1-9호선(이문로)변, 순환가로(연도형상가)변 : 10m • 기타 도로변 : 6m								

주) 인공지반(데크)설치시「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 (2008~2013년)	주택재개발조합	-	-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이문1재정비 촉진구역내	94,284	-	23,634.67	• 200세대 (8.84%)	• 40㎡이하	
				• 159세대 (7.03%)	• 40~50㎡이하	
				• 41세대 (1.81%)	• 50~60㎡이하	
				• 전체 : 400세대 (17.68%)	-	

주)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나. 이문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3번지 일대	98,497	-	98,497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8,497	-	98,49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0,100	-	20,100	20.4	-
	도 로	11,460	-	11,460	11.6	-
	공 원	3,855	-	3,855	3.9	-
	녹 지	4,785	-	4,785	4.9	-
택 지 (획지)	소 계	78,397	-	78,397	79.6	-
	2-1	40,557	-	40,557	41.2	공동주택
	2-2	21,283	-	21,283	21.6	공동주택
	2-3	14,552	-	14,552	14.8	공동주택
	2-4	2,005	-	2,005	2.0	문화사회복지시설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9	20~25	보조 간선	4,000 (227)	휘경지서앞 중1-8호선	번동98-1 대3-39호선	일반 도로		총고시 722 (1936.12.26)	
기정	중로	1	63	20	집산 도로	2,250 (310)	이문동 255-2	석관동 247-1	일반 도로		건고시 2493 (1966.6.21)	
기정	중로	2	452	15	집산 도로	216	이문동 256-128번지	이문동 164-15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4	15~19	집산 도로	472 (400)	이문동 175-31번지	이문동 255-187번지	일반 도로		서고 305 (1992.9.28)	
기정	소로	3	11	4	특수 도로	245 (170)	이문동 170-130번지	이문동 220-363번지	보행자 전용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2	4	특수 도로	345 (150)	이문동 135-138번지	이문동 170-123번지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68-20일원	6,648 (3,945)	-	6,648 (3,94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⑥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256-303일원	840	-	840	서고2007-496 ('08.1.7)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신이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56-225 일원	1,850	-	1,85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④	해누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56-313 일원	2,005	-	2,005	서고2007-496 ('08.1.7)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이문2재정비 촉진구역	98,497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3번지 일대	754	-	-	754	-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이문2 재정비 촉진구역	98,497	2-1	40,557	동대문구 이문동 165-45번지 일대	97,33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40 이하	19층 이하	30층 이하 (112m 이하)
			2-2	21,283	동대문구 이문동 256-271번지 일대	51,07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	14,552	동대문구 이문동 170-77번지 일대	34,92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	2,005	동대문구 이문동 256-103번지 일대	4,010	문화·사회 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856세대 [임대 320세대(17.2%)] - 전용면적 60㎡이하 : 560세대(30.2%) - 전용면적 60~85㎡이하 : 744세대(40.1%) - 전용면적 85㎡초과 : 552세대(29.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1-9호선(이문로)변 : 10m • 기타 도로변 : 6m								

주) 인공지반(데크)설치시「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2단계 (2010~2015년)	주택재개발조합	-	-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이문2재정비 촉진구역내	76,392	-	20,948.4	• 160세대 (8.6%)	• 40㎡이하	
				• 128세대 (6.9%)	• 40~50㎡이하	
				• 32세대 (1.7%)	• 50~60㎡이하	
				• 전체 : 320세대 (17.2%)	-	

주)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다. 이문3(3-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이문3(3-1) 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137,372	-	137,372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37,372	-	137,372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8,817	-	38,817	28.3	-
	도 로	16,333	-	16,333	11.9	-
	공 원	13,792	-	13,792	10.0	-
	녹 지	8,692	-	8,692	6.3	-
택 지 (획지)	소 계	98,555	-	98,555	71.7	-
	3-1-1	53,904	-	53,904	39.2	-
	3-1-2	23,423	-	23,423	17.1	-
	3-1-3	16,927	-	16,927	12.3	-
	3-1-4	3,263	-	3,263	2.4	종교시설
	3-1-5	404	-	404	0.3	종교시설
	3-1-6	380	-	380	0.3	종교시설
	3-1-7	254	-	254	0.2	공공청사 이전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9	20~25	보조 간선	4,000 (270)	휘경지서앞 중1-8호선	번동98-1 대3-39호선	일반 도로		총고시 722 (1936.12.26)	
기정	중로	1	433	20	집산 도로	463 (291)	이문동 86-139번지	이문동 258-25번지	일반 도로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3	15	집산 도로	228	이문동 150-6번지	이문동 256-127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4	15~19	집산 도로	472 (224)	이문동 175-31번지	이문동 255-187번지	일반 도로		서고 305 (1992.9.28)	
기정	중로	1		15~21	집산 도로	273	이문동 304-14번지	이문동 292-178번지	일반 도로		서고 2002-143 (2002.05.02)	
기정	소로	3	12	4	특수 도로	345 (195)	이문동 135-138번지	이문동 170-123번지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4	4	특수 도로	248	이문동 304-14번지	이문동 135-117번지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21	4~8	국지 도로	120	이문동 292-46번지	이문동 292-70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68-20일원	6,648 (2,696)	-	6,648 (2,696)	서고2007-496 ('08.1.7)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35-52일원	2,830 (2,619)	-	2,830 (2,619)	서고2007-496 ('08.1.7)	
기정	⑦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256-124일원	1,852	-	1,852	서고2007-496 ('08.1.7)	
기정	⑨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292-42일원	1,525	-	1,525	서고2007-496 ('08.1.7)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중앙공원	근린공원	이문동 138-1	12,612	-	12,612	서고2007-496 ('08.1.7)	시설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지하조성) -열공급설비(지하조성)
기정	⑭	독구말공원	소공원	이문동 294-2 일원	1,180	-	1,180	서고2007-496 ('08.1.7)	

■ 열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열공급설비	이문동 138-1	11,912	-	11,912	서고2007-496 ('08.1.7)	시설중복결정 중앙공원(지하)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공공청사	-	이문동 304-6번지 일대	254	-	254	서고2007-496 ('08.1.7)	건강증진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이문동 145-4일원	700	-	700	서고2007-496 ('08.1.7)	시설중복결정 중앙공원(지하)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이문3(3-1) 재정비 촉진구역	137,37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945	-	-	945	-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이문3(3-1) 재정비 촉진 구역	137,372	3-1-1	53,904	동대문구 이문동 134-4번지 일대	256,211	공동주택 및 비주거	40 이하	475.31 이하	35층 이하	50층 이하 (185m이하)
			3-1-2	23,423	동대문구 이문동 163번지 일대	111,331	공동주택 및 비주거	35 이하			48층 이하 (180m이하)
			3-1-3	16,927	동대문구 이문동 258-1번지 일대	80,455	공동주택 및 비주거	45 이하			40층 이하 (160m이하)
			3-1-4	3,263	동대문구 이문동 292-39번지 일대	6,526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3-1-5	404	동대문구 이문동 293-6번지 일대	808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3-1-6	380	동대문구 이문동 304-10번지 일대	760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3-1-7	254	동대문구 이문동 304-6번지일대	1,016	공공청사	60 이하	400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4,140세대 [임대 1,308세대(31.6%)] - 전용면적 60㎡이하 : 2,106세대(50.9%) - 전용면적 60~85㎡이하 : 1,312세대(31.7%) - 전용면적 85㎡초과 : 722세대(17.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1-9호선(이문로)변 : 10~12m • 중1-433호선(지구순환가로)변 : 10m • 중1-0호선(문일길)변, 중2-454호선 : 8m					• 기타 도로변 : 6m					

주) 인공지반(데크)설치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 (2008~2013년)	주택재개발조합	-	-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임대주택 건립비율		장기전세주택 건립비율		세대규모(전용)	비고
					세대수	구성비(%)	세대수	구성비(%)		
기정	이문3(3-1) 재정비촉진구역내	94,254	-	98,634.2	349	10.9	-	-	40㎡이하	
					222	7.0	-	-	40~50㎡이하	
					55	1.7	410	60.1	50~60㎡이하	
					-	-	205	30.1	60~85㎡이하	
					-	-	67	9.8	85㎡초과	
					전체 : 626	19.6	전체 : 682	100.0	-	

라. 이문3(3-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이문3(3-2)재정비 촉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12-1번지 일대	21,666	-	21,666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1,666	-	21,666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	-	-	-
	도 로	-	-	-	-	-
	공 원	-	-	-	-	-
	녹 지	-	-	-	-	-
택 지 (획지)	소 계	21,666	-	21,666	100.0	-
	3-2-1	21,666	-	21,666	100.0	공동주택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 개량 계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이문3(3-2) 재정비 촉진구역	21,666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12-1번지 일대	143	-	-	143	-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이문3(3-2) 재정비 촉진구역	21,666	3-2-1	21,666	동대문구 이문동 411-5번지 일대	16,249.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0 이하	75 이하	-	4층이하 (20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52세대 - 전용면적 50~60㎡이하 : 46세대(30.3%) - 전용면적 60~85㎡이하 : 62세대(40.8%) - 전용면적 85㎡이상 : 44세대(28.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 (2008~2013년)	주택재개발조합	-	-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구성비(%)	세대규모(전용)	비 고
기정	이문3(3-2)재정비 촉진구역내	21,666	-	-	-	-	-	-

마.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86-1번지 일대	151,388	-	151,388	4

(1)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51,388	-	151,388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6,883	-	36,883	24.4	-
	도 로	19,168	-	19,168	12.7	-
	공 원	7,550	-	7,550	5.0	-
	녹 지	9,785	-	9,785	6.5	-
	공공공지	380	-	380	0.2	-
택 지 (획지)	소 계	114,505	-	114,505	75.6	-
	4-1	54,232	-	54,232	35.8	공동주택
	4-2	37,997	-	37,997	25.1	공동주택
	4-3	9,060	-	9,060	6.0	공동주택
	4-4	1,914	-	1,914	1.2	종교시설
	4-5	8,000	-	8,000	5.3	학교
	4-6	2,100	-	2,100	1.4	문화·사회복지시설
	4-7	1,202	-	1,202	0.8	공공청사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0	25~30	보조 간선	11,600 (145)	군자동 광로5호선	수유동 중1-47호선	일반 도로		건고시 177 (1962.12.8)	
기정	중로	1	433	20	집산 도로	463 (145)	이문동 86-139번지	이문동 258-25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1	434	20	집산 도로	407	휘경동 150-26번지	이문동 105-18번지	일반 도로		건고 46 (1976.4.7)	
기정	중로	1	10	20	집산 도로	595 (157)	외국어대학 앞	휘경동 147-6번지	일반 도로		내고 23 (1952.3.25)	
기정	중로	1	435	20	특수 도로	185	휘경동 147-6번지	휘경동 119-46번지	보행자 도로		내고 23 (1952.3.25)	
기정	중로	2	454	15~19	집산 도로	472 (44)	이문동 175-31번지	이문동 255-187번지	일반 도로		서고 305 (1992.9.28)	
기정	중로	3	450	12	국지 도로	87	이문동 87-1번지	이문동 89-3번지	일반 도로	-	동고 1994-29 (1994.6.2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13	이문동 85-26번지	이문동 78-6번지	일반 도로	-	서고 2002-143 (2002.05.02)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80	이문동 120-36번지	이문동 354-5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3	4	특수 도로	346	이문동 120-35번지	이문동 173-35번지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5	2~4	특수 도로	205 (45)	이문동 78-7번지	이문동 121-78도	보행자 전용	-	건고 1994-116 (1994.4.18)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16-12일원	3,790	-	3,79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78-7일원	315	-	31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⑩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86-141일원	4,365	-	4,36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⑪	녹지	연결녹지	휘경동 150-9일원	1,315	-	1,315	서고2007-496 ('08.1.7)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⑤	새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175-1 일원	4,360	-	4,36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⑨	별누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86-36 일원	3,190	-	3,190	서고2007-496 ('08.1.7)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⑤	공공공지	이문동 88-24일원	380	-	380	서고2007-496 ('08.1.7)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동사무소	이문동 120-1번지 일대	1,202	-	1,202	동고 83 (2001.10.27)	이문1동 동사무소

■ 학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학교	초등학교	이문동 87-14 일대	8,000	-	8,000	서고2007-496 ('08.1.7)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이문4 재정비 촉진구역	151,388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	1,100	-	-	1,100	-	-

■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이문4 재정비 촉진구역	151,388	4-1	54,232	동대문구 이문동 109-38번지 일대	130,15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40 이하	19층 이하	30층 이하 (112m이하)
			4-2	37,997	동대문구 휘경동 148-60번지 일대	91,19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3	9,060	동대문구 이문동 83-66번지 일대	21,74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4	1,914	동대문구 이문동 120-33번지 일대	3,828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4-5	8,000	동대문구 이문동 87-68번지 일대	9,600	학교	30 이하	120 이하	-	5층 이하
			4-6	2,100	동대문구 이문동 86-55번지 일대	4,200	문화·사회 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4-7	1,202	동대문구 이문동 120-1번지 일대	2,404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2,442세대 [임대 458세대(18.8%)] - 전용면적 60㎡이하 : 774세대(31.7%) - 전용면적 60~85㎡이하 : 972세대(39.8%) - 전용면적 85㎡초과 : 696세대(28.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3-40(한천로)변 : 10m • 중1-434(지구순환가로)변 : 10m • 기타 도로변 : 6m										

주) 인공지반(데크)설치시「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 (2008~2013년)	주택재개발조합	-	-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이문4재정비촉진구역내	101,289	-	26,785.1	• 253세대 (10.4%)	• 40㎡이하	
				• 164세대 (6.7%)	• 40~50㎡이하	
				• 41세대 (1.7%)	• 50~60㎡이하	
				• 전체 : 458세대 (18.8%)	-	

주)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바. 휘경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휘경동 243번지 일대	12,926.8	-	12,926.8	

(2)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2,926.8	-	12,926.8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696	(증)168	1,864	14.4	-
	도 로	1,060	(증)157	1,217	9.4	-
	공 원	636	(증)11	647	5.0	-
택 지 (획지)	소 계	11,231	(감)168	11,063	85.6	-
	5-1	11,231	(감)168	11,063	85.6	공동주택

※ 변경사유: 1. 소공원면적 5%이상확보
2. 소로2-2폭원확폭(B:9m) 및 소로2-4 일부선형변경
3.「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 적용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62	휘경1동 86-6번지	휘경1동 255-9번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5-408 (2005.12.22.)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262	휘경1동 86-6번지	휘경1동 255-9번지	일반 도로	-		일부선형변경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900 (370)	휘경동 192-19번지	휘경동 145-40번지	일반 도로	-	서고 제741 (1988.09.03)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62	휘경1동 109-1번지	휘경1동 42-9번지	일반 도로	-	서고 제2005-408 (2005.12.22.)	
변경	소로	2	2	9	국지 도로	62	휘경1동 109-1번지	휘경1동 42-9번지	일반 도로	-		확폭 (B:8m→9m)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회기 공원	어린이공원	휘경동 194-28 일원	636	(증)11	647	서고 제2005-408 (2005.12.22.))	
변경			소공원						

※ 변경사유: 구역면적의 5%이상확보(공원면적)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휘경1재정비 촉진구역	12,927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43번지 일대	88	-	-	88	-	-

■ 건축시설계획

-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평균	최고
기정	휘경1 재정비 촉진 구역	12,927	5-1	11,231	동대문구 휘경동 220번지일대	39,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 이하	250 이하	-	19층 이하 (74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289세대 [임대 47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 251세대(86.9%) - 전용면적 85㎡초과 : 38세대(13.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평균	최고
기정	휘경1 재정비 촉진 구역	12,927	5-1	11,063	동대문구 휘경동 220번지일대	42,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65 이하	-	20층 이하 (78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299세대 [임대 51세대(17%)] - 전용면적 60㎡이하 : 185세대(61.9%) - 전용면적 60~85㎡이하 : 97세대(32.4%) - 전용면적 85㎡초과 : 17세대(5.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소로2-2 : 폭원확폭(B:9m) • 소로2-4 : 일부선형변경								

※ 변경사유: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 적용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 (2008~2013년)	주택재개발조합	(증)71	-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임대주택 건립비율		장기전세주택 건립비율		세대규모(전용)	비고
					세대수	구성비(%)	세대수	구성비(%)		
기정	휘경1 재정비촉진구역내	11,231	1동	3,698	47	16.3	-	-	40㎡이하	
					-	-	-	-	40~50㎡이하	
					-	-	-	-	50~60㎡이하	
					전체 : 47	16.3	-	-	-	
변경		11,063	1동 (50~60㎡ 분양동에 분산배치)	5,064	21	7.0	-	-	40㎡이하	
					23	7.7	-	-	40~50㎡이하	
					7	2.3	-	-	50~60㎡이하	
					전체 : 51	17.0	-	-	-	

※ 임대주택(51세대)

※ 변경사유: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증가 및 세대수변경(기준용적률20%상향조정계획을 적용하여 건축계획 조정)

사. 휘경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28-12번지 일대	43,722	-	43,722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3,722	-	43,722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958	-	13,958	31.9	-
	도 로	7,018	-	7,018	16.0	-
	공 원	3,415	-	3,415	7.8	-
	녹 지	3,525	-	3,525	8.1	-
택 지 (획지)	소 계	29,764	-	29,764	68.1	-
	6-1	28,777	-	28,777	65.8	공동주택
	6-2	184	-	184	0.4	종교시설
	6-3	803	-	803	1.9	공공청사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0	20	집산 도로	595 (157)	외국어대학앞	휘경동 147-6번지	일반 도로		내고 23 (1952.3.25)	
기정	중로	1	435	20	특수 도로	185	휘경동 147-6번지	휘경동 119-46번지	보행 자도 로		내고 23 (1952.3.25)	
기정	중로	2	142	15~20	집산 도로	427 (178)	휘경2동 42-4번지	휘경동 139-27번지	일반 도로		건고 46 (1976.4.7)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⑫	녹지	연결녹지	휘경동 140-18일원	3,525	-	3,525	서고2007-496 ('08.1.7)	

■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⑫	아름공원	어린이공원	휘경동 118-10 일원	3,415	-	3,415	서고2007-496 ('08.1.7)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공공청사	동사무소	휘경동 135-9번지	803	-	803	동고 107 (1997.11.6)	휘경1동 동사무소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휘경2 재정비 촉진구역	43,722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28-12번지 일대	319	-	-	319	-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평균	최고
기정	휘경2 재정비 촉진 구역	43,722	6-1	28,777	동대문구 휘경동 131-31번지 일대	86,30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300 이하	25층 이하	30층이하 (112m이하)
			6-2	184	동대문구 휘경동 131-75번지 일대	368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6-3	803	동대문구 휘경동 135-9번지 일대	1,606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896세대 [임대 149세대, 장기전세 25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462세대(51.5%) - 전용면적 60~85㎡이하 : 378세대(42.2%) - 전용면적 85㎡초과 : 56세대(6.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앙선 철로변 : 10m • 기타 도로변 : 6m										

주1) 인공지반(데크)설치구역은「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 (2008~2013년)	주택재개발조합	-	-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임대	장기전세		
휘경2재정비 촉진구역내	28,777	-	8,962.8	70(7.8%)	-	40㎡미만	
				60(6.7%)	-	40 ~ 50㎡ 미만	
				19(2.1%)	16(1.8%)	50 ~ 60㎡ 미만	
				-	7(0.8%)	60 ~ 85㎡ 미만	
				-	2(0.2%)	85㎡ 초과	
				전체:149세대(16.6%)	전체:25세대(2.8%)	-	

주)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아. 휘경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대	65,338	-	65,338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5,338	-	65,338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0,301	-	20,301	31.1	-
	도 로	9,614	-	9,614	14.7	-
	공 원	3,529	-	3,529	5.4	-
	녹 지	5,678	-	5,678	8.7	-
	공공공지	1,480	-	1,480	2.3	-
택 지 (획지)	소 계	45,037	-	45,037	68.9	-
	7-1	41,652	-	41,652	63.7	공동주택
	7-2	3,385	-	3,385	5.2	문화·사회복지시설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42	15~20	집산도로	427 (80)	휘경2동 42-4번지	휘경동 139-27번지	일반도로	-	건고 46 (1976.4.7)	
기정	중로	1	436	20	집산도로	375	휘경동 101-10번지	휘경동 194-77번지	일반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1	3	10~12	국지도로	200 (145)	휘경동 154-8번지	휘경동 146-127번지	일반도로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6	4	특수도로	250	휘경동 194-77번지	휘경동 167-11번지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휘경동 194-1일원	2,418	-	2,418	서고2007-496 ('08.1.7)	
기정	⑬	녹지	연결녹지	휘경동 180-63일원	3,260	-	3,260	서고2007-496 ('08.1.7)	

■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⑪	은하수 공원	소공원	휘경동 194-42일원	3,529	-	3,529	서고2007-496 ('08.1.7)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⑥	공공공지	휘경동 104-9일원	1,480	-	1,480	서고2007-496 ('08.1.7)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65,338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대	526	-	-	526	-	-

■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휘경3 재정비 촉진 구역	65,338	7-1	41,652	동대문구 휘경동 168-58번지 일대	124,810	공동주택및 부대 복리시설	30이하	300 이하	28층 이하	35층이 하(118 m이하)
			7-2	3,385	동대문구 휘경동 194-86번지 일대	6,770	문화·사회복 지시설	60이하	200 이하	-	-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280세대 [임대 174세대(17.2%) : 역세권 완화분 269세대 제외] -전용면적 60㎡이하 : 420세대(32.8%) - 장기전세주택94세대 포함 -전용면적 60~85㎡이하 : 560세대(43.8%) - 장기전세주택42세대 포함 -전용면적 85㎡초과 : 300세대(23.4%) - 장기전세주택4세대 포함 ※ 장기전세주택140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2-142(지구순환가로)변: 10m • 소로1-3변: 4m • 기타 도로변: 6m										

주1) 인공지반(데크)설치구역은「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주2) ( )는 장기전세주택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 (2008~2013년)	주택재개발조합	-	-	-

마)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임대	장기전세		
기정	휘경3재정비 촉진구역내	41,652	-	23,138.8	87세대(8.6%)	-	40㎡이하	
					70세대(6.9%)	-	40~50㎡이하	
					17세대(1.7%)	94세대(7.3%)	50~60㎡이하	
					-	42세대(3.3%)	60~85㎡이하	
					-	4세대(0.3%)	85㎡초과	
					전체: 174세대(17.2%)	전체: 140세대(10.9%)	-	

주1)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주2) 임대주택(174세대), 장기전세주택(140세대), ( )는 장기전세주택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1,012,315	-	1,012,315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012,315	-	1,012,315	100.0	
주거지역	소 계	986,139	-	986,139	97.4	
	1종일반주거지역	21,666	-	21,666	2.1	
	2종(7층)일반주거지역	155,460	-	155,460	15.4	
	2종일반주거지역	437,208	-	437,208	43.2	
	3종일반주거지역	152,246	-	152,246	15.0	
	준주거지역	126,892	-	126,892	21.7	
상업지역	소 계	26,176	-	26,176	2.6	
	일반상업지역	26,176	-	26,176	2.6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미관지구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미관지구 (이문로길)	중심지 미관지구	시조사 ~ 이문동	48,000 (24,011)	2,000 (1,168)	양측 12	서고164호 (1982.4.22)	-
기정	②	미관지구 (망우로)	중심지 미관지구	청량리 ~ 망우동	136,800 (39,630)	5,700 (1,650)	양측 12	서고164호 (1982.4.22)	-
기정	③	미관지구 (한천로)	일 반 미관지구	장안동413-1~ 장위동 308-44	176,820 (123,120)	7,510 (5,130)	양측 12	서고164호 (1982.4.22)	-

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신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이문동 241번지일대	70,190	-	70,190	
기정	②	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이문동 305-151번지일대	67,183	-	67,183	
기정	③	회기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휘경동 319-5번지일대	130,561	-	130,561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 기정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8	6,326	144,873	14	2,137	99,248	18	1,654	34,237	16	2,535	11,438
대로	1	145	404	-	-	-	-	-	-	1	145	404
중로	17	2,077	116,631	11	1,759	94,880	5	231	20,707	1	87	1,044
소로	30	4,104	27,838	3	378	4,368	13	1,423	13,530	14	2,303	9,990

- 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8	6,326	145,080	14	2,137	99,248	18	1,654	34,394	16	2,535	11,438
대로	1	145	404	-	-	-	-	-	-	1	145	404
중로	17	2,077	116,631	11	1,759	94,880	5	231	20,707	1	87	1,044
소로	30	4,104	28,045	3	378	4,368	13	1,423	13,687	14	2,303	9,990

※ 변경사유: 1.소로2-2(확폭 8m→9m),소로2-4 일부선형변경에 의한면적증가(증:157㎡)
2. 소로 면적합산 단순오기정정 (증:50㎡)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0	25~30	보조 간선	11,600 (145)	군자동 광로5호선	수유동 중1-47호선	일반 도로		건고시177 (1962.12.8)	
기정	중로	1	9	20~25	보조 간선	4,000 (1,040)	휘경지서앞 중1-8호선	번동98-1 대3-39호선	일반 도로		총고시722 (1936.12.26)	
기정	중로	1	63	20	집산 도로	2,250 (446)	이문동 255-2	석관동 247-1	일반 도로		건고시2493 (1966.6.21)	
기정	중로	1	432	20	집산 도로	375	이문동 291-26번지	이문동 264-3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33	20	집산 도로	463	이문동 86-139번지	이문동 258-25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1	434	20	집산 도로	407	휘경동 150-26번지	이문동 105-18번지	일반 도로		건고46 (1976.4.7)	
기정	중로	2	142	15~20	집산 도로	427 (231)	휘경2동 42-4번지	휘경동 139-27번지	일반 도로		건고46 (1976.4.7)	
기정	중로	1	10	21.3	집산 도로	595	이문동 288-65	휘경동 147-6번지	일반 도로		건고시177 (1962.12.8)	
기정	중로	1	435	20	특수 도로	185	휘경동 147-6번지	휘경동 119-46번지	보행자 도로		건고시177 (1962.12.8)	
기정	중로	1	436	20	집산 도로	375	휘경동 101-10번지	휘경동 194-77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1	365	20	집산 도로	260	휘경동 328-1번지	휘경동 319-9번지	일반 도로		서고 271 (1994.8.11)	
기정	중로	1	437	18~20	집산 도로	307	휘경동 77-7번지	휘경동 255-39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1	18	국지 도로	120	이문동 255-7번지	이문동 255-12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2	15	집산 도로	216	이문동 256-128번지	이문동 164-15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3	15	집산 도로	228	이문동 150-6번지	이문동 256-127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4	15~19	집산 도로	472	이문동 175-31번지	이문동 255-187번지	일반 도로		서고 305 (1992.9.28)	
기정	중로	3	450	12	국지 도로	87	이문동 87-1번지	이문동 89-3번지	일반 도로	-	동고 1994-29 (1994.6.2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13	이문동 85-26번지	이문동 78-6번지	일반 도로	-	서고 2002-143 (2002.05.02)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65	이문동 82-25번지	이문동 78-10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1	3	10~12 (12)	국지 도로	200 (145)	휘경동 154-8번지	휘경동 146-127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1		15~21	집산 도로	273	이문동 304-14번지	이문동 292-178번지	일반 도로		서고 2002-143 (2002.05.02)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62	휘경1동 86-6번지	휘경1동 255-9번지	일반 도로	-	서고 2005-408 (2005.12.22)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262	휘경1동 86-6번지	휘경1동 255-9번지	일반 도로	-		일부선형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	8~15	국지 도로	276 (180)	이문동 264-203번지	이문동 398-8번지	일반 도로		건고 521 (1981.12.31)	
기정	소로	2	12	8~12	국지 도로	300 (220)	이문2동 271-7번지	이문2동 291-67번지	일반 도로		건고 768 (1964.1.24)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83	이문동 251-3번지	이문동 243-8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62	휘경1동 109-1번지	휘경1동 42-9번지	일반 도로	-	서고 2005-408 (2005.12.22)	
변경	소로	2	2	9	국지 도로	62	휘경1동 109-1번지	휘경1동 42-9번지	일반 도로	-		확폭 : (B:8m→9m)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75	휘경동 192-6번지	휘경동 192-8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8	휘경동 259번지	휘경동 244-1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57	휘경동 254번지	휘경동 247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3	휘경동 317-1번지	휘경동 267-128번지	일반 도로	-	서고 2000-242 (2000.8.22)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30	휘경동 336번지	휘경동 338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80	이문동 120-36번지	이문동 354-5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73	이문동 264-420번지	이문동 264-420번지	일반 도로		건고 521 (1981.12.31)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30	휘경동 267-42번지	휘경동 255-40번지	일반 도로	-	건고1997-194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900 (370)	휘경동 192-19번지	휘경동 145-40번지	일반 도로	-	건고1997-194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1	이문동 305-94번지	이문동 305-93번지	일반 도로	-	서고 2002-143 (2002.05.02)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5	이문동 309-11번지	이문동 309-3번지	일반 도로	-	서고 2002-143 (2002.05.02)	
기정	소로	3	11	4	특수 도로	245	이문동 170-130번지	이문동 220-363번지	보행자 전용		서고2007-496 ('08.1.7)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2	4	특수 도로	345	이문동 135-138번지	이문동 170-123번지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3	4	특수 도로	346	이문동 120-35번지	이문동 173-35번지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4	4	특수 도로	248	이문동 304-14번지	이문동 135-117번지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5	2~4	특수 도로	205	이문동 78-7번지	이문동 121-78도	보행자 전용	-	건고1994-116 (1994.4.18)	
기정	소로	3	16	4	특수 도로	250	휘경동 194-77번지	휘경동 167-11번지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8	4	국지 도로	10.7	휘경동 319-22번지	휘경동 319-22번지	일반 도로	-	동고2006-50호 (2006.5.4)	
기정	소로	3	19	4	국지 도로	51	종로 1-365	휘경동 183-113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0-242 (2000.8.22)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23	이문동 240-8번지	이문동 242-53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21	4~8	국지 도로	120	이문동 292-46번지	이문동 292-70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5	4	국지 도로	30	이문동 288-63번지	이문동 288-64번지	일반 도로	-	서고 2002-143 (2002.05.02)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이문동 220-20일원	1,175	-	1,175	서고 2002-211 (2002.6.12)	광장중복결정 (지상부조성)
기정	②	주차장	이문동 306-14	724	-	724	동고-8 (1995.2.24)	

다) 철도 : 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철도	일반 철도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중랑구 망우동 도시계획구역계	청량리역 회기역 망우역 송곡여고	7,230	248,958.3	서고74-154 (74.10.23)	중앙선
기정	②	철도	일반 철도	한강로3가 (용산역)	성북역 도봉구시계	-	25.7km	- (17,118)	건고64 (78.1.29)	경원선
기정	③	철도	일반 철도	이문동 220일대	-	-	-	4,400	건고64 (78.3.29)	신이문역
기정	④	철도	일반 철도	이문동 134, 135번지일대	-	-	-	9,200	서고289 (79.6.30)	이문역
기정	⑤	철도	일반 철도	휘경동 317-101번지일대	-	-	520	18,184	건고64 (78.3.29)	회기역

(2) 공간시설

가) 광장 : 변경없음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광장	-	이문동 220-20일원	1,175	-	1,175	건고 445 (81.12.12)	
기정	②	광장	-	이문동 217-28일원	1,260	-	1,260	서고2007-496 ('08.1.7)	

나) 녹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68-20일원	6,648 (2,696)	-	6,648 (2,696)	서고2007-496 ('08.1.7)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16-12일원	3,790	-	3,79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35-52일원	2,830 (2,619)	-	2,830 (2,619)	서고2007-496 ('08.1.7)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78-7일원	315	-	31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휘경동 194-1일원	2,418	-	2,418	서고2007-496 ('08.1.7)	
기정	⑥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256-303일원	840	-	84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⑦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256-124일원	1,852		1,852	서고2007-496 (2008.01.07)	
기정	⑧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257-48일원	5,600	-	5,60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⑨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292-42일원	1,525	-	1,52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⑩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86-141일원	4,365	-	4,36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⑪	녹지	연결녹지	휘경동 150-9일원	1,315	-	1,31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⑫	녹지	연결녹지	휘경동 140-18일원	3,525	-	3,52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⑬	녹지	연결녹지	휘경동 180-63일원	3,260	-	3,260	서고2007-496 ('08.1.7)	

다)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중앙공원	근린공원	이문동 138-1	12,612	-	12,612	서고2007-496 ('08.1.7)	
변경	②	회기공원	소공원	휘경동 194-28 일원	635.7	(증:11.3)	647	서고2007-496 ('08.1.7)	구역면적의 5%이상확보
기정	③	신이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56-225 일원	1,850	-	1,85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④	해누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56-313 일원	2,005	-	2,00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⑤	새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175-1 일원	4,360	-	4,36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⑥	달누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64-421 일원	1,750	-	1,750	서고2007-496 ('08.1.7)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⑦	천장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57-466 일원	1,997	-	1,997	서고2007-496 ('08.1.7)	
기정	⑧	고황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92-4 일원	1,989	-	1,989	서고2007-496 ('08.1.7)	
기정	⑨	별누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86-36 일원	3,190	-	3,19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⑩	휘경공원	어린이공원	휘경동 165-11 일원	1,900	-	1,90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⑫	아름공원	어린이공원	휘경동 118-10 일원	3,415	-	3,41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⑪	은하수공원	소공원	휘경동 194-42일원	3,529	-	3,529	서고2007-496 ('08.1.7)	
기정	⑬	의릉공원	소공원	이문동 255-116 일원	906	-	906	서고2007-496 ('08.1.7)	
기정	⑭	독구말공원	소공원	이문동 294-2 일원	1,180	-	1,18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⑮	이문공원	소공원	이문동 82-13 일원	600	-	600	서고2007-496 ('08.1.7)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소공원	•면적증가 635.7㎡ → 647㎡	• 구역면적의 5% 이상 확보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휘경동 269-2일원	217	-	217	서고2000-242 (2000.08.29)	
기정	②	공공공지	이문동 82-45일원	240	-	240	서고 1974-108 (1974.08.06)	
기정	③	공공공지	이문동 252-2일원	26	-	26	서고2007-496 ('08.1.7)	
기정	④	공공공지	이문동 255-75일원	8,483	-	8,483	서고2007-496 ('08.1.7)	미래공공부지
기정	⑤	공공공지	이문동 88-24일원	380	-	38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⑥	공공공지	휘경동 104-9일원	1,480	-	1,480	서고2007-496 ('08.1.7)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 열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열공급설비	이문동 138-16일원	11,912	-	11,912	서고2007-496 ('08.1.7)	시설중복결정 - 중앙공원(지하)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동사무소	이문동 120-1번지 일대	1,202	-	1,202	동고 83 (2001.10.27)	이문1동 동사무소
기정	②	공공청사	동사무소	휘경동 135-9번지	803	-	803	동고 107 (1997.11.6)	휘경1동 동사무소
기정	③	공공청사	-	이문동 304-6번지 일대	254	-	254	서고2007-496 ('08.1.7)	건강증진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나)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초등학교	이문동 164-26 일대	15,534	-	15,534	서고 439 (1977.12.19)	
기정	②	학교	고등학교	이문동 385-6 일대	9,573	-	9,573	서고2007-496 ('08.1.7)	
기정	③	학교	초등학교	이문동 87-14 일대	8,000	-	8,000	서고2007-496 ('08.1.7)	

(5) 방재시설

가) 방수설비 : 변경없음

■ 방수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방수설비	휘경동 146-104호	1,319	-	1,319	동고 2002-81 (2002.09.24)	

(6)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 처리시설 : 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이문동 145-4일원	700	-	700	서고2007-496 ('08.1.7)	시설중복결정 - 중앙공원(지하)

19) 신이문 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①	신이문 생활권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241번지 일대	70,190	서고시 2002-211호 (2002. 6.15)

나.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0,190	-	70,190	100.0	
주거지역	소 계	65,144	-	65,144	92.8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10,264	-	10,264	14.6	
	제2종일반주거지역	23,630	-	23,630	33.7	
	제3종일반주거지역	4,580	-	4,580	6.5	
	준주거지역	26,670	-	26,670	38.0	
상업지역	소 계	5,046	-	5,046	7.2	
	일반상업지역	5,046	-	5,046	7.2	

주)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되는 면적(준주거 : 4,775㎡)은 당초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4,526㎡,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249㎡)으로 환원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이문로)	중심지 미관지구	시조사~ 이문동	48,000 (5,021)	2,000 (227)	양측 12	1982.4.22 (서고164호)	
기정	③	미관지구 (한천로)	일반 미관지구	이문동 217-8	280,500 (1,620)	7,510 (140)	양측 12	1982.4.22 (서고164호)	

주) ( )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가) 도로

■ 토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6	1,137	25,244	2	668	14,085	1	83	725	3	386	10,434
대로	1	295	10,096	-	-	-	-	-	-	1	295	10,096
중로	2	668	14,085	2	668	14,085	-	-	-	-	-	-
소로	3	174	1,063	-	-	-	1	83	725	2	91	338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0	25~30	보조 간선	11,600 (295)	군자동 광로5호선	수유동 중1-47호선	일반 도로		1962.12.8 (건고시 177)	
기정	중로	1	9	20~25	보조 간선	4,000 (222)	휘경지서앞 중1-8호선	번동98-1 대3-39호선	일반 도로		1936.12.26 (총고시 722)	
기정	중로	1	63	20	집산 도로	2,250 (446)	이문동 255-2	석관동 247-1	일반 도로		1966.6.21 (건고시 2493)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83	이문동 251-3번지	이문동 243-8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1	4	특수 도로	245 (75)	이문동 170-130번지	이문동 220-363번지	보행자 전용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23 (16)	이문동 240-8번지	이문동 242-53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주) ( )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이문동 220-20일원	1,175	-	1,175	2002.6.12 (서고 2002-211)	광장중복결정 (지상부조성)

다) 철도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②	철도	일반 철도	한강로3가 (용산역)	성북역 도봉구시계	-	25.7km	-	건고64 (78.1.29)	경원선
기정	③	철도	일반 철도	이문동 220일대	-	-	-	4,400	건고64 (78.3.29)	신이문역

(2) 공간시설

가) 광장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광장	-	이문동 220-20일원	1,175	-	1,175	건고 445 (81.12.12)	주차장중복결정 (지하조성)
기정	②	광장	-	이문동 217-28일원	1,260	-	1,260	서고2007-496 ('08.1.7)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공공공지	이문동 252-2일원	26	-	26	서고2007-496 ('08.1.7)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최소개발규모

구 분		면적(㎡)	비 고
간선변	이문로변	150	
	한천로변, 의릉길변	150	
이 면 부		90	

나)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간선변	이문로변	2,000	• 적용예외 - 기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계획구역
	한천로변, 의릉길변	1,000	
이 면 부		600	

주)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다)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획지계획	•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된 2이상의 필지 •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되지 않은 2이상의 필지 • 개별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된 2이상의 필지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 것만 획지로 계획) • 개별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법적 최소대지분할규모이하, 맹지 등)가 필요한 2이상의 필지	
공동개발(규제)	-	
공동개발(권장)	• 적정규모·정형화·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유도 등을 계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구 및 획지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고
기정	①	S1	3,327	이문동 251-5대	330	846	• 획지계획
				이문동 251-7대	516		
기정	②			이문동 251-24대	10	232	• 획지계획
				이문동 254-40대	222		
기정	③			이문동 254-12대	86	106	• 획지계획 - 254-12 획지분할 가능
				이문동 255-19대	20		
기정	-			이문동 251-25대	133	-	
기정	-			이문동 254-1대	248	-	
기정	-			이문동 255-14도	3	-	
기정	-			이문동 255-18대	212	-	
기정	-			이문동 255-20대	132	-	
기정	-			이문동 255-21대	102	-	• 공동개발(권장)
				이문동 255-22대	268	-	
기정	-			이문동 255-23대	142	-	
기정	-			이문동 255-25대	129	-	
기정	-			이문동 255-380대	132	-	
기정	-			이문동 255-398대	43	-	
기정	-			이문동 255-406대	119	-	
기정	-			이문동 255-407대	146	-	
기정	-			이문동 255-408대	172	-	
기정	-			이문동 255-409대	162	-	
기정	-	S2	2,014	이문동 255-43대	7	-	
기정	-			이문동 255-44대	73	-	
기정	-			이문동 255-45대	132	-	
기정	-			이문동 255-46대	76	-	
기정	-			이문동 255-47대	248	-	
기정	-			이문동 255-48대	99	-	
기정	-			이문동 255-49대	116	-	
기정	-			이문동 255-50대	129	-	
기정	-			이문동 255-52대	23	-	
기정	-			이문동 255-53대	10	-	
기정	-			이문동 255-54대	136	-	
기정	-			이문동 255-56대	486	-	
기정	-			이문동 255-201대	96	-	
기정	-			이문동 255-202대	106	-	
기정	-			이문동 255-389대	69	-	
기정	-			이문동 255-421대	208	-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고
기정	-	S3	2,401	이문동 255-27대	208	-	
기정	-			이문동 255-29대	310	-	
기정	-			이문동 255-30종	829	-	
기정	-			이문동 255-64대	136	-	
기정	-			이문동 255-119대	526	-	
기정	-			이문동 255-121대	126	-	
기정	-			이문동 255-411대	136	-	
기정	-			이문동 255-412대	109	-	
기정	-			이문동 255-414도	21	-	
기정	①	S4	1,638	이문동 255-32대	160	911	• 획지계획
				이문동 256-367대	751		
기정	②			이문동 255-33대	16	267	• 획지계획
				이문동 256-23대	79		
				이문동 256-24대	172		
기정	③			이문동 255-34대	37	176	• 획지계획
				이문동 255-128대	139		
기정	④			이문동 255-129대	65	284	• 획지계획
				이문동 256-20대	13		
				이문동 256-26대	206		
기정	-	S5	911	이문동 228-10대	119	-	• 공동개발(권장)
				이문동 246-23대	182	-	
				이문동 246-24대	106	-	
기정	-			이문동 247-1대	147	-	• 공동개발(권장)
				이문동 247-4대	228	-	
				이문동 358-8대	129	-	
기정	①	S6	898	이문동 251-3대	4	411	• 획지계획
				이문동 251-9대	189		
				이문동 251-17대	27		
				이문동 251-18대	99		
				이문동 254-24대	92		
기정	②			이문동 254-39대	125	136	• 획지계획
				이문동 254-41도	11		
기정	-			이문동 254-3전	19	-	
기정	-			이문동 254-4대	332	-	
기정	①	S7	1,501	이문동 256-28대	172	294	• 획지계획
				이문동 256-360대	122		- 256-28 획지분할 가능
기정	②			이문동 256-358대	109	218	• 획지계획
				이문동 256-359대	109		
기정	-			이문동 256-2대	295	-	
기정	-			이문동 256-371대	496	-	
기정	-			이문동 256-373대	198	-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고
기정	①	S8	1,029	이문동 256-363대	93	162	• 획지계획
				이문동 256-364대	69		
기정	②			이문동 255-227대	16	89	• 획지계획
				이문동 255-382대	4		
				이문동 256-361대	69		
기정	③			이문동 255-225대	73	192	• 획지계획
				이문동 255-226대	86		
				이문동 255-432대	6		
				이문동 255-433대	4		
				이문동 256-362대	20		
				이문동 256-374대	3		
기정	-			이문동 255-395도	7	-	
기정	-			이문동 256-13대	129	-	
기정	-			이문동 256-356대	311	-	
기정	-			이문동 256-365대	139	-	
기정	①	S9	460	이문동 255-213대	13	244	• 획지계획
				이문동 256-366대	231		
기정	②			이문동 164-22대	20	216	• 획지계획
				이문동 255-393대	147		
				이문동 357-3구	23		
				이문동 358-3대	26		
기정	①	S10	728	이문동 242-28대	116	420	• 획지계획
				이문동 242-50대	83		
				이문동 242-51대	60		
				이문동 242-53도	60		
				이문동 357-3구	101		
기정	②			이문동 164-6도	23	308	• 획지계획
				이문동 164-10도	2		
				이문동 240-2대	130		
				이문동 357-3구	153		
기정	①	S11	3,728	이문동 238-16대	102	204	• 획지계획
				이문동 238-17대	102		
기정	-			이문동 234-14대	78	-	
기정	-			이문동 234-15대	74	-	
기정	-			이문동 235대	606	-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고
기정	-			이문동 236-7대	79	-	
기정	-			이문동 236-9대	99	-	
기정	-			이문동 236-10대	96	-	
기정	-			이문동 237-138대	3	-	
기정	-			이문동 237-141대	7	-	
기정	-			이문동 238-10대	89	-	
기정	-			이문동 238-11대	79	-	
기정	-			이문동 238-12대	116	-	
기정	-			이문동 238-13대	89	-	
기정	-			이문동 238-14대	99	-	
기정	-			이문동 238-15대	99	-	
기정	-			이문동 238-18대	83	-	
기정	-			이문동 240-2대	1	-	
기정	-			이문동 241대	1,751	-	
기정	-			이문동 357-3구	76	-	
기정	-	S12	491	이문동 234-9대	93	-	
기정	-			이문동 234-10대	78	-	
기정	-			이문동 234-11대	78	-	
기정	-			이문동 234-12대	83	-	
기정	-			이문동 236-3대	83	-	
기정	-			이문동 236-6대	76	-	
기정	-	S13	228	이문동 234-17대	89	-	
기정	-			이문동 234-19대	89	-	
기정	-			이문동 236-2대	50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층
불허용도	A (간선변)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해당하는 획지에 한함) •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B (이면부)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권장용도[1]	1 (간선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2 (이면부)	

주1)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 건폐율계획

구분		건폐율(%)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준주거지역	6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주) 이문로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 용적률계획

위 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300%	360%	400%	
	재개발구역 인접필지				
	이면부	300%	330%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	800%	-	

주) 이문로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 높이계획

위 치		기준높이	최고높이	비 고
간선변	이문로변	50m 이하	60m 이하	
	한천로변	50m 이하	60m 이하	
	의릉길변	-	40m 이하	
이 면 부		-	30m 이하	
특별계획구역1, 2, 3, 4		-	100m 이하	

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선제한배제, 가로구역별 높이 설정

■ 건축물 개발밀도 분류표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SS1	이문로변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600% 이하
			허용용적률	800% 이하
		높이	기준높이	50m 이하
			최고높이	60m 이하
SS2	의릉길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00% 이하
			허용용적률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40m 이하
SS3	이면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00% 이하
			허용용적률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30m 이하

주)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준용.

다)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배치	벽면한계선	• 폐지 • 보행통로확보 1개소 신설(특별계획구역2)	
	건축한계선	• 이문로변, 한천로변 : 3m • 의릉길 : 1m • 이면부 : 1~4m	특별계획구역 별도계획
형태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10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탑상형 권장 • 고층부 탑상형의 경우 고층부의 건폐율은 40%이하 및 장변과 단변의 길이 2분의1 이상	
	1층부 형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하여야 함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로 1층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아니됨(단, 부득이한 경우, 1층부 벽면에 조경 및 벽화처리계획을 제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벽면의 50%이상 • 투시형셔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제 어 기 준	비고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 최소면적 25㎡, 최소폭 5m로 간선변 및 가각부의 정해진 위치에 조성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전구역 : 4개소(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이문로변 한천로변 특별계획구역
	공공공지	• 기정 공공공지 3개소 폐지 •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지 공공공지 조성 : 1개소	
	전면공지	• 한천로변, 이문로변 : 3m • 의릉길 : 2m • 이면부 : 1~6m •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전구역내 도로변
	공개공지	• 서울시 건축조례의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 전면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대지안의 조경	• 서울시 건축조례 제20조의 규정 준용	
통로	공공보행 통로	• 특별계획구역지정에 따른 공동개발로 기존공공보행통로 폐지 • 특별계획구역 2-1과 2-2가 통합개발할시 공공보행통로조성 : 폭원 8m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한천로변 이문로변 의릉길변
(공동)주차출입구	• 차량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 설치 금지 • 이면부에서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일부필지에 지정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전구역
벽면녹화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전구역
생태면적률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에 의해 적용할 것을 권장	전구역
옥외광고물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2004-158호)"기준을 준수 • 재정비 촉진지구 등 광고물 관리계획 준수	전구역
건축물외관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관은 조립식, 무피복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 •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를 사용	전구역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전구역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전구역
야간경관조명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히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권장	전구역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해당필지			사유
				지번	지목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1	이문동 220-226번지 일대	5,753㎡	217-6	도로	1	• 연접부 재정비촉진구역의 공동주택 개발에 대응하고, 신이문역세권의 중심지로서 개발의 촉진 및 정비를 위하여 지정
				220-13	대	53	
				220-14	대	119	
				220-20	대	1,449	
				220-23	답	10	
				220-26	도로	9	
				220-27	대	10	
				220-29	대	344	
				220-209	대	86	
				220-210	대	89	
				220-211	대	83	
				220-212	대	83	
				220-213	대	83	
				220-214	대	27	
				220-223	대	27	
				220-224	대	69	
				220-225	대	66	
				220-226	대	69	
				220-227	대	66	
				220-228	대	73	
				220-229	도로	420	
				220-284	대	63	
				220-285	대	56	
				220-296	도로	1	
				220-302	대	73	
				220-303	대	83	
				220-304	대	73	
				220-305	대	73	
				220-306	대	79	
				220-307	대	76	
				220-308	대	66	
				220-309	대	66	
				220-310	대	20	
				220-314	도로	185	
				220-315	대	22	
				220-317	답	58	
				220-318	대	3	
				220-319	대	6	
				220-322	대	66	
				220-323	대	86	
				220-349	대	109	
				220-350	대	99	
				220-361	도로	6	
				220-363	전	10	
				237-47	대	36	
				237-48	대	83	
				237-49	대	79	
				237-50	대	76	
				237-51	대	83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해당필지			사유
				지번	지목	면적(㎡)	
				237-52	대	83	
				237-53	대	73	
				237-69	도로	306	
				237-135	대	76	
				237-148	구거	20	
				357-5	구거	223	
기정	특별계획구역2-1	이문동 220-124번지 일대	3,908㎡	217-1	대	132	• 연접부 재정비촉진구역의 공동주택 개발에 대응하고, 신이문역세권의 중심지로서 개발의 촉진 및 정비를 위하여 지정
				217-10	대	146	
				217-12	대	219	
				217-13	대	155	
				217-14	대	73	
				217-15	대	73	
				217-17	대	73	
				217-19	대	79	
				217-20	대	79	
				217-21	대	79	
				217-22	도로	149	
				217-25	대	103	
				218-18	대	96	
				218-56	답	20	
				219-9	대	69	
				219-10	대	69	
				219-11	대	79	
				219-12	대	69	
				219-13	대	63	
				219-14	대	83	
				219-34	대	76	
				219-41	도로	110	
				220-3	대	112	
				220-7	대	106	
				220-8	대	28	
				220-60	도로	8	
				220-116	대	93	
				220-117	대	10	
				220-121	도로	27	
				220-123	대	96	
				220-124	대	4	
				220-188	대	73	
				220-189	대	9	
				220-200	대	10	
				220-205	대	79	
				220-207	대	83	
				220-208	대	89	
				220-235	도로	20	
				220-236	대	99	
				220-237	대	3	
				220-325	대	2	
				220-332	대	93	
				220-333	대	83	
				220-334	대	76	
				220-335	대	79	
				220-336	도로	208	
				220-337	대	96	
				220-338	대	93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해당필지			사유
				지번	지목	면적(㎡)	
				220-340	대	48	
				220-352	대	80	
				220-354	대	6	
				220-355	도로	1	
기정	특별계획구역 2-2	이문동 217-8번지 일대	4,542㎡	217-8	대	169	
				217-25	대	205	
				217-27	도로	46	
				217-28	대	271	
				217-31	도로	20	
				220-10	대	192	
				220-60	도로	242	
				220-105	대	94	
				220-106	대	94	
				220-108	도로	134	
				220-109	대	94	
				220-110	대	94	
				220-111	대	74	
				220-112	대	94	
				220-113	대	91	
				220-114	대	94	
				220-115	대	94	
				220-117	대	86	
				220-118	대	96	
				220-119	대	106	
				220-120	대	115	
				220-121	도로	201	
				220-124	대	92	
				220-125	대	96	
				220-126	대	96	
				220-127	대	96	
				220-128	대	100	
				220-129	대	119	
				220-179	대	126	
				220-187	대	6	
				220-189	대	71	
				220-192	대	73	
				220-193	대	66	
				220-196	대	70	
				220-197	대	80	
				220-201	대	76	
				220-202	대	197	
				220-237	대	60	
				220-325	대	77	
				220-326	대	86	
				220-327	도로	40	
				220-354	대	4	
				220-355	도로	9	
				220-356	대	7	
				220-359	대	169	
				220-365	대	20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해당필지			사유
				지번	지목	면적(㎡)	
기정	특별 계획구역3	이문동 237-137번지 일원	4,390㎡	236-12	대	69	• 연접부 재정비촉진구역의 공동주택개발에 대응하고, 신이문역세권의 중심지로서 개발의 촉진 및 정비를 위하여 지정
				236-13	대	86	
				236-14	대	76	
				236-15	대	83	
				236-16	대	86	
				236-17	대	106	
				237-1	대	414	
				237-100	대	66	
				237-101	대	63	
				237-102	대	86	
				237-103	대	86	
				237-104	대	50	
				237-105	대	96	
				237-107	대	139	
				237-108	대	69	
				237-109	대	79	
				237-110	대	116	
				237-111	대	43	
				237-112	대	86	
				237-113	대	66	
				237-114	대	129	
				237-137	대	488	
				237-142	구	31	
				237-143	대	27	
				237-144	대	16	
				237-145	대	50	
				237-149	대	264	
				237-150	도	278	
				237-152	대	100	
				237-153	대	288	
				237-158	대	251	
				237-159	대	122	
				238-1	대	63	
				238-5	대	56	
				238-6	대	93	
				238-7	대	83	
				238-8	대	86	
기정	특별계획구역4	이문동 250-1번지 일대	4,063㎡	243-5	대	20	• 낙후된 시장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 공공성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243-6	대	26	
				243-7	대	76	
				243-8	대	83	
				249-44	도로	40	
				249-45	대	43	
				249-46	대	53	
				249-47	대	16	
				249-50	대	70	
				250-1	대	2,367	
				250-3	대	294	
				251-3	대	136	
				251-17	대	7	
				252-3	대	254	
				252-5	대	129	
				252-6	대	139	
				252-7	대	132	
				358-3	대	178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1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이문동 220-226번지 일대	
면 적			• 5,75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구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6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주차출입구 지정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2(2-1,2-2)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이문동 220-124번지 일대	
면 적			• 8,450㎡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및 이면부 3m	
	벽면한계선		• 특별계획구역 2-1, 2-2를 공동개발시 지정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부에서 차량진출입 금지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공지		• 특별계획구역 2-1에 1개소 지정	
	공공보행통로		• 특별계획구역 2-1, 2-2를 공동개발시 지정된 위치에 8m이상으로 조성 - 개별개발시 2-1구역에서 도로로 조성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3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이문동 237-137번지 일대	
면 적			• 4,390㎡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구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3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주차출입구 지정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4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이문동 250-1번지 일대	
면 적			• 4,063㎡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준용	
	용적률(%)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3m • 이면부 2m~3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부에서 차량진출입 금지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5) 인센티브 항목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2필지 α= 0.1 • 3필지 α= 0.15 • 4필지이상 α= 0.2 (동일소유자는 1필지로 계산, 국공유지는 필지계산에서 제외)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 2필지 α= 0.2 • 3필지이상 α= 0.3
대지분할/대지교환	-		준수시	기준용적률×0.2	• 단, 국공유지 현황도로 분할은 제외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0.2	•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 건축법상 설치의무면적은 제외
	쌈지형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1층부 벽면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물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야간경관조명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건축물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2	• 서울시 보급형옥상녹화기준 준수시
	벽면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0.03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내용 준수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등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생태면적률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 기준 준수시
	신·재생에너지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시설비에 투자할 경우 또는 계획 총 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나)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준높이 완화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시1) - 기준높이×(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 • 저층부(5층, 20m이하) 건폐율 40%이하 조성시 - 기준높이×0.1 • 완화차선 조성시 - 기준높이×0.1	
최고높이 완화2)	• 기부채납 - 기준높이 또는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주1)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설치의무면적을 전부 포함
주2)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구청장)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획지는 제외)
2. 공개공지 · 쌈지형공원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20) 이문 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②	이문 생활권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305-151번지 일대	67,183	서고시 2002-143호 (2002. 4. 30)

나.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7,183	-	67,183	100.0	
주거 지역	소 계	65,681	-	65,681	97.8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2,809	-	22,809	34.0	
	준주거지역	42,872	-	42,872	63.8	
상업 지역	소 계	1,502	-	1,502	2.2	
	일반상업지역	1,502	-	1,502	2.2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시조사~ 이문동	48,000 (1,967)	2,000 (163)	양측 12	1982.4.22 (서고164호)	이문로변

주) ( )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m)	면적(㎡)	노선 수	연장(m)	면적(㎡)	노선 수	연장(m)	면적(㎡)	노선 수	연장(m)	면적(㎡)
합계	11	1,265	18,491	7	1,121	16,886	1	58	1,144	3	86	461
중로	4	726	15,101	3	668	13,957	1	58	1,144	-	-	-
소로	7	539	3,390	4	453	2,929	-	-	-	3	86	461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9	20~25	보조 간선	4,000 (168)	휘경지서앞 중1-8호선	번동98-1 대3-39호선	일반 도로		1936.12.26 (총고시 722)	
기정	중로	1	434	20	집산 도로	407 (58)	휘경동 150-26번지	이문동 105-18번지	일반 도로		1976.4.7 (건고46)	
기정	중로	2	142	15~20	집산 도로	427 (58)	휘경2동 42-4번지	휘경동 139-27번지	일반 도로		1976.4.7 (건고46)	
기정	중로	1	10	21.3	집산 도로	595 (442)	이문동 288-65	휘경동 147-6번지	일반 도로		건고시177 (1962.12.8)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13	이문동 85-26번지	이문동 78-6번지	일반 도로	-	2002.05.02 (서고 2002-143)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65	이문동 82-25번지	이문동 78-10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200	휘경동 154-8번지	휘경동 146-127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75	이문동 304-14번지	이문동 304-2번지	일반 도로	-	2002.05.02 (서고 2002-143)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1	이문동 305-94번지	이문동 305-93번지	일반 도로	-	2002.05.02 (서고 2002-143)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5	이문동 309-11번지	이문동 309-3번지	일반 도로	-	2002.05.02 (서고 2002-143)	
기정	소로	3	5	4	국지 도로	30	이문동 288-63번지	이문동 288-64번지	일반 도로	-	2002.05.02 (서고 2002-143)	

주) ( )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연장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주차장	이문동 306-14	724	-	724	동고-8 (1995.2.24)	

다) 철도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②	철도	일반 철도	한강로3가 (용산역)	성북역 도봉구시계	-	25.7km	-	건고64 (78.1.29)	경원선
기정	④	철도	일반 철도	이문동 134, 135번지일대	-	-	-	9,200	서고289 (79.6.30)	이문역

(4)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35-52일원	2,785 (205)	-	2,785 (205)	서고2007-496 ('08.1.7)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나)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⑩	휘경공원	어린이공원	휘경동 165-11 일원	1,833	-	1,833	서고2007-496 ('08.1.7)	
기정	⑮	이문공원	소공원	이문동 82-13 일원	600	-	600	서고2007-496 ('08.1.7)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공공공지	이문동 82-45일원	240	-	240	1974.08.06 (서고 1974-108)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최소개발규모

구 분		면적(㎡)	비 고
간선변	이문로변	150	
	휘경로변	90	
이면부		90	

나)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간선변	이문로변	2,000	• 적용예외 - 기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계획구역
	휘경로변	1,000	
이면부		600	

주)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다)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획지계획	•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된 2이상의 필지 •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되지 않은 2이상의 필지 • 개별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된 2이상의 필지(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 것만 획지로 계획) • 개별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법적 최소대지분할규모이하, 맹지 등)가 필요한 2이상의 필지	
공동개발(규제)	-	
공동개발(권장)	• 적정규모·정형화·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유도 등을 계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구 및 획지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E1	2,445	이문동 288-4대	265	-	
기정	-			이문동 288-10대	908	-	
기정	①			이문동 288-12대	185	502	• 획지계획
				이문동 288-13대	165		
				이문동 288-14대	152		
기정	②			이문동 288-7대	208	413	• 획지계획
				이문동 288-8대	205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E1	2,445	이문동 288-17대	155	-	
기정	-			이문동 288-18대	86	-	
기정	-			이문동 288-89대	116	-	
기정	-	E2	1,521	이문동 288-20대	111	-	
기정	-			이문동 288-21대	122	-	
기정	-			이문동 288-22대	119	-	
기정	-			이문동 288-25대	129	-	
기정	①			이문동 288-26대	136	265	• 획지계획
				이문동 288-27대	129		
기정	②			이문동 288-68대	116	123	• 획지계획
				이문동 288-69대	7		
기정	③			이문동 288-23대	116	123	• 획지계획
				이문동 288-24대	7		
기정	-			이문동 288-28대	126	-	
기정	-			이문동 288-29대	229	-	
기정	-			이문동 288-30대	98	-	
기정	-			이문동 288-93대	76	-	
기정	-	E3	1,171	이문동 288-32대	125	-	
기정	①			이문동 288-36대	218	292	• 획지계획
				이문동 288-82대	58		
				이문동 288-85대	16		
기정	②			이문동 288-33대	21	91	• 획지계획
				이문동 288-73대	40		
				이문동 363-23대	30		
기정	③			이문동 288-84대	3	195	• 획지계획
				이문동 288-87대	192		
기정	-			이문동 288-37대	181	-	
기정	-			이문동 288-77대	71	-	
기정	-			이문동 288-79대	147	-	
기정	-			이문동 288-80대	8	-	• 공동개발(권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E4	759	이문동 289-1대	545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기정	①			이문동 363-17대	132	214	• 획지계획
				이문동 363-21대	59		
				이문동 363-42대	23		
기정	①	E5	1,897	이문동 305-2대	595	691	• 획지계획
				이문동 368-4대	96		
기정	②			이문동 305-151대	651	694	• 획지계획
				이문동 368-6 대	43		
기정	③			이문동 305-152대	496	512	• 획지계획
				이문동 368-7 대	16		
기정	-	E6	1,288	이문동 304-15대	96	-	• 공동개발(권장)
				이문동 363-2대	105	-	
기정	-			이문동 304-16대	122	-	
기정	-			이문동 304-18대	122	-	
기정	①			이문동 304-19대	122	403	• 획지계획
				이문동 363-5대	264		
				이문동 363-51 대	17		
기정	②			이문동 304-20대	116	228	• 획지계획
				이문동 304-21대	112		
기정	-			이문동 363-7대	112	-	
기정	-			이문동 363-9대	100	-	
기정	-	E7	1,248	이문동 304-22대	132	-	
기정	-			이문동 304-23대	132	-	
기정	-			이문동 304-24대	132	-	
기정	①			이문동 304-25대	132	231	• 획지계획
				이문동 304-26대	99		
기정	②			이문동 304-27대	93	357	• 획지계획
				이문동 304-28대	132		
				이문동 304-29대	132		
기정	-			이문동 304-30대	132	-	
기정	-			이문동 304-31대	132	-	
기정	①	E8	1,249	이문동 288-60대	155	632	• 획지계획
				이문동 288-61대	146		
				이문동 288-65대	331		
기정	-			이문동 288-62대	146	-	
기정	-			이문동 288-63대	145	-	
기정	②			이문동 288-64대	194	326	• 획지계획
				이문동 288-94대	132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①	E9	1,266	이문동 288-50대	129	618	• 획지계획
				이문동 288-51대	116		
				이문동 288-52대	33		
				이문동 288-57대	162		
				이문동 288-58대	178		
기정	-			이문동 288-53대	109	-	
기정	-			이문동 288-54대	126	-	
기정	-			이문동 288-55대	172	-	
기정	-			이문동 288-56대	155	-	
기정	-			이문동 288-71대	86	-	
기정	-	E10	1,620	이문동 288-39대	205	-	
기정	-			이문동 288-40대	208	-	
기정	-			이문동 288-41대	178	-	• 동일소유/합의/기공동개발 : 폐지
기정	-			이문동 288-42대	172	-	• 동일소유/합의/기공동개발 : 폐지
기정	-			이문동 288-43대	162	-	
기정	-			이문동 288-44대	136	-	
기정	-			이문동 288-45대	132	-	
기정	-			이문동 288-46대	136	-	
기정	-			이문동 288-47대	136	-	
기정	-			이문동 288-48대	155	-	
기정	①	E11	1,209	이문동 305-60대	142	284	• 획지계획
				이문동 305-72대	142		
기정	-			이문동 305-59대	192	-	
기정	-			이문동 305-61 대	141	-	• 공동개발(권장)
				이문동 305-71대	142	-	
기정	-			이문동 305-62 대	136	-	• 공동개발(권장)
				이문동 305-70대	142	-	
기정	-			이문동 305-73대	172	-	
기정	-	E12	1,873	이문동 305-3대	132	-	
기정	-			이문동 305-74대	165	-	
기정	-			이문동 305-75대	116	-	
기정	-			이문동 305-76대	112	-	
기정	-			이문동 305-77대	106	-	
기정	-			이문동 305-78대	102	-	
기정	-			이문동 305-79대	99	-	
기정	-			이문동 305-80대	89	-	
기정	-			이문동 305-83대	126	-	
기정	-			이문동 305-85대	123	-	
기정	-			이문동 305-86대	83	-	
기정	-			이문동 305-87대	83	-	
기정	-			이문동 305-88대	83	-	
기정	-			이문동 305-89대	166	-	
기정	-			이문동 305-91대	119	-	
기정	-			이문동 305-92대	93	-	• 공동개발(권장)
				이문동 305-93대	76	-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①	E13	4,021	이문동 305-8대	41	205	• 획지계획
				이문동 305-132대	73		
				이문동 305-138대	91		
기정	②			이문동 305-133대	73	146	• 획지계획
				이문동 305-135대	73		
기정	③			이문동 305-147대	10	109	• 획지계획
				이문동 305-154대	99		
기정	④			이문동 306-8도	19	402	• 획지계획
				이문동 306-10대	107		
				이문동 306-11대	58		
				이문동 309-7대	10		
				이문동 309-18대	10		
				이문동 309-20대	99		
				이문동 309-24대	96		
				이문동 309-26도	3		
기정	⑤			이문동 306-12대	62	146	• 획지계획
				이문동 306-13대	84		
기정	⑥			이문동 309-2대	96	390	• 획지계획
				이문동 309-19대	73		
				이문동 309-21대	10		
				이문동 309-10대	9		
				이문동 309-17대	86		
				이문동 309-25대	10		
				이문동 309-11대	10		
				이문동 309-16대	96		
기정	⑦			이문동 309-3대	7	96	• 획지계획
				이문동 309-23대	89		
기정	⑧	E13	4,021	309-8대	10	140	• 획지계획
				309-9대	1		
				309-22대	99		
				309-27도	30		
기정	⑨			305-95대	83	182	• 획지계획
				305-96대	20		
				305-136대	79		
기정	⑩			305-94대	67	256	• 획지계획
				305-140 대	86		
				305-141대	103		
기정	-			305-63대	111	-	• 공동개발(권장)
				305-69대	129	-	
기정	-			305-64대	104	-	• 공동개발(권장)
				305-68대	119	-	
기정	-			305-65 대	196	-	• 공동개발(권장)
				305-67대	116	-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305-97대	258	-	
기정	-			305-99대	122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기정				305-100대	134		
기정				305-139대	112		
기정	-			305-142대	185	-	• 공동개발(권장)
				306-4대	159	-	
기정	-			306-7대	97	-	
기정	-			306-9대	107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층
불허 용도	A (간선변)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해당하는 획지에 한함) •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관광호텔 제외) •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B (이면부)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권장 용도1)	1 (간선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근린생활시설중 외국어학원, 외국전문 서점·음식점 • 일용품 판매점 중 외국문화관련 악세사리 소매점 용도
	2 (이면부)	

주1)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 건폐율계획

구분		건폐율(%)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주) 이문로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 용적률계획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300%	360%	400%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	800%	-	

주) 이문로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 높이계획

위 치		기준높이	최고높이	비 고
간선변	이문로	50m 이하	60m 이하	
	휘경로	-	40m 이하	
이면부		-	30m 이하	
특별계획구역1,2		-	100m 이하	

■ 건축물 개발밀도 분류표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ES1	이문로변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600% 이하
			허용용적률	800% 이하
		높이	기준높이	50m 이하
			최고높이	60m 이하
ES2	이문로변 (준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
		높이	기준높이	50m 이하
			최고높이	60m 이하
ES3	휘경로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40m 이하
ES4	이면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30m 이하

주)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준용

다)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배치	벽면한계선	• 보행통로 확보가 필요한 지역, 저층부 상업시설 전용몰 형성지역 도로중심에서 3m	
	건축한계선	• 이문로변, 휘경로변 3m • 이면부도로 및 통로개설시 도로중심에서 2~3m	
형태	색채 및 재료	• 폭20m이상 가로에 면한 대지의 신축시 가로변의 기존건물과 형태, 재료, 색채조화 권장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10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탑상형 권장 • 고층부 탑상형의 경우 고층부의 건폐율은 40%이하 및 장변과 단변의 길이 2분의1 이상	
	1층부 형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하여야 함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로 1층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아니 됨 (단, 부득이한 경우, 1층부 벽면에 조경 및 벽화처리계획을 제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벽면의 50%이상 • 투시형셔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5)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제 어 기 준	비고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 최소면적 25㎡, 최소폭 5m로 간선변 및 가각부의 정해진 위치에 조성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전구역 : 11개소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이문로변 휘경로변 특별계획구역
	공공공지	•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개발 및 도로선형변경으로 인한 폐지(5개소) • 외대앞역 역사로 쓰이고 있는 공공공지 일부 폐지 및 공원조성	
	전면공지	• 이문로변, 휘경로변 : 3m • 이면부 : 1~2m •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전구역내 도로변
	공개공지	•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 공지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 전면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대지안의 조경	• 서울시 건축조례 제20조의 규정 준용	
통로	공공보행 통로	• 최소 2m이상(벽면한계선과 연동)	
	보차혼용 통로	• 최소 4m이상	
	보행자 전용통로	• 기존 사도를 보행전용으로 운영	
	보행자 우선도로	• 대학가 가로변 활동 수용공간 조성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공동)주차출입구	• 간선변 연접한 2필지의 공동주차출입 유도하여 간선변 접속 최소화	
주차장 설치방식	• 이면부 영세필지의 공동주차장 설치 유도 • 차량통행이 어려운 4m 도로변 영세필지의 경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적용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에 의해 적용할 것을 권장	
옥외광고물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2004-158호)"기준을 준수	
건축물외관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관은 조립식, 무피복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 •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를 사용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 에너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조명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히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권장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적(㎡)	해당필지			사유
				지번	지목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2	휘경동 161-10대 일원	11,656	146-114	대	97	• 연접부 재정비촉진구역의 공동주택개발에 대응하고, 이문역세권의 중심지로서 개발의 촉진 및 정비를 위하여 지정
				146-43	도	115	
				146-42	도	1,274	
				146-67	구	346	
				154-15	대	333	
				154-18	대	313	
				154-20	대	373	
				154-22	대	147	
				154-23	대	128	
				154-52	도	53	
				154-57	대	5	
				161-10	대	1,080	
				161-11	도	281	
				161-28	대	93	
				161-29	도	56	
				161-2	도	155	
				161-31	대	86	
				161-37	대	194	
				161-38	대	112	
				161-39	대	56	
				161-3	대	106	
				161-40	대	83	
				161-42	대	86	
				161-43	대	83	
				161-44	대	76	
				161-45	대	86	
				161-46	대	93	
				161-47	대	96	
				161-48	대	46	
				161-49	대	60	
				161-50	대	83	
				161-51	대	69	
				161-52	대	83	
				161-53	대	89	
				161-54	대	89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적(㎡)	해당필지			사유
				지번	지목	면적(㎡)	
기정	특별계획 구역2	휘경동 161-10대 일원	11,656	161-55	대	83	• 연접부 재정비촉진구역의 공동주택개발에 대응하고, 이문역세권의 중심지로서 개발의 촉진 및 정비를 위하여 지정
				161-56	대	89	
				161-57	대	112	
				161-58	대	83	
				161-59	대	33	
				161-61	대	26	
				161-62	대	83	
				161-67	대	1	
				161-68	대	3	
				161-6	대	112	
				161-7	대	79	
				161-8	대	129	
				162-10	대	76	
				162-11	대	166	
				162-1	대	109	
				162-2	대	112	
				162-4	도	136	
				162-5	대	102	
				162-6	대	102	
				162-7	대	132	
				162-8	대	89	
				163-10	대	89	
				163-11	대	89	
				163-12	대	79	
				163-13	대	103	
				163-14	도	112	
				163-15	대	36	
				163-16	대	139	
				163-18	대	96	
				163-19	대	30	
				163-20	대	79	
				163-21	대	16	
				163-22	대	33	
				163-23	대	3	
				163-29	대	1	
				163-3	대	93	
				163-4	대	119	
				163-5	도	109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적(㎡)	해당필지			사유
				지번	지목	면적(㎡)	
기정	특별계획 구역2	휘경동 161-10대 일원	11,656	163-6	대	92	• 연접부 재정비촉진구역의 공동주택개발에 대응하고, 이문역세권의 중심지로서 개발의 촉진 및 정비를 위하여 지정
				163-8	대	189	
				163-9	대	106	
				164-1	대	65	
				164-2	대	56	
				165-11	대	264	
				165-12	대	82	
				165-13	대	79	
				165-14	대	83	
				165-15	대	82	
				165-16	대	136	
				165-18	대	40	
				165-19	대	96	
				165-1	대	109	
				165-5	대	30	
				165-6	대	89	
				165-7	대	7	
				165-8	대	106	
				165-9	대	26	
				166-1	대	20	
				166-2	대	10	
				166-3	대	60	
				166-4	도	26	
				166-6	대	50	
				166-7	대	60	
				166-8	대	69	
				167-22	대	6	
				167-25	대	9	
				167-26	대	1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1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동대문구 이문동 77-16번지 일대	
면 적			• 7,950㎡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도로)	
용도지구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 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외대역동길변 : 10m • 휘경로·이면도로변 : 3m • 소공원변 :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공공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우선 조성(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소공원/도로		•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2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161-10번지 일대	
면 적			• 11,656㎡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도로)	
용도지구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 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10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외대역동길변 : 10m • 휘경로·이면도로변 : 3m • 공원변 :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공공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우선 조성(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소공원/도로		•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7) 인센티브 항목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2필지 α= 0.1 • 3필지 α= 0.15 • 4필지이상 α= 0.2 (동일소유자는 1필지로 계산, 국공유지는 필지계산에서 제외)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 2필지 α= 0.2 • 3필지이상 α= 0.3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0.2	•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 건축법상 설치의무면적은 제외
	쌈지형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1층부 벽면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보차혼용통로		준수시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물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야간경관조명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건축물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2	• 서울시 보급형옥상녹화기준 준수시
	벽면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0.03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내용 준수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등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생태면적률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 편람 기준 준수시
	신·재생에너지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시설비에 투자할 경우 또는 계획 총 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나)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준높이 완화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시[1)] - 기준높이×(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 • 저층부(5층, 20m이하) 건폐율 40%이하 조성시 - 기준높이×0.1 • 완화차선 조성시 - 기준높이×0.1	
최고높이 완화[2)]	• 기부채납 - 기준높이 또는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주1)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설치의무면적을 전부 포함
주2)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구청장)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획지는 제외)
2. 공개공지 · 쌈지형공원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21) 회기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①	회기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휘경동 319-5번지 일대	130,561	서고시 2000-242호 (2000.8.30)

나.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0,561	-	130,561	100.0	
주거지역	소 계	126,299	-	126,299	96.7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6,582	-	26,582	20.3	
	제2종일반주거지역	14,058	-	14,058	10.8	
	제3종일반주거지역	25,177	-	25,177	19.3	
	준주거지역	60,482	-	60,482	46.3	
상업지역	소 계	4,262	-	4,262	3.3	
	일반상업지역	4,262	-	4,262	3.3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망우로)	중심지 미관지구	청량리~ 망우동	136,800 (9,585)	5,700 (815)	양측 12	1982.4.22 (서고164호)	
기정	②	미관지구 (이문로)	중심지 미관지구	시조사~ 이문동	48,000 (4,220)	2,000 (380)	양측 12	1982.4.22 (서고164호)	

주) ( )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2	1,384.7	15,868	2	567	9,977	7	616	4,748	3	201.7	1,143
중로	2	567	9,977	2	567	9,977	-	-	-	-	-	-
소로	10	817.7	5,891	-	-	-	7	616	4,748	3	201.7	1,143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365	20	집산 도로	260	휘경동 328-1번지	휘경동 319-9번지	일반 도로		1994.8.11 (서고 271)	
기정	중로	1	371	18~20	집산 도로	307	휘경동 77-7번지	휘경동 255-39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62 (153)	휘경1동 86-6번지	휘경1동 255-9번지	일반 도로	-	2005.12.22 (서고2005-408)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75	휘경동 192-6번지	휘경동 192-8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8	휘경동 259번지	휘경동 244-1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57	휘경동 254번지	휘경동 247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3	휘경동 317-1번지	휘경동 267-128번지	일반 도로	-	2000.8.22 (서고2000-242)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30	휘경동 336번지	휘경동 338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30	휘경동 267-42번지	휘경동 255-40번지	일반 도로	-	(건고1997-194)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900 (140)	휘경동 192-19번지	휘경동 145-40번지	일반 도로	-	(건고1997-194)	
기정	소로	3	18	4	국지 도로	10.7	휘경동 319-22번지	휘경동 319-22번지	일반 도로	-	2006.5.4 (동고2006-50호)	
기정	소로	3	19	4	국지 도로	51	중로 1-365	휘경동 183-113번지	일반 도로	-	2000.8.22 (서고2000-242)	

주) ( )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임

나) 철도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철도	일반 철도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중랑구 망우동 도시계획구역계	청량리역 회기역 망우역 송곡여고	7,230	248,958.3	서고74-154 (74.10.23)	중앙선
기정	②	철도	일반 철도	한강로3가 (용산역)	성북역 도봉구시계	-	25.7km	-	건고64 (78.1.29)	경원선
기정	⑤	철도	일반 철도	휘경동 317-101번지일대	-	-	520	18,184	건고64 (78.3.29)	회기역

(2) 공간시설

가)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휘경동 269-2일원	217	-	217	2000.08.29 (서고2000-242)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간선변	이문로변, 망우로변	2,000	• 적용예외 - 기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계획구역
	휘경일길변	1,000	
이면부, 이면블럭		600	

주)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나)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계 획 기 준	비 고
획지계획	•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된 2이상의 필지 •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되지 않은 2이상의 필지 • 개별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된 2이상의 필지(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 것만 획지로 계획) • 개별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법적 최소대지분할규모이하, 맹지 등)가 필요한 2이상의 필지	
공동개발(규제)	-	
공동개발(권장)	• 적정규모·정형화·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유도 등을 계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구 및 획지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①	H1	2,182	휘경동 335-37대	69	1,123	• 획지계획
				휘경동 339-3대	26		
				휘경동 340-4대	192		
				휘경동 340-7대	69		
				휘경동 340대	767		
기정	②			휘경동 336-1도	27	483	• 획지계획
				휘경동 336-2대	456		
기정	-			휘경동 336-3대	245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336-4대	331	-	
기정	①	H2	3,913	휘경동 333-12차	224	736	• 획지계획
				휘경동 333-5차	311		
				휘경동 333-7차	132		
				휘경동 333-8차	29		
				휘경동 335-35차	40		
기정	②			휘경동 333-3대	139	208	• 획지계획
				휘경동 333-4대	69		
기정	③			휘경동 330대	451	1,048	• 획지계획
				휘경동 331대	557		
				휘경동 332대	40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④			휘경동 328-1대	112	1,921	• 획지계획
				휘경동 328대	30		
				휘경동 329대	1,729		
				휘경동 333-10대	50		
기정	-	H3	6,205	휘경동 319-3대	165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319-13대	430	-	
기정	-			휘경동 319-5대	717	-	• 319-41과 합필
기정	-			휘경동 319-8대	182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319-37대	175	-	
기정	-			휘경동 319-17대	119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기정	-			휘경동 319-39대	1,205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기정	①			휘경동 319-14대	46	212	• 획지계획
				휘경동 319-15대	7		
				휘경동 319-16대	159		
기정	②			휘경동 319-4대	182	265	• 획지계획
				휘경동 319-10대	83		
기정	③			휘경동 319-2대	281	380	• 획지계획
				휘경동 319-40대	99		
기정	④			휘경동 319-12대	337	968	• 획지계획
				휘경동 319-36대	555		
				휘경동 319-38대	76		
기정	⑤			휘경동 319-1대	236	289	• 획지계획
				휘경동 319-55대	53		
기정	⑥			휘경동 319-30대	126	291	• 획지계획
				휘경동 319-34대	139		
				휘경동 319-35대	26		
기정	⑦			휘경동 319-31대	175	317	• 획지계획
				휘경동 319-32대	142		
기정	⑧			휘경동 319-23도	22	290	• 획지계획
				휘경동 319-24대	86		
				휘경동 319-25대	86		
				휘경동 319-26대	96		
기정	⑨			휘경동 319-19대	66	200	• 획지계획
				휘경동 319-23도	28		
				휘경동 319-28대	16		
				휘경동 319-29대	76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H4	4,920	휘경동 183-112대	146	-	• 공동개발(권장)
	-			휘경동 183-425대	146	-	
기정	-			휘경동 183-185대	205	-	
기정	-			휘경동 183-186대	202	-	
기정	-			휘경동 183-432대	132	-	• 공동개발(권장)
	-			휘경동 183-433대	112	-	
기정	-			휘경동 320-3대	153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기정	-			휘경동 320-4대	129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320-5대	152	-	
기정	①			휘경동 320-6대	357	559	• 획지계획
				휘경동 320-7대	202		
기정	②			휘경동 191-36대	62	1,610	• 획지계획
				휘경동 321-27대	205		
				휘경동 322-2대	1,280		
				휘경동 322-39대	30		
				휘경동 322-43대	33		
				휘경동 322-4대	114		
기정	③			휘경동 320-2대	159	178	• 획지계획
				휘경동 320-21대	18		
				휘경동 320-24대	1		
기정	④			휘경동 183-110대	165	215	• 획지계획
				휘경동 321-14대	50		
기정	-			휘경동 321-7대	228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기정	-			휘경동 321-25대	245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기정	-			휘경동 321-26대	245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321-57대	149	-	
기정	-	H5	3,708	휘경동 183-113대	121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91-28대	119	-	
기정	①			휘경동 191-2대	76	155	• 획지계획
				휘경동 191-10대	79		
기정	-			휘경동 191-3대	284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 191-33과 합필
기정	-			휘경동 191-4대	433	-	
기정	-			휘경동 191-5대	1,539	-	
기정	-			휘경동 191-7대	251	-	
기정	-			휘경동 191-20대	112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91-32대	142	-	
기정	-			휘경동 191-21대	109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 191-33번지 191-3과 합필
기정	-			휘경동 191-22대	112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91-23대	212		
				휘경동 191-29대	119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H6	936	휘경동 183-143대	202	-	
기정	-			휘경동 183-144대	202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 191-17번지와 합필
기정	-			휘경동 191-18대	251	-	
기정	-			휘경동 191-19대	281	-	
기정	-	H7	1,191	휘경동 183-115대	152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188대	155	-	
기정	-			휘경동 183-116대	76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195대	73	-	
기정	①			휘경동 183-167대	145	290	• 획지계획
				휘경동 183-168대	145		
기정	-			휘경동 183-169대	145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170대	145	-	
기정	-			휘경동 183-193대	155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 183-194번지와 합필
기정	-	H8	2,409	휘경동 183-117대	146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163대	145	-	
기정	-			휘경동 183-121대	149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183대	152	-	
기정	-			휘경동 183-122대	153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91-31대	155	-	
기정	-			휘경동 183-123대	152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201대	228	-	
기정	-			휘경동 183-125대	208	-	
기정	①			휘경동 183-126대	119	238	• 획지계획 - 191-1번지와 합필
				휘경동 183-200대	119		
기정	-			휘경동 183-164대	145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165대	145	-	
기정	-			휘경동 183-190대	162	-	
기정	-			휘경동 191-11대	231	-	
기정	-	H9	2,437	휘경동 183-128대	189	-	
기정	-			휘경동 183-129대	185	-	
기정	-			휘경동 183-130대	126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196대	126	-	
기정	-			휘경동 183-131대	116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172대	132	-	
기정	-			휘경동 183-132대	119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155대	132	-	
기정	-			휘경동 183-133대	126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199대	122	-	
기정	-			휘경동 183-134대	248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 183-208번지와 합필
기정	-			휘경동 183-147대	252	-	
기정	-			휘경동 183-156대	112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기정	-			휘경동 183-206대	102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207대	112	-	
기정	-			휘경동 183-209대	112	-	• 공동개발(권장) : 폐지 - 183-208번지 183-134번지와 합필
기정	-			휘경동 183-211대	126	-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H10	1,143	휘경동 183-135대	112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202대	112	-	
기정	-			휘경동 183-139대	106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189대	109	-	
기정	-			휘경동 183-140대	195	-	
기정	-			휘경동 183-141대	179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197대	112	-	
기정	-			휘경동 183-203대	112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183-204대	106	-	
기정	①	H11	1,232	휘경동 317-106대	29	343	• 획지계획
				휘경동 317-28대	245		
				휘경동 317-33대	42		
				휘경동 317-39대	2		
				휘경동 317-71대	23		
				휘경동 317-72대	2		
기정	②			휘경동 317-105대	210	889	• 획지계획
				휘경동 317-11대	611		
				휘경동 317-12대	3		
				휘경동 317-1대	38		
				휘경동 319-53구	24		
				휘경동 319-58구	3		
기정	①	H12	481	휘경동 267-71대	6	108	• 획지계획
				휘경동 267-73대	102		
기정	-			휘경동 267-72대	145	-	
기정	-			휘경동 267-74대	112	-	
기정	-			휘경동 267-75대	116	-	
기정	-	H13	2,305	휘경동 267-80대	112	-	
기정	-			휘경동 267-81대	136	-	
기정	-			휘경동 267-101대	116	-	
기정	-			휘경동 267-106대	1,088	-	
기정	-			휘경동 267-117대	368	-	
기정	①			휘경동 267-120대	285		• 획지계획
				휘경동 267-121대	39		
기정	②			휘경동 267-78대	39		• 획지계획
				휘경동 267-79대	122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기정	-	H14	14,084	휘경동 262-1대	393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264-11대	236	-	
기정	-			휘경동 262-2대	231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262-3대	202	-	
기정	-			휘경동 264-1대	189	-	• 공동개발(권장)
				휘경동 269-9대	168	-	
				휘경동 269-18대	146	-	
기정	-			휘경동 264-10대	331	-	
기정	-			휘경동 266-6대	1,334	-	
기정	①			휘경동 267-5대	185	965	• 획지계획
				휘경동 267-115대	780		
기정	②			휘경동 267-8대	150	2,552	• 획지계획
				휘경동 267-9대	2,402		
기정	③			휘경동 262-4대	331	2,683	• 획지계획
				휘경동 262-5대	367		
				휘경동 262-6대	347		
				휘경동 262-7대	357		
				휘경동 262-8대	443		
				휘경동 264-2대	264		
				휘경동 267-1대	83		
				휘경동 267-7대	347		
				휘경동 267-142대	144		
기정	④			휘경동 265-1대	66	265	• 획지계획
				휘경동 265-11대	43		
				휘경동 265-2대	106		
				휘경동 265-9대	50		
기정	⑤			휘경동 264-3대	215	235	• 획지계획
				휘경동 264-9대	20		
기정	-			휘경동 267-10주	2,039	-	
기정	-			휘경동 267-11대	2,115	-	
기정	-	H15	3,043	휘경동 192-5대	3,043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	도면표시	건층
불허용도	A (간선변)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해당하는 획지에 한함) •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B (이면부)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권장용도1)	1 (간선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2 (이면부)	

주1)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건폐율(%)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준주거지역	6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주) 이문로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 용적률 계획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및 이면부	300%	360%	400%	
	이면블럭	300%	330%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	800%	-	

주) 이문로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 높이 계획

위 치		기준높이	최고높이	비 고
간선변	이문로변	50m 이하	60m 이하	·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정 준수
	망우로변	80m 이하	96m 이하	
	휘경일길변	-	40m 이하	
이면부, 이면블럭		-	30m 이하	
특별계획구역 2,3		-	80m 이하	
특별계획구역 4			120m 이하	
특별계획구역 5			60m 이하	

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선제한배제, 가로구역별 높이 설정

■ 건축물 개발밀도 분류표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HS1	이문로변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600% 이하
			허용용적률	800% 이하
		높이	기준높이	50m 이하
			최고높이	60m 이하
HS2	망우로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
		높이	기준높이	80m 이하
			최고높이	96m 이하
HS3	휘경일길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40m 이하
HS4	이면부 (준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30m 이하
HS5	이면블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330% 이하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30m 이하
HS6	이면부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00% 이하
			허용용적률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30m 이하

주)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준용

■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배치	벽면한계선	• 신규로 지정되는 특별계획구역내 벽면한계선 일부 폐지	
	건축한계선	• 회기역사 동측 중로 1-437호선변 추가지정 - 도로중심선 기준 양측 12.5m - 총 폭원 25m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10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탑상형 권장 • 고층부 탑상형의 경우 고층부의 건폐율은 40%이하 및 장변과 단변의 길이 2분의1 이상	
	1층부 형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하여야 함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로 1층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아니됨(단, 부득이한 경우, 1층부 벽면에 조경 및 벽화처리계획을 제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벽면의 50%이상 • 투시형 셔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제 어 기 준	비고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 최소면적 25㎡, 최소폭 5m로 간선변 및 가각부의 정해진 위치에 조성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전구역 : 5개소(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공공공지	• 차량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시설변경 감) 18㎡	
	전면공지	• 이문로, 망우로변 : 3m • 휘경일길변 : 2~4m • 이면부 : 1~3m	
	공개공지	•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전면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침상형 공지	• 좌동(변경없음)	
	대지안의 조경	• 서울시 건축조례 제20조의 규정 준용	
통로	공공보행 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 전구간 : 6개소(폭6m이상,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 특별계획구역내 도로신설에 따라 1개소 폐지	
	보행자 우선도로	• 특별계획구역지정으로 1개소 폐지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공동)주차출입구	•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일부필 지정	
주차장 설치방식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에 의해 적용할 것을 권장	
옥외광고물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서울시고시2004-158호)"기준을 준수	
건축물외관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관은 조립식, 무피복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 •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를 사용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조명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히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권장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해당필지			사 유
				지번	지목	면적(㎡)	
기정	특별계획 구역1	휘경동 267-61외 38번지	1,862	255-16	대	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42호 (2000.8.22)로 구역지정
				255-23	구	7	
				255-24	구	18	
				255-25	대	141	
				267-6	대	114	
				267-20	대	61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해당필지			사 유
				지번	지목	면적(㎡)	
기정	특별계획 구역1	휘경동 267-61외 38번지	1,862	267-25	대	9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42호 (2000.8.22)로 구역지정
				267-26	대	106	
				267-27	대	60	
				267-28	대	21	
				267-31	대	60	
				267-43	대	2	
				267-44	대	15	
				267-45	대	8	
				267-46	대	53	
				267-47	대	23	
				267-48	대	13	
				267-49	대	23	
				267-50	대	83	
				267-51	대	37	
				267-52	대	69	
				267-53	대	46	
				267-54	대	20	
				267-55	대	20	
				267-56	대	79	
				267-57	대	79	
				267-58	대	63	
				267-59	대	7	
				267-60	대	26	
				267-61	대	178	
				267-62	대	83	
				267-92	대	7	
				267-94	대	12	
				267-95	대	60	
				267-96	대	13	
				267-133	대	17	
				267-141	대	8	
				319-53	구	130	
				319-54	구	2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해당필지			사 유
				지번	지목	면적(㎡)	
기정	특별계획 구역2	휘경동 244번지 일대	4,726	192-1	대	552	•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개별건축시 주변 건축물의 붕괴의 우려가 있는 등 공동개발이 필요하고 당초 구역 및 서측 구역(변경)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원활한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변경
				192-6	대	212	
				192-7	대	142	
				192-8	대	112	
				192-9	대	129	
				192-10	대	146	
				192-11	대	162	
				192-12	대	152	
				192-13	대	155	
				192-14	대	146	
				244-1	대	1,976	
				255-3	도	148	
				255-14	대	16	
				255-29	구	100	
				259	대	142	
				260	대	112	
				261-1	대	136	
				261-3	대	175	
				261-4	대	13	
기정	특별계획 구역3	휘경동 258번지 일대	3,352	246	대	536	• 연접부 촉진구역의 공동주택 개발에 대응하고, 회기역세권의 중심지로서 개발의 촉진 및 정비를 위하여 지정
				246-1	대	142	
				247	대	314	
				254	대	83	
				255	대	430	
				255-9	구	120	
				256	대	205	
				257	대	175	
				257-1	대	13	
				258	대	1,334	
기정	특별계획 구역4 (5,991)	휘경동 345-2 일대 (이문로변)	4,574	335-2	대	24	
				335-36	대	25	
				336-5	대	291	
				336-6	대	284	
				336-7	대	377	
				336-8	대	195	
				336-9	대	171	
				336-31	대	26	
				336-32	대	390	
				340-1	대	222	
				340-2	대	96	
				340-8	종	10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해당필지			사 유
				지번	지목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4 (5,991)	휘경동 345-2 일대 (이문로변)	4,574	340-9	종	79	• 철도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진입부로서 상징적 의미를 제공
				340-10	대	169	
				340-12	대	109	
				340-13	대	63	
				341-1	대	119	
				342-0	대	109	
				342-2	대	60	
				343-0	대	581	
				343-1	대	56	
				343-6	대	248	
				343-8	대	175	
				343-9	대	122	
				343-13	대	69	
				343-14	대	220	
				343-16	대	56	
				343-18	대	192	
				343-28	대	20	
				345-1	대	16	
		휘경동 312-17 일대 (망우로변) (공원조성)	1,417	312-17	대	180	• 망우로변 세장형필지와의 공동개발을 통하여 공원 조성 등 적극적 공공기여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312-18	대	139	
				312-34	대	142	
				312-35	대	142	
				312-36	대	142	
				312-37	대	129	
				312-38	대	1	
				312-269	대	23	
				312-275	대	10	
				312-288	대	33	
				312-296	대	200	
				317-33	대	13	
				317-35	대	23	
				317-36	대	13	
				317-42	대	48	
				317-75	대	13	
				317-98	대	13	
				317-103	대	106	
				317-107	대	15	
				317-109	대	20	
				317-110	대	12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해당필지			사 유
				지번	지목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5	휘경동335-18번지 일대	5,921	77-43	구	146	•철도변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도모
				334	대	20	
				334-2	대	112	
				334-3	전	48	
				334-4	대	59	
				334-6	대	16	
				334-7	대	86	
				334-8	대	86	
				334-9	대	76	
				334-10	대	7	
				334-12	대	69	
				334-13	대	139	
				334-14	대	16	
				334-15	대	81	
				334-16	대	96	
				334-17	대	38	
				335	대	338	
				335-1	대	86	
				335-3	대	129	
				335-4	대	129	
				335-5	대	172	
				335-6	대	60	
				335-7	대	145	
				335-8	대	60	
				335-9	대	83	
				335-10	대	60	
				335-11	대	79	
				335-12	대	93	
				335-13	대	60	
				335-14	대	16	
				335-15	대	301	
				335-17	대	63	
				335-18	대	298	
				335-19	대	83	
				335-20	대	63	
				335-21	대	96	
				335-22	대	63	
				335-23	대	225	
				335-24	대	96	
				335-26	대	222	
				335-27	대	122	
				335-28	대	106	
				335-29	대	89	
				335-30	대	79	
				335-31	대	212	
				335-32	대	26	
				335-33	대	93	
				335-38	대	8	
				336	대	324	
				336-1	도	7	
				336-2	대	1	
				338	대	142	
				339	대	211	
				340-3	대	99	
				340-5	대	165	
				340-6	대	122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17호(2005.10.20)로 고시된 세부개발계획 준용

■ 특별계획구역2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 colspan="3">위 치</td><td>• 휘경동 244번지 일대</td><td></td></tr>
<tr><td colspan="3">면적</td><td>• 4,726㎡</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td><td>• 준주거지역</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구</td><td>-</td><td></td></tr>
<tr><td colspan="3">공공시설계획</td><td>•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 (지침도 참조)</td><td></td></tr>
<tr><td rowspan="8">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td><td rowspan="2">용도</td><td>불허용도</td><td>•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td><td rowspan="2"></td></tr>
<tr><td>권장용도</td><td>•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60% 이하</td><td></td></tr>
<tr><td rowspan="3">용적률</td><td>기준 용적률(%)</td><td>• 300% 이하</td><td rowspan="3"></td></tr>
<tr><td>허용 용적률(%)</td><td>• 360% 이하</td></tr>
<tr><td>상한 용적률(%)</td><td>•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td></tr>
<tr><td rowspan="3">건축물 높이</td><td>기준높이</td><td>-</td><td rowspan="3"></td></tr>
<tr><td>최고높이</td><td>• 80m 이하</td></tr>
<tr><td>최고높이 완화</td><td>•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td></tr>
<tr><td>배치</td><td colspan="2">건축한계선</td><td>• 휘경일길변 : 3m
• 이면도로변 : 2m</td><td></td></tr>
<tr><td colspan="3">건축물 형태</td><td>• 고층부 탑상형 권장</td><td></td></tr>
<tr><td colspan="3">교통처리계획</td><td>•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td><td></td></tr>
<tr><td rowspan="2">기타에 관한 사항</td><td colspan="2">전면공지</td><td>•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td><td></td></tr>
<tr><td colspan="2">쌈지형 공지</td><td>• 지정된 위치에 1개소 지정(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td><td></td></tr>
</table>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3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휘경동 258번지 일대	
면적			• 3,352㎡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구역내 (연장 25m, 면적 300㎡)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8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휘경일길변 : 3m • 이면도로변 :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1개소 지정(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4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휘경동 343번지 일대	
면적			• 5,991㎡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사업시행 가시화시 변경검토)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구역내 (연장 120m, 면적 1,430㎡)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20%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 공동개발에 따라 망우로변 세장형 필지 공원조성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12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이문로변 : 3m • 교차로 가각부 : 1~15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주차출입구 지정 • 중앙차로 노선설계시 가감속차선 확보를 위해 공원일부 도로로 시설변경 (사업시행 가시화시 변경 검토)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1개소 지정(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주) 용도지역 상향은 망우로변 세장형 필지와 공동개발을 전제로 함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5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휘경동 335-18번지 일대	
면적			• 5,921㎡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구역내 (연장 20m, 면적 237㎡)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0%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B	
		권장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	
	용적률	기준 용적률(%)	• 190%	
		상한 용적률(%)	• 230%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준용)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6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이문로변 : 3m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1개소 지정(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5) 인센티브 항목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2필지 α= 0.1 • 3필지 α= 0.15 • 4필지이상 α= 0.2 (동일소유자는 1필지로 계산, 국공유지는 필지계산에서 제외)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5α	• 2필지 α= 0.2 • 3필지이상 α= 0.3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0.2	•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 건축법상 설치의무면적은 제외
	쌈지형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침상형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침상형구조 α=0.8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1층부 벽면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α=0.5 • 개방형구조 α=1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건축물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야간경관조명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건축물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2	• 서울시 보급형옥상녹화기준 준수시
	벽면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0.03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내용 준수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등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생태면적률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 편람 기준 준수시
	신·재생에너지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시설비에 투자할 경우 또는 계획 총 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나)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준높이 완화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시1) - 기준높이×(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 • 저층부(5층, 20m이하) 건폐율 40%이하 조성시 - 기준높이×0.1 • 완화차선 조성시 - 기준높이×0.1	
최고높이 완화2)	• 기부채납 - 기준높이 또는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주1)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설치의무면적을 전부 포함
주2)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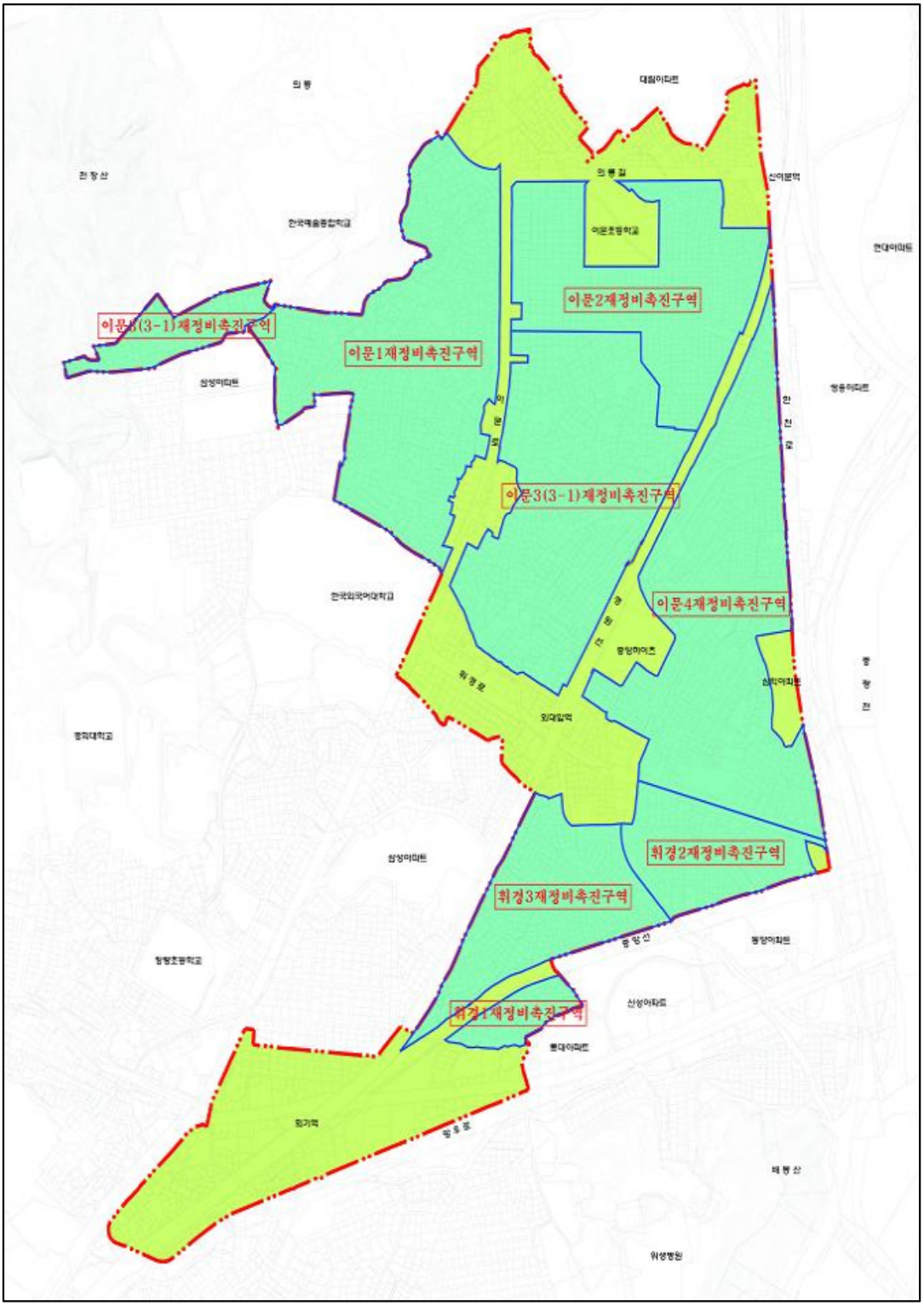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구청장)

1.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항(획지는 제외)
2. 공개공지 · 쌈지형공원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4.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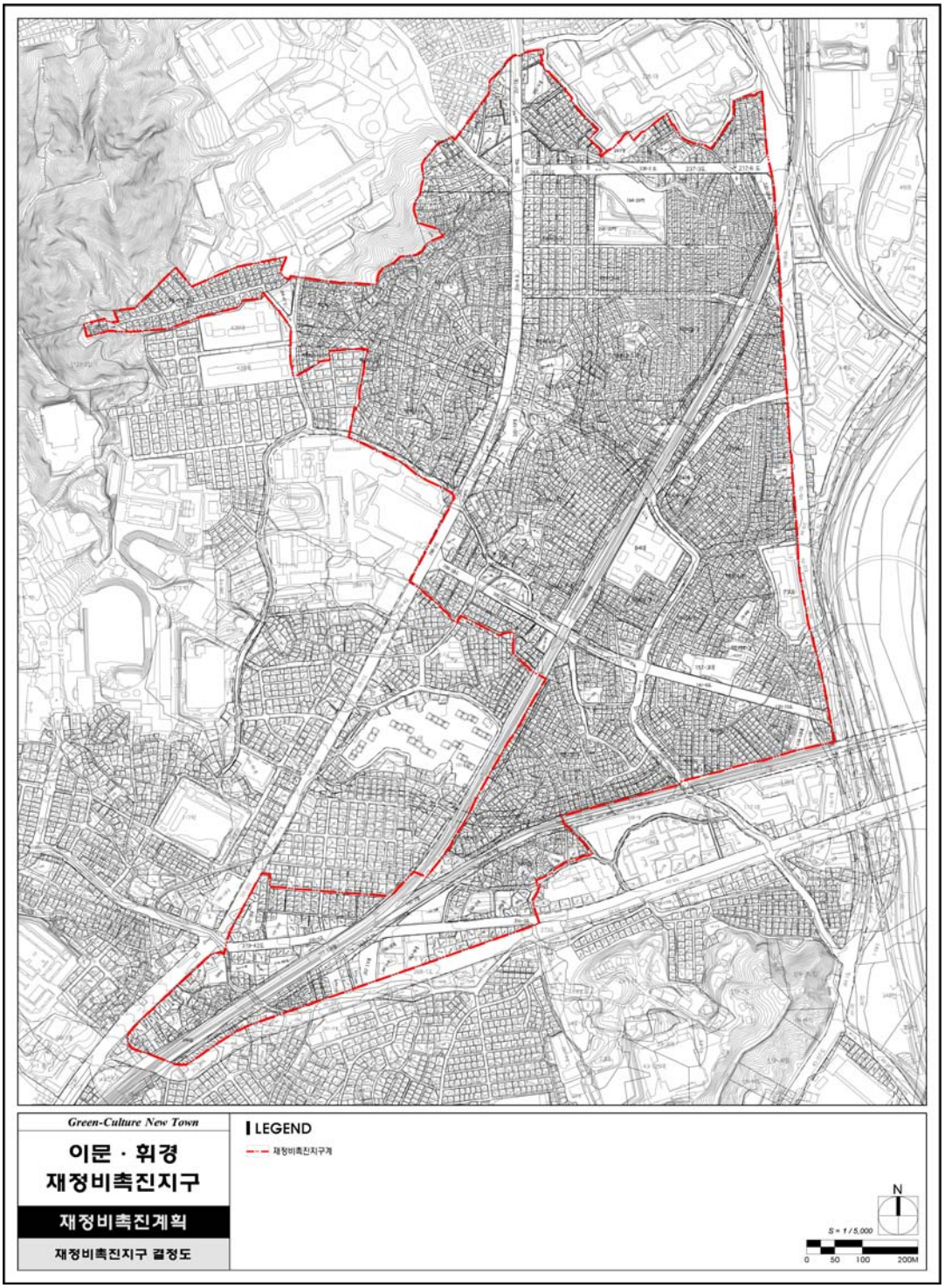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과(☎ 2171-2699)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2127- 4940~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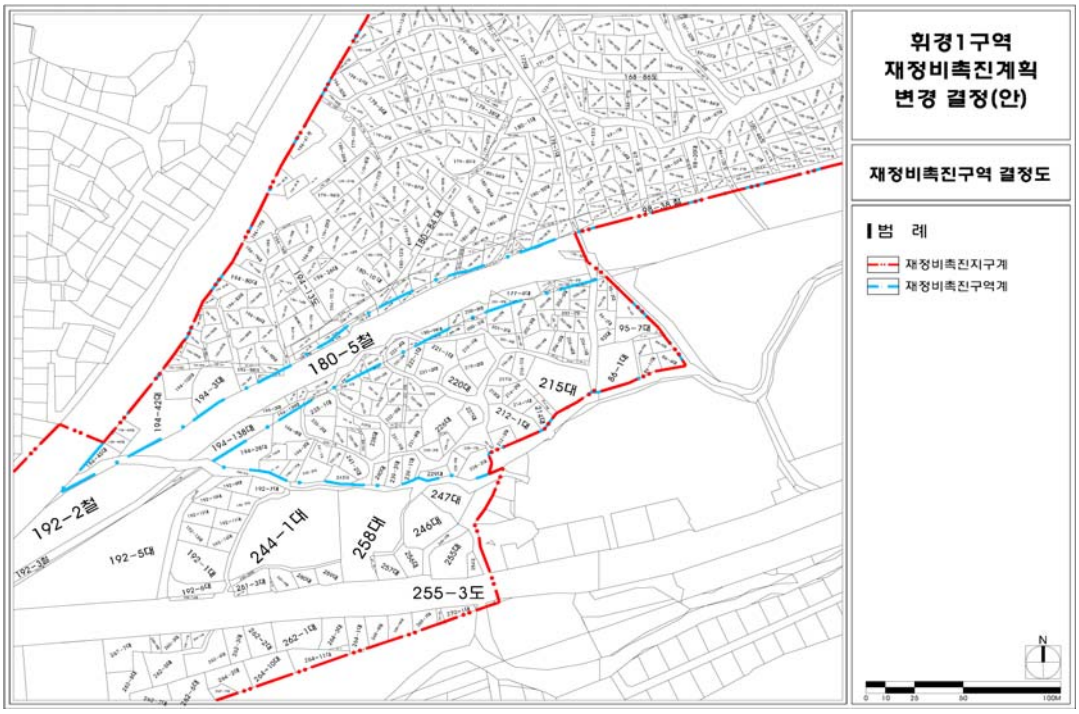
[지형도면]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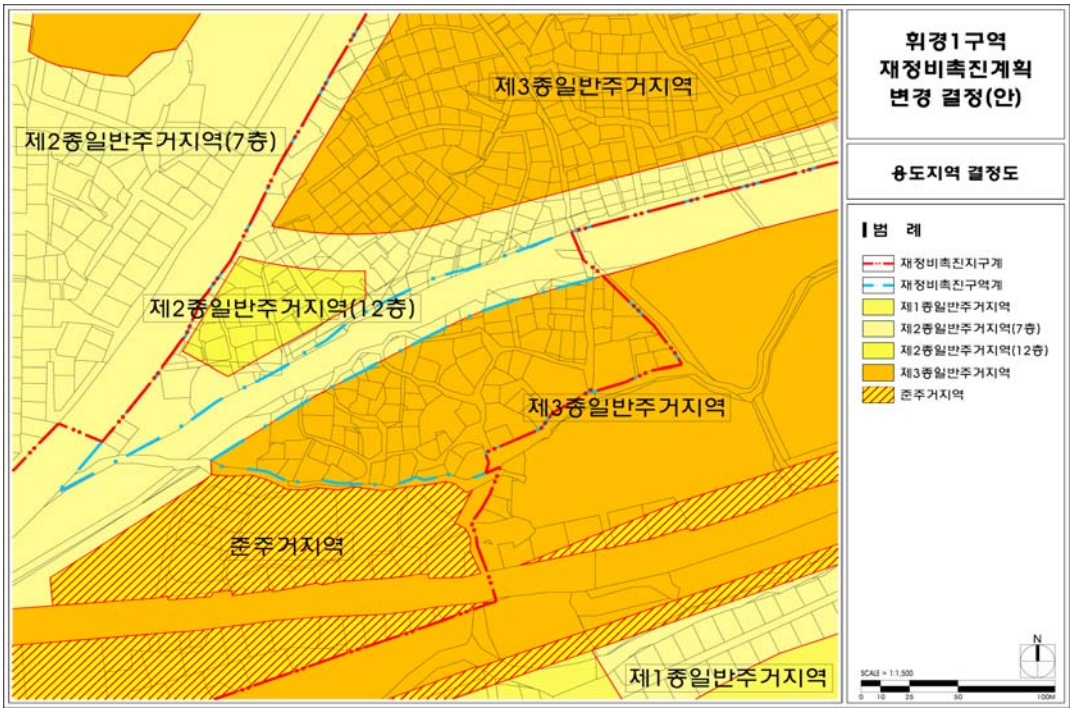


□ 휘경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휘경1구역)



- 용도지역 결정도(휘경1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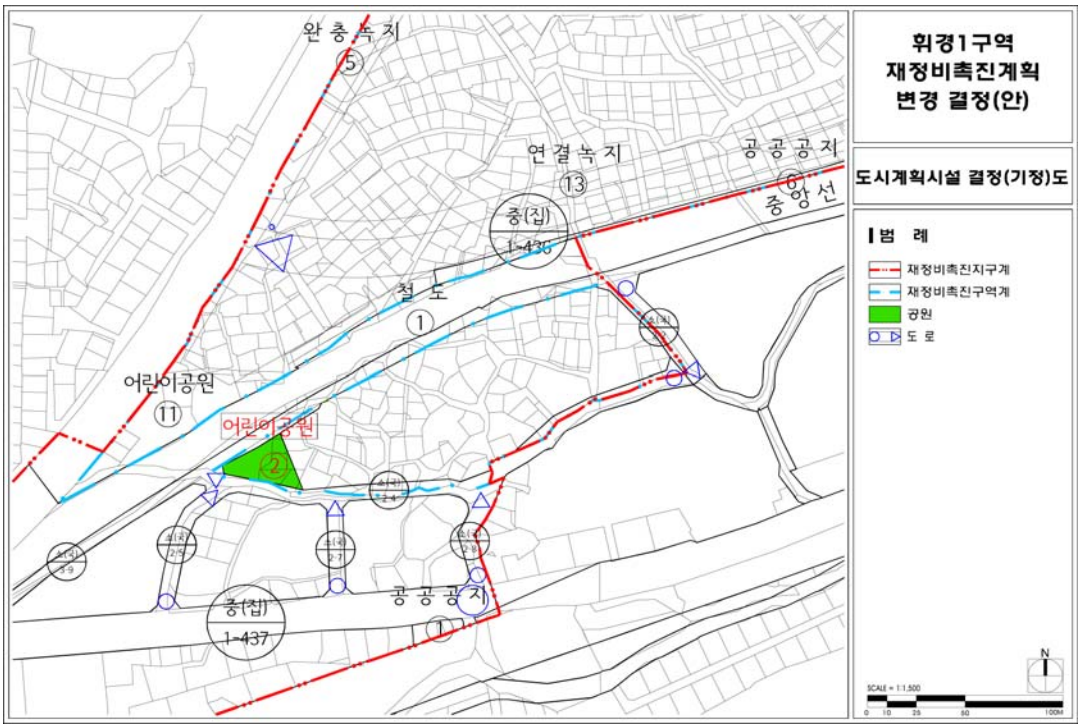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기정)(휘경1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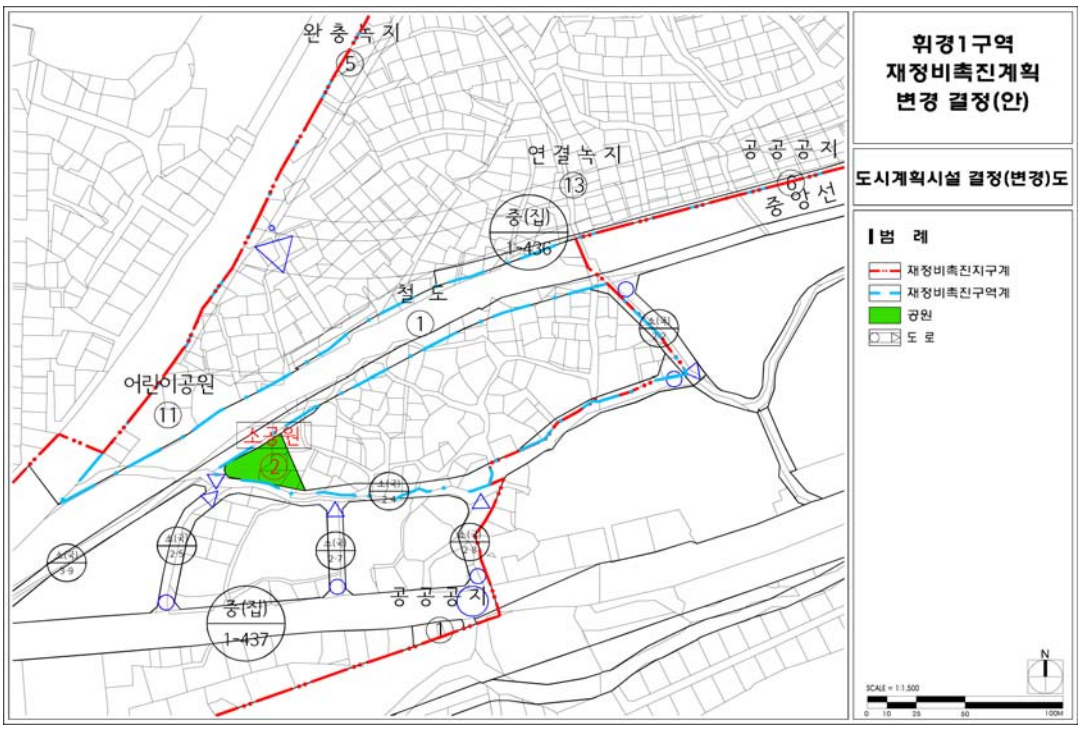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휘경1구역)



-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휘경1구역)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휘경1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99호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고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단위 : 천원)

연 번	회 계 별	예 산 액
계		20,976,455,530
1	일 반 회 계	14,628,590,700
2	기타특별회계	5,504,364,830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69,819,000
	(2) 교통사업특별회계	1,081,081,000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4,800,000
	(4) 주택사업특별회계	774,067,557
	(5) 도시개발특별회계	994,102,000
	(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9,935,229
	(7)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57,000,000
	(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9,800,000
	(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4,760,044
	(10)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49,000,000
3	공기업특별회계	843,500,000
	(11) 지역개발기금	500,000
	(12) 수도사업특별회계	843,000,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 - 400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호로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호(2009.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2호(2011.7.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된 남산1근린공원에 대하여, 2011년 제17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건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시설 보완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2.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461번지 일대
3. 면 적 : 604,178㎡
4.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2115-7589)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시설과(☎3783-5972).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일대)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604,178.00	84,455.18	21	9,994.20	47,175.60	207	604,178.00	84,455.18	22	9,689.08	47,365.72	207	
기반시설	소 계	76,587.07	41,087.07				33	76,587.07	41,087.07				33	
	도 로	66,801.00	31,301.00					66,801.00	31,301.00					
			(35,500.00)						(35,500.00)					
	광 장	9,786.07	9,786.07				(33)	9,786.07	9,786.07				(33)	
조 경 시 설		957.29	957.29				7	957.29	957.29				7	
유 희 시 설		0.00	0.00				0	0.00	0.00				0	
휴 양 시 설		5,863.40	5,863.40	1	64.17	64.17	105	5,863.40	5,863.40	1	64.17	64.17	105	
교 양 시 설		11,559.95	9,888.46	7	5,422.78	29,113.39	3	11,559.95	9,888.46	7	5,422.78	29,113.39	3	
운 동 시 설		2,882.33	2,882.33				24	2,882.33	2,882.33				24	
편 익 시 설		23,190.32	23,190.32	12	4,388.00	17,602.49	35	23,190.32	23,190.32	13	4,082.88	17,792.61	35	연면적(증) 190.12㎡
관 리 시 설		586.31	586.31	1	119.25	395.55		586.31	586.31	1	119.25	395.55		
녹지 및 기타		482,551.23						482,551.23						
시 설 율 (법정 40%)		(84,455.18 / 604,178.00) x 100 = 13.97%						(84,455.18 / 604,178.00) x 100 = 13.97%						
건 폐 율 (법정 20%)		(9,994.20 / 604,178.00) x 100 = 1.65%						(9,689.08 / 604,178.00) x 100 = 1.60%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604,178.00	84,455.18		21	9,994.20	47,175.60	207			604,178.00	84,455.18		22	9,689.08	47,365.72	207	
기반시설	소계			76,587.07	41,087.07					33			76,587.07	41,087.07					33	
	도로			66,801.00	31,301.00								66,801.00	31,301.00						
					(35,500.00)									(35,500.00)						
	광장	가		9,786.07	9,786.07					33	가		9,786.07	9,786.07					33	
		가-1	중구 남창동 205-4	(607.93)	(607.93)					(2)	가-1	중구 남창동 205-4	(607.93)	(607.93)					(2)	
		가-2	중구 남창동 205-4	(410.88)	(410.88)					(1)	가-2	중구 남창동 205-4	(410.88)	(410.88)					(1)	
		가-3	중구 회현동1가 100-115	(69.32)	(69.32)					(1)	가-3	중구 회현동1가 100-115	(69.32)	(69.32)					(1)	
		가-4	중구 회현동1가 100-115	(3,210.68)	(3,210.68)						가-4	중구 회현동1가 100-115	(3,210.68)	(3,210.68)						
		가-5	중구 회현동1가 100-115	(296.17)	(296.17)					(1)	가-5	중구 회현동1가 100-115	(296.17)	(296.17)					(1)	
		가-6	중구 회현동1가 100-177	(607.04)	(607.04)					(11)	가-6	중구 회현동1가 100-177	(607.04)	(607.04)					(11)	
		가-7	중구 회현동1가 100-177	(2,546.42)	(2,546.42)					(2)	가-7	중구 회현동1가 100-177	(2,546.42)	(2,546.42)					(2)	
		가-8	중구 예장동 8-1	(435.98)	(435.98)					(3)	가-8	중구 예장동 8-1	(435.98)	(435.98)					(3)	
		가-9	중구 예장동 산5-6	(1,404.77)	(1,404.77)					(12)	가-9	중구 예장동 산5-6	(1,404.77)	(1,404.77)					(12)	
		가-10	용산구 후암동 30-80	(196.88)	(196.88)						가-10	용산구 후암동 30-80	(196.88)	(196.88)						
조경시설	소계			957.29	957.29					7			957.29	957.29					7	
	미로정원	타-1	중구 회현동1가 100-177	(359.12)	(359.12)						타-1	중구 회현동1가 100-177	(359.12)	(359.12)						
	안개분수	타-2	중구 예장동 산5-6	(10.40)	(10.40)						타-2	중구 예장동 산5-6	(10.40)	(10.40)						
	실개천	타-3	중구 예장동 산5-6	(536.92)	(536.92)					(7)	타-3	중구 예장동 산5-6	(536.92)	(536.92)					(7)	
	연못	타-4	중구 예장동 산5-6	(50.85)	(50.85)						타-4	중구 예장동 산5-6	(50.85)	(50.8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계			5,863.40	5,863.40		1	64.17	64.17	105			5,863.40	5,863.40		1	64.17	64.17	105	
	휴게소	다		5,863.40	5,863.40		1	64.17	64.17	105	다		5,863.40	5,863.40		1	64.17	64.17	105	
		다-1	중구 회현동1가 산1-2	(53.59)	(53.59)						다-1	중구 회현동1가 산1-2	(53.59)	(53.59)						
		다-2	중구 회현동1가 산1-2	(41.02)	(41.02)						다-2	중구 회현동1가 산1-2	(41.02)	(41.02)						
		다-3	중구 남대문로5가 467	(71.84)	(71.84)						다-3	중구 남대문로5가 467	(71.84)	(71.84)						
		다-4	중구 남대문로5가 467	(71.43)	(71.43)						다-4	중구 남대문로5가 467	(71.43)	(71.43)						
		다-5	중구 남대문로5가 467	(76.64)	(76.64)						다-5	중구 남대문로5가 467	(76.64)	(76.64)						
		다-6	용산구 후암동 30-80	(608.58)	(608.58)					(6)	다-6	용산구 후암동 30-80	(608.58)	(608.58)					(6)	
		다-7	용산구 후암동 산5-6	(1,056.43)	(1,056.43)					(7)	다-7	용산구 후암동 산5-6	(1,056.43)	(1,056.43)					(7)	
		다-8	중구 예장동 8-1	(171.96)	(171.96)					(1)	다-8	중구 예장동 8-1	(171.96)	(171.96)					(1)	
		다-9	중구 예장동 산5-6	(826.88)	(826.88)					(19)	다-9	중구 예장동 산5-6	(826.88)	(826.88)					(19)	
		다-10	중구 예장동 8-1	(945.70)	(945.70)	시멘트	(1)	(64.17)	(64.17)	(10)	다-10	중구 예장동 8-1	(945.70)	(945.70)	시멘트	(1)	(64.17)	(64.17)	(10)	
		다-11	중구 예장동 산5-6	(720.23)	(720.23)					(14)	다-11	중구 예장동 산5-6	(720.23)	(720.23)					(14)	
		다-12	중구 남산동2가 52-1	(218.91)	(218.91)					(6)	다-12	중구 남산동2가 52-1	(218.91)	(218.91)					(6)	
		다-13	중구 회현동1가 산1-2	(118.10)	(118.10)					(2)	다-13	중구 회현동1가 산1-2	(118.10)	(118.10)					(2)	
		다-14	중구 회현동1가 산1-16	(145.71)	(145.71)					(12)	다-14	중구 회현동1가 산1-16	(145.71)	(145.71)					(12)	
		다-15	중구 회현동1가 산1-2	(159.59)	(159.59)					(9)	다-15	중구 회현동1가 산1-2	(159.59)	(159.59)					(9)	
		다-16	중구 회현동1가 산1-16	(363.49)	(363.49)					(12)	다-16	중구 회현동1가 산1-16	(363.49)	(363.49)					(12)	
		다-19	중구 회현동1가 산1-2	(213.30)	(213.30)					(7)	다-17	다-17	중구 회현동1가 산1-2	(213.30)					(7)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계			11,559.95	9,888.46		7	5,422.78	29,113.39	3			11,559.95	9,888.46		7	5,422.78	29,113.39	3	
	남산시립도서관	5	용산구 후암동 30-84	2,683.70	2,683.70	R/C	1	1,909.84	9,329.37		5	용산구 후암동 30-84	2,683.70	2,683.70	R/C	1	1,909.84	9,329.37		
	안중근기념관	6	중구 남대문로5가 471	2,347.24	1,185.02	R/C	1	1,185.02	3,756.61		6	중구 남대문로5가 471	2,347.24	1,185.02	R/C	1	1,185.02	3,756.61		
	서울과학교육원	7	중구 회현동1가 100-177	2,639.69	2,639.69	R/C	1	2,206.06	15,905.55		7	중구 회현동1가 100-177	2,639.69	2,639.69	R/C	1	2,206.06	15,905.55		
	봉수대	자	중구 예장동 산5-6	237.27	106.14						자	중구 예장동 산5-6	237.27	106.14						
	와룡묘	바	중구 예장동 산5-6	500.00	121.86	목조	4	121.86	121.86	3	바	중구 예장동 산5-6	500.00	121.86	목조	4	121.86	121.86	3	
	야외공연장	카	중구 회현동1가 100-177	847.14	847.14						카	중구 회현동1가 100-177	847.14	847.14						
	동상기념비	하		2,304.91	2,304.91						하		2,304.91	2,304.91						
	김유신장군상	하-1	중구 남창동 205-4	(340.00)	(340.00)						하-1	중구 남창동 205-4	(340.00)	(340.00)						
	김구상	하-2	중구 회현동1가 100-115	(525.00)	(525.00)						하-2	중구 회현동1가 100-115	(525.00)	(525.00)						
	이시영상	하-3	중구 회현동1가 100-115	(181.41)	(181.41)						하-3	중구 회현동1가 100-115	(181.41)	(181.41)						
	안중근의사상	하-4	용산구 후암동 30-80	(16.00)	(16.00)						하-4	용산구 후암동 30-80	(16.00)	(16.00)						
	정약용상	하-5	용산구 후암동 30-84	(112.50)	(112.50)						하-5	용산구 후암동 30-84	(112.50)	(112.50)						
	이황상	하-6	용산구 후암동 30-84	(180.00)	(180.00)						하-6	용산구 후암동 30-84	(180.00)	(180.00)						
	조지훈시비	하-7	중구 예장동 산5-6	(100.00)	(100.00)						하-7	중구 예장동 산5-6	(100.00)	(100.00)						
	반공청년기념비	하-8	중구 예장동 산5-6	(850.00)	(850.00)						하-8	중구 예장동 산5-6	(850.00)	(850.00)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계			2,882.33	2,882.33					24			2,882.33	2,882.33					24	
	배드민턴장	라		490.44	490.44						라		490.44	490.44						
		라-1	중구 예장동 산5-6	(163.48)	(163.48)						라-1	중구 예장동 산5-6	(163.48)	(163.48)						
		라-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326.96)	(326.96)						라-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326.96)	(326.96)						
	체력단련장	마		2,391.89	2,391.89					24	마		2,391.89	2,391.89					24	
		마-1	중구 예장동 산5-6	(1,439.00)	(1,439.00)					(12)	마-1	중구 예장동 산5-6	(1,439.00)	(1,439.00)					(12)	
		마-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759.64)	(759.64)					(3)	마-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759.64)	(759.64)					(3)	
		마-3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193.25)	(193.25)					(9)	마-3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193.25)	(193.25)					(9)	
편익시설	소계			23,190.32	23,190.32		12	4,388.00	17,602.49	35			23,190.32	23,190.32		13	4,082.88	17,792.61	35	연면적(증) 190.12㎡
	주차장	나		8,228.28	8,228.28					14	나		8,228.28	8,228.28					14	
		나-1	중구 회현동1가 100-115	(457.60)	(457.60)						나-1	중구 회현동1가 100-115	(457.60)	(457.60)						
		나-2	중구 회현동1가 100-177	(1,299.77)	(1,299.77)					(9)	나-2	중구 회현동1가 100-177	(1,299.77)	(1,299.77)					(9)	
		나-3	용산구 후암동 30-84	(4,956.94)	(4,956.94)						나-3	용산구 후암동 30-84	(4,956.94)	(4,956.94)						
		나-4	용산구 후암동 30-84	(515.36)	(515.36)						나-4	용산구 후암동 30-84	(515.36)	(515.36)						
		나-5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998.61)	(998.61)					(5)	나-5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998.61)	(998.61)					(5)	
	화장실	2		312.27	312.27		4	231.31	269.27		2		312.27	312.27		4	231.31	269.27		
		2-1	중구 회현동1가 산1-2	(71.24)	(71.24)	R/C	(1)	(71.24)	(109.20)		2-1	중구 회현동1가 산1-2	(71.24)	(71.24)	R/C	(1)	(71.24)	(109.20)		
		2-2	중구 예장동 산5-6	(97.50)	(97.50)	R/C	(1)	(97.50)	(97.50)		2-2	중구 예장동 산5-6	(97.50)	(97.50)	R/C	(1)	(97.50)	(97.50)		
		2-3	용산구 후암동 30-84	(86.36)	(86.36)	R/C	(1)	(62.57)	(62.57)		2-3	용산구 후암동 30-84	(86.36)	(86.36)	R/C	(1)	(62.57)	(62.57)		
		2-4	용산구 후암동 산1-2	(57.17)	(57.17)	R/C	(1)	(57.17)	(57.17)		2-4	용산구 후암동 산1-2	(57.17)	(57.17)	R/C	(1)	(57.17)	(57.1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익시설	서울타워	3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0,898.60	10,898.60	R/C	2	2,508.16	13,782.56	15	3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0,898.60	10,898.60	R/C	2	2,508.16	13,782.56	15	
		3-1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0,898.60	10,898.60	R/C	(1)	(2,502.16)	(13,776.56)		3-1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0,898.60	10,898.60	R/C	(1)	(2,502.16)	(13,776.56)	15	
		3-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	(6.00)	(6.00		3-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	(6.00)	(6.00)		
	매 점	4		446.93	446.93		3	284.18	470.98		4		446.93	446.93		3	284.18	470.98		
		4-1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310.85)	(310.85)	R/C	(1)	(148.10)	(262.81)		4-1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310.85)	(310.85)	R/C	(1)	(148.10)	(262.81)		
		4-2	용산구 회현동1가 산1-1	(136.08)	(136.08)	목구조,R/C	(2)	(136.08)	(208.17)		4-2	용산구 회현동1가 산1-1	(136.08)	(136.08)	목구조,R/C	(2)	(136.08)	(208.17)		
	삭 도	사	중구 회현동1가 산1-19	1,321.30	1,321.30		2	972.61	2,092.83		사	중구 회현동1가 산1-19	1,321.30	1,321.30		2	656.79	2,272.25		연면적(증) 179.42㎡
	삭도하단승강장			(561.25)	(561.25)	R/C	(1)	(560.28)	(1,680.50)				(561.25)	(561.25)	R/C	(1)	(455.16)	(1,859..92)		건축물대장에 의거 바닥면적 정정
	삭도주차장			(760.05)	(760.05)								(760.05)	(760.05)						
	기념품판매장					R/C	(1)	(412.33)	(412.33)						R/C	(1)	(201.63)	(412.33)		건축물대장에 의거 바닥면적 정정
	한국삭도(종점)	아		1,388.40	1,388.40		1	391.74	986.85		아		1,388.40	1,388.40		2	402.44	997.55		
		아-1	중구 예장동 산5-6	1,388.40	1,388.40	R/C	(1)	391.74	986.85		아-1	중구 예장동 산5-6	1,388.40	1,388.40	R/C	(1)	(391.74)	(986.85)		
		아-2	중구 예장동 산5-6								아-2	중구 예장동 산5-6				(1)	(10.70)	(10.70)		연면적(증) 10.7㎡
	경사형엘리베이터	차	중구 회현동1가 산1-32	117.13	117.13						차	중구 회현동1가 산1-32	117.13	117.13						
	약수터	파	중구 예장동 산5-6	477.41	477.41					6	파	중구 예장동 산5-6	477.41	477.41					6	
		파-1	중구 예장동 산5-6	(100.00)	(100.00)						파-1	중구 예장동 산5-6	(100.00)	(100.00)						
		파-2	중구 예장동 산5-6	(377.41)	(377.41)					(6)	파-2	중구 예장동 산5-6	(377.41)	(377.41)					(6)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 시설	소계			586.31	586.31		1	119.25	395.55				586.31	586.31		1	119.25	395.55		
	관리사무소	1	중구 회현동1가 산1-2	586.31	586.31		1	119.25	395.55		1	중구 회현동1가 산1-2	586.31	586.31		1	119.25	395.55		
	남산가압장																			
녹지 및 기타	소계			482,551.33									482,551.33							
	녹지및기타			482,551.33									482,551.33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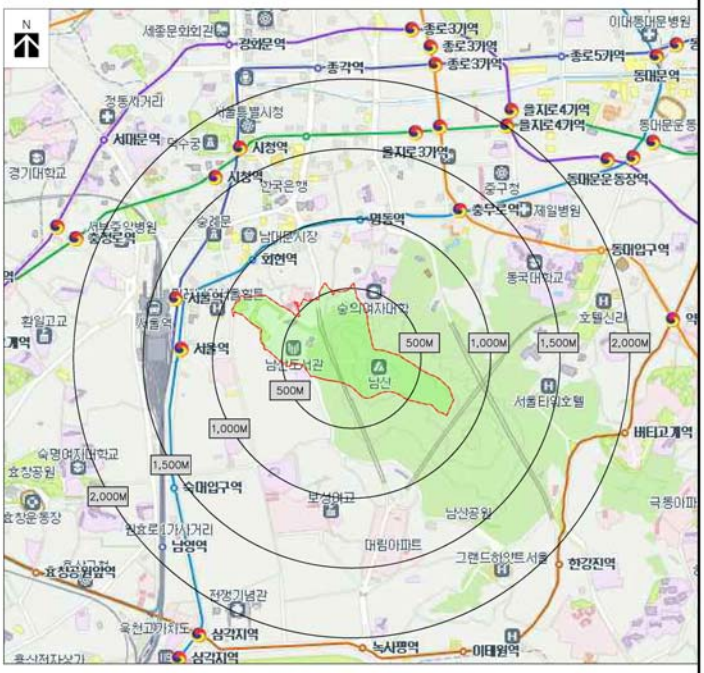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8,852.00	31,301.00				
당초	중로	계			2,075.00	4,500.00				
당초		1	1	20	895.0	(17,9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1	2	20	880.0	(17,6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	1	15	300.0	4,500.00	부진입로	중로 1-1	중로 1-2	
		*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면적에는 산입, 시설면적에는 ( )로 표시하여 미 산입시킴으로서 시설율에 미포함.								
당초	소로	소계			2,269.00	14,030.00				
당초		1	2	10	267.0	2,670.00	부진입로	중로 1-1	주차장3	
당초		3	1	10	65.0	650.00	산책로	소로 1-2	산책로37	
당초		3	9	6	281.0	1,686.00	부진입로	중로 1-1	공원경계	
당초		3	2	6	336.0	2,016.00	부진입로	공원경계	주차장5	
당초		3	3	6	535.0	3,210.00	부진입로	공원경계	남산타워	
당초		3	4	4	82.0	328.00	산책로	소로 3-2	남산타워	
당초		3	5	4	45.0	180.00	산책로	소로 3-3	남산타워	
당초		3	6	5	479.0	2,395.00	부진입로	공원경계	중로 1-2	
당초		3	7	5	164.0	820.00	산책로	중로 1-2	남산3호터널	
당초		3	8	5	15.0	75.00	산책로	중로 1-1	공원경계	
당초		소계			4,508.00	12,771.00				
당초	등산로	-	25	3	130	390.00	등산로	중로 1-2	화장실1	
당초		-	26	4	637	2,548.00	등산로	화장실1	광장8	
당초		-	27	2	157	314.00	등산로	휴게소7	산책로28	
당초		-	28	3	56	168.00	등산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초		-	29	3	159	477.00	등산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초		-	30	1.5	13	19.50	등산로	산책로35	산책로34	
당초		-	31	1.5	66	99.00	등산로	휴게소6	소로 3-6	
당초		-	32	3	56	168.00	등산로	공원경계	반공청년기념비	
당초			33	2	79	158.00	등산로	공원경계	약수터2	
당초		-	34	2	34	68.00	등산로	산책로35	소로 3-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	1	3.6	523	1,883	산책로	광장1	산책로16	
당초		-	2	2	200.00	400.00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25	
당초		-	3	2.3	309	711	산책로	중로 1-1	산책로2	
당초		-	4	2	46	92.0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당초	산책로	-	5	2	16	32.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6	
당초		-	6	2	77	154.00	산책로	광장2	산책로8	
당초		-	7	2.5	8	20.00	산책로	광장2	산책로6	
당초		-	8	3	82	246.00	산책로	중로1-2	산책로6	
당초		-	9	3	48	144.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6	
당초		-	10	1.5	214	321.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당초		-	11	4	11	44.00	산책로	중로1-2	산책로8	
당초			12	2	122	244.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당초		-	13	4	64.00	256.00	산책로	김구상	산책로2	
당초		-	14	2	65	130.00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	
당초		-	15	6	49	294.00	산책로	중로 2-1	주차장3	
당초		-	16	5	34	170.00	산책로	중로 1-2	주차장3	
당초		-	17	2	78	156.00	산책로	산책로2	광장3	
당초		-	18	4	85	340.00	산책로	소로 3-1	안중근기념관	
당초		-	19	2	162	324.00	산책로	산책로22	휴게소6	
당초		-	20	2	53	106.00	산책로	정양용상	주차장1	
당초		-	21	3	10	30.00	산책로	광장7	산책로2	
당초		-	22	3	200	600.00	산책로	광장7	화장실1	
당초		-	23	1.5	85	127.50	산책로	산책로2	화장실1	
당초		-	24	2	23	46.00	산책로	산책로25	화장실1	
당초		-	35	2	44.00	88.00	산책로	산책로40	휴게소3	
당초		-	36	2	6.00	12.00	산책로	산책로39	휴게소4	
당초		-	37	2	130	260	산책로	산책로37	산책로3	
당초		-	38	3	12.00	36.00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2	
당초		-	39	3	365.00	1,095.0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23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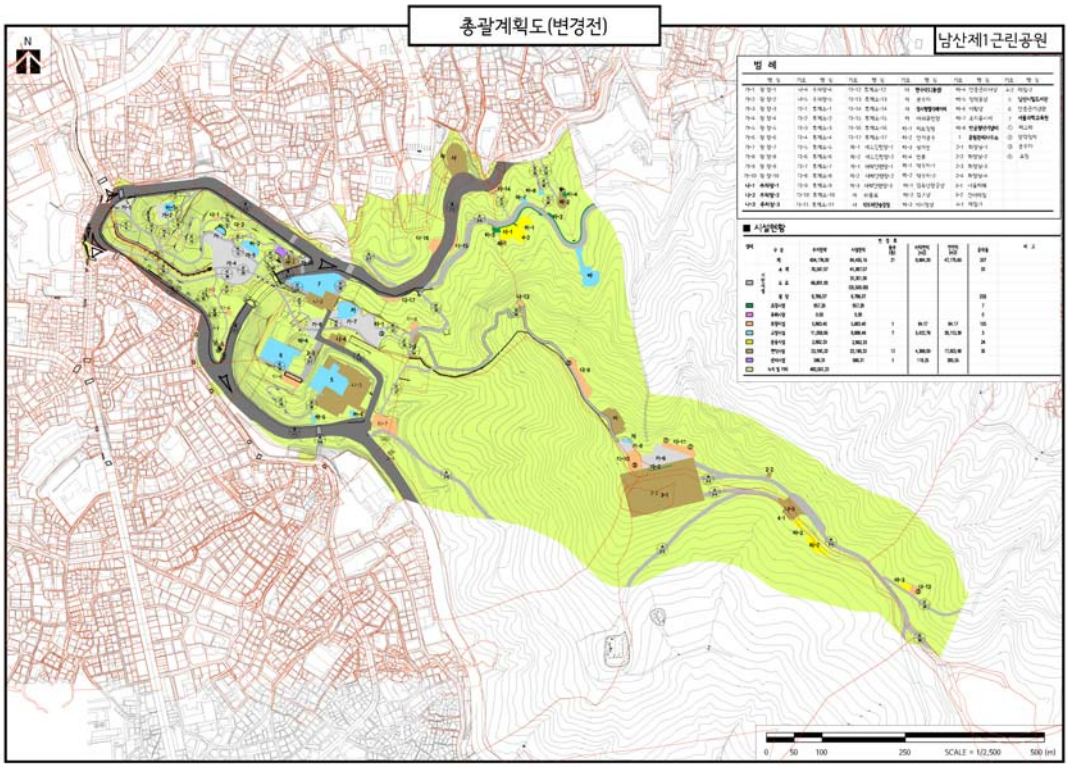
남산제1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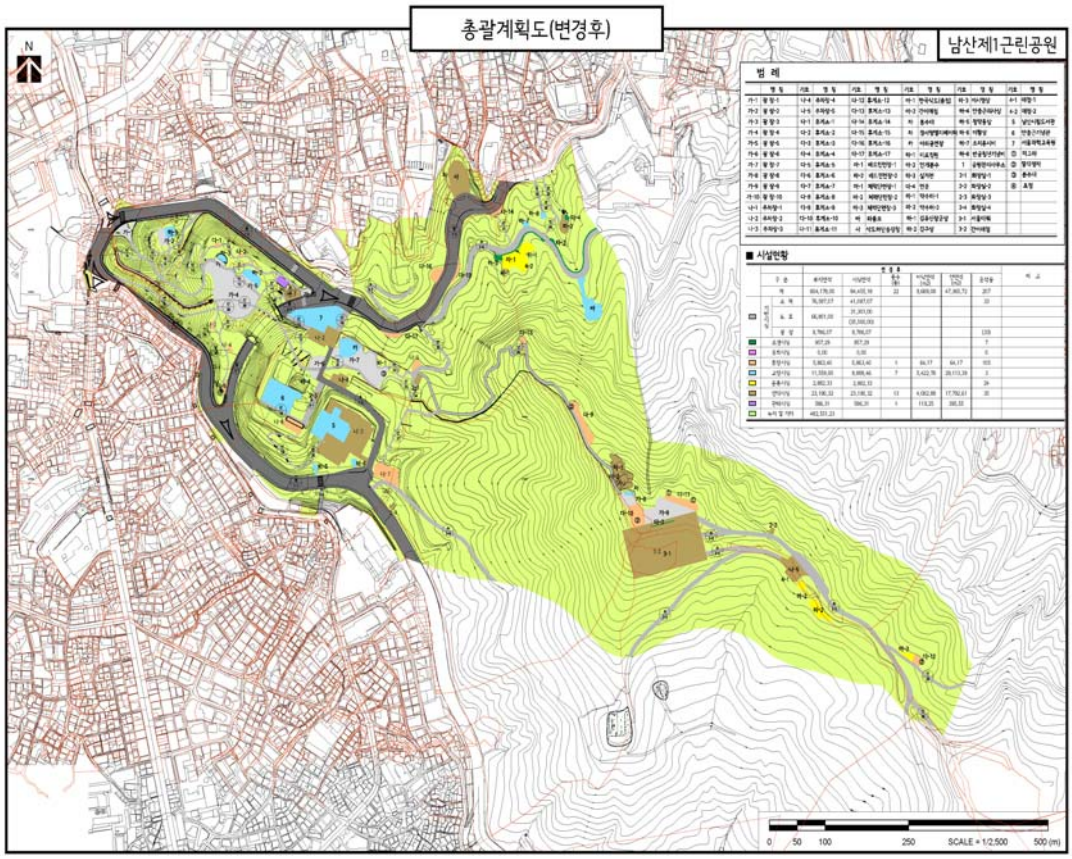
◆ 사 업 대 상 지 ◆
-위 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461번지 일원
-면 적 : 604,178㎡



총괄계획도(변경전)

남산제1근린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1호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녹지)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1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1.12.15)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된 경의선 지상구간(용산문화체육센터~가좌역)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녹지)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경의선 철도가 지하구간으로 건설됨에 따라 일부 지상구간(용산문화체육센터~가좌역)을 공원으로 신설하여 선형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으로 신설되면서 중복되는 일부 광장 변경, 녹지를 폐지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녹지) 변경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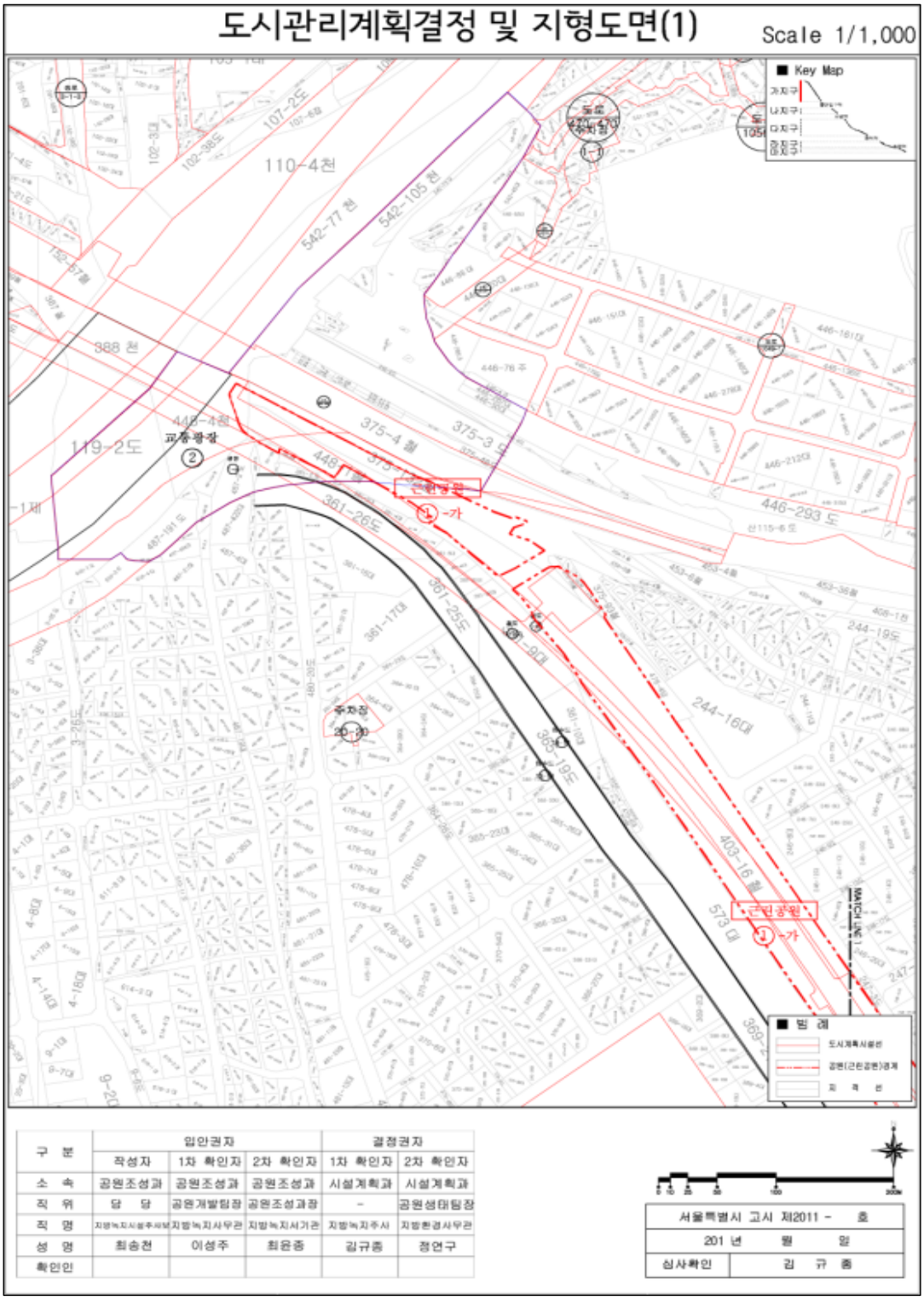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5개소)	공원	근린공원 (①-가)	마포구 연남동 448-4 ~ 마포구 동교동 190-1	-	증) 34,359.7	34,359.7	-	철도중복 13,022.2㎡/ 연장1,310m
		근린공원 (①-나)	마포구 동교동 190-1 ~ 마포구 창전동 1-29	-	증) 8,649.2	8,649.2	-	철도중복 4,503.2㎡/ 연장420m
		근린공원 (①-다)	마포구 신수동 85-26 ~ 마포구 염리동 169-12	-	증)31,330.3	31,330.3	-	철도중복 13,695.8㎡/ 연장1,550m
		근린공원 (①-라)	마포구 도화동 1-402 ~ 용산구 용문동 5-133	-	증)19,541.6	19,541.6	-	철도중복 7,280.1㎡/ 연장630m
		근린공원 (①-마)	용산구 원효로2가 1-73 ~ 용산구 신계동 1-276	-	증)7,787.2	7,787.2	-	철도중복 3,556.1㎡/ 연장330m
계				-	증)101,668.0	101,668.0	-	철도중복 42,057.4㎡/ 연장4,240m
변경	광장	교통광장	서대문구 연희동 446일원	32,400	감)2,235.9	30,164.1	'76.11.1	
폐지	녹지	완충녹지	용산구 도원동 1-59일원	32.7	감) 3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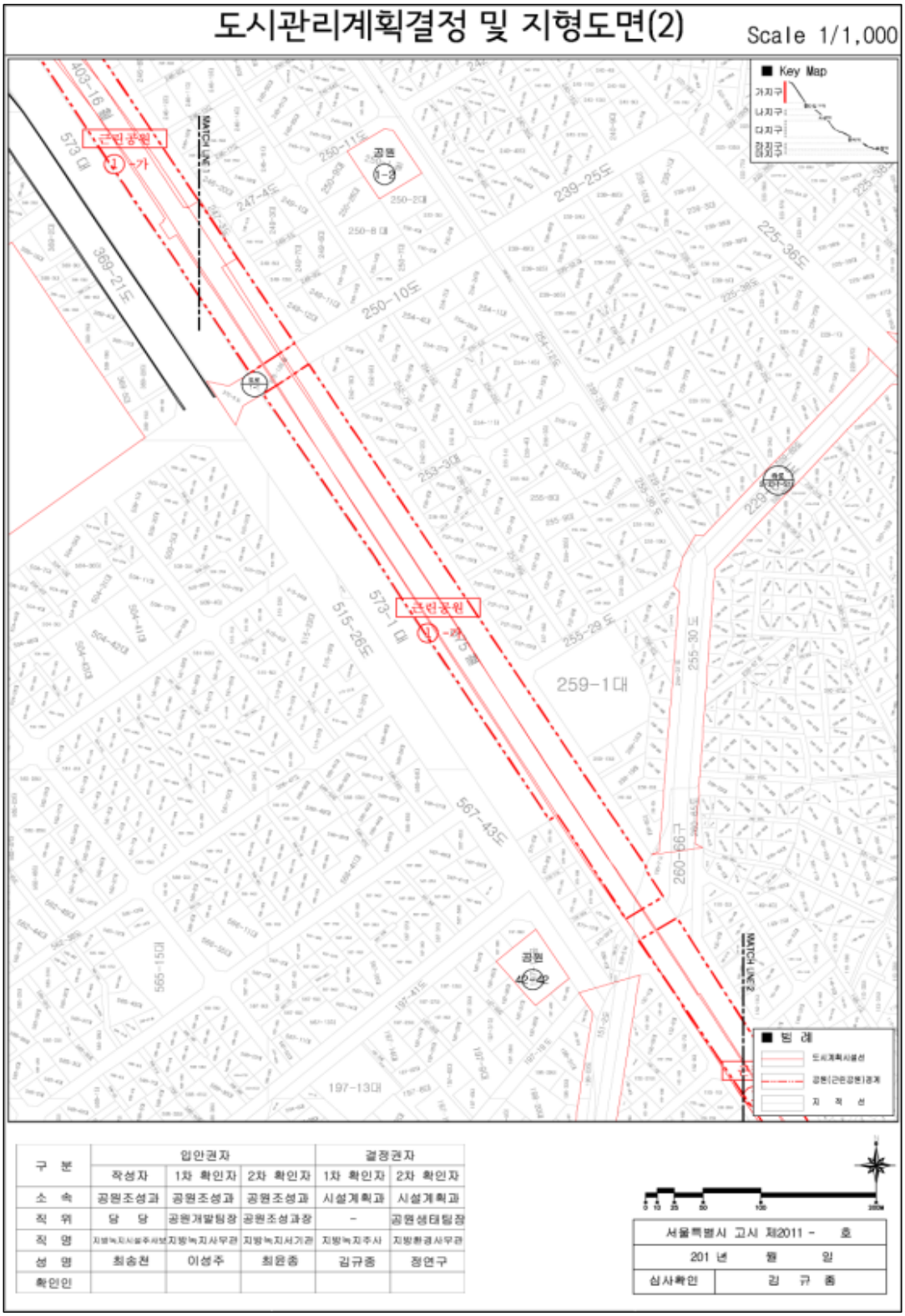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녹지) 결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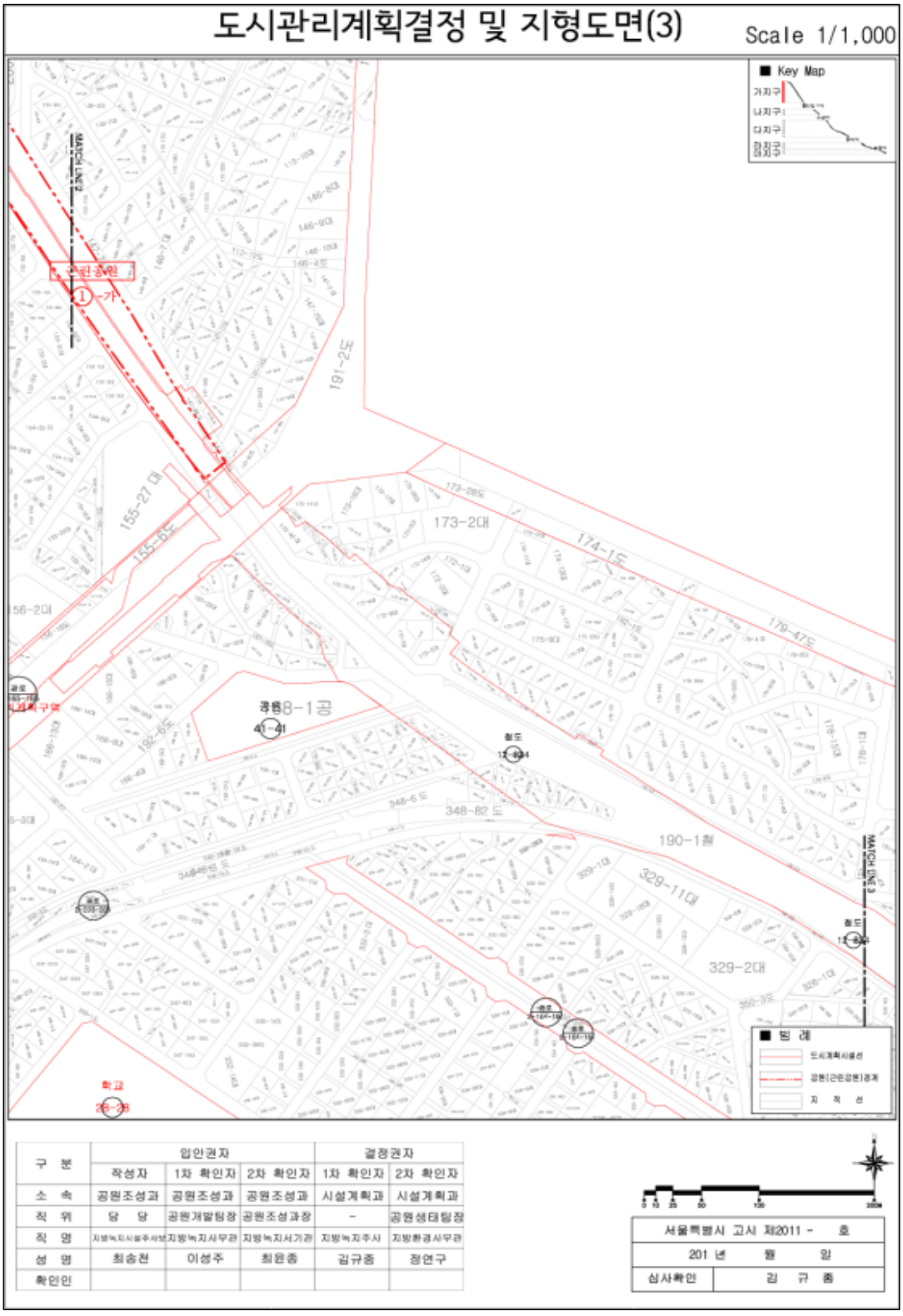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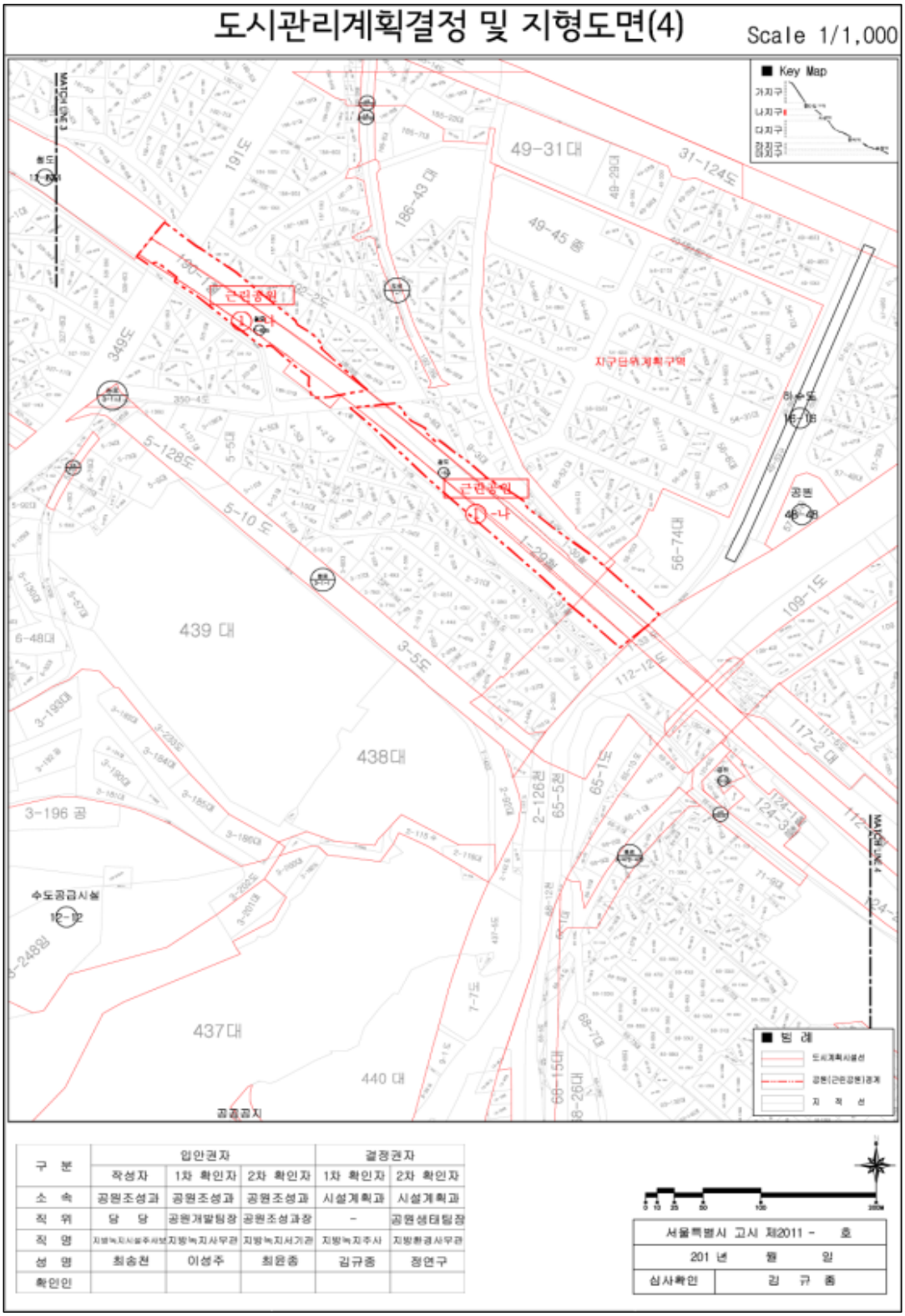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15-7583) 및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91)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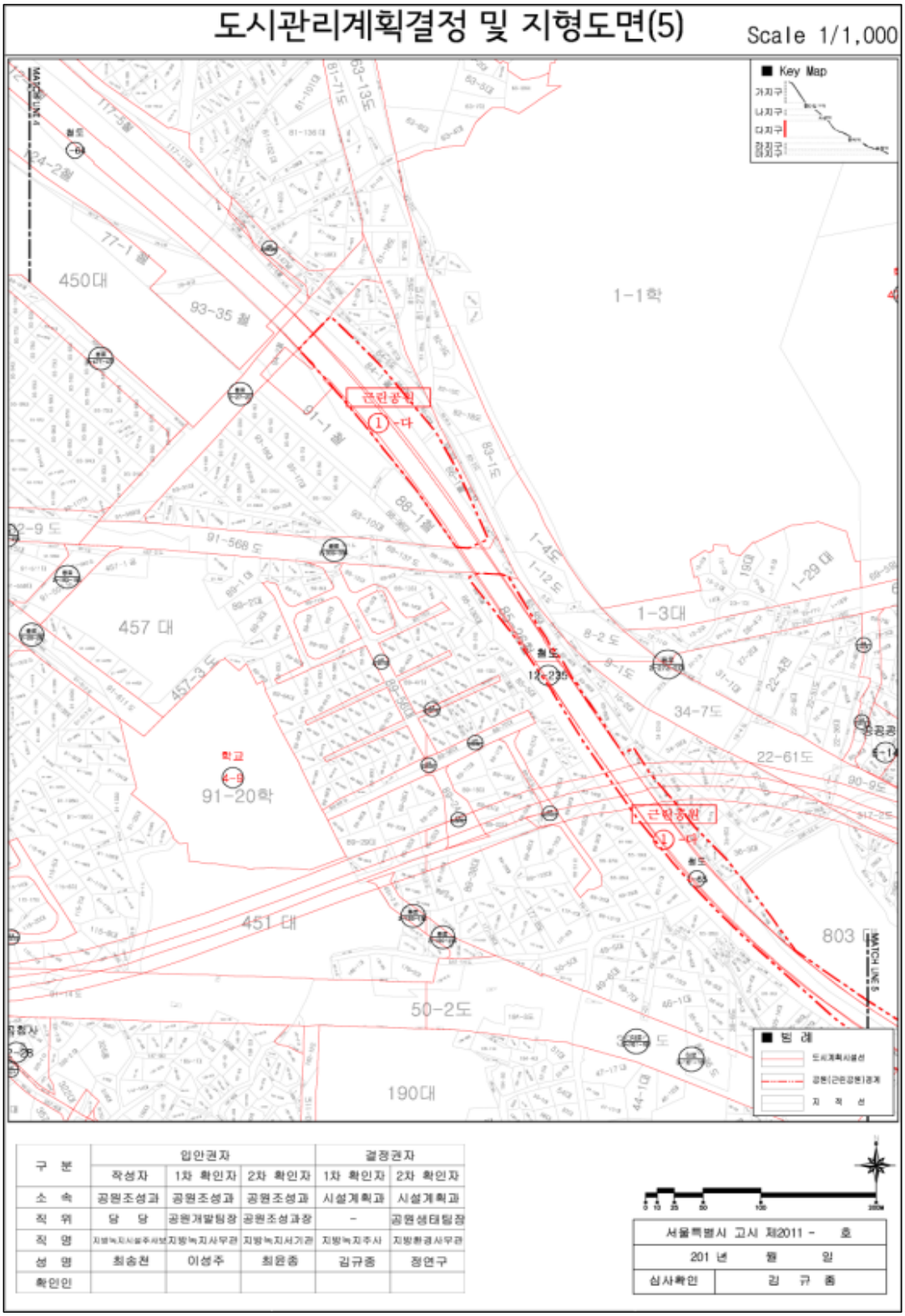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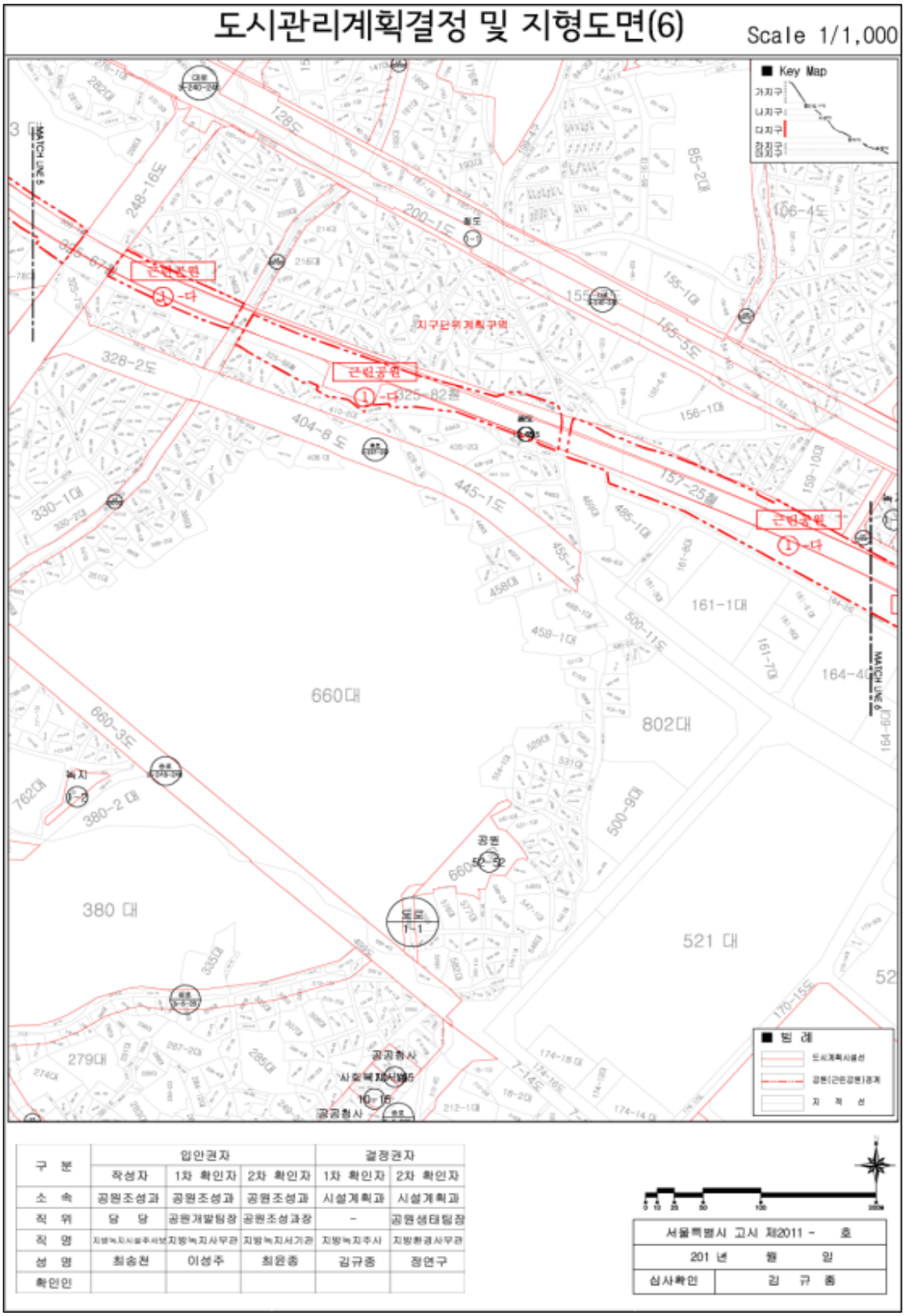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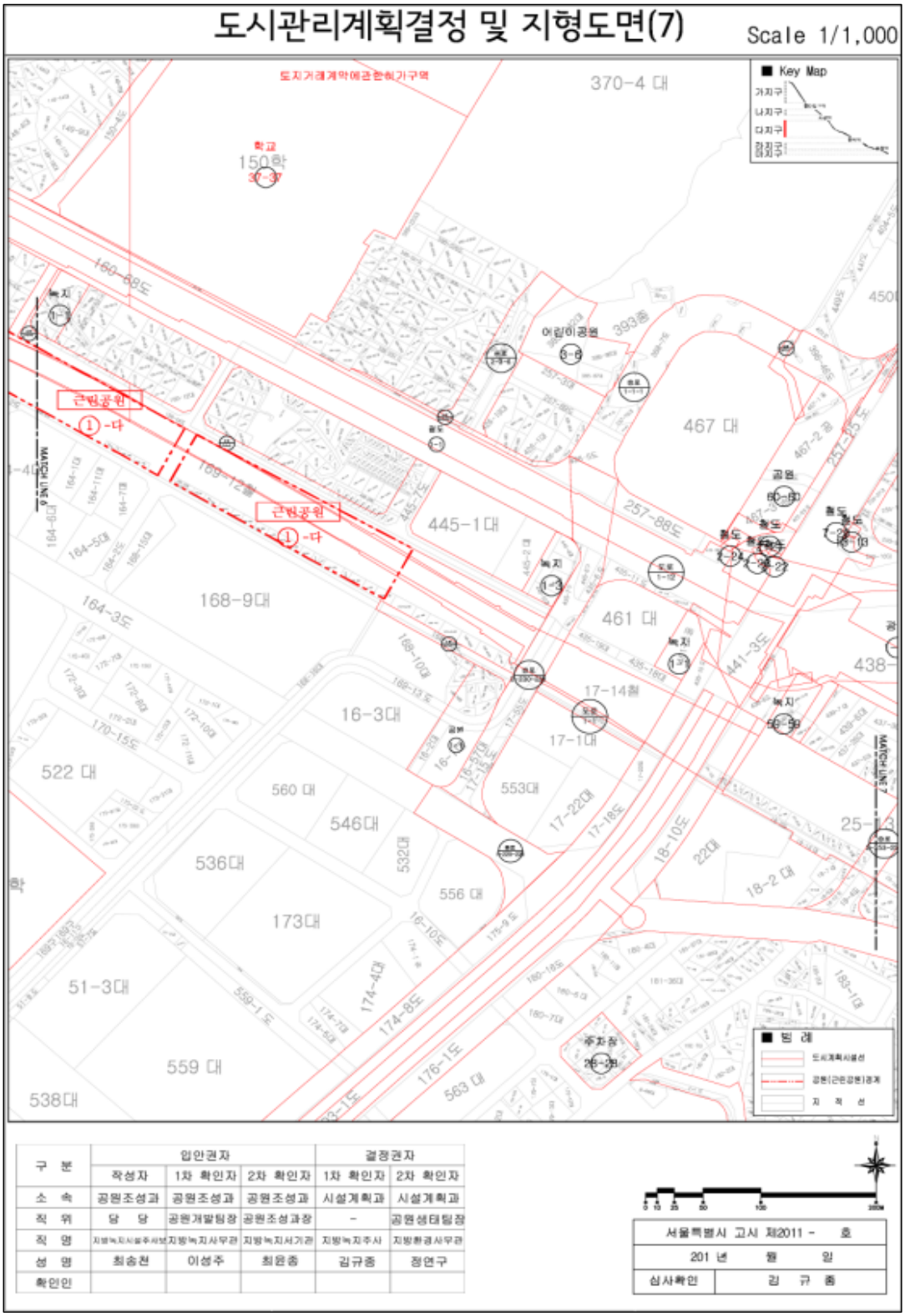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2)
Scale 1/1,000
Key Map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검치구
근린공원
-가
-나
MATCH LINE 1
MATCH LINE 2
공원
범 례
도시계획시설선
공원(근린공원)경계
지 적 선
403-16 대
573 대
369-21도
247-4도
250-11도
250-10도
239-25도
225-36도
253-3대
515-26도
573-1 대
255-29 도
255-30 도
259-1대
260-66 ㄱ
567-43도
565-15대
197-13대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
직 위
담 당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
공원생태팀장
직 명
지방녹지시설주사보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서기관
지방녹지주사
지방환경사무관
성 명
최송천
이성주
최윤종
김규종
정연구
확인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호
201 년 월 일
심사확인
김 규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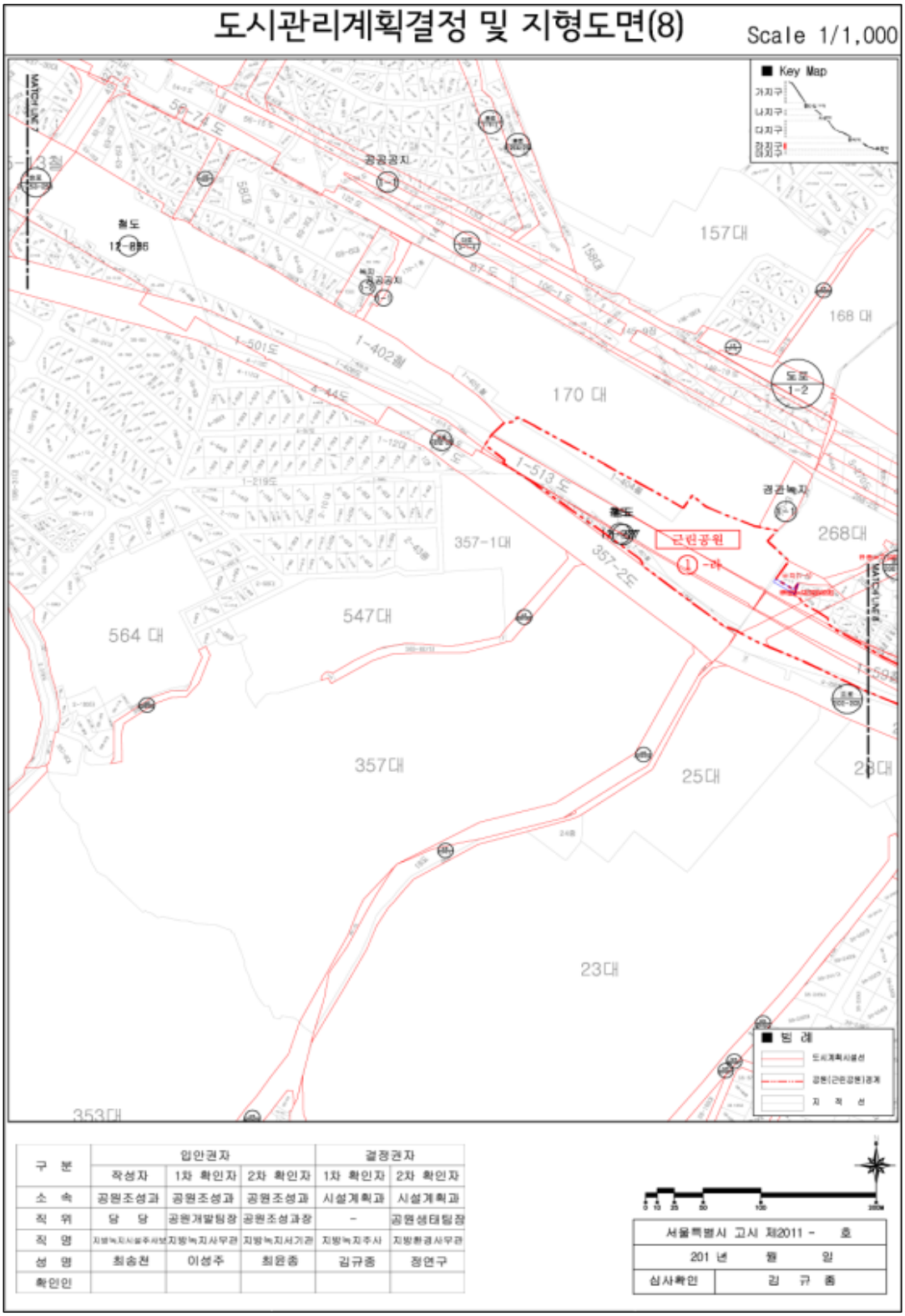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3)
Scale 1/1,000
Key Map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검토구
MATCH LINE 2
근린공원
①-가
191-2도
155-27대
155-6도
173-2대
174-1도
179-47도
156-2대
종특8-1공
41-41
192-6도
348-6도
348-82도
190-1철
329-11대
329-2대
MATCH LINE 3
범 례
도시계획시설선
공원(근린공원)경계
지 적 선
학교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
직 위
담 당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
공원생태팀장
직 명
지방녹지시설주사보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서기관
지방녹지주사
지방환경사무관
성 명
최송천
이성주
최윤종
김규종
정연구
확인인
0 10 25 50 100 200M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호
201 년 월 일
심사확인
김 규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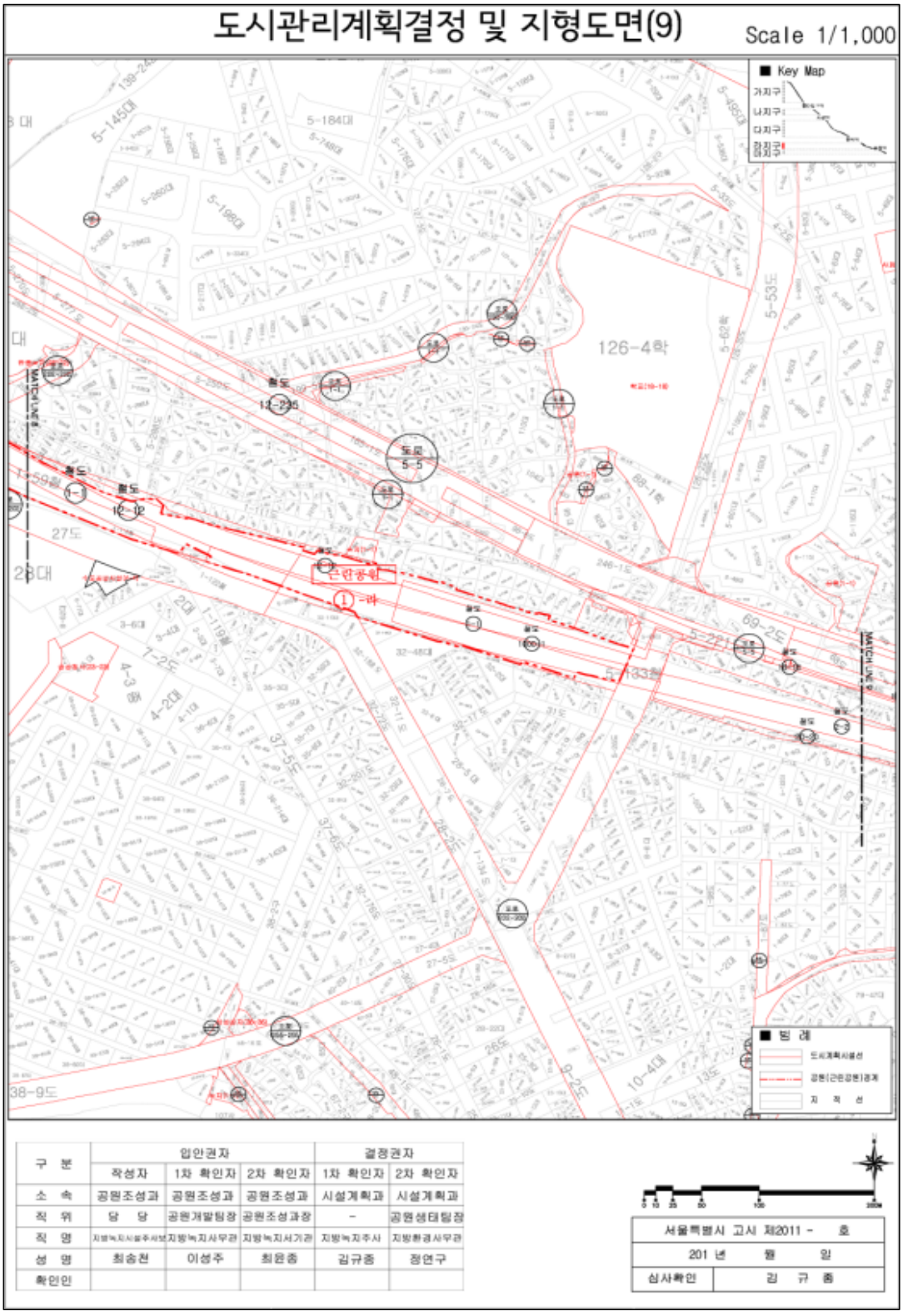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4)
Scale 1/1,000
Key Map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근린공원
근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하수도
공원
439 대
438대
437대
440 대
3-196 공
수도공급시설
공공공지
범 례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
직 위
담 당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
공원생태팀장
직 명
지방녹지시설주사보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서기관
지방녹지주사
지방환경사무관
성 명
최송천
이성주
최윤종
김규종
정연구
확인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호
201 년 월 일
심사확인
김 규 종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5)
Scale 1/1,000
Key Map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라지구
450대
93-35 철
77-1 철
1-1학
근린공원
①-다
91-1 철
88-1철
1-4도
1-12도
1-3대
1-29대
457 대
457-3도
8-2도
91-1도
34-7도
22-61도
학교
4-9
91-20학
451 대
803 대
50-2도
190대
범 례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
직 위
담 당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
공원생태팀장
직 명
지방녹지시설주사보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서기관
지방녹지주사
지방환경사무관
성 명
최송천
이성주
최윤종
김규종
정연구
확인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호
201 년 월 일
심사확인
김 규 종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6)
Scale 1/1,000
Key Map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MATCH LINE 5
MATCH LINE 6
근린공원
1-다
지구단위계획구역
660대
802대
380 대
521 대
279대
161-1대
도로
1-1
공원
녹지
범 례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
직 위
담 당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
공원생태팀장
직 명
지방녹지시설주사보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서기관
지방녹지주사
지방환경사무관
성 명
최송천
이성주
최윤종
김규종
정연구
확인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호
201 년 월 일
심사확인
김 규 종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7)
Scale 1/1,000
Key Map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370-4 대
467 대
445-1대
168-9대
461 대
16-3대
522 대
560 대
546대
536대
173대
556 대
553대
51-3대
559 대
538대
563 대
근린공원
①-다
어린이공원
범 례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
직 위
담 당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
공원생태팀장
직 명
지방녹지시설주사보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서기관
지방녹지주사
지방환경사무관
성 명
최송천
이성주
최윤종
김규종
정연구
확인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호
201 년 월 일
심사확인
김 규 종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8)
Scale 1/1,000
■ Key Map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라지구
157대
168 대
170 대
268대
357-1대
547대
564 대
357대
25대
23대
353대
근린공원
도로 1-2
■ 범 례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
직 위
담 당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
공원생태팀장
직 명
지방녹지시설주사보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서기관
지방녹지주사
지방환경사무관
성 명
최송천
이성주
최윤종
김규종
정연구
확인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호
201 년 월 일
심사확인
김 규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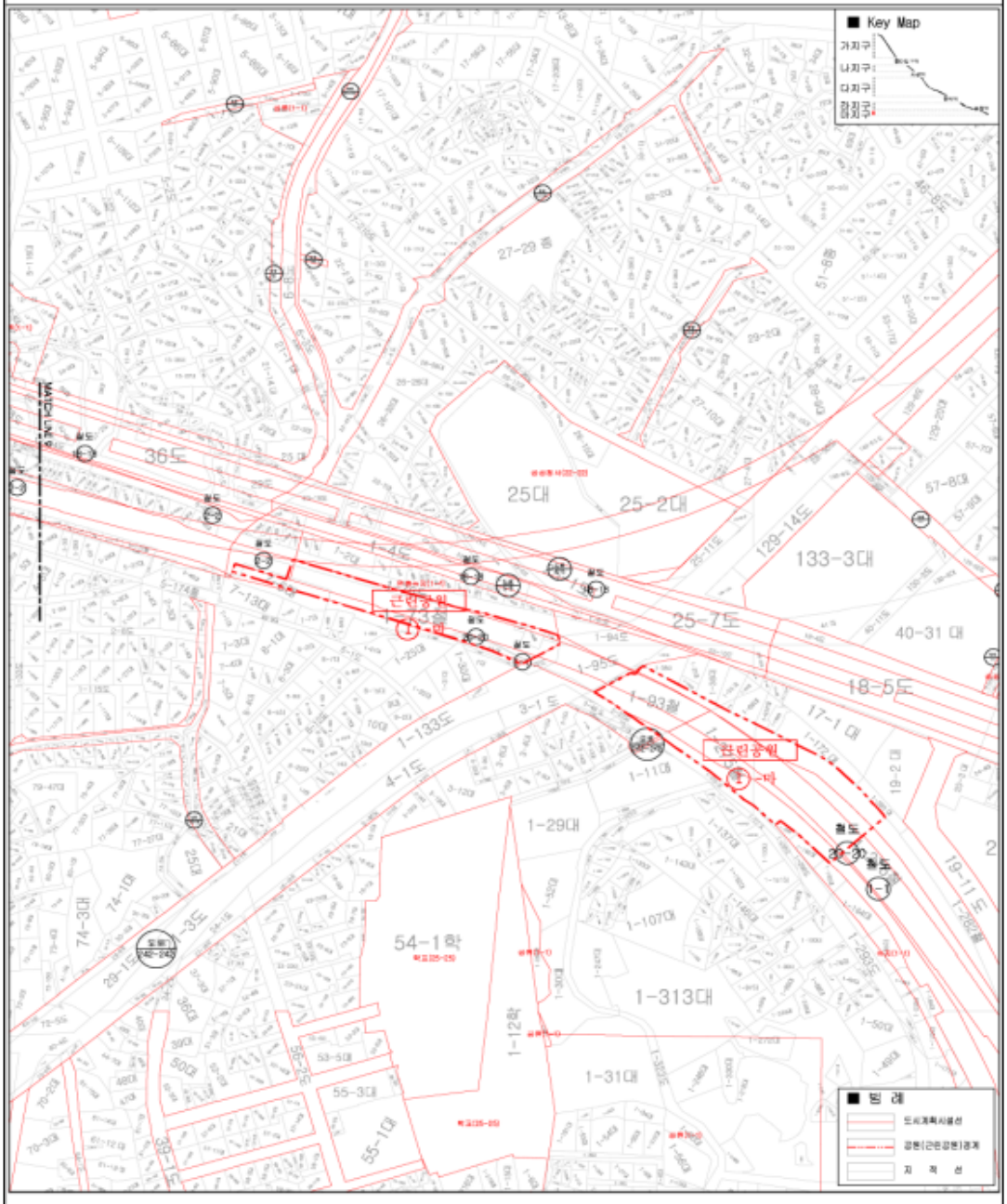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
직 위	담 당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	공원생태팀장
직 명	지방녹지시설주사보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서기관	지방녹지주사	지방환경사무관
성 명	최송천	이성주	최윤종	김규종	정연구
확인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호	
201 년 월 일	
심사확인	김 규 종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10)

Scale 1/1,000



구 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
직 위	담 당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	공원생태팀장
직 명	지방녹지시설주사보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서기관	지방녹지주사	지방환경사무관
성 명	최송천	이성주	최윤종	김규종	정연구
확인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호	
201 년 월 일	
심사확인	김 규 종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2호

도시관리계획(낙성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낙성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1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1.9.14)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낙성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서울대학교와 인접한 남부순환로 및 낙성대길 주변에 연구·업무 기능을 중점적으로 도입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낙성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봉천동 1627-1번지 일대	-	증)107,232	107,232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신 설	관악구 봉천동 1627-1번지 일대	107,232	·서울대와 인접한 낙성대길 및 남부순환로 주변에 연구·업무기능을 중점 도입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증진하기 위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07,232	-	107,232	100	
주거지역	소 계	107,232	-	107,232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6,466	-	26,466	24.7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4,704	-	24,704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	56,062	-	56,062	52.3	

※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 결정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사당동~구로동	168,000 (9,983)	7,000 (417)	양측12	서고95 (78.3.6)	
기정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남부순환로~낙성대 (봉천동 1662-36~ 봉천동244-2)	28,800 (4,716)	1,200 (393)	12	서고115 (03.5.20)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도로

■ 도로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3	953	30,540	1	114	1,140	1	416	12,480	1	423	16,920
광 로	1	423	16,920	-	-	-	-	-	-	1	423	16,920
대 로	1	416	12,480	-	-	-	1	416	12,480	-	-	-
중 로	-	-	-	-	-	-	-	-	-	-	-	-
소 로	1	114	1,140	1	114	1,140	-	-	-	-	-	-

■ 도로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합 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9	40	주간선 도로	35,350 (423)	삼전동	방화동	일반 도로	-	건고324 74.9.24	남부순환로
기정	대로	2	44	30	보조간선도로	1,080 (416)	봉천동 광19	신림동 (서울대)	일반 도로	-	서고349호 79.9.24	낙성대길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230 (114)	1679-1	1681-15	일반 도로	-	건교 47 71.6.11	-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계획

■ 공동개발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개발 지정	·대지규모 90㎡미만인 필지(이면부 제외) ·간선도로변에 대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2개 이상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맹지인 경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가능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공동개발 권장	·이면부에서 필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부정형(요철형, 세장형) 필지와 인접한 필지 ·도로변에 접한 필지중 폭이 좁은 필지	권장사항
자율적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지침도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당해 대지와 연접한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이 가능함 ·자율적 공동개발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의 형태는 정형화하여야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불허 할 수 있음 - 부정형(요철형, 과소형)대지 발생시 -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 : 3이상이 되는 경우 -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해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 - 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인정할 경우 예외 적용	-

■ 가구 및 공동개발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A1	224.0	1665-1	224.0	-	-
	211.0	1665-2	211.0	-	-
	240.0	1665-3	240.0	-	-
	1,556.1	1665-4	212.1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1665-4권장)	-
		1665-5	570.7		
		1665-6	599.4		
		1665-7	173.9		
A2	192.5	1673-1	192.5	-	-
	213.1	1673-2	213.1	-	-
	49.9	1673-4	49.9	-	도로
	599.5	1673-5	133.0	공동개발 권장	-
		1673-6	154.0		
		1673-7	153.2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A2		1673-9	159.3		
	699.9	1673-10	133.7	공동개발 권장	-
		1673-12	149.9		
		1673-13	206.7		
		1673-14	99.2		
		1373-35	110.4		
	1,678.4	1673-21	1,678.4	-	-
	88.1	1673-15	88.1	-	도로
	575.5	1673-16	575.5	-	-
	485.2	1673-17	485.2	-	-
A3	292.0	1673-23	292.0	-	-
	194.4	1673-25	194.4	-	-
	164.0	1673-26	147.8	공동개발 지정	-
		1673-27	4.4		
		1673-29	11.8		
	244.9	1673-28	128.2	공동개발 권장	-
		1673-30	116.7		
	230.7	1673-31	12.0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1673-33권장)	-
		1673-32	88.6		
		1673-33	130.1		
A4	490.10	1674-1	226.4	공동개발 권장	-
		1674-26	263.7		-
	827.70	1674-2	133.4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1674-4권장)	기공동개발
		1674-3	147.0		
		1674-4	547.3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A4	165.6	1674-6	165.6	-	-
	197.6	1674-7	197.6	-	-
	206.9	1674-8	206.9	-	-
	173.7	1674-9	173.7	-	-
	82.0	1674-22	82.0	-	도로
	2.2	1674-23	2.2	-	도로
	193.8	1674-12	193.8	-	-
	115.0	1674-13	115.0	-	-
	171.6	1674-14	171.6	-	-
	174.1	1674-15	174.1	-	-
	433.0	1674-5	433.0	-	-
	615.4	1674-10	615.4	-	-
	157.9	1674-16	157.9	-	-
	142.6	1674-17	142.6	-	-
	151.2	1674-18	151.2	-	-
	122.2	1674-21	122.2	-	도로
	4.3	1674-25	4.3	-	도로
	396.8	1674-19	396.8	-	-
	302.1	1674-20	302.1	-	-
A5	187.4	1679-1	187.4	-	-
	168.2	1679-2	168.2	-	-
	161.6	1679-3	161.6	-	-
	511.30	1679-7	196.1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1679-8	315.2		
	163.3	1679-18	163.3	-	-
	177.9	1679-19	177.9	-	-
	196.6	1679-20	196.6	-	-
	244.1	1679-27	244.1	-	도로
	197.0	1679-4	197.0	-	-
	250.5	1679-17	250.5	-	-
	1,337.80	1679-21	300.6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1679-23	467.3		
		1679-30	569.9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A5	658.4	1679-10	137.5	공동개발 권장	-
		1679-11	134.9		
		1679-25	386.0		
	47.2	1679-28	47.2	-	도로
	159.7	1679-6	159.7	-	-
	1,564.8	1679-5	155.8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1679-5 권장)	-
		1679-24	1129.6		
		1679-12	136.8		
		1679-9	142.6		
	59.3	1679-26	59.3	-	도로
A6	480.0	1663-1	254.5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1663-2	225.5		
	425.3	1663-3	425.3	-	-
	601.6	1663-5	601.6	-	-
	545.9	1663-6	545.9	-	-
	238.9	1663-7	238.9	-	-
	173.0	1663-8	173.0	-	-
	173.3	1663-9	173.3	-	-
	554.9	1663-10	554.9	-	-
	713.1	1663-11	713.1	-	-
	275.4	1663-12	275.4	-	-
A7	454.4	1662-1	439.9	공동개발 지정	-
		1662-2	7.9		
		1662-3	6.6		
	573.2	1662-13	573.2	-	-
	470.1	1662-22	6.2	공동개발 지정	-
		1662-31	17.2		-
		1662-32	434.1		-
		1662-33	3.1		-
		1662-34	9.5		-
	175.9	1662-35	175.9	-	-
	246.7	1662-36	246.7	-	-
	327.4	1662-7	327.4		-
	233.20	1662-4	112.0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1662-8권장)	
		1662-8	115.6		
		1662-9	5.6		
	567.20	1662-10	115.7	공동개발 지정	-
		1662-12	119.7		
		1662-24	331.8		
	313.30	1662-23	134.4	공동개발 지정	-
		1662-26	159.5		
		1662-39	19.4		
	172.6	1662-27	172.6	-	-
	262.40	1662-29	260.1	공동개발 지정	-
		1662-30	2.3		
	267.9	1662-37	267.9	-	-
	41.4	1662-38	41.4	-	도로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A8	269.10	1612-1	164.1	공동개발 권장	-
		1612-2	105.0		
	195.3	1612-3	195.3	-	-
	266.4	1612-5	266.4	-	-
	247.8	1612-6	247.8	-	-
	315.50	1612-7	154.1	공동개발 지정	-
		1612-11	161.4		
	132.4	1612-8	132.4	-	도로
	98.4	1612-9	98.4	-	-
	111.4	1612-10	111.4	-	-
	436.2	1612-13	436.2	-	-
	233.70	1612-12	80.5	공동개발 권장	-
		1612-18	92.5		
		1612-57	60.7		
	413.90	1612-19	115.9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1612-22권장)	-
		1612-20	121.5		
		1612-21	92.9		
		1612-22	83.6		
	248.8	1612-17	248.8	-	-
	536.4	1612-23	536.4	-	-
	253.3	1612-24	253.3	-	-
	290.2	1612-33	290.2	-	-
	128.4	1612-34	128.4	-	-
	139.0	1612-35	139.0	-	-
	149.8	1612-36	149.8	-	-
	134.1	1612-37	134.1	-	-
A9	4.5	1612-54	4.5	-	도로
	5.7	1612-55	5.7	-	도로
	16.1	1612-56	16.1	-	도로
	95.5	1612-15	95.5	-	도로
	260.20	1612-16	253.3	공동개발 지정	-
		1612-25	6.9		
	234.80	1612-26	225.6	공동개발 지정	-
		1612-27	9.2		
	262.0	1612-28	262.0	-	-
	179.5	1612-29	179.5	-	-
	165.8	1612-30	165.8	-	-
	172.8	1612-31	172.8	-	-
	179.7	1612-32	179.7	-	-
	93.9	1612-38	93.9	-	-
	101.0	1612-39	101.0	-	-
	183.0	1612-40	88.7	공동개발지정	-
		1612-41	94.3		
	95.4	1612-42	95.4	-	-
	177.0	1612-43	91.5	공동개발지정	-
		1612-44	85.5		
	164.70	1612-45	159.8	공동개발지정	-
		1612-46	4.9		
	161.0	1612-47	161.0	-	-
	34.7	1612-48	34.7	-	도로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A9	159.0	1612-49	159.0	-	-
	176.8	1612-50	176.8	-	-
	187.2	1612-51	187.2	-	-
	170.5	1612-52	170.5	-	-
	130.8	1612-53	130.8	-	-
A10	127.4	1620-1	127.4	-	-
	133.5	1620-2	133.5	-	-
	134.4	1620-3	134.4	-	-
	115.0	1620-4	115.0	-	-
	136.7	1620-5	136.7	-	-
	149.7	1620-6	149.7	-	-
	420.4	1620-8	420.4	-	-
	683.20	1620-9	339.2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1620-10권장)	-
		1620-12	178.7		
		1620-10	165.3		
	328.20	1620-11	162.4	공동개발 권장	-
		1620-13	165.8		
	256.0	1620-14	148.6	공동개발 권장	-
		1620-15	107.4		
	8.5	1620-46	8.5	-	도로
	338.70	1620-16	99.4	공동개발 권장	-
		1620-17	103.6		
		1620-25	135.7		
	20.0	1620-26	20.0	-	도로
	160.6	1620-18	160.6	-	-
	141.9	1620-19	141.9	-	-
	299.8	1620-20	299.8	-	-
	194.9	1620-21	194.9	-	-
	191.4	1620-22	191.4	-	-
	444.4	1620-23	444.4	-	-
	163.9	1620-27	163.9	-	-
	102.0	1620-29	102.0	-	-
	99.3	1620-30	99.3	-	-
	98.0	1620-32	98.0	-	-
	106.9	1620-33	106.9	-	-
	45.5	1620-48	45.5	-	도로
	21.3	1620-49	21.3	-	도로
	57.3	1620-50	57.3	-	도로
A11	190.2	1620-35	190.2	-	-
	262.30	1620-36	119.3	공동개발 권장	-
		1620-40	143.0		
	123.8	1620-37	123.8	-	-
	298.40	1620-38	121.8	공동개발 권장	-
		1620-39	176.6		
	114.5	1620-41	114.5	-	-
	241.0	1620-42	241.0	-	-
	193.50	1620-43	187.6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1620-44	5.9		
	123.6	1620-45	123.6	-	-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A12	241.0	1626-22	241.0	-	-
	178.6	1626-23	178.6	-	-
	135.0	1624-24	135.0	-	-
	166.0	1626-25	166.0	-	-
	304.2	1626-29	304.2	-	-
	352.4	1626-30	352.4	-	-
A13	91.3	1627-1	91.3	-	-
	474.10	1627-2	128.4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1627-3	112.3		
		1627-4	115.9		
		1627-5	117.5		
	128.8	1627-6	128.8	-	-
	232.1	1627-7	115.9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1627-8	116.2		
	414.0	1627-9	414.0	-	-
	274.1	1627-10	274.1	-	-
	223.5	1627-12	223.5	-	-
	330.7	1627-13	330.7	-	-
A14	219.4	1625-28	219.4	-	-
	401.50	1625-24	82.8	공동개발 권장	-
		1625-25	210.9		
		1625-26	107.8		
	102.2	1625-22	102.2	-	-
	151.6	1625-23	151.6	-	-
	330.90	1625-29	198.4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1625-32	132.5		
	234.90	1625-21	16.2	공동개발 지정	최소필지 동일소유
		1625-31	218.7		
	315.4	1625-20	315.4	-	-
A15	168.4	1625-1	168.4	-	-
	132.7	1625-2	132.7	-	-
	179.90	1625-3	95.4	공동개발 권장	-
		1625-4	84.5		
	331.1	1625-5	331.1	-	-
	202.7	1625-7	202.7	-	-
A15	314.50	1625-8	157.8	공동개발 권장	-
		1625-9	156.7		
A16	497.10	1625-10	103.1	공동개발 권장	-
		1625-17	394.0		
	160.1	1625-11	160.1	-	-
	205.60	1625-12	113.0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1625-13	92.6		
	142.3	1625-14	142.3	-	-
	158.7	1625-15	158.7	공동개발 권장	-
	182.1	1625-16	182.1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A17	334.0	300-5	169.0	공동개발 권장	-
		300-12	165.0		
	201.0	300-6	201.0	-	-
	231.0	300-17	231.0	-	-
	589.0	300-18	228.0	공동개발 지정및권장 (300-16, 297-1권장)	-
		300-8	205.0		
		300-16	126.0		
		297-1	30.0		

※ 도로의 경우 용도폐지 후 인접필지와 개발할 경우 개발되는 필지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계획구역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S1	5,096.6	1664-1	613.6	특별계획구역	-
		1664-2	456.1		
		1664-3	470.9		
		1664-4	313.4		
		1664-5	320.3		
		1664-6	135.0		
		1664-7	45.9		
		1664-9	136.2		
		1664-10	202.6		
		1664-11	109.1		
		1664-12	126.5		
		1664-13	54.6		
		1664-14	243.7		
		1664-15	143.0		
		1664-16	386.0		
		1664-17	546.6		
		1664-18	462.6		
		1664-19	330.5		

2. 건축물 용도 및 개발밀도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 불허용도계획

도면표시번호		위치		불허용도	비고
낙성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N1	남부 순환로변	전층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제외), 제2종 근생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자동차관련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학교시설보호지구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에 해당하는 용도	-
		봉천로변			
	N2	낙성대길변	전층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학교시설보호지구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에 해당하는 용도	-

■ 권장용도계획

도면표시번호		위치		권장용도	비고
낙성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E1	남부순환로변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1층을 제외한 전층	·교육 · 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E2	봉천로변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	-
			1층을 제외한 전층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E3	낙성대로변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 중 완구, 서적, 잡화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지역아동센터	-
			1층을 제외한 전층	·교육연구시설, 전시장중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이와 유사한 것, 노유자시설	
	E4	이면부	전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노유자시설	-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 건폐율계획

구 분		건 폐 율(%)	비 고
낙성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 용적률계획

구분		용적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비고
낙성대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250%이하		

주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주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주3) 서로 다른 용적률 규제를 받는 획지들이 획지간 공동개발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며,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는 인접한 이면부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 용적률 완화적용 계획

■ 용적률 완화적용 항목

완화 항목		완화 내용	유형-1 남부순환로변	유형-2 봉천로변	유형-3 낙성대로변	유형-4 이면부
규제형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 × α	기준용적률 × α α = 0.02	기준용적률 × α α = 0.02	기준용적률 × α α = 0.02	기준용적률 × α α = 0.02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이내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01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02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02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06
유도형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 × α	기준용적률 × α α = 0.02	기준용적률 × α α = 0.02	기준용적률 × α α = 0.02	기준용적률 × α α = 0.02
	건축물 용도권장	기준용적률 × (해당층 권장용도 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α이내	기준용적률 × (해당층 권장용도 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2	기준용적률 × (해당층 권장용도 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3	기준용적률 × (해당층 권장용도 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25	기준용적률 × (해당층 권장용도 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25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0.01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0.01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0.01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0.01
의무형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α이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01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05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05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1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α이내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 α이내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 0.01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 0.01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 0.4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α	기준용적률 × 0.01	기준용적률 × 0.01	기준용적률 × 0.01	기준용적률 × 0.01

주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항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주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주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주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5)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 및 1층을 제외한 전층 권장의 경우에는 지상부 연면적의 30%이상 설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특정층(1층) 권장의 경우는 해당층 바닥면적의 5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주6) 구분지상권 제공이란 건축물내 일부 공간에 공연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용범위 등 대하여는 입안권자 등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주7)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개발규모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주8) 미관지구내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계획할 경우 인센티브 항목에서 제외됨
주9)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주10)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부 4-5-1(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 체계) (1)항을 적용한다.

3. 건축물의 높이, 배치, 외관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높이계획

구분	높이계획	적용대상	비고
H-1	기준높이 60m 이하 / 최고높이 70m 이하	남부순환로변	서울시 건축조례 및 남부순환로(1)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침 적용
H-2	기준높이 21m 이하 / 최고높이 28m 이하	남부순환로 이면부	
H-3	기준높이 20m 이하 / 최고높이 25m 이하	남부순환로 이면부	
H-4	기준높이 15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남부순환로 이면부	
H-5	기준높이 27m 이하 / 최고높이 33m 이하	남부순환로 이면부	
H-6	기준높이 36m 이하 / 최고높이 40m 이하	남부순환로 이면부	
H-7	최고높이 35m 이하	봉천로변	-
H-8	최고높이 4층 이하 (최고층수 6층 이하)	낙성대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45조 2항 적용)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층수 6층이하로 계획할 경우 경사지붕 설치		
H-9	최고높이 15m 이하	이면부지역	

■ 남부순환로(1)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침 : 간선도로변 기준높이 완화항목

항 목	높 이 완 화 산 출 식
공개공지	$\frac{\text{공개공지 면적}}{\text{대지면적}} \times$ 기준높이

항 목		높 이 완 화 산 출 식
공공보행통로		$\frac{\text{대지내 공공보행통로}}{\text{대지면적}}$ × 기준높이
지하공간 연결통로		$\frac{\text{지하공간 연결통로 면적} \times 1.5}{\text{대지면적}}$ × 기준높이
건폐율	저층부	건폐율 40%이하 건축시 (저층부 5층/20m이하) : 기준높이 × 0.1
	고층부	탑상형이고 고층부 건폐율 35%이하 건축시 : 기준높이 × 0.1
완화차선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조성시 : 기준높이 × 0.1
대 지 규 모	500㎡미만	전면 건축한계선 2m이상 확보
	500~1500㎡미만	전면 건축한계선 3m이상 확보
	1500㎡이상	전면 건축한계선 5m이상 확보
		$\frac{\text{확보된면적}}{\text{대지면적}}$ × 기준높이
조 경 면 적	도로 전면부 조성	최소폭 3m이상 조성시
	도로 전면 밀집조성	최소면폭 30㎡이상 조성시
		$\frac{\text{확보된면적}}{\text{대지면적}}$ × 기준높이

■ 남부순환로(1)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침 : 이면부 기준높이 완화항목

구 분	항 목	완 화 기 준
이면가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기준완화높이= $\frac{\text{공개공지등의 면적}}{\text{대지면적}}$ × 기준높이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기준완화높이= $\frac{\text{공공보행통로 면적}}{\text{대지면적}}$ × 기준높이
	접도조건 양호대지	기준완화높이 = 3m
	대지조건 양호대지	기준완화높이 = 3m
대지규모	500㎡미만	전면 건축한계선 2m이상 확보
	500~1500㎡미만	전면 건축한계선 3m이상 확보
	1500㎡이상	전면 건축한계선 5m이상 확보
		$\frac{\text{확보된면적}}{\text{대지면적}}$ × 기준높이
조경면적	도로 전면부 조성	최소폭 3m이상 조성시
	도로 전면 밀집조성	최소면폭 30㎡이상 조성시
		$\frac{\text{확보된면적}}{\text{대지면적}}$ × 기준높이

※ 본 도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남부순환로(1)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침을 적용함

※ 용적률 완화적용과 남부순환로(1)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침의 완화기준을 중복(건축한계선에 한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단 미관지구내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계획할 경우 완화기준 미적용

■ 건축물의 배치계획(건축한계선)

구분	건축한계선(m)	비고
남부순환로(중심지미관지구)	3	중심지미관지구
봉천로변	1	-
낙성대길(역사문화미관지구)	3	역사문화미관지구

■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태	탑상형 건축물	· 남부순환로변에 면한 대지의 건축물 중 높이 25m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탑상형 건축형태 권장	-
		옥상 및 지붕	· 옥탑 및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파라펫으로 차폐 권장 · 낙성대로변 경사지붕 설치시 지붕면적의 2/3이상 설치 : 낙성대로변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교육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 · 옥상녹화는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따라 조성	
	외관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개구부	·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 건축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외벽면의 통일성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을 권장함 · 기본적으로 유채색 계통을 사용하고 과도한 원색사용은 제한	-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 남부순환로변에 면한 상업 및 업무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벽면면적의 7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를 권장함 · 20m이상 도로에 면한 상업 및 업무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벽면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를 권장함	-
		벽면녹화	· 지하주차장 옹벽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면부에 최소 20~30cm 정도의 선형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벽면녹화를 권장하며,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기법」을 따르도록 함	-
		담장	· 원칙적으로 담장설치는 불허하며 담장설치 필요시 1.2m이하의 수목식재 등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생활녹지공간 확보	-
	기타사항	야간조명	· 남부순환로에 면하는 대지에 10층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 공개공지에 대한 야간조명 권장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함	-
		친환경 건축물	· 자연지반보존,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중수도 · 빗물이용시설설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계획 및 생태면적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간선가로변 건축한계선 (남부순환로,봉천로변, 낙성대로변)	조성 방식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설치 기준	• 보도와 일체조성(보도가 있는 경우)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이면부 건축한계선	조성 방식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설치 기준	•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권장 • 차량통행의 원활화	
공개공지	주요간선가로, 전면부 가각부	조성 방식	• 쌈지공원형, 피로티형 공개공지	
		설치 기준	• 공개공지 설치의무 건축물의 공개공지의 위치는 전면도로의 주요결절부로 지정함 •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45㎡ 이상 • 최소폭은 5m 이상 설치 •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는 6m이상 ※서울시 건축 조례기준 :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 확보	
쌈지형공지	낙성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조성 방식	• 쌈지형공지	
		설치 기준	• 공개공지 설치의무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건립시 설치 • 대지와 접한 도로중 그 폭원이 넓은 도로변 및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에 설치권장 • 인접대지에 쌈지형공지가 설치된 경우 일체형으로 설치권장 •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2%이상 설치 • 건축물 연면적 합계 4,0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4%이상 설치 • 쌈지형공지 조성시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포함	

5.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차량출입금지구간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남부순환로변	• 폭 20m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금지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공동개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차량출입금지구간을 변경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변경	

■ 주차출입구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주차 출입구	낙성대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지역	·폭 20m이상의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대지가 공동개발에 의해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6m 이상 도로 중 도로폭원이 작은 도로변에 주차출입구를 설치한다. ·주차출입방향이 표시된 변에서도 다음의 구간에서는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당해 대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폭 15m 이상 도로의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현재 주유소는 추후 주유소 이외의 용도로 건축시 기 계획된 주차출입구는 1개소로 계획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주차장 및 출입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차장 설치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인접대지와의 공동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특히 접근성이 양호한 대지와 그러하지 못한 대지와의 적극적인 주차장의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특별계획구역 - S1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S1	신설	낙성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봉천동 1664-5번지 일대	5,096.6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조정여부 결정 - 용도지역 상향시 지상연면적의 30% 이상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입지할 것(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용도지역 변경(상향)시 용적률 계획 - 기준용적률 250%이하 / 허용용적률 35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
높 이	·최고높이 70m이하	-
허용용도	·1층, 2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층을 제외한 전층 -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주거복합시설(단, 주택연면적 비율은 지상연면적의 50%이하), 지식산업센터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권장용도	·1층, 2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금융업소 제외) ·1층, 2층을 제외한 전층 :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단 지상연면적의 30% 이상 확보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선	·남부순환로변: 건축한계선 3m ·그 외 대지경계: 건축한계선 1m	-
대지내공지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간선가로변에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집중 배치하여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녹지대를 조성	-
공공시설부지 제공률	·공공시설기부채납비율 15%이상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동선	·차량동선 : 이면도로로부터 진입하되 지상주차장 설치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2m 이상의 차폐조경 설치	-
외관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제8장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
기타사항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공간시설 계획은 세부개발계획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적정 공간시설 결정 ·남부순환로와 봉천로가 만나는 교차로의 회전반경을 고려한 도로가각 계획수립(최소 6m 이상) - 도로가각의 선형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도의 선형준용 ·특별계획구역에 제시된 획지분할 가능선에 따라 개발할 경우 특별계획구역의 명칭을 S1에서 S1-1, S1-2로 변경이 가능하며, 분할 개발시 인접 블록의 사업추진 의사 또는 협의를 구하여 개발하여야 함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 특별계획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 동의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특별계획구역 폐지 - 특별계획구역 폐지시 특별계획구역 미적용시 일반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

2. 특별계획구역 미적용시 일반지구단위계획 지침

- 특별계획구역 폐지시 특별계획구역에 해당된 필지는 본 지침을 적용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도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기준용적률 : 230% 이하, 허용용적률 : 25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높 이	·남부순환로변 : 최고높이 70m 이하, 기준높이 60m 이하 ·남부순환로변 이면부 : 최고높이 37m 이하, 기준높이 31m 이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침 적용
불허용도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제외), 제2종근생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자동차관련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격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학교시설보호지구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에 해당하는 용도	-
권장용도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층을 제외한 전층 :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한계선	·남부순환로변 3m, 그 외 대지경계 1m	-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낙성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종합지침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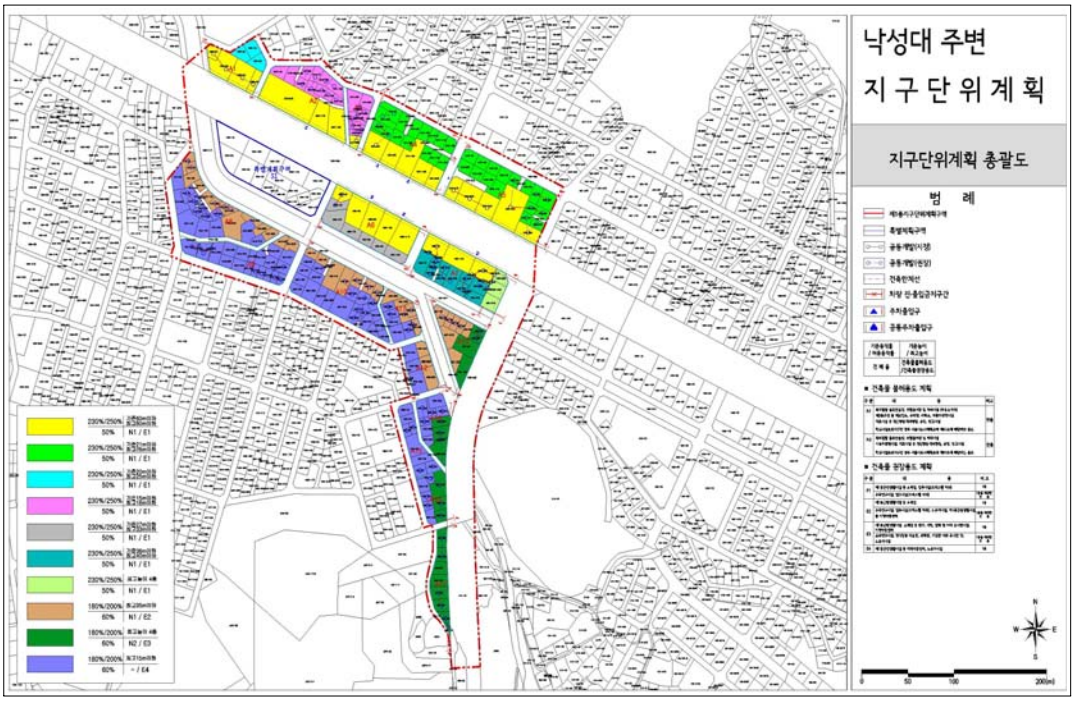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Ⅴ.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악구 도시계획과(☎ 02-880-359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6361-3562)에 관계서류를 비치합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낙성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도면

■ 낙성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종합지침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3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고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단위 : 천원)

연 번	회 계 별	예 산 액
계		21,782,900,000
1	일 반 회 계	15,201,700,000
2	기타특별회계	5,764,100,000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00,200,000
	(2) 교통사업특별회계	1,019,900,000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2,700,000
	(4) 주택사업특별회계	1,168,700,000
	(5) 도시개발특별회계	998,000,000
	(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9,700,000
	(7)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41,900,000
	(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0,600,000
	(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400,000
3	공기업특별회계	817,100,000
	(11) 지역개발기금	1,100,000
	(12) 수도사업특별회계	816,000,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4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02-2115-7895) 및 강남구 치수방재과(☎02-2104-2187)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폐지)사유	비고
		기 점	종 점	거리(km)			
세곡천	지방하천	강남구 세곡동468-11	강남구 세곡동264-5	-	950	강남보금자리지구 사업관련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	하천편입
세곡천	지방하천	강남구 세곡동468-11	강남구 세곡동264-5	-	1,407		폐지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 및 폐지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1부.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1부.

토지 세목조서(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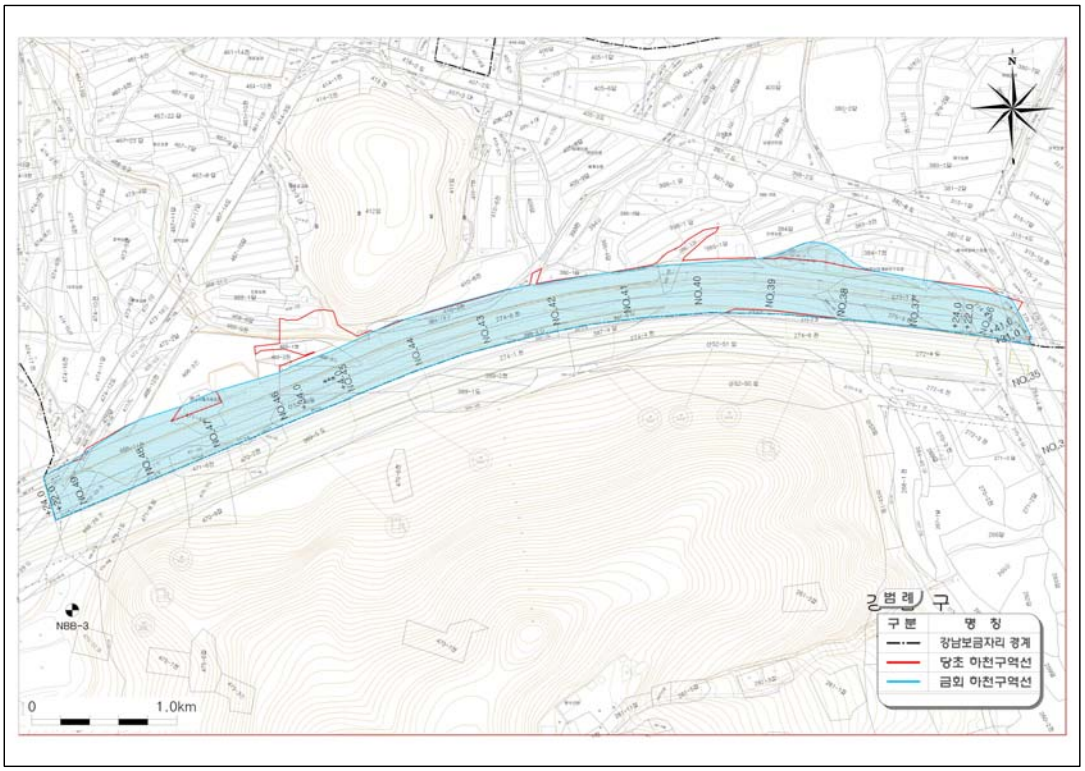
세곡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강남구 세곡동	384	답	1,402	4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강남구 세곡동	384-6	답	95	95	서울특별시					
3	강남구 세곡동	384-7	전	1,948	304	서울특별시					
4	강남구 세곡동	384-14	답	129	92	서울특별시					
5	강남구 세곡동	384-15	답	393	21	서울특별시					
6	강남구 세곡동	391-1	답	53	1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7	강남구 세곡동	410-8	전	1,983	34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8	강남구 세곡동	384-13	구	1,161	15	서울특별시					
9	강남구 세곡동	468-18	도	372	10	서울특별시					
10	강남구 세곡동	471-4	도	638	235	서울특별시					
11	강남구 세곡동	274-9	전	136	136	서울특별시					
12	강남구 세곡동	278-2	도	131	2	서울특별시					
13	서초구 우면동	278-14	도	35	1	서울특별시					
계		13필지			950						
							- 이하여백 -				

토지 세목조서(폐지)

세곡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강남구 세곡동	274-8	천	13,570	575	서울특별시					
2	강남구 세곡동	277	천	103	2	국(건설부)	국유지				
3	강남구 세곡동	277-1	천	39	39	국(건설부)	국유지				
4	강남구 세곡동	386-1	천	294	294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5	강남구 세곡동	386-3	천	221	30	서울특별시					
6	강남구 세곡동	395-2	도	7	1	서울특별시					
7	강남구 세곡동	396-2	도	20	7	서울특별시					
8	강남구 세곡동	468-11	천	3,956	28	서울특별시					
9	강남구 세곡동	469-1	천	298	298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10	강남구 세곡동	469-3	도	443	124	서울특별시					
11	강남구 세곡동	475-20	천	53	9	서울특별시					
계		11필지			1,407						
							- 이하여백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5호

하천 폐천부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86호(2003.12.5)로 하천기본계획수립 고시된 세곡천 폐천부지에 대해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하천의 명칭 : 세곡천(지방하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2011. 9
3. 폐천부지 위치 : 강남구 세곡동 274-8외 10필지
4. 폐천부지의 종류 및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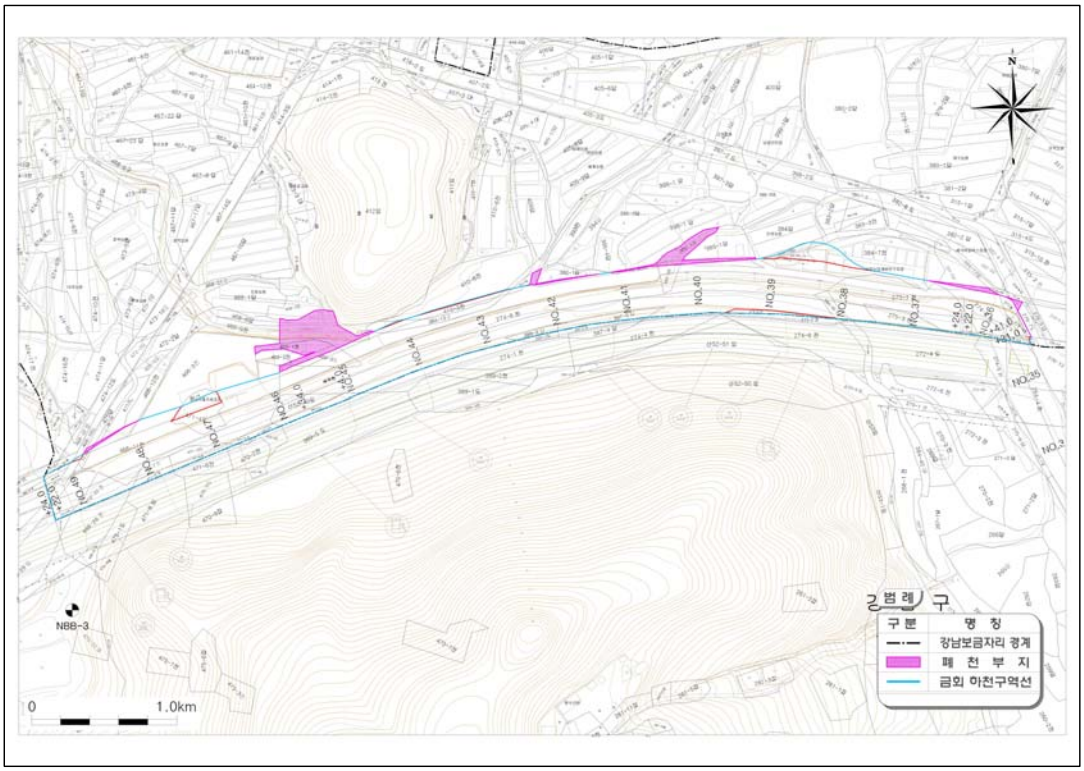
지 목	면적(㎡)	폐천(㎡)	소 유 자	비 고
계		1,407		세부 토지조서 별첨
천	18,534	1,275	국(건설부)외 2	
제	470	132	서울시	

5. 폐천부지 등의 보전 ·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하천법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함.

폐천부지 조서(세곡천)

세곡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강남구 세곡동	274-8	천	13,570	575	서울특별시					
2	강남구 세곡동	277	천	103	2	국(건설부)	국유지				
3	강남구 세곡동	277-1	천	39	39	국(건설부)	국유지				
4	강남구 세곡동	386-1	천	294	294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5	강남구 세곡동	386-3	천	221	30	서울특별시					
6	강남구 세곡동	395-2	도	7	1	서울특별시					
7	강남구 세곡동	396-2	도	20	7	서울특별시					
8	강남구 세곡동	468-11	천	3,956	28	서울특별시					
9	강남구 세곡동	469-1	천	298	298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10	강남구 세곡동	469-3	도	443	124	서울특별시					
11	강남구 세곡동	475-20	천	53	9	서울특별시					
계		11필지			1,407						
							- 이하여백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건설부고시 제393호(1978.1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03호(1980.12.6)로 지적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6호(2006.8.10)·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07호(2008.4.3)로 실시계획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64호(2009.2.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9호(2009.5.21)·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2호(2010.04.15)·서울특별시고시 제2011-69호(2011.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1호(2011.6.23)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11-900호(2011.12.1)로 실시계획 변경 열람 공고된 『경인로 ~ 신도림387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32-15~387-6번지
(금회 : 신도림동 433-39~432-15)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경인로~신도림387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총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35m, 연장347m (금회30m추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2006.08.10 ~ 2015.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의 명 칭 : 경인로~신도림387간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변경 없음.								
1	추가	신도림동 433-39	대지	108	김인배	신도림동290미성아파트6-1001				433-19
2		신도림동 433-38	대지	18	이기태	광진구광장동567광나루현대아파트103-1403	이효운	강남구대치동 은마아파트30-403	가압류	433-18
							새마을금고	성동구성수1가동 247-1	근저당권	
3		신도림동 433-40	대지	134	이기태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600-15덕소강변현대홈타운105-101	이효운	강남구대치동 은마아파트30-403	가압류	433-28
							새마을금고	성동구성수1가동 247-1	근저당권	
4		신도림동 433-26	대지	179	노로륀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90275란초팔로스베르데스아베니다 드아자레아30	신한카드	중구충무로1가21	가압류	
					최창순	신도림동433-26				
					전효배	신도림동433-26	외환은행	중구을지로2가181	가압류	
					전영옥	중랑구중화동450한신아파트109-2402				
					전영배	부천시소사구송내동629	손금임	파주시교하읍 다율리2교하2차 월드메르디앙208-304	근저당권	
					전영숙	광진구구의동610현대아파트602-201				
5		신도림동 433-27	대지	26	노로륀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90275란초팔로스베르데스아베니다 드아자레아30				
					최창순	신도림동433-26				
					전효배	신도림동433-26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		신도림동 433-27	대지	26	전영옥	중랑구중화동450한신아파트 109-2402				
					전영배	부천시소사구송내동629				
					전영숙	광진구구의동610현대아파트 602-201				
6		신도림동 432-32	전	108	강신영	신도림동432-3				432-5
7		신도림동 432-13	대지	83	강종석	서초동1681 삼익아파트2-1003	새마을금고	신도림동435-5	근저당권	
8		신도림동 432-18	대지	192	강종석	서초동1681 삼익아파트2-1003	새마을금고	신도림동435-5	근저당권	
9		신도림동 431-5	도로	95	기획재정부					
10		신도림동 431-3	도로	217	서울특별시					
11		신도림동 432-15	도로	73	서울특별시					
12		신도림동 432-17	도로	129	서울특별시					
13		신도림동 433-14	도로	46	서울특별시					

물 건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의 명 칭 : 경인로~신도림387간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분할지번)	세부 구분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변경 없음.										
1		신도림동 433-19 (433-39)	1층	건물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99	공장	김인배	신도림동290미성아파트6동1001호			
			2층	건물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99	창고					
			1층	건물	시멘트블록, 콘크리트	5	계단/화장실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분할지번)	세부 구분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	추가	신도림동 433-26	1층	건물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95	주택	전영자	구로동452-22	최창순	신도림동 433-26	거주자
										오길자		세입자
								최창순	신도림동433-26	신한카드	중구충무로 1가21	가압류
			1층	건물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24	공장	전효배	신도림동433-26	외환은행	중구을지로2가181	가압류
								전영옥	중랑구중화동450 한신아파트109-2402	손금임	파주시교하읍다율리2교하2차월드메르디앙208-304	근저당권
			1층	건물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24	공장	전영배	부천시소사구송내동629			
								전영숙	광진구구의동현대 아파트602-201			
3		신도림동 433-18, (433-38)	1층	건물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11	주택	이정용	광진구구의동587-87프라임빌리지비-304	새마을금고	성동구성수동1가2 47-1	근저당권
4		신도림동 433-28 (433-40)	1층	건물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88	주택	박연숙	송파구양산로4길16 (거여동 거여5단지아파트) 506동410호	임경숙	신도림동 433-28	세입자
			2층	건물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88	주택					
			1층	건물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37	창고			새마을금고	성동구성수동1가2 47-1	근저당권
5		신도림동 432-5 (432-32)	1층	건물	철골,천막	74	공장	강신영	신도림동432-3			
			-	호이스트	철재	1식	호이스트					
			1층	건물	철골,합판	24	창고					
			2층	건물	철골,함석	24	사무실					
6		신도림동 432-18 432-13	1층	건물	철골,함석	72	창고	강신영	신도림동432-3			

영 업 권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의 명 칭 : 경인로~신도림387간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구분	소재 지번	세부 구분	물건의 종 류	상 호	수량	영업권의 종 류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당초	변경 없음.								
1	추가	신도림동 433-19 (433-39)	1층	공장	승진정밀	1식	제조	박영춘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33-19	
2			1층	공장	태흥정밀	1식	제조	이성구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33-19	
3		신도림동 433-26	1층	공장	신안산업	1식	제조	안학근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33-26	
4		신도림동 432-5 (432-32)	1층	공장	삼오정밀	1식	제조	송명기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32-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7호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77호(2007.10.18), 제2008-268호(2008.07.31), 제2008-418호(2008.11.20), 제2010-19호(2010.1.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2010-263(2010.07.15)호, 제2010-398호(2010.11.11)로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제2011-125호(2011.05.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2011-306호(2011.10.20)로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5호(2011.12.01)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 사업추진 중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 명 칭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 유 형 : 주거지형(시범 뉴타운지구)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 면 적 : 3,492,421㎡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변경없음
   -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시행기간 : 2004.2.25~2012.12.31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개요
   -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3,492,421.0		3,492,421.0	100.0	
주거용지	소 계	1,342,882.1	감) 4,897.8	1,337,984.3	38.3	
	주 택 용 지	1,313,795.2	감) 4,897.8	1,308,897.4	37.5	
	단독주택용지	70,526.5	감) 4,897.8	65,628.7	1.9	
	공동주택용지(아파트)	1,243,268.7		1,243,268.7	35.6	
	준 주 거 용 지	21,903.1		21,903.1	0.6	
	근린생활시설용지	7,183.8		7,183.8	0.2	
상업용지	소 계	91,088.7		91,088.7	2.6	
	일 반 상 업	91,088.7		91,088.7	2.6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기반시설용지	소계	1,890,378.7	증) 4,897.8	1,895,276.5	54.3	
	도로	497,943.3	증) 2,415.0	500,358.3	14.3	
	주차장	20,957.3	증) 2,040.4	22,997.7	0.7	11 개소 (부설주차장 5개소)
	철도시설	9,104.8		9,104.8	0.3	
	자동차정류장	16,529.5		16,529.5	0.5	1 개소
	완충녹지	32,994.3	증) 264.5	33,258.8	1.0	
	연결녹지	7,315.3	증) 166.1	7,481.4	0.2	
	근린공원	875,898.1	증) 150.1	876,048.2	25.1	
	소공원	138.3	감) 138.3	-	0.0	
	수도시설	-		-	0.0	1 개소 중복결정
	공동구	587.3		587.3	0.0	관리사무소, 환기구 (매설연장 : 990m)
	자원회수시설	8,511.9		8,511.9	0.2	1 개소
	공공청사	71,346.7		71,346.7	2.0	7 개소
	학교	142,265.5		142,265.5	4.1	초5, 중2, 고4
	체육시설	6,547.1		6,547.1	0.2	1 개소
	사회복지시설	15,842.5		15,842.5	0.5	3 개소
	박물관	-		-	0.0	1 개소 중복결정
	하천	143,977.9		143,977.9	4.1	
	유수지	13,293.9		13,293.9	0.4	일부 중복결정 (근린공원)
	폐기물처리시설	11,534.1		11,534.1	0.3	1 개소
	공공공지	590.9		590.9	0.0	
	종합의료시설	15,000.0		15,000.0	0.4	1 개소
기타시설용지	소계	168,071.5		168,071.5	4.8	
	종교시설	35,667.4		35,667.4	1.0	29 개소
	유통시설(화훼)	7,957.6		7,957.6	0.2	1 개소
	주유소	7,130.1		7,130.1	0.2	7 개소
	유치원	3,862.8		3,862.8	0.1	6 개소
	공익시설	12,812.4		12,812.4	0.4	3 개소
	군사시설	3,895.9		3,895.9	0.1	5 개소
	편익시설	94,944.6		94,944.6	2.7	11 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800.7		1,800.7	0.1	1 개소

- 지구별 주택 공급계획 : 별첨 1
- 주택용지 블록별 계획 : 별첨 2
-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사항 : 별첨 3

5.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관련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과(전화:02-2171-2059) 및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전화:351-7412~3), SH공사 도시재생본부 뉴타운사업팀 (전화:02-3410-764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별첨 1

□ 지구별 주택 공급계획

- 기정

주택유형	세대수 (호)											
	임 대				분 양				계			
	소계	1지구	2지구	3지구	소계	1지구	2지구	3지구	전체	1지구	2지구	3지구
계	5,797	1,699	1,623	2,475	10,349	2,961	3,511	3,877	16,146	4,660	5,134	6,352
단독주택	-	-	-	-	222	-	-	222	222	-	-	222
아파트	5,797	1,699	1,623	2,475	10,127	2,961	3,511	3,655	15,924	4,660	5,134	6,130
전용면적 60㎡이하	2,901	1,448	819	634	666	112	554	-	3,567	1,560	1,373	634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2,896	251	804	1,841	4,081	1,136	1,372	1,573	6,977	1,387	2,176	3,414
전용면적 85㎡초과	-	-	-	-	5,380	1,713	1,585	2,082	5,380	1,713	1,585	2,082

- 변경

주택유형	세대수 (호)											
	임 대				분 양				계			
	소계	1지구	2지구	3지구	소계	1지구	2지구	3지구	전체	1지구	2지구	3지구
계	5,797	1,699	1,623	2,475	10,384	2,961	3,511	3,910	16,181	4,660	5,134	6,387
단독주택	-	-	-	-	257	-	-	257	257	-	-	257
아파트	5,797	1,699	1,623	2,475	10,127	2,961	3,511	3,655	15,924	4,660	5,134	6,130
전용면적 60㎡이하	2,901	1,448	819	634	666	112	554	-	3,567	1,560	1,373	634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2,896	251	804	1,841	4,081	1,136	1,372	1,573	6,977	1,387	2,176	3,414
전용면적 85㎡초과	-	-	-	-	5,380	1,713	1,585	2,082	5,380	1,713	1,585	2,082

별첨 2

□ 주택용지 블록별 계획(기정)

구 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계		1,313,795.2	16,146					
1지구	소계	371,557.6	4,660					
	BL 1-1	39,805.3	70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2	27,322.2	335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3	19,203.5	255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4	19,462.5	241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5	27,242.8	31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6	21,395.4	37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7	29,544.7	37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8	17,087.9	20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9	10,715.5	127	85㎡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10	19,618.6	230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11	13,320.1	18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12	35,907.7	551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13	33,498.3	298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1-14	35,794.7	300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1-15	21,638.4	146	85㎡초과	연립주택	150% 이하	제1종일반	4층이하
2지구	소계	371,593.0	5,134					
	BL 2-1	57,603.4	94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2-2	30,549.3	434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3	52,427.3	65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4	8,695.1	143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2-5	25,389.1	38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6	29,001.9	353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2-7	50,512.1	472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2-8	37,086.3	448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2-11	30,147.5	46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12	34,603.6	660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13	15,577.4	162	85㎡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구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3지구	소계	570,644.6	6,352					
	BL 2-9	33,086.8	412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2-10	17,602.1	297	60㎡ 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이하
	BL 3-1	31,027.1	334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2	45,326.5	486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3	56,863.1	1,022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3-4	23,531.0	423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3-5	41,177.9	712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3-6	18,583.9	189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7	17,987.0	175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8	32,742.1	330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9	61,871.6	571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이하
	BL 3-10	14,236.3	126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이하
	BL 3-11	13,760.9	125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이하
	BL 3-12	31,255.7	426	85㎡ 이하	연립주택	평균 150% 이하	제1종일반	4층이하
					아파트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3-13	61,066.1	502	60㎡ 초과	연립주택	150% 이하	제1종일반	4층이하
	단독 1-1	4,641.7	14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2	4,264.5	1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3	4,611.1	14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4	1,142.4	4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5	1,265.1	4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6	1,545.3	6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7	1,453.6	5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8	3,761.1	11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9	2,849.4	9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0	856.9	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1	2,674.3	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2	3,813.6	1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3	483.1	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4	5,458.8	16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5	2,135.1	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1	1,754.7	6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2	3,376.1	9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3	4,264.0	1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4	5,647.2	19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1	5,291.5	1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2	4,019.7	14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3	1,122.4	4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4	1,093.2	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5	3,001.7	9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 주택용지 블록별 계획(변경)

구 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계		1,308,897.4	16,181					
1지구	소계	371,557.6	4,660					
	BL 1-1	39,805.3	70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2	27,322.2	335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3	19,203.5	255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4	19,462.5	241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5	27,242.8	31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6	21,395.4	37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7	29,544.7	37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8	17,087.9	208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9	10,715.5	127	85㎡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10	19,618.6	230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11	13,320.1	18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200% 이하	제2종전용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12	35,907.7	551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1-13	33,498.3	298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1-14	35,794.7	300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1-15	21,638.4	146	85㎡초과	연립주택	150% 이하	제1종일반	4층이하
2지구	소계	371,593.0	5,134					
	BL 2-1	57,603.4	94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2-2	30,549.3	434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3	52,427.3	65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4	8,695.1	143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2-5	25,389.1	387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6	29,001.9	353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2-7	50,512.1	472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2-8	37,086.3	448	60㎡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2-11	30,147.5	469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12	34,603.6	660	60㎡이하, 60㎡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15층이하
	BL 2-13	15,577.4	162	85㎡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구분		면적	세대수	평형(평)	유형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3지구	소계	565,746.8	6,387					
	BL 2-9	33,086.8	412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2-10	17,602.1	297	60㎡ 초과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평균 15층이하
	BL 3-1	31,027.1	334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2	45,326.5	486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3	56,863.1	1,022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3-4	23,531.0	423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3-5	41,177.9	712	85㎡ 이하	아파트	200% 이하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3-6	18,583.9	189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7	17,987.0	175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8	32,742.1	330	60㎡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15층이하
	BL 3-9	61,871.6	571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이하
	BL 3-10	14,236.3	126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이하
	BL 3-11	13,760.9	125	85㎡ 초과	아파트	150% 이하	제2종전용	평균 15층이하
	BL 3-12	31,255.7	426	85㎡ 이하	연립주택	평균 150% 이하	제1종일반	4층이하
					아파트		제2종일반	15층이하
	BL 3-13	61,066.1	502	60㎡ 초과	연립주택	150% 이하	제1종일반	4층이하
	단독 1-1	2,767.6	10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2	3,861.8	14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3	3,664.6	1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4	2,890.0	10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5	1,131.4	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6	1,545.3	6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7	1,453.6	6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8	3,695.8	11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1-9	2,849.4	9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0	790.0	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1	2,640.0	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2	3,860.0	1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3	560.0	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4	5,280.0	16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1-15	2,110.0	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1	1,754.7	6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2	3,300.0	10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3	4,190.0	13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2-4	5,609.2	1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1	1,184.9	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2	4,151.5	32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3	1,984.2	16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4	1,406.9	8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단독 3-5	2,947.8	17	-	단독주택	100% 이하	제1종전용	8~12m이하

별첨 3

□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변경)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3,492,421.0	-	3,492,421.0	100.0	
주 거 지 역	2,268,896.8	감) 150.1	2,268,746.7	65.0	
전 용 주 거 지 역	796,358.8	감) 150.1	796,208.7	22.8	
제1종전용주거지역	123,512.3	감) 150.1	123,362.2	3.5	
제2종전용주거지역	678,846.5	-	678,846.5	19.3	용적률 150% 이하
일 반 주 거 지 역	1,409,940.7	-	1,409,940.7	40.4	
제1종일반주거지역	110,268.1	-	110,268.1	3.2	
제2종일반주거지역	1,299,672.6	-	1,299,672.6	37.2	
준주거지역	62,597.3	-	62,597.3	1.8	
일 반 상 업 지 역	137,509.0	-	137,509.0	3.9	
자 연 녹 지 지 역	1,086,015.2	증) 150.1	1,086,165.3	31.1	

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11항에 의거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50% 이하로 함

■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은평구 진관동 132일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80.6	·은평한옥마을 신규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은평구 진관동 산103-32일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69.5	·이주대책자 용지공급을 위한 획지 재구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1	은평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3,492,421.0	· 서울시고시 (제2007-377호)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1	은평뉴타운도시개발사업 (은평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3,492,421.0	· 서울시고시 (제2007-377호)

4)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기정)

구 분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115	28,199.0	497,943.3	
일반도로	소 계		-	1	2,481.2	105,182.9	
	광로	3 류	40	1	2,481.2	105,182.9	
	소 계		-	5	3,476.2	95,962.6	
	대로	1 류	35-37	1	151.6	5,686.0	
		3 류	25	4	3,324.6	90,276.6	
	소 계		-	34	15,082.2	246,595.7	
	중로	1 류	20	8	6,832.2	142,959.8	
		2 류	15-19.9	12	3,047.3	36,469.8	
		3 류	12	14	5,202.7	67,166.1	
	소 계		-	75	7,159.4	50,202.1	
	소로	1 류	10~11	7	564.3	5,863.2	
		2 류	8~9	18	2,304.0	19,556.8	
		3 류	4~6	50	4,291.1	24,782.1	

■ 도로총괄표(변경)

구 분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125	28,640.8	500,358.3	
일반도로	소 계		-	1	2,481.2	105,182.9	
	광로	3 류	40	1	2,481.2	105,182.9	
	소 계		-	5	3,476.2	95,962.6	
	대로	1 류	35-37	1	151.6	5,686.0	
		3 류	25	4	3,324.6	90,276.6	
	소 계		-	34	15,082.2	246,595.7	
	중로	1 류	20	8	6,832.2	142,959.8	
		2 류	15-19.9	12	3,047.3	36,469.8	
		3 류	12	14	5,202.7	67,166.1	
	소 계		-	85	7,601.2	52,617.1	
	소로	1 류	10~11	9	753.4	7,591.7	
		2 류	8~9	17	2,148.7	18,492.9	
		3 류	4~6	59	4,699.1	26,532.5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	40	주간선도로	2,481.2	구역계 진관동 242-10	구역계 진관동 74-20	일반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대로	1	1	37	주간선도로	151.6	광3-1 진관동 72-16	대3-1 진관동 54-2	일반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대로	3	1	28	주간선도로	50.5	대1-1 진관동 72-22	구역계 진관동 72-23	일반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도로	1,035.5	광3-1 진관동 235	대3-3 진관동 159-9	일반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대로	3	3	17.6~34.8	주간선도로	2,110.0	구역계 진관동 161-19	구역계 진관동 342-2	일반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대로	3	4	25	주간선도로	128.6	구역계 진관동 1-7	구역계 진관동 1-24	일반도로		서고415 04.12.20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도로	2,042.4	대1-1 진관동 53-31	대3-4 진관동 2-12	일반도로		서고415 04.12.20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1,212.9	중1-4 진관동 25-13	중1-1 진관동 3-22	일반도로		서고415 04.12.20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도로	59.4	중1-1 진관동 44	구역계 진관동 53-12	일반도로		서고415 04.12.20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943.8	광3-1 진관동 70-14	중1-1 진관동 34-10	일반도로		서고415 04.12.20	
기정	중로	1	5	20~26	집산도로	481.2	중1-4 진관동 69-16	중1-6 진관동 87-22	일반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중로	1	6	20~23	집산도로	1,290.7	광3-1 진관동 93-16	대3-3 진관동 149-17	일반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중로	1	7	24	국지도로	619.1	중1-1 진관동 45	중1-4 진관동 69-1	일반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중로	1	8	20~23	집산도로	182.7	광3-1 진관동 92-22	공공청사⑥ 진관동 106-27	일반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83.7	중1-1 진관동 11-21	중1-2 진관동 13-3	일반도로		서고415 04.12.20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79.1	중1-1 진관동 30-9	중1-2 진관동 28-4	일반도로		서고415 04.12.2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	15	집산 도로	138.6	광3-1 진관동 74-22	구역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12-4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중로	2	4	15	국지 도로	76.5	중1-4 진관동 64-15	중3-2 진관동 64-15	일반 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중로	2	5	15	보조 간선 도로	1,008.5	대1-1 진관동 72-22	구역계 진관동 75-5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중로	2	6	15~ 22.5	집산 도로	431.4	대3-2 진관동 164-27	중1-6 진관동 87-22	일반 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중로	2	7	15	국지 도로	54.9	중1-6 진관동 210-1	중3-13 진관동 209-31	일반 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중로	2	8	15	집산 도로	384.4	대3-2 진관동 163-17	중1-6 진관동 199-1	일반 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중로	2	9	15	집산 도로	96.0	중1-6 진관동 170-4	중3-13 진관동 170-30	일반 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중로	2	10	15~ 19.9	집산	484.9	대3-3 진관동 149-17	근린공원④호 진관동 175-153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중로	2	11	17	국지 도로	2.8	대3-3 진관동 134-27	고등학교⑨ 진관동 134-22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중로	2	12	15	특수 도로	6.5	대3-3 진관동 134-27	고등학교⑪ 진관동 134-22	일반 도로		서고306 11.10.20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503.6	중1-2 진관동 25-22	소3-12 진관동 16-8	일반 도로		서고415 04.12.20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207.2	중1-7 진관동 60-20	중2-4 진관동 65-27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중로	3	3	12	국지 도로	253.5	중1-4 진관동 43-18	중1-7 진관동 38-16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211.4	중1-5 진관동 86-28	중1-6 진관동 225-4	일반 도로		서고19 10.01.21	
기정	중로	3	5	12	국지 도로	61.7	중1-4 진관동 66-20	주차장③ 진관동 67-7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중로	3	6	12~ 20	집산 도로	751.8	대3-3 진관동 139-7	중3-8 진관동 125-31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8	12	집산 도로	468.1	대3-3 진관동 128-28	구역계 진관동 125-10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중로	3	9	12	집산 도로	687.5	대3-3 진관동 159-16	구역계 진관동 152-30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중로	3	10	12	국지 도로	388.4	중1-2 진관동 13-3	소3-2 진관동 17-3	일반 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중로	3	11	12	국지 도로	129.4	중1-7 진관동 49-8	공동주택 진관동 51-19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중로	3	12	12	국지 도로	141.8	중1-7 진관동 60-12	완충녹지 진관동 57-3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중로	3	13	12	집산 도로	1,136.0	대3-3 진관동 139-8	중2-9 진관동 170-30	일반 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중로	3	14	12	국지 도로	54.9	대3-2 진관동 164-14	구역계 진관동 164-21	일반 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중로	3	15	12	국지 도로	207.4	중1-6 진관동 88-20	중2-6 진관동 87-22	일반 도로		서고19 10.01.21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42.2	광3-1 진관동 70-30	구역계 진관동 71-3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19.3	광3-1 진관동 82-29	구역계 진관동 122-19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30.0	중2-8 진관동 206-11	공동주택 진관동 156-8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1	4	11	국지 도로	120.5	중3-1 진관동 15-18	중3-10 진관동 16-9	일반 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5.0	대3-2 진관동 164-27	공동주택 진관동 164-28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25.1	소1-1 진관동 산100-43	근린공원⑥호 진관동 산100-44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22.2	중1-6 진관동 168-25	종교시설 진관동 223-28	일반 도로		서고19 10.01.2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169.5	중3-8 진관동 127-20	소2-1 진관동 128-8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변경	소로	1	8	8~11	국지 도로	169.5	중3-8 진관동 127-20	소2-1 진관동 128-8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9	11	국지 도로	19.6	중3-8 진관동 127-23	소3-19 진관동 132-1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39.6	대3-3 진관동 135-7	중3-6 진관동 126-25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82.7	소2-1 진관동 128-9	소2-15 진관동 산105-10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72.4	소2-2 진관동 128-11	소2-16 진관동 127-8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2	4	9	국지 도로	54.6	중1-1 진관동 2-3	구역계 진관동 1-19	일반 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159.1	중3-9 진관동 산109-16	종교시설 진관동 151-26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2	6	8~9	국지 도로	514.9	중3-13 진관동 210-2	구역계 진관동 216-1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54.6	중2-8 진관동 199-4	보행자도로 진관동 208-3	일반 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68.4	소2-3 진관동 126-22	소2-16 진관동 126-22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97.5	대3-3 진관동 131-8	구역계 진관동 130-13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3.8	중3-6 진관동 127-3	소2-1 진관동 127-11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69.8	중3-6 진관동 124-26	소2-13 진관동 124-4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95.6	소3-18 진관동 125-1	단독주택 진관동 124-3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폐지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2.5	중3-8 진관동 127-20	소3-19 진관동 127-22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66.9	중3-6 진관동 124-27	복지시설 진관동 산104-14	일반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155.2	소2-1 진관동 127-8	소2-15 진관동 126-18	일반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31.8	소1-1 진관동 71-3	근린공원⑥호 진관동 산100-36	일반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2	18	9	국지도로	135.1	광3-1 진관동 248-21	초등학교③ 진관동 248-15	일반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3	34	4	특수도로	36.7	중3-6 진관동 126-22	소2-16 진관동 126-22	보행자전용도로		서고377 07.10.18	
변경	소로	2	19	9	특수도로	36.7	중3-6 진관동 126-22	소2-16 진관동 126-22	보행자전용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1	5	국지도로	65.2	중3-10 진관동 16-11	구역계 진관동 16-18	일반도로		서고415 04.12.20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42.6	중3-10 진관동 산99-14	구역계 진관동 산91-4	일반도로		서고415 04.12.20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30.4	중1-2 진관동 24-22	구역계 진관동 398-2	일반도로		서고415 04.12.20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112.7	중1-4 진관동 64-40	중1-4 진관동 18-29	일반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소로	3	5	4~8	국지도로	282.8	광3-1 진관동 74-3	광3-1 진관동 73-31	일반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34.6	광3-1 진관동 78-19	편익시설 진관동 76-7	일반도로		서고268 08. 7.31	
기정	소로	3	7	7	국지도로	122.0	수도시설 진관동 246-20	구역계 진관동 246-25	일반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3	9	4	특수도로	3.5	소2-13 진관동 124-3	구역계 진관동 124-3	일반도로		서고306 11.10.20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8.8	대3-3 진관동 산105-7	종교시설 진관동 산103-25	일반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37.9	대3-3 진관동 144-29	근린공원⑦호 진관동 산106-11	일반도로		서고377 07.10.1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317.2	중3-1 진관동 16-8	구역계 진관동 산100-14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48.0	소2-15 진관동 124-22	소3-24 진관동 136-23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205.3	소2-10 진관동 127-22	소2-1 진관동 135-2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변경	소로	3	14	6	국지 도로	227.9	소1-8 진관동 127-22	소3-15 진관동 128-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27.8	소3-14 진관동 127-24	소2-1 진관동 128-20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변경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43.8	소3-14 진관동 127-24	소1-8 진관동 128-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84.5	소2-10 진관동 127-20	소2-10 진관동 127-30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51.3	소3-16 진관동 127-18	소3-16 진관동 127-18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277.6	중3-6 진관동 126-24	소3-37 진관동 125-2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501.3	중3-8 진관동 125-29	소3-19 진관동 132-17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변경	소로	3	19	6~8	국지 도로	520.7	중3-8 진관동 125-29	소3-19 진관동 132-1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21.5	중3-6 진관동 126-30	구역계 진관동 125-25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21	4	국지 도로	23.8	중3-6 진관동 126-6	단독주택 진관동 126-2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변경	소로	3	21	4	국지 도로	19.2	중3-8 진관동 125-6	소3-19 진관동 125-2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2	4	국지 도로	15.9	중3-6 진관동 126-5	단독주택 진관동 126-5	일반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23	7	국지 도로	18.0	소3-7 진관동 246-20	종교시설 진관동 242-24	일반 도로		서고458 06.12.2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36.1	중3-6 진관동 124-16	근린공원⑦호 진관동 136-22	일반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15.5	광3-1 진관동 73-18	근생③ 진관동 73-18	일반도로		서고268 08. 7.31	
기정	소로	3	26	7	국지도로	83.7	대3-4 진관동 2-25	중1-1 진관동 산99-5	일반도로		서고268 08. 7.31	
기정	소로	3	27	4~4.2	국지도로	196.1	소2-1 진관동 135-6	대3-3 진관동 136-7	일반도로		서고268 08. 7.31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6.4	중3-6 진관동 137-14	근린공원⑦ 진관동 144	일반도로		서고268 08. 7.31	
폐지	소로	3	29	3	특수도로	21.0	완충녹지② 진관동 130-6	소3-19 진관동 132-16	보행자전용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30	3	특수도로	36.4	소3-19 진관동 132-16	소3-19 진관동 132-17	보행자전용도로		서고377 07.10.18	
변경	소로	3	30	2~3	특수도로	40.5	소3-19 진관동 132-19	소3-19 진관동 132-1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1	3	특수도로	6.7	중3-8 진관동 127-24	소3-19 진관동 127-24	보행자전용도로		서고377 07.10.18	
변경	소로	3	31	2	특수도로	20.0	중3-8 진관동 127-24	소3-57 진관동 130-2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2	3	특수도로	8.9	중3-8 진관동 127-24	소3-14 진관동 127-24	보행자전용도로		서고377 07.10.18	
변경	소로	3	32	2	특수도로	21.0	중3-8 진관동 127-23	소3-14 진관동 127-24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	33	4	특수도로	31.7	소2-8 진관동 126-22	소2-2 진관동 126-19	보행자전용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35	4	특수도로	28.2	중3-3 진관동 41	공동주택 진관동 41-23	보행자전용도로		서고458 06.12.28	
기정	소로	3	36	4	특수도로	22.8	소3-18 진관동 125	구역계 진관동 125	보행자전용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37	4	특수도로	6.6	소3-18 진관동 125-2	구역계 진관동 125-2	보행자전용도로		서고377 07.10.1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8	5	특수 도로	47.4	중2-8 진관동 206-21	공동주택 진관동 205-18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448 05.12.30	
기정	소로	3	39	4	특수 도로	81.5	대3-3 진관동 207-23	소2-7 진관동 208-3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458 06.12.28	
폐지	소로	3	40	3	특수 도로	20.9	완충녹지 진관동 134-13	소3-14 진관동 128-23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377 07.10.18	
폐지	소로	3	41	3	특수 도로	33.6	소3-14 진관동 128-22	소3-15 진관동 127-28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42	3	특수 도로	33.8	소3-15 진관동 127-28	소2-10 진관동 127-31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377 07.10.18	
변경	소로	3	42	2~3	특수 도로	43.3	소3-15 진관동 127-27	소1-8 진관동 127-31	보행자 전용 도로			
기정	소로	3	43	3	특수 도로	24.4	소2-10 진관동 127-31	근린공원⑦ 진관동 127-4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44	3	특수 도로	65.2	중3-15 진관동 221-24	근린공원③ 진관동 221-30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46	4	특수 도로	33.2	소3-18 진관동 125-2	구역계 진관동 125-2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47	4	특수 도로	6.7	소2-13 진관동 124-3	연결녹지 진관동 124-2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48	3	특수 도로	64.5	중1-4 진관동 66-11	중3-2 진관동 66-7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49	5	특수 도로	67.8	중1-4 진관동 66-11	중3-2 진관동 62-8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377 07.10.18	
기정	소로	3	50	6	특수 도로	5	대3-3 진관동 207-2	중학교⑦ 진관동 207-2	보행자 전용 도로		서고398 10.11.11	
기정	소로	3	51	6	국지 도로	312.7	중1-8 진관동 산101-5	종교시설⑩ 진관동 110-28	보차 혼용 도로			
기정	소로	3	52	6	국지 도로	24.9	대3-3 진관동 135-14	소3-27 진관동 136-16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53	4	국지 도로	22.0	소3-19 진관동 132-17	소3-55 진관동 127-2	일반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54	6	국지도로	60.3	소3-14 진관동 128-24	소3-15 진관동 127-27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55	2	특수도로	4.9	소3-53 진관동 132-17	근린공원⑦ 진관동 132-17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56	2~3	특수도로	37.0	소3-19 진관동 127-22	소3-53 진관동 127-22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57	2~3	특수도로	38.8	소3-19 진관동 132-23	소3-19 진관동 132-17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58	2	특수도로	21.6	중3-8 진관동 127-20	소3-19 진관동 127-22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59	3	특수도로	18.0	소3-19 진관동 125-29	근린공원⑦ 진관동 125-29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60	3	특수도로	47.8	중3-8 진관동 125-25	소3-19 진관동 125-29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61	2	특수도로	34.3	소3-14 진관동 128-21	소3-54 진관동 128-23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62	2~3	특수도로	54.5	소2-1 진관동 134-31	소3-14 진관동 134-17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63	2	특수도로	22	소2-1 진관동 128-19	소3-15 진관동 128-3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64	3	특수도로	21.8	소2-1 진관동 127-9	근린공원⑦ 진관동 127-2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65	2~3	특수도로	65.5	소3-8 진관동 125-25	중3-6 진관동 126-6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66	3	특수도로	11.0	소3-21 진관동 125-29	소3-65 진관동 126-2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0	소로1-8	·폭원확장 : 8m→8~11m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1-9	·노선신설 폭원 11m, 연장 19.6m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2-14	-	·폐지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34	소로2-19	·폭원확장 : 4m→9m	·이주대책자 용지공급을 위한 획지 재구획에 따른 폭원확장
소로3-14	소로3-14	·기종점변경 ·연장변경 : 205.3m→227.9m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15	소로3-15	·기종점변경 ·연장변경 : 127.8m→143.8m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19	소로3-19	·선형변경 ·폭원확장 : 6m→6~8m ·연장변경 : 501.3m→520.7m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21	소로3-21	·선형변경 ·연장변경 : 23.8m→19.2m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29	-	·폐지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30	소로3-30	·선형변경 ·폭원축소 : 3m→2~3m ·연장변경 : 36.4m→40.5m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31	소로3-31	·기종점변경 ·폭원축소 : 3m→2m ·연장변경 : 6.7m → 20.0m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32	소로3-32	·기종점변경 ·폭원축소 : 3m→2m ·연장변경 : 8.9m→21.0m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33	-	·폐지	·이주대책자 용지공급을 위한 획지 재구획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3-40	-	·폐지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41	-	·폐지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3-42	소로3-42	·기종점변경 ·폭원축소 : 3m→2~3m ·연장변경 : 33.8m→43.3m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53	·노선신설 폭원 4m, 연장 22.0m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54	·노선신설 폭원 6m, 연장 60.3m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55	·노선신설 폭원 2m, 연장 4.9m, 보행자전용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56	·노선신설 폭원 2~3m, 연장 37.0m, 보행자전용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57	·노선신설 폭원 2~3m, 연장 38.8m, 보행자전용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58	·노선신설 폭원 2m, 연장 21.6m, 보행자전용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59	·노선신설 폭원 3m, 연장 18.0m, 보행자전용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60	·노선신설 폭원 3m, 연장 47.8m, 보행자전용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61	·노선신설 폭원 2m, 연장 34.3m, 보행자전용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62	·노선신설 폭원 2~3m, 연장 54.5m, 보행자전용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63	·노선신설 폭원 2m, 연장 22.0m, 보행자전용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64	·노선신설 폭원 3m, 연장 21.8m, 보행자전용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65	·노선신설 폭원 2~3m, 연장 65.5m, 보행자전용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소로3-66	·노선신설 폭원 3m, 연장 11.0m, 보행자전용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957.3	-	20,957.3		
기정	1	주차장	진관동 77-7 일원	5,078.2	-	5,078.2	서고458 06.12.28	
기정	2	주차장	진관동 71-3 일원	781.9	-	781.9	서고458 06.12.28	
기정	3	주차장	진관동 68-12 일원	4,744.4	-	4,744.4	서고458 06.12.28	
기정	4	주차장	진관동 125-12 일원	5,339.3	-	5,339.3	서고458 06.12.28	
기정	5	주차장	진관동 66-1 일원	3,073.7	-	3,073.7	서고448 05.12.30	
기정	6	주차장	진관동 209-28 일원	1,939.8	-	1,939.8	서고448 05.12.30	

다) 철도(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진관동 60-18	진관동 53-12	구파발역	621.8	9,104.8	서고458 06.12.28	

라)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529.5	-	16,529.5		
기정	1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진관동 78-6 일원	16,529.5	-	16,529.5	서고377 07.10.18	

(2) 공간시설

가)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0,309.6	증) 430.6	40,740.2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진관동 57-14 일원	6,050.9	-	6,050.9	서고458 06.12.28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진관동 133-25 일원	9,394.1	-	-	서고458 06.12.28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진관동 133-25 일원	-	증) 264.5	9,658.6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진관동 35-19일원	11,493.1	-	11,493.1	서고415 04.12.20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진관동 72-18 일원	1,701.8	-	1,701.8	서고458 06.12.28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진관동 164-27 일원	4,354.4	-	4,354.4	서고377 07.10.18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진관동 124일원	7,315.3	-	-	서고377 07.10.18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진관동 124일원	-	증) 166.1	7,481.4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완충녹지	·면적 변경 : 9,394.1㎡ → 9,658.6㎡	·단독주택지내 한옥마을조성에 따른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간선도로에 인접한 가각부 완충녹지 확대
1	연결녹지	·면적 변경 : 7,315.3㎡ → 7,481.4㎡	·이주대책자 용지공급을 위한 획지 재구획에 따른 단독주택지 인접부 연결녹지 면적 변경

나) 공원

■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8	876,036.4	7	876,048.2
근린공원	7	875,898.1	7	876,048.2
소공원	1	138.3	-	-

■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76,036.4	증) 11.8	876,048.2		
기정	1	제1호 근린공원	진관동 9-26 일원	32,876.5	-	32,876.5	서고415 04.12.20	
기정	2	제2호 근린공원	진관동 42-25 일원	17,223.8	-	17,223.8	서고415 04.12.20	
기정	3	제3호 근린공원	진관동 산108-14 일원	234,383.9	-	234,383.9	서고415 04.12.20	
기정	4	제4호 근린공원	진관동 산109-25 일원	163,652.0	-	163,652.0	서고415 04.12.20	
기정	5	제5호 근린공원	진관동 53-5 일원	124,340.5	-	124,340.5	서고415 04.12.20	
기정	6	제6호 근린공원	진관동 산101-13 일원	155,855.0	-	155,855.0	서고415 04.12.20	
기정	7	제7호 근린공원	진관동 132-28 일원	147,566.4	-	-	서고415 04.12.20	
변경	7	제7호 근린공원	진관동 132-28 일원	-	증) 150.1	147,716.5		
기정	1	제1호 소공원	진관동 126-22 일원	138.3	-	-	서고377 07.10.18	
폐지	1	제1호 소공원	진관동 126-22 일원	-	감) 138.3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제7호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147,5664.4㎡ → 147,716.5㎡	·존치시설 인접 부지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완충지대 조성 및 이주대책자 용지공급에 따른 획지 재구획에 의한 근린공원 변경
1	제1호 소공원	· 소공원 폐지	·이주대책자 용지공급을 위한 획지 재구획에 따른 소공원 폐지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90.9	-	590.9		
기정	1	공공공지	진관동 125-2 일원	590.9	-	590.9	서고398 10.11.11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배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도공급 시설	진관동 246-20 일원	7,853.9	-	7,853.9	서고398 83.07.29	제6호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나) 공동구(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90.0	-	990.0	587.3	-	587.3		
기정	1	공동구	진관동 85-6 일원	990.0	-	990.0	-	-	-	서고458 06.12.28	
기정	2	공동구	진관동 산100-44 일원	-	-	-	562.3	-	562.3	서고458 06.12.28	
기정	3	공동구	진관동 83-23 일원	-	-	-	25.0	-	25.0	서고458 06.12.28	

다) 자원회수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자원 회수시설	진관동 122-6 일원	8,511.9	-	8,511.9	서고458 06.12.28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1,346.7	-	71,346.7		
기정	1	공공청사	진관동 224-1 일원	2,549.2	-	2,549.2	서고415 04.12.20	
기정	2	공공청사	진관동 산100-23일원	483.7	-	483.7	서고19 10.01.21	
기정	3	공공청사	진관동 240-9 일원	6,770.5	-	6,770.5	서고377 07.10.18	
기정	4	공공청사	진관동 66-27 일원	1,057.5	-	1,057.5	서고377 07.10.18	
기정	5	공공청사	진관동 223-5 일원	5,209.7	-	5,209.7	서고377 07.10.18	
기정	6	공공청사	진관동 110-26 일원	54,780.2	-	54,780.2	서고377 07.10.18	
기정	7	공공청사	진관동 208-17 일원	495.9	-	495.9	서고19 10.01.21	

나) 학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2,265.5	-	142,265.5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진관동 14-13 일원	11,448.1	-	11,448.1	서고415 04.12.20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진관동 41-23일원	9,918.9	-	9,918.9	서고458 06.12.28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진관동 246-5 일원	10,222.2	-	10,222.2	서고458 06.12.28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진관동 165-32 일원	10,027.6	-	10,027.6	서고448 05.12.30	
기정	5	학교	초등학교	진관동 200-23 일원	10,049.9	-	10,049.9	서고448 05.12.30	
기정	6	학교	중학교	진관동 24-23 일원	12,091.8	-	12,091.8	서고415 04.12.20	
기정	7	학교	중학교	진관동 207 일원	11,086.3	-	11,086.3	서고458 06.12.28	
기정	8	학교	고등학교	진관동 24-16 일원	13,949.6	-	13,949.6	서고415 04.12.20	
기정	9	학교	고등학교	진관동 134-2 일원	26,447.6	-	26,447.6	서고377 07.10.18	
기정	10	학교	고등학교	진관동 197-20 일원	13,398.2	-	13,398.2	서교고50 87.08.27	존치시설 (웹미디어고)
기정	11	학교	고등학교	진관동 243-1 일원	13,625.3	-	13,625.3	서고458 06.12.28	

다) 체육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체육시설		진관동 75-4 일원	6,547.1	-	6,547.1	서고377 07.10.18	

라)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842.5	-	15,842.5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진관동 156-6 일원	10,069.6	-	10,069.6	서은고51 96.11.29	존치시설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진관동 250 일원	3,272.8	-	3,272.8	서고458 06.12.28	존치시설 (인덕원)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진관동 221-25 일원	2,500.1	-	2,500.1	서고377 07.10.18	

마) 박물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문화시설	박물관	진관동 산100-36 일원	4,541.1	-	4,541.1	서고377 07.10.18	제6호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5) 방재시설

가) 하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382	143,977.9	-	143,977.9		
기정	1	하천	소하천	진관동 72-22	진관동 332	2.181	44,941.4	-	44,941.4	서고415 04.12.20	
기정	2	하천	소하천	진관동 46-15	진관동 산109-12	4.201	99,036.5	-	99,036.5	서고448 05.12.30	

나)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293.9	-	13,293.9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진관동 13-30 일원	5,439.1	-	5,439.1	서고415 04.12.20	제1호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	유수시설	진관동 72-26 일원	13,293.9	-	13,293.9	서고458 06.12.28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진관동 131-13 일원	3,769.1	-	3,769.1	서고458 06.12.28	제7호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6) 보건위생시설

가)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종합의료시설	진관동 93-6 일원	15,000.0	-	15,000.0	서고125 11.05.12	

(7)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리시설	진관동 76-20 일원	11,534.1	-	11,534.1	서고458 06.12.28	

5) 기타시설(변경) 사유서

(1) 종교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5,667.4	-	35,667.4	
기정	1	종교	진관동 71-4 일원	2,450.1	-	2,450.1	존치시설 (흥창사)
기정	2	종교	진관동 41 일원	990.7	-	990.7	
기정	3	종교	진관동 41 일원	339.2	-	339.2	
기정	4	종교	진관동 16-11 일원	669.8	-	669.8	
기정	5	종교	진관동 산99-22 일원	280.7	-	280.7	존치시설 (관음사)
기정	6	종교	진관동 산100-46 일원	677.7	-	677.7	
기정	7	종교	진관동 산100-22 일원	1,325.2	-	1,325.2	
기정	8	종교	진관동 65-25 일원	1,158.0	-	1,158.0	
기정	9	종교	진관동 175-429 일원	2,311.9	-	2,311.9	
기정	10	종교	진관동 121-17 일원	864.0	-	864.0	존치시설 (시연사)
기정	11	종교	진관동 242-24 일원	1,131.5	-	1,131.5	존치시설 (사현사)
기정	12	종교	진관동 221-27 일원	2,156.6	-	2,156.6	존치시설 (구파발성당)
기정	13	종교	진관동 170-3 일원	2,467.5	-	2,467.5	존치시설 (구파발교회)
기정	14	종교	진관동 231-5 일원	677.7	-	677.7	
기정	15	종교	진관동 160-7 일원	666.7	-	666.7	
기정	16	종교	진관동 162-25 일원	166.1	-	166.1	
기정	17	종교	진관동 196-9 일원	1,157.2	-	1,157.2	
기정	18	종교	진관동 209-15 일원	1,489.1	-	1,489.1	
기정	19	종교	진관동 141-27 일원	1,323.7	-	1,323.7	
기정	20	종교	진관동 125-12 일원	667.0	-	667.0	
기정	21	종교	진관동 126-11 일원	992.9	-	992.9	
기정	22	종교	진관동 145-2 일원	665.9	-	665.9	
기정	23	종교	진관동 136-31 일원	1,026.1	-	1,026.1	
기정	24	종교	진관동 산109-14 일원	6,385.2	-	6,385.2	존치시설 (선림사)
기정	25	종교	진관동 산109-20 일원	663.4	-	663.4	
기정	26	종교	진관동 136-3 일원	310.0	-	310.0	존치시설 (흥덕사)
기정	27	종교	진관동 164-11 일원	669.3	-	669.3	
기정	28	종교	진관동 175-324 일원	1,324.2	-	1,324.2	존치시설 (기자촌교회)
기정	29	종교	진관동 92-13	660.0	-	660.0	

(2) 유통시설(화훼)(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통시설(화훼)	진관동 75-29 일원	7,957.6	-	7,957.6	

(3) 주유소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130.1	-	7,130.1	
기정	1	주유소	진관동 73-22 일원	707.1	-	707.1	
기정	2	주유소	진관동 75-18 일원	815.7	-	815.7	
기정	3	주유소	진관동 76-6 일원	2,486.6	-	2,486.6	
기정	4	주유소	진관동 240-27 일원	745.4	-	745.4	
기정	5	주유소	진관동 161-10 일원	760.5	-	760.5	
기정	6	주유소	진관동 93-19 일원	800.0	-	800.0	
기정	7	주유소	진관동 158-28 일원	814.8	-	814.8	

(4) 유치원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862.8	-	3,862.8	
기정	1	유치원	진관동 5-10 일원	623.4	-	623.4	
기정	2	유치원	진관동 26-16 일원	630.1	-	630.1	
기정	3	유치원	진관동 41 일원	684.4	-	684.4	
기정	4	유치원	진관동 209-24 일원	629.9	-	629.9	
기정	5	유치원	진관동 168-24 일원	626.7	-	626.7	
기정	6	유치원	진관동 206-19 일원	668.3	-	668.3	

(5) 공익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812.4	-	12,812.4	
기정	1	공익	진관동 산100-23 일원	6,936.2	-	6,936.2	
기정	2	공익	진관동 164-11 일원	4,273.8	-	4,273.8	
기정	3	공익	진관동 산110 일원	1,602.4	-	1,602.4	

(6) 군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895.9	-	3,895.9	
기정	1	군사	진관동 1-25 일원	1,141.0	-	1,141.0	
기정	2	군사	진관동 43-1 일원	1,187.4	-	1,187.4	
기정	3	군사	진관동 산100-44 일원	1,179.2	-	1,179.2	
기정	4	군사	진관동 42-26 일원	103.3	-	103.3	
기정	5	군사	진관동 산100-44 일원	285.0	-	285.0	

(7) 편익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4,944.6	-	94,944.6	
기정	1	편익	진관동 83-6 일원	6,334.4	-	6,334.4	
기정	2	편익	진관동 161-23 일원	3,308.2	-	3,308.2	
기정	3	편익	진관동 235-28 일원	12,986.2	-	12,986.2	
기정	4	편익	진관동 213-9 일원	7,591.6	-	7,591.6	
기정	5	편익	진관동 208-10 일원	8,631.7	-	8,631.7	
기정	6	편익	진관동 149-4 일원	29,436.1	-	29,436.1	
기정	7	편익	진관동 158-28 일원	2,272.5	-	2,272.5	
기정	8	편익	진관동 160-4 일원	7,485.6	-	7,485.6	
기정	9	편익	진관동 163-5 일원	6,251.4	-	6,251.4	
기정	10	편익	진관동 76-1 일원	6,797.4	-	6,797.4	
기정	11	편익	진관동 162-13 일원	3,849.5	-	3,849.5	

(8)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자동차관련시설	진관동 76-16 일원	1,800.7	-	1,80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차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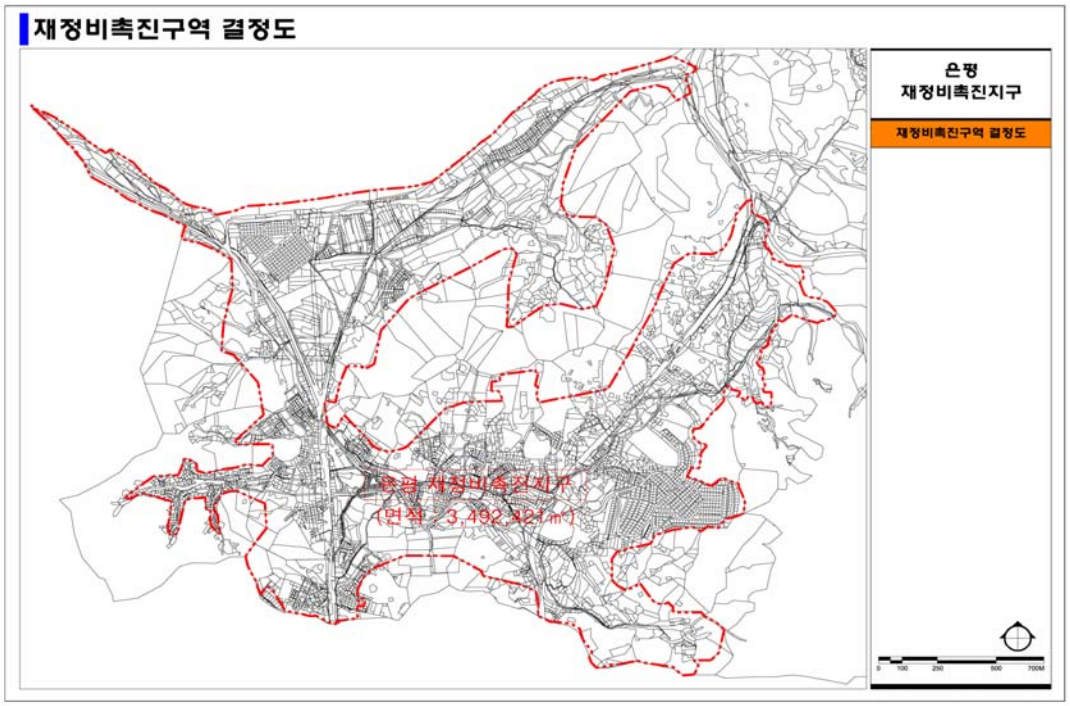
(9) 주차장(부설주차장)

■ 주차장(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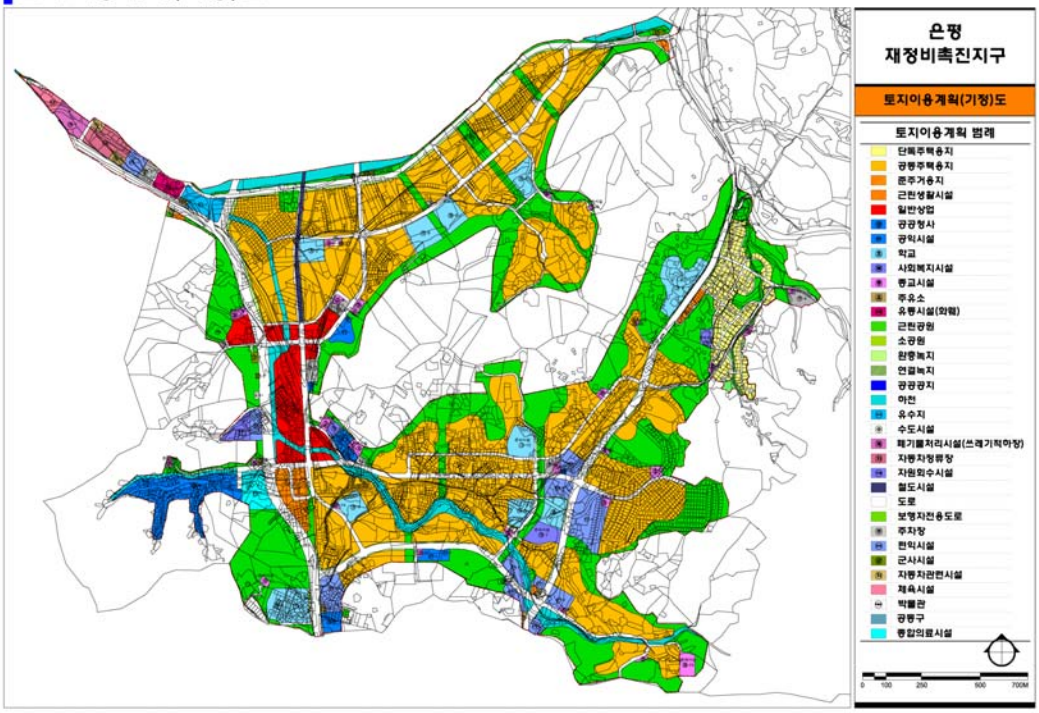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증) 2,040.4	2,040.4	부설주차장
신설	7	주차장	진관동 132 일원	-	증) 418.5	418.5	부설주차장
신설	8	주차장	진관동 128-28 일원	-	증) 453.1	453.1	부설주차장
신설	9	주차장	진관동 127-22 일원	-	증) 305.8	305.8	부설주차장
신설	10	주차장	진관동 127-20 일원	-	증) 496.5	496.5	부설주차장
신설	11	주차장	진관동 127-22 일원	-	증) 366.5	366.5	부설주차장

■ 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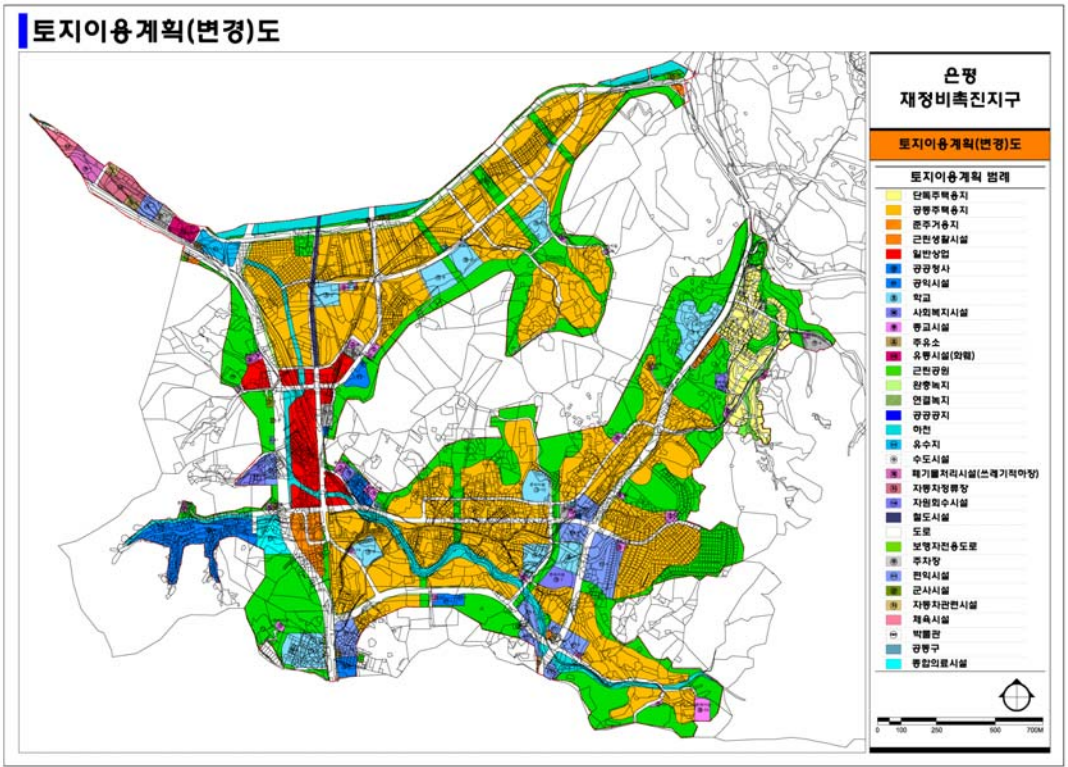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주차장	신설	·단독주택지내 한옥마을조성에 따른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주차장 확보
8	주차장	신설	·단독주택지내 한옥마을조성에 따른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주차장 확보
9	주차장	신설	·단독주택지내 한옥마을조성에 따른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주차장 확보
10	주차장	신설	·단독주택지내 한옥마을조성에 따른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주차장 확보
11	주차장	신설	·단독주택지내 한옥마을조성에 따른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주차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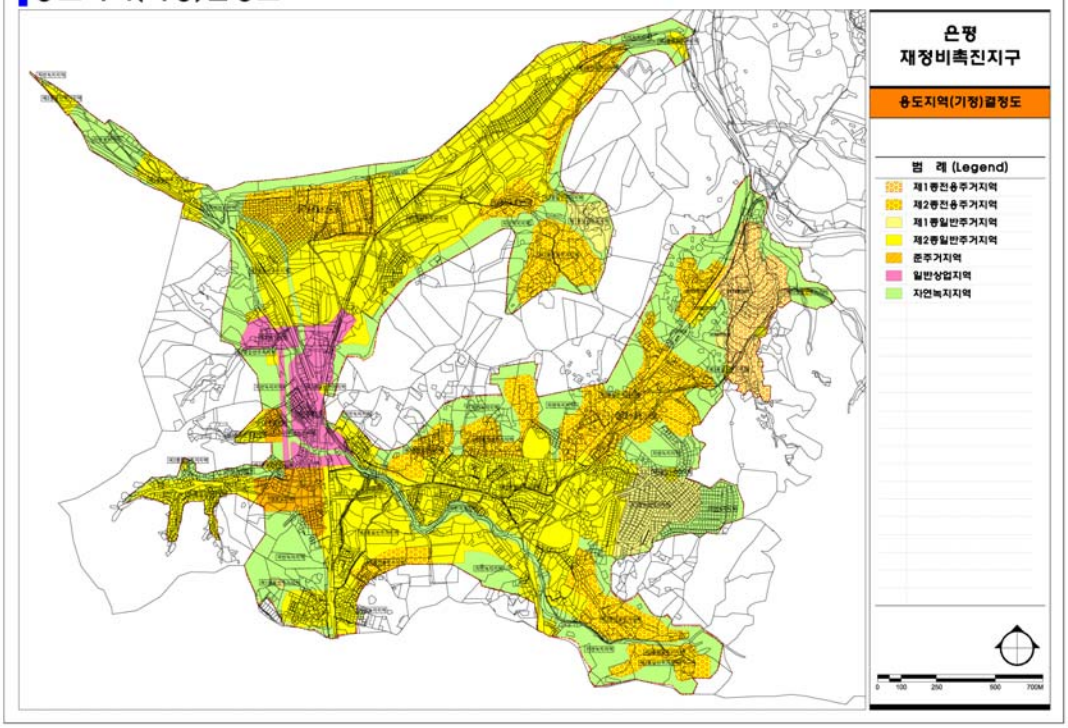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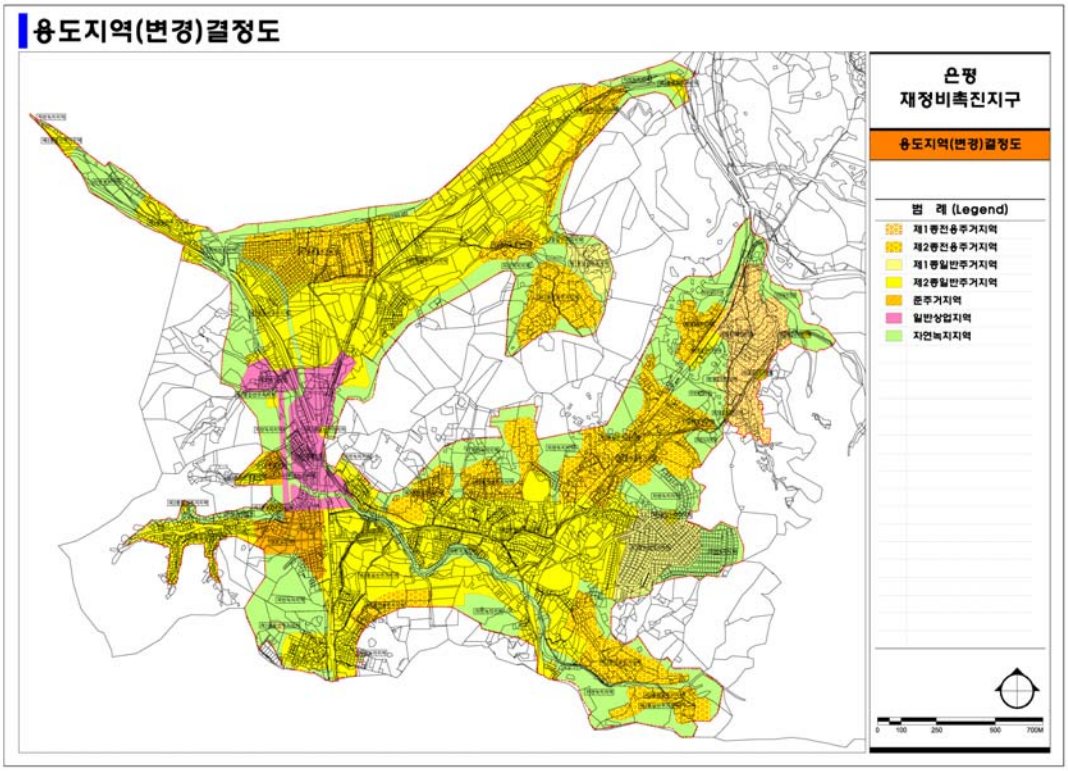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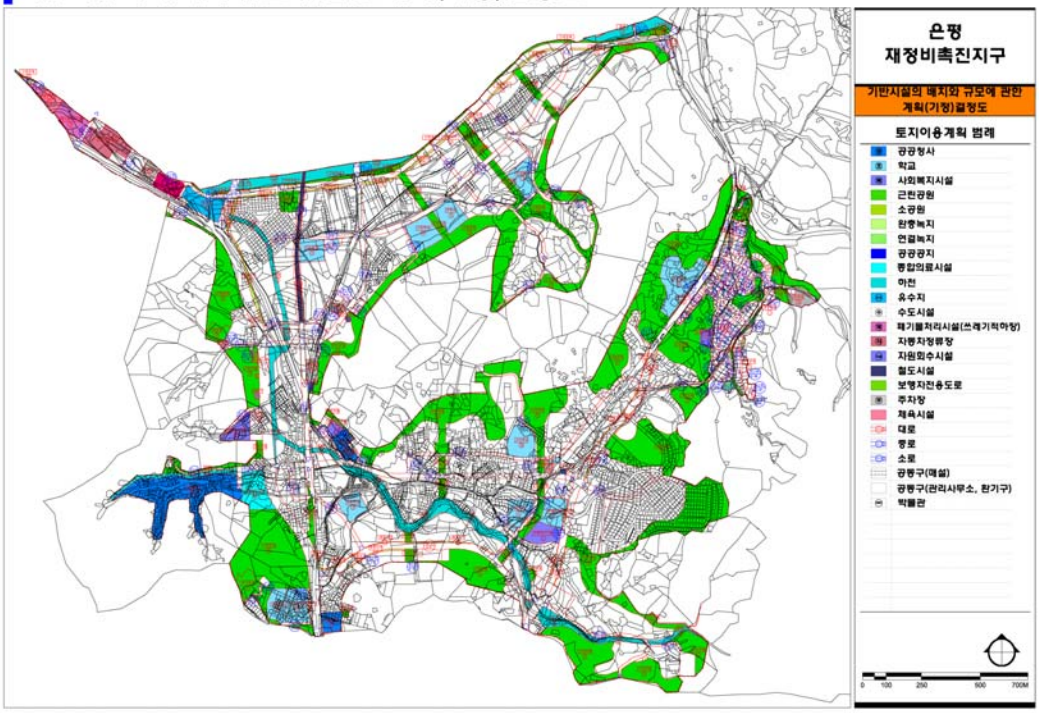
용도지역(기정)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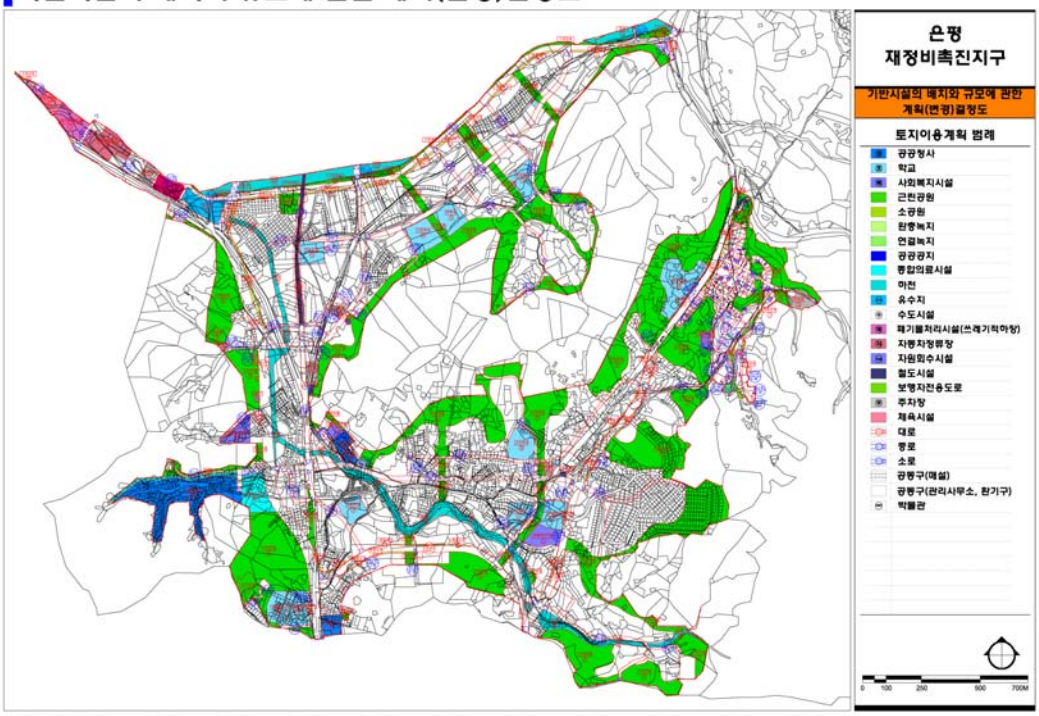
용도지역(변경)결정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기정)결정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73호(2005.5.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05-32호(2005.6.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8호(2008.12.26)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동남권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작성(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가. 시 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10-3
   나. 종 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92-7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명 칭 : 동남권 유통단지 진입도로(광로 3-1)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폭원 40m, 연장 715m
4. 사업 시행자 명칭 및 주소, 성명 : 변경없음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나. 성 명 : 서울특별시장(대행자 : SH공사 사장 유민근)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당 초 : 실시계획 고시일로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나. 변 경 : 실시계획 고시일로 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9.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과(☎02-2171-2626) 및 SH공사 기술본부 개발계획팀(☎02-3410-7604)에 관련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09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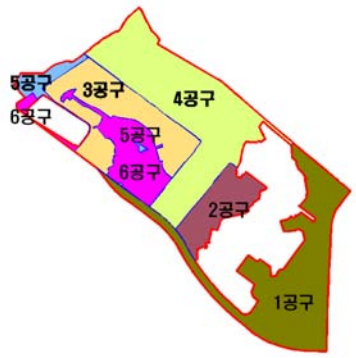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1호(2011.11.20.)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26차) 고시된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공급과(☎ 3707-8577),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2171-2597)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기술본부 개발계획팀(☎ 3410-7604)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주요 변경내용 】

<table>
<tr><th>구 분</th><th>변경내용</th><th>변경사유</th></tr>
<tr><td rowspan="2">공 구
변 경
(분 할)</td><td>◦ 1공구 → 1공구 및 7공구</td><td>◦ 1공구내 일부 소유권 미취득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준공 차질에 따른 민원 발생
◦ 공구분할을 통한 1공구내 민원 해소 필요</td></tr>
<tr><td>【기 정】
 
</td><td>【변 경】
 
</td></tr>
<tr><td>사업
준공일
변경</td><td>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사업준공일</th></tr>
<tr><th>기 정</th><th>변 경</th><th>비 고</th></tr>
<tr><td>1공구</td><td>2011.12.31</td><td>2012.06.30</td><td rowspan="2">분 할</td></tr>
<tr><td>7공구</td><td>-</td><td>2012.12.31</td></tr>
<tr><td>2공구</td><td>2006.12.31</td><td>-</td><td>준 공</td></tr>
<tr><td>3공구</td><td>2010.01.31</td><td>-</td><td>준 공</td></tr>
<tr><td>4공구</td><td>2011.12.31</td><td>-</td><td>준 공</td></tr>
<tr><td>5공구</td><td>2011.12.31</td><td>2012.06.30</td><td>연 장</td></tr>
<tr><td>6공구</td><td>2012.12.31</td><td>2012.12.31</td><td>-</td></tr>
</table>
</td><td>◦공구분할에 따른 사업준공일 변경</td></tr>
</table>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 변경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서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변경

(1) 사업시행자 명칭 : 서울특별시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3)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기정) → 박원순(변경)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 목적 : 변경없음
(1) 정부의 장·단기 주택건설 정책에 부응
(2)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
(3) 서울 대도시권 서북부지역 부도심 형성
(4)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로 체계적인 도시 성장에 기여
(5) 경제적인 택지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 수용인구 : 15,664인
(2) 건립호수 : 5,594호
(가) 수용인구 및 주택산정계획(변경없음) : 생략
(나)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변경)

구분			폭원(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총계		기정	-	56(8)	17,511.7	467,089.8	11	4,732.0	176,051.3	6(2)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3(1)	685.0	25,172.2	1	99.0	908.0	-	-	-
		변경	-	56(10)	17,511.7	467,089.8	10	3,680.0	148,339.3	6(2)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1(1)	685.0	25,172.2	1	99.0	908.0	1(2)	1,052.0	27,712.0
광로	소계	기정	-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50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소계	기정	-	8(6)	7,592.2	235,842.3	3	1,810.0	61,689.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23,863.4	-	-	-	-	-	-	-	-
		변경	-	8(8)	7,592.2	235,842.3	2	758.0	33,977.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23,863.4	-	-	-	1(2)	1,052.0	27,712.0
	1류	기정	30	1(1)	1,195.0	49,616.5	-	-	-	-	-	-	(1)	-	80.0	1	1,195.0	49,536.5	-	-	-	-	-	-	-	-	-	-
	2류	기정	25	1	1,032.0	44,229.1	1	1,032.0	44,229.1	-	-	-	-	-	-	-	-	-	-	-	-	-	-	-	-	-	-	-
		변경	25	1(1)	1,032.0	44,229.1	1	744.0	32,773.9	-	-	-	-	-	-	-	-	-	-	-	-	-	-	-	(1)	288.0	11,455.2
	3류	기정	25~35	6(5)	5,365.2	141,996.7	2	778.0	17,460.5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23,863.4	-	-	-	-	-	-	-	-
		변경	25~35	6(6)	5,365.2	141,996.7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23,863.4	-	-	-	1(1)	764.0	16,256.8	-	-
중로	소계	기정	-	19(1)	5,312.0	105,137.0	5	954.0	16,508.8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9	1,987.0	37,583.8	(1)	7.0	390.0	-	-	-	-	-	-	-	-
	1류	기정	15	10(1)	3,481.0	76,096.7	1	257.0	5,406.1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4	853.0	19,646.2	(1)	7.0	390.0	-	-	-	-	-	-	-	-
	2류	기정	12	9	1,831.0	29,040.3	4	697.0	11,102.7	-	-	-	-	-	-	5	1,134.0	17,937.6	-	-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로	소계	기정	-	9	847.0	6,806.8	2	130.0	1,025.7	2	114.0	714.4	2	284.0	2,365.9	2	220.0	1,792.8	-	-	-	1	99.0	908.0	-	-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8	4	498.0	4,455.6	-	-	-	-	-	-	2	284.0	2,365.9	1	115.0	1,181.7	-	-	-	1	99.0	908.0	-	-	-	-	-
	3류	기정	8미만	5	349.0	2,351.2	2	130.0	1,025.7	2	114.0	714.4	-	-	-	1	105.0	611.1	-	-	-	-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소계	기정	-	19	1,922.5	22,035.1	-	-	-	3	259.0	2,544.8	3	228.0	1,609.4	10	1,215.5	16,962.1	1	220.0	918.8	-	-	-	-	-	-	-	-
	중로 1류	기정	15	2	352.0	7,242.7	-	-	-	-	-	-	-	-	-	2	352.0	7,242.7	-	-	-	-	-	-	-	-	-	-	-
	중로 2류	기정	10	1	297.0	4,456.0	-	-	-	-	-	-	-	-	-	1	297.0	4,456.0	-	-	-	-	-	-	-	-	-	-	-
	중로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로 1류	기정	8	5	721.0	7,243.4	-	-	-	1	242.0	2,426.3	-	-	-	4	479.0	4,817.1	-	-	-	-	-	-	-	-	-	-	-
	소로 2류	기정	8미만	1	16.0	113.3	-	-	-	1	16.0	113.3	-	-	-	-	-	-	-	-	-	-	-	-	-	-	-	-	-
	소로 3류	기정	-	10	536.5	2,979.7	-	-	-	1	1.0	5.2	5	228.0	1,609.4	3	87.5	446.3	1	220.0	918.8	-	-	-	-	-	-	-	-

주) ( )안의 숫자는 1개노선의 공구별 중복 산정값임

(2) 주차장(변경없음) : 생략

(3) 광장(변경없음) : 생략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개발기간(변경)

가. 사업 착수일 : 1998년 06월 11일

나. 사업 준공일

구 분	사업준공일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기 정	2011.12.31	2006.12.31 (사업준공)	2010.01.31 (사업준공)	2011.12.31 (사업준공)	2011.12.31	2012.12.31	-
변 경	2012.06.30				2012.06.30	2012.12.31	2012.12.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

구 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구성비(%)	비고
합계		기정	1,697,874.4	488,181.4	140,107.4	286,931.9	553,263.9	54,294.5	175,095.3	-	100.0	
		변경	1,697,874.4	240,359.1	140,107.4	286,931.9	553,263.9	54,294.5	175,095.3	247,822.3	100.0	
주택건설용지		기정	266,090.3	1,101.9	72,357.2	183,345.9	9,285.3	-	-	-	15.6	
	공동주택	기정	252,003.1	-	72,336.7	179,666.4	-	-	-	-	14.8	
	주상복합	기정	9,285.3	-	-	-	9,285.3	-	-	-	0.5	
	단독주택	기정	20.5	-	20.5	-	-	-	-	-	-	
	근린생활시설	기정	4,781.4	1,101.9	-	3,679.5	-	-	-	-	0.3	
공공시설용지		기정	1,431,784.1	487,079.5	67,750.2	103,586.0	543,978.6	54,294.5	175,095.3	-	84.4	
		변경	1,431,784.1	239,257.2	67,750.2	103,586.0	543,978.6	54,294.5	175,095.3	247,822.3	84.4	
	도 로	기정	467,089.8	176,051.3	15,921.7	44,855.3	204,181.3	25,172.2	908.0	-	27.5	
		변경	467,089.8	148,339.3	15,921.7	44,855.3	204,181.3	25,172.2	908.0	27,712.0	27.5	
	상업시설	기정	26,022.5	20,644.1	-	-	5,378.4	-	-	-	1.5	4개소
	숙박업무시설	기정	34,184.5	-	-	-	34,184.5	-	-	-	2.0	2개소
	업무시설	기정	150,931.4	12,029.5	-	-	138,901.9	-	-	-	8.9	
	교육연구시설	기정	7,878.5	-	-	-	7,878.5	-	-	-	0.5	
	방송시설	기정	34,270.1	-	-	-	34,270.1	-	-	-	2.0	2개소
	주차장	기정	10,249.2	2,375.6	-	2,342.0	5,531.6	-	-	-	0.6	4개소
	광 장	기정	2,863.5	2,863.5	-	-	-	-	-	-	0.2	2개소
		변경	2,863.5	468.6	-	-	-	-	-	2,394.9	0.2	2개소
	공 원	기정	196,356.2	2,896.8	1,511.3	3,026.5	28,572.3	-	160,349.3	-	11.7	
	녹 지	기정	75,541.9	20,134.0	18,697.2	12,209.0	20,210.4	4,291.3	-	-	4.3	완:31개소,경관:10개소

구 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구성비(%)	비고
	변경	75,541.9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91.3	-	4,883.5	4.3	완:31개소,경관:10개소
하 천	기정	1,244.0	-	-	-	-	1,244.0	-	-	0.1	1개소
공공청사	기정	10,076.4	-	-	1,817.8	1,144.6	-	7,114.0	-	0.6	
학 교	기정	67,173.6	-	11,599.0	32,063.4	23,511.2	-	-	-	4.0	학교:6개소
사회복지시설	기정	22,065.5	-	17,907.2	991.3	-	3,167.0	-	-	1.3	4개소
종교시설	기정	9,074.0	1,290.8	1,228.1	3,371.6	654.5	2,529.0	-	-	0.5	11개소
도시형공장	기정	17,024.7	-	-	-	17,024.7	-	-	-	1.0	1개소:지상권설정(507㎡)
자동차정류장	기정	9,430.0	-	-	-	-	9,430.0	-	-	0.6	2개소
전기공급설비	기정	3,917.0	-	-	316.0	-	-	3,601.0	-	0.2	
운동장및시장	기정	211,405.8	211,405.8	-	-	-	-	-	-	12.5	1개소
	변경	211,405.8	-	-	-	-	-	-	211,405.8	12.5	1개소
철도시설	기정	1,662.7	1,662.7	-	-	-	-	-	-	0.1	2개소
	변경	1,662.7	236.6	-	-	-	-	-	1,426.1	0.1	2개소
하수도시설	기정	3,212.9	-	-	-	89.9	-	3,123.0	-	0.2	
차 고 지	기정	6,787.0	-	-	-	-	6,787.0	-	-	0.4	4개소
가스충전소	기정	1,674.0	-	-	-	-	1,674.0	-	-	0.1	1개소
문화및집회·업무시설	기정	35,212.8	35,212.8	-	-	-	-	-	-	2.1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기정	1,463.1	-	-	1,463.1	-	-	-	-	0.1	1개소
교육연구·첨단업무시설	기정	15,232.7	-	-	-	15,232.7	-	-	-	0.9	1개소
상업위락시설	기정	7,212.0	-	-	-	7,212.0	-	-	-	0.4	1개소
공 동 구	기정	512.6	512.6	-	-	-	-	-	-	-	1개소
유치원	기정	2,015.7	-	885.7	1,130.0	-	-	-	-	0.1	2개소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1) 도로 : 변경

구분				폭원(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총계			기정	-	56(8)	17,511.7	467,089.8	11	4,732.0	176,051.3	6(2)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3(1)	685.0	25,172.2	1	99.0	908.0	-	-	-
			변경	-	56(10)	17,511.7	467,089.8	10	3,680.0	148,339.3	6(2)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1(1)	685.0	25,172.2	1	99.0	908.0	1(2)	1,052.0	27,712.0
광로	소계		기정	-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50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소계		기정	-	8(6)	7,592.2	235,842.3	3	1,810.0	61,689.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23,863.4	-	-	-	-	-	-
			변경	-	8(8)	7,592.2	235,842.3	2	758.0	33,977.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23,863.4	-	-	-	1(2)	1,052.0	27,712.0
	1류		기정	30	1(1)	1,195.0	49,616.5	-	-	-	-	-	-	(1)	-	80.0	1	1,195.0	49,536.5	-	-	-	-	-	-	-	-	-
	2류		기정	25	1	1,032.0	44,229.1	1	1,032.0	44,229.1	-	-	-	-	-	-	-	-	-	-	-	-	-	-	-	-	-	-
			변경	25	1(1)	1,032.0	44,229.1	1	744.0	32,773.9	-	-	-	-	-	-	-	-	-	-	-	-	-	-	-	(1)	288.0	11,455.2
	3류		기정	25~35	6(5)	5,365.2	141,996.7	2	778.0	17,460.5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23,863.4	-	-	-	-	-	-
			변경	25~35	6(6)	5,365.2	141,996.7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23,863.4	-	-	-	1(1)	764.0	16,256.8
중로	소계		기정	-	19(1)	5,312.0	105,137.0	5	954.0	16,508.8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9	1,987.0	37,583.8	(1)	7.0	390.0	-	-	-	-	-	-
	1류		기정	15	10(1)	3,481.0	76,096.7	1	257.0	5,406.1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4	853.0	19,646.2	(1)	7.0	390.0	-	-	-	-	-	-
	2류		기정	12	9	1,831.0	29,040.3	4	697.0	11,102.7	-	-	-	-	-	-	5	1,134.0	17,937.6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로	소계		기정	-	9	847.0	6,806.8	2	130.0	1,025.7	2	114.0	714.4	2	284.0	2,365.9	2	220.0	1,792.8	-	-	-	1	99.0	908.0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8	4	498.0	4,455.6	-	-	-	-	-	-	2	284.0	2,365.9	1	115.0	1,181.7	-	-	-	1	99.0	908.0	-	-	-
	3류		기정	8미만	5	349.0	2,351.2	2	130.0	1,025.7	2	114.0	714.4	-	-	-	1	105.0	611.1	-	-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소계		기정	-	19	1,922.5	22,035.1	-	-	-	3	259.0	2,544.8	3	228.0	1,609.4	10	1,215.5	16,962.1	1	220.0	918.8	-	-	-	-	-	-
	중로	1류	기정	15	2	352.0	7,242.7	-	-	-	-	-	-	-	-	-	2	352.0	7,242.7	-	-	-	-	-	-	-	-	-
		2류	기정	10	1	297.0	4,456.0	-	-	-	-	-	-	-	-	-	1	297.0	4,456.0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로	1류	기정	8	5	721.0	7,243.4	-	-	-	1	242.0	2,426.3	-	-	-	4	479.0	4,817.1	-	-	-	-	-	-	-	-	-
		2류	기정	8미만	1	16.0	113.3	-	-	-	1	16.0	113.3	-	-	-	-	-	-	-	-	-	-	-	-	-	-	-
		3류	기정	-	10	536.5	2,979.7	-	-	-	1	1.0	5.2	5	228.0	1,609.4	3	87.5	446.3	1	220.0	918.8	-	-	-	-	-	-

주) ( )안의 숫자는 1개노선의 공구별 중복 산정값임

(2) 주차장(변경없음) : 생략

(3) 광장(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2,863.5	2,863.5	-	-	-	-	-	-	
	변경	-	2,863.5	468.6	-	-	-	-	-	2,394.9	
1	기정	상암동 1178-2 일원	2,394.9	2,394.9	-	-	-	-	-	-	
	변경	상암동 1178-2 일원	2,394.9	-	-	-	-	-	-	2,394.9	
2	기정	상암동 24-12대 일원	468.6	468.6	-	-	-	-	-	-	

(4) 공원(변경없음) : 생략

(5) 녹지(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총 계		기정	-	76,541.9	20,134.0	18,697.2	12,209.0	20,210.4	4,291.3	-	-	
		변경	-	76,541.9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91.3	-	4,883.5	
경관녹지	소계	기정	-	29,910.7	15,250.5	11,355.0	461.3	1,669.9	1,174.0	-	-	
	1	기정	상암동 산4-185임 일원	15,250.5	15,250.5	-	-	-	-	-	-	
	2	기정	상암동 산4-1임 일원	5,768.8	-	5,768.8	-	-	-	-	-	
	3	기정	상암동 34-15대 일원	1,620.6	-	1,620.6	-	-	-	-	-	
	4	기정	상암동 산4-142임 일원	3,540.0	-	3,540.0	-	-	-	-	-	
	5	기정	상암동 34-27대 일원	425.6	-	425.6	-	-	-	-	-	
	6	기정	상암동 136-5전 일원	335.4	-	-	-	335.4	-	-	-	
	7	기정	상암동 산14-3임 일원	783.9	-	-	-	783.9	-	-	-	
	8	기정	상암동 300-2답 일원	461.3	-	-	461.3	-	-	-	-	
	9	기정	상암동 444전 일원	1,174.0	-	-	-	-	1,174.0	-	-	
	10	기정	상암동 869-1답 일원	550.6	-	-	-	550.6	-	-	-	
완충녹지	소계	기정	-	45,631.2	4,883.5	7,342.2	1,1747.7	18,540.5	3,117.3	-	-	
		변경	-	45,631.2	-	7,342.2	1,1747.7	18,540.5	3,117.3	-	4,883.5	
	1	기정	성산동 486-4답 일원	4,883.5	4,883.5	-	-	-	-	-	-	
		변경	성산동 486-4답 일원	4,883.5	-	-	-	-	-	-	4,883.5	
	2	기정	상암동 37-23대 일원	808.6	-	808.6	-	-	-	-	-	
	3	기정	상암동 128-1답 일원	736.0	-	736.0	-	-	-	-	-	
	4	기정	상암동 126-7전 일원	353.6	-	353.6	-	-	-	-	-	
	5	기정	상암동 126-2전 일원	941.2	-	941.2	-	-	-	-	-	
	6	기정	상암동 55-7전 일원	829.4	-	829.4	-	-	-	-	-	
	7	기정	상암동 1538-6잡 일원	3,673.4	-	3,673.4	-	-	-	-	-	
	8	기정	상암동 92전 일원	987.4	-	-	-	987.4	-	-	-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완충녹지	9	기정	상암동 87-8대 일원	428.2	-	-	-	428.2	-	-	-	
	10	기정	상암동 97-1대 일원	481.5	-	-	-	481.5	-	-	-	
	11	기정	상암동 214-2전 일원	1,794.8	-	-	1,794.8	-	-	-	-	
	12	기정	상암동 371-1답 일원	1,180.7	-	-	1,180.7	-	-	-	-	
	13	기정	상암동 360-1답 일원	1,189.3	-	-	1,189.3	-	-	-	-	
	14	기정	상암동 320전 일원	5,878.9	-	-	2,761.6	-	3,117.3	-	-	
	15	기정	상암동 478-14잡 일원	3,181.6	-	-	3,181.6	-	-	-	-	
	16	기정	상암동 134-4전 일원	540.4	-	-	-	540.4	-	-	-	
	17	기정	상암동 200-4전 일원	389.4	-	-	-	389.4	-	-	-	
	18	기정	상암동 201전 일원	1,273.1	-	-	-	1,273.1	-	-	-	
	19	기정	상암동 251-29답 일원	857.6	-	-	-	857.6	-	-	-	
	20	기정	상암동 251-4답 일원	822.7	-	-	-	822.7	-	-	-	
	21	기정	상암동 274-2전 일원	850.6	-	-	-	850.6	-	-	-	
	22	기정	상암동 293답 일원	877.8	-	-	-	877.8	-	-	-	
	23	기정	상암동 223답 일원	3,506.7	-	-	-	3,506.7	-	-	-	
	24	기정	상암동 172-6답 일원	1,341.8	-	-	-	1,341.8	-	-	-	
	25	기정	상암동 173답 일원	1,471.7	-	-	-	1,471.7	-	-	-	
	26	기정	상암동 369답 일원	1,150.7	-	-	-	1,150.7	-	-	-	
	27	기정	상암동 286답 일원	1,458.9	-	-	-	1,458.9	-	-	-	
	28	기정	상암동 302-7답 일원	1,456.5	-	-	-	1,456.5	-	-	-	
	30	기정	상암동 794대 일원	645.5	-	-	-	645.5	-	-	-	
	31	기정	상암동 140-2전 일원	629.5	-	-	629.5	-	-	-	-	
	32	기정	상암동 산14-29임 일원	1,010.2	-	-	1,010.2	-	-	-	-	

(6) 공공청사(변경없음) : 생략

(7) 교육시설(학교)(변경없음) : 생략

(8)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생략

(9)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생략

(10)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생략

(11) 운동장 및 시장(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	기정	성산동 515-5답 일원	211,405.8	211,405.8	-	-	-	-	-	-	2002년월드컵주경기장
	변경	성산동 515-5답 일원	211,405.8	-	-	-	-	-	-	211,405.8	

(12) 철도시설(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1,662.7	1,662.7	-	-	-	-	-	-	
	변경		1,662.7	236.6	-	-	-	-	-	1,426.1	
1	기정	상암동 1171-5답 일원	1,426.1	1,426.1	-	-	-	-	-	-	
	변경	상암동 1171-5답 일원	1,426.1	-	-	-	-	-	-	1,426.1	
2	기정	상암동 1270답 일원	236.6	236.6	-	-	-	-	-	-	

(13) 하천(변경없음) : 생략

(14) 상업용지계획(변경없음) : 생략

(15) 종교시설(변경없음) : 생략

(16) 도시형공장(변경없음) : 생략

(17) 하수도시설(변경없음) : 생략

(18) 가스충전소(변경없음) : 생략

(19) 차고지(변경없음) : 생략

(20)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21) 공동구(변경없음) : 생략

(22) 방송시설(변경없음) : 생략

(23) 문화 및 집회·업무시설(변경없음) : 생략

(24)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 생략

(25) 교육연구 또는 첨단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26) 유치원용지(변경없음) : 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697,874.4	-	1,697,874.4	
1공구	마포구 상암동 509-7대 일원	488,181.4	감) 247,822.3	240,359.1	
2공구	마포구 상암동 16대 일원	140,107.4	-	140,107.4	사업준공
3공구	마포구 상암동 산21임 일원	286,931.9	-	286,931.9	사업준공
4공구	마포구 상암동 258-4답 일원	553,263.9	-	553,263.9	사업준공
5공구	마포구 상암동 470전 일원	54,294.5	-	54,294.5	
6공구	마포구 상암동 산26-1임 일원	175,095.3	-	175,095.3	
7공구	마포구 상암동 산53-27대 일원	-	증) 247,822.3	247,822.3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생략

8. 개발계획평면도 (Scale = 1/5,000) : 게재생략(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공급과 또는 SH공사 기술본부 개발계획팀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9. 상기 1~8항 외 변경내용 없음

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 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장·단기 주택건설 정책에 부응
○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
○ 서울 대도시권 서북부지역 부도심 형성
○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로 체계적인 도시 성장에 기여
○ 경제적인 택지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509-7번지 일원
○ 면 적 : 1,697,874.4㎡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택지개발사업
○ 명 칭 : 서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장
○ 대 표 자 성 명 : 오 세 훈(기정) → 박 원 순(변경)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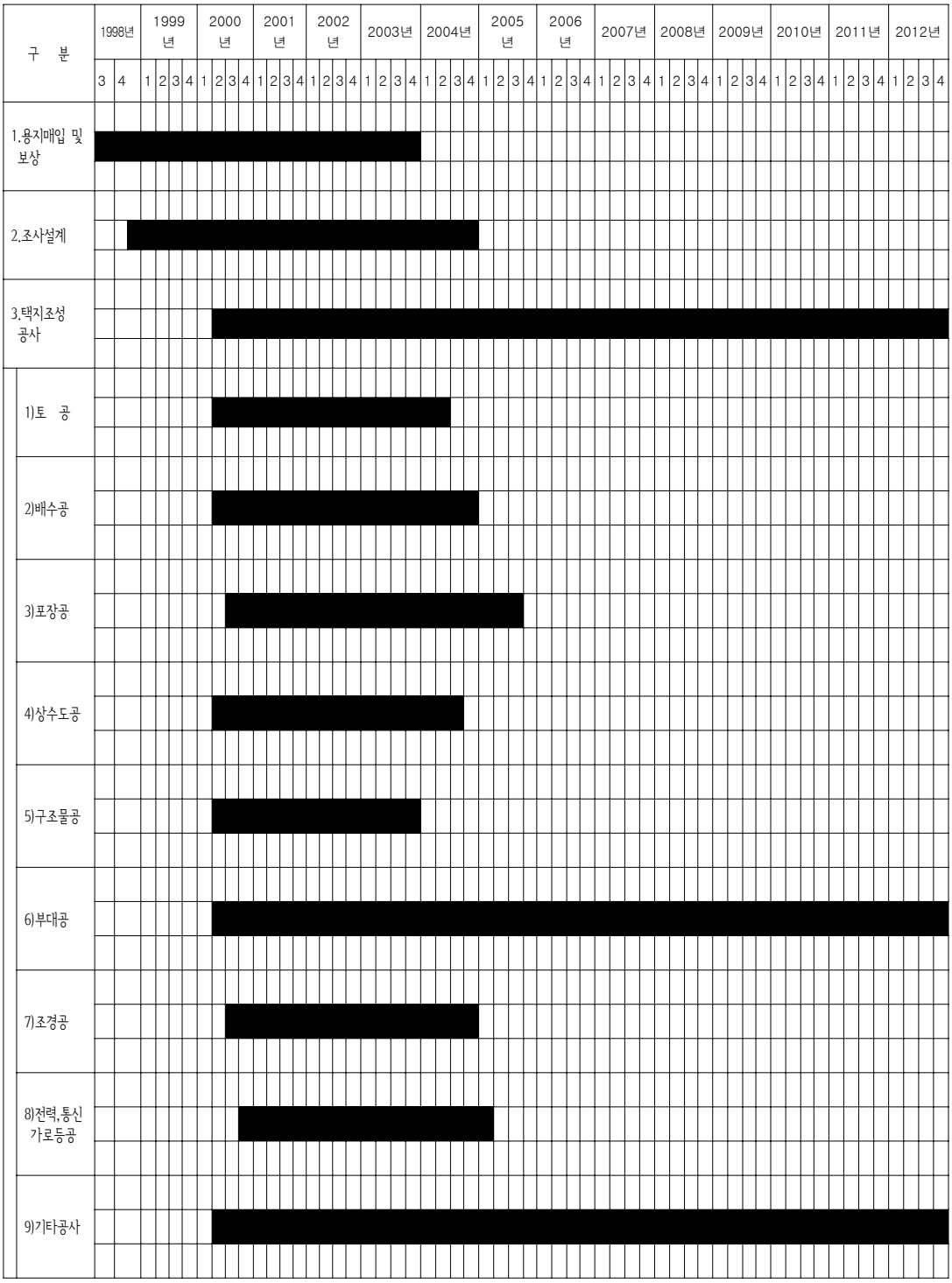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 사 업 착 수 일 : 실시계획 승인일
○ 사 업 준 공 일

구 분	사 업 준 공 일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기 정	2011.12.31	2006.12.31 (사업준공)	2010.01.31 (사업준공)	2011.12.31 (사업준공)	2011.12.31	2012.12.31	-
변 경	2012.06.30				2012.06.30	2012.12.31	2012.12.31

나. 공종별 소요기간(변경없음)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 4 1 2 3 4 1 2 3 4 1 2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7. 사업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 : 변경

구 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구성비(%)	비고
합계	기정	1,697,874.4	488,181.4	140,107.4	286,931.9	553,263.9	54,294.5	175,095.3	-	100.0	
	변경	1,697,874.4	240,359.1	140,107.4	286,931.9	553,263.9	54,294.5	175,095.3	247,822.3	100.0	
주택건설용지	기정	266,090.3	1,101.9	72,357.2	183,345.9	9,285.3	-	-	-	15.6	
공동주택	기정	252,003.1	-	72,336.7	179,666.4	-	-	-	-	14.8	
주상복합	기정	9,285.3	-	-	-	9,285.3	-	-	-	0.5	
단독주택	기정	20.5	-	20.5	-	-	-	-	-	-	
근린생활시설	기정	4,781.4	1,101.9	-	3,679.5	-	-	-	-	0.3	
공공시설용지	기정	1,431,784.1	487,079.5	67,750.2	103,586.0	543,978.6	54,294.5	175,095.3	-	84.4	
	변경	1,431,784.1	239,257.2	67,750.2	103,586.0	543,978.6	54,294.5	175,095.3	247,822.3	84.4	
도 로	기정	467,089.8	176,051.3	15,921.7	44,855.3	204,181.3	25,172.2	908.0	-	27.5	
	변경	467,089.8	148,339.3	15,921.7	44,855.3	204,181.3	25,172.2	908.0	27,712.0	27.5	
상업시설	기정	26,022.5	20,644.1	-	-	5,378.4	-	-	-	1.5	4개소
숙박업무시설	기정	34,184.5	-	-	-	34,184.5	-	-	-	2.0	2개소
업무시설	기정	150,931.4	12,029.5	-	-	138,901.9	-	-	-	8.9	
교육연구시설	기정	7,878.5	-	-	-	7,878.5	-	-	-	0.5	
방송시설	기정	34,270.1	-	-	-	34,270.1	-	-	-	2.0	2개소
주차장	기정	10,249.2	2,375.6	-	2,342.0	5,531.6	-	-	-	0.6	4개소
광 장	기정	2,863.5	2,863.5	-	-	-	-	-	-	0.2	2개소
	변경	2,863.5	468.6	-	-	-	-	-	2,394.9	0.2	2개소
공 원	기정	196,356.2	2,896.8	1,511.3	3,026.5	28,572.3	-	160,349.3	-	11.7	
녹 지	기정	75,541.9	20,134.0	18,697.2	12,209.0	20,210.4	4,291.3	-	-	4.3	완:31개소,경관:10개소
	변경	75,541.9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91.3	-	4,883.5	4.3	완:31개소,경관:10개소
하 천	기정	1,244.0	-	-	-	-	1,244.0	-	-	0.1	1개소
공공청사	기정	10,076.4	-	-	1,817.8	1,144.6	-	7,114.0	-	0.6	
학 교	기정	67,173.6	-	11,599.0	32,063.4	23,511.2	-	-	-	4.0	학교:6개소
사회복지시설	기정	22,065.5	-	17,907.2	991.3	-	3,167.0	-	-	1.3	4개소
종교시설	기정	9,074.0	1,290.8	1,228.1	3,371.6	654.5	2,529.0	-	-	0.5	11개소
도시형공장	기정	17,024.7	-	-	-	17,024.7	-	-	-	1.0	1개소:지상권설정(507㎡)
자동차정류장	기정	9,430.0	-	-	-	-	9,430.0	-	-	0.6	2개소
전기공급설비	기정	3,917.0	-	-	316.0	-	-	3,601.0	-	0.2	
운동장및시장	기정	211,405.8	211,405.8	-	-	-	-	-	-	12.5	1개소
	변경	211,405.8	-	-	-	-	-	-	211,405.8	12.5	1개소
철도시설	기정	1,662.7	1,662.7	-	-	-	-	-	-	0.1	2개소
	변경	1,662.7	236.6	-	-	-	-	-	1,426.1	0.1	2개소
하수도시설	기정	3,212.9	-	-	-	89.9	-	3,123.0	-	0.2	
차 고 지	기정	6,787.0	-	-	-	-	6,787.0	-	-	0.4	4개소
가스충전소	기정	1,674.0	-	-	-	-	1,674.0	-	-	0.1	1개소
문화및집회업무시설	기정	35,212.8	35,212.8	-	-	-	-	-	-	2.1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기정	1,463.1	-	-	1,463.1	-	-	-	-	0.1	1개소
교육연구첨단업무시설	기정	15,232.7	-	-	-	15,232.7	-	-	-	0.9	1개소
상업위락시설	기정	7,212.0	-	-	-	7,212.0	-	-	-	0.4	1개소
공 동 구	기정	512.6	512.6	-	-	-	-	-	-	-	1개소
유치원	기정	2,015.7	-	885.7	1,130.0	-	-	-	-	0.1	2개소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1) 도로 : 변경

(개) 도로 총괄표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총계		기정	-	56(8)	17,511.7	467,089.8	11	4,732.0	176,051.3	6(2)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3(1)	685.0	25,172.2	1	99.0	908.0	-	-	-
		변경	-	56(10)	17,511.7	467,089.8	10	3,680.0	148,339.3	6(2)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1(1)	685.0	25,172.2	1	99.0	908.0	1(2)	1,052.0	27,712.0
광로	소계	기정	-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50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소계	기정	-	8(6)	7,592.2	235,842.3	3	1,810.0	61,689.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23,863.4	-	-	-	-	-	-	-	-
		변경	-	8(8)	7,592.2	235,842.3	2	758.0	33,977.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23,863.4	-	-	-	1(2)	1,052.0	27,712.0
	1류	기정	30	1(1)	1,195.0	49,616.5	-	-	-	-	-	-	(1)	-	80.0	1	1,195.0	49,536.5	-	-	-	-	-	-	-	-	-	-
	2류	기정	25	1	1,032.0	44,229.1	1	1,032.0	44,229.1	-	-	-	-	-	-	-	-	-	-	-	-	-	-	-	-	-	-	-
		변경	25	1(1)	1,032.0	44,229.1	1	744.0	32,773.9	-	-	-	-	-	-	-	-	-	-	-	-	-	-	-	(1)	288.0	11,455.2
	3류	기정	25 ~35	6(5)	5,365.2	141,996.7	2	778.0	17,460.5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23,863.4	-	-	-	-	-	-	-	-
		변경	25 ~35	6(6)	5,365.2	141,996.7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23,863.4	-	-	-	1(1)	764.0	16,256.8	-	-	-
중로	소계	기정	-	19(1)	5,312.0	105,137.0	5	954.0	16,508.8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9	1,987.0	37,583.8	(1)	7.0	390.0	-	-	-	-	-	-	-	-
	1류	기정	15	10(1)	3,481.0	76,096.7	1	257.0	5,406.1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4	853.0	19,646.2	(1)	7.0	390.0	-	-	-	-	-	-	-	-
	2류	기정	12	9	1,831.0	29,040.3	4	697.0	11,102.7	-	-	-	-	-	-	5	1,134.0	17,937.6	-	-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소로	소계	기정	-	9	847.0	6,806.8	2	130.0	1,025.7	2	114.0	714.4	2	284.0	2,365.9	2	220.0	1,792.8	-	-	-	1	99.0	908.0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8	4	498.0	4,455.6	-	-	-	-	-	-	2	284.0	2,365.9	1	115.0	1,181.7	-	-	-	1	99.0	908.0	-	-	-
	3류	기정	8 미만	5	349.0	2,351.2	2	130.0	1,025.7	2	114.0	714.4	-	-	-	1	105.0	611.1	-	-	-	-	-	-	-	-	-
보행자 전용도로	소계	기정	-	19	1,922.5	22,035.1	-	-	-	3	259.0	2,544.8	3	228.0	1,609.4	10	1,215.5	16,962.1	1	220.0	918.8	-	-	-	-	-	-
	중로 1류	기정	15	2	352.0	7,242.7	-	-	-	-	-	-	-	-	-	2	352.0	7,242.7	-	-	-	-	-	-	-	-	-
	중로 2류	기정	10	1	297.0	4,456.0	-	-	-	-	-	-	-	-	-	1	297.0	4,456.0	-	-	-	-	-	-	-	-	-
	중로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로 1류	기정	8	5	721.0	7,243.4	-	-	-	1	242.0	2,426.3	-	-	-	4	479.0	4,817.1	-	-	-	-	-	-	-	-	-
	소로 2류	기정	8 미만	1	16.0	113.3	-	-	-	1	16.0	113.3	-	-	-	-	-	-	-	-	-	-	-	-	-	-	-
	소로 3류	기정	-	10	536.5	2,979.7	-	-	-	1	1.0	5.2	5	228.0	1,609.4	3	87.5	446.3	1	220.0	918.8	-	-	-	-	-	-

주) ( )안의 숫자는 1개노선의 공구별 중복 산정값임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규모				사용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광로	2	93	5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성산동 537-4	고양시덕은동 269	2,498 (1,838)	97,268.6	(1,838)	96,827.2	-	30.5	-	410.9	-	-	-	-	-	-	-	-	
기정	대로	1	1	3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129-2 (대로 3-30)	수색동 (대로 3-32)	1,195	49,616.5	-	-	-	-	-	80.0	1,195	49,536.5	-	-	-	-	-	-	
기정	대로	2	20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성산동 53-26 (광로 2-93)	불광동 (대로 2-12)	6,723 (1,032)	44,229.1	(1,032)	44,229.1	-	-	-	-	-	-	-	-	-	-	-	-	
변경	대로	2	20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성산동 53-26 (광로 2-93)	불광동 (대로 2-12)	6,723 (1,032)	44,229.1	(744)	32,773.9	-	-	-	-	-	-	-	-	-	-	(288)	11,455.2	
기정	대로	3	30	25 ~ 3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성산동 (대로 3-187)	상암동 129-2 (대로 1-1)	3,250 (306.2)	7,774.6	(138)	5,781.5	(168.2)	1,993.1	-	-	-	-	-	-	-	-	-	-	
변경	대로	3	30	25 ~ 3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성산동 (대로 3-187)	상암동 129-2 (대로 1-1)	3,250 (306.2)	7,774.6	(14)	1,203.7	(168.2)	1,993.1	-	-	-	-	-	-	-	-	(124)	4,577.8	
기정	대로	3	32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175 (937)	31,874.4	-	-	-	-	-	-	(479)	8,011.0	(458)	23,863.4	-	-	-	-	
기정	대로	3	1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1167-2 (중로1-126)	수색동 (대로 3-32)	1,970	46,376.4	640	11,679.0	-	-	-	-	1,330	34,697.4	-	-	-	-	-	-	
변경	대로	3	1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1167-2 (중로1-126)	수색동 (대로 3-32)	1,970	46,376.4	-	-	-	-	-	-	1,330	34,697.4	-	-	-	-	640	11,679.0	
기정	대로	3	2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56 (광로2-93)	상암동 1-3 (대로3-1)	944	23,843.4	-	-	-	250.9	-	-	944	23,592.5	-	-	-	-	-	-	
기정	대로	3	3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405 (광로2-93)	상암동 229-13 (대로3-1)	940	24,261.9	-	-	-	-	-	122.7	940	24,139.2	-	-	-	-	-	-	
기정	대로	3	4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302-3 (대로1-1)	상암동 292-1 (대로3-1)	268	7,866.0	-	-	-	-	-	-	268	7,866.0	-	-	-	-	-	-	
기정	중로	1	401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186 (대로3-1)	상암동 27-49 (대로3-30)	257	5,406.1	257	5,406.1	-	-	-	-	-	-	-	-	-	-	-	-	
기정	중로	1	1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73 (대로3-2)	상암동 산6 (대로3-30)	489	10,388.0	-	-	489	10,388.0	-	-	-	-	-	-	-	-	-	-	
기정	중로	1	2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98 (대로3-2)	상암동 876 (대로3-3)	164	4,494.2	-	-	-	-	-	-	164	4,494.2	-	-	-	-	-	-	
기정	중로	1	3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72-4 (대로1-1)	상암동 251-10 (대로3-1)	298	7,264.1	-	-	-	-	-	-	298	7,264.1	-	-	-	-	-	-	
기정	중로	1	4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85-2 (대로3-3)	상암동 445-1 (중로1-6)	1,089	22,597.9	-	-	-	-	1,089	22,597.9	-	-	-	-	-	-	-	-	

구분	규모				사용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중로	1	5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360-4 (중로1-4)	상암동 301 (대로1-1)	89	2,859.3	-	-	-	-	89	2,859.3	-	-	-	-	-	-	-	-	
기정	중로	1	6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542-1 (광로2-93)	상암동 446 (대로3-32)	614	12,954.6	-	-	-	-	607	12,564.6	-	-	7	390.0	-	-	-	-	
기정	중로	1	7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383-1 (중로1-4)	상암동 374-3 (대로1-1)	90	2,244.6	-	-	-	-	90	2,244.6	-	-	-	-	-	-	-	-	
기정	중로	1	8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296답	상암동 292-3 (대로3-4)	94	2,354.5	-	-	-	-	-	-	94	2,354.5	-	-	-	-	-	-	
기정	중로	1	9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291 (대로 3-4)	상암동 258-1 (중로1-3)	297	5,533.4	-	-	-	-	-	-	297	5,533.4	-	-	-	-	-	-	
기정	중로	1	10	20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244-4 (중로1-3)	상암동 220 (대로3-3)	278	5,673.8	-	-	-	-	-	-	278	5,673.8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중로	1	11	20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218 (대로3-3)	상암동 202-6 (중로2-6)	74	1,568.9	-	-	-	-	-	-	74	1,568.9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중로	2	404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251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1-401)	250	4,127.5	250	4,127.5	-	-	-	-	-	-	-	-	-	-	-	-	
기정	중로	2	405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188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2-404)	79	1,243.8	79	1,243.8	-	-	-	-	-	-	-	-	-	-	-	-	
기정	중로	2	406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183 (중로 1-401)	상암동 1178 (중로 2-407)	89	1428.2	89	1428.2	-	-	-	-	-	-	-	-	-	-	-	-	
기정	중로	2	407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153 (중로 1-126)	성산동 495 (중로 1-401)	279	4,303.2	279	4,303.2	-	-	-	-	-	-	-	-	-	-	-	-	
기정	중로	2	1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산14-8 (중로 1-2)	상암동 136-4 (중로 2-2)	202	3,084.3	-	-	-	-	-	-	202	3,084.3	-	-	-	-	-	-	
기정	중로	2	2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70-3 (대로 3-3)	상암동 산11-1 (대로 3-2)	164	2,523.6	-	-	-	-	-	-	164	2,523.6	-	-	-	-	-	-	
기정	중로	2	3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369 (대로1-1)	상암동 251-13 (대로3-1)	265	4,337.5	-	-	-	-	-	-	265	4,337.5	-	-	-	-	-	-	
기정	중로	2	4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368-2 (대로 1-1)	상암동 251-45 (대로 3-1)	253	4,170.3	-	-	-	-	-	-	253	4,170.3	-	-	-	-	-	-	
기정	중로	2	5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304 (대로 1-1)	상암동 308-3 (대로 3-1)	250	3,821.9	-	-	-	-	-	-	250	3,821.9	-	-	-	-	-	-	
기정	중로	2	6	15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202-4 (대로 1-1)	상암동 9-10 (대로 3-1)	297	4,456	-	-	-	-	-	-	297	4,456.0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주) ( )는 사업지구내 구간임

구분	규모				사용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소로	1	1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12-3 (중로 1-1)	상암동 산12-3 (대로 3-2)	242	2,426.3	-	-	242	2,426.3	-	-	-	-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1	2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산11-4 (중로 2-1)	상암동 산12-3 (대로 3-2)	80	797.3	-	-	-	-	-	-	80	797.3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1	3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38-1 (대로 3-3)	상암동 136-9 (중로 2-1)	75	749.0	-	-	-	-	-	-	75	749.0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1	4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93 (대로 1-1)	상암동 187 (중로 1-11)	177	1,786.2	-	-	-	-	-	-	177	1,786.2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1	5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87 (중로 1-11)	상암동 234-7 (대로 3-1)	147	1,484.6	-	-	-	-	-	-	147	1,484.6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2	1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1-21 (대로 3-2)	상암동 1385-8	115	1,181.7	-	-	-	-	-	-	115	1,181.7	-	-	-	-	-	-	
기정	소로	2	2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94 (중로 1-4)	상암동 산21	99	908.0	-	-	-	-	-	-	-	-	-	-	99	908.0	-	-	
기정	소로	2	3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34 (중로1-4)	상암동 357-1 (중로1-4)	134	1,127.0	-	-	-	-	134	1,127.0	-	-	-	-	-	-	-	-	
기정	소로	2	4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431-1 (중로1-6)	상암동 448 (중로1-6)	150	1,238.9	-	-	-	-	150	1,238.9	-	-	-	-	-	-	-	-	
기정	소로	2	5	8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6-1 (중로1-1)	상암동 34-37	16	113.3	-	-	16	113.3	-	-	-	-	-	-	-	-	-	-	
기정	소로	3	1	6 ~ 10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533 (중로1-401상암동1280-1)	상암동 1258 (중로2-404상암동 1285-1)	369 (110)	903.3	(110)	903.3	-	-	-	-	-	-	-	-	-	-	-	-	
기정	소로	3	2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24-9 (대3-30)	상암동 24-8	20	122.4	20	122.4	-	-	-	-	-	-	-	-	-	-	-	-	
기정	소로	3	4	6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34-58	상암동 34-7	1	5.2	-	-	1	5.2	-	-	-	-	-	-	-	-	-	-	

구분	규모				사용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소로	3	5	6	일반도로	국지도로	상암동 37-15 (대3-30)	상암동 37-27	42	259.6	-	-	42	259.6	-	-	-	-	-	-	-	-	-	-	
기정	소로	3	6	6	일반도로	국지도로	상암동 115-7 (대3-30)	상암동 115-5	72	454.8	-	-	72	454.8	-	-	-	-	-	-	-	-	-	-	
기정	소로	3	7	4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357-1 (중로1-4)	상암동 357 (소로2-3)	42	166.4	-	-	-	-	42	166.4	-	-	-	-	-	-	-	-	
기정	소로	3	8	4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335-2 (소로2-3)	상암동 335-2	21	81.4	-	-	-	-	21	81.4	-	-	-	-	-	-	-	-	
기정	소로	3	9	6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431-1 (중로1-6)	상암동 451-2	60	362.0	-	-	-	-	60	362.0	-	-	-	-	-	-	-	-	
기정	소로	3	10	6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136-6 (중로2-2)	상암동 136-1 (대로1-1)	64	382.0	-	-	-	-	-	-	64	382.0	-	-	-	-	-	-	
기정	소로	3	11	4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672-1	상암동 695	220	918.8	-	-	-	-	-	-	-	-	220	918.8	-	-	-	-	
기정	소로	3	12	6	일반도로	국지도로	상암동 134-7	상암동 8-17	105	611.1	-	-	-	-	-	-	105	611.1	-	-	-	-	-	-	
기정	소로	3	13	4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300-2	상암동300-2	8.5	34.3	-	-	-	-	8.5	34.3	-	-	-	-	-	-	-	-	
기정	소로	3	14	4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197-1	상암동197-1	96.53	965.3	-	-	-	-	96.53	965.3	-	-	-	-	-	-	-	-	
기정	소로	3	15	2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223	상암동 224-3	19.5	39.9	-	-	-	-	-	-	19.5	39.9	-	-	-	-	-	-	
기정	소로	3	16	6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91	상암동 91	4	24.4	-	-	-	-	-	-	4	24.4	-	-	-	-	-	-	

주) ( )는 사업지구내 구간임

(2) 주차장(변경없음) : 생략

(3) 광장(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2,863.5	2,863.5	-	-	-	-	-	-	
	변경	-	2,863.5	468.6	-	-	-	-	-	2,394.9	
1	기정	상암동 1178-2 일원	2,394.9	2,394.9	-	-	-	-	-	-	
	변경	상암동 1178-2 일원	2,394.9	-	-	-	-	-	-	2,394.9	
2	기정	상암동 24-12대 일원	468.6	468.6	-	-	-	-	-	-	

(4) 공원(변경없음) : 생략

(5) 녹지(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총 계		기정	-	76,541.9	20,134.0	18,697.2	12,209.0	20,210.4	4,291.3	-	-	
		변경	-	76,541.9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91.3	-	4,883.5	
경관녹지	소계	기정	-	29,910.7	15,250.5	11,355.0	461.3	1,669.9	1,174.0	-	-	
	1	기정	상암동 산4-185임 일원	15,250.5	15,250.5	-	-	-	-	-	-	
	2	기정	상암동 산4-1임 일원	5,768.8	-	5,768.8	-	-	-	-	-	
	3	기정	상암동 34-15대 일원	1,620.6	-	1,620.6	-	-	-	-	-	
	4	기정	상암동 산4-142임 일원	3,540.0	-	3,540.0	-	-	-	-	-	
	5	기정	상암동 34-27대 일원	425.6	-	425.6	-	-	-	-	-	
	6	기정	상암동 136-5전 일원	335.4	-	-	-	335.4	-	-	-	
	7	기정	상암동 산14-3임 일원	783.9	-	-	-	783.9	-	-	-	
	8	기정	상암동 300-2답 일원	461.3	-	-	461.3	-	-	-	-	
	9	기정	상암동 444전 일원	1,174.0	-	-	-	-	1,174.0	-	-	
	10	기정	상암동 869-1답 일원	550.6	-	-	-	550.6	-	-	-	
완충녹지	소계	기정	-	45,631.2	4,883.5	7,342.2	1,1747.7	18,540.5	3,117.3	-	-	
		변경	-	45,631.2	-	7,342.2	1,1747.7	18,540.5	3,117.3	-	4,883.5	
	1	기정	성산동 486-4답 일원	4,883.5	4,883.5	-	-	-	-	-	-	
		변경	성산동 486-4답 일원	4,883.5	-	-	-	-	-	-	4,883.5	
	2	기정	상암동 37-23대 일원	808.6	-	808.6	-	-	-	-	-	
	3	기정	상암동 128-1답 일원	736.0	-	736.0	-	-	-	-	-	
	4	기정	상암동 126-7전 일원	353.6	-	353.6	-	-	-	-	-	
	5	기정	상암동 126-2전 일원	941.2	-	941.2	-	-	-	-	-	
	6	기정	상암동 55-7전 일원	829.4	-	829.4	-	-	-	-	-	
	7	기정	상암동 1538-6잡 일원	3,673.4	-	3,673.4	-	-	-	-	-	
	8	기정	상암동 92전 일원	987.4	-	-	-	987.4	-	-	-	
	9	기정	상암동 87-8대 일원	428.2	-	-	-	428.2	-	-	-	
	10	기정	상암동 97-1대 일원	481.5	-	-	-	481.5	-	-	-	
	11	기정	상암동 214-2전 일원	1,794.8	-	-	1,794.8	-	-	-	-	
	12	기정	상암동 371-1답 일원	1,180.7	-	-	1,180.7	-	-	-	-	
	13	기정	상암동 360-1답 일원	1,189.3	-	-	1,189.3	-	-	-	-	
	14	기정	상암동 320전 일원	5,878.9	-	-	2,761.6	-	3,117.3	-	-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5	기정	상암동 478-14잡 일원	3,181.6	-	-	3,181.6	-	-	-	-	
16	기정	상암동 134-4전 일원	540.4	-	-	-	540.4	-	-	-	
17	기정	상암동 200-4전 일원	389.4	-	-	-	389.4	-	-	-	
18	기정	상암동 201전 일원	1,273.1	-	-	-	1,273.1	-	-	-	
19	기정	상암동 251-29답 일원	857.6	-	-	-	857.6	-	-	-	
20	기정	상암동 251-4답 일원	822.7	-	-	-	822.7	-	-	-	
21	기정	상암동 274-2전 일원	850.6	-	-	-	850.6	-	-	-	
22	기정	상암동 293답 일원	877.8	-	-	-	877.8	-	-	-	
23	기정	상암동 223답 일원	3,506.7	-	-	-	3,506.7	-	-	-	
24	기정	상암동 172-6답 일원	1,341.8	-	-	-	1,341.8	-	-	-	
25	기정	상암동 173답 일원	1,471.7	-	-	-	1,471.7	-	-	-	
26	기정	상암동 369답 일원	1,150.7	-	-	-	1,150.7	-	-	-	
27	기정	상암동 286답 일원	1,458.9	-	-	-	1,458.9	-	-	-	
28	기정	상암동 302-7답 일원	1,456.5	-	-	-	1,456.5	-	-	-	
30	기정	상암동 794대 일원	645.5	-	-	-	645.5	-	-	-	
31	기정	상암동 140-2전 일원	629.5	-	-	629.5	-	-	-	-	
32	기정	상암동 산14-29임 일원	1,010.2	-	-	1,010.2	-	-	-	-	

(6) 공공청사(변경없음) : 생략

(7) 교육시설(학교)(변경없음) : 생략

(8)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생략

(9)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생략

(10)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생략

(11) 운동장 및 시장(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	기정	성산동 515-5답 일원	211,405.8	211,405.8	-	-	-	-	-	-	2002년월드
	변경	성산동 515-5답 일원	211,405.8	-	-	-	-	-	-	211,405.8	컵주경기장

(12) 철도시설(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1,662.7	1,662.7	-	-	-	-	-	-	
	변경		1,662.7	236.6	-	-	-	-	-	1,426.1	
1	기정	상암동 1171-5답 일원	1,426.1	1,426.1	-	-	-	-	-	-	
	변경	상암동 1171-5답 일원	1,426.1	-	-	-	-	-	-	1,426.1	
2	기정	상암동 1270답 일원	236.6	236.6	-	-	-	-	-	-	

(13) 하천(변경없음) : 생략

(14) 상업용지계획(변경없음) : 생략

(15) 종교시설(변경없음) : 생략

(16) 도시형공장(변경없음) : 생략

(17) 하수도시설(변경없음) : 생략

(18) 가스충전소(변경없음) : 생략

(19) 차고지(변경없음) : 생략
(20)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21) 공동구(변경없음) : 생략
(22) 방송시설(변경없음) : 생략
(23) 문화 및 집회·업무시설(변경없음) : 생략
(24)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 생략
(25) 교육연구 또는 첨단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26) 유치원용지(변경없음) : 생략
라.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마.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생략

8.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생략

9. 토지 등의 매입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0. 이해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생략

11.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없음) : 생략

1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육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별첨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 생략(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공급과 또는 SH공사 기술본부 개발계획2팀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16. 사업시행지의 지적도 (Scale = 1/1,200) : 게재 생략(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공급과 또는 SH공사 기술본부 개발계획팀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17. 실시계획 평면도 (Scale = 1/5,000) : 게재 생략(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공급과 또는 SH공사 기술본부 개발계획팀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18. 상기 1~17항 외 변경내용 없음

Ⅲ.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 : 변경

구 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구성비(%)	비고
합계	기정	1,697,874.4	488,181.4	140,107.4	286,931.9	553,263.9	54,294.5	175,095.3	-	100.0	
	변경	1,697,874.4	240,359.1	140,107.4	286,931.9	553,263.9	54,294.5	175,095.3	247,822.3	100.0	
주택건설용지	기정	266,090.3	1,101.9	72,357.2	183,345.9	9,285.3	-	-	-	15.6	
공동주택	기정	252,003.1	-	72,336.7	179,666.4	-	-	-	-	14.8	
주상복합	기정	9,285.3	-	-	-	9,285.3	-	-	-	0.5	
단독주택	기정	20.5	-	20.5	-	-	-	-	-	-	
근린생활시설	기정	4,781.4	1,101.9	-	3,679.5	-	-	-	-	0.3	
공공시설용지	기정	1,431,784.1	487,079.5	67,750.2	103,586.0	543,978.6	54,294.5	175,095.3	-	84.4	
	변경	1,431,784.1	239,257.2	67,750.2	103,586.0	543,978.6	54,294.5	175,095.3	247,822.3	84.4	
도 로	기정	467,089.8	176,051.3	15,921.7	44,855.3	204,181.3	25,172.2	908.0	-	27.5	
	변경	467,089.8	148,339.3	15,921.7	44,855.3	204,181.3	25,172.2	908.0	27,712.0	27.5	
상업시설	기정	26,022.5	20,644.1	-	-	5,378.4	-	-	-	1.5	4개소
숙박업무시설	기정	34,184.5	-	-	-	34,184.5	-	-	-	2.0	2개소
업무시설	기정	150,931.4	12,029.5	-	-	138,901.9	-	-	-	8.9	
교육연구시설	기정	7,878.5	-	-	-	7,878.5	-	-	-	0.5	
방송시설	기정	34,270.1	-	-	-	34,270.1	-	-	-	2.0	2개소
주차장	기정	10,249.2	2,375.6	-	2,342.0	5,531.6	-	-	-	0.6	4개소
광 장	기정	2,863.5	2,863.5	-	-	-	-	-	-	0.2	2개소
	변경	2,863.5	468.6	-	-	-	-	-	2,394.9	0.2	2개소
공 원	기정	196,356.2	2,896.8	1,511.3	3,026.5	28,572.3	-	160,349.3	-	11.7	
녹 지	기정	75,541.9	20,134.0	18,697.2	12,209.0	20,210.4	4,291.3	-	-	4.3	완:31개소,경관:10개소
	변경	75,541.9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91.3	-	4,883.5	4.3	완:31개소,경관:10개소
하 천	기정	1,244.0	-	-	-	-	1,244.0	-	-	0.1	1개소
공공청사	기정	10,076.4	-	-	1,817.8	1,144.6	-	7,114.0	-	0.6	
학 교	기정	67,173.6	-	11,599.0	32,063.4	23,511.2	-	-	-	4.0	학교:6개소
사회복지시설	기정	22,065.5	-	17,907.2	991.3	-	3,167.0	-	-	1.3	4개소
종교시설	기정	9,074.0	1,290.8	1,228.1	3,371.6	654.5	2,529.0	-	-	0.5	11개소
도시형공장	기정	17,024.7	-	-	-	17,024.7	-	-	-	1.0	1개소:지상권설정(507㎡)
자동차정류장	기정	9,430.0	-	-	-	-	9,430.0	-	-	0.6	2개소
전기공급설비	기정	3,917.0	-	-	316.0	-	-	3,601.0	-	0.2	
운동장및시장	기정	211,405.8	211,405.8	-	-	-	-	-	-	12.5	1개소
	변경	211,405.8	-	-	-	-	-	-	211,405.8	12.5	1개소
철도시설	기정	1,662.7	1,662.7	-	-	-	-	-	-	0.1	2개소
	변경	1,662.7	236.6	-	-	-	-	-	1,426.1	0.1	2개소
하수도시설	기정	3,212.9	-	-	-	89.9	-	3,123.0	-	0.2	
차 고 지	기정	6,787.0	-	-	-	-	6,787.0	-	-	0.4	4개소
가스충전소	기정	1,674.0	-	-	-	-	1,674.0	-	-	0.1	1개소
문화및집회업무시설	기정	35,212.8	35,212.8	-	-	-	-	-	-	2.1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기정	1,463.1	-	-	1,463.1	-	-	-	-	0.1	1개소
교육연구·첨단업무시설	기정	15,232.7	-	-	-	15,232.7	-	-	-	0.9	1개소
상업위락시설	기정	7,212.0	-	-	-	7,212.0	-	-	-	0.4	1개소
공 동 구	기정	512.6	512.6	-	-	-	-	-	-	-	1개소
유치원	기정	2,015.7	-	885.7	1,130.0	-	-	-	-	0.1	2개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① 교통시설 : 변경

■ 도로 : 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총계		기정	-	56(8)	17,511.7	467,089.8	11	4,732.0	176,051.3	6(2)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3(1)	685.0	25,172.2	1	99.0	908.0	-	-	-
		변경	-	56(10)	17,511.7	467,089.8	10	3,680.0	148,339.3	6(2)	1,030.2	15,921.7	11(3)	2,387.0	44,855.3	25(2)	8,578.5	204,181.3	1(1)	685.0	25,172.2	1	99.0	908.0	1(2)	1,052.0	27,712.0
광로	소계	기정	-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50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소계	기정	-	8(6)	7,592.2	235,842.3	3	1,810.0	61,689.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23,863.4	-	-	-	-	-	-	-	-
		변경	-	8(8)	7,592.2	235,842.3	2	758.0	33,977.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23,863.4	-	-	-	1(2)	1,052.0	27,712.0
	1류	기정	30	1(1)	1,195.0	49,616.5	-	-	-	-	-	-	(1)	-	80.0	1	1,195.0	49,536.5	-	-	-	-	-	-	-	-	-	-	-
	2류	기정	25	1	1,032.0	44,229.1	1	1,032.0	44,229.1	-	-	-	-	-	-	-	-	-	-	-	-	-	-	-	-	-	-	-	-
		변경	25	1(1)	1,032.0	44,229.1	1	744.0	32,773.9	-	-	-	-	-	-	-	-	-	-	-	-	-	-	-	-	(1)	288.0	11,455.2
	3류	기정	25 ~35	6(5)	5,365.2	141,996.7	2	778.0	17,460.5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23,863.4	-	-	-	-	-	-	-	-
		변경	25 ~35	6(6)	5,365.2	141,996.7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23,863.4	-	-	-	1(1)	764.0	16,256.8	-	-
중로	소계	기정	-	19(1)	5,312.0	105,137.0	5	954.0	16,508.8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9	1,987.0	37,583.8	(1)	7.0	390.0	-	-	-	-	-	-	-	-
	1류	기정	15	10(1)	3,481.0	76,096.7	1	257.0	5,406.1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4	853.0	19,646.2	(1)	7.0	390.0	-	-	-	-	-	-	-	-
	2류	기정	12	9	1,831.0	29,040.3	4	697.0	11,102.7	-	-	-	-	-	-	5	1,134.0	17,937.6	-	-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폭원(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소로	소계		기정	-	9	847.0	6,806.8	2	130.0	1,025.7	2	114.0	714.4	2	284.0	2,365.9	2	220.0	1,792.8	-	-	-	1	99.0	908.0	-	-	-
	1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기정	8	4	498.0	4,455.6	-	-	-	-	-	-	2	284.0	2,365.9	1	115.0	1,181.7	-	-	-	1	99.0	908.0	-	-	-
	3류		기정	8 미만	5	349.0	2,351.2	2	130.0	1,025.7	2	114.0	714.4	-	-	-	1	105.0	611.1	-	-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소계		기정	-	19	1,922.5	22,035.1	-	-	-	3	259.0	2,544.8	3	228.0	1,609.4	10	1,215.5	16,962.1	1	220.0	918.8	-	-	-	-	-	-
	중로	1류	기정	15	2	352.0	7,242.7	-	-	-	-	-	-	-	-	-	2	352.0	7,242.7	-	-	-	-	-	-	-	-	-
		2류	기정	10	1	297.0	4,456.0	-	-	-	-	-	-	-	-	-	1	297.0	4,456.0	-	-	-	-	-	-	-	-	-
		3류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로	1류	기정	8	5	721.0	7,243.4	-	-	-	1	242.0	2,426.3	-	-	-	4	479.0	4,817.1	-	-	-	-	-	-	-	-	-
		2류	기정	8 미만	1	16.0	113.3	-	-	-	1	16.0	113.3	-	-	-	-	-	-	-	-	-	-	-	-	-	-	-
		3류	기정	-	10	536.5	2,979.7	-	-	-	1	1.0	5.2	5	228.0	1,609.4	3	87.5	446.3	1	220.0	918.8	-	-	-	-	-	-

주) ( )안의 숫자는 1개노선의 공구별 중복 산정값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규모				사용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광로	2	93	5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성산동 537-4	고양지덕은동 269	2,498 (1,838)	97,268.6	(1,838)	96,827.2	-	30.5	-	410.9	-	-	-	-	-	-	-	-	
기정	대로	1	1	3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129-2 (대로 3-30)	수색동 (대로 3-32)	1,195	49,616.5	-	-	-	-	-	80.0	1,195	49,536.5	-	-	-	-	-	-	
기정	대로	2	20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성산동 53-26 (광로 2-93)	불광동 (대로 2-12)	6,723 (1,032)	44,229.1	(1,032)	44,229.1	-	-	-	-	-	-	-	-	-	-	-	-	
변경	대로	2	20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성산동 53-26 (광로 2-93)	불광동 (대로 2-12)	6,723 (1,032)	44,229.1	(744)	32,773.9	-	-	-	-	-	-	-	-	-	-	(288)	11,455.2	
기정	대로	3	30	25 ~ 3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성산동 (대로 3-187)	상암동 129-2 (대로 1-1)	3,250 (306.2)	7,774.6	(138)	5,781.5	(168.2)	1,993.1	-	-	-	-	-	-	-	-	-	-	
변경	대로	3	30	25 ~ 3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성산동 (대로 3-187)	상암동 129-2 (대로 1-1)	3,250 (306.2)	7,774.6	(14)	1,203.7	(168.2)	1,993.1	-	-	-	-	-	-	-	-	(124)	4,577.8	
기정	대로	3	32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175 (937)	31,874.4	-	-	-	-	-	-	(479)	8,011.0	(458)	23,863.4	-	-	-	-	
기정	대로	3	1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1167-2 (중로1-126)	수색동 (대로 3-32)	1,970	46,376.4	640	11,679.0	-	-	-	-	1,330	34,697.4	-	-	-	-	-	-	
변경	대로	3	1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1167-2 (중로1-126)	수색동 (대로 3-32)	1,970	46,376.4	-	-	-	-	-	-	1,330	34,697.4	-	-	-	-	640	11,679.0	
기정	대로	3	2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56 (광로2-93)	상암동 1-3 (대로3-1)	944	23,843.4	-	-	-	250.9	-	-	944	23,592.5	-	-	-	-	-	-	
기정	대로	3	3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405 (광로2-93)	상암동 229-13 (대로3-1)	940	24,261.9	-	-	-	-	-	122.7	940	24,139.2	-	-	-	-	-	-	
기정	대로	3	4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302-3 (대로1-1)	상암동 292-1 (대로3-1)	268	7,866.0	-	-	-	-	-	-	268	7,866.0	-	-	-	-	-	-	
기정	중로	1	401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186 (대로3-1)	상암동 27-49 (대로3-30)	257	5,406.1	257	5,406.1	-	-	-	-	-	-	-	-	-	-	-	-	
기정	중로	1	1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73 (대로3-2)	상암동 산6 (대로3-30)	489	10,388.0	-	-	489	10,388.0	-	-	-	-	-	-	-	-	-	-	
기정	중로	1	2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98 (대로3-2)	상암동 876 (대로3-3)	164	4,494.2	-	-	-	-	-	-	164	4,494.2	-	-	-	-	-	-	
기정	중로	1	3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72-4 (대로1-1)	상암동 251-10 (대로3-1)	298	7,264.1	-	-	-	-	-	-	298	7,264.1	-	-	-	-	-	-	

구분	규모				사용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중로	1	4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85-2 (대로3-3)	상암동 445-1 (중로1-6)	1,089	22,597.9	-	-	-	-	1,089	22,597.9	-	-	-	-	-	-	-	-	
기정	중로	1	5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360-4 (중로1-4)	상암동 301 (대로1-1)	89	2,859.3	-	-	-	-	89	2,859.3	-	-	-	-	-	-	-	-	
기정	중로	1	6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542-1 (광로2-93)	상암동 446 (대로3-32)	614	12,954.6	-	-	-	-	607	12,564.6	-	-	7	390.0	-	-	-	-	
기정	중로	1	7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383-1 (중로1-4)	상암동 374-3 (대로1-1)	90	2,244.6	-	-	-	-	90	2,244.6	-	-	-	-	-	-	-	-	
기정	중로	1	8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296답	상암동 292-3 (대로3-4)	94	2,354.5	-	-	-	-	-	-	94	2,354.5	-	-	-	-	-	-	
기정	중로	1	9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291 (대로 3-4)	상암동 258-1 (중로1-3)	297	5,533.4	-	-	-	-	-	-	297	5,533.4	-	-	-	-	-	-	
기정	중로	1	10	20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244-4 (중로1-3)	상암동 220 (대로3-3)	278	5,673.8	-	-	-	-	-	-	278	5,673.8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중로	1	11	20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218 (대로3-3)	상암동 202-6 (중로2-6)	74	1,568.9	-	-	-	-	-	-	74	1,568.9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중로	2	404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251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1-401)	250	4,127.5	250	4,127.5	-	-	-	-	-	-	-	-	-	-	-	-	
기정	중로	2	405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188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2-404)	79	1,243.8	79	1,243.8	-	-	-	-	-	-	-	-	-	-	-	-	
기정	중로	2	406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183 (중로 1-401)	상암동 1178 (중로 2-407)	89	1428.2	89	1428.2	-	-	-	-	-	-	-	-	-	-	-	-	
기정	중로	2	407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153 (중로 1-126)	성산동 495 (중로 1-401)	279	4,303.2	279	4,303.2	-	-	-	-	-	-	-	-	-	-	-	-	
기정	중로	2	1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산14-8 (중로 1-2)	상암동 136-4 (중로 2-2)	202	3,084.3	-	-	-	-	-	-	202	3,084.3	-	-	-	-	-	-	
기정	중로	2	2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170-3 (대로 3-3)	상암동 산11-1 (대로 3-2)	164	2,523.6	-	-	-	-	-	-	164	2,523.6	-	-	-	-	-	-	
기정	중로	2	3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369 (대로1-1)	상암동 251-13 (대로3-1)	265	4,337.5	-	-	-	-	-	-	265	4,337.5	-	-	-	-	-	-	
기정	중로	2	4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368-2 (대로 1-1)	상암동 251-45 (대로 3-1)	253	4,170.3	-	-	-	-	-	-	253	4,170.3	-	-	-	-	-	-	
기정	중로	2	5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암동 304 (대로 1-1)	상암동 308-3 (대로 3-1)	250	3,821.9	-	-	-	-	-	-	250	3,821.9	-	-	-	-	-	-	
기정	중로	2	6	15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202-4 (대로 1-1)	상암동 9-10 (대로 3-1)	297	4,456	-	-	-	-	-	-	297	4,456.0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주) ( )는 사업지구내 구간임

구분	규모				사용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소로	1	1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12-3 (중로 1-1)	상암동 산12-3 (대로 3-2)	242	2,426.3	-	-	242	2,426.3	-	-	-	-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1	2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산11-4 (중로 2-1)	상암동 산12-3 (대로 3-2)	80	797.3	-	-	-	-	-	-	80	797.3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1	3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38-1 (대로 3-3)	상암동 136-9 (중로 2-1)	75	749.0	-	-	-	-	-	-	75	749.0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1	4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93 (대로 1-1)	상암동 187 (중로 1-11)	177	1,786.2	-	-	-	-	-	-	177	1,786.2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1	5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87 (중로 1-11)	상암동 234-7 (대로 3-1)	147	1,484.6	-	-	-	-	-	-	147	1,484.6	-	-	-	-	-	-	자전거 도로포함
기정	소로	2	1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1-21 (대로 3-2)	상암동 1385-8	115	1,181.7	-	-	-	-	-	-	115	1,181.7	-	-	-	-	-	-	
기정	소로	2	2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94 (중로 1-4)	상암동 산21	99	908.0	-	-	-	-	-	-	-	-	-	-	99	908.0	-	-	
기정	소로	2	3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34 (중로1-4)	상암동 357-1 (중로1-4)	134	1,127.0	-	-	-	-	134	1,127.0	-	-	-	-	-	-	-	-	
기정	소로	2	4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431-1 (중로1-6)	상암동 448 (중로1-6)	150	1,238.9	-	-	-	-	150	1,238.9	-	-	-	-	-	-	-	-	
기정	소로	2	5	8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6-1 (중로1-1)	상암동 34-37	16	113.3	-	-	16	113.3	-	-	-	-	-	-	-	-	-	-	
기정	소로	3	1	6 ~ 10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533 (중로1-401상암동 1280-1)	상암동 1258 (중로2-404상암동 1285-1)	369 (110)	903.3	(110)	903.3	-	-	-	-	-	-	-	-	-	-	-	-	
기정	소로	3	2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24-9 (대3-30)	상암동 24-8	20	122.4	20	122.4	-	-	-	-	-	-	-	-	-	-	-	-	
기정	소로	3	4	6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34-58	상암동 34-7	1	5.2	-	-	1	5.2	-	-	-	-	-	-	-	-	-	-	

구분	규모				사용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기정	소로	3	5	6	일반도로	국지도로	상암동 37-15 (대3-30)	상암동 37-27	42	259.6	-	-	42	259.6	-	-	-	-	-	-	-	-	-	-	
기정	소로	3	6	6	일반도로	국지도로	상암동 115-7 (대3-30)	상암동 115-5	72	454.8	-	-	72	454.8	-	-	-	-	-	-	-	-	-	-	
기정	소로	3	7	4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357-1 (중로1-4)	상암동 357 (소로2-3)	42	166.4	-	-	-	-	42	166.4	-	-	-	-	-	-	-	-	
기정	소로	3	8	4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335-2 (소로2-3)	상암동 335-2	21	81.4	-	-	-	-	21	81.4	-	-	-	-	-	-	-	-	
기정	소로	3	9	6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431-1 (중로1-6)	상암동 451-2	60	362.0	-	-	-	-	60	362.0	-	-	-	-	-	-	-	-	
기정	소로	3	10	6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136-6 (중로2-2)	상암동 136-1 (대로1-1)	64	382.0	-	-	-	-	-	-	64	382.0	-	-	-	-	-	-	
기정	소로	3	11	4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672-1	상암동 695	220	918.8	-	-	-	-	-	-	-	-	220	918.8	-	-	-	-	
기정	소로	3	12	6	일반도로	국지도로	상암동 134-7	상암동 8-17	105	611.1	-	-	-	-	-	-	105	611.1	-	-	-	-	-	-	
기정	소로	3	13	4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300-2	상암동300-2	8.5	34.3	-	-	-	-	8.5	34.3	-	-	-	-	-	-	-	-	
기정	소로	3	14	4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197-1	상암동197-1	96.53	965.3	-	-	-	-	96.53	965.3	-	-	-	-	-	-	-	-	
기정	소로	3	15	2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223	상암동 224-3	19.5	39.9	-	-	-	-	-	-	19.5	39.9	-	-	-	-	-	-	
기정	소로	3	16	6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	상암동 91	상암동 91	4	24.4	-	-	-	-	-	-	4	24.4	-	-	-	-	-	-	

주) ( )는 사업지구내 구간임

■ 주차장 : 변경없음(생략)

■ 자동차정류장 : 변경없음(생략)

■ 철도시설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1,662.7	1,662.7	-	-	-	-	-	-	
	변경		1,662.7	236.6	-	-	-	-	-	1,426.1	
1	기정	상암동 1171-5답 일원	1,426.1	1,426.1	-	-	-	-	-	-	
	변경	상암동 1171-5답 일원	1,426.1	-	-	-	-	-	-	1,426.1	
2	기정	상암동 1270답 일원	236.6	236.6	-	-	-	-	-	-	

② 공간시설

■ 광장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계	기정	-	2,863.5	2,863.5	-	-	-	-	-	-	
	변경	-	2,863.5	468.6	-	-	-	-	-	2,394.9	
1	기정	상암동 1178-2 일원	2,394.9	2,394.9	-	-	-	-	-	-	
	변경	상암동 1178-2 일원	2,394.9	-	-	-	-	-	-	2,394.9	
2	기정	상암동 24-12대 일원	468.6	468.6	-	-	-	-	-	-	

■ 공원 : 변경없음(생략)

■ 녹지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총 계		기정	-	76,541.9	20,134.0	18,697.2	12,209.0	20,210.4	4,291.3	-	-	
		변경	-	76,541.9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91.3	-	4,883.5	
경관녹지	소계	기정	-	29,910.7	15,250.5	11,355.0	461.3	1,669.9	1,174.0	-	-	
	1	기정	상암동 산4-185임 일원	15,250.5	15,250.5	-	-	-	-	-	-	
	2	기정	상암동 산4-1임 일원	5,768.8	-	5,768.8	-	-	-	-	-	
	3	기정	상암동 34-15대 일원	1,620.6	-	1,620.6	-	-	-	-	-	
	4	기정	상암동 산4-142임 일원	3,540.0	-	3,540.0	-	-	-	-	-	
	5	기정	상암동 34-27대 일원	425.6	-	425.6	-	-	-	-	-	
	6	기정	상암동 136-5전 일원	335.4	-	-	-	335.4	-	-	-	
	7	기정	상암동 산14-3임 일원	783.9	-	-	-	783.9	-	-	-	
	8	기정	상암동 300-2답 일원	461.3	-	-	461.3	-	-	-	-	
	9	기정	상암동 444전 일원	1,174.0	-	-	-	-	1,174.0	-	-	
	10	기정	상암동 869-1답 일원	550.6	-	-	-	550.6	-	-	-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완충녹지	소계	기정	-	45,631.2	4,883.5	7,342.2	1,1747.7	18,540.5	3,117.3	-	-	
		변경	-	45,631.2	-	7,342.2	1,1747.7	18,540.5	3,117.3	-	4,883.5	
	1	기정	성산동 486-4답 일원	4,883.5	4,883.5	-	-	-	-	-	-	
		변경	성산동 486-4답 일원	4,883.5	-	-	-	-	-	-	4,883.5	
	2	기정	상암동 37-23대 일원	808.6	-	808.6	-	-	-	-	-	
	3	기정	상암동 128-1답 일원	736.0	-	736.0	-	-	-	-	-	
	4	기정	상암동 126-7전 일원	353.6	-	353.6	-	-	-	-	-	
	5	기정	상암동 126-2전 일원	941.2	-	941.2	-	-	-	-	-	
	6	기정	상암동 55-7전 일원	829.4	-	829.4	-	-	-	-	-	
	7	기정	상암동 1538-6잡 일원	3,673.4	-	3,673.4	-	-	-	-	-	
	8	기정	상암동 92전 일원	987.4	-	-	-	987.4	-	-	-	
	9	기정	상암동 87-8대 일원	428.2	-	-	-	428.2	-	-	-	
	10	기정	상암동 97-1대 일원	481.5	-	-	-	481.5	-	-	-	
	11	기정	상암동 214-2전 일원	1,794.8	-	-	1,794.8	-	-	-	-	
	12	기정	상암동 371-1답 일원	1,180.7	-	-	1,180.7	-	-	-	-	
	13	기정	상암동 360-1답 일원	1,189.3	-	-	1,189.3	-	-	-	-	
	14	기정	상암동 320전 일원	5,878.9	-	-	2,761.6	-	3,117.3	-	-	
	15	기정	상암동 478-14잡 일원	3,181.6	-	-	3,181.6	-	-	-	-	
	16	기정	상암동 134-4전 일원	540.4	-	-	-	540.4	-	-	-	
	17	기정	상암동 200-4전 일원	389.4	-	-	-	389.4	-	-	-	
	18	기정	상암동 201전 일원	1,273.1	-	-	-	1,273.1	-	-	-	
	19	기정	상암동 251-29답 일원	857.6	-	-	-	857.6	-	-	-	
	20	기정	상암동 251-4답 일원	822.7	-	-	-	822.7	-	-	-	
	21	기정	상암동 274-2전 일원	850.6	-	-	-	850.6	-	-	-	
	22	기정	상암동 293답 일원	877.8	-	-	-	877.8	-	-	-	
	23	기정	상암동 223답 일원	3,506.7	-	-	-	3,506.7	-	-	-	
	24	기정	상암동 172-6답 일원	1,341.8	-	-	-	1,341.8	-	-	-	
	25	기정	상암동 173답 일원	1,471.7	-	-	-	1,471.7	-	-	-	
	26	기정	상암동 369답 일원	1,150.7	-	-	-	1,150.7	-	-	-	
	27	기정	상암동 286답 일원	1,458.9	-	-	-	1,458.9	-	-	-	
	28	기정	상암동 302-7답 일원	1,456.5	-	-	-	1,456.5	-	-	-	
	30	기정	상암동 794대 일원	645.5	-	-	-	645.5	-	-	-	
	31	기정	상암동 140-2전 일원	629.5	-	-	629.5	-	-	-	-	
	32	기정	상암동 산14-29임 일원	1,010.2	-	-	1,010.2	-	-	-	-	

③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생략)

■ 공동구 : 변경없음(생략)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운동장 및 시장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1	기정	성산동 515-5답 일원	211,405.8	211,405.8	-	-	-	-	-	-	2002년월드컵 주경기장
	변경	성산동 515-5답 일원	211,405.8	-	-	-	-	-	-	211,405.8	

■ 공공청사 : 변경없음(생략)

■ 교육시설(학교) : 변경없음(생략)

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시설 : 변경없음(생략)

⑥ 방재시설

■ 하천 : 변경없음(생략)

(다) 도시계획시설이외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생략)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Scale = 1/5,000) : 게재생략(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공급과 또는 SH공사 기술본부 개발계획팀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3. 상기 1~2항외 변경내용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공급과(☎ 3707-8577), 경제진흥본부 투자 유치과(☎2171-2597)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기술본부 개발계획팀(☎ 3410-76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0호

천왕역 광역환승센터 사용 개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59호(2010.2.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인가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4-10 일원 주차장 1' 부지의 "천왕역 광역환승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 개시함을 고시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주차계획과 ☎6321-4269)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교통시설관리처 ☎2290-6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주차장명 : 천왕역 광역환승센터(주차전용건축물)
나.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4-10 일원(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내 주차장1 부지)
다. 시설규모
1) 대지면적 : 3,714.00㎡
2) 건축면적 : 2,877.71㎡
3) 연 면 적 : 12,834.41㎡
4) 규　　모 : 지하2층~지상3층(지하3층 천왕역 연결통로 포함)
5) 총주차대수 : 330면[장애인(10), 여성(67), 확장형(198), 경차(23), 일반(32)]
6) 자전거주차 : 458대
7) 기타 부대시설
라. 사용개시일 : 2011.12.20(화)
마. 운영방법
1)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2) 주차요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준용(4급지)
- 시간제주차 : 10분당 200원
- 월정기권 : 일반주차 6만5천원, 환승주차 4만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유원지)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호(20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5호(2010.4.15), 제2010-175호(2010.5.13)로 도시관리계획(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이 ~ 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78호(2011.12.16)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철도)변경결정 고시 되었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철도, 유원지) 변경결정 조서
1) 본선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철도	본 선	강북구 우이동 325번지 일대 (우이유원지)	동대문구 신설동132-259 일대 (신설동역 1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보문역(6호선) 신설동역(1호선)	B=8.3~20m L=11,089m A=107,248㎡	증)3352.7㎡	B=8.3~20m L=11,089m A=110,600.7㎡	서울시고시 제2009-44호 ('09.2.5)	솔밭근린공원일부 중복결정

2) 차량기지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	철도	차량 기지	강북구 우이동 325번지 일대	13,000	증)473	13,473	서울시고시 제2009-44호 ('09.2.5)	

3) 정거장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철 도	정거장(L01)	강북구 우이동 16-20일대	2,224	증) 409	2,633	서울시고시 제2009-44호 ('09.2.5)	
변경	2	철 도	정거장(L02)	강북구 우이동 57-28일대 도봉구 쌍문동 507-50일대	2,330	감) 356	1,974		
변경	3	철 도	정거장(L03)	강북구 우이동 72-188일대	1,773	증) 1	1,774		
변경	4	철 도	정거장(L04)	강북구 수유동 338-46일대	1,844	증) 32	1,876		
변경	5	철 도	정거장(L05)	강북구 수유동 472-677일대	1,566	증) 728	2,294		
변경	6	철 도	정거장(L06)	강북구 미아동 791-4703일대	1,425	증)360.6	1,785.6		
변경	7	철 도	정거장(L07)	강북구 미아동 745-142일대	1,804	증) 407	2,211		
변경	8	철 도	정거장(L08)	강북구 미아동 837-2058일대	1,880	증)338.7	2,218.7		미양초등학교 일부중복결정
변경	9	철 도	정거장(L09)	성북구 정릉동 303-1일대	2,081	감) 38	2,043		
변경	10	철 도	정거장(L010)	성북구 정릉동 966-312일대	1,948	증) 283	2,231		
변경	11	철 도	정거장(L011)	성북구 동선동 101-4일대	1,704	감) 80.9	1,623.1		
변경	12	철 도	정거장(L012)	성북구 보문동 127-7일대	1,559	감) 90.1	1,468.9		
변경	13	철 도	정거장(L013)	동대문구 신설동 132-259일대	3,201	감) 131	3,070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철도)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결정내용(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1	본 선 환기구 (L02S1)	도봉구 쌍문동 507-4	길이 폭 높이	6.4 2.9 해발 27.6~ 37.2	변 경 없 음	도봉구고시 제2011-24호 '11.9.8	
신 설	1	L07 정거장	강북구 미아동 734-329대	길이 폭 높이	23.7 3.7~1.2 해발 28.8~ 34.6	-	-	
신 설	1-1	철 도 (본선)	강북구 미아동 703-146일대 ~강북구 미아동1347일대	길이 폭 높이	110.5 11 해발 18.4~39.3	-	-	
신 설	2-1	철 도 (본선)	성북구 정릉동 1028-1일대 ~ 성북구 정릉동 260-99대	길이 폭 높이	139 9.4~11 해발 39.6~ 59.1	-	-	
신 설	2-2	철 도 (본선)	성북구 정릉동 252-112일대 ~성북구 정릉동 252-120일대	길이 폭 높이	36.5 10~11 해발 39.3~ 59	-	-	
신 설	2-3	철 도 (본선)	성북구 정릉동290-42일대 ~성북구 정릉동 290-79일대	길이 폭 높이	48.8 11~13 해발 38.9~58.8	-	-	
신 설	3-1	철 도 (본선)	성북구 정릉동 109-2일대 ~성북구 정릉동 109-123일대	길이 폭 높이	89.7 10 해발 12~33.1	-	-	
신 설	3-2	철 도 (본선)	성북구 돈암동 538-101일대 ~성북구 돈암동 109-123일대	길이 폭 높이	109.4 10 해발 5.4~27.5	-	-	
신 설	4-1	철 도 (본선)	성북구 삼선동 400일대 ~성북구 삼선동343일대	길이 폭 높이	88.1 11 해발 -7.6~11.9	-	-	
신 설	4-2	철 도 (본선)	성북구 보문동9-1일대 ~성북구 보문동9-11일대	길이 폭 높이	42.7 11 해발 -7.9~11.4	-	-	

2.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	유원지	강북구 우이동 산14-3일대	124,185	증) 208	124,393	건고 제34호 (1968.1.15)	서고제175 ('10.5.13) 면적정정 및 일부선형 변경

- 세부시설 조성계획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시설명	위치	이용시설		토지이용계획(㎡)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유원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14-3번지 일원	합 계		124,185	증) 208	124,393	
			건축부지	소계	21,975		21,975	
				유희시설	900		900	
				운동시설	1,150		1,150	
				휴양시설	12,129		12,129	
				특수시설	-		-	
				편익시설	3,035		3,035	
				기타시설	4,761		4,761	기존건축물부지
			녹지부지		29,127		29,127	
			조경부지		46,956	증) 12	46,968	
			도로,주차장부지		17,525	증) 196	17,721	
			하천부지		8,602		8,602	

· 건축물의 범위 : 변경 없음

건폐율(%)	용적율(%)	높이의 범위(층수)	비고
23 이하	110 이하	7층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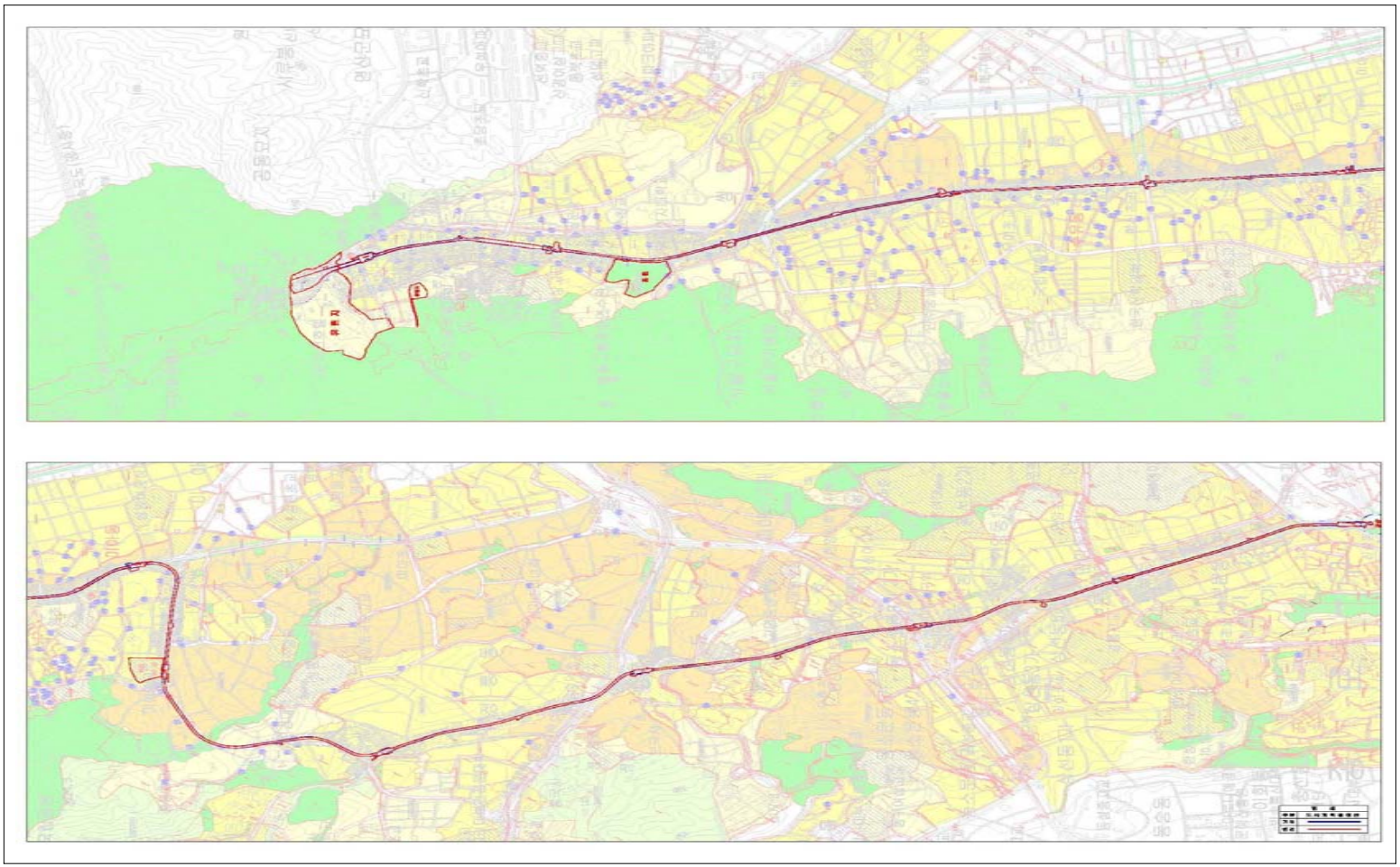
· 세부 건축규모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 연면적(㎡)	건물동수	건축물층수 (지하/지상)	용 도	비고
계	13,889	99,607	68,196	15	3/7	-	-
휴양시설	12,129	83,355	64,521	14	1/7 -5층 : 2동 -6층 : 3동 -7층 : 9동	숙박시설	신축
특수시설	-	3,800	-	1	2/0	박물관,주차장	신축
편익시설	1,760	12,452	3,675	(1동)	3/2	부대편익시설	신축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철도, 유원지) 변경결정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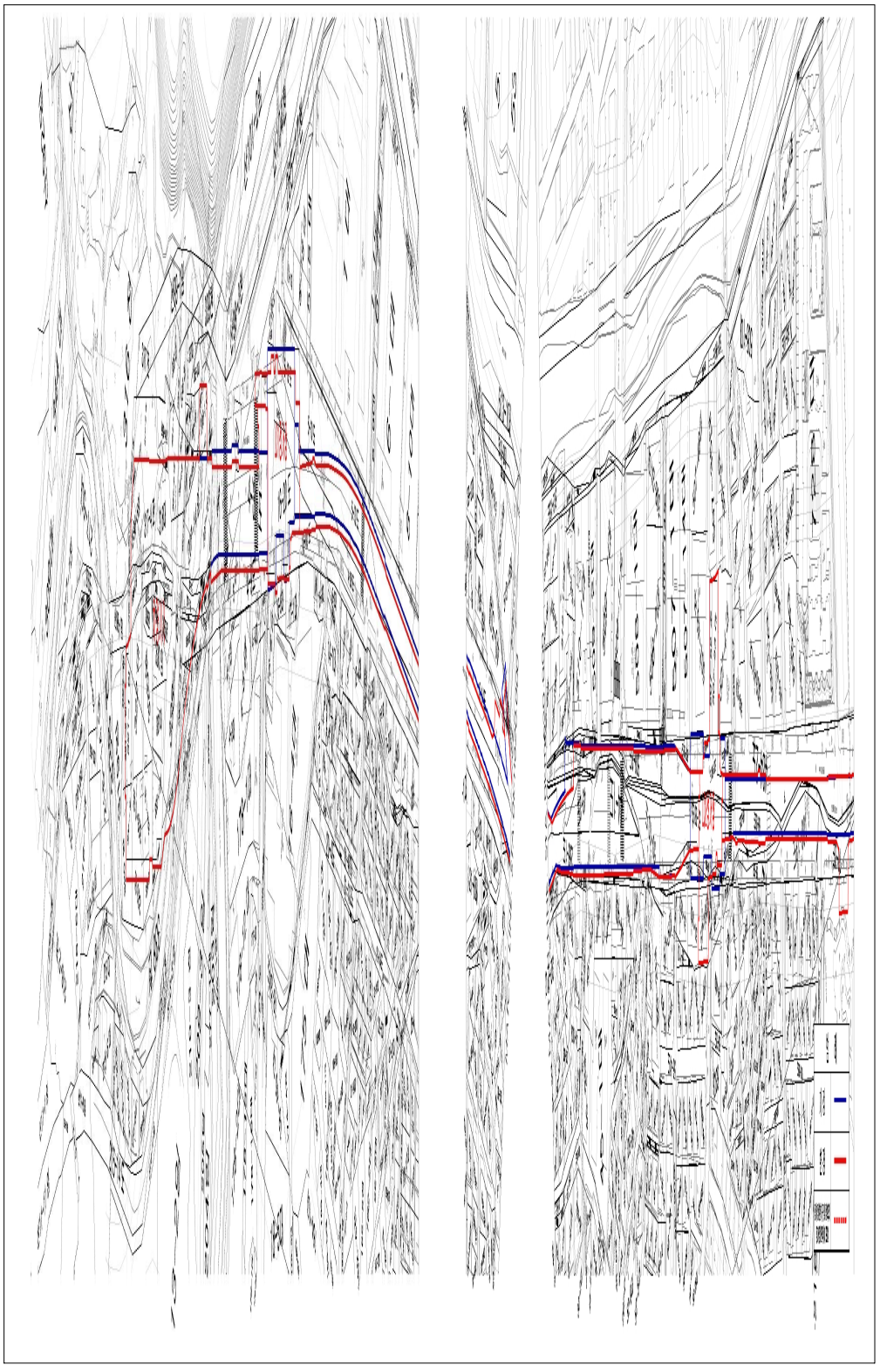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86),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설계부(☎772-7149), 도시철도 공무부(☎772-7186),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581) 성북구청 도시재생과(☎920-3656), 강북구청 도시계획과(☎901-6844),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289-1801)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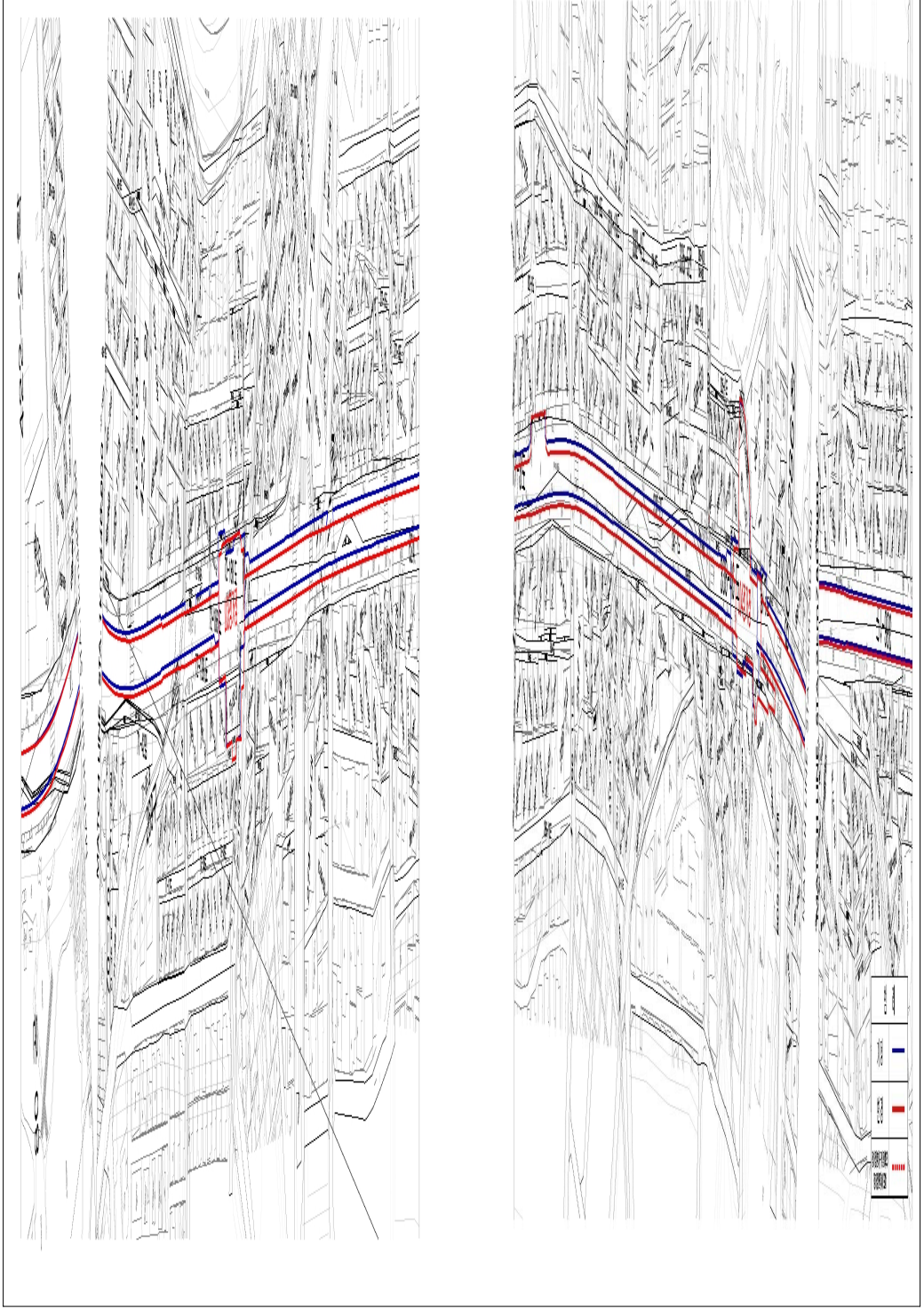
□ 우이 ~ 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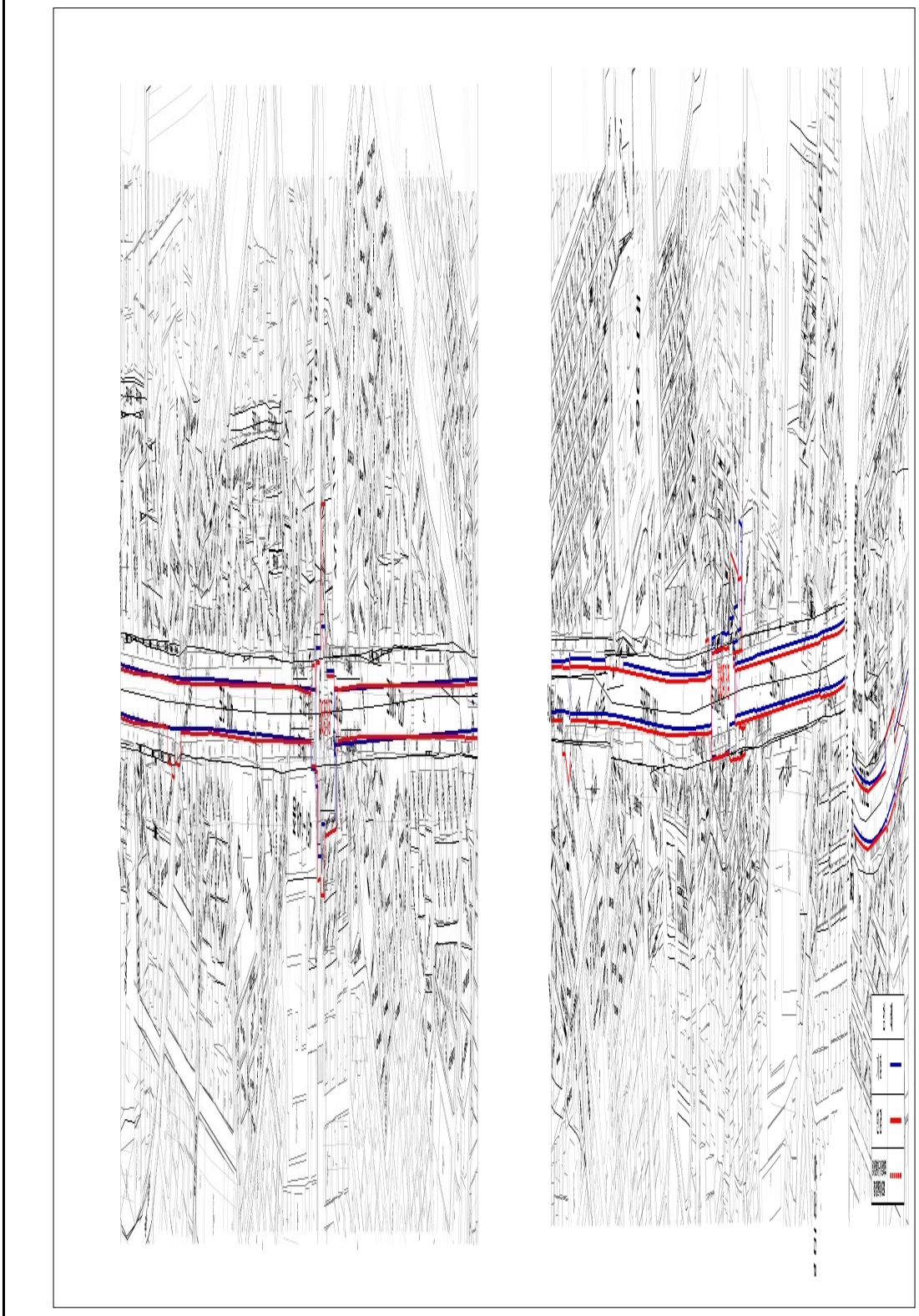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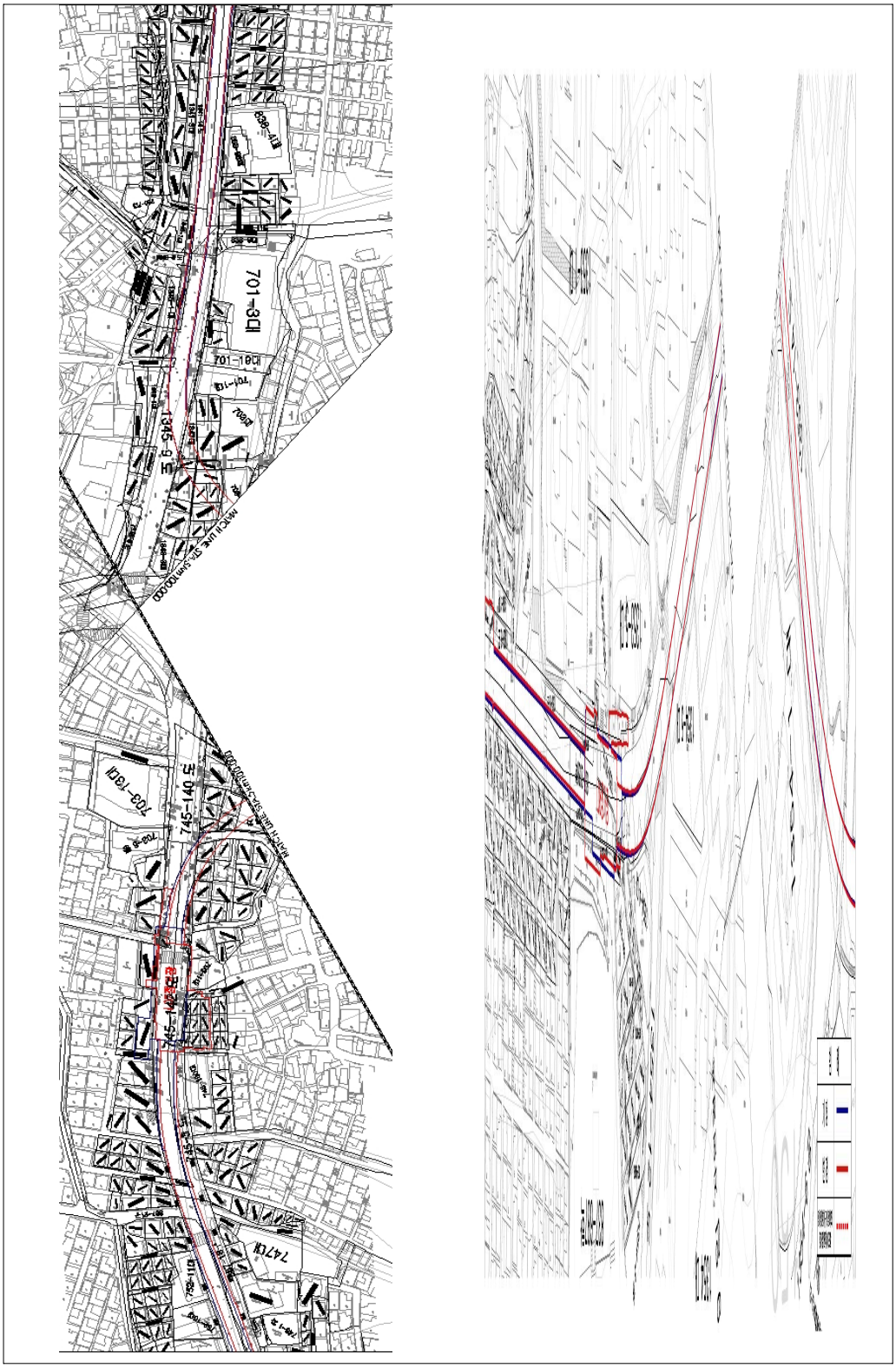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철도)지형도면 고시도(총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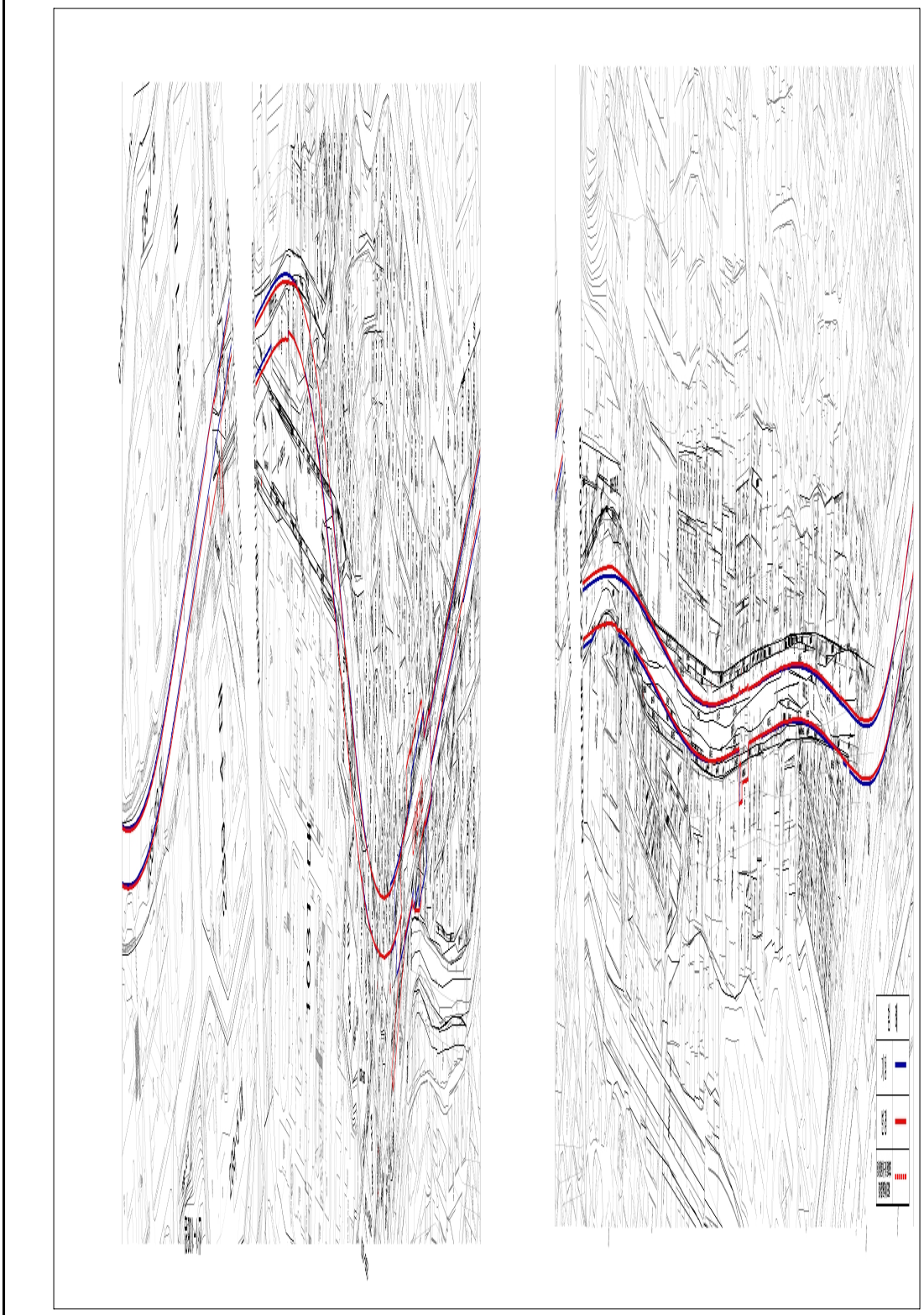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철도)지형도면 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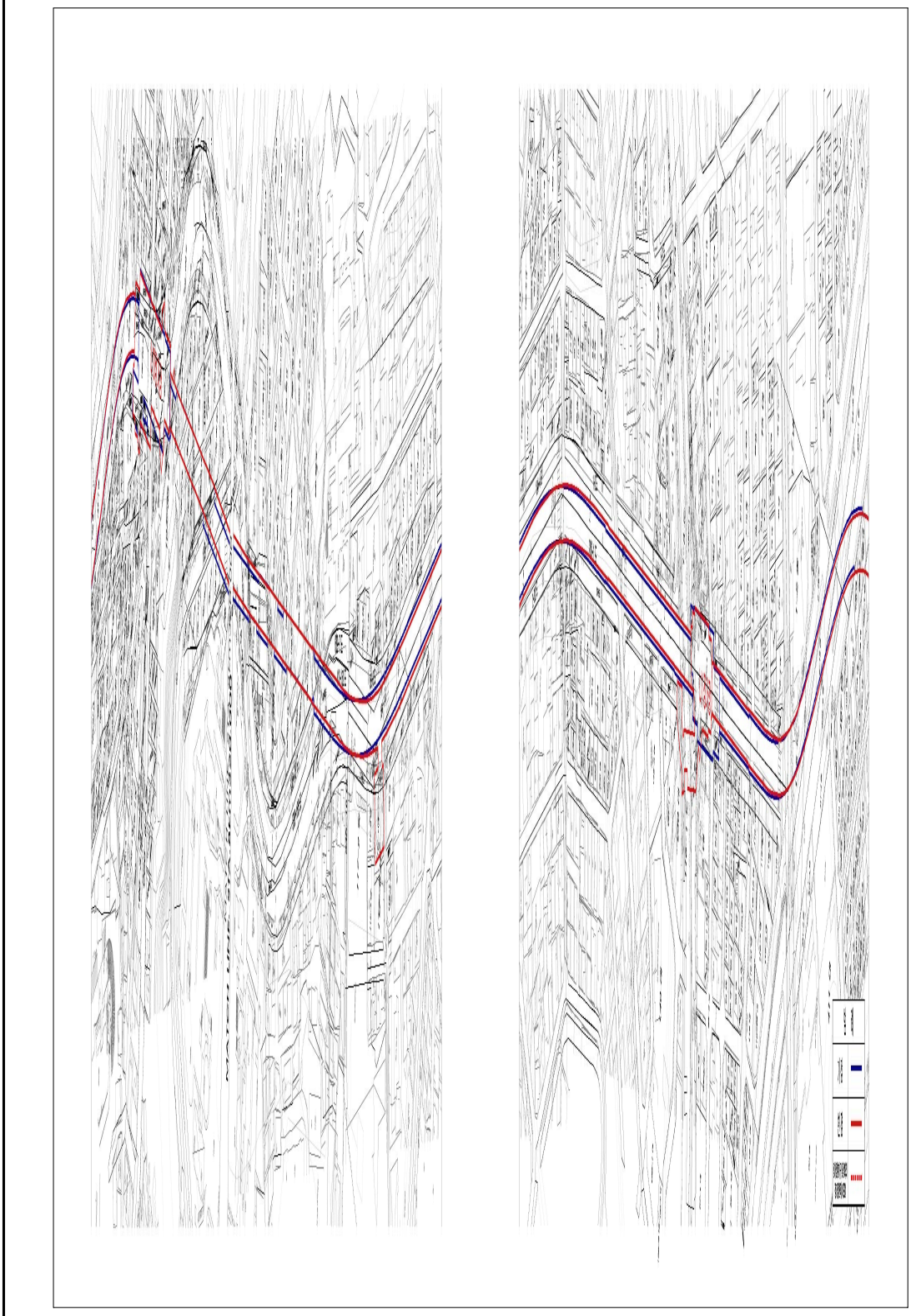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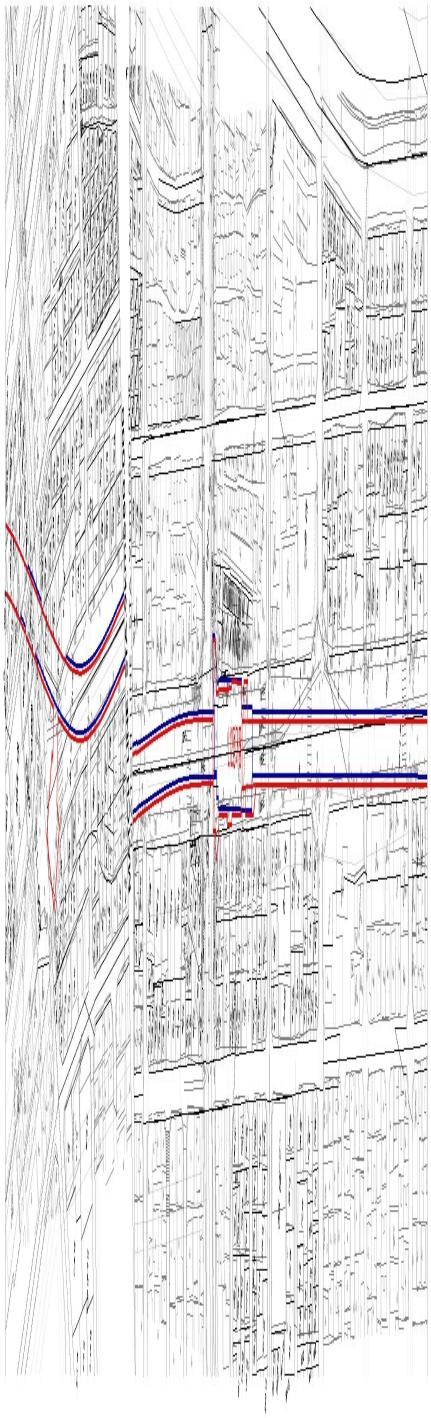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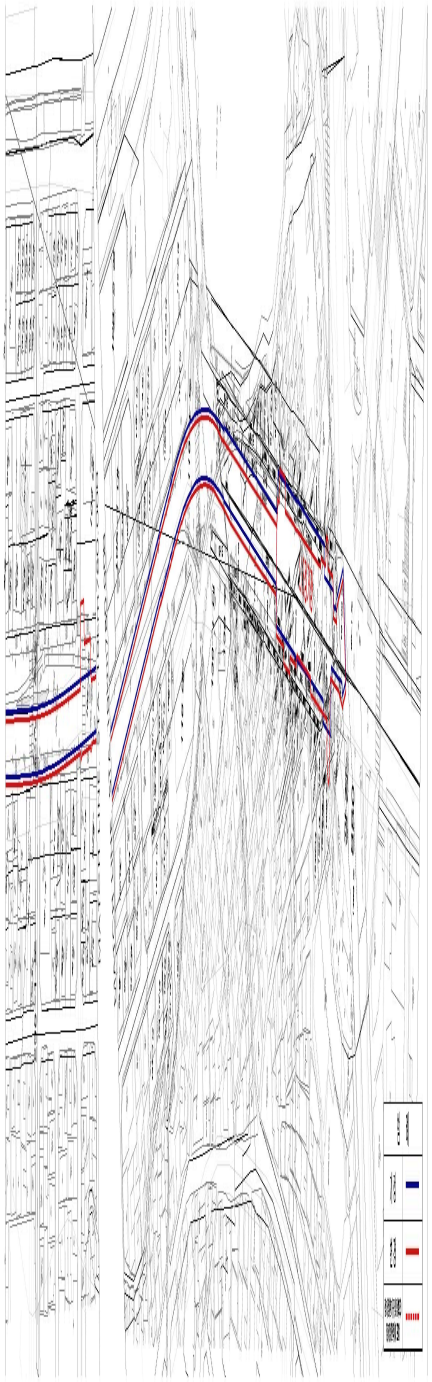



701-3대
745-140 도
745-141 도
708-1대
74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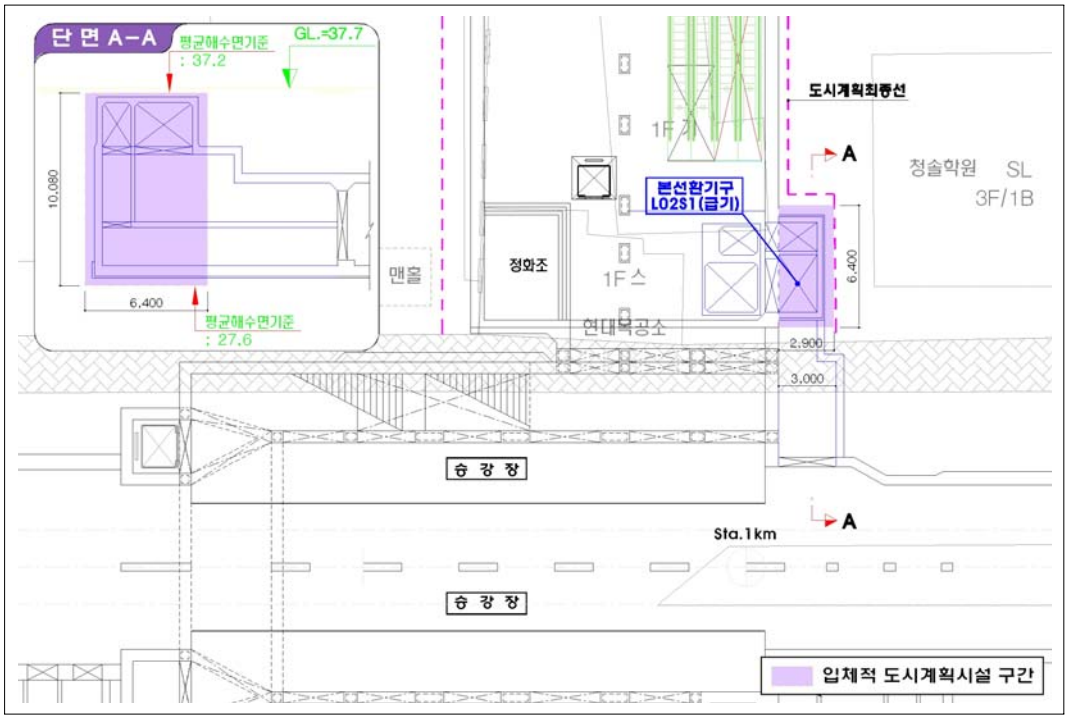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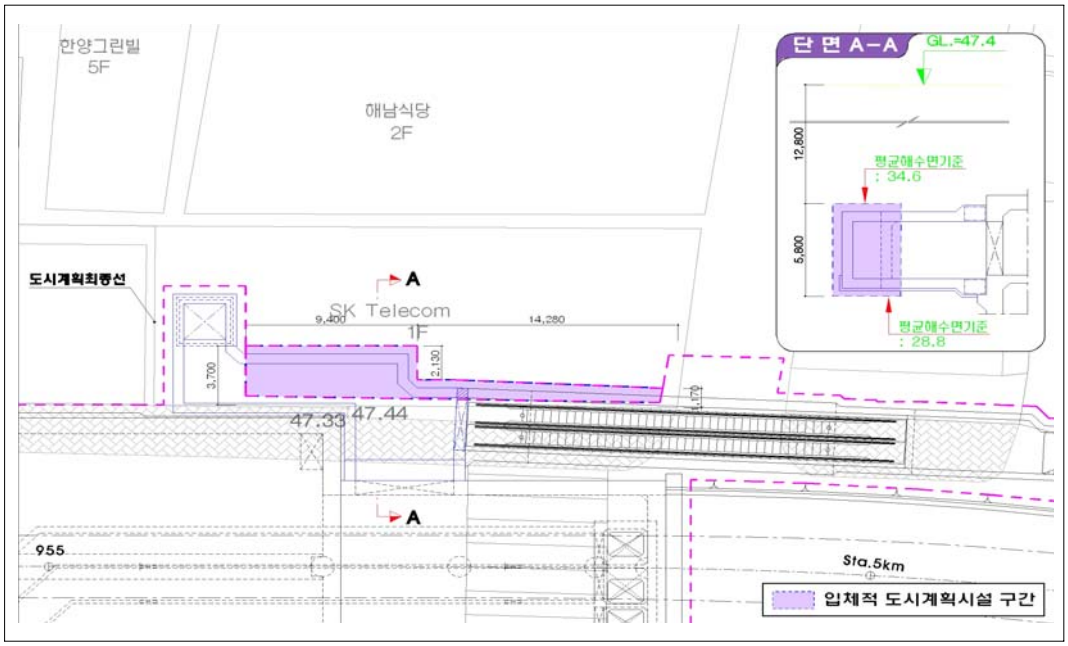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철도)입체적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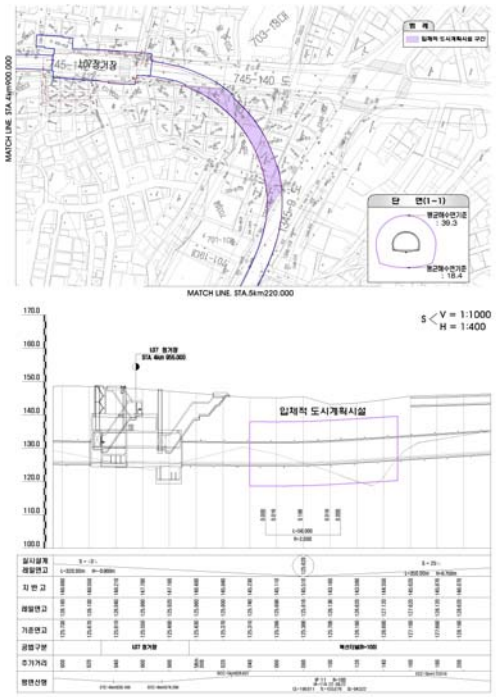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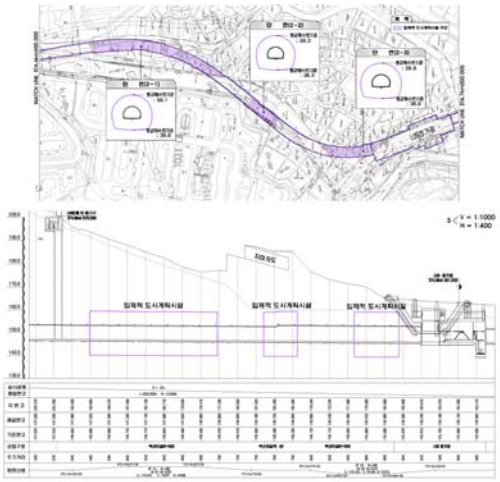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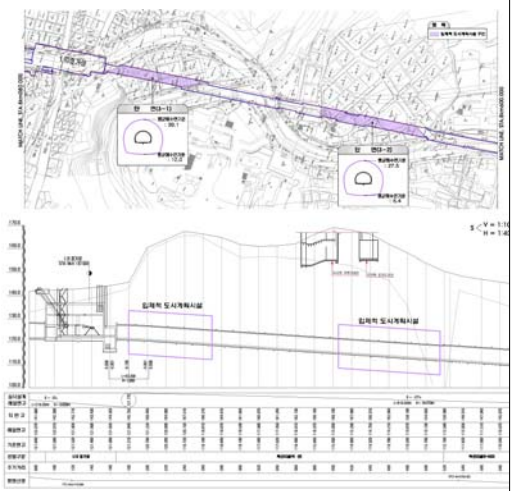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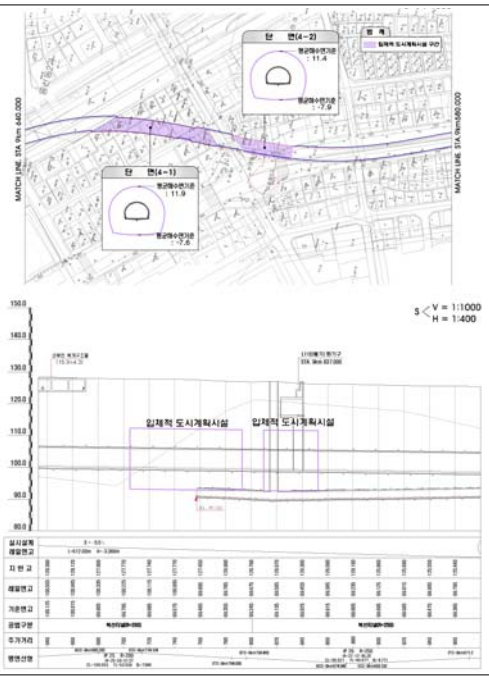
● 본선 환기구 L02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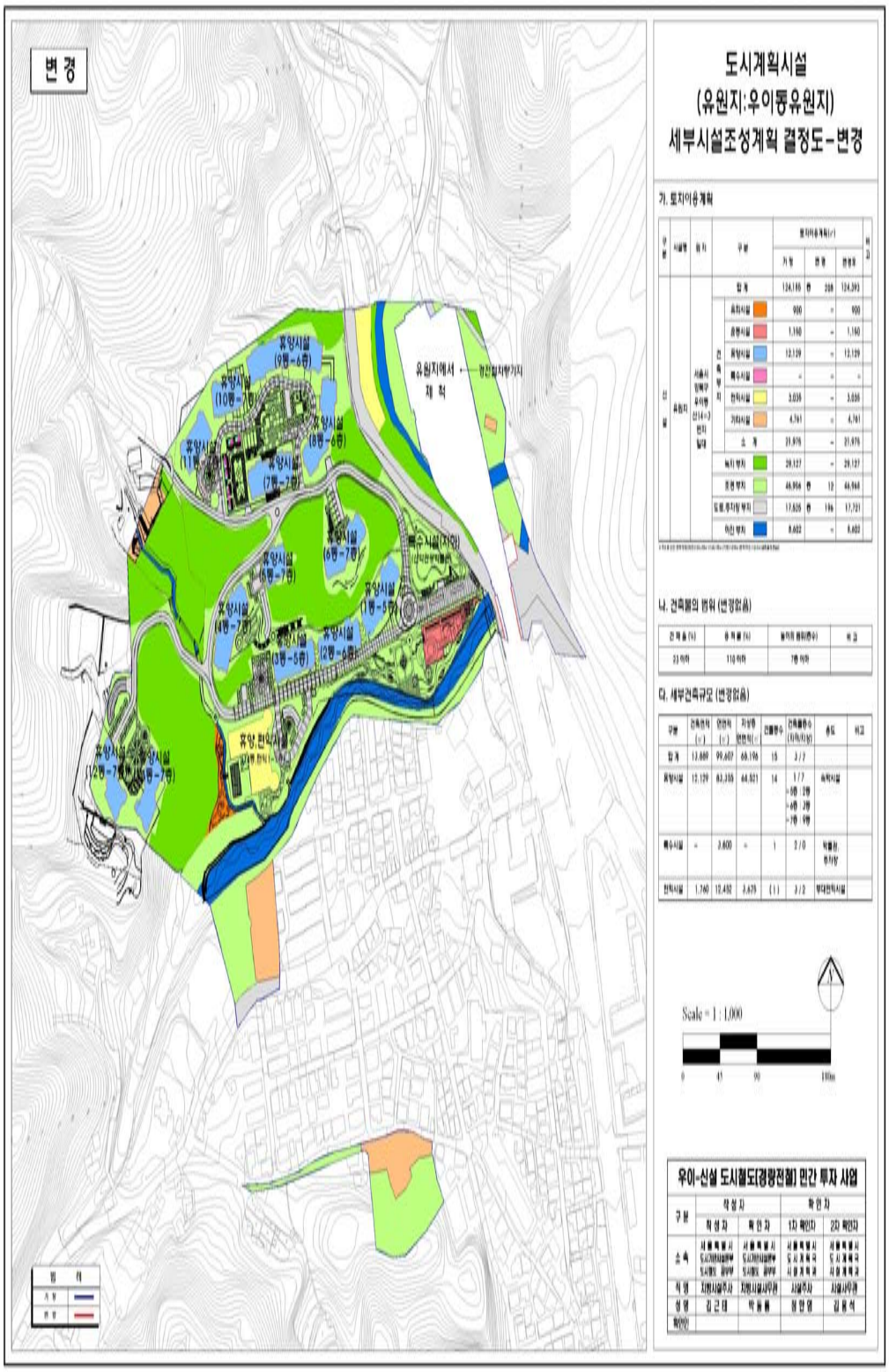
● L07정거장 외부E/V 연결통로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평면도 및 종단면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평면도 및 종단면도(1)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평면도 및 종단면도(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평면도 및 종단면도(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평면도 및 종단면도(4)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지형도면 고시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2호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3호(2009.09.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18호(2009.12.17)로 실시계획인가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1호(2010.08.19)로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1호(2010.11.11)로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된 중구 남대문로5가 461번지 일대 남산1근린공원 내 "남산케이블카 승차동 증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구 회현동1가 산 1-19 외 1필(중구 예장동 산5-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남산케이블카 승차동 증축

3. 사업의 내용
   ○ 남산케이블카 승차동 증축 2동
   ○ 건축면적 : 1,364.35㎡(연면적 3,079.68㎡)
   - 하부승강장 : 972.61㎡(연면적 2,092.83㎡) /지상5층
     (건축면적 증 268.11㎡, 연면적 증 733.12㎡/지상 1~3층 증축)
   - 상부승강장 : 391.74㎡(연면적 986.85㎡)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증 96.2㎡, 연면적 증 102.86㎡ / 지상 1~2층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 사장 한광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산 1-19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12. 12. 31일까지

6. 변경내용 : 사업기간 연기 및 건축면적 변경(계산착오에 의한 면적정정)
   - 사업기간 연기 : (당초 : 인가일로부터 2011.12.31. 변경 : 인가일로부터 2012.12.31.)
   - 건축면적 변경 :【당초 1,365.32㎡(연면적 3,079.68㎡, 변경 1,364.35㎡(3,079.68㎡)】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시설과(02-3783-59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3호

서울장지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3호(2002.12.06)로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85호(2003.10.0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18호(2003.12.26)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95호(2011.01.0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9호(2011.02.10)호로 택지개발사업(1공구) 완료된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2, 3공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공급과(전화:3707-8285) 및 SH공사 개발계획팀(전화:3410-760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ㅁ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
   - ○ 명 칭 : 서울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
   - ○ 면 적 : 2 공구 - 3,913㎡
     3 공구 - 12,101㎡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 명 칭 : SH공사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 대표자의 성명 : 유 민 근

3. 사업시행기간(변경)
   - ○ 기정 : 2003. 9. 27 ~ 2011.12.31 (2공구, 3공구)
   - ○ 변경 : 2003. 9. 27 ~ 2013.12.31 (2공구, 3공구)
   - ※ 변경사유 - 사업조건 이행 등에 따른 소요기간 필요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 그 외 사항(변경없음)
   - ○ 내용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4호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17호(1983.9.30)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을특별시고시 제234호(1984.4.27)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3호(2009.5.7)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역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대	2,959.2	증)1,129.6	4,088.8	정비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959.2	4,088.8	100.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1,129.6	-	27.6	증)1,129.6㎡ 순부담면적 : 1,007.5㎡(25.40%)
	도 로	-	54.9	-	1.3	
	공원	-	1,074.7	-	26.3	
대지(획지)		2,959.2	2,959.2	100.0	72.4	

2) 용도지역 결정(변경)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088.8	-	4,088.8	100.0	
중심상업지역	4,088.8	-	4,088.8	100.0	

3)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도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92	을지로2가동 179-3	을지로2가동 168-22	-	일반 도로	84.4.27	
기정	소로	1	2	10	집산 도로	125	을지로2가동 168-21	저동 67-4	-	일반 도로	84.4.27	
기정	소로	1	3	10~16m	집산 도로	101	을지로2가동 168-9	저동 103-9	-	일반 도로	84.4.27	

4)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역명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대지내 공공용지(㎡)	부담률(%)
명동구역 제4지구	4,088.8	2,959.2	1,129.6	122.1	25.40

5)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계획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위치	시설종류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경	
명동구역 제4지구	저동2가 43-3	공원	-	증) 17.4	17.4	
	저동2가 43-6	공원	-	증) 11.0	11.0	
	저동2가 48	공원	-	증) 17.3	17.3	
	저동2가 67-1	도로	-	증) 24.5	24.5	
	저동2가 79-1	도로	-	증) 8.0	8.0	
	저동2가 79-3	도로	-	증) 22.4	22.4	
	저동2가 79-7	공원	-	증) 2.9	2.9	
	저동2가 84	공원	-	증) 17.9	17.9	
	저동2가 88	공원	-	증) 31.8	31.8	
	저동2가 88-1	공원	-	증) 17.9	17.9	
	저동2가 90-1	공원	-	증) 52.9	52.9	
	저동2가 90-5	공원	-	증) 66.1	66.1	
	저동2가 90-10	공원	-	증)148.8	148.8	
	저동2가 91-4	공원	-	증)184.6	184.6	
	저동2가 92-1	공원	-	증)139.8	139.8	
	저동2가 92-2	공원	-	증)179.5	179.5	
	저동2가 92-3	공원	-	증)186.8	186.8	
계	17필지		-	증1,129.6	1,129.6	

- 사업시행지구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사업자에게 무상양도)

구역명	위치	시설종류	정비기반시설부담면적(㎡)			비고 (소유자)
			기 정	증 (감)	변경	
명동구역 제4지구	을지로2가 148-85번지		-	증) 46.0	46.0	서울시
	을지로2가 168-28번지		-	증) 8.6	8.6	중 구
	저동1가 72-1		-	증) 57.4	57.4	서울시
	저동1가 77-1		-	증) 10.1	10.1	서울시
계				증)122.1	122.1	

6)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보상후 철거	
기정	명동구역 제4지구	2,959.2	저동1가 48번지 일대	17	-	-	-	17	
변경	명동구역 제4지구	2,959.2	저동1가 48번지 일대	1	-	-	1	-	

7)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기정	명동구역 제4지구	2,959.2	획지	2,959.2	저동1가 48번지 일대	-	-	-	-	
변경	명동구역 제4지구	4,088.8	획지	2,959.2	저동1가 48번지 일대	업무시설 (금융업소)	60 이하	1,200 이하	120m이하 (지상24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해 당 없 음							

<table>
<tr><td rowspan="2">결정
구분</td><td colspan="2">구 역 구 분</td><td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d><td rowspan="2">위 치</td><td rowspan="2">주 된
용 도</td><td rowspan="2">건폐율
(%)</td><td rowspan="2">용적율
(%)</td><td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d><td rowspan="2">비 고</td></tr>
<tr><td>명 칭</td><td>면 적
(㎡)</td><td>명칭</td><td>면적
(㎡)</td></tr>
<tr><td>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9">■ 공공기여시설 : 용적률=200%
<table><tr><td>목 적</td><td>인센티브대상</td><td>요건</td><td>완화량</td></tr><tr><td>도시디자인
및
도심활성화</td><td>금융산업</td><td>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내에서
진흥계획에서 정한 금융산업 도입시</td><td>200%p</td></tr></table>■ 공공시설부지 및 공개공지 초과 제공
• 용적률 = 425.95% = 400% 적용(1,200%이하)
①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 [1.3×((1,129.6-122.1)/2,959.2)]×800% = 354.08%
② 공개공지 추가 제공시 인센티브
= [(561.75-295.92)/2,959.2)]×800% = 71.87%

• 높이 = 42.39m = 10m 적용(120m이하)
①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 (1,129.6-122.1)/2,959.2)×110 = 37.45m
② 공개공지 추가 제공시 인센티브
= ((561.75-295.92)/2)/2,959.2)×110 = 4.94m</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9">• 저층부 건축지정선 : 동측 삼일로 10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동측 삼일로 15m
• 건축한계선 : 서측 3m, 북측 3m, 남측 3m</td></tr>
</table>

8)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	(주)명례방	- (업무시설 입지)	

2. 변경사유

○ 장기간 미시행지구인 명동구역 제4지구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내 금융시설을 도입 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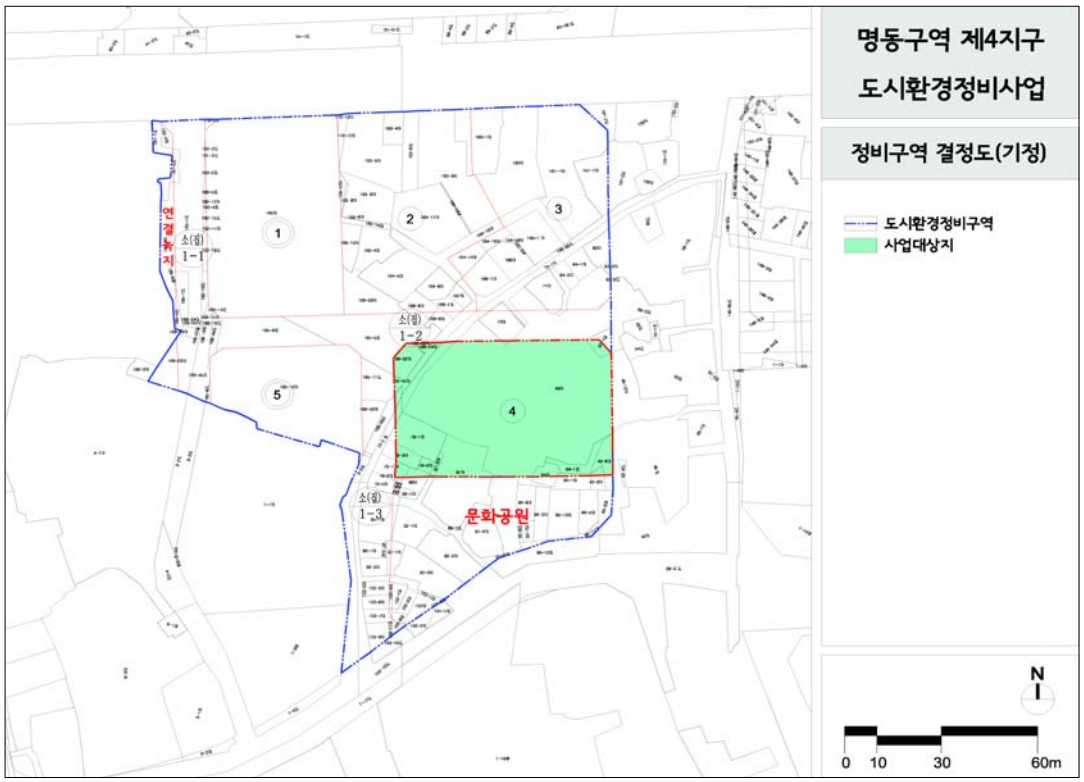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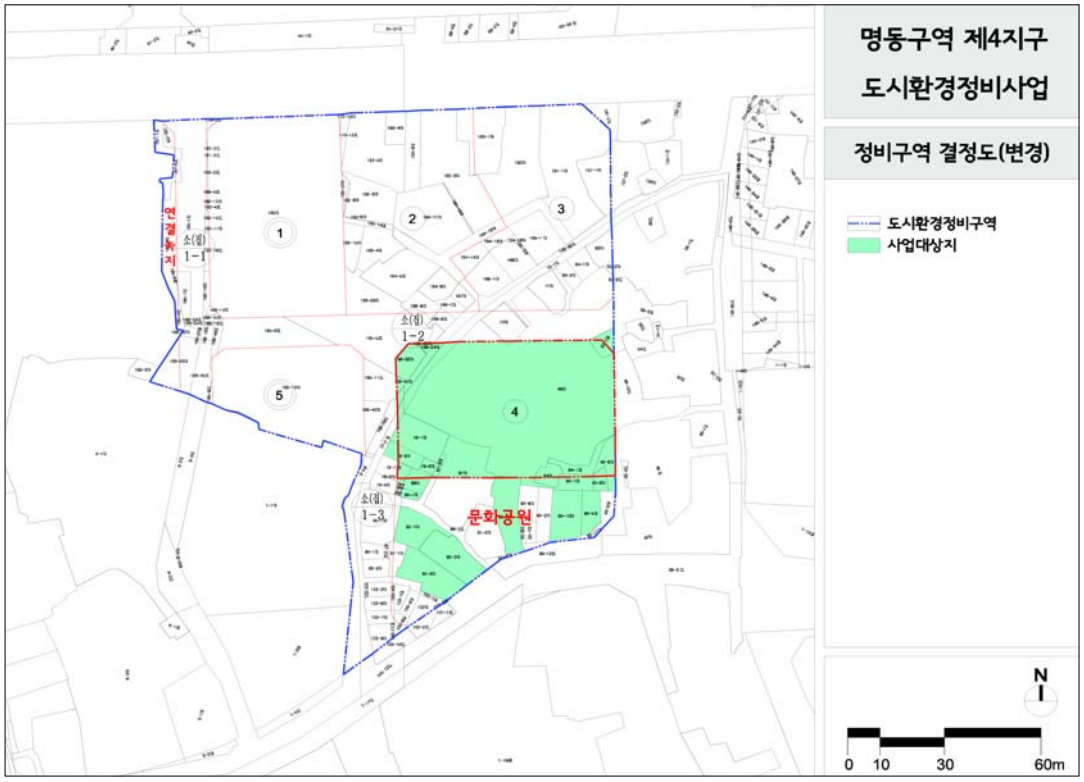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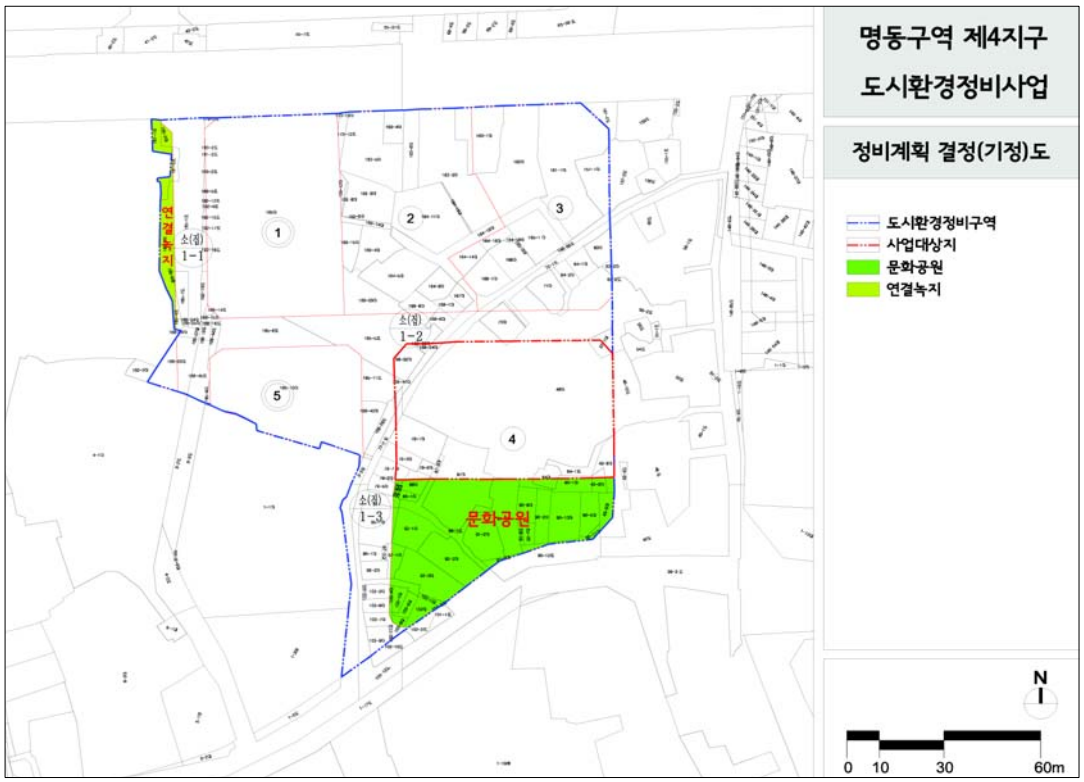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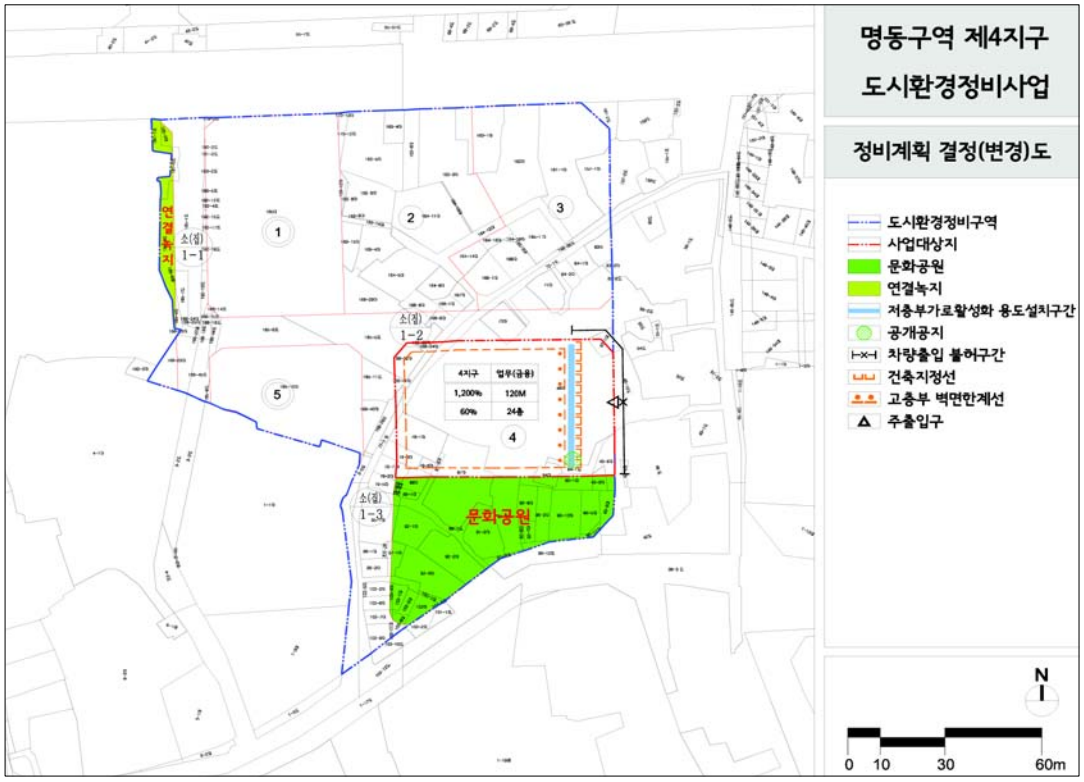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2171-2512) 및 중구 도시관리과(☎3396-578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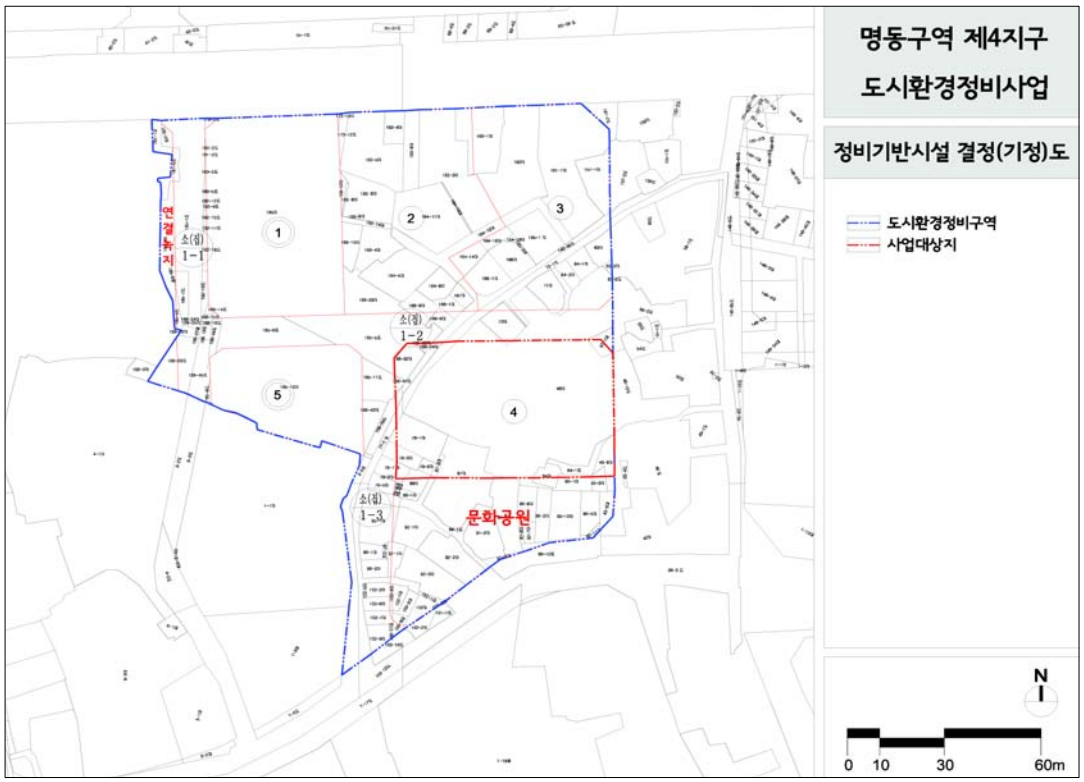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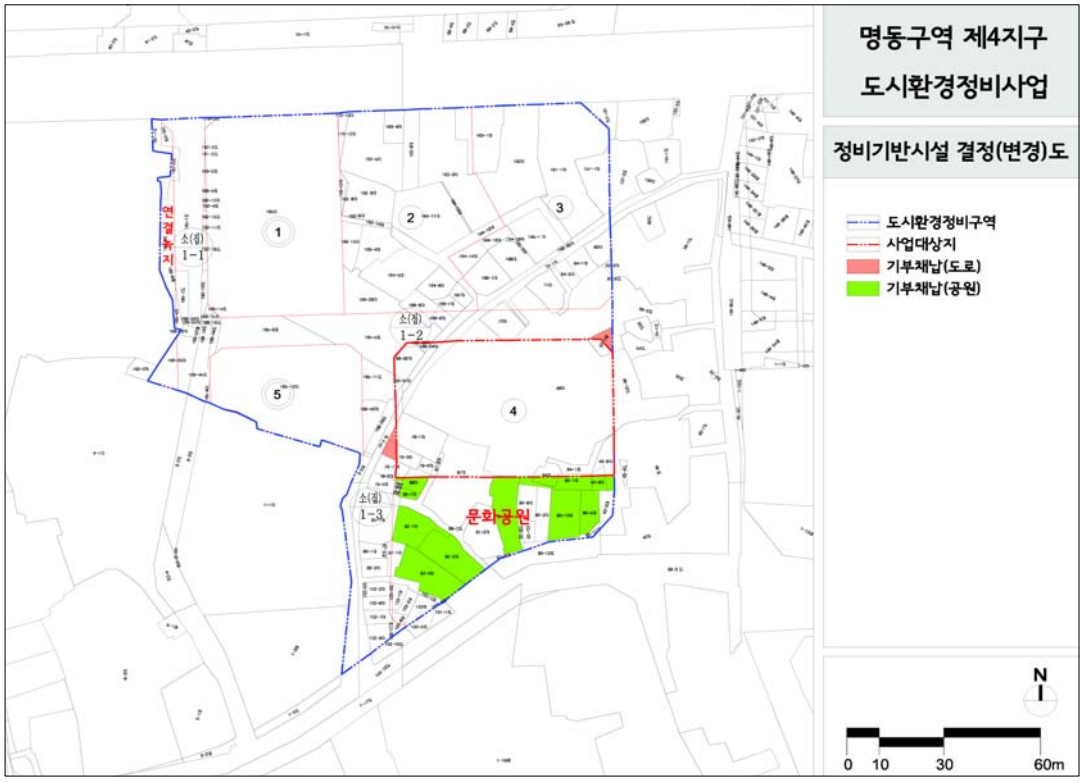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대상지
연결녹지
소(철) 1-1
소(철) 1-2
소(철) 1-3
문화공원
1
2
3
4
5
N
0 10 30 60m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대상지
연결녹지
소(철) 1-1
소(철) 1-2
소(철) 1-3
문화공원
1
2
3
4
5
N
0 10 30 60m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대상지
문화공원
연결녹지
소(집) 1-1
소(집) 1-2
소(집) 1-3
문화공원
1
2
3
4
5
N
0 10 30 60m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대상지
문화공원
연결녹지
저층부가로활성화 용도설치구간
공개공지
차량출입 불허구간
건축지정선
고층부 벽면한계선
주출입구
4지구 업무(금융)
1,200% 120M
60% 24층
소(집) 1-1
소(집) 1-2
소(집) 1-3
문화공원
1
2
3
4
5
N
0 10 30 60m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도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대상지
연결녹지
소(집) 1-1
소(집) 1-2
소(집) 1-3
문화공원
1
2
3
4
5
N
0 10 30 60m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도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대상지
기부채납(도로)
기부채납(공원)
연결녹지
소(집) 1-1
소(집) 1-2
소(집) 1-3
문화공원
1
2
3
4
5
N
0 10 30 6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5호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가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증축사업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유 민 근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78 가양4단지

4. 사업기간 : 2011. 08. 30. ~ 2014. 02. 28.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① 대 지 위 치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78 가양4단지			
② 대 지 면 적 (㎡)			42,110.4			
③ 건 축 면 적 (㎡)			7,603.18	8,082.81	479.63(증)	
④ 건축 연면적 (㎡)			88,224.71	96,861.84	8,637.13(증)	
⑤ 건 폐 율 (%)			18.06	19.19	1.13(증)	
⑥ 용 적 률 (%)			188.61	194.46	5.85(증)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2개동 15층	아파트 13개동 15층	1개동(증) 15층	
	주택 형별	영구임대	전용25㎡ : 1,509세대 전용30㎡ : 254세대 전용40㎡ : 235세대	전용25㎡ : 1,549세대 전용30㎡ : 294세대 전용40㎡ : 235세대	전용25㎡ : 40세대(증) 전용30㎡ : 40세대(증)	
		계	1,998세대	2,078세대	80세대(증)	
⑧ 사 업 기 간			2011.08.30. ~ 2015.02.28.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경 로 당	253.50	244.48	9.02(감)	
	작은도서관	-	181.44	181.44(증)	
	관리사무소	131.95	229.36	97.41(증)	
	보육시설	443.16	535.5	92.34(증)	
	주민공동시설	266.79	1,126.26	859.47(증)	
	경 비 실	6개소	6개소	-	
	어린이놀이터	2,801.37	2,801.37	-	
	기계,전기,발전기실	741.0	943.28	202.28(증)	
	주 차 장	448대	509대	61대(증)	
	근린생활시설	1,744.32	1,744.32	-	
⑩ 공동저수시설(TON)		4,381t	4,531t	150t(증)	

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의 변경결정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원	976,515.4	서울시고시 제1996-171호 (1996.06.25)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76,515.4	-	976,515.4	100.0	
주거지역	소 계	836,740.8		836,740.8	85.7	
	제1종일반주거지역	109,465.7	-	109,465.7	11.1	위치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1,842.0	-	101,842.0	10.4	
	제2종일반주거지역	36,043.4	-	36,043.4	3.7	
	제3종일반주거지역	589,389.7	-	589,389.7	60.5	위치변경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1,723.3	-	21,723.3	2.2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540.0	-	540.0	0.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7,511.3	-	117,511.3	12.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변경면적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①	가양동 1478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0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일환으로 주거복지동(장기공공임대주택)증축에 따른 용도지역의 면적증감 없이 위치변경
②	가양동 1478-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0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공간시설 (공원)

- 공원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④	공원	어린이 공 원	가양동 1478-1	1,500.0	-	-	서고시289 (90.8.27)	제1종일반 주거 지역
폐지	④	공원	어린이 공 원	가양동 1478-1	-	감) 1,500.0	-	-	
신설	④-1	공원	어린이 공 원	가양동 1478	-	증) 1,500.0	1,500.0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④	어린이공원	• 폐지 (가양동 1478-1)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주거복지동(장기공공임대주택)증축을 위한 어린이공원 폐지 및 신설
④-1	어린이공원	• 신설 (가양동 1478)	

※ 기타 도시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가양 4단지	-	-	1	43,610.4	①	가양동 1478 일원	42,110.4	공동주택
					②	가양동 1478	1,500.0	공원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용도

• 지정용도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가양 4단지	-	•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	

○ 건축물의 밀도

• 건폐율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가양 4단지	-	50%이하	

• 용적률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가양 4단지	200%	200%	변경없음

• 건축물의 높이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양 4단지	고층아파트	15층 이하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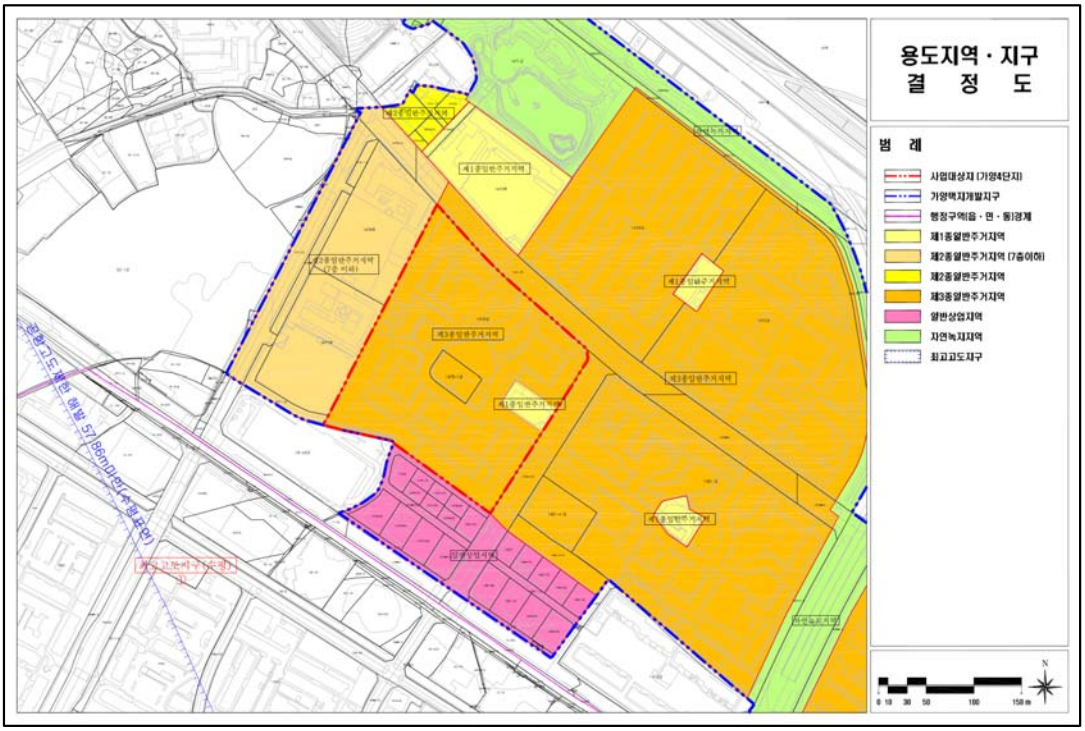
7.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첨부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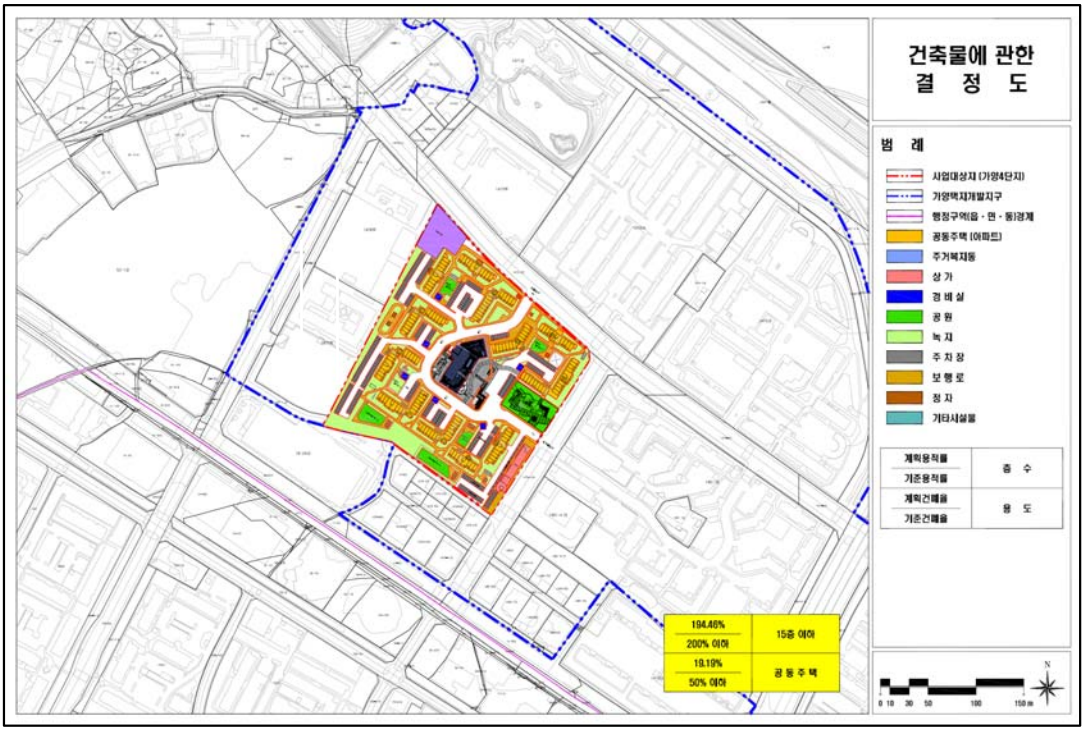
9.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0.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 : 3707-8287)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팀(☎ : 3410-773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6호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 2,8단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82호 서울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서울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2,8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유 민 근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4. 사업기간 : 2012. 11. 01 ~ 2014. 07. 3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2단지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2단지	
② 대 지 면 적 (㎡)			34,215.00	
③ 건 축 면 적 (㎡)			7,272.49	
④ 건축 연면적 (㎡)			63,799.49	
⑤ 건 폐 율 (%)			21.26	
⑥ 용 적 률 (%)			131.30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0동 417세대 (지하 1층, 지상 6~12층)	
	주택 형별	공공분양	전용59형㎡ : 124세대 전용74형㎡ : 86세대 전용84형㎡ : 115세대	
		일반분양	전용101형㎡ : 92세대	
		계	총 417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2.11.01 ~ 2014.07.30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경 로 당		146.43 ㎡	
	작은도서관		141.53 ㎡	
	관리사무소		211.63 ㎡	
	보육시설		201.54 ㎡	
	주민공동시설		69.69 ㎡	
	경 비 실		69.30 ㎡	
	어린이놀이터		859.23 ㎡	
	기계,전기,발전기실		308.48 ㎡	
	주 차 장		489대 (지상:3대, 지하 :486대) 면적: 17,797.07㎡	
	근린생활시설		361.40 ㎡	
⑩ 공동저수시설(TON)			670 ton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8단지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단지	
② 대 지 면 적 (㎡)			25,800.00	
③ 건 축 면 적 (㎡)			6,180.57	
④ 건축 연면적 (㎡)			32,734.67	
⑤ 건 폐 율 (%)			23.96	
⑥ 용 적 률 (%)			70.01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0동 169세대 (지하 1층, 지상 3~6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전용59㎡ : 18세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전용59㎡ : 84세대 전용84㎡ : 6세대	
		공공분양	전용59㎡ : 6세대	
		일반분양	전용101㎡ : 35세대 전용114㎡ : 20세대	
		계	총 169 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2.11.01 ~ 2014.06.30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경 로 당		121.53 ㎡	
	작은도서관		87.79 ㎡	
	관리사무소		196.78 ㎡	
	보육시설		159.31 ㎡	
	주민공동시설		60.68 ㎡	
	경 비 실		46.20 ㎡	
	어린이놀이터		446.00 ㎡	
	기계,전기,발전기실		210.86 ㎡	
	주 차 장		298대 (지상: 2대, 지하 :296대) 면적 : 13,867.53㎡	
	근린생활시설		185.89 ㎡	
⑩ 공동저수시설(TON)			290 ton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전화번호 : 3707-8287)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팀(☎ : 3410-773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425호(1993.12.29)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38호(2003.12.3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0호(2009.9.10)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으로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일대에 위치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이버 강의동 신축에 따른 변경 사안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 교	대 학 (한국외국어대학교)	A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270-1 일대	80,508	-	80,508	서울시고시 제1993-425호 (1993.12.29)
			B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329-20 일대	619	-	619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 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교	전 체	계	81,127	-	81,127
			건축부지	19,769	2,377	22,146
			조경부지	16,228	6,010	22,238
			도로부지	33,318	감) 4,697	28,621
			주차장부지	2,043	감) 1,279	764
			운동장부지	9,769	감) 2,411	7,358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교	A 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270-1 일대	계	80,508		80,508
				건축부지	19,451	2,377	21,828
				조경부지	16,024	6,010	22,034
				도로부지	33,221	감) 4,697	28,524
				주차장부지	2,043	감) 1,279	764
				운동장부지	9,769	감) 2,411	7,358
		B 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329-20 일대	계	619	-	619
				건축부지	318	-	318
				조경부지	204	-	204
				도로부지	97	-	97

※ 세부시설조성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기정 면적 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0호(2009.9.10)임.

나) 건축물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층)		
	A 구역		B 구역	A 구역		B 구역	A 구역		B 구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일 반 상업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일 반 상업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25%이하	16%이하	52%이하	130%이하	88%이하	200%이하	12층이하	12층이하	6층이하
변경	27%이하	31%이하	52%이하	141%이하	192%이하	200%이하	12층이하	12층이하	6층이하

※ 캠퍼스별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조서 포함)에 의함

다. 건축물 변경계획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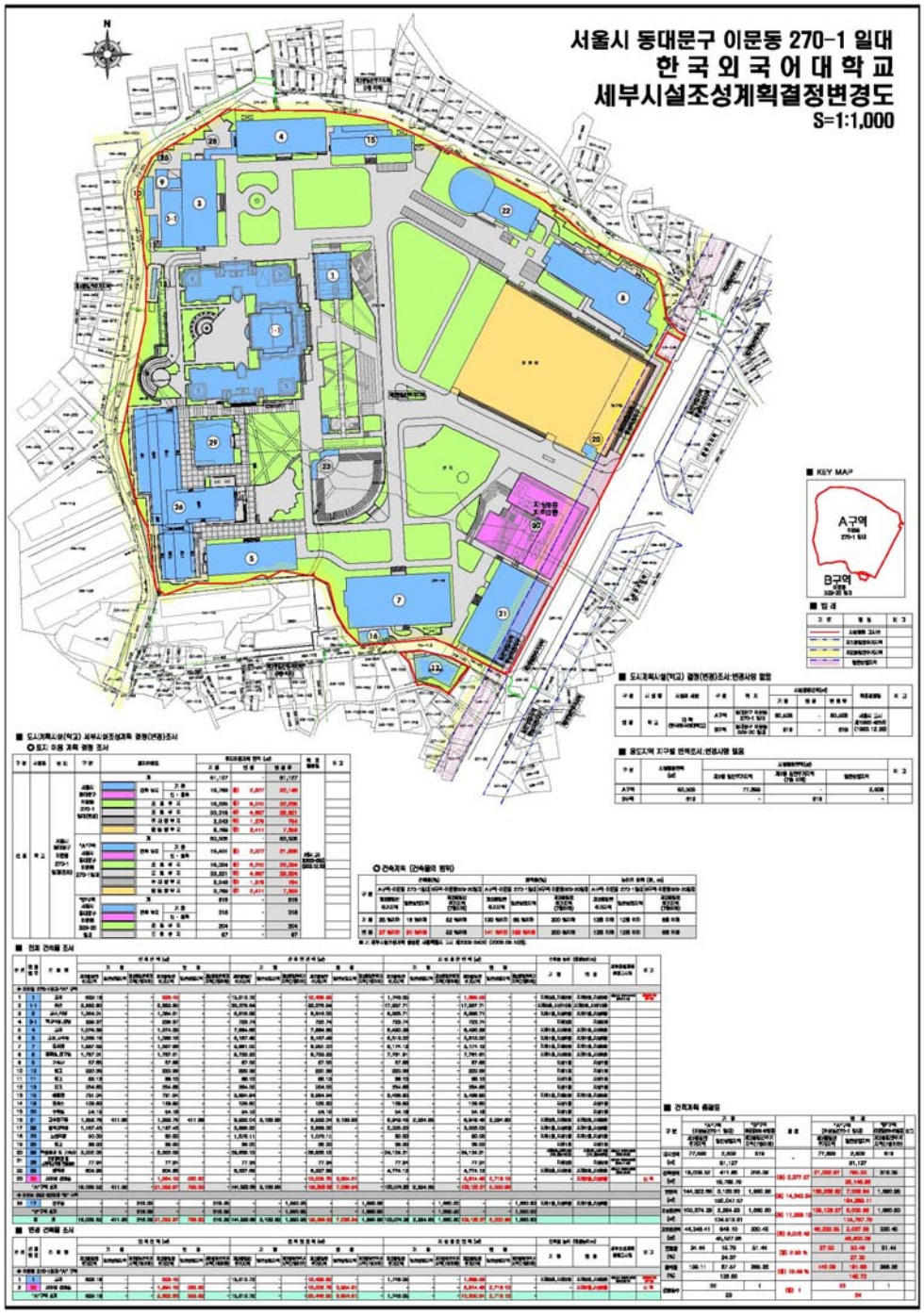
구분	세 부 시설명	건축면적 (㎡이하)		연 면 적 (㎡이하)		지상층면적 (㎡이하)		높 이(층)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획 변경	교사	630	629	15,011	12,440	1,749	1,686	지상3층 이하	지상3층 이하
신축	사이버 강의동	-	2,378	-	16,912	-	11,331	-	지상8층 이하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높이 등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조서 포함)에 의함.

4.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81) 및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 2127-458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8호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2010.2.11)로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2010.9.30)로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2011.9.22)로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된 마곡 도시 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가. 마곡구역

2.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가. 현재 마곡구역은 발산 택지개발 시행, 방화 뉴타운 개발계획의 수립, 지하철 9호선 및 인천국제 공항철도 개통 등 개별적인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 · 추진되어 통합관리의 필요성
   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서남권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
   다.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
   라. 마곡구역을 세계적 수준의 쾌적한 수변도시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기 정	면 적(㎡)			비 고
			1지구	2지구	3지구	
마곡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3,665,336㎡	1,066,222㎡	1,763,219㎡	835,895㎡	

※ 사업시행지구 분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2011.9.22.)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된 사항임

4. 시행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경없음)

5. 시행기간
   가. 기정 : 2007년~2012년
   나. 변경 : 2007년 12월 28일~2014년 12월 31일

6.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1지구		2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66,222	1,066,222	1,763,219	1,763,219
주거용지	소 계	612,634	612,620	-	-
	단독주택용지	15,833	15,833	-	-
	공동주택용지	596,801	596,787	-	-
상업용지	상업용지	11,979	11,916	69,159	72,109
업무용지	업무용지	-	-	269,315	270,560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	-	736,944	770,922
기반시설용지	소 계	410,807	410,884	659,145	620,972
	도 로	158,784	159,491	371,572	380,074
	보행자도로	2,469	407	5,226	-
	철도용지	-	-	5,719	7,507
	의료시설	-	-	43,330	43,277
	공공청사	50,983	49,786	1,061	1,061
	학교	60,875	60,733	11,284	11,281
	사회복지시설	1,000	1,000	-	-
	광장	-	-	13,239	13,239
	근린공원	44,121	42,179	16,914	16,914
	어린이공원	19,628	19,213	-	-
	경관녹지	-	-	1,068	928
	연결녹지	64,760	66,822	168,255	125,758
	주차장	5,870	5,870	19,242	19,242
	전기공급설비		2,645	-	-
	방수설비	1,954	2,369	-	-
	공공공지	-	-	1,351	807
	하수도(오수펌프장)	363	369	884	884
기타시설용지	소 계	30,802	30,802	28,656	28,656
	주유소	1,600	1,600	800	800
	가스충전소	-	-	2,000	2,000
	유보지	107	107	354	354
	종교시설	2,947	2,947	-	-
	편익시설	26,148	26,148	20,502	20,502
	택시차고지	-	-	5,000	5,000

나.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임대		분양		임대		분양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지구	합계	612,634	612,620	5,676 (3,123)	5,676 (3,123)	5,742	5,742	15,893 (8,746)	15,893 (8,746)	16,077	16,077	
	단독 주택	15,833	15,833	-	-	65	65	-	-	182	182	230~330㎡
	공동 주택	596,801	596,787	5,676 (3,123)	5,676 (3,123)	5,677	5,677	15,893 (8,746)	15,893 (8,746)	15,895	15,895	60㎡이하 : 60~85㎡ : 85㎡초과 = 30%:42% : 28%
	60㎡ 이하	177,880	177,876	4,115 (1,562)	4,115 (1,562)	455	455	11,523 (4,376)	11,523 (4,376)	1,274	1,274	
	60㎡ ~85㎡	250,879	250,875	1,249 (1,249)	1,249 (1,249)	3,235	3,235	3,497 (3,497)	3,497 (3,497)	9,057	9,057	
	85㎡ 초과	168,042	168,036	312 (312)	312 (312)	1,987	1,987	873 (873)	873 (873)	5,564	5,564	
2지구	-	-	-	-	-	-	-	-	-	-	-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1)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적 (㎡)				비 고
		1지구		2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66,222	1,066,222	1,763,219	1,763,219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6,384	26,384	-	-	
	제3종일반주거지역	666,121	665,885	72,209	72,209	
	준주거지역	282,331	282,106	58,441	58,441	
일 반 상 업 지 역		91,386	91,386	501,851	503,488	
준 공 업 지 역		-	-	1,112,257	1,110,620	
녹지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	461	18,461	18,461	

2)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강서구 마곡동 일원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25	•구역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위치:강서구 마곡동 422번지(신안아파트225㎡)
2	강서구 방화동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36	•구역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위치:강서구 방화동 201-1번지(길훈아파트220㎡), 마곡동 327-53번지(신안빌라16㎡)
3	강서구 가양동 일원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637	•양천향교역 일원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의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미관지구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지구	광로 3-19호선	일반 미관지구	방화동319-16~공항동9-3 (방화동 238-1학 일원)	36,240 (12,564)	1,510 (995)	양측12 (편측12)	서고제164호 (1982.4.22)	( )는 구역내 사항임
기정	2지구	-		-	-	-	-	-	
기정	1지구	-	-	-	-	-	-	-	( )는 구역내 사항임
기정	2지구	양천길	역사문화 미관지구	가양동265~가양사거리 (가양동 178-2대 일원)	9,600 (4,720)	400	양측12 (편측12)	2003-161 (2003.6.20)	

2) 고도지구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고도지구 최고고도	(최고) 고도지구	강서구, 양천구 일부지역 (마곡동 387-10답 일원)	①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1,066,222㎡	29,129,000 (1,066,222)	서고제120호 (1977.4.22)	( )는 구역내 사항임
기정	2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고도지구 최고고도	(최고) 고도지구	강서구, 양천구 일부지역 (가양동 367-1대 일원)	①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1,763,219㎡	29,129,000 (1,763,219)	서고제120호 (1977.4.22)	

다. 시가지조성사업구역

1)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	-	-	-	서고제1995-41호 (1995.2.24)	기존폐지면적:3,229,769 (서고제 2008-499)
	2지구		강서구 발산동 일대	2,556	감)2,556	-		

2) 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	시가지 조성사업구역	- 면적 2,556㎡ → - ㎡	· 마곡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마곡구역 추가편입지 시가지조성사업구역 폐지

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철도

(1) 철도시설

(가)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1지구		2지구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면적	연장	면적		
기정	1	철도	일반철도(인천공항철도 본선)	서울시 중구 의주로2가159 (강서구 마곡동42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143-1 (강서구 과해동143-1)	강서구:마곡동,가양동,공항동,방화동,과해동	23,417 (765)	350,000.61 (10,815)	23,417 (396)	350,000.61 (7,359)	건고제233호 (1997.7.11)	( )는 마곡지구 내 구간임
기정	2	철도	도시철도(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과해동 83-1호	강남구 역삼동 800-1호	김포공항,당산역 여의도역,노량진역,동작역,고속버스터미널역	26,185 (565)	325,289 (8,612)	26,185 (586)	325,289 (6,984)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2	철도	904정거장(신방화역)	강서구 방화동 217번지일대			-	9,145 (5,628)	-	-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2	철도	905정거장(마곡나루역)	강서구 마곡동367번지			-	-	-	18,767 (9,182)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2	철도	906정거장(양천향교역)	강서구 가양동158번지 일대			-	-	-	8,476 (6)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3	철도	도시철도(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일대		47,400 (862)	- (7,176)	47,400 (1,029)	- (16,954)	건고제695호 (`90.10.13)	
기정	3	철도	마곡정거장(마곡역)	강서구 가양동 531일대			-	-	-	5,234	건고제92-148	
변경							-	-	-	7,329		
기정	3	철도	발산정거장(발산역)	강서구 가양동 968일대			-	-	-	5,531 (3,134)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공항동 1293일대			-	124	-	-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527일대			-	-	-	209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783일대			-	-	-	248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965일대			-	-	-	209	건고제92-148	

(나) 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3	5호선	- 면적 5,234㎡ → 7,329㎡	· 마곡역 철도선형 조정

(2)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가)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1지구	2지구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1-1	일반철도(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공항동 6-19	강서구 공항동 6-18	길이 폭 높이	42m 19~23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3.8m이하	-	서고제2008-498 (2008.12.30)	
기정	1-2	일반철도(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공항동 6-18	강서구 공항동 399일원	길이 폭 높이	311m 12~16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3.8m이하	-		
변경	1-1	일반철도(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공항동 6-12	강서구 마곡동 372-16일원	길이 폭 높이	762m 11~23m 해발고도 최저-16.1~최고12.0m이하	404m 11~31m 해발고도 최저-11.2~최고13.5m이하		
기정	2-2	도시철도(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 마곡동 327-2	강서구 가양동 182-1	길이 폭 높이	-	451m 10~21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2m이하	서고제2008-498 (2008.12.30)	
기정	2-3	904정거장	강서구 방화동 217번지일대		길이 폭 높이	13m 7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2m이하	-		
기정	2-4	905정거장	강서구 마곡동367번지		길이 폭 높이	-	242m 57~63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2m이하		
기정	2-5	906정거장	강서구 가양동158번지 일대		길이 폭 높이	-	6m 1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2m이하		
변경	2-2	도시철도(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 방화동 217-156	강서구 가양동 179-6번지 일대	길이 폭 높이	699m 11~63m 해발고도 최저-1.8~최고14.1m이하	932m 11~34m 해발고도 최저-4.7~최고11.7m이하		
기정	3-1	도시철도(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가양동 957-1일원	강서구 가양동 530-1일원	길이 폭 높이	266m 12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5m이하	-	서고제2008-498 (2008.12.30)	
변경	3-1		강서구 가양동 957-1일원	강서구 가양동 530-5일원	길이 폭 높이	639m 12m 해발고도 최저-5.2~최고11.7m이하	-		
기정	3-2	도시철도(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가양동 811-2일원	강서구 가양동 967-1일원	길이 폭 높이	-	795m 12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5m이하	서고제2008-498 (2008.12.30)	
기정	3-3	발산 정거장	강서구 가양동 968일대		길이 폭 높이	-	57m 28m~34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5m이하		
변경	3-2	도시철도(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공항동 6-12일원	강서구 내발산동 81-10일대	길이 폭 높이	-	1,153m 12m~34m 해발고도 최저1.5~최고12.8m이하		

(나) 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1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 연장변경 : 1,166m (입체시설구간 353m, 도시계획시설중복구간 813m)	· 입체시설구간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구간으로 구분된 입체도시계획시설의 통합 관리
변경	2-2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 연장변경 : 1,631m (입체시설구간 712m, 도시계획시설중복구간 919m)	· 입체시설구간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구간으로 구분된 입체도시계획시설의 통합 관리
변경	3-1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 연장변경 : 639m (입체시설구간 266m, 도시계획시설중복구간 373m)	· 입체시설구간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구간으로 구분된 입체도시계획시설의 통합 관리
변경	3-2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 연장변경 : 1,153m (입체시설구간 57m, 도시계획시설중복구간 1,096m)	· 입체시설구간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구간으로 구분된 입체도시계획시설의 통합 관리

※ 입체도시계획시설에 도로, 공원 및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마.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지구	2지구	
기정	마곡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1,066,222	1,763,219	ly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가)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적 (㎡)				비 고
		1지구		2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66,222	1,066,222	1,763,219	1,763,219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6,384	26,384	-	-	
	제3종일반주거지역	666,121	665,885	72,209	72,209	
	준주거지역	282,331	282,106	58,441	58,441	
일 반 상 업 지 역		91,386	91,386	501,851	503,488	
준 공 업 지 역		-	-	1,112,257	1,110,620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	461	18,461	18,461	

(나)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강서구 마곡동 일원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25	•구역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위치:강서구 마곡동 422번지(신안아파트225㎡)
2	강서구 방화동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36	•구역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위치:강서구 방화동 201-1번지(길훈아파트220㎡), 마곡동 327-53번지(신안빌라16㎡)
3	강서구 가양동 일원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637	•양천향교역 일원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가) 미관지구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지구	광로 3-19호선	일반 미관지구	방화동319-16~공항동9-3 (방화동 238-1학 일원)	36,240 (12,564)	1,510 (995)	양측12 (편측12)	서고제164호 (1982.4.22)	( )는 구역내 사항임
기정	2지구	-		-	-	-	-	-	
기정	1지구	-	-	-	-	-	-	-	( )는 구역내 사항임
기정	2지구	양천길	역사문화 미관지구	가양동265~가양사거리 (가양동 178-2대 일원)	9,600 (4,720)	400	양측12 (편측12)	2003-161 (2003.6.20)	

(나) 고도지구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고도지구 최고고도	(최고) 고도지구	강서구, 양천구 일부지역 (마곡동 387-10답 일원)	①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1,066,222㎡	29,129,000 (1,066,222)	서고제120호 (1977.4.22)	( )는 구역내 사항임
기정	2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고도지구 최고고도	(최고) 고도지구	강서구, 양천구 일부지역 (가양동 367-1대 일원)	①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1,763,219㎡	29,129,000 (1,763,219)	서고제120호 (1977.4.22)	

(3)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가)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	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	-	-	-	서고제1995-41호 (1995.2.24)	기존폐지면적:3,229,769 (서고제 2008-499)
	2지구		강서구 발산동 일대	2,556	감)2,556	-		

(나) 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	시가지조성사업구역	- 면적 2,556㎡ → - ㎡	· 마곡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마곡구역 추가편입지 시가지조성사업구역 폐지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① 도로 총괄표

구 분		류 별	폭원(m)	1지구			2지구			비 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총 계			-	31	6,905	159,898	43	14,768	380,074	
일반도로	계		-	1	618	32,357	3	2,659	125,398	
	광로	3 류	40~45	1	618	32,357	3	2,659	125,398	
	계		-	1	703	23,582	6	3,024	100,154	
	대로	2 류	30~31	1	703	23,582	5	2,605	89,263	
		3 류	25	-	-	-	1	419	10,891	
	계		-	16	4,468	94,827	27	8,109	147,134	
	중로	1 류	20	6	2,543	58,029	9	3,197	62,083	
		2 류	15~18	8	1,843	35,756	11	3,652	67,495	
		3 류	12	2	82	1,042	7	1,260	17,556	
	계		-	12	1,036	8,725	7	976	7,388	
	소로	1 류	10	2	141	1,416	3	429	4,517	
		2 류	8	9	865	7,180	1	414	2,044	
		3 류	4~6.5	1	30	129	3	133	827	
보행자 전용도로	계		-	-	-	-	-	-	-	
	중로	1류	18	-	-	-	-	-	-	
	계		-	1	80	407	-	-	-	
	소로	1류	10	-	-	-	-	-	-	
		3류	5	1	80	407	-	-	-	

②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지구	2지구		
기정	광	3	1	40	주간선도로	광3-16 가양동 663답	양천길 마곡동 229-4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1,427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변경	광	3	16	45	주간선도로	제2한강교남단 (공항동6-12도)	김포공항 (가양동 972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8,890 (618)	8,890 (1,232)	서고제603호 (1978.11.15)	( ) 사업구역내
기정 변경	광	3	19	40	주간선도로	삼천동	방화동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5,306			사업 구역외
기정 변경	대	2	1	31	보조간선도로	광3-16 가양동 876-1공	양천길 가양동 272-30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1,329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변경	대	2	2	31	보조간선도로	광3-1 마곡동 278-6답	방화로 방화동 217-222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703	258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대	2	3	31	보조간선도로	광3-1 가양동 598답	대2-1 가양동 401-2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538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대	2	4	31	보조간선도로	강서로 가양동 1086답	대2-1 가양동 392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480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변경	대	2	38	30	보조간선도로	내발산동 644-2 (가양동 709도)	고척동 76-148 (가양동 1130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7,250	'71. 4. 7	
기정 변경	대	2	41	30	보조간선도로	양화교-광16 (마곡동 55-5체)	개화동시계 (마곡동 272-22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	서고제1984-333호 (1984.6.5)	
기정	대	3	1	25	보조간선도로	광3-16 내발산동 198-5공	내발산동 181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419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	20	집분산도로	양천길 마곡동 224-7전	대2-2 마곡동 363-7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643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7	20	집분산도로	광3-16 공항동 968-2공	대2-2 방화동 224-2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65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8	20	집분산도로	광3-16 가양동 533-5답	대2-2 마곡동 363-5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739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광3-16 가양동 533-8답	대2-2 마곡동 363-5답			-	743		
기정	중	1	11	20	집분산도로	방화로 공항동 2-105답	중1-7 공항동 4-178잡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53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2	20	집분산도로	중1-7 공항동940-14대	중1-8 가양동 470-3대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66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3	20	집분산도로	광3-1 가양동 573답	중1-8 가양동 475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241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4	20	집분산도로	광3-1 가양동 576답	중2-13 가양동 745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244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5	20	집분산도로	대2-1 가양동 414-1답	중2-13 가양동 743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272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6	20	집분산도로	대2-38 가양동 1126대	대2-1 가양동 386-1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444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7	20	집분산도로	방화로 공항동 833-32구	광3-16 공항동1036-1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61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방화로 공항동 833-3구	광3-16 공항동1036-1공						
기정 변경	중	1	18	20	집분산도로	광3-16 공항동1313-2공	소1-6 공항동 1252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72	173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27	20 (3)	집분산도로	발산택지개발지구 내발산동384-1답	중2-15 내발산동 358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26	-		( ) 사업구역내
기정	중	1	28	20 (3)	집분산도로	중2-15 내발산동 358답	대3-1 내발산동 181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271		( ) 사업구역내
기정	중	1	29	20	집분산도로	대3-1 내발산동 181답	중2-16 공항동 163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166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	18	집분산도로	대2-2 방화동 225답	방화동 183-3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27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변경	중	2	3	18	집분산도로	중2-2 방화동 235-3답	방화동 208-27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40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지구	2지구		
기정	중	2	4	18	집분산도로	중1-1 마곡동 365-8답	마곡동 353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7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5	18	집분산도로	방화로 방화동 산75-9임	중1-7 방화동 217-14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9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7	18	집분산도로	방화로 방화동 240-4도	중2-2 방화동 238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05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8	15	집분산도로	중1-2 방화동 224-7전	방화뉴타운 방화동 217-205대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5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폐지	중	2	9	18	집분산도로	대2-38 가양동 162-1답	중2-10 가양동 172-18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171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0	18	집분산도로	양천길 가양동 282-2도	대2-4 가양동 371-1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653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1	18	집분산도로	대2-1 가양동 349-1전	중2-10 가양동 359-1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344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2	18	집분산도로	대 2-38 가양동 1069대	중2-10 가양동 359-2잡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151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3	18	집분산도로	광3-16 가양동 839공	대2-3 가양동 408-3구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493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4	18	집분산도로	대2-4 가양동 367-1대	중1-16 가양동 961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260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5	18	집분산도로	광3-16 내발산동 228-6공	내발산동 358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426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6	18	집분산도로	광3-16 내발산동 91-5공	내발산동 162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412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7	18	집분산도로	방화로 공항동 36-23잡	중1-17 공항동 1133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1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변경	중	2	18	18	집분산도로	중1-17 공항동 1136답	중1-18 공항동 1325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271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9	18	집분산도로	중1-18 내발산동 1327답	발산택지개발지구 외발산동 338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243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0	18	집분산도로	발산택지개발지구 내발산동 335답	중2-15 내발산동 340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233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1	18	집분산도로	대3-1 내발산동194-3답	중2-15 내발산동 326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272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2	18	집분산도로	대3-1 내발산동 193-1답	중2-16 내발산동 158-2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166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3	1	12	집분산도로	중1-11 공항동 2-12답	방화뉴타운 공항동 4-48대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30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3	2	12	집분산도로	중2-16 내발산동 162답	소2-2 내발산동 153-15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116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3	3	12	국지도로	대2-2 방화동 209-2전	방화동 208-22대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52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변경	중	3	4	12	집분산도로	중2-16 내발산동 160-4답	소2-2 내발산동 155-2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130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3	5	12	집분산도로	대3-1 내발산동 181답	내발산동 222-1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67	서고제2010-339호 (2010.9.30)	
신설	중	3	6	12	집분산도로	대2-4 가양동 367-1대	중2-11 가양동 355-3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227		
신설	중	3	7	12	집분산도로	대2-4 가양동 367-1대	중2-11 가양동 321-1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225		
신설	중	3	8	12	집분산도로	대2-4 가양동 367-1대	중1-16 가양동 382-1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259		
신설	중	3	9	12	집분산도로	대2-4 가양동 367-1대	중1-16 가양동 950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259		

구분	규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지구	2지구		
기정	소	1	1	10	국지도로	양천길 마곡동 222-30도	마곡동 222-20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27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2	10	국지도로	중1-1 마곡동 317전	소1-1 마곡동222-37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345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4	10	국지도로	가양동 1454-1도	소3-2 가양동 1454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57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5	10	국지도로	중2-7 240-10답	- 241-4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6	10	국지도로	중1-18 공항동 1252답	중1-17 공항동 1207-3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37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2	2	8 (5)	국지도로	광3-16 내발산동 81-10공	내발산동 153-15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414		( ) 사업구역내
기정	소	2	12	8	국지도로	소2-12 방화동 239-2대	소2-18 방화동 240-7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97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소	2	13	8	국지도로	방화동 240-1답	소2-18 방화동 242-3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84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소	2	14	8	국지도로	소2-18 방화동 243-3답	소2-15 방화동 242-9구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6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소	2	15	8	국지도로	소2-16 방화동 233-1답	소2-13 방화동 239-2대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1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소	2	16	8	국지도로	중2-2 방화동233-1답	소2-18 방화동 253-2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81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소	2	17	8	국지도로	소2-16 방화동 233-1답	소2-18 방화동 254-2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69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소	2	18	8	국지도로	소1-5 방화동239-5전	소2-19 방화동 254-2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58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소	2	19	8	국지도로	중2-2 방화동 183-2전	방화동 257-7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23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소	2	20	8	국지도로	소2-19 방화동 255-2답	소2-19 방화동 255-2답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26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소	3	1	4	국지도로	소1-2 마곡동 327-3유	마곡동 327-24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9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3	2	6.5	국지도로	광3-16 가양동 1454-10도	소1-4 가양동 1454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94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3	3	4	국지도로	대로2-2 361-6답	360-1대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130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신설	소	3	4	4	국지도로	소로1-1 가양동222-12도	가양동 221-7도	일반도로	마곡구역내	-	32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폐지	중	1	1	18	특수도로	대2-1 가양동 306-2답	중2-10 가양동 172-29전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	288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폐지	소	1	1	10	특수도로	중1-11 공항동 4-38대	방화동 461전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22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3	1	5	특수도로	대2-2 방화동 217-272답	중2-5 방화동 217-182전	보행자도로	마곡구역내	80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③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광로3-1	광로3-1	-	· 마곡역 철도선형 조정
변경	광로3-16	광로3-16	-	· 지하철 시설물 현황측량 결과 반영
변경	광로3-19	광로3-19	-	· 지하철 시설물 현황측량 결과 반영
변경	대로2-1	대로2-1	-	· 도로 설계기준 반영
변경	대로2-2	대로2-2	-	· 지하철 시설물 현황측량 결과 반영
변경	대로2-38	대로2-38	-	· 지하철 시설물 현황측량 결과 반영
변경	대로2-41	대로2-41	-	· 지하철 시설물 현황측량 결과 반영
변경	중로1-8	중로1-8	위치 : 가양동 533-5 → 가양동 533-8 일원	· 마곡역 철도선형 조정
변경	중로1-17	중로1-17	위치 : 공항동 833-32 → 공항동 833-3 일원	· 공동주택 11BL 출입구 변경 반영
변경	중로1-18	중로1-18	-	· 도로 설계기준 반영
변경	중로2-3	중로2-3	-	· 도로 설계기준 반영
폐지	중로2-9	-	-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
변경	중로2-18	중로2-18	-	· 공동주택 11BL 출입구 변경 반영
변경	중로3-4	중로3-4	-	· 도로 설계기준 반영
신설	-	중로3-6	폭원 : 12m 연장 : 227m	· 산업단지 획지분할에 따른 이면도로 신설
신설	-	중로3-7	폭원 : 12m 연장 : 225m	· 산업단지 획지분할에 따른 이면도로 신설
신설	-	중로3-8	폭원 : 12m 연장 : 259m	· 산업단지 획지분할에 따른 이면도로 신설
신설	-	중로3-9	폭원 : 12m 연장 : 259m	· 산업단지 획지분할에 따른 이면도로 신설
신설	-	소로3-4	폭원 : 4m 연장 : 32m	· 맹지발생에 따른 도로 신설
폐지	중로1-1	-	-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
폐지	소로1-1	-	-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

(나) 주차장

①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1지구	2지구		
기정	총 계		-	5,870	19,242		
변경			-	5,870	19,242		
기정	1	주차장	마곡동 354일원	2,835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2	주차장	방화동 217-196일원	3,035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	주차장	가양동 955일원	-	7,015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가양동 958일원				
기정	5	주차장	마곡동 383-2일원	-	7,178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6	주차장	가양동 287-3일원	-	5,049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② 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3	주차장	위치 : 가양동 955일원 → 가양동 958일원	· 산업단지내 이면도로 신설로 인한 위치조정
변경	6	주차장	면적변경 없는 위치조정	· 보행자도로2번 폐지에 따른 위치 조정

(다) 철도

① 철도시설

•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1지구		2지구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면적	연장	면적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서울시 중구 의주로2가159 (강서구 마곡동42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143-1 (강서구 과해동143-1)	강서구:마곡동, 가양동,공항동, 방화동,과해동	23,417 (765)	350,000.61 (10,815)	23,417 (396)	350,000.61 (7,359)	건고제233호 (1997.7.11)	( )는 마곡지구 내 구간임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과해동 83-1호	강남구 역삼동 800-1호	김포공항,당산역 여의도역,노량진 역,동작역,고속버 스터미널역	26,185 (565)	325,289 (8,612)	26,185 (586)	325,289 (6,984)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2	철도	904정거장 (신방화역)	강서구 방화동 217번지일대			-	9,145 (5,628)	-	-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2	철도	905정거장 (마곡나루역)	강서구 마곡동367번지			-	-	-	18,767 (9,182)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2	철도	906정거장 (양천향교역)	강서구 가양동158번지 일대			-	-	-	8,476 (6)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일대		47,400 (862)	- (7,176)	47,400 (1,029)	- (16,954)	건고제695호 (`90.10.13)	
기정	3	철도	마곡정거장 (마곡역)	강서구 가양동 531일대			-	-	-	5,234	건고제92-148	
변경							-	-	-	7,329		
기정	3	철도	발산정거장 (발산역)	강서구 가양동 968일대			-	-	-	5,531 (3,134)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공항동 1293일대			-	124	-	-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527일대			-	-	-	209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783일대			-	-	-	248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965일대			-	-	-	209	건고제92-148	

• 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3	5호선	- 면적 5,234㎡ → 7,329㎡	· 마곡역 철도선형 조정

② 입체적도시계획시설

•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1지구	2지구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1-1	일반철도(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공항동 6-19	강서구 공항동 6-18	길이 폭 높이	42m 19~23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3.8m이하	-	서고제2008-498 (2008.12.30)	
기정	1-2	일반철도(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공항동 6-18	강서구 공항동 399일원	길이 폭 높이	311m 12~16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3.8m이하	-		
변경	1-1	일반철도(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공항동 6-12	강서구 마곡동 372-16일원	길이 폭 높이	762m 11~23m 해발고도 최저-16.1~최고12.0m이하	404m 11~31m 해발고도 최저-11.2~최고13.5m이하		
기정	2-2	도시철도(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 마곡동 327-2	강서구 가양동 182-1	길이 폭 높이	-	451m 10~21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2m이하	서고제2008-498 (2008.12.30)	
기정	2-3	904정거장	강서구 방화동 217번지일대		길이 폭 높이	13m 7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2m이하	-		
기정	2-4	905정거장	강서구 마곡동367번지		길이 폭 높이	-	242m 57~63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2m이하		
기정	2-5	906정거장	강서구 가양동158번지 일대		길이 폭 높이	-	6m 1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2m이하		
변경	2-2	도시철도(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 방화동 217-156	강서구 가양동 179-6번지 일대	길이 폭 높이	699m 11~63m 해발고도 최저-1.8~최고14.1m이하	932m 11~34m 해발고도 최저-4.7~최고11.7m이하		
기정	3-1	도시철도(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가양동 957-1일원	강서구 가양동 530-1일원	길이 폭 높이	266m 12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5m이하	-	서고제2008-498 (2008.12.30)	
변경	3-1		강서구 가양동 957-1일원	강서구 가양동 530-5일원	길이 폭 높이	639m 12m 해발고도 최저-5.2~최고11.7m이하	-		
기정	3-2	도시철도(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가양동 811-2일원	강서구 가양동 967-1일원	길이 폭 높이	-	795m 12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5m이하	서고제2008-498 (2008.12.30)	
기정	3-3	발산 정거장	강서구 가양동 968일대		길이 폭 높이	-	57m 28m~34m 해발고도 최저8.5~최고11.5m이하		
변경	3-2	도시철도(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공항동 6-12일원	강서구 내발산동 81-10일대	길이 폭 높이	-	1,153m 12m~34m 해발고도 최저1.5~최고12.8m이하		

• 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1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 연장변경 : 1,166m (입체시설구간 353m, 도시계획시설중복구간 813m)	· 입체시설구간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구간으로 구분된 입체도시계획시설의 통합 관리
변경	2-2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 연장변경 : 1,631m (입체시설구간 712m, 도시계획시설중복구간 919m)	· 입체시설구간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구간으로 구분된 입체도시계획시설의 통합 관리
변경	3-1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 연장변경 : 639m (입체시설구간 266m, 도시계획시설중복구간 373m)	· 입체시설구간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구간으로 구분된 입체도시계획시설의 통합 관리
변경	3-2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 연장변경 : 1,153m (입체시설구간 57m, 도시계획시설중복구간 1,096m)	· 입체시설구간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구간으로 구분된 입체도시계획시설의 통합 관리

※ 입체도시계획시설에 도로, 공원 및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2) 도시공간시설

(가) 광장

①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1지구	2지구		
기정	총 계		-	-	13,239		
변경			-	-	13,239		
기정	1	광장	마곡동 367-16일원	-	601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기정	2	광장	마곡동 368-3일원	-	12,638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②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광장	위치 : 가양동 955일원 → 가양동 958일원	· 면적변경없는 위치조정

(나) 공원

①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1지구	2지구		
기정	총계		-	63,749	16,914		
변경			-	61,392	16,914		
기정	계	근린공원	-	44,121	16,914		
변경			-	42,179	16,914		
기정	2	근린공원	방화동 210-1일원	18,620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18,579	-		
기정	3	근린공원	공항동 1220일원	25,501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23,600	-		
기정	4	근린공원	내발산동 358-1일원	-	16,914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계	어린이공원	-	19,628	-		
변경			-	19,213	-		
기정	1	어린이공원	방화동 241-6일원	1,722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2	어린이공원	방화동 211-3일원	1,927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	어린이공원	마곡동 316-1일원	1,510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4	어린이공원	공항동 484일원	2,01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5	어린이공원	공항동 4일원	507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6	어린이공원	마곡동 397-1일원	2,86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7	어린이공원	공항동 6-18일원	2,658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8	어린이공원	공항동 705일원	2,360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1,945	-		
기정	9	어린이공원	외발산동 69-1일원	2,000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10	어린이공원	내발산동 384-2일원	2,066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②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근린공원	면적 : 18,620㎡ → 18,579㎡	· 지하철 환기구 시설물에 따른 면적 변경
3	근린공원	면적 : 25,501㎡ → 23,600㎡	· 변전시설 신설 및 공공청사 변경
8	어린이공원	면적 : 2,360㎡ → 1,945㎡	· 방수설비1 변경계획 반영

(다) 공공공지

①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1지구	2지구		
기정	총 계		-	-	1,351		
변경			-	-	807		
기정	1	공공공지	가양동 494일원	-	1,351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807		

②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면적 : 1,351㎡ → 807㎡	· 철도노선 현황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라) 녹지

①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1지구	2지구		
기정	총 계		-	64,760	169,323		
변경			-	66,822	126,686		
기정	계	연결녹지	-	64,760	168,255		
변경			-	66,822	125,758		
기정	1	연결녹지	마곡동 323-5일원	-	7,811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2	연결녹지	마곡동 292-4일원	-	4,751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	연결녹지	가양동 311-2일원	-	17,193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9,768		
기정	4	연결녹지	가양동 165-1일원	-	6,949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3,440		
기정	5	연결녹지	가양동 366-2일원	-	9,969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4,542		
폐지	6	연결녹지	가양동 1076일원	-	1,362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7	연결녹지	마곡동 382-2일원	22,400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8	연결녹지	마곡동 374-1일원	-	28,937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26,894		
기정	9	연결녹지	가양동 723일원	-	7,388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4,930		
기정	10	연결녹지	가양동 413일원	-	22,075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17,447		
기정	11	연결녹지	가양동 380-1일원	-	19,428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7,379		
기정	12	연결녹지	가양동 1043일원	-	3,938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1,969		
기정	13	연결녹지	공항동 976-1일원	12,768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14	연결녹지	가양동 784일원	-	12,471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10,373		
기정	15	연결녹지	가양동 948-2일원	-	4,141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16	연결녹지	공항동 1057일원	8,90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17	연결녹지	내발산동 216-1일원	-	8,786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7,320		
기정	18	연결녹지	공항동 1147-1일원	6,902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19	연결녹지	내발산동 218-10일원	-	11,411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9,498		
기정	20	연결녹지	외발산동 72일원	9,06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21	연결녹지	내발산동 354-1일원	4,722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22	연결녹지	내발산동 175일원	-	1,645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신설	23	연결녹지	공항동 516일원	2,062	-		
신설	24	연결녹지	가양동 389-3일원	-	2,080		
신설	25	연결녹지	가양동 1108일원	-	1,770		
기정	계	경관녹지		-	1,068		
변경				-	928		
기정	2	경관녹지	마곡동 222-15일원	-	509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369		
기정	5	경관녹지	내발산동 153-7일원	-	559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②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연결녹지	면적 : 17,193㎡ → 9,768㎡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에 따른 조정
4	연결녹지	면적 : 6,949㎡ → 3,440㎡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에 따른 조정
5	연결녹지	면적 : 9,969㎡ → 4,542㎡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에 따른 조정
6	연결녹지	폐지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에 따른 조정
8	연결녹지	면적 : 28,937㎡ → 26,894㎡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에 따른 조정
9	연결녹지	면적 : 7,388㎡ → 4,930㎡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에 따른 조정
10	연결녹지	면적 : 22,075㎡ → 17,447㎡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에 따른 조정
11	연결녹지	면적 : 19,428㎡ → 7,379㎡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에 따른 조정
12	연결녹지	면적 : 3,938㎡ → 1,969㎡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에 따른 조정
14	연결녹지	면적 : 12,471㎡ → 10,373㎡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에 따른 조정
17	연결녹지	면적 : 8,786㎡ → 7,320㎡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에 따른 조정
19	연결녹지	면적 : 11,411㎡ → 9,498㎡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에 따른 조정
23	연결녹지	신설 : 2,062㎡	· 녹지체계 재검토결과 반영에 따른 조정
24	연결녹지	신설 : 2,080㎡	· 산업단지 계획변경에 따른 조정
25	연결녹지	신설 : 1,770㎡	· 산업단지 계획변경에 따른 조정
2	경관녹지	면적 : 509㎡ → 369㎡	· 맹지발생에 따른 도로 변경계획 반영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①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1지구	2지구		
기정	총 계		-	-	-	-		
변경			-	-	2,645	-		
신설	2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공항동 1250일원	2,645	-		

②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변전시설	면적 : - → 2,645㎡	· 한전 협의결과 반영에 따른 신설

(나) 공동구

①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1지구		2지구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km)	면적 (㎡)	연장 (km)	면적 (㎡)		
기정	총 계		-	-	-	-	1.75	25,340	1.47	22,050		
변경			-	-	-	-	1.40	21,000	1.47	22,050		
폐지	1	공동구	-	방화동225-1일원	가양동365-11일원	대로2-2	0.35	4,340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변경	2	공동구	-	공항동1151일원	방화동225-1일원	대로2-2→ 중로1-7, 중로1-17	1.40	21,000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변경	3	공동구	-	가양동297-4일원	내발산동187일원	중로1-7, 중로1-17→ 대로2-1	-	-	1.47	22,050	서고제2010-339호 (2010.9.30)	

②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동구	폐지	· 지하철 9호선 협의결과 지하철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변경
2	공동구	대로2-2→ 중로1-7, 중로1-17	· 착오에 의한 주요 경과지 변경
3	공동구	중로1-7, 중로1-17→ 대로2-1	· 착오에 의한 주요 경과지 변경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①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1지구	2지구		
기정	총 계		-	-	50,983	1,061		
변경			-	-	49,786	1,061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1지구	2지구		
기정	1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방화동 255-2일원	1,061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2	공공청사	파출소	마곡동 362-3일원	759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	공공청사	동사무소	방화동 257-7일원	76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4	공공청사	우체국	마곡동 363-1일원	1,061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5	공공청사	-	공항동 944일원	4,828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강서세무서					
기정	6	공공청사	출입국관리소	공항동 972-3일원	16,901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7	공공청사	강서구청	가양동 478일원	22,31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21,861	-		
폐지	8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공항동 301-2일원	74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9	공공청사	파출소	공항동 38-4일원	74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공항동 1252-1일원				
기정	10	공공청사	동사무소	공항동 1250일원	74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공항동 1249일원				
기정	11	공공청사	우체국	공항동 1222일원	1,063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기정	12	공공청사	-	내발산동 181일원	-	1,061	서고제2010-339호 (2010.9.30)	

②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공청사	세부시설결정 : - → 강서세무서	· 강서세무서 협의결과 반영
7	공공청사	면적 감소 : 22,314㎡ → 21,861㎡	· 마곡역 철도선형 조정
8	공공청사	폐지	· 관련기관 협의결과 반영
9	공공청사	위치 : 공항동 38-4일원→ 공항동 1252-1일원	· 면적변경 없는 위치조정
10	공공청사	위치 : 공항동 1250일원→ 공항동 1249일원	· 면적변경 없는 위치조정
11	공공청사	-	· 면적변경 없는 위치조정

(나) 학교

①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1지구	2지구		
기정	총 계		-	-	60,875	11,284		
변경			-	-	60,733	11,281		
기정	1	학교	고등학교	방화동 253-3일원	10,921	-	서고제196호 (1982.5.14.)	세민 정보고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방화동 238-1일원	15,832	-	서고제504호 (1988.6.4.)	송화초
변경					15,778	-		
기정	3	학교	중학교	방화동 207-1일원	10,481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10,485	-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공항동 399일원	11,55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6	학교	초등학교	공항동 1324일원	12,087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11,995	-		
기정	7	학교	초등학교	내발산동 153-7일원	-	11,284	서울특별시 교육청고시 (90.10.18)	가곡초
변경					-	11,281		

②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학교	면적 : 15,832㎡ → 15,778㎡	· 지하철 시설물 현황측량 결과 반영
3	학교	면적 : 10,481㎡ → 10,485㎡	· 도로 설계기준 반영
6	학교	면적 : 12,087㎡ → 11,995㎡	· 도로 설계기준 반영
7	학교	면적 : 11,284㎡ → 11,281㎡	· 도로 설계기준 반영

(다) 사회복지시설

①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1지구	2지구		
기정	총 계		-	-	1,000	-		
변경			-	-	1,000	-		
기정	1	사회복지 시설	보육원	공항동 1151-2일원	1,000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공항동 1151-2일원	1,000	-		

②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시설의 세분 : 보육원 → 세부용도 폐지	· 다양한 용도의 복지시설 입지가 가능토록 폐지

(5) 방재시설

(가) 방수설비

①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1지구	2지구		
기정	총 계		-	-	1,954	-		
변경			-	-	2,369	-		
기정	1	방수설비	-	방화동 706-1일원	1,954	-	서고제1993-186호 (1993.6.18)	
변경					2,369	-		

②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방수설비	면적 감소 : 1,954㎡ → 2,369㎡	· 강서구청 요청에 따른 방수설비 확장계획 및 지적측량 결과 반영

(6) 보건위생시설

(가) 종합의료시설

①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1지구	2지구		
기정	총 계		-	-	-	43,330		
변경			-	-	-	43,277		
기정	1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내발산동 157일원	-	43,330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변경					-	43,277		

②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종합병원	면적 감소 : 43,330㎡ → 43,277㎡	· 도로설계기준 반영

(7)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① 하수도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1지구		2지구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연장	면적	연장	면적		
기정	총 계		-	-	2,938	43,988	1,675	21,236		
기정	1	하수도	공항동 1147-1일원	마곡동 20-3일원	774	25,701	650	16,836	서고제2010-339호 (2010.9.30)	box 5.0*2.0 ~ box 6@5.0*2.0
기정	2	하수도	방화동 217-156일원	마곡동 396-1일원	889	6,561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box 3@2.0*2.0
기정	3	하수도	공항동 2-104일원	공항동 973-4일원	486	2,965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box 2@2.5*2.0
기정	4	하수도	공항동 707-2일원	공항동 1148-1일원	481	5,542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box 2@5.0*3.0
기정	5	하수도	공항동 303-4일원	공항동 1147-1일원	308	3,219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box 3@3.0*2.5
기정	6	하수도	내발산동 422-2일원	가양동 400일원	-	-	1,025	4,400	서고제2010-339호 (2010.9.30)	box 2@2.0*1.5

② 오수중계펌프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1지구	2지구		
기정	총 계		-	-	363	884		
변경					369	884		
기정	7	하수도	중계펌프장	방화동 210-11 일원	363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변경					369	-		
기정	8	하수도	중계펌프장	가양동 590 일원	-	359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9	하수도	중계펌프장	가양동 396-1 일원	-	525	서고제2010-339호 (2010.9.30)	

③ 오수중계펌프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중계펌프장	면적 감소 : 363㎡ → 369㎡	· 지하철 시설물 현황측량 반영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R1	1,688	1,688	기정	R1	1,688	-
	기정 R2	2,552	2,552	기정	R2	2,552	
	기정 R3	2,371	2,371	기정	R3	2,371	
	기정 R4	1,141	1,141	기정	R4	1,141	
	기정 R5	645	645	기정	R5	645	
	기정 R6	1,661	1,661	기정	R6	1,661	
	기정 R7	1,655	1,655	기정	R7	1,655	
	기정 R8	1,781	1,781	기정	R8	1,781	
	기정 R9	1,542	1,542	기정	R9	1,542	
	기정 R10	797	797	기정	R10	797	
	계	15,833	15,833	기정	-	15,833	
2지구	-	-		-		-	

(2) 공동주택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A1	13,186	13,186	기정	A1	13,186	-
	기정 A2	23,457	23,457	기정	A2	23,457	
	변경 A3	20,488	20,474	기정	A3	20,488	
				변경	A3	20,474	
	기정 A4	24,975	24,975	기정	A4	24,975	
	기정 A5	27,803	27,803	기정	A5	27,803	
	기정 A6	75,115	75,115	기정	A6	75,115	
	기정 AC7	56,336	56,336	기정	AC7	56,336	
	기정 A8	28,690	28,690	기정	A8	28,690	
	기정 AC9	69,122	69,122	기정	AC9	69,122	
	기정 AC10	46,032	46,032	기정	AC10	46,032	
	변경 AC11	14,962	14,962	기정	AC11	14,962	
				변경	AC11	14,962	
	기정 AC12	15,311	15,311	기정	AC12	15,311	
	기정 A13	64,088	64,088	기정	A13	64,088	
	기정 A14	62,517	62,517	기정	A14	62,517	
	기정 A15	54,719	54,719	기정	A15	54,719	
	계	596,801	596,787	기정	-	596,801	
				변경	-	596,787	
2지구	-	-		-		-	

(3) 상업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변경	B1	6,172	6,109	기정	B1	6,172	
					변경	B1	6,109	
	기정	B2	5,807	5,807	기정	B2	5,807	
	계		11,979	11,916	기정	-	11,979	
					변경	-	11,916	
2지구	변경	B3	23,798	26,892	기정	B3-1	13,192	
					변경	B3-1	14,669	
					기정	B3-2	10,606	
					변경	B3-2	12,223	
	변경	B5	45,361	45,217	기정	B5-1	20,217	
					변경	B5-1	20,218	
					기정	B5-2	17,463	
					변경	B5-2	17,318	
					기정	B5-3	7,681	
	계		69,159	72,109	기정	-	69,159	
					변경	-	72,109	

(4) 업무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		-		-		-	-
2지구	기정	C1	49,618	49,618	기정	C1-1	25,009	
					기정	C1-2	11,584	
					기정	C1-3	13,025	
	변경	C2	97,602	97,602	기정	C2-1	15,168	
					기정	C2-2	17,129	
					기정	C2-3	15,225	
					기정	C2-4	17,072	
					기정	C2-5	16,200	
					기정	C2-6	16,808	
					변경	C2-6	16,808	
	기정	C4	24,807	24,807	기정	C4-1	14,559	
					기정	C4-2	10,248	
	기정	C5	14,847	14,847	기정	C5	14,847	
	기정	C6	7,584	7,584	기정	C6	7,584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2지구	변경	C7	32,030	34,073	기정	C7-1	19,345	-
					변경	C7-1	20,174	
					기정	C7-2	12,685	
					변경	C7-2	13,899	
	변경	C8	42,827	42,029	기정	C8-1	21,484	
					변경	C8-1	21,239	
					기정	C8-2	21,343	
					변경	C8-2	20,790	
	계		269,315	270,560	기정	-	269,315	
					변경	-	270,560	

(5) 산업시설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		-		-		-	
	변경	D1	45,599	49,380	기정	D1	45,599	
					변경	D1-1	17,458	
					변경	D1-2	20,662	
					변경	D1-3	11,260	
	변경	D2	32,321	36,268	기정	D2-1	18,845	
					변경	D2-1	22,781	
					기정	D2-2	13,476	
					변경	D2-2	8,430	
					변경	D2-3	5,057	
	변경	D3	24,446	29,441	기정	D3-1	12,147	
					변경	D3-1	16,319	
					기정	D3-2	12,299	
					변경	D3-2	5,876	
					변경	D3-3	7,246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2지구	변경	D4	26,554	30,105	기정	D4-1	13,560	
					변경	D4-1	17,115	
					기정	D4-2	12,994	
					변경	D4-2	6,708	
					변경	D4-3	6,282	
	변경	D5	17,433	22,472	기정	D5	17,433	
					변경	D5-1	10,743	
					변경	D5-2	5,898	
					변경	D5-3	5,831	
	변경	D6	16,270	13,411	기정	D6	16,270	
					변경	D6-1	2,151	
					변경	D6-2	2,152	
					변경	D6-3	2,152	
					변경	D6-4	2,348	
					변경	D6-5	2,348	
					변경	D6-6	2,260	
	변경	D7	14,794	29,431	기정	D7	14,794	
					변경	D7-1	4,433	
					변경	D7-2	4,436	
					변경	D7-3	5,924	
					변경	D7-4	3,897	
					변경	D7-5	3,768	
					변경	D7-6	6,973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2지구	변경	D8	17,368	11,223	기정	D8	17,368	-
					변경	D8-1	1,789	
					변경	D8-2	1,790	
					변경	D8-3	1,790	
					변경	D8-4	1,953	
					변경	D8-5	1,953	
					변경	D8-6	1,948	
	변경	D9	16,146	20,030	기정	D9	16,146	
					변경	D9-1	1,594	
					변경	D9-2	1,603	
					변경	D9-3	1,602	
					변경	D9-4	1,744	
					변경	D9-5	1,744	
					변경	D9-6	1,744	
					변경	D9-7	2,383	
					변경	D9-8	2,399	
					변경	D9-9	2,625	
					변경	D9-10	2,592	
	폐지	D10	13,275	-	폐지	D10	13,275	
	기정	D11	28,592	28,592	기정	D11-1	13,835	
					기정	D11-2	14,757	
	변경	D12	11,966	13,191	기정	D12	11,966	
					변경	D12	13,191	
	변경	D13	12,764	12,788	기정	D13	12,764	
					변경	D13	12,788	
	변경	D14	17,430	11,881	기정	D14	17,430	
					변경	D14	11,881	
	변경	D15	16,439	7,127	기정	D15	16,439	
					변경	D15-1	2,407	
					변경	D15-2	2,360	
					변경	D15-3	2,360	
	변경	D16	9,614	10,617	기정	D16	9,614	
					변경	D16-1	7,308	
					변경	D16-2	3,309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2지구	변경	D17	26,449	28,907	기정	D17-1	12,917	-
					변경	D17-1	14,154	
					기정	D17-2	13,532	
					변경	D17-2	14,753	
	변경	D18	11,058	13,295	기정	D18	11,058	
					변경	D18	13,295	
	변경	D19	11,816	12,959	기정	D19	11,816	
					변경	D19	12,959	
	변경	D20	17,709	11,975	기정	D20	17,709	
					변경	D20	11,975	
	변경	D21	10,439	7,131	기정	D21	10,439	
					변경	D21	7,131	
	변경	D22	9,269	10,235	기정	D22	9,269	
					변경	D22-1	5,676	
					변경	D22-2	4,559	
	기정	D23	49,960	49,960	기정	D23-1	24,111	
					기정	D23-2	25,849	
	변경	D24	21,163	23,261	기정	D24-1	10,703	
					변경	D24-1	11,502	
					기정	D24-2	10,460	
					변경	D24-2	11,759	
	기정	D25	22,038	22,038	기정	D25	22,038	
	기정	D26	32,960	32,960	기정	D26	32,960	
	기정	D27	34,665	34,665	기정	D27-1	17,802	
					기정	D27-2	16,863	
	기정	D28	34,277	34,277	기정	D28-1	16,212	
					기정	D28-2	18,065	
	변경	D29	14,752	16,218	기정	D29	14,752	
					변경	D29	16,218	
	기정	D30	16,093	16,093	기정	D30	16,093	
	기정	D31	24,495	24,495	기정	D31	24,495	
	변경	D32	19,353	21,266	기정	D32-1	12,100	
					변경	D32-1	6,951	
					변경	D32-2	6,350	
					기정	D32-2	7,253	
					변경	D32-3	7,965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2지구	변경	D33	21,308	21,308	기정	D33-1	13,721	-
					변경	D33-1	7,171	
					변경	D33-2	6,561	
					기정	D33-2	7,587	
					변경	D33-3	7,576	
	변경	D34	38,129	38,129	기정	D34-1	20,299	
					변경	D34-1	5,310	
					변경	D34-2	4,843	
					변경	D34-3	4,443	
					변경	D34-4	4,521	
					기정	D34-2	17,830	
					변경	D34-5	5,310	
					변경	D34-6	4,843	
					변경	D34-7	4,444	
					변경	D34-8	4,415	
	신설	D35	-	5,829	신설	D35-1	1,902	
					신설	D35-2	1,963	
					신설	D35-3	1,964	
	신설	D36	-	10,581	신설	D36-1	1,788	
					신설	D36-2	1,755	
					신설	D36-3	1,755	
					신설	D36-4	3,002	
					신설	D36-5	2,281	
	신설	D37	-	5,931	신설	D37-1	2,310	
					신설	D37-2	1,815	
					신설	D37-3	1,806	
	신설	D38	-	3,452	신설	D38-1	1,726	
					신설	D38-2	1,726	
	계		736,944	770,922	기정	-	736,944	
					변경	-	770,922	

(6) 종합의료시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		-		-		-	
2지구	변경	E1	43,330	43,277	기정	E1	43,330	
					변경	E1	43,277	
	계		43,330	43,277	기정	-	43,330	
					변경	-	43,277	

(7) 공공청사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F1	1,061	1,061	기정	F1	1,061	소방파출소
	기정	F2	759	759	기정	F2	759	파출소
	기정	F3	764	764	기정	F3	764	동사무소
	기정	F4	1,061	1,061	기정	F4	1,061	우체국
	변경	F5	4,828	4,828	기정	F5	4,828	강서세무서
					변경	F5	4,828	
	기정	F6	16,901	16,901	기정	F6	16,901	출입국관리소
	변경	F7	22,314	21,861	기정	F7	22,314	강서구청
					변경	F7	21,861	
	폐지	F8	744	-	폐지	F8	744	소방파출소
	변경	F9	744	744	기정	F9	744	파출소
					변경	F9	744	
	변경	F10	744	744	기정	F10	744	동사무소
					변경	F10	744	
	변경	F11	1,063	1,063	기정	F11	1,063	우체국
					변경	F11	1,063	
	계		50,983	49,786	기정	-	50,983	
					변경	-	49,786	
2지구	기정	F12	1,061	1,061	기정	F12	1,061	
	계		1,061	1,061	기정	-	1,061	

(8) 학교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G1	10,921	10,921	기정	G1	10,921	고등학교
	변경	G2	15,832	15,778	기정	G2	15,832	초등학교
					변경	G2	15,778	
	변경	G3	10,481	10,485	기정	G3	10,481	중학교
					변경	G3	10,485	
	기정	G4	11,554	11,554	기정	G4	11,554	초등학교
	변경	G6	12,087	11,995	기정	G6	12,087	초등학교
					변경	G6	11,995	
	계		60,875	60,733	기정	-	60,875	
					변경	-	60,733	
2지구	변경	G7	11,284	11,281	기정	G7	11,284	초등학교
					변경	G7	11,281	
	계		11,284	11,281	기정	-	11,284	
					변경	-	11,281	

(9)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H1	1,000	1,000	기정	H1	1,000	
	계		1,000	1,000	기정	-	1,000	
2지구	-		-		-		-	

(10) 주차장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I1	2,835	2,835	기정	I1	2,835	
	기정	I2	3,035	3,035	기정	I2	3,035	
	계		5,870	5,870	기정	-	5,870	
2지구	변경	I3	7,015	7,015	기정	I3	7,015	
					변경	I3	7,015	
	기정	I5	7,178	7,178	기정	I5	7,178	
	변경	I6	5,049	5,049	기정	I6	5,049	
					변경	I6	5,049	
	계		19,242	19,242	기정	-	19,242	
					변경	-	19,242	

(11) 전기공급설비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신설 K2	-	2,645	신설	K2	2,645	
	계	-	2,645	기정	-	-	
				변경	-	2,645	
2지구	-	-		-		-	

(12) 방수설비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변경 M1	1,954	2,369	기정	M1	1,954	
				변경	M1	2,369	
	계	1,954	2,369	기정	-	1,954	
				변경	-	2,369	

(13) 종교시설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N1	667	667	기정	N1	667	
	기정 N2	650	650	기정	N2	650	
	기정 N3	979	979	기정	N3	979	
	기정 N4	651	651	기정	N4	651	
	계	2,947	2,947	기정	-	2,947	
2지구	-	-		-		-	

(14) 방재시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변경 U1	363	369	기정	U1	363	오수중계펌프장
				변경	U1	369	
	계	363	369	기정	-	363	
				변경	-	369	
2지구	기정 U2	359	359	기정	U2	359	
	기정 U3	525	525	기정	U3	525	
	계	884	884	기정	-	884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변경	P1	800	800	기정	P1	800	주유소
					변경	P1	800	
	기정	P2	800	800	기정	P2	800	
	계		1,600	1,600	기정	-	1,600	
					변경	-	1,600	
2지구	기정	P4	800	800	기정	P4	800	
	계		800	800	기정	-	800	
					변경	-	800	
1지구	-		-	-	-	-	-	가스충전소
2지구	변경	Q2	2,000	2,000	기정	Q2	2,000	
					변경	Q2	2,000	
	계		2,000	2,000	기정	-	2,000	
					변경	-	2,000	

(16) 편익시설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S1	2,793	2,793	기정	S1	2,793	
	기정	S2	4,684	4,684	기정	S2	4,684	
	기정	S3	6,470	6,470	기정	S3	6,470	
	기정	S4	12,201	12,201	기정	S4	12,201	
	계		26,148	26,148	기정	-	26,148	
2지구	기정	S5	20,502	20,502	기정	S5	20,502	
	계		20,502	20,502	기정	-	20,502	

(17) 택시차고지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1지구	-		-		-		-	
2지구	기정	T1	5,000	5,000	기정	T1	5,000	-
	계		5,000	5,000	기정	-	5,000	

라)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6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R	R1~R10	1지구	R1~R10
		2지구	-
		허용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중2-2, 중2-7, 소2-12, 소2-13, 소2-14, 소2-15, 소2-16, 소2-17, 소2-18, 소2-19, 소2-20) : 1m - 인접대지경계 : 1m
		형태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2)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	A1~A6, A8, A13~A15	1지구	A1~A6, A8, A13~A15
		2지구	-
		허용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택의 규모 및 가구수는 <별표1>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배치	•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중정형아파트 권장구간 : A2, A3, A6, A8, A13~A15 • 통경 구간 - 권장 - A6, A13~A15 : 10m •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 A1, A3, A5, A6, A13~A15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광3-19, 대2-2, 중2-17, 중2-19, 중2-20) : 5m - 도로변(중1-1, 중1-7, 중1-11, 중1-17, 중1-18, 중2-2, 중2-3, 중2-4, 중2-5, 중2-7, 중2-8, 중2-15, 광3-1)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7) : 3m - 공원변(근린공원2, 어린이공원4, 어린이공원6) : 3m - 학교변(학교2, 학교3) : 3m • 외곽녹지 : A1, A13~A15 • 공공조경 : A2, A4, A5, A8, A13
		형태	• 융통형구조를 권장한다.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AC	AC7, AC9~AC12	1지구	AC7, AC9~AC12
		2지구	-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C	AC7, AC9~AC12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운동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주) 주거와 주거외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상업용도의 비율이 10%이상으로 한다 ※ 상업용도 :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준주거지역(AC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수리점(차량)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1>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배치	• 주거와 주거외 용도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3층(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까지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탑상형 권장구간 : AC9, AC10, AC11, AC12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광3-19, 광3-16, 대2-2, 중2-17, 중2-18) : 5m - 도로변(중1-7, 중1-8, 중1-11, 중1-17, 중1-18) : 3m - 연결녹지변, 공원변(연결녹지7, 연결녹지16, 근린공원2) : 3m • 공공보행통로 :AC7, AC9, AC10 • 공개공지 : AC9
		형태 및 외관	• 융통형구조를 권장한다.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 별표 1>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 가구수 · 건폐율 · 용적률 · 세대수

도면표시	면 적(㎡)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합계	596,787.00	11,353		253.66	-
A1	13,186.00	소 계	237	230	50
		60㎡ 이하	130		
		60㎡ 초과 ~85㎡ 이하	107		
		85㎡ 초과	-		
A2	23,457.00	소 계	424	230	50
		60㎡ 이하	183		
		60㎡ 초과 ~85㎡ 이하	140		
		85㎡ 초과	101		
A3	20,474.00	소 계	315	230	50
		60㎡ 이하	153		
		60㎡ 초과 ~85㎡ 이하	72		
		85㎡ 초과	90		
A4	24,975.00	소 계	464	230	50
		60㎡ 이하	258		
		60㎡ 초과 ~85㎡ 이하	88		
		85㎡ 초과	118		
A5	27,803.00	소 계	439	230	50
		60㎡ 이하	103		
		60㎡ 초과 ~85㎡ 이하	137		
		85㎡ 초과	199		
A6	75,115.00	소 계	1,466	230	50
		60㎡ 이하	675		
		60㎡ 초과 ~85㎡ 이하	588		
		85㎡ 초과	203		
AC7	56,336.00	소 계	1,004	300	60
		60㎡ 이하	191		
		60㎡ 초과 ~85㎡ 이하	325		
		85㎡ 초과	488		
A8	28,690.00	소 계	526	230	50
		60㎡ 이하	246		
		60㎡ 초과 ~85㎡ 이하	226		
		85㎡ 초과	54		

도면표시	면 적(㎡)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AC9	69,122.00	소 계	1,239	300	60
		60㎡ 이하	373		
		60㎡ 초과 ~85㎡ 이하	503		
		85㎡ 초과	363		
AC10	46,032.00	소 계	837	300	60
		60㎡ 이하	56		
		60㎡ 초과 ~85㎡ 이하	348		
		85㎡ 초과	433		
AC11	14,962.00	소 계	301	300	60
		60㎡ 이하	40		
		60㎡ 초과 ~85㎡ 이하	211		
		85㎡ 초과	50		
AC12	15,311.00	소 계	306	300	60
		60㎡ 이하	40		
		60㎡ 초과 ~85㎡ 이하	218		
		85㎡ 초과	48		
A13	64,088.00	소 계	1,354	230	50
		60㎡ 이하	811		
		60㎡ 초과 ~85㎡ 이하	543		
		85㎡ 초과	-		
A14	62,517.00	소 계	1,270	230	50
		60㎡ 이하	582		
		60㎡ 초과 ~85㎡ 이하	600		
		85㎡ 초과	88		
A15	54,719.00	소 계	1,171	230	50
		60㎡ 이하	729		
		60㎡ 초과 ~85㎡ 이하	378		
		85㎡ 초과	64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D	D1~D38	지정용도	• 공장시설,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다만, 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는 『마곡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한다.)
		건폐율	60%
		용적률	350%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배치	• 탑상형 권장구간 : D4, D7, D16, D22~D31 • <삭제> • 저층배치구간 - D1~D4, D6, D8, D11~D22, D24, D25, D29, D30, D32, D33, D35~D38 : 10m • 부속시설로서의 숙소는 연결녹지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대2-41, 광3-1, 광3-16, 대2-1, 대2-3, 대2-4, 대2-38, 대3-1, 중2-16, 중 2-19, 중2-20, 중2-21, 중2-22) : 5m - 도로변(중1-14, 중1-15, 중1-16, 중1-18, 중2-10, 중2-11, 중2-12, 중2-13, 중2-14, 중2-15, 중3-6, 중3-7, 중3-8, 중3-9, 광3-1)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3~5, 연결녹지9~12, 연결녹지14, 연결녹지15, 연결녹지17, 연결녹지19, 연결녹지24, 연결녹지25) : 3m • 1층 벽면지정선 : D23~D26 • 고층부 건축한계선 : D23~D26 • 외곽녹지 : D1, D32~D34 • 공공조경 : D1 • 공공보행통로 : D1, D5~D9, D11, D17, D23~D28 • 공개공지 : D1, D2, D11, D17, D23, D27, D28, D35~D37
		형태 및 외관	• 아케이드 설치 구간 : D1~D3, D15, D21, D35, D37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를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주) 지정용도로 쓰이는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이상(부속용도의 면적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 산업시설용지 내 지정용도의 부속시설로서 분양목적이 아닌 연구원들의 숙소(기숙사, 게스트하우스)의 용도에 한정하여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상업·업무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B (상업) C (업무)	B1~B5, (B4제외) C1~C8 (C3제외)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상업용지 내 역세권 주변 1층 전면권장용도(B3, B5)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50%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배치	• 지하공동개발 - 권장 : C2, C4, C8, B5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광3-19, 대2-41, 광3-1, 광3-16, 대2-2, 대2-38) : 5m - 도로변(중1-1, 중1-7, 중1-8, 중1-12, 중1-13, 중1-16, 중2-5, 중2-10, 소1-4, 소3-1, 소3-2) : 3m - 연결녹지변, 광장변 (연결녹지2, 연결녹지4, 연결녹지7, 연결녹지8, 연결녹지15, 광장2) : 3m • 1층 벽면지정선 : B5 (공공보행통로변) • 고층부 건축한계선 : B5 (공공보행통로변) • 공공보행통로 : B5, C1, C2, C4, C6, C8 • 공개공지 : B3, B5, C2
		형태 및 외관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 별표 2> 상업 및 업무 용도분류표

구 분		상업용지	
		2지구	1지구
		B3, B5 (역세권주변)	B1, B2 (주거지변)
영업 및 판매 시설군	위락시설	○	X
	판매시설	●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운수시설	X	X
	숙박시설	○	X

구 분		상업용지	
		2지구	1지구
		B3, B5 (역세권주변)	B1, B2 (주거지변)
문화 및 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	X	X
	운동시설	◇	◇
	관광휴게시설	X	X
산업 시설군	공장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자동차관련시설	X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창고시설	X	X
교육 및 의료 시설군	교육연구시설	◇	◇
	노유자시설	◇	◇
	수련시설	X	X
	의료시설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주거 및 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X	X
	공동주택	X	X
	업무시설	●	○
	교정 및 군사시설	X	X
	방송통신시설	X	X
	발전시설	X	X
기타 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묘지관련시설	X	X

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허용용도(● : 권장)
◇ :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허용용도(◆ : 권장)
X : 불허용도
1)투전기 업소 및 카지노 업소,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외
2)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구 분		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1지구	-
		2지구	C1~C8(C3제외)
	지정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 숙박시설(호텔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 제외) • 판매시설(상점의 용도에 한함)	

주) 지정용도로 쓰이는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공공청사 및 기타시설 용지

(가) 학교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G	G1~ G7	1지구	G1~G4, G6
		2지구	G7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 건축한계선으로 형성된 전면공지는 '보도 연접형'으로 조성한다.<변경>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광3-19, 대2-2, 중2-18, 중2-16, 중3-4, 소2-2) : 5m - 도로변(중1-7, 중1-12, 중1-18, 중2-3, 중2-7, 소2-19) : 3m - 경관녹지변(경관녹지5) : 5m - 연결녹지변 및 공원변(연결녹지7, 연결녹지18, 어린이공원1, 어린이공원2, 어린이공원6) : 3m - 주거지변 : 학교4(5m), 학교1~학교3(3m) • 공공조경 : G3 • 외곽녹지 : G4, G6, G7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나) 사회복지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H	H1	1지구	H1
		2지구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중1-17) : 3m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다) 공공청사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F1~F4 F9~F12	1지구	F1~F4, F9~F11
		2지구	F12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 인접하고 있는 용지의 공공건축물은 건축선을 일치할 수 있는 건축형태를 권장한다. • 인접하는 공공청사는 2개 이상 단위로 공동주차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의 확보를 권장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광3-19, 대2-2, 중1-1, 중1-18, 중1-28, 중3-5) : 3m - 도로변(소3-3) : 1m
		형태 및 외관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F	F5~F7	1지구	F5~F7
		2지구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배치	• 인접하고 있는 용지의 공공건축물은 건축선을 일치할 수 있는 건축형태를 권장한다. • 인접하는 공공청사는 2개 이상 단위로 공동주차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의 확보를 권장한다. • 공개공지변으로 개방된 외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광3-16) : 15m - 도로변(중1-7, 중1-12, 중1-8)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13) : 3m • 공개공지 : F5~F7
		형태 및 외관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라) 종합의료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E	E1	1지구	-
		2지구	E1
		지정용도	의료시설 중 병원(단, 정신병원 제외)
		허용용도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연구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광3-16, 중2-16, 중3-4, 소2-2) : 5m • 외곽녹지 : 도보변(중2-16) • 공개공지 : 도로변(광3-16)
		형태 및 외관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주) 지정용도로 쓰이는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편익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S	S1~S2	1지구	S1, S2
		2지구	-
		허용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배치	• 『환경영향평가』의 일조장해 분석결과에 따라서 건축물 인허가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준하여 일조시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S3~S5	1지구	S3, S4
		2지구	S5
		허용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광3-19, 중2-18) : 5m - 도로변(대2-41, 대2-2, 중1-1, 중1-11, 중1-17, 중3-3, 소3-3) : 3m - 연결녹지변 (연결녹지1, 연결녹지18) : 3m
	형태 및 외관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P	P1~P4 (P3제외)	1지구	P1, P2
		2지구	P4
		허용용도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3층 이하
Q	Q2	1지구	-
		2지구	Q2
		허용용도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3층 이하

(사) 하수도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U	U1	1지구	U1
		2지구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2층이하
	U2~U3	1지구	-
		2지구	U2, U3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2층이하

(아)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N	N1~N2, N4	1지구	N1, N2, N4
		2지구	-
		허용용도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이하
	N3	1지구	N3
		2지구	-
		허용용도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중1-1, 중1-11, 중1-17, 중2-7) : 3m - 도로변(중3-1) : 1m
	형태 및 외관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자) 기타시설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K M T	K2	1지구	K2
		2지구	-
		건폐율	50%
		용적률	200%
		높이	5층이하
	M1	1지구	M1
		2지구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2층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중1-17, 광3-19) : 3m
	T1	1지구	-
		2지구	T1
		허용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중『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2층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대2-41), 연결녹지변(연결녹지1) : 3m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차) 주차장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1	1지구		11~12
	2지구		13, 15, 16
	11~12, 15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6층 이하
	13, 16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8층 이하
	배치		•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는 지상1층~2층, 최상층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중1-1, 중1-8, 중1-16, 중2-4, 중2-5, 중2-14, 중 3-9, 중2-10, 소3-1)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3, 연결녹지8) : 3m • 외곽녹지 : 15
	형태 및 외관		• 주차장과 인접한 부분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동차 불빛에 의한 인접대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이 위치하지 않는 2,3층 이상의 상층부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1장”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2장”을 따른다. • 도시색채 및 재료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9.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성 총괄

가. 사업의 시행자 귀속분 : 변경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1) 기정

시 설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 장(m)		면 적(㎡)		비고
			1지구	2지구	1지구	2지구	1지구	2지구	
합 계		-	-	-	-	-	291,716	577,625	
도 로	일 반 도 로	4~45	30	39	6,825	13,959	158,784	371,572	
	보행자전용도로	5	2	1	304	288	2,469	5,226	
공 원 녹 지	근 린 공 원	-	2	1	-	-	44,121	16,914	
	어 린 이 공 원	-	10	-	-	-	19,628	-	
	경 관 녹 지	-	-	2	-	-	-	1,068	
	연 결 녹 지	-	7	17	-	-	64,760	168,255	
공 공 공 지		-	-	1	-	-	-	1,351	
광 장		-	-	2	-	-	-	13,239	
방 수 설 비		-	1	-	-	-	1954	-	

2) 변경

시 설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수		연 장(m)		면 적(㎡)		비고
			1지구	2지구	1지구	2지구	1지구	2지구	
합 계		-	-	-	-	-	290,481	537,720	
도 로	일 반 도 로	4~45	30	43	6,825	14,768	159,491	380,074	
	보행자전용도로	5	1	-	80	-	407	-	
공 원 녹 지	근 린 공 원	-	2	1	-	-	42,179	16,914	
	어 린 이 공 원	-	10	-	-	-	19,213	-	
	경 관 녹 지	-	-	2	-	-	-	928	
	연 결 녹 지	-	7	17	-	-	66,822	125,758	
공 공 공 지		-	-	1	-	-	-	807	
광 장		-	-	2	-	-	-	13,239	
방 수 설 비		-	1	-	-	-	2,369	-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1) 시행할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2)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강서구청장 (변경없음)

마. 무상귀속 조서 : 변경없음

10.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및 공고사항

※ 관계기관(부서)과 사전협의 완료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 일반산업단지 변경지정

가)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마곡일반산업단지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

(3) 면 적 : 1,112,515㎡

나)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1)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음

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1)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라)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1) 개발기간

(가) 기정 : 2007년~2012년

(나) 변경 : 2007년 12월 28일~2014년 12월 31일

(2) 개발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마)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1) 입주업종

·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은 다음 예시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주력 업종이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유치가능업종 여부를 최종 판단함

< 입주업종 예시 >

구분	업종군	한국표준산업분류(KISC)		
		분류코드		업종별
산업 공통	연구개발업	M	70	연구개발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기술시험,검사,분석업 등)
정보 통신 (IT)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정보처리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정보통신, 정보처리	J	582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생명 공학 (BT)	유전공학,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장기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M	731	수의업
나노 산업 (NT)	나노소자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그린 산업 (GT)	그린생산 유니소재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 등)
	에너지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각종 발전업)
	자원순환	E	38	폐기물 수입,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 대학(원) 부설연구소 입주신청 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 가능

(2) 업종별 배분 비율

· 융·복합산업을 중심으로 4개업종(GT · BT · NT · IT)기업들의 탄력적 배치 및 입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종별 배분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음

(3) 입주업종별 배치계획

(가) 배치기준

· 첨단기술간 융복합 현상 가속화에 따라 단지내 주요부분을 각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융복합

구역으로 배치
· 주변시설(국제업무단지, 의료시설용지, 자원회수시설, 주거지역 등)과 유치업종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
· 정책수요 및 미래 산업수요에 대비한 전략적 공급용지 설정

(나) 업종별 배치
· 각 첨단산업별 세부 배치가 아닌 융복합 트렌드와 산업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및 기업 입지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거점)별 배치

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1) 「마곡 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항목 중 7.토지 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내용과 동일함

사)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아)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마곡 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경없음)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1)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음

라)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
(2) 면적 : 1,112,515㎡

마)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1)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2) 시행기간
(가) 기정 : 2007년~2012년
(나) 변경 : 2007년 12월 28일~2014년 12월 31일

바)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마곡 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항목 중 7.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내용과 동일함

나.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다.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라.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마.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사.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하는 시행자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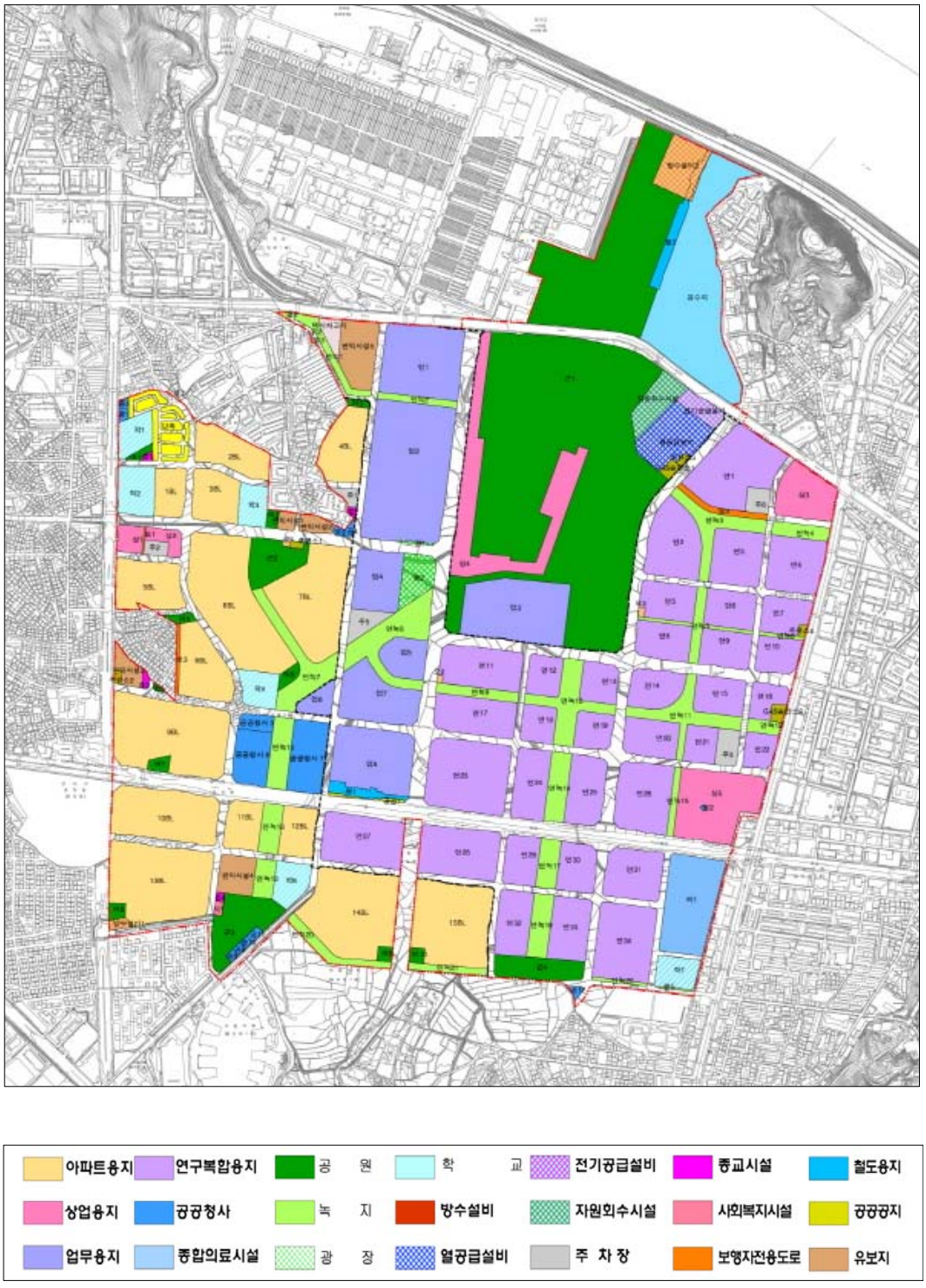
11. 마곡 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관계도면 : 별첨
- 마곡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토지이용계획(기정/변경)도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용도지역 결정(기정/변경)도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변경)도

12.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마곡개발과 (☎ 02) 6361-3522)
  - 강서구청 마곡개발과 (☎ 02) 2600-5284)
  - SH공사 마곡사업단 (☎ 02) 3410-7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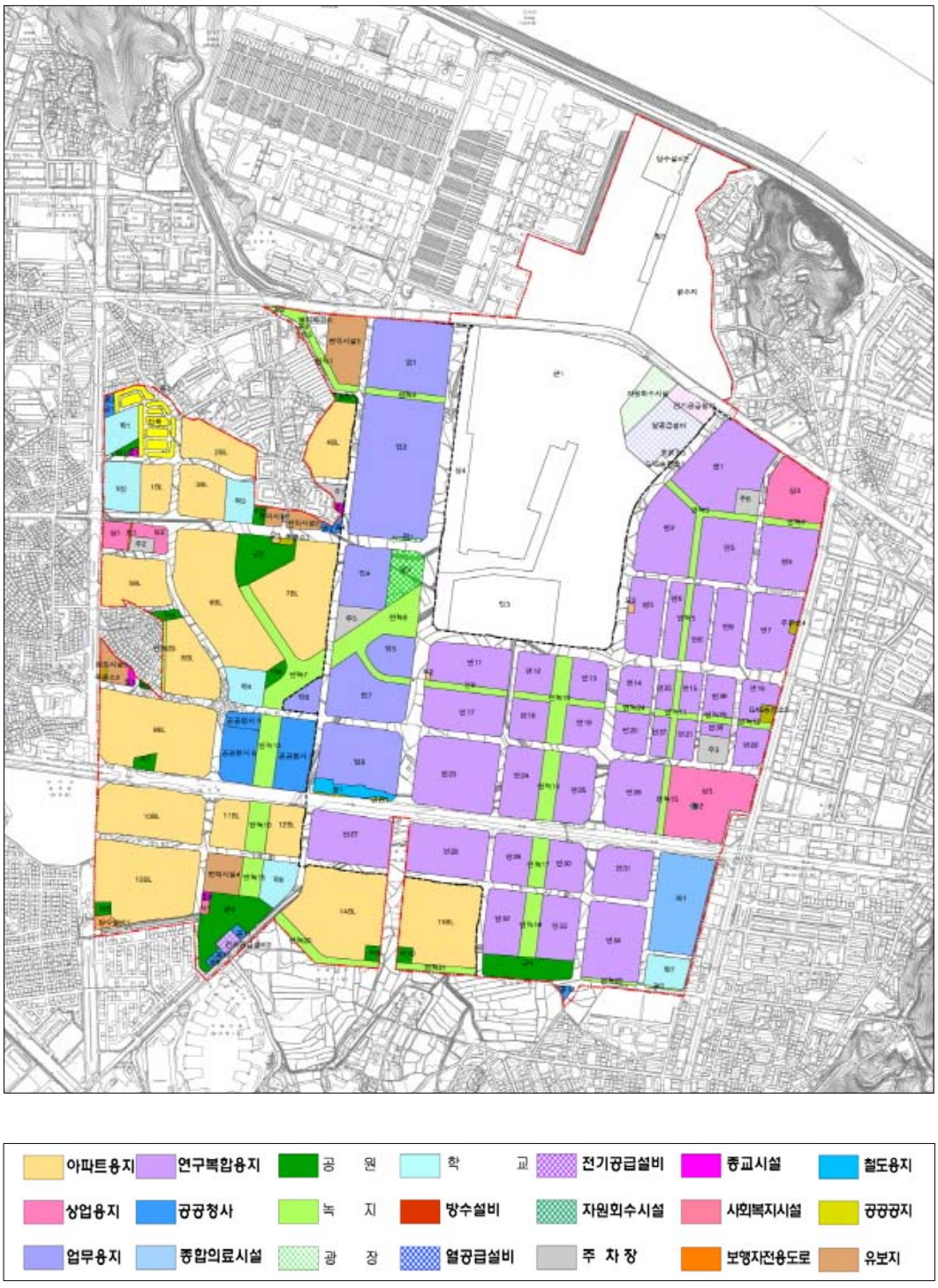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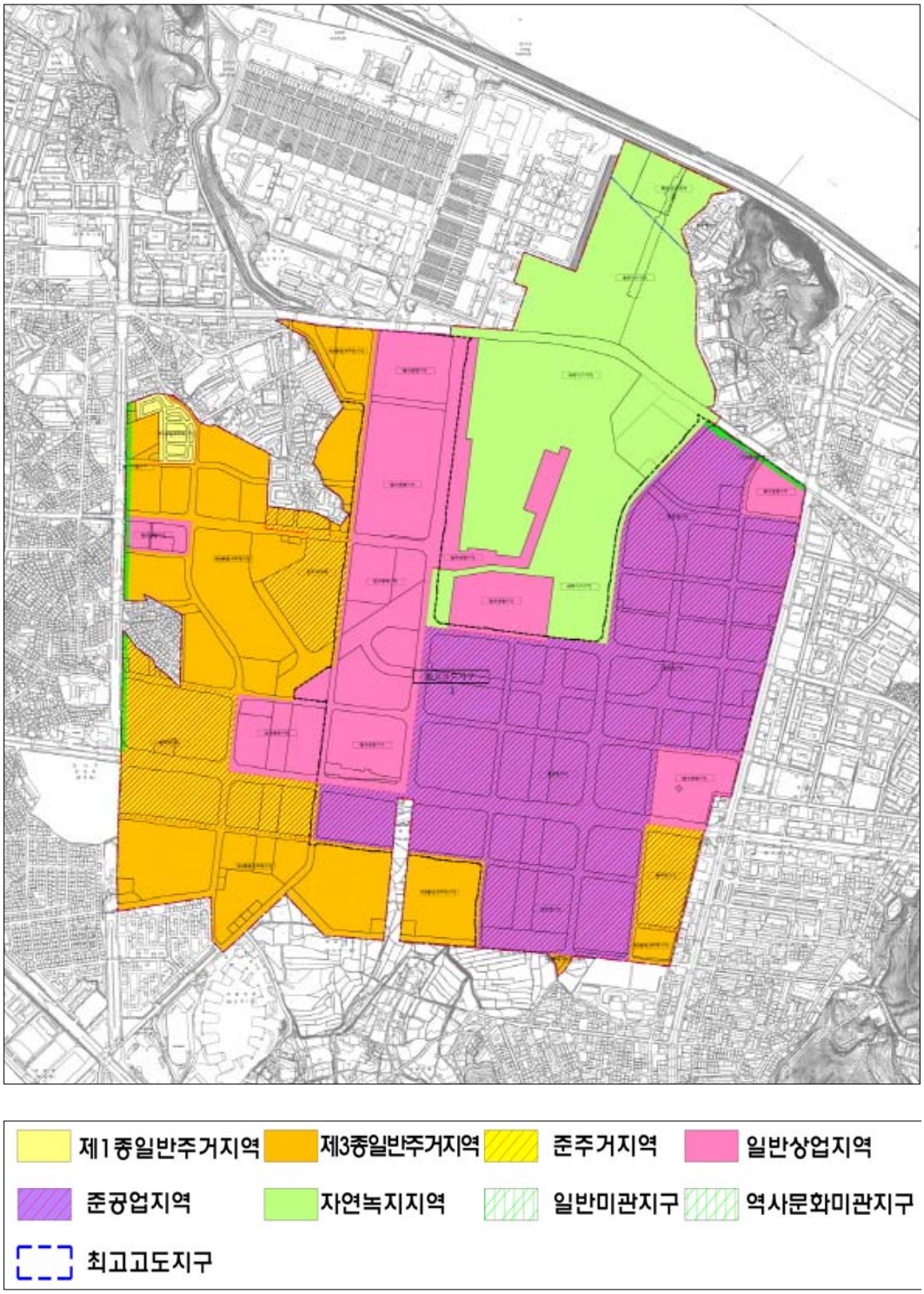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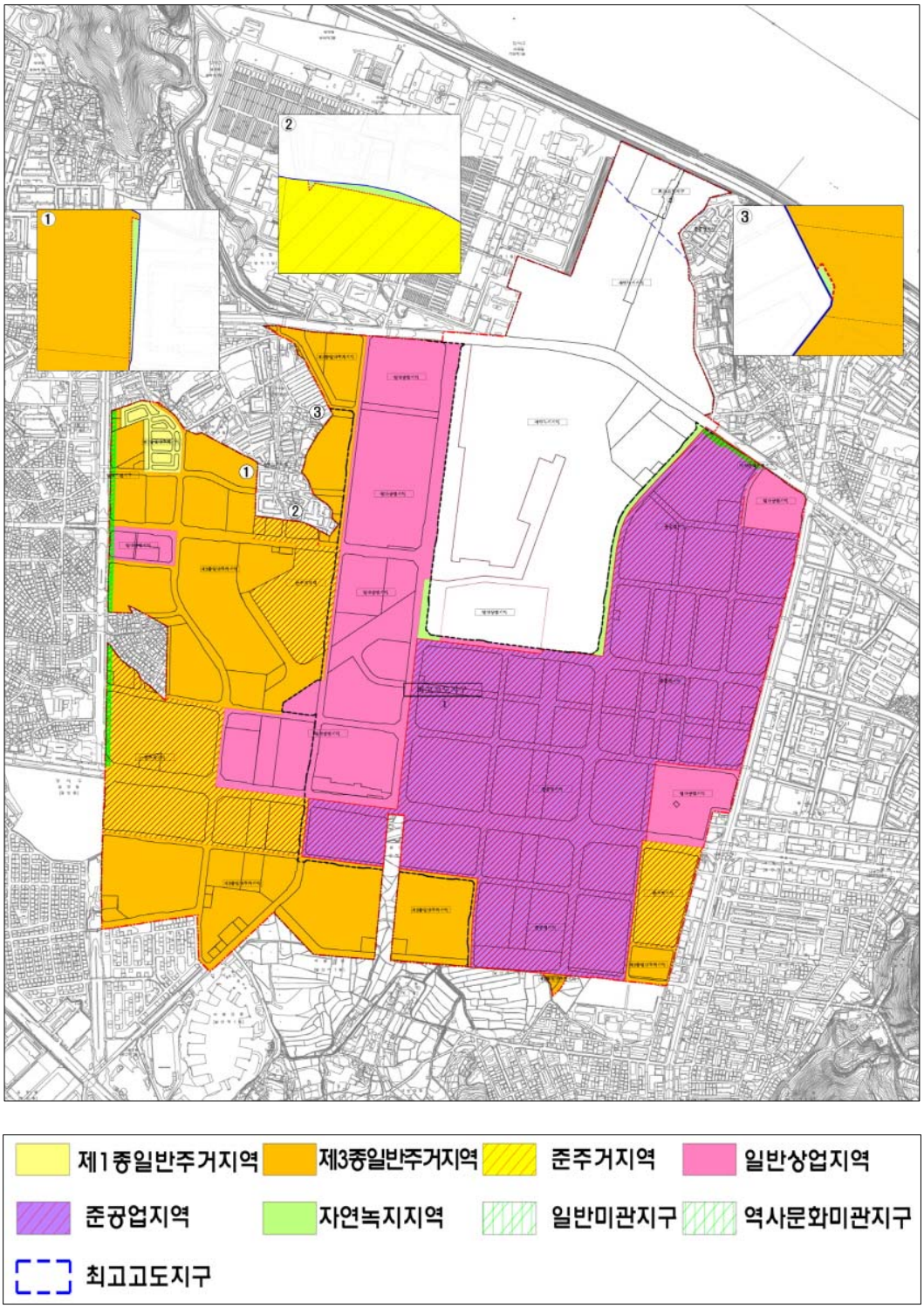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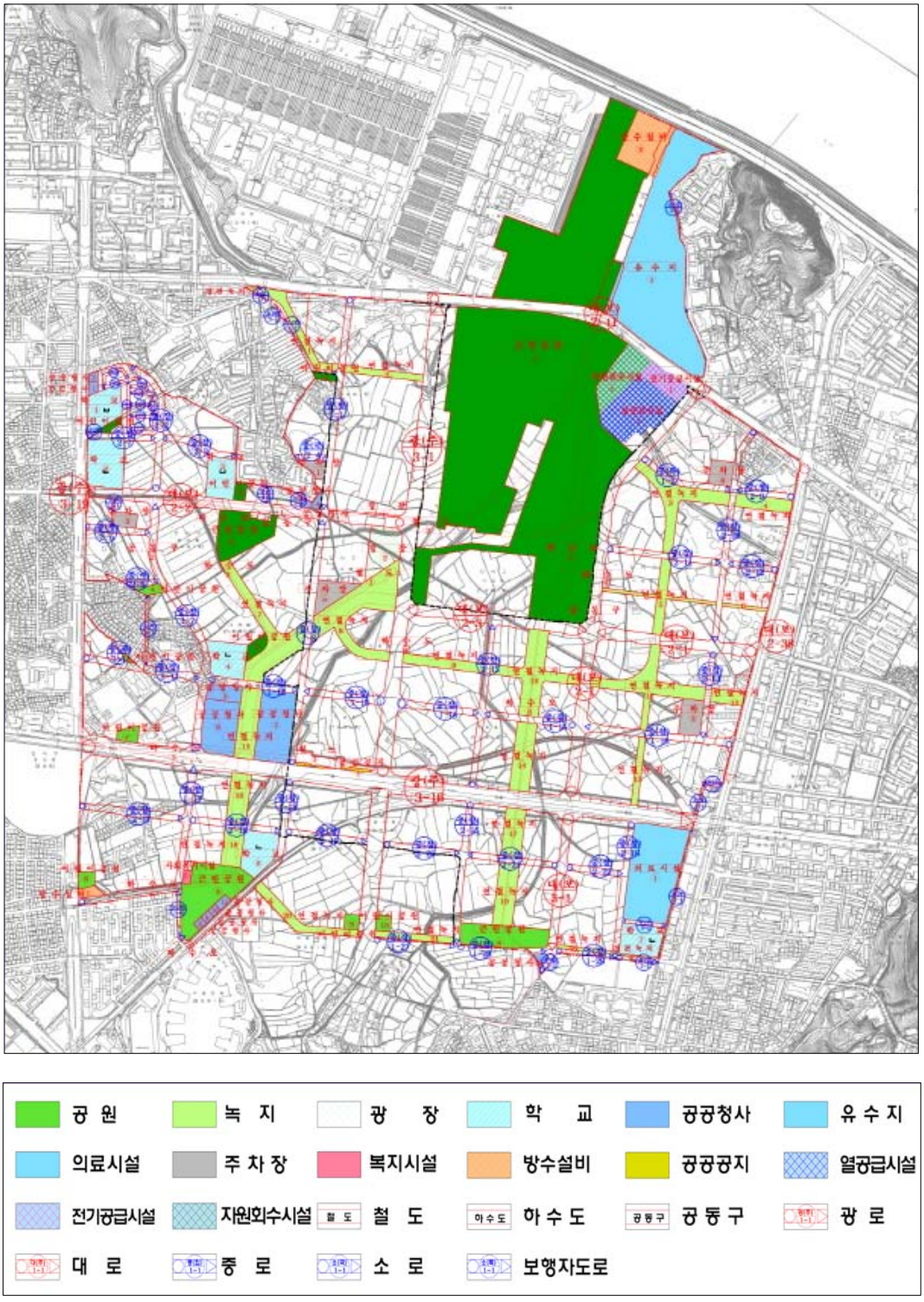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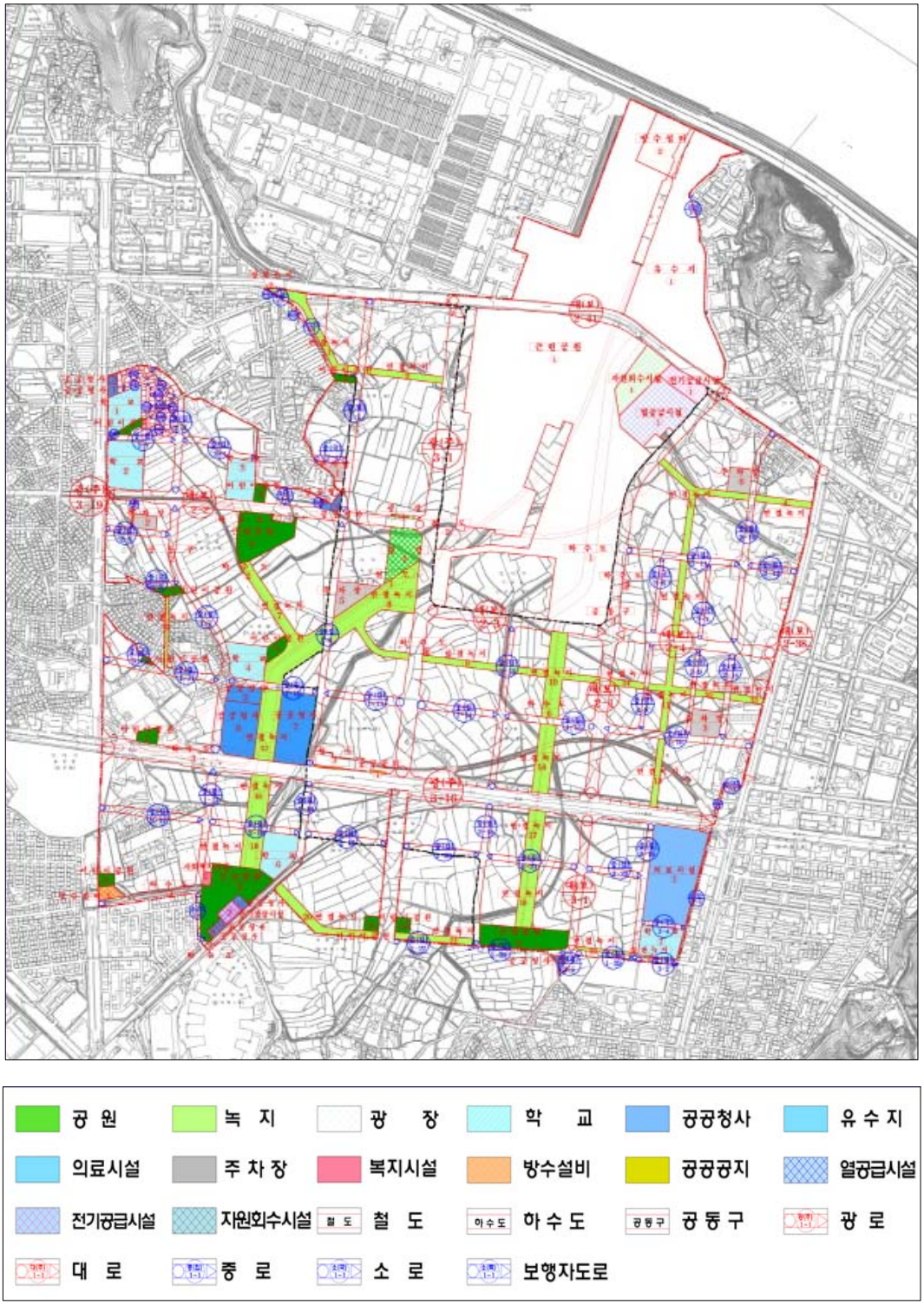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마곡 도시개발구역 1·2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9호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2010.2.11)로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2010.9.30)로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2011.9.22)로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8호(2011.12.1)로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변경없음
   가. 마곡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마곡 도시개발구역 위치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마곡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3,665,336	감)461	3,664,875	구역 해제(제척)

나. 도시개발 구역 해제(제척) 세부내용

구분	위치	제척면적(㎡)	비고
계	-	461	
길훈아파트	강서구 방화동 201-1	220	
신안아파트	강서구 마곡동 422	225	
신안빌라	강서구 마곡동 327-53	16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가. 현재 마곡구역은 발산 택지개발 시행, 방화 뉴타운 개발계획의 수립, 지하철 9호선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등 개별적인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추진되어 통합관리의 필요성
   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서남권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
   다.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
   라. 마곡구역을 세계적 수준의 쾌적한 수변도시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변경없음
   가. 시행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7년 12월 28일~2014년 12월 31일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인구수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구 분	1지구						2지구
	면 적(㎡)		가구수(호)		인구수(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12,620	612,400	11,418	11,418	31,970	31,970	-
단독주택용지	15,833	15,833	65	65	182	182	-
공동주택용지	596,787	596,567	11,353	11,353	31,788	31,788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665,336	감) 461	3,664,875	100.0	
주거용지	소 계	612,620	감) 220	612,400	16.7	
	단독주택용지	15,833	-	15,833	0.4	
	공동주택용지	596,787	감) 220	596,567	16.3	
상업용지	상업용지	164,185	-	164,185	4.5	
업무용지	업무용지	325,571	-	325,571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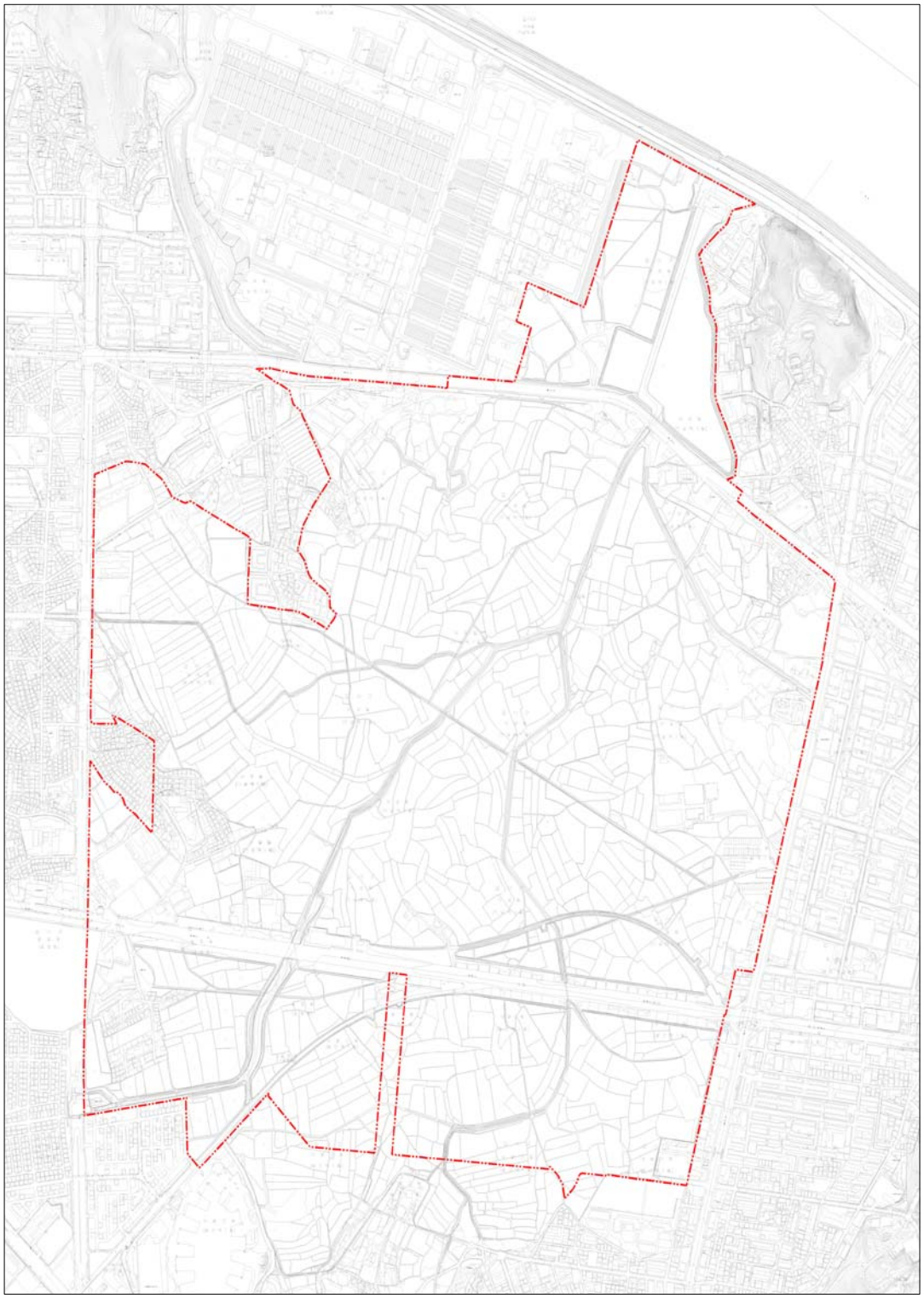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770,922	-	770,922	21.0	
기반시설용지	소 계	1,729,780	감) 16	1,729,764	47.2	
	도 로	584,178	-	584,178	15.9	
	보행자도로	407	-	407	0.1	
	철도용지	15,660	-	15,660	0.4	
	의료시설	43,277	-	43,277	1.2	
	공공청사	50,847	-	50,847	1.4	
	학교	72,014	-	72,014	1.9	
	사회복지시설	1,000	-	1,000	0.1	
	광장	13,239	-	13,239	0.4	
	근린공원	541,965	-	541,965	14.8	
	어린이공원	19,213	감) 16	19,197	0.5	
	경관녹지	928	-	928	0.1	
	연결녹지	195,110	-	195,110	5.3	
	주차장	25,112	-	25,112	0.7	
	열공급설비	26,440	-	26,440	0.7	
	전기공급설비	4,679	-	4,679	0.1	
	자원회수시설	14,724	-	14,724	0.3	
	방수설비	11,369	-	11,369	0.3	
	공공공지	1,045	-	1,045	0.1	
	유수지	107,320	-	107,320	2.8	
	하수도(오수펌프장)	1,253	-	1,253	0.1	
기타시설용지	소 계	62,258	감) 225	62,033	1.7	
	주유소	3,200	-	3,200	0.1	
	가스충전소	4,000	-	4,000	0.1	
	유보지	461	-	461	0.0	
	종교시설	2,947	-	2,947	0.1	
	편익시설	46,650	감) 225	46,425	1.3	
	택시차고지	5,000	-	5,000	0.1	

※ 금회 변경내용은 1지구에 해당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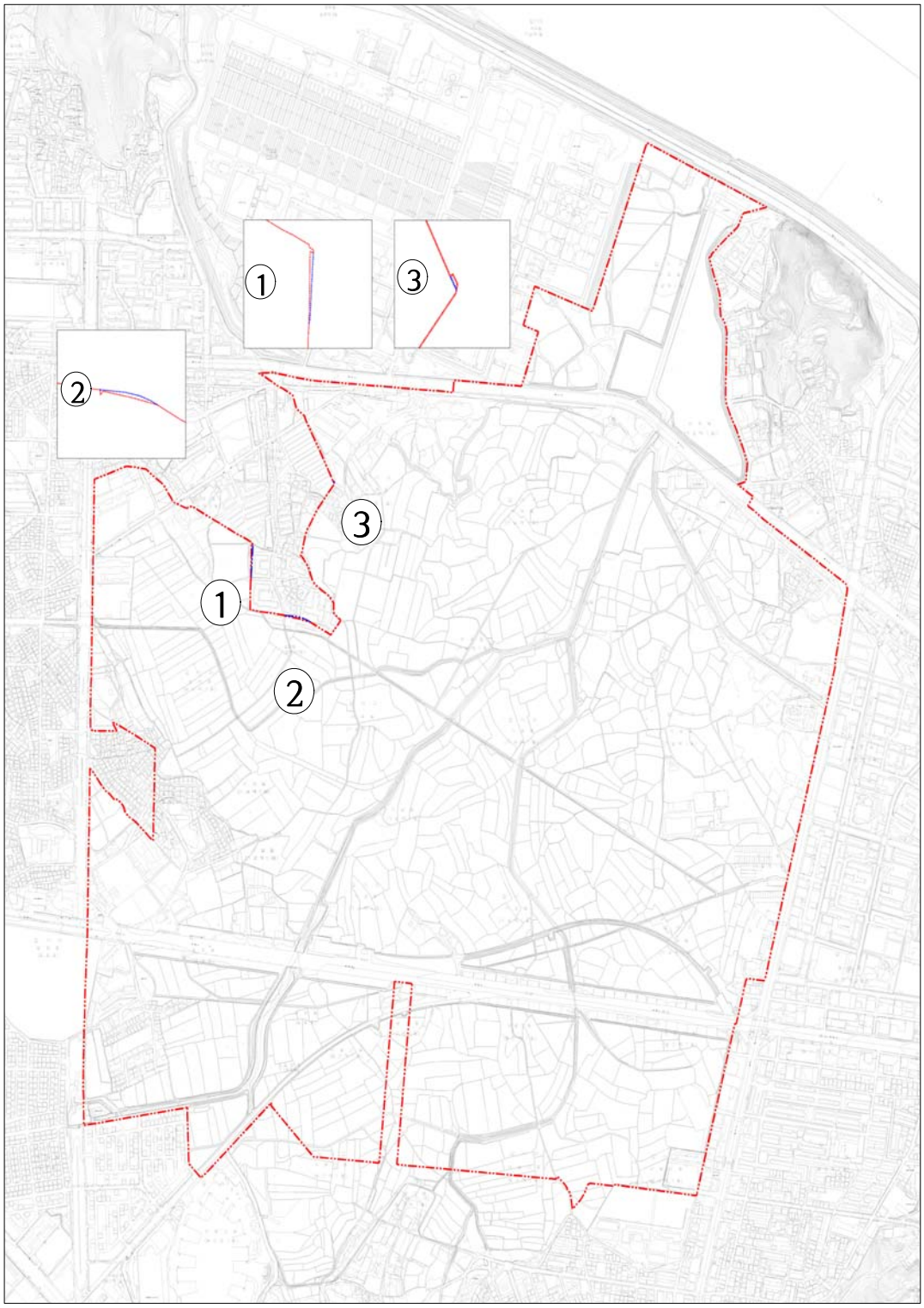
7.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지정 관계도면 : 별첨
   • 마곡 도시개발구역(기정/변경)도

8.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마곡개발과 (☎ 02) 6361-3522)
   - 강서구청 마곡개발과 (☎ 02) 2600-5284)
   - SH공사 마곡사업단 (☎ 02) 3410-7387)

□ 마곡 도시개발구역(기정)도



□ 마곡 도시개발구역(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20호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9호(2011. 9.8.)로 변경결정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송파구 거여1·2동, 마천1·2동 일원	1,044,137	증) 254.1	1,044,391.1

○ 변경사유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9년
- 목표연도 : 201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44,137	증) 254.1	1,044,391.1	100.0	
택지	소 계	475,331	증) 182.3	475,513.3	64.2	
	공동주택	407,765	증) 182.3	407,947.3	55.1	
	(연도형주거)	(20,564)	-	(20,564)	(2.8)	
	준주거	8,846	-	8,846.0	1.2	
	종교시설	4,365	-	4,365.0	0.6	
	택시차고지	1,759	-	1,759.0	0.2	
	존 치	52,596	-	52,596.0	7.1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정비기반시설용지	소 계	264,772	증) 71.8	264,843.8	35.8	
	도 로	133,672	증) 39.6	133,711.6	18.1	
	공 원	46,916	증) 13.0	46,929.0	6.3	
	녹 지	16,397	증) 9.7	16,406.7	2.2	
	광 장	6,714	증) 9.5	6,723.5	0.9	
	하 천	17,492	-	17,492.0	2.4	
	학 교	13,025	-	13,025.0	1.8	
	문화체육시설	2,648	-	2,648.0	0.3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16,193	-	16,193.0	2.2	
	공공공지	11,715	-	11,715.0	1.6	
촉진지구(편입)	소 계	304,034	-	304,034.0	-	
	마천성당	163,480	-	163,480.0	-	
	거여새마을	140,554	-	140,554.0	-	

주1)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은 토지이용 미포함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 : 34,315인 / 11,587세대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587	-	11,587	34,315	-	34,315	2.7인/세대
촉진구역(공동주택)	소 계	10,551	-	10,551	30,792	-	30,792	
	60㎡이하	4,783	-	4,783	12,914	-	12,914	
	60㎡~85㎡이하	4,470	감) 33	4,437	14,373	감) 90	14,283	
	85㎡초과	1,298	증) 33	1,331	3,505	증) 90	3,595	
존치지역		1,036	-	1,036	3,523	-	3,523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건축심의 결과 및 평형조정 내용 반영

○ 구역별 주택수용계획

구 분			현황(호)	기 정(호)				변 경(호)			
				분 양	임 대	존 치	계	분 양	임 대	존 치	계
합 계			7,749	8,626	1,925	1,036	11,587	8,626	1,925	1,036	11,587
재정비촉진구역	거여2	1지구	1,096	1,564	366	-	1,930	1,564	366	-	1,930
		2지구	809	972	227	-	1,199	972	227	-	1,199
	마천시장		13	185	-	-	185	185	-	-	185

구 분		현황(호)	기 정(호)				변 경(호)			
			분 양	임 대	존 치	계	분 양	임 대	존 치	계
재정비 촉진 구역	마천1	1,381	2,205	480	-	2,685	2,205	480	-	2,685
	마천3	1,698	1,887	480	-	2,367	1,887	480	-	2,367
존치정비 구역	마천2	884	1,101	226	-	1,327	1,101	226	-	1,327
	마천4	573	712	146	-	858	712	146	-	858
존치관리 구역	존치시설	1,295	-	-	1,036	1,036	-	-	1,036	1,036

주)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지역은 미포함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교육시설

○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공원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6,916	증) 13	46,929	5개소
근린공원	소 계		38,835	증) 13	38,848	3개소
	향유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832	증) 13	10,845	
	나무그늘근린공원	마천동 331-1일대	17,961	-	17,961	
	솔향근린공원	마천동 199-3일대	10,042	-	10,042	
어린이공원	소 계		7,058	-	7,058	1개소
	두레어린이공원	마천동 364-5일대	7,058	-	7,058	
소공원		거여동 181-143일대	1,023	-	1,023	1개소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녹지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397	증) 9.7	16,406.7	
경관녹지	마천동 162-17일대	3,236	-	3,236.0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관녹지	마천동 207-2일대	2,596	-	2,596.0	
경관녹지	마천동 325-17일대	2,261	-	2,261.0	
경관녹지	마천동 329-22일대	452	-	452.0	
경관녹지	마천동 199-9일대	651	-	651.0	
경관녹지	마천동 187-7일대	3,358	-	3,358.0	
경관녹지	거여동 286-1일대	2,961	-	2,961.0	
경관녹지	거여동 329-55일대	455	-	455.0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27	증) 9.7	436.7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5) 교통계획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7.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8.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 변경없음

8)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위치	면적(㎡)	구성비(%)	사업방식	비 고
촉진지구			-	1,044,137.0	100.0	-	
				1,044,391.1 (증254.1)	100.0		
촉진구역	소계		-	475,671.0	64.3	-	4개소
				475,925.1 (증254.1)	64.3		
	거여2구역	1지구	거여동 180일대	98,690.0	13.3	주택재개발	
		2지구	거여동 234일대	61,596.0	8.4	주택재개발	
				61,850.1 (증254.1)	8.4		
	마천시장구역		마천동 140-3일대	9,757.0	1.3	시장재건축	
	마천1구역		마천동 194-1일대	171,798.0	23.2	주택재개발	
	마천3구역		마천동 283일대	133,830.0	18.1	주택재개발	

구 분			위치	면적(㎡)	구성비(%)	사업방식	비 고
존치지역	존치정비구역	소계	-	143,302.0	19.3	-	2개소
		마천2구역	마천동 183일대	89,948.0	12.1	주택재개발	
		마천4구역	마천동 323일대	53,354.0	7.2	주택재건축	
	존치관리구역	소계	-	121,130.0	16.4	-	1개소
		존치시설	-	121,130.0	16.4	-	
	촉진지구(편입)	소계	-	304,034.0	-	-	2개소
		마천성당	마천동 93-5일대	163,480.0	-	-	
		거여새마을	거여동 549일대	140,554.0	-	-	

주1) 마천성당, 거여 새마을지역은 구성비(%) 미포함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1) 거여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60,286	증) 254.1	160,540.1	100.0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1,883	증) 80.6	11,963.6	7.5
	3종일반주거지역	148,403	증) 173.5	148,576.5	92.5

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ㅁ거여2-1지구 : 변경없음

ㅁ거여2-2지구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61,596	증) 254.1	61,850.1	100.0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532	증) 80.6	1,612.6	2.6
	3종일반주거지역	60,064	증) 173.5	60,237.5	97.4

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2) 마천시장구역(시장재건축사업)(변경없음)

(3) 마천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4) 마천2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5) 마천3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6) 마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 (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상한(%)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m)	
거여2구역 1지구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	275이하	26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 촉진구역
거여2구역 2지구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	277.1이하	26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 촉진구역
마천시장구역	기정	복합용도	60이하	-	400이하	15이하/15이하	60이하	재정비 촉진구역
마천1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36.4이하	22이하/28이하	106이하	재정비 촉진구역
마천2구역	기정	복합용도	60이하	212.1	272.2이하	20이하/35이하	129이하	존치정비 구역
마천3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2.1이하	19이하/32이하	119이하	재정비 촉진구역
마천4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190	230이하	19이하/32이하	119이하	존치정비 구역

주1) 최고높이는 건축물 높이임
주2) 존치정비구역은 추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시 적용 예정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 촉진지구 기반시설

구 분		기 정		변 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 1,044,391.1㎡						
소 계		264,772	35.7	264,843.8	35.8	증) 0.1
기반시설	도 로	133,672	18.0	133,711.6	18.1	증) 0.1
	공 원	46,916	6.3	46,929.0	6.3	-
	녹 지	16,397	2.2	16,406.7	2.2	-
	학 교	13,025	1.8	13,025.0	1.8	-
	광 장	6,714	0.9	6,723.5	0.9	-
	하 천	17,492	2.4	17,492.0	2.4	-
	문화·체육시설	2,648	0.3	2,648.0	0.3	-
	공공시설	16,193	2.2	16,193.0	2.2	-
	공공공지 (미래공공부지)	11,715 (8,632)	1.6 (1.2)	11,715.0 (8,632.0)	1.6 (1.2)	-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2)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구 분	소 계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거여2	마천1	마천3	마천2	마천4
재정비촉진사업 구역(㎡)①	609,470.1	160,540.1	171,798	133,830	89,948	53,354
분담률(%)②	12.3					
계획기반시설(㎡)③	193,721.8	47,330.8	56,107	46,677	30,978	12,629
도 로	100,641.6	23,770.6	36,294	14,436	21,008	5,133
공 원	45,207.0 44,793.0 (감 414)	12,282 11,868.0 (감 414)	9,881	20,121	-	2,923
녹 지	7,722.0 8,158.7 (증 436.7)	- 436.7 (증 436.7)	2,134	4,171	1,347	70
광 장	6,723.5	2,153.5	512	-	4,058	-
학 교	2,570.0	-	2,104	-	466	-
공공공지(미래 공공용지 포함)	11,584.0	7,089.0	183	-	1,451	2,861
공공시설	13,742.0	2,013.0	4,386	5,701	-	1,642
문화체육시설	2,648.0	-	-	-	2,648	-
하 천	2,861.0	-	613	2,248	-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④	49,327.5	13,037.5	16,098	10,521	7,932	1,739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⑤	71,104.6	16,308.6	20,352	19,518	10,631	4,295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⑥	-	-	-	-	-	-
순부담면적(㎡)B=③-④-⑤-⑥	73,289.7	17,984.7	19,657	16,638	12,415	6,595
순부담비율(%)	12.0	11.2	11.4	12.4	13.8	12.4

주1) 존치지역은 추후 촉진구역 지정시 적용 예정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계획내용 중 공원면적에 포함된 녹지면적 분리 정정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구 분	도정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				도촉법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심의기준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합 계			
	소 계	40㎡ 이하	40~50㎡	50~60㎡	소 계	40㎡ 이하	40~50㎡	50~60㎡	소 계	40㎡ 이하	40~50㎡	50~60㎡	소 계	40㎡ 이하	40~50㎡	50~60㎡
거여2	469	234	190	45	68	33	25	10	56	26	23	7	593 (19%)	293 (50%)	238 (40%)	62 (10%)
	469	232	193	44									593 (19%)	291 (49%)	241 (41%)	61 (10%)
마천1	451	224	181	46	19	9	8	2	10	4	4	2	480 (17%)	237 (50%)	193 (40%)	50 (10%)
마천2	226	113	90	23	-	-	-	-	-	-	-	-	226 (17%)	113 (50%)	90 (40%)	23 (10%)
마천3	351	174	141	36	82	39	34	9	47	22	20	5	480 (20%)	235 (50%)	195 (40%)	50 (10%)
마천4	146	71	60	15	-	-	-	-	-	-	-	-	146 (17%)	71 (50%)	60 (40%)	15 (10%)
합 계	1,643	816	662	165	169	81	67	21	113	52	47	14	1,925 (18%)	949 (50%)	776 (40%)	200 (10%)
	1,643	814	665	164	169	81	67	21	113	52	47	14	1,925 (18%)	947 (50%)	779 (40%)	199 (10%)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건축심의 결과 및 평형조정 내용 반영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사업기간			해 당 구 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08	2010. 12이후	2014. 6	거여2구역, 마천시장구역	재정비촉진구역
2단계	2010	2012. 12이후	2016. 6	마천1구역, 마천3구역	
3단계	2011	2013. 12이후	2017. 6	마천4구역	존치정비구역
	2012	2014. 12이후	2018. 6	마천2구역	

주1)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각 단계의 총량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총량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별도 운용기준을 정함(예 : 4,000세대가 넘지 않는 범위내)

15)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17.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에 명시

16) 광고물 관리계획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18.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17)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19.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18)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20.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명시

19) 기타계획(특성화계획 등)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21. 기타계획)에 명시

20)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거여2구역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160,286	증) 254.1	160,540.1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0,286	증)254.1	160,540.1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47,259	증) 71.8	47,330.8	29.5	
	도 로	23,731	증) 39.6	23,770.6	14.8	
	공 원	11,855	증) 13.0	11,868.0	7.4	
	녹 지	427	증) 9.7	436.7	0.3	
	공공청사	2,013	-	2,013.0	1.3	
	공공공지 (미래공공부지)	7,089 (5,640)	-	7,089.0 (5,640.0)	4.4 (3.5)	
	광 장	2,144	증) 9.5	2,153.5	1.3	
택지(획지)	소 계	113,027	증)182.3	113,209.3	70.5	
	1-1-1	68,420	-	68,420.0	42.6	공동주택
	1-1-2	1,430	-	1,430.0	0.9	종교용지
	1-2	43,177	증)182.3	43,359.3	27.0	공동주택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1지구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8,690	-	98,690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28,840	-	28,840	29.2	
	도 로	11,989	-	11,989	12.1	
	공 원	6,398	-	6,398	6.5	
	공공청사	2,013	-	2,013	2.0	
	공공공지 (미래공공부지)	7,089 (5,640)	-	7,089 (5,640)	7.2 (5.7)	
	광 장	1,351	-	1,351	1.4	
택지(획지)	소 계	69,850	-	69,850	70.8	
	1-1-1	68,420	-	68,420	69.3	공동주택
	1-1-2	1,430	-	1,430	1.5	종교용지

□ 2지구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1,596	증) 254.1	61,850.1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8,419	증) 71.8	18,490.8	29.9	
	도 로	11,742	증) 39.6	11,781.6	19.1	
	공 원	5,457	증) 13.0	5,470.0	8.8	
	녹 지	427	증) 9.7	436.7	0.7	
	광 장	793	증) 9.5	802.5	1.3	
택지(획지)	소 계	43,177	증) 182.3	43,359.3	70.1	
	1-2	43,177	증) 182.3	43,359.3	70.1	공동주택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60,286	증) 254.1	160,540.1	100.0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1,883	증) 80.6	11,963.6	7.5
	3종일반주거지역	148,403	증) 173.5	148,576.5	92.5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1지구 : 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98,690	-	98,690	100.0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0,351	-	10,351	10.5
	3종일반주거지역	88,339	-	88,339	89.5

□ 2지구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61,596	증) 254.1	61,850.1	100.0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532	증) 80.6	1,612.6	2.6
	3종일반주거지역	60,064	증) 173.5	60,237.5	97.4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334	거여동 213-50	거여동 35-7	일반도로		서고294호 (08.8.28)	
기정	중로	1	220	20~27	보조 간선도로	571 (172)	거여동 31-17	거여동 31-17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중로	1	1	24	보조 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거여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 (74.3.15)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80 (135)	거여동 43-9	거여동 2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42 (193)	거여동 43-9	거여동 235-1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69	거여동 224	거여동 2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87	거여동 41-22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66	거여동 43-9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구역외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철 도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방화동	마천동 370, 226	L=52,300 (227)	-	L=52,300 (227)	건고151호 (91.3.25)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광 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183-11일대	1,351	-	1,351.0	서고294호(08.8.28)	
변경	②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222-3일대	793	증) 9.5	802.5	서고294호(08.8.28)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832	증) 13	10,845	서고294호 (08.8.28)	향유 근린공원
기정	①	공원	소공원	거여동 181-143일대	1,023	-	1,023	서고294호 (08.8.28)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녹 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27	증) 9.7	436.7	서고259호 (11.9.8)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공공공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	거여동 198-17일대	1,449	-	1,449	서고294호 (08.8.28)	
기정	②	공공공지	-	거여동 41-4일대	5,640	-	5,640	서고294호 (08.8.28)	미래공공용지

□ 공공청사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	거여동 195-1일대	3,318 (2,013)	-	3,318 (2,013)	송고24호 (03.6.10)	거여2동 사무소 (기정),사회복지시설 복합화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거여2 재정비 촉진 구역		160,286.0	-	113,027.0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1,300	-	-	1,300	-	기정
		160,540.1 (증)254.1		113,209.3 (증)254.1							변경
	거여 2-1지구	98,690.0	1-1	69,850.0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1,004	-	-	1,004	-	
	거여 2-2지구	61,596.0	1-2	43,177.0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	296	-	-	296		기정
		61,850.1 (증)254.1		43,359.3 (증)254.1							변경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층수	최고층수 (m)
변 경	거여2 재정비 촉진 구역	기정	160,286.0	-	113,027.0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307,793.0	공동 주택	50 이하	277.1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변경	160,540.1	-	113,209.3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308,299.6	공동 주택	50 이하	277.1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층수	최고층수 (m)
변 경	거여2-1지구		98,690.0	1-1-1	68,420.0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188,151.0	공동 주택	30 이하	275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1-1-2	1,430.0	송파구 거여동 205번지 일대	-	종교 시설	50 이하	200 이하	10층이하	
	거여2-2 지구	기정	61,596.0	1-2	43,177.0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	119,642.0	공동 주택	30 이하	277.1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변경	61,850.1	1-2	43,359.3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	120,148.6	공동 주택	30 이하	277.1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거여2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총 호수 : 3,129호 (임대 593호) - 전용면적 60㎡이하 : 1,439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1,446호 - 전용면적 85㎡초과 : 244호						
					변경	•총 호수 : 3,129호 (임대 593호) - 전용면적 60㎡이하 : 1,439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1,413호 - 전용면적 85㎡초과 : 277호						
				2-1지구		•변경없음						
				2-2지구	기정	•총 호수 : 1,199호 (임대 227호) - 전용면적 60㎡이하 : 532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577호 - 전용면적 85㎡초과 : 90호						
				2-2지구	변경	•총 호수 : 1,199호 (임대 227호) - 전용면적 60㎡이하 : 532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544호 - 전용면적 85㎡초과 : 123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걷고싶은거리변, 남북연결로 : 10m •거마로변과 현대아파트2차 도로변, 공원변 : 6m •지하철상부 : 지하철 경계선 양측으로 5m								

주1) 거여2구역의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따른 지구별 대비표

주2) 지구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법정 기준 내에서 사업시행단계에서 확정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건축심의 결과 및 평형조정 내용 반영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ㅁ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2008	주택재개발조합	-	-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세대규모(전용면적)	호수	비고
변경	거여2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3,043	39,846.5	40㎡이하	293호	(면적 오기정정)
					40~50㎡이하	238호	
					50~60㎡이하	62호	
					소 계	593호(18.9%)	
		변경	13,415 (증 372)	37,850.7 (감 1,995.8)	40㎡이하	291호	
					40~50㎡이하	241호	
					50~60㎡이하	61호	
					소 계	593호(18.9%)	
	거여2-1지구		8,169	23,211.0	40㎡이하	181호	
					40~50㎡이하	147호	
					50~60㎡이하	38호	
					소 계	366호(19%)	
	거여 2-2 지구	기정	4,874	16,635.5	40㎡이하	112호	(면적 오기정정)
					40~50㎡이하	91호	
					50~60㎡이하	24호	
					소 계	227호(18.9%)	
		변경	5,246 (증 372)	14,639.7 (감 1,995.8)	40㎡이하	110호	
					40~50㎡이하	94호	
					50~60㎡이하	23호	
					소 계	227호(18.9%)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2지구 계획내용 중 부지면적, 연면적 오기 정정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나) 마천시장구역 : 변경없음

다) 마천1구역 : 변경없음

라) 마천2구역 : 변경없음

마) 마천3구역 : 변경없음

바) 마천4구역 : 변경없음

21)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권자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송파구 거여동·마천동 일원	1,044,137	증) 254.1	1,044,391.1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044,137	증) 254.1	1,044,391.1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25,397	-	125,397.0	12.0
	2종(7층)일반주거지역	211,046	-	211,046.0	20.2
	2종(12층)일반주거지역	449,425	증) 80.6	449,505.6	43.0
	3종일반주거지역	222,924	증) 173.5	223,097.5	21.4
	준주거지역	35,345	-	35,345.0	3.4

○ 변경사유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ㅁ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변경사유
-	송파구 거여동	2종(12)일반주거	증) 80.6	230%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종일반주거	증) 173.5		

주)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결정한 용도지역상 법정용적률임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②	미관지구(거마로)	일반미관지구	거여동~마천동	42,120(7,428)	1,755(464)	양측12m	서고449호(2007.12.6.)	

주) 면적 및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를 의미함.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마천지구단위계획	마천동 307-48일대	27,610	-	27,610	5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ㅁ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33	30	주간선도로	9,581(144)	광 1-23	광 1-29	일반도로		건고331호(81.8.29)	거마로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795(334)	거여동 202-18	거여동 35-7	일반도로		서고294호(08.8.28)	
기정	중로	1	2	23	집산도로	353	마천동 227	마천동 267-17	일반도로		2001.2.28.	마천 국민임대
기정	대로	3	4	25	보조간선도로	1,768(756)	마천동 산15-1	마천동 232-200	일반도로		2001.2.28	마천 국민임대
기정	중로	1	1	24	보조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마천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74.3.15)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503(488)	마천동 159-201	마천동 128-25	일반도로		서고98호(11.4.21)	
기정	중로	1	220	20~27	보조간선도로	571(172)	거여동 31-17	거여동 31-17	일반도로		서고434호(81.12.14)	
기정	중로	1	221	20	보조간선도로	151	마천동 32-3	마천동 267-19	일반도로		서고98호(11.4.21)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47	18	집산도로	112	거여동 222-1	거여동 산71-23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중로	2	225	15	집산도로	500	거여동 307-1	거여동 586	일반도로		서고719호 (84.12.3)	
기정	중로	2	325	14	집산도로	43	마천동 331-5	마천동 327-1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73	마천동 134-1	마천동 141-1	일반도로		서고294호 (08.8.28)	
기정	중로	3	99	12	국지도로	64	마천동 307-4	마천동 307-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80 (135)	거여동 43-9	거여동 2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1	3	10-14	국지도로	182	마천동 115-32	마천동 125-27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42 (193)	거여동 43-9	거여동 235-1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69	거여동 224	거여동 2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87	거여동 42-22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1	42	823	국지도로	127	마천동 141-7	마천동 80-10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23	74	925	국지도로	85 (54)	마천동 576-2	마천동 74-14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46	마천동 199-23	마천동 198-1	일반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293	마천동 75-5	마천동 277-2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중로	2	19	8	국지도로	332	마천동 307-4	마천동 128-8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151	마천동 307-4	마천동 306-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43	8	국지도로	230	마천동 307-4	마천동 183-9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224	8	국지도로	133	거여동 43-9	거여동 43-9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66	거여동 43-9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구역외
기정	소로	3	2	5	특수도로	320	마천동 200-32	마천동 162-9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3	4	5	특수도로	262 (260)	마천동 202-2	마천동 212-18	보행자 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3	5	5	특수도로	193	마천동 329-33	마천동 283-75	보행자 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3	7	5	특수도로	45	마천동 329-26	마천동 329-19	보행자 도로		서고98호 (11.4.21)	
기정	소로	3	31	6	국지도로	241	마천동 87-25	마천동 146-5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39	7	국지도로	129	마천동 180-5	마천동 178-7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40	7	국지도로	32	마천동 184-41	마천동 184-4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46	4	국지도로	65	마천동 304-2	마천동 304-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47	7	국지도로	75	마천동 183-99	마천동 184-4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48	6	국지도로	157	마천동 200-32	마천동 184-4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49	6	국지도로	181	마천동 183-99	마천동 315-1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50	6	국지도로	138	마천동 309-53	마천동 300-6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51	5	국지도로	287	마천동 306-2	마천동 287-25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52	3	국지도로	24	마천동 304-3	마천동 304-3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53	4	국지도로	30	마천동 311-156	마천동 311-156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54	4	국지도로	30	마천동 310-19	마천동 311-157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55	4	국지도로	55	마천동 374-16	마천동 374-15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56	4	국지도로	101	마천동 376-24	마천동 376-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57	4	국지도로	40	마천동 377-2	마천동 377-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중로	3	58	4	국지도로	117	마천동 377-2	마천동 377-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59	4	국지도로	150	마천동 377-2	마천동 377-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60	4	국지도로	17	마천동 373-23	마천동 373-23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61	4	국지도로	98	마천동 377-2	마천동 377-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나) 철도 : 변경없음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방화동	마천동 370,226	L=52,300 (745)	-	L=52,300 (745)	건고151호 (91.3.25)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정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철도	5호선 정차장 (마천정차장)	마천동 183일대	4,316	-	4,316	서고226호 (93.7.24)	마천역
기정	①	철도	지하철5호선 (환기구)	마천동 307-11	193	-	193	서고226호 (93.7.24)	
기정	②	철도	지하철5호선 (환기구)	마천동 211-58	205	-	205	서고226호 (93.7.24)	

(2) 공간시설

가)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183-11일대	1,351	-	1,351.0	서고294호 (08.8.28)	
변경	②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222-3일대	793	증) 9.5	802.5	서고294호 (08.8.28)	
기정	③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마천동 127-8일대	512	-	512.0	서고98호 (11.4.21)	

□ 광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교통광장	• 광장면적 : 증)9.5㎡ - 기정 : 793㎡ - 변경 : 802.5㎡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832	증) 13	10,845	서고294호 (08.8.28)	향유근린 공원
기정	②	공원	근린공원	마천동 331-1일대	17,961	-	17,961	서고98호 (11.4.21)	나무그늘 근린공원
기정	③	공원	근린공원	마천동 199-3일대	10,042	-	10,042	서고98호 (11.4.21)	솔향 근린공원
기정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마천동 364-5일대	7,058	-	7,058	서고98호 (11.4.21)	두레 어린이공원
기정	①	공원	소공원	거여동 181-143일대	1,023	-	1,023	서고294호 (08.8.28)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공원면적 : 증) 13㎡ - 기정 : 10,832㎡ - 변경 : 10,845㎡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	마천동 198-17일대	1,449	-	1,449	서고294호 (08.8.28)	
기정	②	공공공지	-	마천동 41-4일대	5,640	-	5,640	서고294호 (08.8.28)	미래 공공용지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시장 : 변경없음

□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마천시장	정기시장	마천동 140-3일대	7,169	-	7,169	서고319호 (76.11.26)	
기정	②	강동 종합시장	정기시장	마천동 181-2일대	4,084	-	4,084	서고45호 (80.2.13)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마천초교	학교	마천동 183-4일대	10,455	-	10,455	서고266호 (93.7.24)	
기정	②	남천초교	학교	마천동 67일대	11,993.4 (2,104)	-	11,993.4 (2,104)	서고471호 (82.11.22)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면적을 의미함.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	거여동 195-1일대	3,318	-	3,318	송고24호 (03.6.10)	거여2동사무소, 치안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정	②	공공청사	-	마천동 128-18일대	4,386	-	4,386	서고98호 (11.4.21)	마천2동사무소, 우체국, 치안센터, 소방파출소,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기정	④	공공청사	-	마천동 325-5일대	5,701	-	5,701	송고31호 (94.6.28)	청소년센터, 여성취업센터,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등

다)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162-17일대	3,236	-	3,236.0	서고98호 (11.4.21)	
기정	④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207-2일대	2,596	-	2,596.0	서고98호 (11.4.21)	
기정	⑥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325-17일대	2,261	-	2,261.0	서고98호 (11.4.21)	
기정	⑧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329-22일대	452	-	452.0	서고98호 (11.4.21)	
기정	②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199-9일대	651	-	651.0	서고98호 (11.4.21)	
기정	③	녹지	경관녹지	마천동 187-7일대	3,358	-	3,358.0	서고98호 (11.4.21)	
기정	⑤	녹지	경관녹지	거여동 286-1일대	2,961	-	2,961.0	서고98호 (11.4.21)	
기정	⑦	녹지	경관녹지	거여동 329-55일대	455	-	455.0	서고98호 (11.4.21)	
변경	①	녹지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27	증)9.7	436.7	서고259호 (11.9.8)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녹지	• 녹지면적 : 증) 9.7㎡ - 기정 : 427㎡ - 변경 : 436.7㎡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다)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	마천동 211-45일대	1,146	-	1,146	송고31호 (94.6.28)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5)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천	성내천	마천동 200	오금동171	-	2,387 (지구내763)	22~47.5 (지구내22)		서고236호 (89.5.18)	
기정	-	하천	성내천	마천동227 -37	마천동200 -32	-	-	-		서고457호 (89.10.14)	
기정	-	하천	성내천	마천동330 -7	마천동277 -23	-	90	10		서고457호 (89.10.14)	
기정	②	하천	성내천	마천동277 -49	마천동202 -18	-	934	12~22		서고98호 (11.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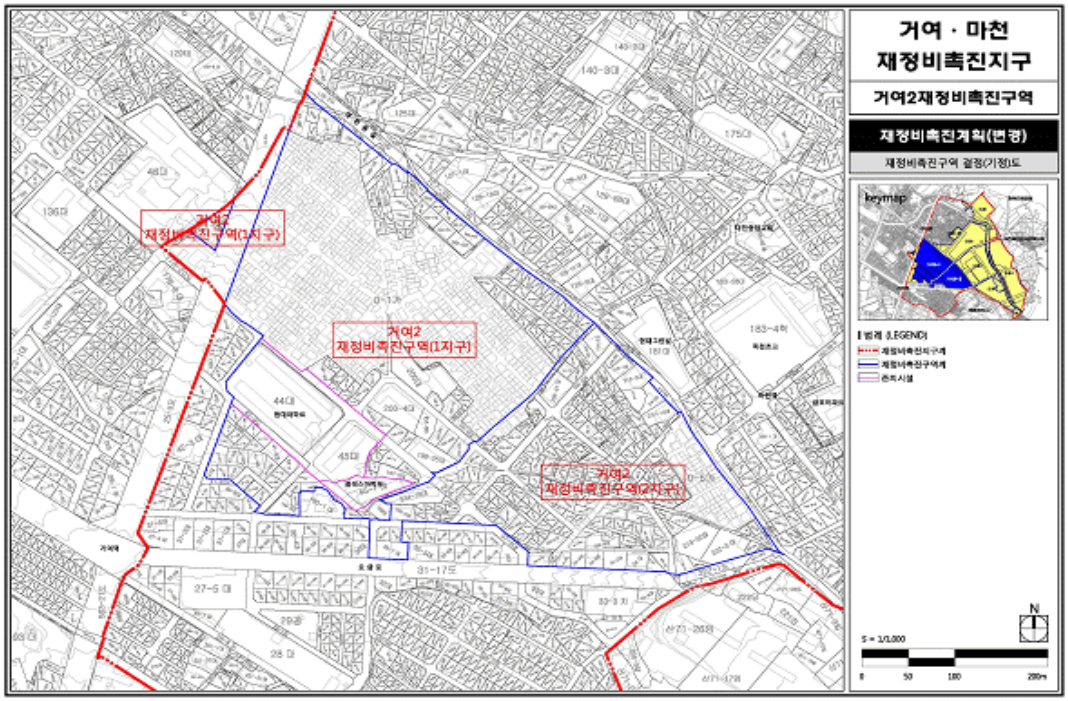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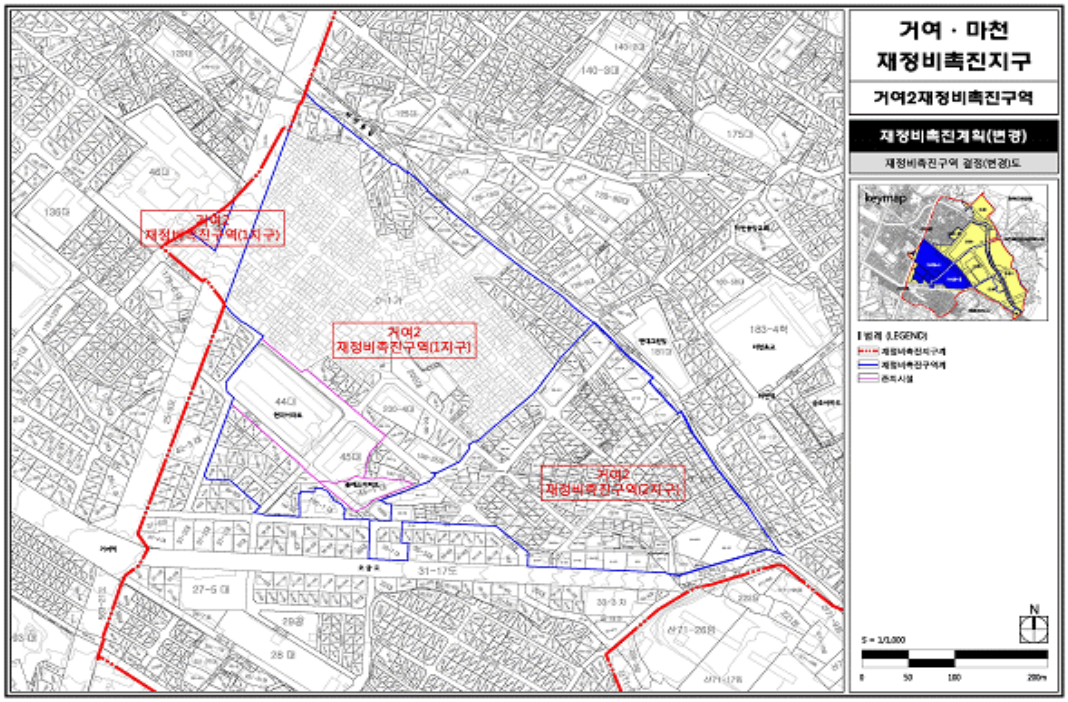
6.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지형도면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과(☎ 02-2171-2060) 및 송파구 주거정비과(☎ 02-2147-289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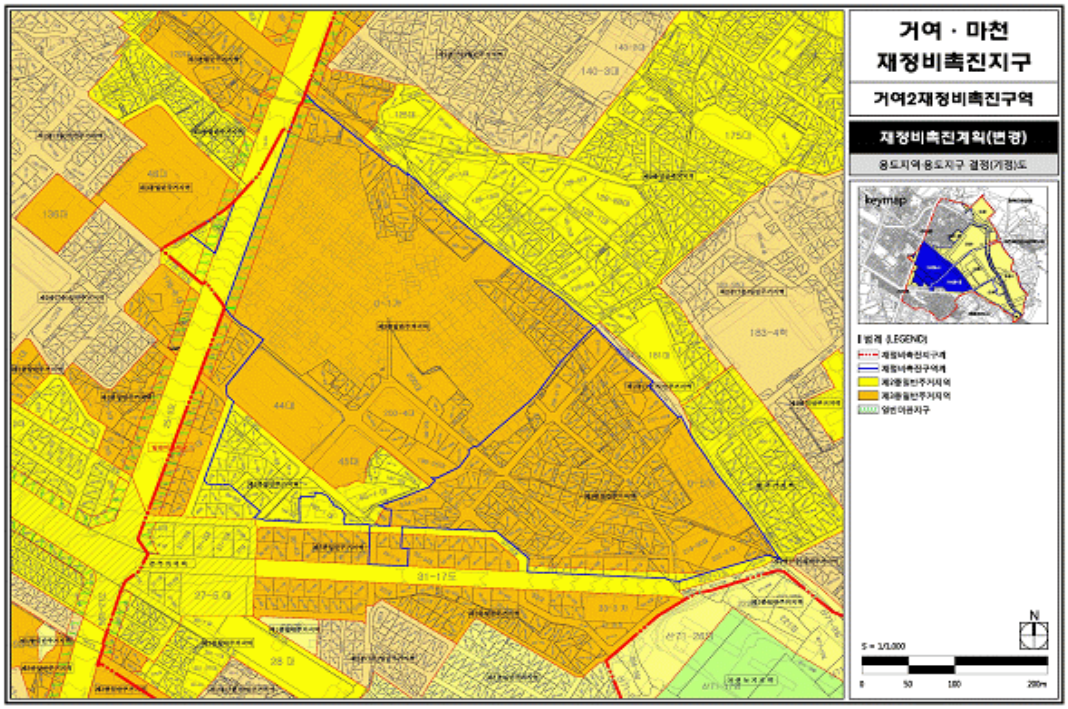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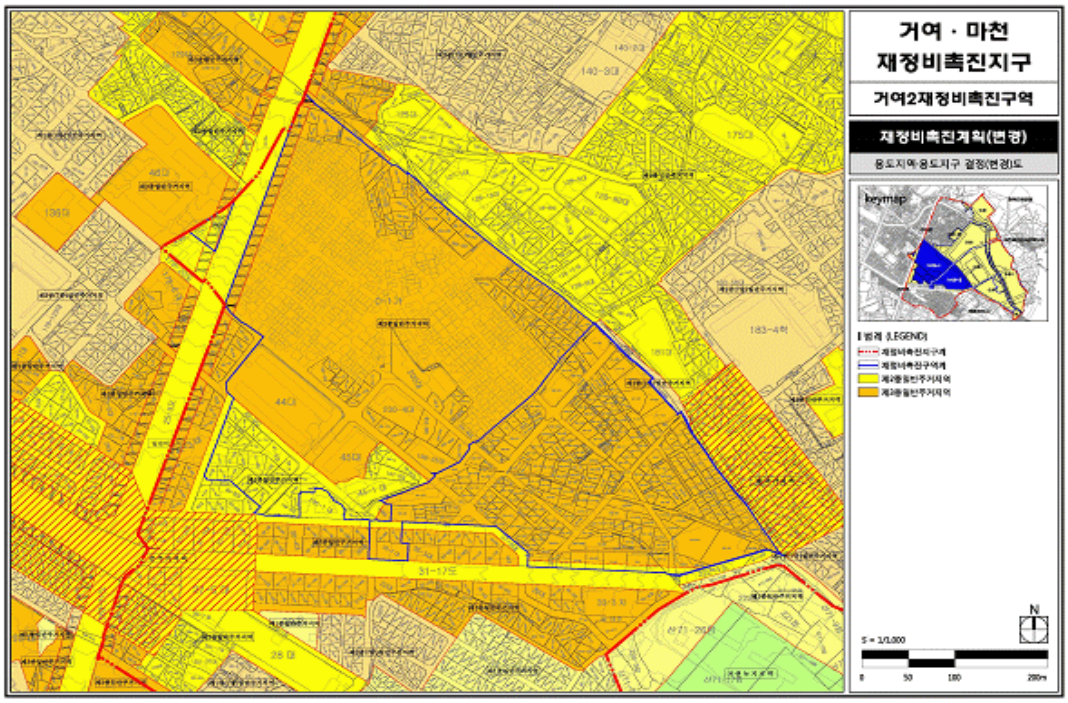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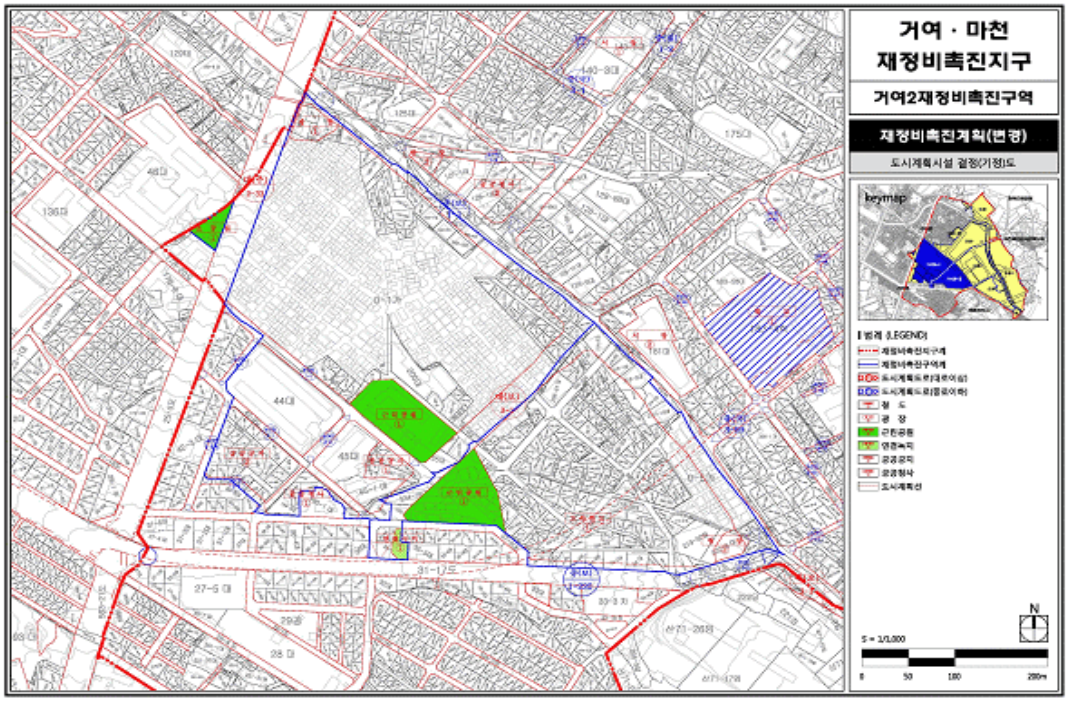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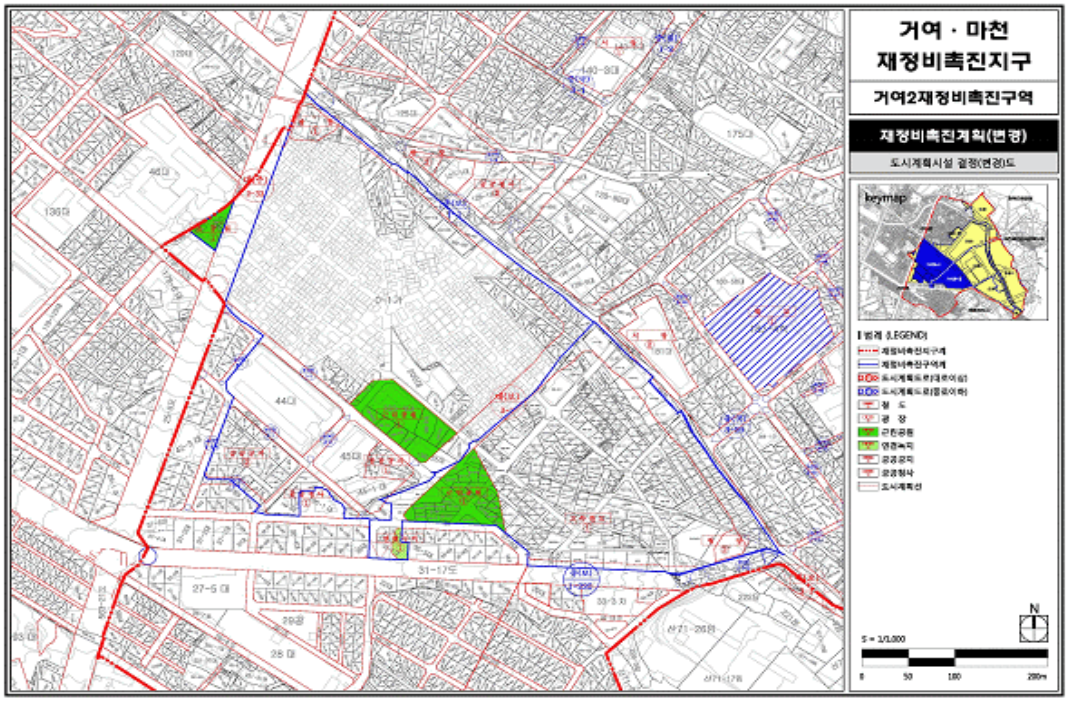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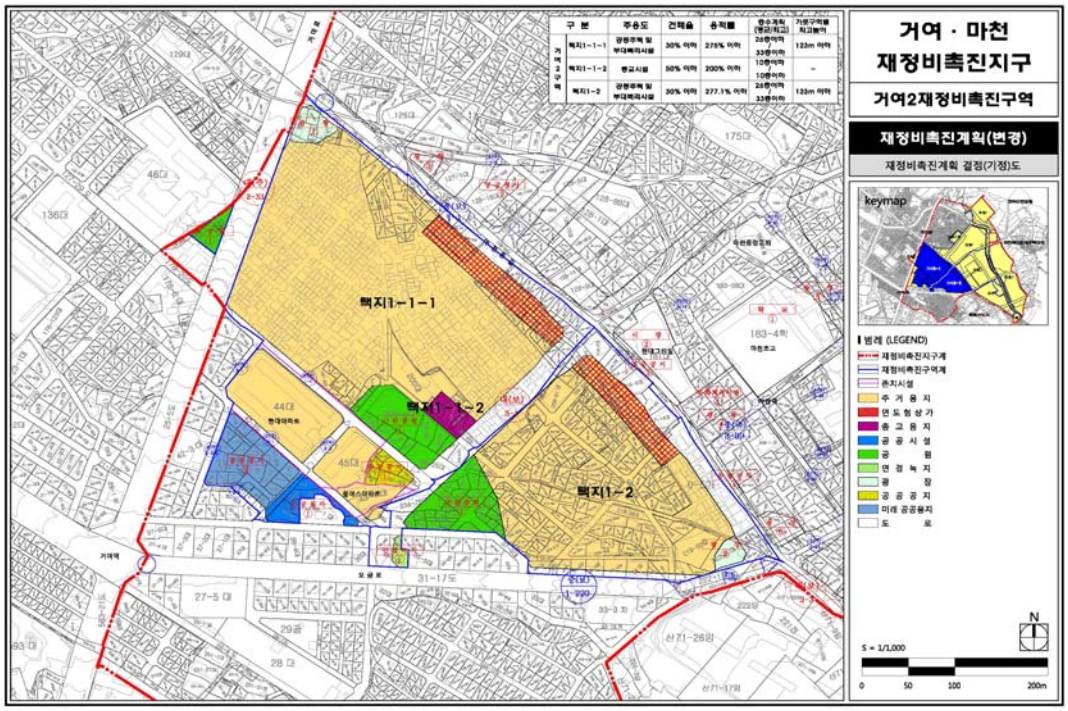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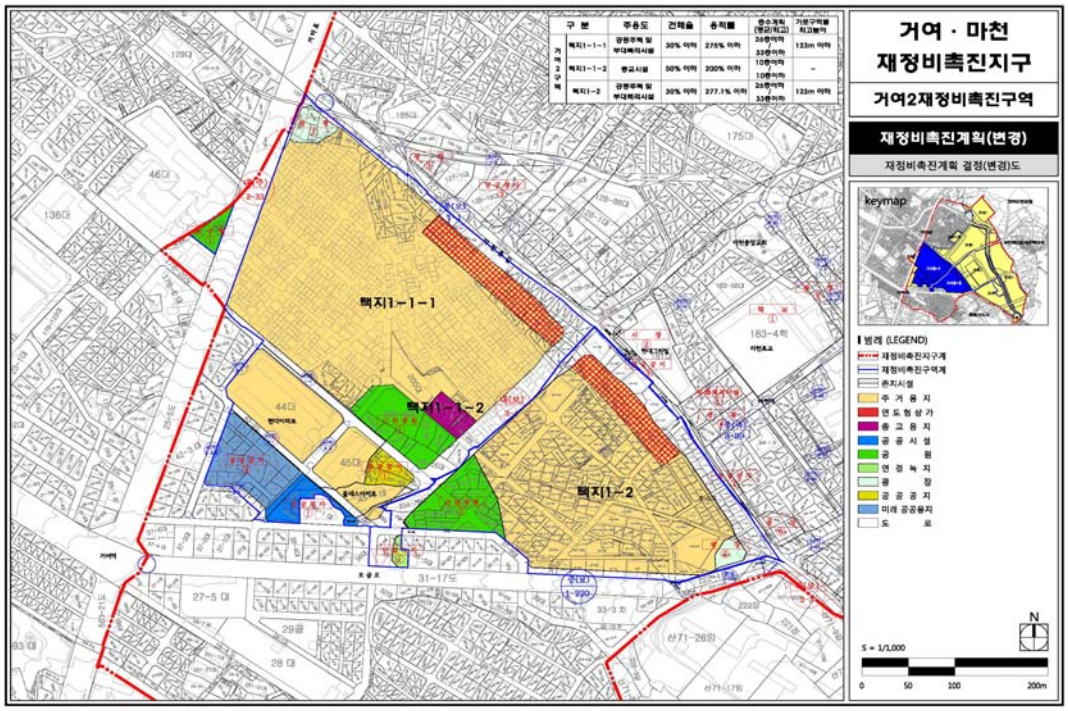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991호

과학관 등록

과학관육성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등록연월일 : 2011년 12월 19일
2. 등록번호 : 제 서-7호
3. 명 칭 : 한생연인간과로봇과학관
4. 구 분 : 전문과학관(사립)
5. 대 표 자 : 정 구 민
6.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2동 22-6 잠실 리센츠 상가 5층
   (제5비 25호, 26호, 27호, 13호, 제5씨 01호, 02호, 03호)
7. 규 모 : 부지 693㎡, 건물 69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995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를 조회하고 건설업등록말소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1. 12. 29(목) ~ 2012. 01. 12(목)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패리스힐(주) 대표 임영호	건축공사업 01-2570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4 더샵스타파크 에이동 606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등록말소 ('12.01.1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3.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행정과 ☏ (02) 3707-9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9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8(2011.10.2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암사동 414-2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1) 전 체 : 폭 31.5m 연장 1,610m
2) 금 회 : 폭 31.5m 연장 50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2)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50번지 동아일보빌딩 12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3708-25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50번지 동아일보빌딩 12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토 지 조 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일련번호	동명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암사동	414-22	도로	5,054	5,05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99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최각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시: 2011-04-27 16:04 장소: 광진구 광장동 아차산대교 내용: 서울88바9311 차량 폭 0.29미터 초과	처분일: 2011.05.25. 과태료: 30만원 납기일: 2011.07.31.
강철수	충북 제천시 화산동	일시: 2011-04-20 14:59 장소: 성동구 마장동 마장2교 내용: 경북06노6791 차량 총중량 5.45톤 초과	처분일: 2011.05.25. 과태료: 80만원 납기일: 2011.07.31.
조강연	광주 북구 양산동	일시: 2011-05-05 15:01 장소: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제1고가 내용: 전남83바4855 차량 총중량 4.15톤 초과	처분일: 2011.06.24. 과태료: 50만원 납기일: 2011.08.31.
우형구	경북 안동시 태화동	일시: 2011-05-25 07:04 장소: 광진구 광장동 천호대교 내용: 부산91아6828 차량 총중량 7.75톤 초과	처분일: 2011.06.24. 과태료: 80만원 납기일: 2011.08.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5. 체납된 과태료 납부 안내
  가. 납부 기한 : 2012. 1. 31.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210-1522, 1524, 팩스번호: 02-2210-156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00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5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석천식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일시 : 2011-08-02 11:17 장소 : 성동구 성수동1가 삼표레미콘앞 부근 도로 내용 : 서울06카5955차량 축하중 제4축 1.6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김일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시 : 2011-08-11 10:04 장소 : 성동구 성수동1가 삼표레미콘앞 부근 도로 내용 : 서울06타5521차량 축하중 제3축 1.3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여귀환	경북 구미시 임은동	일시 : 2011-10-17 06:30 장소 :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 앞 부근 도로 내용 : 경남82사5394차량 축하중 제5축 1.8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2. 1. 31.
   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2, 1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03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처분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차근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9, ***동 ***호	일시: 2011. 10. 12. 14:40 장소: 가양대교 남단 내용: 제한 높이 0.2m 초과	처분일: 2011. 11. 27. 과태료: 30만원 납기일: 2012. 1. 31.
송규관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26, ***동 ***호	일시: 2011. 10. 19. 06:52 장소: 김포공항 앞 내용: 제한 축하중 1.3톤 초과, 2회	처분일: 2011. 11. 27. 과태료: 70만원 납기일: 2012. 1. 31.
김학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95번길 44, *동 ***호	일시: 2011. 11. 4. 06:45 장소: 강서구 오곡동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1. 11. 27. 과태료: 30만원 납기일: 2012. 1. 31.
김종덕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5나길 38, *동 ***호	일시: 2011. 7. 21. 07:10 장소: 개화육갑문 내용: 제한 총중량 1.45톤 초과, 2회	처분일: 2011. 11. 27. 과태료: 70만원 납기일: 2012. 1.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박일석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로 **-*	일시: 2011. 4. 6. 06:00 장소: 목동교 내용: 제한 총중량 9.1톤 초과	처분일: 2011. 8. 27. 과태료: 80만원 납기일: 2011. 10. 31.
오세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원로16길 **	일시: 2011. 7. 8. 10:45 장소: 개화육갑문 내용: 제한 축하중 1.95톤 초과	처분일: 2011. 8. 27. 과태료: 50만원 납기일: 2011. 10. 31.
주완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15번길 7 *동 ***호	일시: 2011. 7. 18. 13:00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12톤 초과, 2회	처분일: 2011. 8. 27. 과태료: 70만원 납기일: 2011. 10. 31.
최병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	일시: 2011. 7. 26. 16:16 장소: 올림픽대로 염창IC 내용: 제한 길이 0.22m 초과	처분일: 2011. 8. 27. 과태료: 30만원 납기일: 2011. 10. 31.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12. 1.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67-1)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담당자: 윤성일(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3호(2010.04.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구로동길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다. 공사완료(준공)현황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업 규모	실시계획고시	공사기간	공사완료 (준공일)
구로동길 확장공사 (구로동 730-76호~80-21호)	도로확장 폭20m→23m 연장30m	서울시고시 제2010-143호 (2010.04.22)	2011.06.17 ~2011.12.13	2011.12.13

라. 위치도 : 1부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0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1호(2010.5.20)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0-41호(2010.7.1)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52호(2011.9.1)로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58-1 일대 사업부지중 2단계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
2.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58-1 일대(2단계 사업구역)
3. 사업의 규모 및 내용
가. 면 적 : 8,921㎡(2단계 사업구역)

나. 내 용 : 국궁장 설치 등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붙임 조서 참조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정책과(☎2115-7526)
   서울특별시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시설과(☎300-553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공원녹지과(☎351-8022)
8. 열람기간 :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20일간

관계도서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및 물건조서

□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와내용	
계		22,744	8,921		-	-	-	-	
불광동 56-7	전	101	101	서울특별시					
불광동 453-2	구거	615	228	서울특별시					
불광동 457	답	2,294	2,294	호해숙	서초구 방배동 485-3 방배 래미타워 201-1502				
				호남숙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7 무원마을 905-201	서서울 농 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 정	
				호화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 712-1602	서서울 농 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 정	
				호윤수	은평구 갈현동 542-1 현대트윈빌 아파트 102-201				
불광동 458-1	답	2,291	2,291	호해숙	서초구 방배동 485-3 방배 래미타워 201-1502				
				호화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 712-1602	서서울 농 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 정	
				호남숙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7 무원마을 905-201	서서울 농 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 정	
				호윤수	은평구 갈현동 542-1 현대트윈빌 아파트 102-201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와내용	
불광동 458-2	전	1,580	1,580	호남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68 달빛마을 404-1503	은평구	세무1과 - 15800	압 류	
				호해숙	서초구 방배동 485-3 방배 래미타워 201-1502				
				호남숙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7 무원마을 905-201	서서울 농 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 정	
				호화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 712-1602	서서울 농 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 정	
				호윤수	은평구 갈현동 542-1 현대트윈빌 아파트 102-201				
불광동 459	답	702	499	호해숙	서초구 방배동 485-3 방배 래미타워 201-1502				
				호남숙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7 무원마을 905-201	서서울 농 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 정	
				호화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 712-1602	서서울 농 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 정	
				호윤수	은평구 갈현동 542-1 현대트윈빌 아파트 102-201				
불광동 459-1	전	17	17	호해숙	서초구 방배동 485-3 방배 래미타워 201-1502				
				호남숙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7 무원마을 905-201	서서울 농 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 정	
				호화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 712-1602	서서울 농 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 정	
				호윤수	은평구 갈현동 542-1 현대트윈빌 아파트 102-201				
불광동 460	전	35	35	이은화	은평구 응암동 117-9				
불광동 461-1	전	443	443	변상희	구로구 개봉동 270-80 거성아파트 3-507	은평구	지적과 -7310	압 류	
						최상봉	서대문구 홍은동 455 벽산(아)3-507	근저당 설 정	
불광동 461-2	대	360	15			대지권 설 정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와내용	
불광동 462-1	대	195	195	오영례	은평구 불광동 462				
				호사남	은평구 불광 462				
				호은숙	은평구 불광동 462				
				호은순	은평구 불광동 455				
				호해옥	은평구 불광동 462				
				호해로	은평구 불광동 462				
				호해춘	은평구 불광동 462				
불광동 462-2	전	255	255	오영례	은평구 불광동 462				
				호사남	은평구 불광 462				
				호은숙	은평구 불광동 462				
				호은순	은평구 불광동 455				
				호해옥	은평구 불광동 462				
				호해로	은평구 불광동 462				
				호해춘	은평구 불광동 462				
불광동 463	전	45	45	박숙자	은평구 불광동 104-58				
				호기수	은평구 불광동 104-58				
				호정례	은평구 불광동 104-58				
				호정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489-2				
				호광수	은평구 불광동 104-58				
불광동 463-1	전	59	59	정운태	서대문구 연희동 344-35 2층				
				호정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489-2				
불광동 466-2	전	661	661	국토해양부					
불광동 산21-1	임야	1,3091	203	오세웅	강남구 삼성동 157-17				

□ 물건조서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와내용	
불광동 457	창고	판넬 2.6m× 3.5m	1동	호해숙	서초구 방배동 485-3 방배 래미타워 201-1502				
				호남숙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7 무원마을 905-201	서서울 농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정	
	하우스	철제 4m× 6m	1동	호화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 712-1602	서서울 농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정	
	매화나무	R4	35주	호윤수	은평구 갈현동 542-1 현대트윈빌 아파트 102-201				
	매화나무	R7	8주						
불광동 458-1	매화나무	R4	39주	호해숙	서초구 방배동 485-3 방배 래미타워 201-1502				
				호화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 712-1602	서서울 농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정	
	매화나무	R8	1주	호남숙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7 무원마을 905-201	서서울 농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정	
				호윤수	은평구 갈현동 542-1 현대트윈빌 아파트 102-201				
불광동 458-2	하우스	철재 5.3m×18m	1동	호남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68 달빛마을 404-1503	은평구	세무1과-15800	압류	
				호해숙	서초구 방배동 485-3 방배 래미타워 201-1502				
				호남숙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7 무원마을 905-201	서서울 농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정	
	하우스	비닐+철재 5.3m×8m	1동	호화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 712-1602	서서울 농협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 설정	
	메화나무	R5	99주	호윤수	은평구 갈현동 542-1 현대트윈빌 아파트 102-201				
불광동 462-2	하우스	비닐+철재 5m×18m	1동	오영례	은평구 불광동 462				
				호사남	은평구 불광 462				
	복숭아나무	B12	1주	호은순	은평구 불광동 455				
	느티나무	R25	1주	호해옥	은평구 불광동 462				
				호해로	은평구 불광동 462				
				호해춘	은평구 불광동 462				
불광동 462-1	주택	목조	66㎡	호해춘	은평구 불광동 462				기존 무허가 건물
	감나무	B35	1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11호

서울추모공원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공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제3조의 2에 의거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추모공원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발행기관명 : 서울특별시
2. 발행 장소 : 서울추모공원
3. 계기고유번호 : F21112237,F21112238
4. 발행개시일 : 2012. 1. 1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13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회사 및 대표자 주소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1. 12. 29(목) ~ 2012. 1. 12(목)

2. 공고내용

업체명 ·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동관종합건설(주) 김 기 수	건축공사업 05-023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3-2 예원아파트상가 101호	지방세 체납 (6,251,110원)	영업정지 5개월 (2012.01.13 ~ 2012.06.12)

※ 처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3.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의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위반, 부실시공으로 건설업의 등록말소가 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자와 대표자 포함)은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제1항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이 등록말소처분 통지를 인지한 즉시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우리시 도시안전본부 3층 도로행정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관리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습니다.

마. 아울러,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행정과 ☏ (02) 3707-9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1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59호(2010.2.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4-10 일원 주차장 1” 부지의 “천왕역 광역환승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천왕역 광역환승센터 건립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3. 공사완료(준공) 현황

주차장명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인가	공사기간	공사준공 (준공검사일)
천왕역 광역환승센터 (구로구 오류동 174-10 일원,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내 주차장1부지)	- 사업면적 : 3,714.00㎡ - 사업내역 · 건축면적 : 2,877.71㎡ · 연면적 : 12,834.41㎡ · 규모 : 지하2층~지상3층 (지하3층 천왕역 연결통로 포함) · 총주차대수 : 330면 [장애인(10),여성(67),확장형(198),경차(23),일반(32)] · 자전거주차 : 458대 · 기타 부대시설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59호 (2010.2.25)	2010.7.28 ~ 2011.11.30	2011.11.30 (2011.12.9)

4. 공고방법 : 시보에 게시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6321-426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1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0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호(2010.02.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6호(2011.12.1)로 남산3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된 중구 장충동2가 200-102번지 일대 남산3근린공원 내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관계서류는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200-102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3. 공원면적 : 289,209.00㎡(남산3근린공원)

4. 사업의 내용(규모)
   ○ 3근린공원 : 공원면적 289,209.00㎡중 10,337.40㎡
   ○ 운동시설(장충체육관) : 9,142.82㎡, 기반시설(도로) : 586.57㎡
   편익시설 : 608.01㎡(주차장 471.74㎡, 화장실 65.72㎡, 에스컬레이터 70.55㎡)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6.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13. 9.30까지

7. 열람공고기간 : 공고게재일로부터 20일간

8.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02-2171-275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25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인 등록
   가. 공인 등록사유 : 신규등록
   나. 최초사용일 : 2011. 12. 27
   다. 공인 등록내용

등록공인명	규 격	등록공인인영	등록사유	등록일
서울특별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인	3.6cm×3.6cm		신규등록	2011.12.2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26호

2011년도 제23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23차 서울특별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심의일시 : 2011.12.22(목) 14:00 ~ 16:2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 기획상황실
다. 심의작품
   ○ 총 13건 15작품(조각 15)
라. 심의결과
   ○ 승인 : 9작품(조각 9)
   ○ 재심 : 5작품(조각 5)
   ○ 보류 : 1작품(조각 1)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기획과(☎ 02-6361-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제23차 미술장식품별 심의결과

□ 2011년 제23차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재심	
1	흑석제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각	blossom, 피어나다	○		
2	아산병원 복지재단	조각	레드(Red)			보류(작가명 노출)
3-1	우리W타워	조각	Blue Sky		○	구성요소의 복잡(안전성 불안), 예술성 미흡
3-2		조각	우리들의 천국	○		
4	당산동 삼성쉐르빌	조각	리듬	○		
5	금호자이2차아파트	조각	음악이 흐르는 정원		○	예술성 부족
6	영동시장재건축주상복합	조각	새로운 날	○		
7	개나리5차재건축아파트	조각	집으로	○		
8	가양동지식산업센터	조각	꿈을 향하여	○		
9	강서한강자이	조각	하늘나무	○		
10	역삼동 관광호텔	조각	Friendly Globe	○		
11	서울국제금융센터(Mall)	조각	Timeless		○	예술성 미흡
12-1	용산센트레빌아스테리운	조각	생성기운		○	예술성 미흡
12-2		조각	echo		○	예술성 미흡
13	서울아산병원	조각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11-9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1995-32호(1995.08.12)로 기 결정된 중구 황학동 755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동 법률 제32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중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주변의 주차여건과 도심기능이 열악한 주차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대·건립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노 외 주차장	황학동 755번지	869.7	증 418.6	1,288.3	서중고 제1995-32호 (1995.08.12)	지하주차장(418.6㎡) ·황학어린이공원 지하 중복 결정(217.3㎡) ·단우물어린이집 지하 입체적 결정(201.3㎡)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입체적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입체적 결정규모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높 이(m)	면적(㎡)		
변경	주차장	노 외 주차장	황학동 755번지	5.2 ~ 19.7 (해수면 기준)	201.3	서중고 제1995-32호 (1995.08.12)	단우물어린이집 지하 입체적 결정(201.3㎡)

다. 관련도서 : 별첨

※ 첨부된 도면(그 외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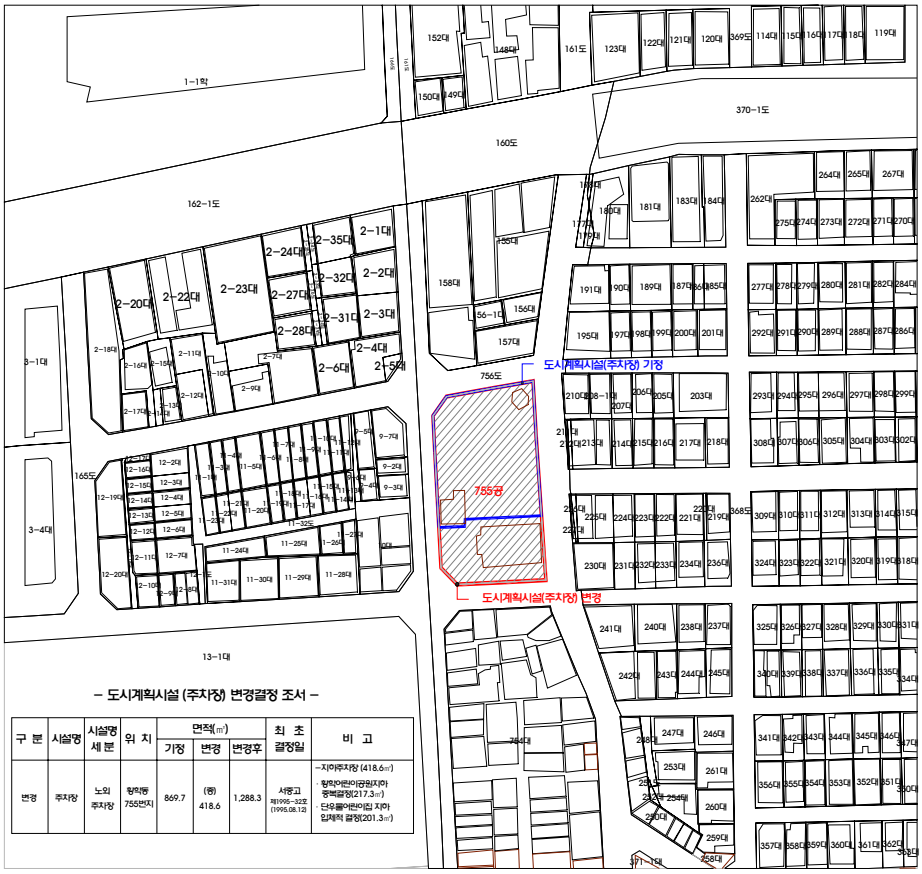
라.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과(☎3396-5753)와 교통지도과(☎3396-626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도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755번지)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결정 조서 –

구 분	시설명	시설명 세 분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주차장	노외 주차장	황학동 755번지	869.7	(증) 418.6	1,288.3	서울고시 제1995-32호 (1995.08.12)	-지하주차장 (418.6㎡) · 황학어린이공원(지하 중복결정)(217.3㎡) · 단우물어린이집 지하 입체적 결정(201.3㎡)

축 척 1 : 1,000

0 10M 25M 50M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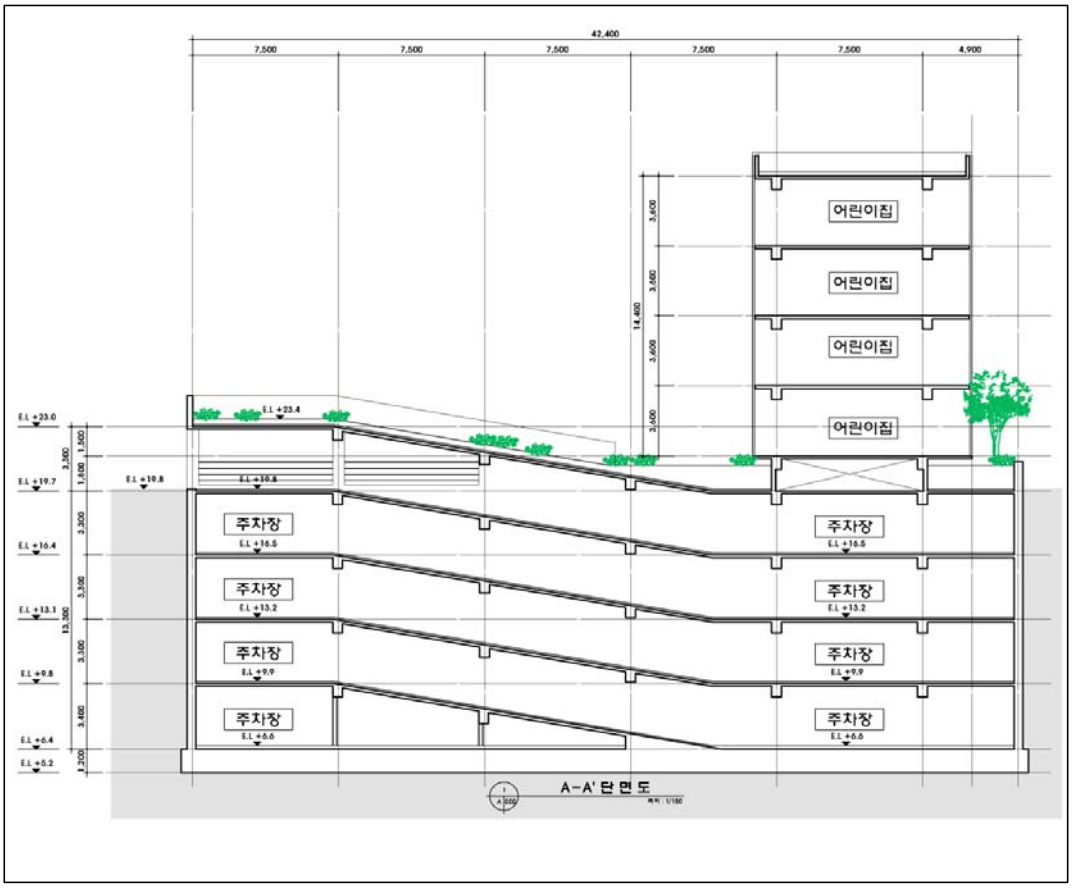
N

– 범례

변경

기정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입체적 결정도(단면도)



◈ 용산구고시 제2011-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1. 용산구고시 제2007-56호(2007.10.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후암시장앞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토목과(☎2199-7850)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 업 개 요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 구간	사업 규모	사 업 기 간		비 고 (결정고시일)
			당초	변경	
종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후암시장앞 도로확장공사	후암동 102-58 ~ 63-3간	도로확장 B=20m L=100m	고시일~ 2011.12.31	고시일~ 2012.05.30	건설부고시 제177호 (1962.12.08)

나. 사업시행자(변동없음)
- 성 명 : 용산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 동대문구고시 제2011-10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00번지외 1필지 "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취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안동 300번지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안공원 재조성 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지하 일부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장안2동 300번지외1필지	14,665	0	14,665	'83. 4.23	공원지하에 주차장 중복결정
신설	주차장		장안2동 300번지외1필지	0	3,224.08	3,224.08		

3. 관계도면 : 따로붙임(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2127 - 4582) 및 부동산정보과(☎ 2127 - 420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소속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직위		주차기획팀장	주차행정과장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직명	지방시설서기보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명	선성호	이상희	이영국	차정구	안승범
확인인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공원	근린공원	동대문구 장안2동 300번지 외 1필지	14,665	0	14,665	1983.4.23	공원지하에 주차장 중복결정
신설	주차장		동대문구 장안2동 300번지 외 1필지	0	3,224.08	3,224.08		

◈ 중랑구고시 제2011-4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 일부 조성) 실시계획 작성사항 변경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38호(0977.07.09) 및 서울시 고시 제2008-129호(2008.04.10)로 각각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이 (변경)결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9-35(2009.09.24)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사항을 고시한 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0-1호(2010.02.04)로 변경 고시한 신내9단지 앞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중 랑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산136-11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 일부 조성)
    나) 사업의 명칭 : 신내9단지 앞 공원조성
  3) 사업의 면적 : 9,000㎡
  4)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 사업의 내용 : 공원시설 설치 등
  6)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당 초 : 작성고시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나) 변 경 : 작성고시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라. 실시계획 작성사항 변경 사유 : 사업 준공기간 연장

마. 관련도서는 중랑구 공원녹지과(☏02-2094-2353, 주무관 이흥규)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면적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면적 등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봉화산근린공원 일부 조성(신내9단지 앞 공원조성)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실제이용상황 및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계		9,000		9,000						
	중랑구 신내동 산136-11	임야	4,140	임야	4,140	전주이씨원천군파 종중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69-9				
	중랑구 신내동 산136-12	임야	1,514	임야	1,514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중랑구 신내동 산136-13	임야	3,346	임야	3,346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중랑구고시 제2011-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 실시계획 작성사항 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9호(2008.04.10)로 각각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되고 중랑구고시 제2009-8호(2009.02.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이 작성 고시된 봉화산근린공원(화약고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사항을 변경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중 랑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77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봉화산근린공원조성)
    나) 사업의 명칭 : 봉화산근린공원(화약고부지)조성
  3) 사업의 면적 : 15,361㎡
  4) 사업의 시행자 : 중랑구청장
  5)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당 초 : 작성고시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나) 변 경 : 작성고시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라. 실시계획 작성사항 변경사유 : 사업 준공기간 연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공원녹지과 ☏02-2094-2353 주무관 이흥규) 으로 문의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봉화산근린공원(화약고부지)조성

□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	실제이용상황 및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당초	중랑구 신내동 777	전	397	건물 부지	397	박학훈	동대문구 전농2동 103-312 삼성화약				
	변경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2	당초	중랑구 신내동 777-2	임야	982	임야	982	박학훈	동대문구 전농2동 103-312 삼성화약				
							박희주	서초구 방배동 881-26 방배2차 e 편한세상 201-1005호				
	변경						서울특별시장외 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외 1				
3	당초	중랑구 신내동 777-3	임야	6,995	화약고 부지	6,995	박학훈	동대문구 전농2동 103-312 삼성화약				
	변경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4	당초	중랑구 신내동 777-4	과수원	2,210	과수원	2,210	박학훈	동대문구 전농2동 103-312 삼성화약				
							박희주	서초구 방배동 881-26 방배2차 e 편한세상 201-1005호				
	변경						서울특별시장외 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외 1				
5	당초	중랑구 신내동 777-5	임야	3,224	임야	3,224	박학훈	동대문구 전농2동 103-312 삼성화약				
							박희주	서초구 방배동 881-26 방배2차 e 편한세상 201-1005호				
	변경						서울특별시장외 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외 1				
6	당초	중랑구 신내동 777-6	과수원	1,533	과수원	1,533	박학훈	동대문구 전농2동 103-312 삼성화약				
	변경						중랑구청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봉화산근린공원(화약고부지)조성
□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또는 면적(㎡)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중랑구 신내동 777	건물	조적조	99㎡	사무실 경비실	박학훈	동대문구 전농2동 103-312 삼성화약				
2	중랑구 신내동 777-3	가건물	세멘조	3동 39.67㎡	창고	박학훈	동대문구 전농2동 103-312 삼성화약				
3	중랑구 신내동 777-3	가건물	세멘조	3동 28㎡	창고	박학훈	동대문구 전농2동 103-312 삼성화약				
4	중랑구 신내동 777-3	가설물	조립식	19	초소	박학훈	동대문구 전농2동 103-312 삼성화약				
5	중랑구 신내동 777-3	콘테이너	콘테이너	2동 36㎡	창고	박학훈	동대문구 전농2동 103-312 삼성화약				

◈ 성북구고시 제2011-126호

도시계획시설(북악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56호(2006.7.27)로 도시계획시설(북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06-77호(2006.8.17)로 지형도면 승인되고,

2. 서울특별시성북구 고시 제2007-20호(2007.3.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서울특별시성북구 고시 제2007-69호(2007.8.9)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된 성북구 성북동 330-1번지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920-339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30-1번지외 1필지
(성북동 330-605번지) -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북악산도시자연공원)사업
- ◦ 사업의 명칭 : 교양시설(세중옛돌박물관) 건립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 사업의 면적 : 14,251㎡(시행면적:5,593㎡)
- ◦ 사업의 규모
  - 건물 1동(건축면적 508.85㎡, 연면적 2,429.73㎡/지상1층,지하3층)
  - 야외전시로 등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 성 명 : 재단법인 세중문화재단 이사장 천신일
- ◦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5-167번지(8/4)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 당 초 : 2007. 8. 9 ~ 2011. 12. 31
- ◦ 변 경 : 2007. 8. 9 ~ 201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성북구 성북동 330-1번지 외 1필지(변경없음)

구분	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	성북동330-1번지 외 1필지(330-605)	대지	17,633	14,251 (금회5,593㎡)	(재)세중문화재단	

◈ 성북구고시 제2011-127호

도시계획시설(북악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56호(2006.7.27)로 도시계획시설(북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06-77호(2006.8.17)로 지형도면 승인되고,
2. 서울특별시성북구 고시 제2009-1호(2009.1.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서울특별시성북구 고시 제2009-1호(2009.1.22)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된 성북구 성북동 330-1번지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920-339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1번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북악산도시자연공원)사업
- ◦ 사업의 명칭 : 교양시설(세중 옛돌 박물관) 건립

다. 사업시행 면적(변경없음) 2,170㎡
- ◦ 소로 및 산책로 조성 896㎡
- ◦ 교양시설(야외전시관) 1,266㎡
- ◦ 녹지 및 기타 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 성 명 : 재단법인 세중문화재단 이사장 천신일
- ◦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5-167번지(8/4)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 당초 : 2009. 1. 22 ~ 2011. 12. 31
- ◦ 변경 : 2009. 1. 22 ~ 201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변경없음)

구분	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	성북동 330-1번지	대지	12,040	2,170	(재)세중문화재단	

◈ 강북구고시 제2011-64호

미아제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1. 건설부고시 제1993-56호(1993.3.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4호(1998.2.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지구지정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7호(1994.2.12)로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 강북구고시 제1996-60호(1996.10.14), 강북구고시 제1997-62호(1997.7.26), 강북구고시 제1998-10호(1998.3.3), 강북구고시 제1999-36호(1999.8.19), 강북구고시 제2000-59호(2000.9.1), 강북구고시 제2005-18호(2005.3.24), 강북구고시 제2005-72호(2005.12.15), 강북구고시 제2006-69호(2006.11.23), 강북구고시 제2007-45호(2007.6.14), 강북구고시 제2009-78호(2009.12.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66호(2010.11.25)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미아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7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강 북 구 청 장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 지구명 :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지구
   -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
   - ○ 면 적 : 10,579㎡
2. 사업시행기간 변경
   - ○ 변경전 : 1994. 2. 11 ~ 2011. 12. 31
   - ○ 변경후 : 1994. 2. 11 ~ 2012. 12. 31
3. 사업시행자 : 강북구청장
4.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내용
   -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1년 연장)
   - ○ 기타사항 : 변경없음.

◈ 강북구고시 제2011-65호

미아제3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56호(2001.5.1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강북구고시 제2002-104호(2002.12.26)로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 강북구고시 제2005-73호(2005.12.7), 강북구고시 제2006-83호(2006.12.14), 강북구고시 제2007-52호(2007.6.14), 강북구고시 제2009-79호(2009.12.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67(2010.11.25)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미아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7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강 북 구 청 장

가.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지구명 : 미아제3주거환경개선지구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1724번지 일대
○ 면 적 : 19,042㎡
나. 사업시행기간
○ 변경전 : 2003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변경후 : 2003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다. 사업시행자 : 강북구청장
라.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내용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1년 연장)
○ 기타사항 : 변경 없음

◈ 강북구고시 제2011-66호

미아제4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56호(2001.5.1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강북구고시 제2002-104호(2002.12.26)로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 강북구고시 제2005-73호(2005.12.7), 강북구고시 제2006-83호(2006.12.14), 강북구고시 제2007-46호(2007.6.14), 강북구고시 제2009-80호(2009.12.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68(2010.11.25)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미아제4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7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강 북 구 청 장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지구명 : 미아제4주거환경개선지구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1395번지 일대
○ 면 적 : 22,127(㎡)
2. 사업시행기간
○ 변경전 : 2003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변경후 : 2003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강북구청장
4.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내용
가. 사업시행기간의 변경(1년 연장)
나. 기타사항 : 변경없음

◈ 강북구고시 제2011-67호

미아제5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5호(2000.1.27)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강북구고시 제2001-102호(2001.10.20)로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 강북구고시 제2003-12(2003.3.15), 강북구고시 제2004-102호(2004.12.15), 강북구고시 제2005-70호(2005.12.15), 강북구고시 제2006-79호(2006.12.14), 강북구고시 제2007-13호(2007.3.15), 강북구고시 제2009-81호(2009.12.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69(2010.11.25)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미아제5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7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강 북 구 청 장

가.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 지구명 : 미아제5주거환경개선지구
-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91-1005번지 일대
- ○ 면 적 : 9,308(㎡)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
- ○ 변경전 : 2001. 11. 1 ~ 2011. 12. 31
- ○ 변경후 : 2001. 11. 1 ~ 2012. 12. 31

다. 사업시행자 : 강북구청장

라.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내용
-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1년 연장)
- ○ 기타사항 : 변경없음

◈ 강북구고시 제2011-68호

수유제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1. 건설부고시 제340호(1990.6.8)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 205호(1992.6.25)로 개선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72호(1993.9.8)로 지구지정 변경, 강북구고시 제1997-52호(1997.7.7), 강북구고시 제1998-28호(1998.4.2), 강북구고시 제1999-35호(1999.8.19), 강북구고시 제2000-37호(2000.6.1), 강북구고시 제2000-69호(2000.10.9), 강북구고시 제2001-86호(2001.9.20), 강북구고시 제2001-101호(2001.10.15), 강북구고시 제2001-124호(2001.12.15), 강북구고시 제2002-59호(2002.8.16), 강북구고시 제2004-32호(2004.4.26), 강북구고시 제2004-39호(2004.5.10), 강북구고시 제2005-68호(2005.12.15), 강북구고시 제2006-80호(2006.12.14), 강북구고시 제2007-23호(2007.4.19),강북구고시 제2009-82(2009.12.23),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0-70호(2010.11.25)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수유제1지구 주거

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7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강 북 구 청 장

가.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 지구명 : 수유제1주거환경개선지구
-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486번지 일대
- ○ 면 적 : 34,429㎡

나. 사업시행기간
- ○ 변경전 : 1992년 7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 변경후 : 1992년 7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다. 사업시행자 : 강북구청장

라.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내용
-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1년 연장)
- ○ 기타사항 : 변경없음

◈ 강북구고시 제2011-69호

수유제3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78호(1996.4.4)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강북구고시 제1007-20호 (1997.3.29, 무진주택)로 개선계획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6호(1998.1.30)로 지구지정변경, 강북구고시 제1998-20호(1998.3.25, 삼흥연립)로 개선계획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55호 (1998.10.25)로 지구변경지정, 강북구고시 제1998-85호(1998.11.3), 강북구고시 제1999-69호 (2000.1.8), 강북구고시 제2000-91호(2000.12.11)로 개선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38호(2001.10.20)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강북구고시 2001-111호 (2001.11.5), 강북구고시 제2005-69호(2005.12.15), 강북구고시 제2006-81호 (2006.12.14), 강북구고시 제2007-49호(2007.6.14), 강북구고시 제2009-82호(2009.12.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71(2010.11.25)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수유제3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7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강 북 구 청 장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 지구명 : 수유제3주거환경개선지구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486번지 일대
○ 면 적 : 7,316.5㎡

2. 사업시행기간 변경
○ 변경전 : 1997년 3월 29일 ~ 2011년 12월 31일
○ 변경후 : 1997년 3월 29일 ~ 2012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강북구청장

4.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내용
가. 사업시행기간의 변경(1년 연장)
나. 기타사항 : 변경없음.

◈ 강북구고시 제2011-7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801호 외 4필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강 북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주차장 입안지역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수유동 486-801호 외 4필지	-	증) 610	610	-	

다. 관계도서 : 붙임참조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901-6846) 및 부동산정보과(901-658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유동 486-801)



Scale = 1/1,200

범 례	
신설	

지정권자	강북구청장
지정일자	2011. 12. .
고시년도	2011. 12. .
고시번호	강북구고시 제2011- 호
작 성 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작성년월일	2011. 12.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확인자	2차확인자	작성자	확인자
소속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직위	담당자	도로담당	도로관리과장	담당자	도시계획담당
직명	시설주사보	시설주사	시설사무관	시설주사보	시설주사
성명	김정훈	국중진	김수인	이충열	최광천
확인인					

◈ 도봉구고시 제2011-52호

도시관리계획(도봉무수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86호(2008.03.20)로 변경결정 고시된 도봉무수골 제1종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정비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도 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01	6	국지 도로	95.5 (34.5)	소로2-496 427-29번지	소로3-502 산66-17번지	일반 도로	2008.3.20 서고제2008-86호	
변경	소로	3	501	6	국지 도로	95.5 (34.5)	소로2-496 427-29번지	소로3-502 산66-17번지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3 - 501	소로 3 - 501	일부 폭원 변경	굴곡진 도로 선형을 직선으로 선형을 유지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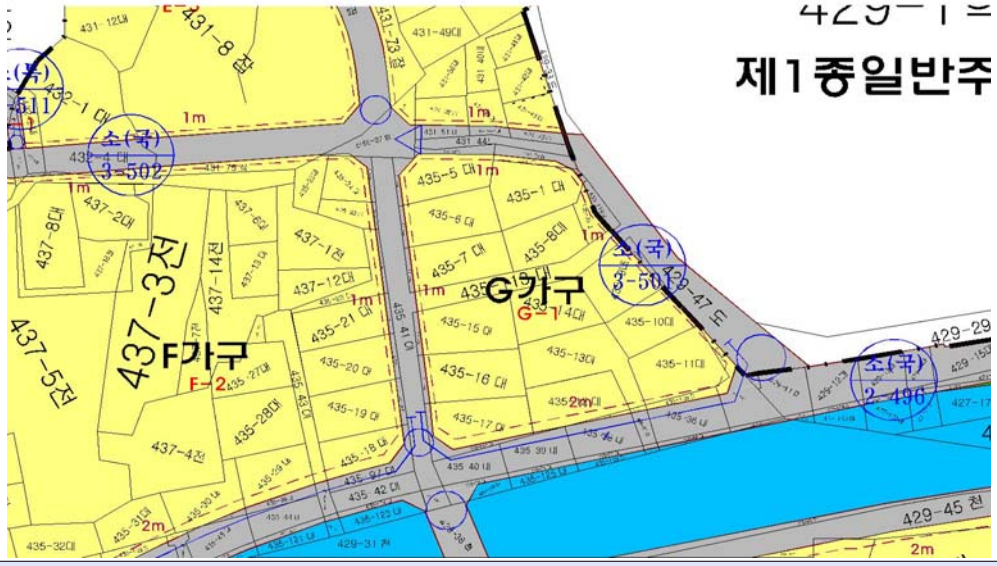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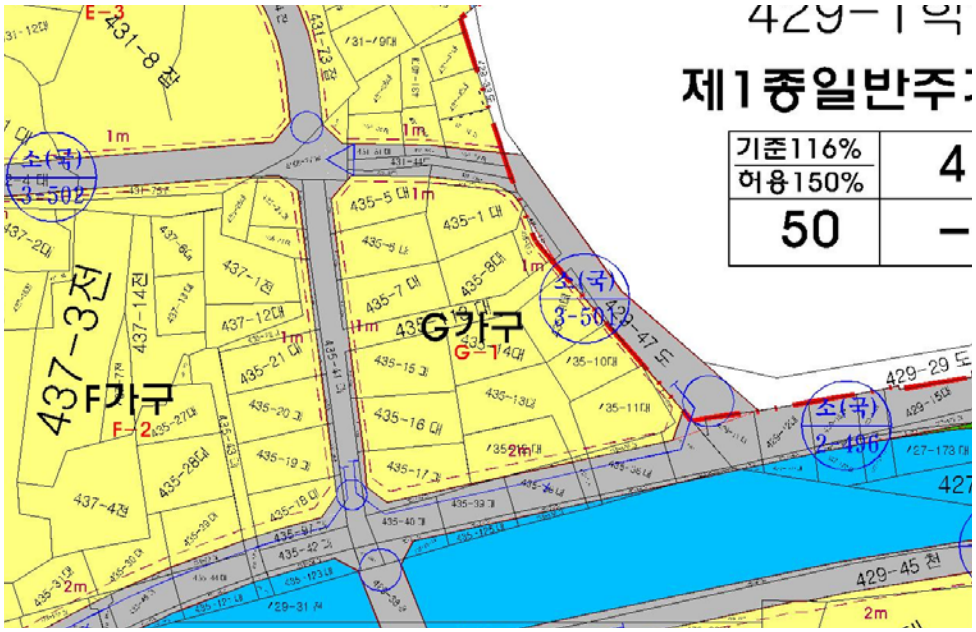
다.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289-180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 사항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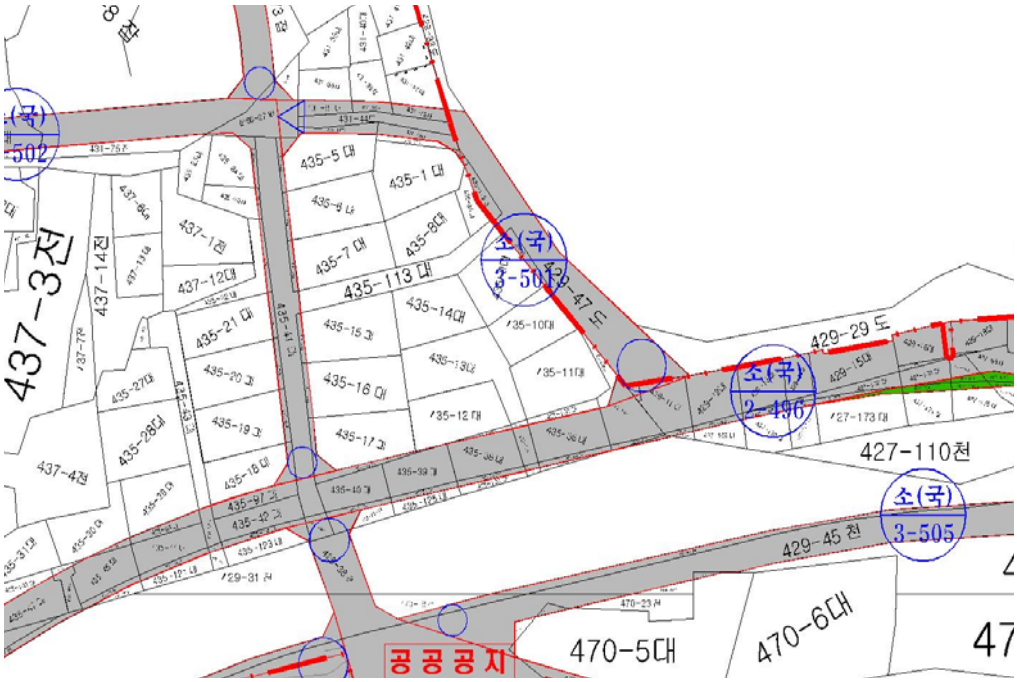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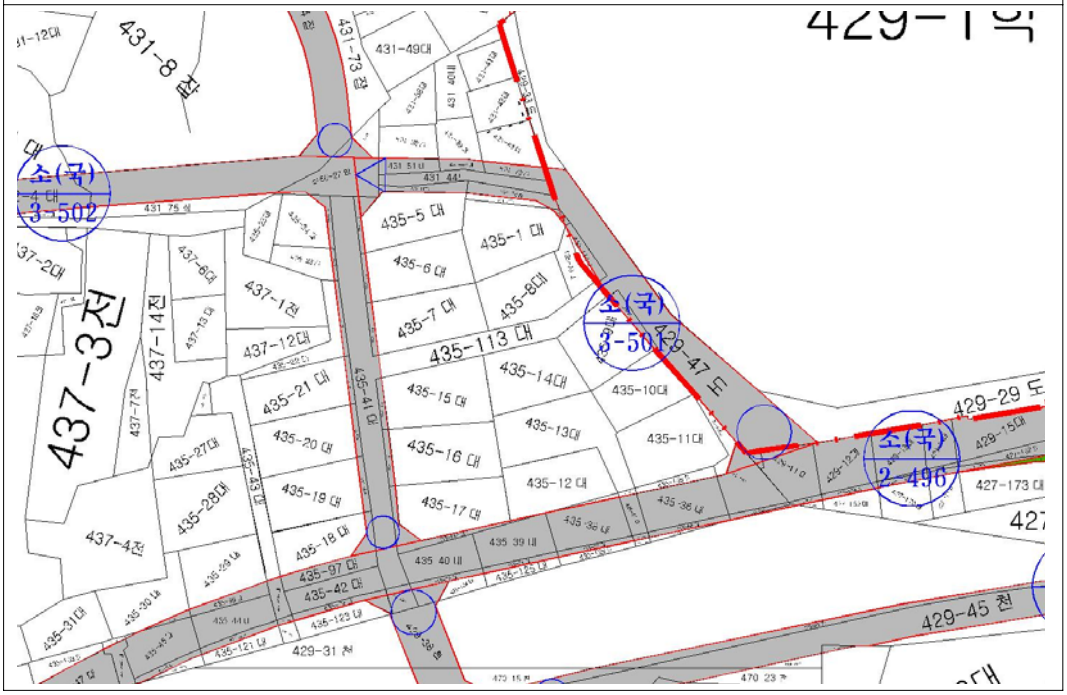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

기 정



변 경



◈ 도봉구고시 제2011-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87호(2010.12.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1-1호(2011. 3.24.)로 실시계획 인가하여 사업시행중인 도봉구 도봉동 626-25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나, 미 수령자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 서류는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289-186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6-2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2) 명 칭 :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주변 녹지조성사업

다.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인가고시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주변 녹지조성사업	도봉동 626-25번지 일대	녹지조성 : 313.6㎡ 보 상 : 토지 227.9㎡ (건물3동포함)	서울시고시 제2010-487호 (2010.12.30)	도봉구고시 제2011-1호 (2011.3.2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길 656 (방학동720번지)

마. 변경사항 : 준공예정일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11. 12. 30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2. 9.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관련 도서 :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289-1867)로 문의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주변 녹지조성

연번	구분	소재지지번	지목	지 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도봉동 626-25	성명	주 소	성명	
1	당초	도봉동 626-25	대	131.4	131.4	도봉구 도봉동 626-25	유광옥			131.4㎡중 75분의 36.5 (유광옥 지분)
						도봉구 도봉동 642 현대성우아파트 101-1701	홍종광	중구 회현동1가 203 (도봉구청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131.4㎡중 75분의 38.5 (홍종광 지분)
	변경	도봉동 626-25	대	131.4	131.4	도봉구 마들길 656	서울특별시 도봉구			131.4㎡중 75분의 36.5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분)
						도봉구 도봉동642 현대성우아파트 101-1701	홍종광	중구 회현동1가 203 (도봉구청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131.4㎡중 75분의 38.5 (홍종광 지분)
2	당초	도봉동 626-24	대	96.5	96.5	도봉구 도봉동 642 현대성우아파트 113-1510	진순용			96.5㎡중 11분의 3 (진순용 지분)
						도봉구 방학동720-18 방학동삼성래미안 아파트 104-404	정상숙			96.5㎡중 11분의 2 (정상숙 지분)
						도봉구 도봉동30-1 도봉한신아파트 111-1604	정홍란			96.5㎡중 11분의 2 (정홍란 지분)
						도봉구 도봉동30-1 도봉한신아파트 111-1008	정광미			96.5㎡중 11분의 2 (정광미 지분)
						마포구 창전동439 창전동 태영아파트 104-902	정상진			96.5㎡중 11분의 2 (정상진 지분)
	변경	도봉동 626-24	대	96.5	96.5	도봉구 마들길 656	서울특별시 도봉구			96.5㎡중 11분의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분)
						도봉구 방학동720-18 방학동삼성래미안 아파트 104-404	정상숙			96.5㎡중 11분의 2 (정상숙 지분)
						도봉구 마들길 656	서울특별시 도봉구			96.5㎡중 11분의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분)
						도봉구 마들길 656	서울특별시 도봉구			96.5㎡중 11분의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분)
						도봉구 마들길 656	서울특별시 도봉구			96.5㎡중 11분의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분)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주변 녹지조성

연번	구분	권리의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당초	도봉동626-25	건물	연와조평옥개 및 세멘와즙	1층 40.6㎡	도봉구 도봉동 642 현대성우 아파트 101-1701	홍종광	중구 회현동1가 203 (도봉구청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건물	연와조평옥개 및 세멘와즙	2.1㎡					
			보일러실		2.8㎡					
	변경	도봉동626-25	건물	연와조평옥개 및 세멘와즙	1층 40.6㎡	서초구 서초동 1312-3 롯데캐슬클래식 아파트 110-901	신승환	중구 회현동1가 203 (도봉구청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건물	연와조평옥개 및 세멘와즙	2.1㎡					
			보일러실		2.8㎡					
		도봉동626-25	건물	연와조평옥개 및 세멘와즙	1층 40.6㎡	도봉구 마들길 656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지분 서울특별시 도봉구 (70.44분의 40.44)
			건물	연와조평옥개 및 세멘와즙	2.1㎡					
			보일러실		2.8㎡					
2	당초	도봉동626-25 제1호	건물	연와조 세면와즙	1층 57.6㎡ 2층 57.6㎡	도봉구 도봉동 626-25	유광옥			
			건물	연와조 세면와즙	지하 8.7㎡					
			샷시		2.2㎡					
			창고		2.5㎡					
			대문		1개소					
			담장		1개소					
			계단		1개소					
	변경	도봉동626-25 제1호	건물	연와조 세면와즙	1층 57.6㎡ 2층 57.6㎡	도봉구 마들길 656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물	연와조 세면와즙	지하 8.7㎡					
			샷시		2.2㎡					
			창고		2.5㎡					
			대문		1개소					
			담장		1개소					
			계단		1개소					

□ 사업명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주변 녹지조성

연번	구분	권리의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	당초	도봉동 626-24	건물	세멘부록조, 연와조	64.6㎡	도봉구 도봉동642 현대성우 아파트 101-1510	진순용			공유지분 진순용 (11분의 3) 정상숙 (11분의 2) 정홍란 (11분의 2) 정광미 (11분의 2) 정상진 (11분의 2)
			건물	목조	3.7㎡	도봉구 방학동720-18 방학동삼성 래미안아파트 104-404	정상숙			
			계단		1개소	도봉구 도봉동30-1 도봉한신 아파트 111-1604	정홍란			
			담장		1개소	도봉구 도봉동30-1 도봉한신 아파트 111-1008	정광미			
						마포구 창전동439 창전동 태영아파트 104-902	정상진			
	변경	도봉동 626-24	건물	세멘부록조, 연와조	64.6㎡	도봉구 마들길 656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물	목조	3.7㎡					
			계단		1개소					
			담장		1개소					

◈ 서대문구고시 제2011 - 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시 고시 제2011-313호(2011.10.2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개발추진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청사
다.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2년 12월 30일
라. 사업규모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시행지 위치	규 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도시계획결정	비 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공공청사)	서대문구 북가좌동 337-15, 16호	면적 261.8㎡	인가일로부터 2012. 12.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3호 (2011.10.20)	북가좌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성명 : [붙임 참조]
사. 기타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개발추진단(☎02-330-16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북가좌동337-15, 16호 공공청사(주민커뮤니티시설)신축공사(A=261.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337-15	대	167.3	167.3	대지	국 (재무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337-16	대	94.5	94.5	대지	김병호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742-1 성원상떼빌팰리스 아파트203-601	근저당권자 : 중소기업은행 (공항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2가50	**근저당권16,800 만원**	
								채무자 : 친절한택시 주식회사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4-144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북가좌동337-16호 공공청사(주민커뮤니티시설)신축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337-16	대문	능형망	1식	대문	김병호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742-1 성원상떼빌팰리스 아파트203-601				
		담장	능형망	1식	담장	김병호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742-1 성원상떼빌팰리스 아파트203-601				

◈ 마포구고시 제2011-128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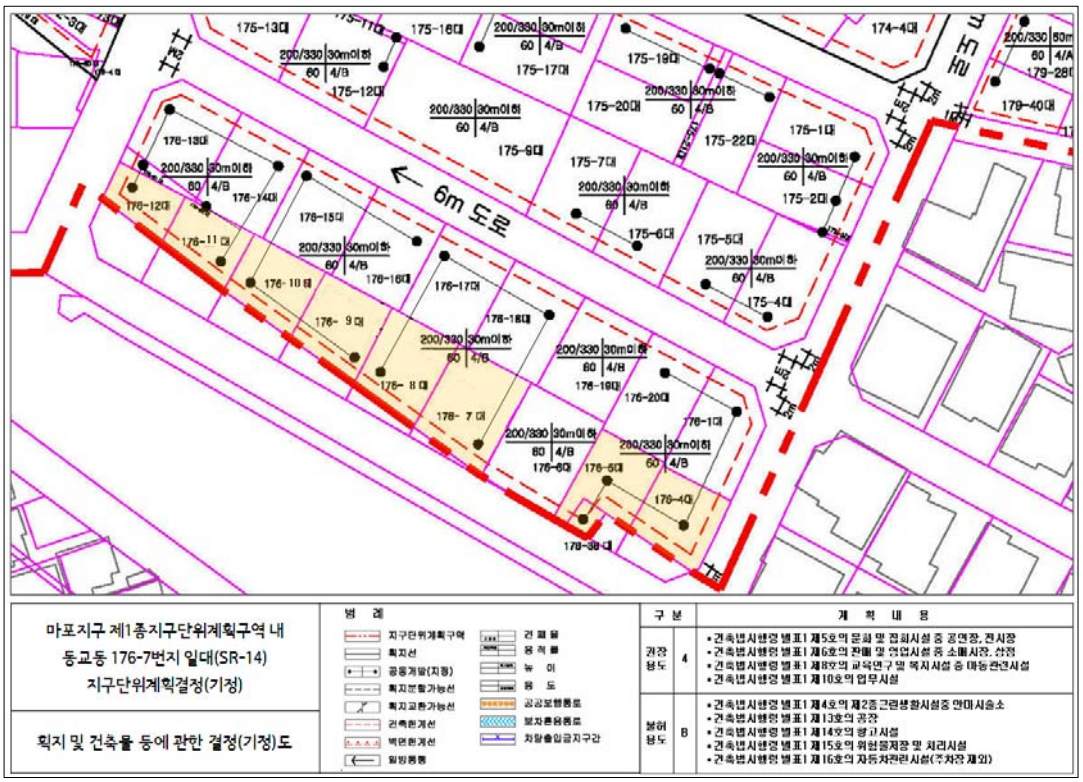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고시 2006-78호(2006.03.1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고시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6번지 일대'에 대한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제3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마 포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중 '획지 결정(변경)조서 : 공동개발'

구분	가구 번호	세부 변경내용					비 고
		지번			면적(㎡)	계획내용	
공동개발	SR-14	기정	동교동	176-1,4,5,20,38호	603.8	공동개발 지정	
			동교동	176-7,8,17,18호	652.3	공동개발 지정	
			동교동	176-10,9,15,16호	591.4	공동개발 지정	
			동교동	176-11,12,13,14,21,22호	520.3	공동개발 지정	
		변경	동교동	176-1,20호	333.6	공동개발 지정	176-4 제외 176-5,38 분리
			동교동	176-5,38호	138.3	공동개발 지정	
			동교동	176-17,18호	334.5	공동개발 지정	176-7,8 제외
			동교동	176-15,16호	336.2	공동개발 지정	176-9,10 제외
			동교동	176-13,14,21,22호	348.1	공동개발 지정	176-11,12 제외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02-3153-937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m 도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동교동 176-7번지 일대(SR-14)
지구단위계획결정(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범 례
구 분
계 획 내 용
6m 도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동교동 176-7번지 일대(SR-14)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범 례
구 분
계 획 내 용

◈ 마포구고시 제2011-13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90-1~176-32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마 포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도시계획시설(도로)입체적 결정을 통하여 철도시설에 의해 단절된 지역의 개별건축이 가능하고 서울시 新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로 진행 중인「홍대복합역사」개발계획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정거장 결정 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2-234	철도	광역철도(홍대정거장)	동교동 190-1	동교동 191-2	-	165	23,520	건고2006-382호 ('06.9.20)	-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83	6~8.7	국지도로	115	동교동 190-1	동교동 176-32	일반도로	-	-	입체적 결정(조서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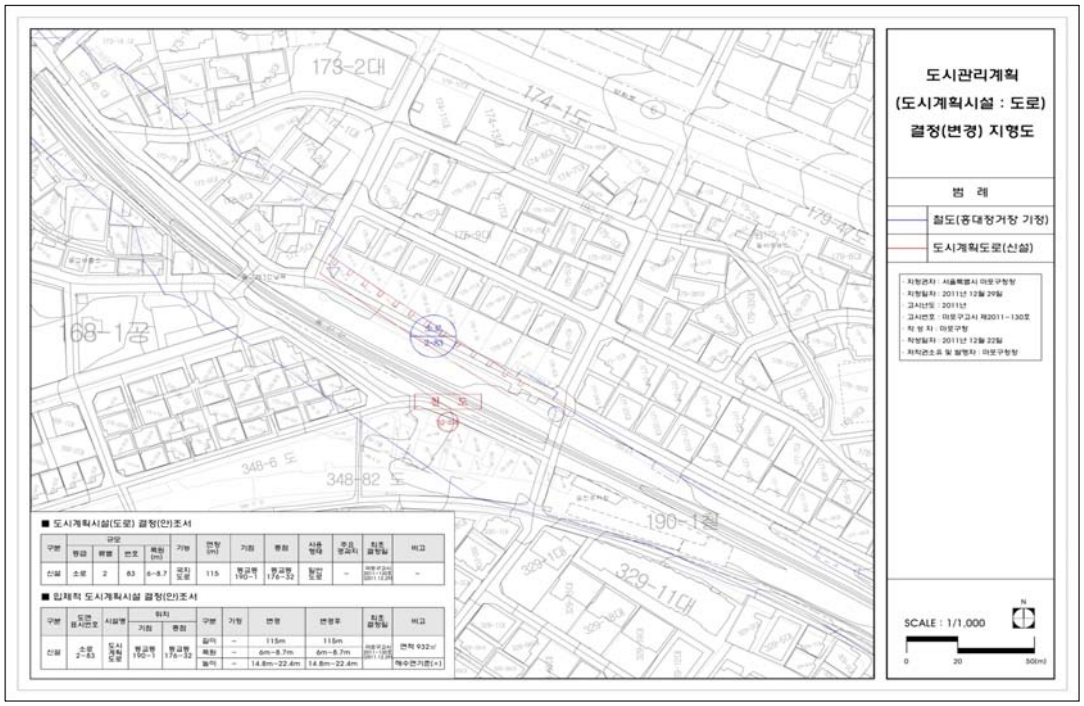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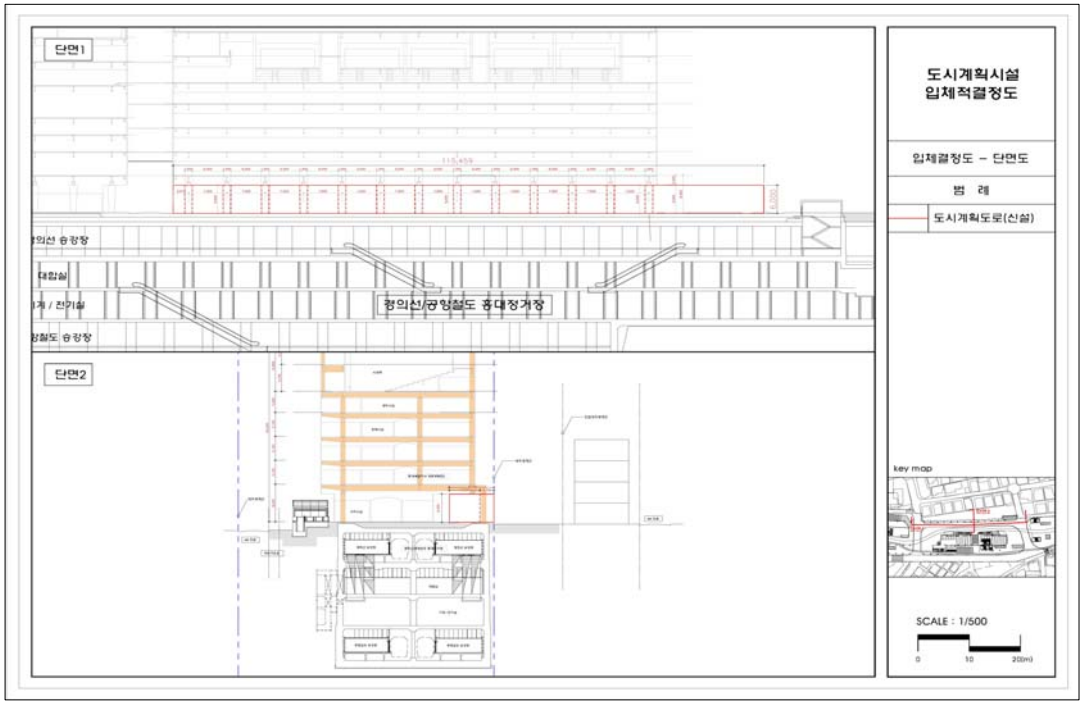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신설	소로2-83	도로	동교동 190-1	동교동 176-32	길이	-	115m	115m	-	면적 932㎡ 해수면기준(+)
					폭	-	6m~8.7m	6m~8.7m	-	
					높이	-	14.8m~22.4m	14.8m~22.4m	-	

2. 지형도면의 작성 : 마포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마포구 도시계획과(☎3153-93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고시 제2011-79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21호(2006.12.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우리구 화곡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1년 12월 15일 제5차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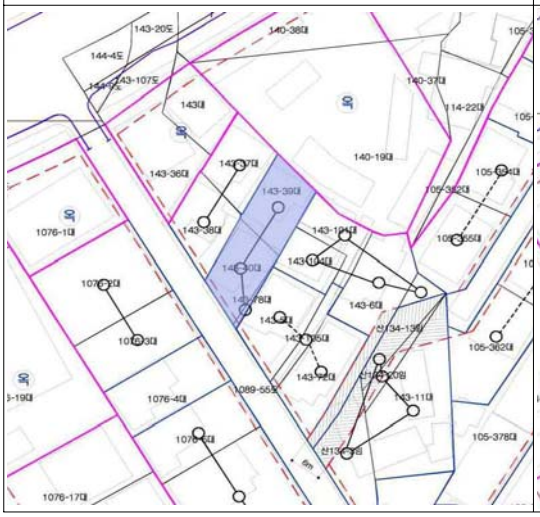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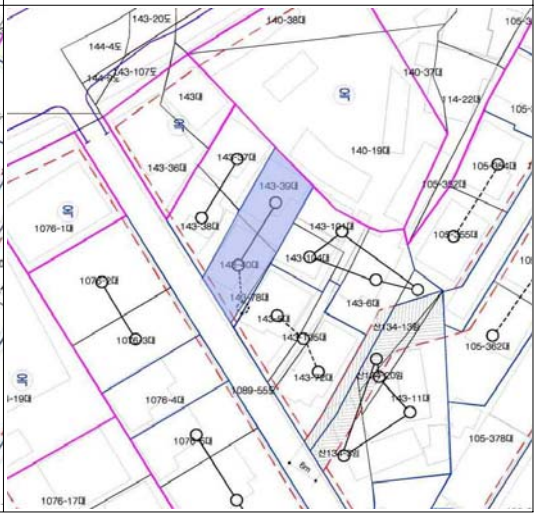
2011년 12월 29일
강 서 구 청 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적(㎡)	소유자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곡동 143-39호	142	이정옥	공동개발	공동개발	
	화곡동 143-40호	149	이정옥			
	화곡동 143-78호	10	권중, 장범상		단독개발	

2. 관계도면
-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38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 강서구고시 제2011-80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0호(2009.9.1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우리구 공항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1년 12월 15일 제5차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강 서 구 청 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적(㎡)	소유자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촌동 507-14	209	서 선 희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등촌동 507-23	210.2	허 금 자			

2. 관계도면
   -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 구로구고시 제2011-9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푸른수목원 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85호(2005.6.23)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푸른수목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50호(2005.11.1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4호(2005.12.15)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푸른수목원) 실시계획 인가되고 구로구고시 제2008-18호(2008.4.3) 및 구로구고시 제2010-19호(2010.4.22)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푸른수목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한 구로구 항동 10-1번지 일대 공원(수목원)조성 사업기간 변경사항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푸른수목원)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구 로 구 청 장

1.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구로구 항동 10-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 사업의 명칭 : 푸른수목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변경 없음) : 100,809㎡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 사업시행자 ┌성 명 : 서울특별시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 사업(보상)대행자 ┌성 명 : 구로구청장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길340(구로본동 435)

마.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
- ○ 당 초 : 2005. 12. 15 ~ 2011. 12. 31
- ○ 변 경 : 2005. 12. 15 ~ 2012. 12. 31까지

바.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조서(변경 없음) : 게재생략

사. 사용·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15-7595) 및 구로구 푸른도시과(☎02-860-2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연번	구분	지 번 (구로구 항동)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소유권 이전일)
						성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141,511	100,809						
1	변경없음	9-1	전	4,142	3,22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7.27
2	변경없음	10-1	전	602	60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1.11
3	변경없음	10-2	전	132	13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8.1.10
4	변경없음	10-3	전	3,365	3,36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0.26
5	변경없음	11	전	4,112	4,11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9.4.17
6	변경없음	11-1	전	3,620	3,62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9.4.17
7	변경없음	12-27	답	2,931	1,707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0.26
8	변경없음	12-15	도	71	71	이한원	항동 산8-1	-			
9	변경없음	12-28	잡	1,065	19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10	변경없음	31	유	780	78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10.3.23
11	변경없음	31-1	제	1,914	1,914	온수영농 조합법인	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			
12	변경없음	31-2	답	116	116	온수영농 조합법인	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			
13	변경없음	31-3	답	128	12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10.3.23
14	변경없음	31-4	답	242	242	온수영농 조합법인	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			
15	변경없음	33	유	15,081	15,08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10.3.23
16	변경없음	33-1	유	316	316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9.4.27
17	변경없음	33-2	유	3,189	3,189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9.4.27
18	변경없음	33-3	유	3,085	3,08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9.4.27
19	변경없음	33-4	유	3,756	3,756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9.4.27
20	변경없음	33-5	유	224	22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9.4.27
21	변경없음	43	답	1,111	1,11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22	변경없음	44-1	답	3,395	3,39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23	변경없음	45	답	489	489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연번	구분	지 번 (구로구 항동)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소유권 이전일)
						성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 권리명세	
24	변경없음	46	답	4,846	4,846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25	변경없음	47-1	답	1,114	1,11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26	변경없음	48-1	답	2,962	2,96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1.3
27	변경없음	48-2	답	2,542	2,54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28	변경없음	49	전	1,785	1,785	서울특별시	항동 42-3	-			
29	변경없음	50-2	전	1,435	1,435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 43동 1203호	-			
30	변경없음	50-3	전	1,345	1,34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12.26
31	변경없음	51-1	전	975	975	서울특별시	항동 51-1	-			
32	변경없음	51-2	철	7	7	박수영 외1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530 신동아아파트113-301				
33	변경없음	51-3	철	221	221	박수영 외1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530 신동아아파트113-301	-			
34	변경없음	52-1	전	1,613	1,613	서울특별시	오류동 14-99 동부골든Ⓐ 206-1006	박옥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77-2	근저당권 설정	
35	변경없음	52-4	철	274	125	김영순 외7	인천시 남구 숭의동 2-158	이청숙 외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622-2		
36	변경없음	52-3	철	625	625	김영순 외7	인천시 남구 숭의동 2-158	이청숙 외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622-2		
37	변경없음	55-3	전	810	81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1.4
38	변경없음	56-3	철	413	7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1.9
39	변경없음	57-1	철	205	205	국(건설교통부)		-			
40	변경없음	57-4	철	2,539	1,181	국(건설교통부)		-			
41	변경없음	58-3	철	294	24	심옥순(망)	고양군 용인면 공덕리 301	-			
42	변경없음	81-1	전	188	18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43	변경없음	81-2	전	595	59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에스케이 (주)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근저당권 부질권	2007.3.15
44	변경없음	81-6	철	314	49	국(건설교통부)		-			
45	변경없음	81-7	철	850	10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1.8
46	변경없음	92-1	전	1,448	1,44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47	변경없음	92-4	철	942	221	국(건설교통부)		-			

연번	구분	지 번 (구로구 항동)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소유권 이전일)
						성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48	변경없음	93	전	3,271	3,27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49	변경없음	94	전	1,428	1,42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50	변경없음	95	전	1,124	1,12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51	변경없음	96-1	답	417	417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52	변경없음	96-2	답	2,555	2,55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53	변경없음	96-3	전	598	59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54	변경없음	96-4	전	921	92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55	변경없음	97	전	1,546	1,546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4.27
56	변경없음	221-1	도	397	24	국(건설교통부)		-			
57	변경없음	222-45	구	7,713	3,699	국(건설부)		-			
58	변경없음	222-48	철	6,182	962	국(건설교통부)		-			
59	변경없음	222-49	철		52	국(건설교통부)		-			
60	변경없음	222-52	철		681	국(건설교통부)		-			
61	변경없음	222-46	구	5,035	1,719	국(건설부)		-			
62	변경없음	224-1	도	6,595	19	국(건설교통부)		-			
63	변경없음	산18-3	임	3,273	823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9.4
64	변경없음	산19-1	임	5,653	3,189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8.1.10
65	변경없음	산20-1	임	9,917	2,156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8.1.10
66	변경없음	산23-5	철	2,678	279	대한민국 (철도청)		-			

◈ 금천구고시 제2011-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2006-204(2006.06.08)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06-21(2006.06.22)호로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제2009-2(2009.01.1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된 시흥동 광로1-15~안양천 시계(시흥동 996)간 도로 일부구간(건영길~시흥사거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금천로:건영길~시흥사거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 명칭 : 중로-110호선(금천로 : 건영길~시흥사거리) 확장공사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중로	1	110	20~30 (30.0)	보조간선 도 로	500 (470)	시흥동 광로1-15	안양천시계 (시흥동996)	일반 도로	-	금천로확폭
실시 계획	중로	1	110	30.0	보조간선 도 로	268	시흥동 광로1-15	시흥동992	일반 도로	-	금천로확폭 20→3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구 분	착 수 일	준 공 일
당 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2년 06월 30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함.

○ 수요 또는 사용할 토지의 귀속

- 시흥동 1000-166외 33필지(편입면적 8404.0㎡) : 서울특별시

○ 대체 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 : 금천구

아. 기타사항(변경없음)

○ 공사구간에 접하는 시흥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결과를 착공전까지 금천구청에 제출

자. 변경사유

○ 지장물이설 지연 등에 의해 사업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준공을 연기하여 변경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로과(☎2627-1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 총괄집계표

공사명 : 금천로(건영길~시흥사거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고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34	8,404.0			34	8,404.0	9	6,073.4	-2	-165.4	7	5,908.0	25	2,330.6	2	165.4	27	2,496.0	
전																			
답																			
임야																			
대지	27	2,496.0			27	2,496.0	2	165.4	-2	-165.4			25	2,330.6	2	165.4	27	2,496.0	
도로	7	5,908.0			7	5,908.0	7	5,908.0			7	5,908.0							
구거																			
하천																			
유지																			
제방																			
과수원																			
공장																			
목장																			
학교용지																			
철도																			
묘지																			
수도																			
잡종지																			
종교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고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창고	/		/		/		/		/		/		/		/		/		
주차장	/		/		/		/		/		/		/		/		/		
주유소	/		/		/		/		/		/		/		/		/		
양어장	/		/		/		/		/		/		/		/		/		
사적지	/		/		/		/		/		/		/		/		/		
공원	/		/		/		/		/		/		/		/		/		
체육	/		/		/		/		/		/		/		/		/		
유원지	/		/		/		/		/		/		/		/		/		
염전	/		/		/		/		/		/		/		/		/		
광천지	/		/		/		/		/		/		/		/		/		
미지번	/		/		/		/		/		/		/		/		/		

국·공유지 편입용지 총괄집계표

공사명 : 금천로(건영길~시흥사거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구분	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비고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9	6,073.4	-2	-165.4	7	5,908.0	6	5,827.9	-2	-165.4	4	5,662.5	3	245.5			3	245.5	
전	/		/		/		/		/		/		/		/		/		
답	/		/		/		/		/		/		/		/		/		
임야	/		/		/		/		/		/		/		/		/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고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대지	2	165.4	-2	-165.4			2	165.4	-2	-165.4									
도로	7	5,908.0			7	5,908.0	4	5,662.5			4	5,662.5	3	245.5			3	245.5	
구거																			
하천																			
유지																			
제방																			
과수원																			
공장																			
목장																			
학교용지																			
철도																			
묘지																			
수도																			
잡종지																			
종교																			
창고																			
주차장																			
주유소																			
양어장																			
사적지																			
공원																			
체육																			
유원지																			
염전																			
광천지																			
미지번																			

용 지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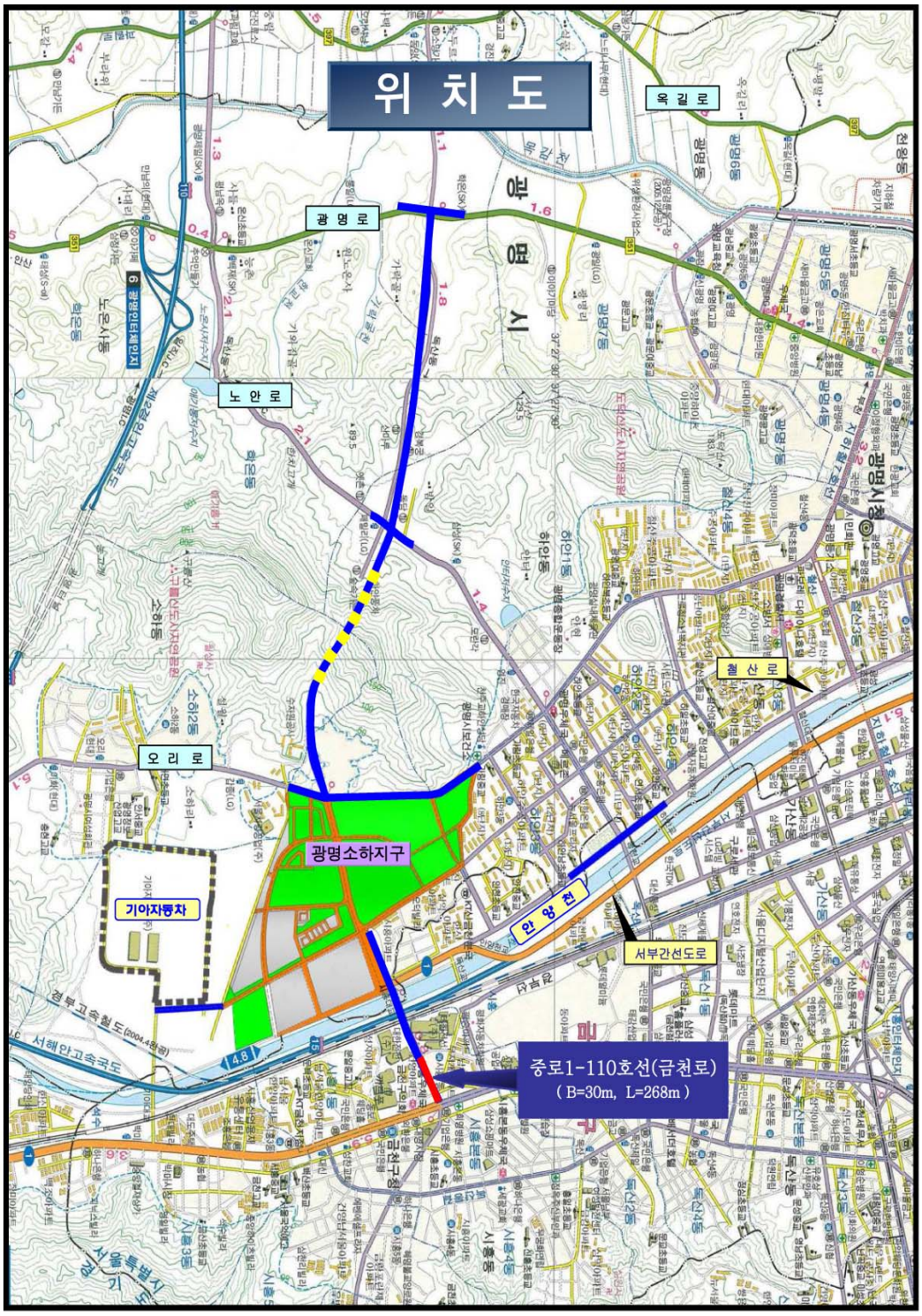
공사명 : 금천로(건영길~시흥사거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일련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당초	994-13	대	215.2	215.2	구자민	금천구 시흥동 837-28				
	변경	994-13	대	215.2	215.2	한국토지주택공사					
2	당초	994-14	대	111.0	111.0	박창기	관악구 봉천동 1706봉천우성아파트102-801				
						정복자	관악구 봉천동 1706봉천우성아파트102-801				
						김복남	관악구 봉천동 1706봉천우성아파트102-1302				
						김신기	관악구 봉천동 1706봉천우성아파트102-1302				
	변경	994-14	대	111.0	111.0	한국토지주택공사					
3	당초	995	대	94.5	94.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변경	995	대	94.5	94.5	대한주택공사					
4	당초	995-1	대	46.8	46.8	김철중	광진구 광장동 244-27	(주)한빛은행	광명지점	근저당권	
	변경	995-1	대	46.8	46.8	대한주택공사					
5	당초	995-67	대	70.9	70.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변경	995-67	대	70.9	70.9	대한주택공사					
6	당초	995-68	대	80.9	80.9	김재광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6-802				
	변경	995-68	대	80.9	80.9	대한주택공사					
7	당초	995-69	대	77.6	77.6	이순영	금천구 시흥동 995-4	농협중앙회	시흥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995-69	대	77.6	77.6	대한주택공사					
8	당초	995-70	대	78.7	78.7	윤문신	금천구 시흥동1010 벽산아파트 102-905	(주)조흥은행	시흥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995-70	대	78.7	78.7	한국토지주택공사					
9	변경없음	995-71	도	40.0	40.0	금천구	시흥대로 483				
10	당초	995-72	대	147.2	147.2	서로나눔재단	금천구 시흥동 995-29				
	변경	995-72	대	147.2	147.2	한국토지주택공사					
11	당초	995-73	대	81.0	81.0	서로나눔재단	금천구 시흥동 995-29				
	변경	995-73	대	81.0	81.0	한국토지주택공사					
12	당초	995-74	대	40.0	40.0	서로나눔재단	금천구 시흥동 995-29				
	변경	995-74	대	40.0	40.0	한국토지주택공사					
13	당초	995-75	대	115.2	115.2	서로나눔재단	금천구 시흥동 995-29				

일련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변경	995-75	대	115.2	115.2	한국토지주택공사					
14	당초	995-76	대	67.2	67.2	서로나눔재단	금천구 시흥동 995-29				
	변경	995-76	대	67.2	67.2	한국토지주택공사					
15	당초	995-77	대	64.9	64.9	서로나눔재단	금천구 시흥동 995-29				
	변경	995-77	대	64.9	64.9	한국토지주택공사					
16	당초	995-78	대	143.5	143.5	노순찬	금천구 가리봉동 123-67	(주)우리은행	여의도지점	근저당권	
	변경	995-78	대	143.5	143.5	대한주택공사					
17	당초	995-79	대	93.1	93.1	황의남	금천구 시흥동 995-38	(주)국민은행	일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995-79	대	93.1	93.1	대한주택공사					
18	당초	995-80	대	65.1	65.1	최일순	광명시철산동367철산한신아파트108-101	광명농협	광명시 하안동 33-7	근저당권	
	변경	995-80	대	65.1	65.1	대한주택공사					
19	당초	995-81	대	105.7	105.7	김인화	동대문구 장안동 298-5 신성연립 103	(주)외환은행	시흥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995-81	대	105.7	105.7	대한주택공사					
20	변경없음	995-82	대	86.4	86.4	오택균	금천구 시흥동 114-9				
21	당초	995-83	대	155.1	155.1	이경숙	양천구 신정동 1192-2 정은SKY빌3아파트1501	(주)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	근저당권	
	변경	995-83	대	155.1	155.1	대한주택공사					
22	당초	995-84	대	83.2	83.2	노연증	마포구 대흥동 660태영아파트 111-901	(주)신한은행	남가좌동지점	근저당권	
						김원임	구로구구로동 543-7				
	변경	995-84	대	83.2	83.2	한국토지주택공사					
23	당초	995-85	대	63.9	63.9	이송란	전남 순천시 주암면 갈마리353				
	변경	995-85	대	63.9	63.9	대한주택공사					
24	당초	995-86	대	86.3	86.3	이순한	금천구 시흥동 995-55	농협중앙회	시흥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995-86	대	86.3	86.3	대한주택공사					
25	당초	995-87	대	65.4	65.4	장동원	중구 을지로2가 49-1				
	변경	995-87	대	65.4	65.4	대한주택공사					
26	당초	995-88	대	64.9	64.9	장동원	중구 을지로2가 49-1				
	변경	995-88	대	64.9	64.9	대한주택공사					

일련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7	당초	995-89	대	127.3	127.3	유순자	금천구 시흥동 995-58				
	변경	995-89	대	127.3	127.3	대한주택공사					
28	당초	995-90	대	65.0	65.0	유순자	금천구 시흥동 995-58				
	변경	995-90	대	65.0	65.0	대한주택공사					
29	변경없음	1000-44	도	869.9	869.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30	변경없음	1000-46	도	2,413.1	2,413.1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31	변경없음	1000-164	도	80.3	80.3	금천구	시흥대로 483				
32	변경없음	1000-165	도	172.9	172.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33	변경없음	1000-166	도	2,206.6	2,206.6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34	변경없음	1000-167	도	125.2	125.2	금천구	시흥대로 483				
계	당초			34필지	8,404.0						
	변경			34필지	8,404.0						

중로1-110호선


위 치 도
옥 길 로
광 명 로
노 안 로
오 리 로
철 산 로
안 양 천
서부간선도로
광명소하지구
기아자동차
중로1-110호선(금천로)
(B=30m, L=268m)

◈ 금천구고시 제2011-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2006-105(2006.04.10)호 및 광명시고시 제2006-19(2006.05.01)호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07-20(2010.11.13)호로 인가된 대로2-1호선(금천지하차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ㅇ 명칭 : 대로2-1호선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대로	2	1	30~52	주 간 선 도 로	4,270	남부순환로일원	독산동764 일원	일반 도로	-	
실시 계획	대로	2	1	30~52	주 간 선도 로	4,270	남부순환로일원	독산동764 일원	일반 도로	-	금천교구간 30→39m 지하차도 - B=19.7m - L=41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ㅇ 시 행 자 : 대한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구 분	착 수 일	준 공 일
당 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2년 03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함.

○ 수요 또는 사용할 토지의 귀속
- 당 초 : 시흥동 664-7외 9필지(편입면적 13,625.0㎡) : 서울시
- 변 경 : 시흥동 664-7외 9필지(편입면적 13,696.5㎡) : 서울시

○ 대체 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
- 측도를 포함한 상부도로 : 금천구
- 지하차도 전구간 : 광명시

아. 변경사유

○ 지장물이설 지연 등에 의해 사업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준공을 연기하여 변경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로과(☎2627-1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 총괄집계표

공사명 : 광명소하지구 광역교통도로 건설공사(대로 2-1호선)

구분	총괄									비고
	당초			증감			변경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계	10	/	13,625.0		/	71.5	10	/	13,696.5	
전		/			/			/		
답		/			/			/		
임야		/			/			/		
대지		/			/			/		
도로	4	/	10,441.0		/	62.5	4	/	10,503.5	

구분	총괄									비고
	당초			증감			변경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구거		/			/			/		
하천	3	/	2,853.0		/	-64.0	3	/	2,789.0	
유지		/			/			/		
제방	1	/	273.0		/	73.0	1	/	346.0	
과수원		/			/			/		
공장		/			/			/		
목장		/			/			/		
학교용지		/			/			/		
철도		/			/			/		
묘지		/			/			/		
수도		/			/			/		
잡종지	2	/	58.0		/		2	/	58.0	
종교		/			/			/		
창고		/			/			/		
주차장		/			/			/		
주유소		/			/			/		
양어장		/			/			/		
사적지		/			/			/		
공원		/			/			/		
체육		/			/			/		
유원지		/			/			/		
염전		/			/			/		
광천지		/			/			/		
미지번		/			/			/		

편입용지 총괄집계표

공사명 : 광명소하지구 광역교통도로 건설공사(대로 2-1호선)

구분	총 계			광명시 하안동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비 고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필지 / 면적 (㎡)	필지 / 면 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 적 (㎡)	필지 / 면 적 (㎡)	필지 / 면 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 적 (㎡)	필지 / 면적 (㎡)	
계	16 / 29,746.0	/ 110.2	16 / 29,856.2	6 / 16,121.0	/ 38.7	6 / 16,159.7	10 / 13,625.0	/ 71.5	10 / 13,696.5	
전	/	/	/	/	/	/	/	/	/	
답	2 / 10.0	/	2 / 10.0	2 / 10.0	/	2 / 10.0	/	/	/	
임야	/	/	/	/	/	/	/	/	/	
대지	/	/	/	/	/	/	/	/	/	
도로	6 / 24,078.0	/ 189.2	6 / 24,267.2	2 / 13,637.0	/ 126.7	2 / 13,763.7	4 / 10,441.0	/ 62.5	4 / 10,503.5	
구거	/	/	/	/	/	/	/	/	/	
하천	5 / 5,327.0	/ -152.0	5 / 5,175.0	2 / 2,474.0	/ -88.0	2 / 2,386.0	3 / 2,853.0	/ -64.0	3 / 2,789.0	
유지	/	/	/	/	/	/	/	/	/	
제방	1 / 273.0	/ 73.0	1 / 346.0	/	/	/	1 / 273.0	/ 73.0	1 / 346.0	
과수원	/	/	/	/	/	/	/	/	/	
공장	/	/	/	/	/	/	/	/	/	
목장	/	/	/	/	/	/	/	/	/	
학교용지	/	/	/	/	/	/	/	/	/	
철도	/	/	/	/	/	/	/	/	/	
묘지	/	/	/	/	/	/	/	/	/	
수도	/	/	/	/	/	/	/	/	/	
잡종지	2 / 58.0	/	2 / 58.0	/	/	/	2 / 58.0	/	2 / 58.0	
종교	/	/	/	/	/	/	/	/	/	
창고	/	/	/	/	/	/	/	/	/	
주차장	/	/	/	/	/	/	/	/	/	
주유소	/	/	/	/	/	/	/	/	/	
양어장	/	/	/	/	/	/	/	/	/	
사적지	/	/	/	/	/	/	/	/	/	
공원	/	/	/	/	/	/	/	/	/	
체육	/	/	/	/	/	/	/	/	/	
유원지	/	/	/	/	/	/	/	/	/	
염전	/	/	/	/	/	/	/	/	/	
광천지	/	/	/	/	/	/	/	/	/	
미지번	/	/	/	/	/	/	/	/	/	

편입용지 동별집계표

공사명 : 광명소하지구 광역교통도로 건설공사(대로 2-1호선) (광명시 하안동)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고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6	16,121.0		38.7	6	16,159.7	4	16,111.0		38.7	4	16,149.7	2	10.0			2	10.0	
전																			
답	2	10.0			2	10.0							2	10.0			2	10.0	
임야																			
대지																			
도로	2	13,637.0		126.7	2	13,763.7	2	13,637.0		126.7	2	13,763.7							
구거																			
하천	2	2,474.0		-88.0	2	2,386.0	2	2,474.0		-88.0	2	2,386.0							
유지																			
제방																			
과수원																			
공장																			
목장																			
학교용지																			
철도																			
묘지																			
수도																			
잡종지																			
종교																			
창고																			
주차장																			
주유소																			
양어장																			
사적지																			
공원																			
체육																			
유원지																			
염전																			
광천지																			
미지번																			

편입용지 동별집계표

공사명 : 광명소하지구 광역교통도로 건설공사(대로 2-1호선)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고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0	13,625.0		71.5	10	13,696.5	8	13,567.0		71.5	8	13,638.5	2	58.0			2	58.0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4	10,441.0		62.5	4	10,503.5	4	10,441.0		62.5	4	10,503.5							
구거																			
하천	3	2,853.0		-64.0	3	2,789.0	3	2,853.0		-64.0	3	2,789.0							
유지																			
제방	1	273.0		73.0	1	346.0	1	273.0		73.0	1	346.0							
과수원																			
공장																			
목장																			
학교용지																			
철도																			
묘지																			
수도																			
잡종지	2	58.0			2	58.0							2	58.0			2	58.0	
종교																			
창고																			
주차장																			
주유소																			
양어장																			
사적지																			
공원																			
체육																			
유원지																			
염전																			
광천지																			
미지번																			

국·공유지 편입용지 총괄집계표

공사명 : 광명소하지구 광역교통도로 건설공사(대로 2-1호선)

구분	총 계						광명시 하안동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비 고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2	29,678.0		110.2	12	29,788.2	4	16,111.0		38.7	4	16,149.7	8	13,567.0		71.5	8	13,638.5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6	24,078.0		189.2	6	24,267.2	2	13,637.0		126.7	2	13,763.7	4	10,441.0		62.5	4	10,503.5	
구거																			
하천	5	5,327.0		-152.0	5	5,175.0	2	2,474.0		-88.0	2	2,386.0	3	2,853.0		-64.0	3	2,789.0	
유지																			
제방	1	273.0		73.0	1	346.0							1	273.0		73.0	1	346.0	
과수원																			
공장																			
목장																			
학교용지																			
철도																			
묘지																			
수도																			
잡종지																			
종교																			
창고																			
주차장																			
주유소																			
양어장																			
사적지																			
공원																			
체육																			
유원지																			
염전																			
광천지																			
미지번																			

국·공유지별 편입용지 집계표

공사명 : 광명소하지구 광역교통도로 건설공사(대로 2-1호선) (국토해양부)

구분	총 계						광명시 하안동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비 고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2	2,474.0		-88.0	2	2,386.0	2	2,474.0		-88.0	2	2,386.0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구거																			
하천	2	2,474.0		-88.0	2	2,386.0	2	2,474.0		-88.0	2	2,386.0							
유지																			
제방																			
과수원																			
공장																			
목장																			
학교용지																			
철도																			
묘지																			
수도																			
잡종지																			
종교																			
창고																			
주차장																			
주유소																			
양어장																			
사적지																			
공원																			
체육																			
유원지																			
염전																			
광천지																			
미지번																			

국·공유지별 편입용지 집계표

공사명 : 광명소하지구 광역교통도로 건설공사(대로 2-1호선) (서울특별시)

구분	총 계						광명시 하안동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비 고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8	13,567.0		71.5	8	13,638.5							8	13,567.0		71.5	8	13,638.5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4	10,441.0		62.5	4	10,503.5							4	10,441.0		62.5	4	10,503.5	
구거																			
하천	3	2,853.0		-64.0	3	2,789.0							3	2,853.0		-64.0	3	2,789.0	
유지																			
제방	1	273.0		73.0	1	346.0							1	273.0		73.0	1	346.0	
과수원																			
공장																			
목장																			
학교용지																			
철도																			
묘지																			
수도																			
잡종지																			
종교																			
창고																			
주차장																			
주유소																			
양어장																			
사적지																			
공원																			
체육																			
유원지																			
염전																			
광천지																			
미지번																			

국·공유지별 편입용지 집계표

공사명 : 광명소하지구 광역교통도로 건설공사(대로 2-1호선) (광명시)

구분	총 계						광명시 하안동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비 고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2	13,637.0		126.7	2	13,763.7	2	13,637.0		126.7	2	13,763.7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2	13,637.0		126.7	2	13,763.7	2	13,637.0		126.7	2	13,763.7							
구거																			
하천																			
유지																			
제방																			
과수원																			
공장																			
목장																			
학교용지																			
철도																			
묘지																			
수도																			
잡종지																			
종교																			
창고																			
주차장																			
주유소																			
양어장																			
사적지																			
공원																			
체육																			
유원지																			
염전																			
광천지																			
미지번																			

사유지 편입용지 총괄집계표

공사명 : 광명소하지구 광역교통도로 건설공사(대로 2-1호선)

구분	총 계						광명시 소하동						광명시 하안동						비 고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4	68.0			4	68.0	2	10.0			2	10.0	2	58.0			2	58.0	
전																			
답	2	10.0			2	10.0	2	10.0			2	10.0							
임야																			
대지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과수원																			
공장																			
목장																			
학교용지																			
철도																			
묘지																			
수도																			
잡종지	2	58.0			2	58.0							2	58.0			2	58.0	
종교																			
창고																			
주차장																			
주유소																			
양어장																			
사적지																			
공원																			
체육																			
유원지																			
염전																			
광천지																			
미지번																			

용 지 조 서

공사명 : 광명소하지구 광역교통도로 건설공사 (대로 2-1호선)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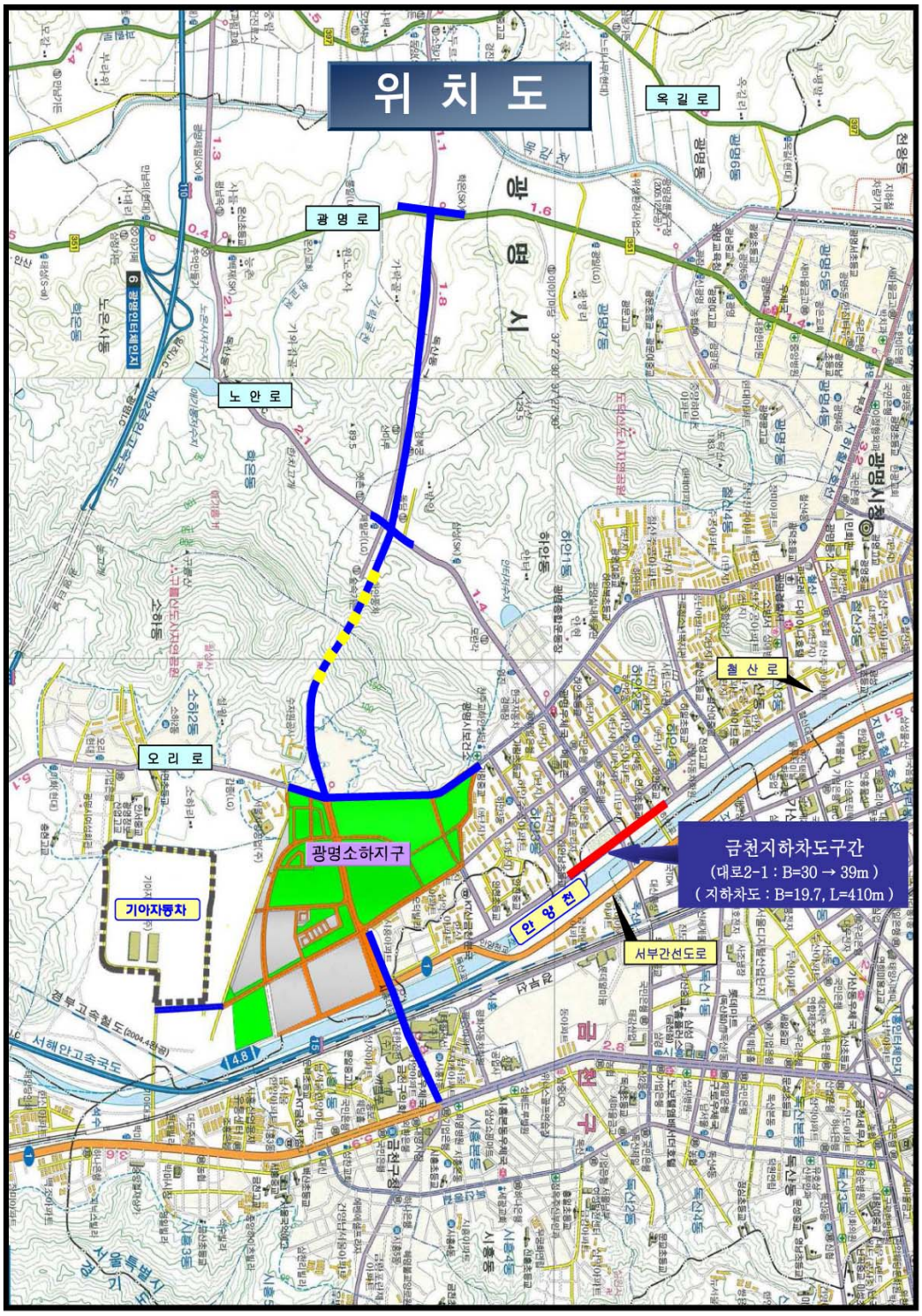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변경없음	독산동	664-7	잡	20.0	20.0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	변경없음	독산동	668-41	천	904.0	904.0	서울시					
3	당초	독산동	668-42	제	4,299.0	273.0	서울시					
	변경	독산동	668-53	제	346.0	346.0	서울시					
4	당초	독산동	668-46	천	4,680.0	932.0	서울시					미등기
	변경	독산동	668-54	천	868.0	868.0	서울시					
5	변경없음	독산동	668-49	천	1,017.0	1,017.0	서울시					
6	변경없음	독산동	668-50	도	80.0	80.0	서울시					
7	당초	독산동	668-51	잡	38.0	38.0	유윤수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1-24				
	변경	독산동	668-51	잡	38.0	38.0	대한주택공사					
8	당초	독산동	1084	도	1,108.4	1,049.0	서울시					
	변경	독산동	1084-1	도	1,053.1	1,053.1	서울시					
9	당초	독산동	1085	도	4,624.0	1,042.0	서울시					
	변경	독산동	1085-1	도	1,054.9	1,054.9	서울시					
10	당초	독산동	1087	도	8,624.8	8,270.0	서울시					
	변경	독산동	1087-2	도	8,315.5	8,315.5	서울시					
계	당초				10필지	13,625.0						
	변경				10필지	13,696.5						

용 지 조 서

공사명 : 광명소하지구 광역교통도로 건설공사 (대로 2-1호선) (광명시 하안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당초	하안동	135-15	답	5.0	5.0	유윤수	서울시 서대문구 창전동 501-24				
	변경	하안동	135-15	답	5.0	5.0	대한주택공사					
2	당초	하안동	137-31	답	5.0	5.0	유윤수	서울시 서대문구 창전동 501-24				
	변경	하안동	137-31	답	5.0	5.0	대한주택공사					
3	당초	하안동	710	도	23,718.6	10,500.0	광명시					
	변경	하안동	710-1	도	10,623.7	10,623.7	광명시					
4	당초	하안동	716	도	7,610.9	3,137.0	광명시					
	변경	하안동	716-1	도	3,140.0	3,140.0	광명시					
5	당초	하안동	800-8	천	54,284.0	2,330.0	국	건설교통부				
	변경	하안동	800-16	천	2,262.0	2,262.0	국	건설교통부				
6	당초	하안동	852-1	천	23,941.0	144.0	국	건설교통부				
	변경	하안동	852-4	천	124.0	124.0	국	건설교통부				
계	당초				6필지	16,121.0						
	변경				6필지	16,159.7						

대로2-1호선


위 치 도
옥 길 로
광 명 로
노 안 로
오 리 로
철 산 로
광명소하지구
기아자동차
금천지하차도구간
(대로2-1 : B=30 → 39m)
(지하차도 : B=19.7, L=410m)
안 양 천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시
소하동
하안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철산동
시흥동
관문동
관문1동
관문2동
관문3동
관문4동
관문5동
관문6동
관문7동

◈ 동작구고시 제2011-1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04-58호(2004.06.25)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99호(2010.12.29)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상도동 301-226 ~ 286-8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기간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1. 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01-226 ~ 286-8간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다. 사업의명칭 : 상도동 301-226 ~ 286-8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 규모 : 폭원 6m, 연장 110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일신·성도 재건축조합 조합장 도종록
                갑을건설(주) 대표이사 박한상
      ○ 주 소 : 동작구 상도동 286-7
                용산구 갈월동 2-5 갑을빌딩 9층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주소, 성명 : 별첨

2. 변경 내용(준공예정일)
   가. 기정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1.12.31
   나. 변경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2.12.31

3. 변경 사유
   - 사업부지 내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 지연으로 준공예정기일 변경

4.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지장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서초구고시 제2011-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1-66호(2011.11.17)로 실시계획 고시한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의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485번지(변경 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방배동 소로3-1호선 개설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B=2.3m, L=16.8m(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5.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11. 12. 30
   변경 : 2011.1.17 ~ 2012. 03.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 생략(변경 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본 도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관리청인 서초구청에 귀속됨.

◈ 강남구고시 제2011-7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4호('85.03.26)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03-12호(2003.02.28) 및 제2011-17호(2011.04.29)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6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자동차정류장
- 명 칭 : 한국도심공항터미널

○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 면적 : 13,000.5 ㎡ - 변경 없음

· 규모 (변경)

- 건축면적 : 6,117.73 ㎡ - 변경 없음
- 연 면 적 : 변경 없음(66,560.61㎡)

⇒ 용도변경 : 지상4층 513.00㎡[대중음식점⇒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6 : 한국도심공항(주) 대표이사 최광식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11. 1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동 없음) :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송파구고시 제2011-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문정동 114-1외 1필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 의거하여 결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공공청사	동주민센타	송파구 새말로 19길 6 (문정동 114-4, 114-1)	1,232.5		

나.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다.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300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 공 고

◈ 동대문구공고 제2011-1158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동대문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토목과(☏2127-4814), 도시계획과(☏2127-45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동 대 문 구 청 장

□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사업비:백만원)

시 설 별	시 행 기 간 별									비 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년차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계	51	78,226	88,221	5	2,264	6,720	47	75,962	81,501	
도 로	48	72,010	59,254	4	2,264	6,720	44	69,746	52,534	
공공공지	1	432	86	-	-	-	1	432	86	
주차장	1	1,175	2,295	-	-	-	1	1,175	2,295	
사회복지시설	1	4,609	26,586	-	-	-	1	4,609	26,586	

□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연번	시설별	위 치 (사업명)	사업 기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계	시비	구비		
1	도로	휘경동 281-57번지 도로개설	2012	4	16	64	340		340		340		1단계
2	도로	답십리동 3-1간 도로개설	2012~2013	10	100	1,000	2,680		2,680		2,680		1단계
3	도로	제기동149번지 종암초교주변도로개설	2012~2013	6	155	930	2,500		2,500		2,500		1단계
4	도로	이문동 309번지주변 도로개설	2013~2014	6	45	270	1,200		1,200		1,200		1단계

연번	시설별	위 치 (사업명)	사업 기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계	시비	구비		
5	도로	장안동284번지주변 도로개설	2015이후	8	60	480	800		800		800		2단계
6	도로	용두동 122~255간 도로개설	2015이후	8	410	3,280	1,200		1,200		1,200		2단계
7	도로	청량리동235-13호 가각정리사업	2015이후			40	200		200		200		2단계
8	도로	이문동 204~242간 도로개설	2015이후	6	23	138	600		600		600		2단계
9	도로	용두동 129~237간 도로개설	2015이후	10	200	2,000	1,100		1,100		1,100		2단계
10	도로	휘경동49~43간 도로개설	2015이후	10	340	3,400	4,137		4,137		4,137		2단계
11	도로	휘경동276-308번지주변 도로개설	2015이후	10	70	700	1,000		1,000		1,000		2단계
12	도로	이문동305번지외1개소 도로개설	2015이후	6	41	246	1,000		1,000		1,000		2단계
13	도로	이문동220~167간 도로개설	2015이후	6	171	1,026	2,000		2,000		2,000		2단계
14	도로	이문동363-15외3개소 도로개설	2015이후	4	120	480	2,000		2,000		2,000		2단계
15	도로	장안동94~194간 도로개설	2015이후	10	1,810	18,100	2,000		2,000		36,000		2단계
16	도로	제기동268성일중교 주변도로개설	2015이후	8	165	1,320	2,580		2,580		2,580		2단계
17	도로	이문동343~346간 도로개설	2015이후	8	350	2,800	1,500		1,500		1,500		2단계
18	도로	용두동 52~54간 도로개설	2015이후	8	90	720	1,000		1,000		1,000		2단계
19	도로	신설동 25~89간 도로개설	2015이후	4	120	480	350		350		350		2단계
20	도로	답십리동 765~738간 도로개설	2015이후	10	120	1,200	1,600		1,600		1,600		2단계
21	도로	휘경동 191~183간 도로개설	2015이후	4	51	204	450		450		450		2단계
22	도로	전농동 55~60주변 도로개설	2015이후	8	200	1,600	2,800		2,800		2,800		2단계

연번	시설별	위 치 (사업명)	사업 기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계	시비	구비		
23	도로	전농동 46~59간 도로개설	2015이후	8	310	2,480	1,100		1,100		1,100		2단계
24	도로	제기동 139~250간 도로개설	2015이후	6	390	2,340	800		800		800		2단계
25	도로	제기동 67~66간 도로개설	2015이후	4	200	800	554		554		554		2단계
26	도로	용두동 254~255간 도로개설	2015이후	8	245	1,960	2,500		2,500		2,500		2단계
27	도로	제기동 146~67간 도로개설	2015이후	6	100	600	880		880		880		2단계
28	도로	청량리동 449~877간 도로개설	2015이후	6	140	840	2,000		2,000		2,000		2단계
29	도로	종암대교~월곡시민아파트간 도로개설	2015이후	10	480	4,800	3,700		3,700		3,700		2단계
30	도로	전농동 150~152간 도로개설	2015이후	6	290	1,740	950		950		950		2단계
31	도로	청량리동 367~442간 도로개설	2015이후	8	40	320	500		500		500		2단계
32	도로	청량리동 205번지 도로개설	2015이후	6	18	108	600		600		600		2단계
33	도로	전농동 46~52간 도로개설	2015이후	8	300	2,400	2,200		2,200		2,200		2단계
34	도로	전농동 204~206간 도로개설	2015이후	8	70	560	212		212		212		2단계
35	도로	전농동 199~129간 도로개설	2015이후	6	140	840	230		230		230		2단계
36	도로	신설동 92번지주변 도로개설	2015이후	4	96	384	130		130		130		2단계
37	도로	용두동74-1~74-6간 도로개설	2015이후	8	92	736	1,242		1,242		1,242		2단계
38	도로	전농동534-1~530-64 도로개설	2015이후	8	40	320	493		493		493		2단계
39	도로	답십리동1번지주변 도로개설	2015이후	6	160	960	1,000		1,000		1,000		2단계
40	도로	전농동295-138간 도로개설	2015이후	8	400	3,200	3,000		3,000		3,000		2단계

연번	시설별	위 치 (사업명)	사업 기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계	시비	구비		
41	도로	회기동16-9~339-20 도로개설	2015이후	8	340	2,720	2,138		2,138	1,497	641		2단계
42	도로	회기동1-1~3-15 도로개설	2015이후	6	74	444	5		4	3	1		2단계
43	도로	회기동60-285~45-35 도로개설	2015이후	8	177	1,416	1,484		1,484	1,039	445		2단계
44	도로	회기동45-56~54-151 도로개설	2015이후	8	56	448	12		12	8	4		2단계
45	도로	회기동16-11~33-1 도로개설	2015이후	4	95	380	237		237	166	71		2단계
46	도로	회기동45-58~52 도로개설	2015이후	4	85	340	103		103	72	31		2단계
47	도로	회기동73-9~62-62 도로개설	2015이후	2~6	78	312	127		127	89	38		2단계
48	도로	전농동150-84~150-1도로개설	2015이후	4	21	84	20		20		20		2단계
49	공공공지	전농동 103-320번지 일대	2015이후			432	86		86		86		2단계
50	주차장	이문동 220-20일대	2015이후			1,175	2,295		2,295	1,377	918		2단계
51	사회복지시설	휘경동 49-189일대	2015이후			4,609	26,586	3,000	23,586	23,558	28		2단계

◈ 성북구공고 제2011-1204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1.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재생과(☎920-37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성 북 구 청 장

□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 설 별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5년차)		3단계(6년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건수	88	349,883	11	18,467	7	14,812	70	316,604	
	사업비 (백만원)		192,477		22,536		23,192		146,749	
도로	건수	88	349,883	11	18,467	7	14,812	70	316,604	
	사업비 (백만원)		192,477		22,536		23,192		146,749	

□ 2012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시설부문	사업명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2-2016년 이후)							
				폭(m)	연장(m)	면적(㎡)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계	시비	구비			
도로	안암동5가126-1~안암동5가 산1-29	1	2011.1~	10	690	6,900	7,658	7,658		7,658		7,658			
도로	정릉동 779~정릉동 807	2	2011.1~	6	80	960	500	500		500		500			
도로	정릉동 820-7 ~ 817-22	3	2013.1~	6	30	180	500	500		500		500			
도로	동소문동7가 5~7-1	4	2013.1~	15	35	525	1,142	1,142		1,142		1,142			
도로	석관동 189-6~석관동 206-7	5	2013.1~	6	199	1,194	700	700		700		700			
도로	하월곡동 73-21~하월곡동73-83	6	2013.1~	8	130	1,040	550	550		550		550			
도로	하월곡동53-9~하월곡동 22-34	7	2013.1~	6	125	750	2,150	2,150		2,150		2,150			
도로	석관동 324-172~석관동 252-1	8	2014.1~	6	150	900	2,160	2,160		2,160		2,160			
도로	하월곡동90-1977,하월곡동90-907	9	2014.1~	8	306	2,448	3,000	3,000		3,000		3,000			
도로	하월곡동70-129~하월곡동70-33	10	2014.1~	6	365	2,190	3,000	3,000		3,000		3,000			
도로	월곡동150~월곡동191	11	2014.1~	6	230	1,380	1,176	1,176		1,176		1,176			

사업·시설부문	사업명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2-2016년 이후)							
				폭(m)	연장(m)	면적(㎡)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계	시비	구비			
도로	하월곡동82-245~하월곡동80-74	12	2015.1~	6	254	1,524	636	636		636		636			
도로	정릉동567-1~돈암동584-2	13	2015.1~	6~12	350	2,100	1,260	1,260		1,260		1,260			
도로	정릉동 183-13~정릉동966-95	14	2015.1~	7.7~8.2	95	760	1,200	1,200		1,200		1,200			
도로	석관동 72-1~석관동301-1	15	2015.1~	8	392	3,136	8,400	8,400		8,400		8,400			
도로	안암동5가156-3~안암동5가163-1	16	2015.1~	6	155	1,240	4,560	4,560		4,560		4,560			
도로	석관동 123-1~석관동89	17	2016.1~	8	269	2,152	5,040	5,040		5,040		5,040			
도로	동소문동4가271~동소문동4가278-1	18	2016.1~	15	260	3,900	2,096	2,096		2,096		2,096			
도로	석관동 124-4 ~ 석관동 77-5	19	2017.1~	8~10	312	2,496	955	955		955		955			
도로	종암동45-30~종암동46-3	20	2017.1~	6	144	864	443	443		443		443			
도로	돈암동 509-35~돈암동509-38	21	2017.1~	8	80	640	780	780		780		780			
도로	정릉동848-10~846-2	22	2017.1~	10	90	900	486	486		486		486			
도로	석관동241-8~석관동215-10	23	2017.1~	6~10	163	778	1,800	1,800		1,800		1,800			
도로	성북동45-14~성북동37-1	24	2017.1~	10	33	330	1,076	1,076		1,076		1,076			
도로	삼선교~불광동(대1-12)	25	2017.1~	25~29	7,750	213,125	44,400	44,400		44,400	44,400				
도로	정릉동365-4~정릉동404-3	26	2017.1~	10	380	3,800	3,839	3,839		3,839		3,839			
도로	안암동3가132-2~안암동3가133-48	27	2017.1~	6~7	320	1,920	1,939	1,939		1,939		1,939			
도로	성북동산7-54~성북동7-23	28	2017.1~	6	131	786	361	361		361		361			
도로	정릉동771-46~정릉동966-1	29	2017.1~	10	65	650	1,074	1,074		1,074		1,074			

사업·시설부문	사업명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2-2016년 이후)							
				폭(m)	연장(m)	면적(㎡)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계	시비	구비			
도로	정릉동223~정릉동410-1	30	2017.1~	6	56	336	246	246		246		246			
도로	하월곡동96-8~하월곡동22-10	31	2017.1~	8	522	4,176	1,642	1,642		1,642		1,642			
도로	석관동184-2~석관동278	32	2017.1~	8	214	1,712	2,729	2,729		2,729		2,729			
도로	미아리고개~고대옆	33	2017.1~	7~16	2,120	24,380	4,957	4,957		4,957		4,957			
도로	길음동21-69~길음동486-7	34	2017.1~	12	406	4,872	6,634	6,634		6,634		6,634			
도로	길음동1163~길음동918-8	35	2017.1~	10	49	490	1,553	1,553		1,553		1,553			
도로	길음동25-7~길음동489-49	36	2017.1~	8	69	552	751	751		751		751			
도로	길음동21-46~길음동489-50	37	2017.1~	8	128	1,024	1,122	1,122		1,122		1,122			
도로	길음동489-42~길음동25-7	38	2017.1~	6	43	258	353	353		353		353			
도로	길음동21-34~길음동864-18	39	2017.1~	6	41	246	336	336		336		336			
도로	길음동1153-3~길음동1094	40	2017.1~	6	47	282	386	386		386		386			
도로	길음동1157~길음동1090-1	41	2017.1~	6	47	282	386	386		386		386			
도로	길음동1142~길음동1153-4	42	2017.1~	4	116	464	659	659		659		659			
도로	길음동508-49~길음동510-53	43	2017.1~	12	185	2,220	3,024	3,024		3,024		3,024			
도로	석관동168-15~석관동384-1	44	2017.1~	12	14	168	182	182		182		182			
도로	석관동179-20~석관동179-20	45	2017.1~	10	14	140	152	152		152		152			
도로	석관동236-1~석관동197-17	46	2017.1~	8	170	1,360	1,475	1,475		1,475		1,475			
도로	석관동343-9~석관동261-259	47	2017.1~	8	604	4,832	5,240	5,240		5,240		5,240			
도로	석관동176-74~석관동384	48	2017.1~	8~12	250	2,000	2,169	2,169		2,169		2,169			

사업·시설부문	사업명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2-2016년 이후)							
				폭(m)	연장(m)	면적(㎡)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계	시비	구비			
도로	석관동179-22~석관동129-5	49	2017.1~	6	132	792	867	867		867		867			
도로	석관동245-11~석관동236-7	50	2017.1~	6	206	1,236	1,352	1,352		1,352		1,352			
도로	석관동176-13~석관동228-18	51	2017.1~	6	158	948	1,038	1,038		1,038		1,038			
도로	석관동384-4~석관동384-4	52	2017.1~	6	12	72	83	83		83		83			
도로	석관동220-25~석관동220-18	53	2017.1~	6	35	210	230	230		230		230			
도로	석관동391-1~석관동206-1	54	2017.1~	6	25	150	163	163		163		163			
도로	하월곡동64-13~하월곡동50-2	55	2017.1~	8~10	164	1,476	1,958	1,958		1,958		1,958			
도로	하월곡동46-59~하월곡동47-50	56	2017.1~	8	155	1,240	1,671	1,671		1,671		1,671			
도로	하월곡동29-64~하월곡동29-73	57	2017.1~	6	100	600	814	814		814		814			
도로	하월곡동27-117~하월곡동27-95	58	2017.1~	6	88	528	716	716		716		716			
도로	하월곡동27-99~하월곡동96-125	59	2017.1~	6	233	1,398	1,897	1,897		1,897		1,897			
도로	하월곡동46-43~하월곡동47-42	60	2017.1~	6	61	366	496	496		496		496			
도로	하월곡동47-31~하월곡동47-56	61	2017.1~	4	45	180	253	253		253		253			
도로	정릉동1002~정릉동873	62	2017.1~	6~8	50	350	251	251		251		251			
도로	동선동4가91~동선동4가 95-3	63	2017.1~	8	45	360	1,200	1,200		1,200		1,200			
도로	동선동4가38~동선동4가 33	64	2017.1~	6	50	300	720	720		720		720			
도로	동선동1가94~동선동1가92-22	65	2017.1~	6	75	450	1,200	1,200		1,200		1,200			
도로	길음동535-8~길음동877-255	66	2017.1~	8	70	560	4,560	4,560		4,560		4,560			
도로	하월곡동 73-34~하월곡동22-10	67	2017.1~	8	320	2,560	659	659		659		659			

사업·시설부문	사업명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2-2016년 이후)							
				폭(m)	연장(m)	면적(㎡)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계	시비	구비			
도로	종암동3-145~종암동79-266	68	2017.1~	6	486	2,916	8,815	8,815		8,815		8,815			
도로	종암동3-556~종암동79-104	69	2017.1~	8	20	160	166	166		166		166			
도로	하월곡동88-529~하월곡동88-959	70	2017.1~	15	59	3,420	4,643	4,643		4,643		4,643			
도로	하월곡동88-65~하월곡동88-493	71	2017.1~	12	172	2,064	2,810	2,810		2,810		2,810			
도로	하월곡동198~하월곡동216	72	2017.1~	10	93	930	1,266	1,266		1,266		1,266			
도로	장위동8-2~장위동8-3	73	2017.1~	10	103	1,030	1,692	1,692		1,692		1,692			
도로	장위동50-17~장위동42-23	74	2017.1~	10	101	1,010	1,095	1,095		1,095		1,095			
도로	장위동45-8~장위동42-13	75	2017.1~	10	63	630	683	683		683		683			
도로	장위동45-9~장위동64-126	76	2017.1~	10	46	460	520	520		520		520			
도로	장위동50-17~장위동63-61	77	2017.1~	10	227	2,270	2,802	2,802		2,802		2,802			
도로	장위동50-64~장위동50-64	78	2017.1~	8	54	432	513	513		513		513			
도로	장위동93-2~장위동55-21	79	2017.1~	8	31	248	823	823		823		823			
도로	장위동64-103~장위동65-27	80	2017.1~	8~9	26	221	237	237		237		237			
도로	장위동66-27~장위동66-44	81	2017.1~	10	92	920	1,092	1,092		1,092		1,092			
도로	장위동63-75~장위동43-6	82	2017.1~	12	355	4,260	1,267	1,267		1,267		1,267			
도로	장위동63-89~장위동55-38	83	2017.1~	6	144	864	945	945		945		945			
도로	장위동63-127~장위동63-118	84	2017.1~	6	56	336	368	368		368		368			
도로	길음동507~종암동5	85	2017.1~	25	120	3,000	4,260	4,260		4,260		4,260			
도로	하월곡동16-13~하월곡동26-13	86	2017.1~	12	72	864	635	635		635		635			
도로	장위동63-77~장위동63-117	87	2017.1~	10~11	47	493.5	643	643		643		643			
도로	장위동63-59~장위동63-60	88	2017.1~	6	36	216	197	197		197		197			

◈ 서대문구공고 제2011-10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소공원)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23(2009.3.2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고시 제2011-14호(2011.04.07)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우리구 홍은동 산1-549번지외 3필지 도시계획시설(소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코자 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 홍은동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이승수)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홍은 제3소공원 조성공사
다. 사업시행기간 : 2011년09월21일 ~ 2012년03월31일
라. 사업규모
○ 사업위치 : 홍은동 산1-549, 산1-565, 산1-379 필지
○ 사업면적 : 747.0㎡
마. 준공검사일 : 2011. 12. 21.
바. 관계서류 : 서대문구청 주택과에 비치.

◈ 서대문구공고 제2011-106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96호(2001.12.0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08호(2010.11.18)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02조 규정에 의거 준공처리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완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건축과(☎ 330-19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의 위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14동, 15동, 16동)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추계예술대학교 창조관, 서별관신관, 쓰레기하치장 증축공사
라. 사업시 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
학교법인 추계학원
마.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도시계획시설(학교)면적 : 56,997.71㎡

○ 사업부지면적 : 1755.29㎡
○ 연 면 적 : 15,063.34㎡
○ 건 축 규 모 : 지하2층, 지상8층

바. 사업시행기간 : 2010.07.13 ~ 2011.12.23

사. 도시계획(학교)결정 근거
- 최초 : 서울특별시고시제2001-396호(2001.12.05)
- 최종 : 서울특별시고시제2010-408호(2010.11.18)

아. 준공도서 : 별첨(생략)

◈ 구로구공고 제2011-9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구로구고시 제2011-10(2011.03.31)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된 구로구 오류동 44-16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오류1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9일
구 로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 : 구로구 오류동 44-16번지 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사업의 명칭 : 오류1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 77㎡
(4)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성 명 :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43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나.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열람장소 : 구로구 푸른도시과(☎02)860-308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104	77						
1	오류동	44-7	대	66	42	한부강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3-74	오류1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37-3	근저당권	
2		44-15	대	4	4	권두안	서울시 구로구 궁동 92				
						박남원	서울시 구로구 궁동 190-42				
3		44-16	대	16	16	김창중	서울시 구로구 1259 구일우성아파트 208-1102				
						신래숙	캘리포니아 피칼스배드 비아 프란시스카 아파트 2310				
4		44-17	대	18	15	한부강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3-74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세입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오류동 44-7	점포	목조	32.94	점포	한부강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3-74	오류1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37-3	
2	오류동 44-16	점포	판넬	10.50	점포	김창중	서울시 구로구 1259 구일우성 아파트 208-1102			
						신래숙	캘리포니아 피칼스배드 비아프란시스카 아파트 2310			

◈ 구로구공고 제2011-9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구로구고시 제2011-88(2011.12.22)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된 구로구 개봉3동 산53-29번지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9일
구 로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 : 구로구 개봉3동 산53-2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개웅산근린공원 진입로 조성

(3) 사업의 규모 : 478㎡(도로 폭 8m, 연장 50m)

(4)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성 명 :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43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나.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열람장소 : 구로구 푸른도시과(☎02)860-309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478	478						
1	개봉	산53-29	임야	478	478	박영향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2-60				

◈ 금천구공고 제2011-778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 우리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127-15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백만원)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이후)		
		건수	면적(m2)	건수	면적(m2)	건수	면적(m2)	건수	면적(m2)	
계	건 수	8	63,029	1	25,320			7	37,709	
	소요예산		69,591		42,000				27,591	
도로	건 수	7	52,451	1	25,320			6	27,131	
	소요예산		58,380		42,000				16,380	
공원	건 수	1	10,578					1	10,578	
	소요예산		11,211						11,211	

2.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시설명	위 치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고
				폭(m)	연장(m)	면적(m2)	총계	국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도로	시흥동113-119 ~시흥동982-21	1	2013 ~2017	B=12 m	L=2,110 m	25,320	42,000		42,000		42,000	
도로	시흥동982 ~시흥동982	2	2016	B=8m	L=110m	880	660		660		660	
도로	가산동64-3 ~가산동82	3	2016	B=6m	L=48m	288	400		400		400	
도로	시흥동248-12 ~시흥동703-1	4	2017~2018	B=20 m	L=596m	11,920	1,550		1,550		1,550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시설명	위 치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고
				폭 (m)	연장 (m)	면적 (m2)	총계	국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도로	독산동산6-1 번지일대	5	2017	B=8m	L=70m	560	420		420		420	
도로	시흥동113-42 ~시흥동113-32	6	2017 ~2018	B=12m	L=113m	1,356	1,850		1,850		1,850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도로	독산동441의6 ~독산동468의2	7	2017 ~2018	B=25m	L=485m	12,125	11,500		11,500	11,500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공원	독산동441-6일대	8	2017~ 2018	B=100 m	L=100m	10,578	11,211		11,211		11,211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3. 관계도면 : 생 략

◈ 영등포구공고 제2011-120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 철도역]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61(2009. 2.19)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시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09-49(2009.09.30)호, 제2010-4(2010.01.15)호, 제2011-29(2011.04.15)호, 제2011-63(2011.08.26)호로 도시계획시설(철도 : 철도역)사업 실시계획인가와 변경인가 고시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외 15필지 영등포민자역사 시설개량 및 증축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 철도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외 1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 철도역)사업
  2) 명 칭 : 영등포 민자역사 시설개량 및 증축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지하5층/지상10층, 연면적 145,109.25㎡(10,577.9㎡ 증축)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롯데역사(주) 대표 이원준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2009.09.30 ~ 2012.04.07

바. 공사완료일 : 2011.11.30

사. 준공도서 : 따로붙임(생략)

※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비치함.(☎02-2670-3704).

◈ 동작구공고 제2011-8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7-77호(2007.11.15)로 동작구 상도동 134번지 일원 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고시 및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1-16호(2011.04.14)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고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된 사업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02-820-1381)에 비치하여 20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ㅇ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34번지 일원
- ㅇ 면 적 : 도로(15,331.9㎡)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중로	2	1	15~30	국지도로	204.12	상도동476-9	상도동134-20	일반도로
중로	3	1	12	국지도로	53.19	상도동134-19	상도동134-638	일반도로
소로	1	1	10	국지도로	502.94	상도동산64-352	상도동141-12	일반도로
소로	2	1	8	국지도로	356.35	상도동143-7	상도동산64-297	일반도로
소로	3	1	6	국지도로	389.96	상도동산64-356	상도동134-709	일반도로

나. 사업시행자 :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노명수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남일
[서초구 방배로 132(방배동) 장산빌딩7층]

다.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순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117	상도동	산64-330	임	6.0	6.0	국(재경부)	매입신청완료
2	118		산64-31	임	167.0	167.0	국(재경부)	매입신청완료
3	119		산64-333	임	84.0	84.0	국(재경부)	매입신청완료
4	120		산64-335	임	28.0	28.0	국(재경부)	매입신청완료
5	148		산64-329	임	47.0	47.0	국(재경부)	매입신처완료
6	175		415-28	도	882.1	882.1	동작구	도로
7	146		산64-290	임	11.0	11.0	재경부직장조합	수용
8	96		471-1	대	33.1	33.1	황 욱	수용
9	176		461-8	대	100.8	100.8	이효일	수용
10	121		461-11	대	80.7	80.7	신상철	수용
계					1,439.7	1,439.7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마.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함(도로개설 후 기부채납)

바. 열람장소 : 동작구청 주택과[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별관 2층]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지역
			공부 면적 (㎡)	도로면적 (㎡)		성명	주소		
				도로	공원 도로				
1	상도동 134-20	대	13.0	13.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2	134-657	대	28.0	28.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3	134-658	대	10.0	10.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4	134-659	대	79.0	79.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5	134-661	대	272.0	272.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6	134-711	대	3.0	3.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7	134-663	대	182.0	182.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8	134-665	대	273.0	273.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9	134-656	대	35.0	3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0	134-64	대	1.0	1.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1	134-655	대	1.0	1.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2	134-65	대	254.0	254.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3	134-654	대	65.0	6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4	134-73	대	125.0	12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5	134-652	대	3.0	3.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6	134-641	대	547.0	547.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7	134-646	대	64.0	64.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8	134-647	대	48.0	48.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9	134-650	대	29.0	29.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20	134-669	대	254.0	254.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21	134-673	대	274.0	274.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지역
			공부 면적 (㎡)	도로면적(㎡)		성명	주소		
				도로	공원 도로				
22	134-717	대	221.0	221.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23	134-718	대	65.0	6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24	134-719	대	16.0	16.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25	134-720	대	180.0	180.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26	134-722	대	20.0	20.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27	134-723	대	18.0	18.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28	134-724	대	30.0	30.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29	134-726	대	21.0	21.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30	134-678	대	30.0	30.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31	134-679	대	109.0	109.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32	134-705	대	126.0	126.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33	134-702	대	125.0	12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34	134-693	대	204.0	204.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35	134-690	대	161.0	161.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36	134-687	대	190.0	190.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37	134-685	대	315.0	31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38	134-684	대	102.0	102.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39	134-683	대	229.0	229.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40	134-681	대	180.0	180.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41	134-161	대	472.0	472.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42	134-217	대	35.0	3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43	134-709	대	35.	3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44	134-667	대	245.0	24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지역
			공부 면적 (㎡)	도로면적(㎡)		성명	주소		
				도로	공원 도로				
45	134-385	대	24.0	24.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46	134-653	대	3.0	3.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47	134-386	대	4.0	4.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48	134-670	대	52.0	52.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49	134-677	대	86.0	86.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50	134-671	대	73.0	73.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51	134-707	대	7.0	7.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52	134-706	대	2.0	2.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53	134-703	대	1.0	1.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54	134-686	대	1.0	1.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55	134-688	대	4.0	4.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56	134-559	대	2.0	2.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57	134-682	대	23.0	23.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58	134-643	대	71.0	71.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59	134-645	대	102.0	102.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60	134-569	대	11.0	11.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61	134-700	대	5.0	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62	134-680	대	8.0	8.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63	134-676	대	22.0	22.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64	141-2	도	17.0	17.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65	141-4	대	130.0	130.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66	141-8	대	4.0	4.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지역
			공부 면적 (㎡)	도로면적(㎡)		성명	주소		
				도로	공원 도로				
67	141-11	대	9.0	9.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68	134-59	대	3.0	3.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69	134-58	대	17.0	17.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70	134-729	대	3.0	3.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71	142-8	대	4.0	4.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72	142-9	대	7.0	7.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73	134-33	대	3.0	3.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74	134-34	대	4.0	4.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75	134-738	대	6.0	6.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76	134-740	대	6.0	6.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77	134-741	대	201.0	201.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78	134-743	대	3.0	3.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79	134-744	대	6.0	6.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80	141-16	대	32.0	32.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81	141-21	대	50.0	50.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82	141-20	대	43.0	43.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83	141-10	도	165.0	16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84	141-22	대	44.0	44.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85	141-12	대	130.0	130.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86	141-18	대	15.0	1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87	141-19	대	47.0	47.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88	141-14	대	95.0	9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지역
			공부 면적(㎡)	도로면적(㎡)		성명	주소		
				도로	공원 도로				
89	141-17	대	22.0	22.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90	142-24	대	15.0	1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91	142-5	대	238.0	238.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92	142-6	대	3.0	3.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93	142-25	대	60.0	60.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94	142-26	대	45.0	45.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95	142-10	대	251.0	251.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96	471-1	대	33.1	33.1		황욱			Ⅱ
97	471-2	도	59.8	59.8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98	471-3	대	6.3	6.3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99	471-19	대	70.7	70.7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00	472-36	대	73.7	73.7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01	472-1	대	16.9	16.9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02	472-35	대	157.9	157.9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03	472-3	대	177.5	177.5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04	472-4	대	214.9	214.9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05	472-37	대	16.5	16.5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06	472-38	대	25.7	25.7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07	476-11	대	12.3	12.3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08	476-10	대	61.7	61.7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09	476-8	대	224.1	224.1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10	476-9	대	42.3	42.3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지역
			공부 면적 (㎡)	도로면적(㎡)		성명	주소		
				도로	공원 도로				
111	517-8	대	208.0	208.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12	517-5	대	262.3	262.3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13	517-6	대	33.1	33.1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14	산64-350	임	20.0	20.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15	산64-355	임	137.0		137.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16	산64-353	임	49.0		49.0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서초구 방배동 901-1		Ⅱ
117	산64-330	임	6.0		6.0	국(재경부)			Ⅱ
118	산64-331	임	167.0		167.0	국(재경부)			Ⅱ
119	산64-333	임	84.0		84.0	국(재경부)			Ⅱ
120	산64-335	임	28.0		28.0	국(재경부)			Ⅱ
121	461-11	도	80.7	80.7		신상철	관악구 상도동 143		Ⅱ
122	산64-338	임	63.0	63.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Ⅰ
123	산64-339	임	16.0	16.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Ⅰ
124	산64-340	임	37.0	37.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Ⅰ
125	산64-342	임	43.0	43.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Ⅰ
126	산64-343	임	62.0	6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Ⅰ
127	산64-344	임	12.0	1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Ⅰ
128	산64-346	임	60.0	60.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Ⅰ
129	산64-347	임	9.0	9.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Ⅰ
130	134-14	대	83.0	83.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Ⅰ
131	142	대	56.0	56.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Ⅰ
132	143-5	대	21.0	21.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지역
			공부 면적(㎡)	도로면적(㎡)		성명	주소		
				도로	공원 도로				
133	143-6	대	174.0	174.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34	134-635	대	111.0	111.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35	134-638	대	166.0	166.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36	134-639	대	5.0	5.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37	134-116	대	33.0	33.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38	134-713	대	25.0	25.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39	134-715	대	52.0	5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40	134-356	대	5.0	5.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41	134-628	대	12.0	1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42	134-366	대	12.0	1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43	134-367	대	2.0	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44	134-19	대	132.0	13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45	134-355	대	2.0	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46	산64-290	임	11.0	11.0		재정경제부직장주택조합			I
147	산64-297	임	52.0	5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48	산64-329	임	47.0		47.0	국(재경부)			I
149	산64-298	임	2.0	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50	산64-299	임	23.0	23.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51	산64-300	임	2.0	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52	산64-352	임	1,344		1,344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53	산64-358	임	66.0		66.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54	산64-301	임	33.0	33.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지역
			공부 면적 (㎡)	도로면적(㎡)		성명	주소		
				도로	공원 도로				
155	산64-302	임	4.0	4.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56	산64-303	임	6.0	6.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57	산64-304	임	62.0	6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58	산64-305	임	18.0	18.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59	산64-306	임	73.0	73.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60	산64-307	임	103.0	103.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61	산64-308	임	73.0	73.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62	산64-309	임	75.0	75.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63	134-149	대	80.0	80.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64	134-154	대	42.0	4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65	134-155	대	243.0	243.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66	134-157	대	11.0	11.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67	134-325	대	43.0	43.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68	134-337	대	164.0	164.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69	134-339	대	54.0	54.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70	134-354	대	11.0	11.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71	134-365	대	2.0	2.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72	134-565	대	18.0	18.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73	134-633	대	7.0	7.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74	143-7	대	7.0	7.0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동작구 상도동 산64-274		I
175	415-28	도	882.1	882.1		동작구			I
176	461-8	대	100.8	100.8		이효일	대전 중구 태평동 422-7 버드내 마을아파트 129-1001		I


편 입 용 지 도

사업소고시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1-13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구 분	고 시 내 용				
하천의 명칭	한 강				
점용자 성명	조상현 (국민생활체육서울시 수상스키협회장)	김찬수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수상스키중앙연합회장)	이건호 (대한불교 조계종 방생법회장)	이기수 (서울시장애인 수상스키협회장)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 회 서울지부 (지부장 류진수)
점용자 주소	강남구 압구정동 376-1번지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상암동 482-482)	광진구 강변북로 50 (자양동 131)	광진구 강변북로 64 (자양동 131)	마포구 마포나루길 256 (상암동482-476)
점용 목적	수상스키훈련장	수상스키훈련장	방생법당	수상스키훈련장	조종면허시험장
점용 위치	강남구 압구정동 376-1번지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상암동 482-482)	광진구 강변북로 50 (자양동 131)	광진구 강변북로 64 (자양동 131)	마포구 마포나루길 256 (상암동 482-476)
점용 면적	459.9㎡	436.0㎡	699.0㎡	383.0㎡	548.02㎡
점용허가기간	'12. 1. 1 ~ '12.12.31(1년)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1-13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 강
2. 점용자의 성명 : (주)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
3.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346호
4. 점 용 위 치 : 잠실대교 ~ 방화대교(서울 시계 내 한강)
5. 점 용 면 적 : 선박 6척(동력보트)
6. 점 용 목 적 : 도선사업(수상관광콜택시)을 위한 선박운항
7.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 1. ~ 2012. 12. 31.

사업소공고

◈ 용산소방서공고 제2011-3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용 산 소 방 서 장

업 종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제용산 2011-02호 (2011.12.23)	주식회사 인성이엔씨 (110114-0508915)	김 기 찬 (421220-1******)	용산구 서계동 194-4	02-706 -16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T.797-38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소방서공고 제2011-21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신규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광 진 소 방 서 장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제광진2011-11호 (2011.12.23)	주식회사 코세프 (110111-4744523)	이수정 (64.05.11)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77-17번지 성수아카데미타워 1523호	02-2039-1190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02-452-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소방서공고 제2011-22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신규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광 진 소 방 서 장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제광진2011-12호 (2011.12.26)	주식회사 코빅건설 (110111-1010422)	백인철 (69.03.06) 은영기 (56.08.22)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2-3 영진빌딩	02-463-214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02-452-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11-24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 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구 로 소 방 서 장

업 종 (분 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일반소방 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제구로2011-22호 (2011.12.22.)	주식회사 웹솔루스 (110111-2151803)	김 홍 식 (1970.10.26.)	서울 구로구 구로동212-13 벽산디지털밸리3차 1201-1203호	2025-190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예방과(2682-50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11-25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구 로 소 방 서 장

업 종 (분 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 시설설계업	제구로2011-23호 (2011.12.26.)	주식회사 전방재엔지니어링 (110111-1190711)	전 홍 재 (1947.05.13.)	서울 금천구 가산동60-4코오롱테 크노밸리1005호	6332-011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예방과(2682-50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악소방서공고 제2011-5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관 악 소 방 서 장

업 종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제관악2011-4호 (2011. 12. 21)	(주)건우엔지 니어링	박 대 호 (1974. 09. 08.)	관악구 남부순환로 1861 (행운동 1673-21 덕수빌딩 509호)	854-287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 관악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883-79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65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119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482번지~구로구 구로동 681-16번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1-2번지~6528-5번지
   - 면 적 : 3,242.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스배관 매설
   - 개 요 : 가스관로(D=500mm) L=5,973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1.08.02~ 2016.08.01(5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82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고양권관리단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98-1번지 등 10필지
   - 면 적 : 45.9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관 부식 방지시설 설치
- 개 요 : 정류기 1개소, 전기방식용 양극 20개소,케이블포설 22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1.11.03~ 2016.11.02(5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83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지방항공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185,377-1(노들섬 내)
   - 면 적 : 1,56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헬리포트장 설치
   - 개 요 : 헬리포트장 1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1.10.30~ 2016.10.29(5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84호

하천점용(일시)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119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6-1번지
   - 면 적 : 27.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스관 보수
- 개 요 : 배관보수(가스배관 D=62mm, L=6.0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1.12.23 ~ 2012.02.22(허가일~2012.02.22)

정 정

◈ 정 정

서울시보 제3084호(2011.12.22)에 게재된 동대문구고시 제2011-105호[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고시]의 내용 중 일부 오기사항이 있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동 대 문 구 청 장

페이지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315	서울특별시장	동대문구청장	· 정정위치 : 상단, 11행

○ 연락처 : 동대문구청 토목과(☎02-2127-4406) 및 건설관리과(☎02-2127-4806)

120
다산콜센터